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토보고(부처별Ⅳ)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토보고(부처별Ⅳ)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 CONTENTS

##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 문화체육관광부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9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

**Ⅱ. 사업별 검토 ····· 13**

**【총　괄】**

1. 정책펀드 사업: 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펀드사업 추진 필요 등 ····· 13

**【일반회계】**

**<세　출> ····· 21**

2.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 21
3. 만화산업 육성 사업: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주의 필요 ····· 27

4.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 낙찰차액 등을 활용한 추가 사업 추진 문제 ····· 32
5. 창작역량 강화 사업: 예술활동 증명 제도 처리지연 개선 필요 ····· 37
6.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아트코리아랩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자부담 방안 마련 필요 ····· 40
7.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관리 필요 ····· 44
8.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강화 필요 ····· 50
9. 해외거점 운영: 신규 해외비즈니스 센터 개소 지연 문제 ····· 5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59**

10.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사업방식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59

**【문화예술진흥기금】**

11.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 65

**<지 출> ····· 72**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집행실적 부진 개선 필요 등 ····· 72
13.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 미흡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 개선 필요 등 ····· 80
1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및 재산요건 강화 필요 등 ····· 86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 91**

15.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연례적인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개선 필요 ····· 91
16.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사업구조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필요 ····· 95

【국민체육진흥기금】

<지 출> ····· 99
17.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실제 수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필요 ····· 99
18.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부적정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 102
19.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실수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필요 등 ····· 106

【기 타】

2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13

## ❖ 국가유산청


**Ⅰ. 개 관 ····· 117**

1. 결산 개요 ····· 11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2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3

**Ⅱ. 사업별 검토 ····· 124**

**【총 괄】**

1.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관련 지침의 철저한 준수 필요 등 ····· 124
2.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기준의 정비 필요 ····· 131

**【일반회계】**

**<세 입> ····· 135**

3.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35
4. 변상금: 태릉사격장 관련 누적 변상금 회수를 위한 실효적 방안 강구 필요 ····· 139

**<세 출> ····· 143**

5.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ODA) 사업: 수행기관 선정 관리 강화 및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차질없는 마무리 필요 ····· 143
6.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주민편의·지역개발 성격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범위 검토 필요 ····· 147
7.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토지이용정보체계를 기반으로한 대국민 정보 공개 체계 마련 필요 ····· 152

8.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등 ····· 156
9.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및 먹이주기 지원 사업: 기존 유사사업과의 통합 운영 검토 필요 ····· 160
10. 무형유산 보전·관리 사업: 국가무형유산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의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1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66**

11.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등 ····· 166
12.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실집행 부진 개선 및 분할교부 원칙 준수 필요 ····· 176

**【기 타】**

1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8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 185**

1. 결산 개요 ····· 18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91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93

**Ⅱ. 사업별 검토 ····· 195**

**【일반회계】**

**<세 출> ····· 195**

1.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사업(토고) 사업: 실제 집행여건을 고려한 예산교부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95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사업: 연구용역과제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와 중복문제 개선 필요 등 ····· 19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203**

3.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품목별 가입수요 추계 정확성 제고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체계 개선 필요 ····· 203
4.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 기존 과수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미흡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10

5.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 214
6. 귀농귀촌정착지원 이차보전 사업: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218
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인증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22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 225**

8. 기후변화대응 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 사업: 국가소유를 명시한 과제관리 필요 ····· 2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229**

9.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 229
10. 일반농산어촌개발: 실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배정 필요 ····· 2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235**

11.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반영 필요 ····· 235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출> ····· 238**

12.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사업: 공공비축미 대여분 환수 등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23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 출> ····· 241**

13. 비축지원 사업: 논콩 공급 과잉에 따른 수매비·재고관리비 부담과 기금 손실 우려 ····· 241
14.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 융자예산의 기존업체 지원 비율 과다 및 반복지원 문제 개선 필요 ····· 245

【농지관리기금】

<지 출> ····· 248

15.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반복적 이월 방지 및 청년농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관리 필요 ····· 24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 출> ····· 251

16. 친환경축산직불: 실적 부진 요인 점검 및 교육·컨설팅 사업에 있어 농가 직접 지원예산 확대 필요 ····· 25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 출> ····· 254

17. 축사시설개선 사업: 반복적인 이월 발생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5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 출> ····· 256

18. 재보험금 사업: 재보험료 정산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256

【기 타】

1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261

## ❖ 농촌진흥청

**Ⅰ. 개 관 ····· 263**

1. 결산 개요 ····· 26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67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68

**Ⅱ. 사업별 검토 ····· 269**

**【일반회계】**

**<세 출> ····· 269**

1.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 단기간 내 완료된 R&D 기획연구 용역사업 재점검 필요 등 ····· 269
2.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사업지연 문제 해소 및 관련 R&D 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 272
3. 파속채소연구소구축 사업: 추가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276
4.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 사업: 농림위성 발사일정과 연구개발 일정 간 연계관리 필요 등 ····· 278
5.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282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85

## ❖ 산 림 청


**Ⅰ. 개 관 ····· 286**

1. 결산 개요 ····· 286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9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1

**Ⅱ. 사업별 검토 ····· 292**

**【총 괄】**

1. 임도시설 사업: 활용도 저하 및 산림경영면적 감소추세를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필요 등 ····· 292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되는 녹색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등 ····· 296

**【일반회계】**

**<세 출> ····· 304**

3.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 농림위성 발사 일정과 연구개발 일정 간 연계관리 필요 ····· 304
4.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사업: 수의 계약 중심의 R&D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방식 개선 필요 ····· 306
5. 산림복원 사업: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외부기관 참여확대를 통한 객관성 확보 ····· 310
6. 산불방지대책 사업: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필요 ····· 313
7.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사업: 감지·전달·대피 기술 간 연계성·상호운용성 검증 강화 필요 등 ····· 317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321

## ❖ 해양수산부

**Ⅰ. 개 관 ····· 322**

1. 결산 개요 ····· 32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27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28

**Ⅱ. 사업별 검토 ····· 330**

【총 괄】

1.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필요 ····· 330

【일반회계】

**<세 출> ····· 336**

2. 사후관리 사업: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후속대책 이행 관리 강화 필요 ····· 336

3. 구명조끼보급 한시지원 사업(신규): 집행여건 검토 미흡으로 사업 지연 부적정 ····· 340

4.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사업(신규): 수요 대비 과다한 예산 편성 부적정 ····· 343

5.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상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 346

6.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신규): 예비비로 편성한 관리용역비 전액 이월 부적정 ····· 35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353

7.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 반복적 사업 지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부적정 ····· 353

8.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를 활용한 연례적 사업 확대 시정 필요 ····· 357

9.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360

10.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교부 필요 ····· 366

11. 김 건조기 교체 사업(신규): 사업 추진일정 검토 미흡으로 인한 추경 편성 사업의 대규모 이월 부적정 ····· 370

12.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 사업설계 미흡으로 인한 집행부진 부적정 ····· 373

13.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 친환경양식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및 사업내용 개편 검토 필요 ····· 376

14.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특정 프랜차이즈 기반 직매장 지원 방식의 타당성 검토 필요 ····· 3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 387

15.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신규): 감척어선 미확보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부적정 ····· 387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세 출> ····· 390

16.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침몰선 관리체계 정비 및 인양비용 회수 방안 마련 필요 ····· 390

17.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신규): 사전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394

18. 동해신항 연결도로 사업: 사업 추진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397

【수산발전기금】

<지 출> ····· 400

19.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기존 어구 반납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회수체계 개선 필요 ····· 400

【기 타】

2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403

❖ 해양경찰청

Ⅰ. 개 관 ····· 404

1. 결산 개요 ····· 40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408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09

Ⅱ. 사업별 검토 ····· 410

【총 괄】

1.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재정 외 자금 운용 방식 개선 필요 ····· 410
2. 감리비 미편성: 법령상 의무 사항인 감리비의 반복적인 미편성 부적정 ····· 414

【일반회계】

<세 출> ····· 418

3.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사업(신규): 사업비 산정 및 사업관리 적정성 제고 필요 ····· 418
4.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관리용역 사업: 해양경비지원시스템 유지관리 공백 발생 부적정 ····· 421
5. 서부정비창 운영경비 사업(신규):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대규모 이·전용 및 불용 부적정 ····· 424
6. 항공기도입지원 사업: 실집행 가능성이 없는 국외여비 반복 편성 시정 필요 ····· 428
7. 경비함정 보험 사업: 보험가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432
8.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신규): 위성센터 건립 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 436

【기 타】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43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산업통상부


**Ⅰ. 개 관 ····· 445**

1. 결산 개요 ····· 44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45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52

**Ⅱ. 사업별 검토 ····· 454**

**【총 괄】**

1. R&D자금관리: 전문기관 자금 교부 이후 최종연구수행기관에 배정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 비효율 발생 등 ····· 454
2. 비R&D 기반구축 사업: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체계화 노력 필요 ····· 460

**【일반회계】**

**<총 괄> ····· 467**

3. 자유무역지역 무역원 운영: 투자율 및 입주율 제고 노력 필요 등 ····· 467

**<세 출> ····· 475**

4.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475
5. 디자인산업진흥 사업: 시제품 개발 사업들의 중복지원 부적정 등 ····· 478
6.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사업: 협약 대비 실제 예산 감액에 따른 중단 과제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 481

7.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내실있는 수요조사 및 적기 지방비 매칭 노력 필요 ····· 484
8.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사업수행 지연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노력 필요 등 ····· 487
9. 포항·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사업: 추경 편성 시 면밀한 기업수요 파악 및 인허가 가능성 검토 필요 ····· 493
10. 통합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496
11. 개별지원사업: 해외진출 기업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 ····· 500
12.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 노력 필요 ····· 503
13. WTO 분쟁 대응 사업: 자금확보 이전 입찰공고 주의 필요 ····· 506
14.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사업: 법적근거 없는 출연금 예산 편성 주의 필요 ····· 50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512**

15.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산단환경 개선 실집행 부진 및 사업지연 주의 필요 ····· 512
16.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면밀한 투자처 선정 및 수익회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515
17.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 등 ····· 52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입> ····· 524**

18. 석유수입부과금: 실제 수납실적 등을 반영한 세입 예산 현실화 필요 ····· 524

**<세 출>** ····· 527

19.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에특회계 사업의 적시 자금배정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527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세 입>** ····· 529

20. 일반회계전입금: 소특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의존 개선을 위한 세입 다변화 방안 모색 필요 ····· 529

**<세 출>** ····· 533

21.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 중단(성실)과제 연구결과물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533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수 입>** ····· 536

22.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산업기술혁신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의존 개선 및 기술료 수입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536

**【무역보험기금】**

**<수 입>** ····· 540

23. 기타경상이전수입: 환변동보험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노력 필요 ····· 540

**<지 출>** ····· 543

24. 무역보험금지급 사업: 특례지원 확대에 따른 특례심사 강화 노력 필요 등 ····· 543

**【기 타】**

2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548

## ❖ 지식재산처


**Ⅰ. 개 관 ····· 550**

1. 결산 개요 ····· 550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54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55

**Ⅱ. 사업별 검토 ····· 556**

**【일반회계】**

**<세 입> ····· 556**

1. 과태료: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의 과태료 미납 해소 필요 ····· 556

**<세 출> ····· 559**

2.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주의 필요 등 ····· 559
3.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노력 필요 ····· 563
4. 모태조합 출자 사업: 출자 자금의 투자집행 노력 필요 등 ····· 566
5.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관리 필요 ····· 572
6. 미스터리 수사지원단(디자인 침해 지원단) 운영 사업: 하반기에 집중되는 채증 물품 구입 개선 검토 필요 ····· 576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 579**

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노력 필요 ····· 579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82

## ❖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 583**

1. 결산 개요 ····· 58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88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89

**Ⅱ. 사업별 검토 ····· 591**

【총 괄】

1. 예산액 과다 내역사업의 세부사업화 등 예산구조 재편 검토 필요 ····· 591
2. 연구개발(R&D) 사업: 면밀한 예산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환수금·제재부가금 징수 실적 제고 필요 ····· 599

【일반회계】

**<세 출> ····· 607**

3.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정부보조금 환수금 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 607
4.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사업: 제조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 및 AI 분석 지원도구 이용 실적 제고 필요 ····· 611
5.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시정 필요 ····· 614

6. 여성기업육성 사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620
7.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 구매 목표 과소설정 및 목표 미달성 부적정 ····· 626
8.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사업: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 과다 문제 해결 필요 ····· 63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 입> ····· 637
9. 기타잡수입: 수입 확충 및 수입계획의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 637

<지 출> ····· 641
10.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 이차보전 사업의 수요 과다예측 및 기업진단의 성과 저조 ····· 641
11.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 사업: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647
12.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건물 활용도 제고 필요 ····· 651
13.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신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연내 실집행 실적 부진 부적정 ····· 654
1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공적 자금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수행 필요 등 ····· 65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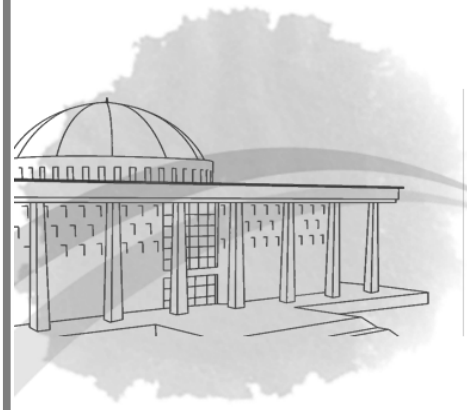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지 출> ····· 668
15.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신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연내 실집행 실적 부진 부적정 ····· 668
16.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신규):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672

17. 지역소공인육성 사업: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677
18.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예방책 마련 필요 ····· 680
19.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융자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685
2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잦은 발행 계획 변경 부적정 등 ····· 690

**【기 타】**

2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69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405억 1,800만원(△6.0%)이 적은 3조 7,736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7억 5,700만원(△6.2%)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98,929 | 98,929 | 200,191 | 101,264 | 132,307 | 132,307 | 161,879 | 29,572 | △38,312 |
| 기 금 | 3,885,862 | 3,885,862 | 3,821,262 | △64,597 | 3,853,238 | 3,881,907 | 3,611,817 | △270,090 | △209,445 |
| 총수입 | 3,984,791 | 3,984,791 | 4,021,453 | 36,667 | 3,985,545 | 4,014,214 | 3,773,696 | △240,518 | △247,757 |

문의: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317억 400만원(△1.8%)이 적은 7조 1,224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41억 1,300만원(5.5%)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3,696,044 | 3,696,044 | 3,563,105 | △132,939 | 3,771,853 | 3,896,152 | 3,838,386 | △57,766 | 275,281 |
| 기 금 | 3,258,406 | 3,297,014 | 3,185,221 | △111,793 | 3,295,363 | 3,357,991 | 3,284,053 | △73,938 | 98,832 |
| 총지출 | 6,954,450 | 6,993,058 | 6,748,326 | △244,732 | 7,067,216 | 7,254,143 | 7,122,439 | △131,704 | 374,113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98억 1,500만원으로, 3,400억 9,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965억 1,100만원이 수납(수납률 87.2%)되고, 435억 8,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107,390 | 107,390 | - | 107,390 | 158,923 | 133,302 | 25,621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120,079 | 121,079 | - | 121,079 | 143,564 | 137,147 | 6,417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346 | 21,346 | - | 21,346 | 37,604 | 26,062 | 11,542 | - |
| - 지역자율계정 | 16,329 | 16,329 | - | 16,329 | 28,328 | 19,868 | 8,460 | - |
| - 지역지원계정 | 4,614 | 4,614 | - | 4,614 | 8,965 | 5,884 | 3,081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01 | 201 | - | 201 | 130 | 130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202 | 202 | - | 202 | 180 | 180 | - | - |
| 합 계 | 248,815 | 249,815 | - | 249,815 | 340,091 | 296,511 | 43,580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1,552억 1,500만원으로, 3조 9,815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537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99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3,293,191 | 3,417,490 | 93,824 | - | - | 3,511,314 | 3,409,253 | 42,678 | 59,383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 120,079 | 121,079 | 15,211 | - | - | 136,290 | 116,334 | 9,186 | 10,77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06,106 | 506,106 | 1,505 | - | - | 507,611 | 456,008 | 1,846 | 49,758 |
| - 지역자율계정 | 87,609 | 87,609 | - | - | - | 87,609 | 82,735 | - | 4,874 |
| - 지역지원계정 | 398,737 | 398,737 | 1,505 | - | - | 400,242 | 353,819 | 1,846 | 44,578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5,338 | 15,338 | - | - | - | 15,338 | 15,309 | - | 29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4,422 | 4,422 | - | - | - | 4,422 | 4,145 | - | 277 |
| 합 계 | 3,919,376 | 4,044,675 | 110,540 | - | - | 4,155,215 | 3,981,595 | 53,709 | 119,910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수입계획액은 5조 5,131억 8,200만원으로, 5조 430억 3,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조 9,981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1%)되고, 449억 2,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577,659 | 581,159 | 530,040 | 529,336 | 703 | - |
| 영화발전기금 | 93,692 | 118,861 | 102,521 | 102,198 | 323 | - |
| 지역신문발전기금 | 10,018 | 10,018 | 13,118 | 13,026 | 91 | - |
| 언론진흥기금 | 50,757 | 50,757 | 82,821 | 82,459 | 362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714,181 | 1,714,181 | 1,346,348 | 1,342,722 | 3,626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3,037,194 | 3,038,206 | 2,968,185 | 2,928,370 | 39,815 | - |
| 합 계 | 5,483,501 | 5,513,182 | 5,043,032 | 4,998,112 | 44,920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조 5,258억 1,700만원으로, 4조 9,981억 1,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0.5%)되고 64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09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577,659 | 581,159 | 9,581 | 590,740 | 529,336 | 4,770 | 12,858 |
| 영화발전기금 | 93,692 | 118,861 | 1,044 | 119,905 | 102,198 | 857 | 4,163 |
| 지역신문발전기금 | 10,018 | 10,018 | - | 10,018 | 13,026 | - | 110 |
| 언론진흥기금 | 50,757 | 50,757 | - | 50,757 | 82,459 | - | 366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714,181 | 1,714,181 | 362 | 1,714,543 | 1,342,722 | 493 | 2,530 |
| 국민체육진흥기금 | 3,037,194 | 3,038,206 | 1,649 | 3,039,855 | 2,928,370 | 348 | 60,910 |
| 합 계 | 5,483,501 | 5,513,182 | 12,635 | 5,525,817 | 4,998,112 | 6,468 | 80,937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3,562억 4,800만원이 증가된 20조 1,950억 4,500만원으로, 이는 기타자산이 247억 1,7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1조 2,273억 8,700만원, 유무형자산이 1,302억 6,400만원 각각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523억 7,700만원 감소된 2조 3,261억 3,100만원으로 차입부채 1,529억 4,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5,086억 2,400만원이 증가된 17조 8,570억 7,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조 2,236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7억 8,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6,263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58억 3,7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20,195,045 | 18,838,798 | 1,356,248 | 7.2 |
| | | 금융자산 | 12,878,158 | 11,650,771 | 1,227,387 | 10.5 |
| | | 유무형자산 | 7,292,170 | 7,161,907 | 130,264 | 1.8 |
| | | 기타자산 | 24,717 | 26,120 | △1,403 | △,5.4 |
| | 부 채 | | 2,337,972 | 2,490,349 | △152,377 | △6.1 |
| | | 차입부채 | 2,326,131 | 2,479,080 | △152,949 | △6.2 |
| | | 충당부채 | 8,706 | 9,269 | △563 | △6.1 |
| | | 기타부채 | 3,135 | 2,000 | 1,135 | 56.7 |
| | 순자산 | | 17,857,073 | 16,348,449 | 1,508,624 | 9.2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5,223,656 | 4,755,867 | 467,789 | 9.8 |
| | 재정운영순원가 | | 5,464,229 | 4,988,353 | 475,876 | 9.5 |
| | 재정운영결과 | | 2,626,384 | 2,070,547 | 555,837 | 26.8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05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75억원이 각각 전출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7억원이 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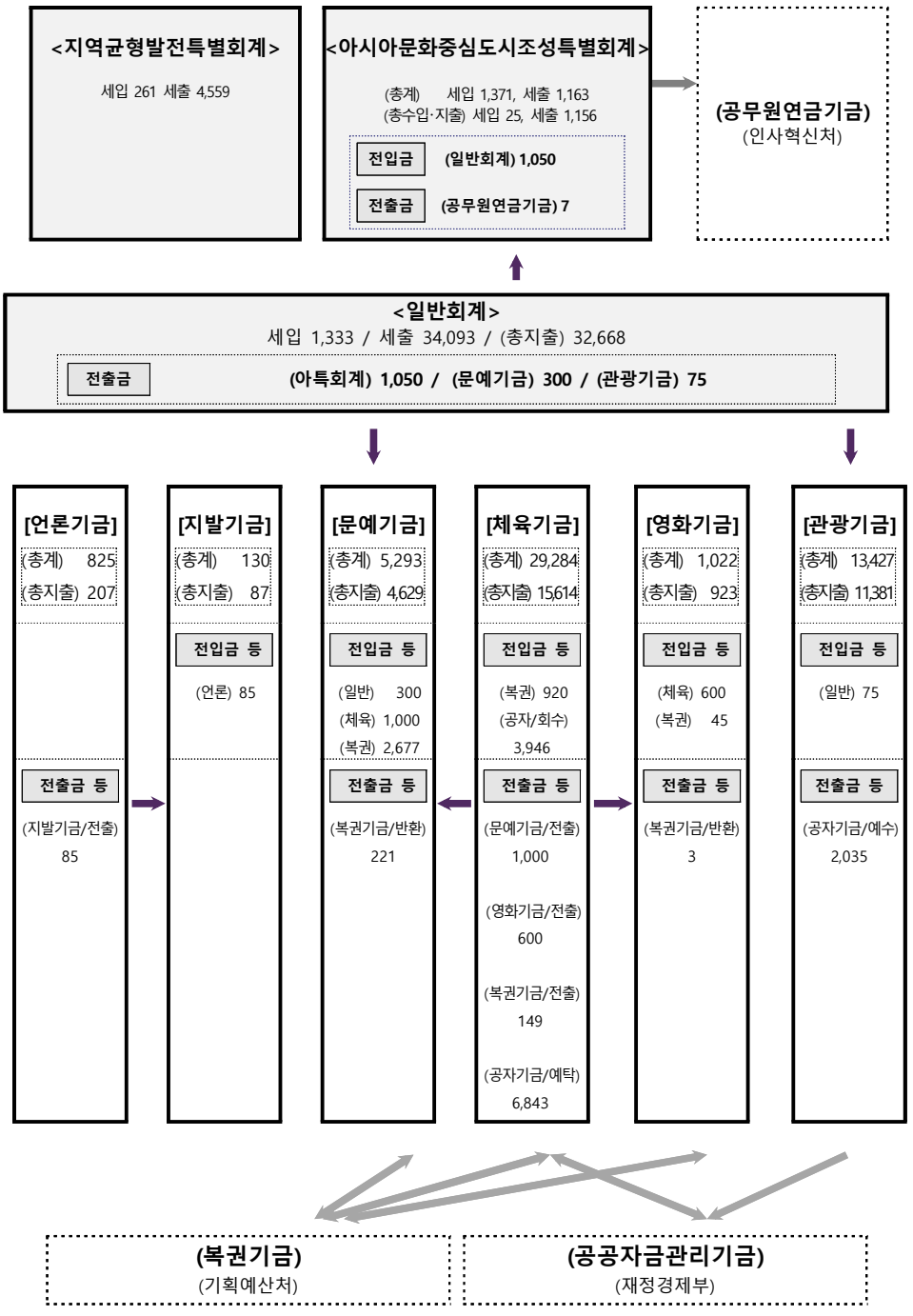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원금 1,500억원과 예수금이자 535억원을 상환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0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2,677억원을 각각 전입받고 복권기금으로 221억원을 반환하였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920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 사업 잔액 149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회수 3,60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346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843억원을 예탁하였음.

영화발전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6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45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 사업 잔액 3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85억원을 전입받았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소비 확대,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를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지역 예술 생태계 형성 지원, K-콘텐츠 산업 혁신 성장지원, 인공지능(AI) 시대 선제적 대응, 한국어·태권도·전통문화의 세계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책펀드 사업은 청산된 자펀드의 상당수(85.7%)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자펀드 결성 및 청산이 지연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펀드의 운용·사후관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과거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과 사업중단 사례가 재차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선정·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 추진 가능성과 연내집행 가능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구축 완료 이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야외촬영 연구용역 등 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잔여 사업비를 통한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예술활동 증명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각종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초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최근 신청 증가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정 인력 및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은 당초 계획한 한국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관련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서의 포괄적 정책 운영비 및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관운영 성격 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 및 지방비 관리 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체수입원 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기금 조성 시설인 문화예술위원회 소유 뉴서울CC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년 약 60억원의 제세금을 부담함에 따라 그만큼 기금의 자체수입이 적게 수납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소유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과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수요를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 변경을 통한 반복적인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대출 상환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소요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어 집행이 부진하였고, 융자지원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소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종목별 지원의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정책펀드 사업: 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펀드 사업 추진 필요 등

### 가.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펀드 사업은 문화·영화·관광·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33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계획액) |
|---|---|---|---|---|---|---|---|---|---|
| | 예산액(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계획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A) | | | | | | | |
| K-콘텐츠 펀드 출자 | 295,000 | 370,000 | - | - | 370,000 | 370,000 | - | - | 455,000 |
| 모태펀드 문화계정 | 205,000 | 260,000 | - | - | 260,000 | 260,000 | - | - | 285,000 |
| 모태펀드 영화계정 | 35,000 | 55,000 | - | - | 55,000 | 55,000 | - | - | 45,000 |
| 콘텐츠 전략펀드 | 15,000 | 15,000 | - | - | 15,000 | 15,000 | - | - | 65,000 |
| 글로벌 리그 펀드 | 40,000 | 40,000 | - | - | 40,000 | 40,000 | - | - | 60,000 |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 63,694 | 63,694 | - | - | 63,694 | 63,694 | - | - | 113,109 |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 33,000 | 33,000 | - | - | 33,000 | 33,000 | - | - | 73,000 |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 30,321 | 30,321 | - | - | 30,321 | 30,300 | - | 21 | 40,321 |

2) 일반회계-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4462-313)(관광정책국)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금융지원(5365-301)(체육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계획액) |
|---|---|---|---|---|---|---|---|---|---|
| | 예산액(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계획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A) | | | | | | | |
| 스포츠산업 펀드 | 30,000 | 30,000 | - | - | 30,000 | 30,000 | - | - | 40,000 |
| 합 계 | 358,000 | 433,000 | - | - | 433,000 | 433,000 | - | - | 568,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한국영화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5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투자대상의 제한 없이 시장 수요에 기반한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모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콘텐츠 정책금융의 지속적인 확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4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사업은 관광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3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스포츠산업 펀드’** 사업은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 및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스포츠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펀드는 모두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운용되며,[3] 정부가 모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모펀드가 민간 운용사가 결성한 자펀드에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공급됨.

3) 모펀드-자펀드 방식의 경우 정부가 모펀드에 출자하고 모펀드가 다시 민간 운용사가 결성한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투자방식이며, 회수재원의 재투자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가능함.

## 나. 검토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2025년 청산된 21개의 자펀드 중 18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펀드별 투자성과 등을 점검하여 출자 및 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펀드 출자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투자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화·관광·스포츠 등 소관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문화 분야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006년)을 시작으로 '영화계정'(2010년), 분야 제한 없이 대형 콘텐츠 IP에 투자하는 '콘텐츠 전략펀드'(2024년)), 해외 투자자 매칭 방식의 '글로벌 리그 펀드'(2025년)로 확대되었으며, 관광계정과 스포츠계정은 2015년 각각 신설되어 관광·스포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해 왔음.

이 중 2021~2025년 청산 실적이 있는 펀드는 운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의 운용성과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청산된 자펀드의 현황을 보면, 총 21개의 자펀드가 청산되었으며 이 중 문화산업·제작초기 및 게임 분야의 총 3개의 자펀드를 제외한 18개의 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음.

특히,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분야의 자펀드의 경우, 정부 출자금액 70억원 중 회수금액은 5억 4,600만원에 그쳐 64억 5,400만원의 손실(손실률 △92.2%)이 발생하였음.

[2021~2025년 청산된 자펀드별 평가손익 현황]

(단위: 년, 억원)

| 계정 | 분야 | 자펀드명 | 운용기간 | 정부 출자액 | | | | |
|---|---|---|---|---|---|---|---|---|
| | | | | 출자금액 (a) | 회수금액 (b) | 청산연도 | 회수손익 (b-a) | 수익률 [(b-a)/a] |
| 문화 |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 **OOOOO** | **8** | **70** | **5.46** | **2025** | **△64.54** | **△92.2%** |
| | 드라마 | OOOOO | 5 | 105 | 26.01 | 2024 | △78.99 | △75.2% |
| | 제작초기 | OOOOO | 9 | 140 | 47.97 | 2023 | △92.03 | △65.7% |
| | 글로벌콘텐츠 | OOOOO | 7 | 400 | 140.65 | 2023 | △259.35 | △64.8% |
| | 문화산업 | OOOOO | 7 | 44 | 18.48 | 2022 | △25.52 | △58.0% |
| | 게임 | OOOOO | 7 | 70 | 33.49 | 2021 | △36.51 | △52.2% |
| | 문화산업 | OOOOO | 7 | 51 | 27.13 | 2022 | △23.87 | △46.8% |

| | | | | | | | | |
|---|---|---|---|---|---|---|---|---|
| | CG/3D | OOOOO | 7 | 50 | 29.55 | 2022 | △20.45 | △40.9% |
| | 문화산업투자 KVF결성목적 | OOOOO | 5 | 1 | 0.64 | 2021 | △0.36 | △36.0% |
| |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 OOOOO | 7 | 30 | 19.93 | 2023 | △10.07 | △33.6% |
| | 콘텐츠영세기업 | OOOOO | 8 | 100 | 69.4 | 2025 | △30.6 | △30.6% |
| | 방송드라마 | OOOOO | 5 | 72 | 50.31 | 2023 | △21.69 | △30.1% |
| | 제작초기 | OOOOO | 7 | 140 | 100.91 | 2024 | △39.09 | △27.9% |
| | 융합콘텐츠 | OOOOO | 5 | 100 | 72.35 | 2025 | △27.65 | △27.7% |
| | 방송영상 | OOOOO | 7 | 150 | 110.05 | 2025 | △39.95 | △26.6% |
| | 공연예술 | OOOOO | 5 | 100 | 83.85 | 2025 | △16.15 | △16.2% |
| | 공연예술 | OOOOO | 7 | 100 | 95.26 | 2021 | △4.74 | △4.7% |
| | 문화산업 | OOOOO | 5 | 120 | 133.6 | 2023 | 13.6 | 11.3% |
| | 제작초기 | OOOOO | 7 | 140 | 172.57 | 2021 | 32.57 | 23.3% |
| | 게임 | OOOOO | 7 | 200 | 2,626.24 | 2024 | 2,426.24 | 1,213.1% |
| 영화 | 한국영화 | OOOOO | 5 | 140 | 115.74 | 2023 | △24.26 | △17.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제작초기・드라마 등 민간투자가 부족한 투자 소외 분야에 정책적으로 투자하였으나, 문화・영화 산업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한 데다, 특히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펀드의 경우 2015년 12월 결성되어 투자기간(2016~2020년) 중 한한령 및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의 영향까지 더해져 수익률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정책펀드의 목적은 단순히 투자 소외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으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책펀드 투자가 해당 분야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 수익성이 존재함을 시장에 보여줄 기준점(benchmark)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이 대부분의 펀드가 손실을 기록할 경우 오히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도 존재함.

또한 최근 신규 정책펀드 정책 수립 시의 시장여건・성장전망 및 수익성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검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량적・객관적인 분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장기 투자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수의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출자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성과와 수익성을 점검하여 추가 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신규 펀드 조성 시에는 투자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4)]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펀드는 자펀드의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추가 유예기간 부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사 선정단계에서 결성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자펀드 결성 현황을 보면, 자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 선정 이후 최초 결성시한(3개월) 내 자펀드가 결성된 경우는 총 20개의 결성 펀드 중에 11개(55%)에 그쳤으며, 7개(35%)는 2차 결성시한(3~6개월)에 결성되었고, 2개(10%)는 추가 유예기간 이후에야 결성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

| 구 분 | | 정부 출자액 | 자펀드 조성 규모 | 선정 운용사 | 펀드 결성수 (비율) (a) | 운용사 선정 후 펀드결성기간 | | | | | |
|---|---|---|---|---|---|---|---|---|---|---|---|
| | | | | | | 1차 결성시한 (3개월 이내) | | 2차 결성시한 (3개월 초과~6개월) | | 추가 유예기간 (6개월 초과) | |
| | | | | | | 펀드 수(b) | 비중 (b/a) | 펀드 수(c) | 비중 (c/a) | 펀드 수(d) | 비중 (d/a) |
| 모태펀드 (문화) | 2023 | 2,100 | 4,286 | 15 | 15(100) | 6 | 40 | 6 | 40 | 3 | 20 |
| | 2024 | 3,500 | 6,791 | 15 | 15(100) | 6 | 40 | 6 | 40 | 3 | 20 |
| | **2025** | **3,550** | **5,168** | **15** | **12(75)** | **4** | **33** | **6** | **50** | **2** | **17** |
| 모태펀드 (영화) | 2023 | 250 | 530.4 | 3 | 3(100) | 3 | 100 | - | - | - | - |
| | 2024 | 325 | 653 | 2 | 2(100) | 2 | 100 | - | - | - | - |
| | **2025** | **598** | **1,018.1** | **4** | **4(100)** | **4** | **100** | - | - | - | - |
| 콘텐츠 전략펀드 | 2024 | 450 | 2,590 | 5 | 5 | 3 | 60 | 2 | 40 | - | - |
| | **2025** | 150 | - | 1 | - | - | - | - | - | - | - |
| 글로벌 리그펀드 | **2025** | **400** | - | **2** | - | - | - | - | - | - | - |

4) 문화체육관광부는 펀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분야(장르) 제한 완화, 수익률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한 출자사업 평가 감점제도 도입('23~), 민간 재무적 출자자의 지분투자 참여 확대를 위한 가점 부여('23~)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단위: 억원, 개, %)

| 구 분 | | 정부 출자액 | 자펀드 조성 규모 | 선정 운용사 | 펀드 결성수 (비율) (a) | 운용사 선정 후 펀드결성기간 | | | | | |
|---|---|---|---|---|---|---|---|---|---|---|---|
| | | | | | | 1차 결성시한 (3개월 이내) | | 2차 결성시한 (3개월 초과~6개월) | | 추가 유예기간 (6개월 초과) | |
| | | | | | | 펀드 수(b) | 비중 (b/a) | 펀드 수(c) | 비중 (c/a) | 펀드 수(d) | 비중 (d/a) |
| 모태펀드 (스포츠) | 2023 | 175 | 264 | 3 | 3(100) | 1 | 33 | 2 | 67 | - | - |
| | 2024 | 374.5 | 541.5 | 4 | 4(100) | 2 | 50 | 2 | 50 | - | - |
| | **2025** | **350** | **500.2** | **4** | **4(100)** | **3** | **75** | **1** | **25** | **-** | **-** |
| 모태펀드 (관광) | 2023 | 300 | 430 | 2 | 2(100) | - | - | 2 | 100 | - | - |
| | 2024 | 350 | 540.8 | 2 | 2(100) | - | - | 2 | 100 | - | - |
| | **2025** | **450** | **-** | **2** | **-** | **-** | **-** | **-** | **-** | **-** | **-** |
| **2025** | | **5,348** | **6,686.3** | **27** | **20(74)** | **11** | **55** | **7** | **35** | **2** | **10** |

주 1) 2025년 12월말 기준
2) 정부출자액 = 예산액 + 회수액
3) 선정 운용사 27개 중 7개의 경우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운용사 선정 이후 자펀드 결성이 지연될 시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또한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제 투자수요와 시장여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였는지,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 역량을 적절히 평가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기준으로는 2025년 선정 운용사의 자펀드가 모두 결성되었고,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 비율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1차 결성시한 내 자펀드 결성 비율이 절반 수준(55%)에 그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등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시기를 늦추어 정책효과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사 선정단계에서 민간출자자 모집 및 자펀드 결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유예기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하여 정책자금의 시장 공급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5)]

5) 또한 콘텐츠 전략펀드(2025.12.29.)·글로벌 리그펀드(2025.10.31.) 및 모태펀드 관광계정(2025.11.26.)의 경우 운용사 선정 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운용사 공고 및 선정과정에서 추가 관리가 필요해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의 경우 운용사 조기 선정을 위해 전년 대비 공고 일정을 앞당겨 운영하였다는 설명임.
- 1차 정시 공고 : ('25) '25.2.3 → ('26) '26.1.23.

**셋째, 존속기간이 만료된 펀드 51개 중 청산이 완료된 펀드는 10개에 불과하므로, 정책펀드의 목적이 투자뿐 아니라 회수 재원의 재순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 실적뿐 아니라 청산·회수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2014~2025년 결성된 자펀드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펀드는 문화계정(36개)·영화계정(8개)·관광계정(2개) 및 스포츠계정(5개)에서 총 51개(결성액 1조 8,845억원)에 달하나, 이 중 실제 청산이 완료된 펀드는 총 10개에 불과함.[6)]

[2014~2025년 결성된 자펀드 중 존속기간 만료 및 청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계정명 | 존속기간 만료 자펀드 수 | 펀드결성액 | 청산 펀드 수 | | 미청산 사유 |
|---|---|---|---|---|---|
| | | | | 기간 연장 펀드 수 | |
| 문화 | 36 | 774,050 | 9 | 8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SPC 청산을 통한 회수 예정 |
| 영화 | 8 | 187,700 | 1 | 1 | |
| 관광 | 2 | 42,000 | - | - | |
| 스포츠 | 5 | 84,500 | - | - | |
| **합 계** | **51** | **1,088,250** | **10** | **9**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잔여자산 매도 지연·IPO 추진 및 SPC 청산 지연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기간 연장을 거치는 등 상당수 펀드의 청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정책펀드는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재투자를 위한 출자금 회수 기능도 수행하는 만큼, 청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성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기에 펀드가 청산되고 재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잔여자산 매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나,[7)] 존속기간 만료 펀드의 상당수가 장기간 미청산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관리체계가 청산 지연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

- 2차 정시 공고 : ('25) '25.3.24. → ('26) '26.3.23.

6) 청산된 펀드 10개 중 9개 펀드의 경우 기간 연장을 거친 후 청산되었음.

7)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존속기간 종료까지 미처분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합원 동의를 거쳐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모태펀드의 경우 자펀드의 잔여자산 및 매각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청산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존속기간 만료 후 미청산 펀드에 대한 회수·청산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특히 장기간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로부터 청산지연 사유·대응조치 내용 및 회수계획 등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청산 지연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 2.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 가. 개 요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전통종교문화 체험·종교 유적지의 역사적 보존 및 종교 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34억 4,300만원 중 327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6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5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종교문화시설건립 | 38,914 | 38,914 | - | △5,471 | 33,443 | 32,744 | - | 699 | 40,70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종교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종교문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10·27법난 기념관 건립’(대한불교조계종) 사업·‘목포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전남 목포) 사업 및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전북 익산) 사업 등 총 38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한 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9)]

8) 일반회계-종교문화시설건립(1131-302)(종무실)

9)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을 보조사업자로 민간보조(국비 100%)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외 내역사업 37개의 경우 자치단체보조(국비 30%이내 정률)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여건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단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분할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2025년의 경우 교부현액 495억 4,800만원 중 247억 5,5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0.5%에 그쳤음.[10)]

[2021~2025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 | | | 대한불교조계종·지방자치단체 | | | | | | |
|---|---|---|---|---|---|---|---|---|---|---|---|
| | 예산 | | 이·전용 등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A) | 실집행액 (B)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 2021 | 12,411 | 12,411 | - | 10,967 | 10,967 | 10,619 | 21,586 | 14,866 | 6,667 | 53 | 68.9 |
| 2022 | 9,160 | 9,160 | - | 6,968 | 6,968 | 6,667 | 13,635 | 8,432 | 5,040 | 163 | 61.8 |
| 2023 | 26,026 | 26,026 | △3,750 | 19,440 | 19,440 | 5,040 | 24,480 | 12,853 | 11,389 | 238 | 52.5 |
| 2024 | 33,487 | 33,487 | △2,710 | 29,777 | 29,777 | 11,389 | 41,166 | 20,084 | 20,793 | 289 | 48.8 |
| 2025 | 38.914 | 38,914 | △5,471 | 32,744 | 32,744 | 16,804 | **49,548** | **24,755** | 24,148 | 645 | **50.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2025년도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 목-세목 | | 세부사업 명 | 목-세목 | |
| 자체이용 ('25.6.12.) | 종교문화 시설건립 (1131-302) | 330-03 | 1,773 | 재해복구비(관광) (4131-300) | 330-03 | 산불 피해복구비 |
| 자체이용 ('25.6.12.) | | | 492 | 재해복구비(체육) (5131-302) | 330-03 | |
| 내역변경 ('25.6.12.) | | | 40 | 재해복구비(종교) (1131-304) | 330-03 | |
| 내역변경 ('25.7.30.) | | | 2,827 | 재해복구비(종교) (1131-304) | 330-03 | |
| 자체이용 ('25.8.29.) | | | 339 | 재해복구비(관광) (4131-300) | 330-03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이 50% 미만인 보조사업(18개)을 보면, 인허가 지연·지방비 미확보·보조사업자 포기 및 사업 폐지 등 다양한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 중 14개 사업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의해 지원한 사업임에도 사전 행정절차 지연·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및 추진여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미확보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 50% 미만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 보조사업명<br>(사업기간) | 예산액<br>(A) | 교부액 | 전년도<br>이월액 | 교부<br>현액(B) | 실집행액<br>(C) | 실집행률<br>(C/A) | 실집행률<br>(C/B)<br>(교부횟수) | 국회<br>신규 | 집행부진 사유 |
|---|---|---|---|---|---|---|---|---|---|
| 울릉도 회당<br>명상문화 체험관<br>(2023~2025) | 700 | - | 1,200 | 1,200 | - | - | -<br>(-) | X | **사업폐지** |
| 구례 사성암<br>불교문화체험관<br>(2023~2026) | **300** | **300** | 400 | 700 | - | - | **-**<br>**(2)** | O | 문화재<br>현상변경허가 등<br>사전행정절차 이행 |
| 제주 법화사<br>전통문화체험관<br>(2025~2026) | **1,200** | **1,200** | 300 | 1,500 | - | - | **-**<br>**(2)** | O | |
| 양평 기독교문화<br>체험관<br>(2024~2027) | 1,600 | 20 | 100 | 120 | - | - | -<br>(1) | X | 건축 인·허가<br>변경 등<br>사전행정절차 이행 |
| 경북 구미 도리사<br>시민치유선센터<br>(2024~2025) | **300** | **300** | 583 | 883 | - | - | **-**<br>**(2)** | X | 문화재<br>현상변경허가 등<br>사전행정절차 이행 |
| 경남 창원 원흥사<br>전통문화체험관<br>(2023~2028) | 2,423 | - | 255 | 255 | - | - | -<br>(-) | X | **사업폐지**<br>**(지방비 미확보)** |
| 천도교<br>문화역사관<br>(2024~2026) | 713 | - | - | - | - | - | -<br>(-) | X | **사업중지**<br>**(사업주체 협의 지연)** |
| 구미 기독교<br>역사문화관<br>(2024~2026) | 855 | 600 | 45 | 645 | - | - | -<br>(-) | O | 사업폐지<br>(보조사업자 포기) |

| | | | | | | | | | |
|---|---|---|---|---|---|---|---|---|---|
| 속초 신흥사 설악명상문화센터 (2025~2027) | 500 | 500 | - | 500 | - | - | - (2) | X | 설계 지연 |
| 군산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2024~2026) | 1,425 | 1,425 | 23 | 1,448 | 23 | 1.6 | 1.6 (2) | X | 용도변경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
|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2024~2026) | 2,350 | 2,350 | 650 | 3,000 | 96 | 4.1 | 3.2 (2) | X | 불법 건축물 양성화 등 사전행정절차 |
| 경북 청도 용천사 종교문화체험관 (2024~2026) | 463 | 463 | 20 | 483 | 19 | 4.1 | 3.9 (2) | X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 예산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2025~2026) | 600 | 600 | - | 600 | 58 | 9.7 | 9.7 (2) | X | |
| 청주 능인정사 MZ복합문화센터 (2024~2026) | 213 | 213 | 24 | 237 | 24 | 11.3 | 10.1 (2) | X | 설계변경 (건축규모 축소) |
|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2024~2027) | 1,230 | 1,230 | 39 | 1,269 | 153 | 12.4 | 12.1 (2) | O |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총사업비 증액) |
| 담양 보리암 국제명상센터 (2024~2026) | 1,515 | 1,515 | - | 1,515 | 300 | 19.8 | 19.8 (2) | X | 사전행정절차 이행 |
|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2022~2026) | 1,600 | 1,600 | 701 | 2,301 | 656 | 41.0 | 28.5 (2) | X | BF 심사, 국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
| 포항 보경사 전통문화체험관 (2024~2026) | 1,026 | 1,026 | 76 | 1,102 | 496 | 48.3 | 45.0 (2) | X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주) BF(Barrier Free) 심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집행부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종교문화시설 건립 신청요건 강화, 주기적 현장점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자 대상 사업추진 독려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임.

동 사업은 사업 지연 및 사업 폐지 등 집행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여 실제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11)]

또한 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단계에 있어서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집행액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18개) 중 예산이 전액 교부된 13개 사업은 모두 2회에 걸쳐 보조금이 분할 교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음.[12)]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교부 단계에서도 사업별 추진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시정요구를 의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집행부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1)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재정경제부, 2025.9.) (p. 1109)
행정절차 지연·설계변경 및 재원 확보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정책목표 달성에 미치는 효과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관 건립 등 3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사업 감축 필요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시정요구 사항]

| 구분 | |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
| 2022 | 시정요구명 | (63)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
| | 지적사항 | ○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7개 내역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br>- '22년 불용액은 21억 9,200만원이고,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61.8%로 저조함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방식을 검토하고, 계속된 지적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 조치결과 | ○ 종무실 소관 국고보조금 운용지침 개정 통해 제도개선 완료<br>- ①기본계획 수립 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사업 우선 지원을 통해 사전준비 강화, ②자부담률 하한(10% 이상) 신설, ③동일 지역에 동일 종교의 당해연도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1개만 인정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예산편성 되도록 '종무실 보조사업 운용지침' 개정 및 배포 ('24.1.26)<br>○ 집행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4.1~)<br>- 매월 집행률 부진한 현장점검 실시 및 격월마다 집행률 점검 회의 개최 통해 실집행률 밀착관리<br>○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29일 |

# 3. 만화산업 육성 사업: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주의 필요

## 가. 개 요

**‘만화산업 육성’** 사업은 만화·웹툰콘텐츠 창작지원·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한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5억 2,400만원 중 295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5년도 만화산업 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74,472 | 74,472 | - | △35 | 74,437 | 74,379 | - | 58 | 89,437 |
| 만화산업 육성 | 29,524 | 29,524 | - | - | 29,524 | 29,505 | - | 19 | 31,036 |
| 만화·웹툰 해외진출 지원 | 13,563 | 13,563 | - | - | 13,563 | 13,563 | - | - | 11,649 |
| 만화 해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 1,800 | 1,800 | - | - | 1,800 | 1,8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총 5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만화·웹툰 해외진출 지원’ 사업(내내역 사업)은 ‘비즈니스 행사 개최 및 해외마켓 참가 지원’·‘만화 해외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및 ‘번역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만화 해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2023~2025년)은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만화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 만화(웹툰)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국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비·운영비·인건비·마케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은 구축(1년차)·확장(2년차)·성숙(3년차) 단계에 걸쳐 최대 3년간 이루어지며, 매년 실시하는 연장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차년도 지원 없이 협약이 종료됨.

13) 일반회계-영상콘텐츠산업육성(1232-300)(콘텐츠정책국)

## 나. 검토의견

**첫째, 만화·웹툰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은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예산의 80% 이상이 당초 사업 목적·내용과 상이한 홍보·마케팅 등에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유사사업과의 중복 우려도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글로벌 만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해외 만화·웹툰 플랫폼 5개사(2023년 선정, 지원 3년차)를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 18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실제 2025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은 6억 8,000만원으로 축소된 반면, 해외 진출 만화·웹툰 플랫폼의 국내·외 프로모션 지원 사업이 14억 6,000만원 규모로 신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됨.

[2025년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편성 근거 및 추진 계획]

| 예산안 편성근거 | 보조사업 추진계획 |
|---|---|
| ○ 만화 해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18억원)<br>- 5개 플랫폼×3억 6,000만원<br>(2023년 선정, 지원 3년차) | ○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6억 8,000만원)<br>- 2개 플랫폼×3억 4,000만원 |
| | ○ **해외 진출 만화/웹툰 플랫폼 국내·외 프로모션 지원**<br>(신규, 14억 6,000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이 6억 8,000만원으로 축소된 사유는 지원 대상 기업의 연장평가 탈락 등에 따라 2025년 예산 편성시 보다 실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 상의 지원 대상 기업 수가 축소(5개사→2개사)되었기 때문임.

실제 2025년 사업 추진 결과, 2개사 중 1개사의 경우에도 필요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1개사에 대하여만 지원(3억 3,500만원)되었고, 나머지 1개사 지원 예산은 불용 처리되었음.

[2025년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사업시행주체(한국콘텐츠진흥원) | | | | 비 고 |
|---|---|---|---|---|---|
| | 교부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
| 플랫폼 지원 | 675 | 335 | - | 340 | 2025년 계획한 2개사 중 1개사의 경우 서류 미제출로 선정 취소 |
| 프로모션 지원 | 1,125 | 1,125 | - | - | |
| 합 계 | 1,800 | 1,460 | - | 340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말 실시된 연장평가 결과 2개사가 탈락하고 1개사가 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2025년에는 지원 가능한 플랫폼이 2개사만 남게 되어, 기 지원한 해외플랫폼 연재작의 국내·외 행사 참여 및 프로모션 지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함.[14]

그러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은 해외 시장 내 한국 만화·웹툰의 유통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미 제작된 콘텐츠 또는 구축된 플랫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인 사업과는 목적 및 내용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일 내역사업 내에 프로모션을 위한 내내역 사업인 '만화·웹툰 해외 행사 개최 및 참가·전시 지원' 사업(2025년 예산 32억 1,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음.

14) [만화·웹툰 해외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선정 플랫폼 | 지원금 | | | 지원 중단 사유 |
|---|---|---|---|---|
| | 2023 | 2024 | 2025 | |
| 주식회사 툰스퀘어 | 520 | 340 | - | 연장평가 불합격 |
| ㈜트루라이트코리아 | 520 | 340 | 335 | |
| 주식회사 딜리헙 | 520 | 340 | - | 2025년 지원 대상이었으나, 서류 미제출로 선정 취소 |
| 프라이데이 | 500 | 340 | - | 선정 포기 |
| ㈜아이디어콘서트 | 520 | 340 | - | 연장평가 불합격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실제 2025년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동 사업에서 한국문화원 연계 만화웹툰 전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만화웹툰 해외 행사 개최 및 참가·전시 지원’ 사업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국회 예산 심사 시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기존 프로모션 사업의 확대에 활용된 측면이 있음.

[2025년도 만화·웹툰 프로모션 관련 사업 추진 내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내내역 사업명 | 만화·웹툰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 만화웹툰 해외 행사 개최 및 참가·전시 지원 |
|---|---|---|
| 추진 내용 | ○ 해외 진출/만화 플랫폼 국내·외 프로모션 지원<br>- 월드 웹툰 페스티벌 프로모션 등<br><br>- **한국문화원 연계 만화 웹툰 전시** 프로모션 등 | ○ 글로벌 행사 개최 (K-Story&Comics)<br>- 미국, 일본, 대만, 태국<br><br>○ 해외 행사 참가 지원<br>- 어메이징 페스티벌 (프랑스),<br>프랑크푸르트 북페어 (독일)<br><br>○ **한국문화원 연계 만화웹툰 전시** 개최<br>- 이집트, 헝가리, 캐나다, 중국, 일본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를 이유로 예산의 80% 이상이 당초 사업 목적·내용과 상이한 홍보·마케팅 등에 집행되었고,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되거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만화산업 육성 사업은 ‘지원 작품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성과평가 및 그 환류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만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만화 및 웹툰 창작 지원·관련 기업 육성 지원·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만화산업 콘텐츠 지원 작품 수’로 설정되어있음.

[만화산업 육성 사업 성과지표]

(단위: 개, %)

| 내역사업명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산식 | 2025 | | |
|---|---|---|---|---|---|
| | | | 목표 | 실적 | 달성도 |
| 만화산업 육성 | 만화산업 콘텐츠 지원 작품 수(개) | 만화산업 콘텐츠 지원 작품 수 합산 | 250 | 306 | 122.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작품 수’는 지원금이 투입된 작품 수를 집계한 수치에 해당할 뿐, 지원 작품의 사업화 성과·매출 발생·해외 진출 등 만화산업 육성 효과는 반영되지 않으며, 특히 예산의 투입 규모나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면 증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실제 성과 개선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작품 수와 같은 단순 투입지표가 아닌 지원 작품의 사업화 실적·지원 기업의 매출 증가율 등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 낙찰차액 등을 활용한 추가 사업 추진 문제

## 가. 개 요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신기술 기반의 공공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5)]

[2025년도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도 | | | | | | | | 2025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 | 104,825 | 104,825 | - | - | 104,825 | 104,800 | - | 25 | 91,766 |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 20,222 | 20,222 | - | - | 20,222 | 20,222 | - | - | 10,808 |
|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 12,500 | 12,500 | - | - | 12,500 | 12,5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설립한 스튜디오큐브(대전) 내 ICVFX(In-Camera VFX) 기반 공공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 예산 250억원(2024~2025년, 2개년) 규모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방식(국비 100%)으로 수행됨.[16)17)]

15) 일반회계-방송영상콘텐츠산업기반조성(1432-300)(콘텐츠미디어산업관)

16) ICVFX(In-Camera VFX)는 촬영 현장에서 LED 스크린 등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이를 실제 피사체와 함께 촬영하여 시각효과를 실시간으로 영상에 반영하는 기술을 의미함.

17) 스튜디오큐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설립한 공공 제작 인프라로, 국내 최대 규모인 3,755㎡ (1,136평) 스튜디오를 비롯한 중대형 스튜디오 및 4면 크로마키가 설치된 특수효과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음.

## 나. 검토의견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구축 완료 이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야외촬영 연구용역 등 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잔여 사업비를 통한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실집행 현황을 보면, 교부현액 247억 9,100만원 중 188억 5,7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76.1%에 그쳤으며, 61억 1,6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한국콘텐츠진흥원)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 (A)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본예산 | 추경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 | | |
| 12,500 | 12,500 | 12,500 | 12,500 | 12,291 | **24,791** | **18,857** | 12,500 | 6,384 | **6,116** | - | **76.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는 2025년 8월 구축 및 검수평가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직선구간 LED Wall 확장・실링 LED 일체화・바닥 평탄화・트래킹 시스템 보완 및 촬영장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 현황]

| 구 분 | 사업 내용 |
|---|---|
| 본사업 추진경과 | ('24.9.24.) 종합계획수립 완료<br>('24.9.30.) 종합계획수립 **원가계산(178.9억원) 완료**<br>('24.12.10.) 조달청 입찰공고<br>('25.3.14.) 구축사업자 계약체결 **(MBCC&I, 159.4억원)**<br>**('25.8.11.) VP스튜디오 구축완료**<br>**('25.8.21.) VP스튜디오 구축 검수평가 완료**<br>('25.12.3.) VP스튜디오 개관식<br>('25.12.19.) VP스튜디오 시범운영 완료 |
| **추가구축 추진경과** | ('25.3.20.) 추가 구축사업 1차 자문회의<br>('25.11.25.) 추가 구축사업 2차 자문회의<br>· LED WALL 증설(J자형→U자형), 스테빌라이저 헤드 도입 등<br>('25.11.27.) 문체부 추가구축 계획보고 [직선구간 LED 증설 등]<br>('25.12.18.)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업이월 및 LED 증설 등]<br>('26.2.2.) 위탁운영사(XON) 추가구축 검토결과 제출<br>· LED 증설(J자형→U자형), 바닥평탄화 등 검토(사업비,사업기간)<br>('26.2.6.) 추가 구축사업 3차 자문회의(사업추진 적정의견)<br>('26.3.25.) 추가 구축사업 4차 자문회의<br>· LED 등 물품공급협약 및 실링LED 추가 확대검토 의견제시 |
| 향후 계획 | ('26.4.24.) 추가구축 계획수립(필요성 및 발주도서 작성 등) 용역완료<br>('26.5.15.) 원가계산 완료<br>('26.5.20.) 조달구매 요청<br>('26.7.30.) 기술협상 및 추가구축 사업자 계약체결<br>('26.8.1. ~ 11.30.) (4개월) 추가 구축사업 진행<br>('26.12.20) 검수평가 및 대금지급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산상 한계로 반영하지 못했던 U자형 LED 등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임.[18)]

18)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스튜디오를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운영사와 대관사(중소 제작사)*로부터 "이미 구축된 U자형 프레임에 LED를 추가 설치하고 촬영 필수 장비를 보완한다면, 스튜디오의 활용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현장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임.
- 전문운영사 : 바닥평탄화, 카메라 진동방지 헤드, 달리시스템(카메라 촬영거치장비) 등 보유시 중소제작사 장비임차 비용 절감 및 최적화된 제작환경 지원 가능
- 대관사(중소제작사) : 기 구축된 구조물을 활용하여 LED WALL을 U자형으로 확장할 경우 멀티캠 촬영등 다양한 연출·기획 가능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은 원칙적으로 불용하여야 함에도, 잔여 사업비 61억 2,000만원 전액을 추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19)]

또한 그 내용도 시설 보완을 넘어 위탁 운영사업과 야외촬영장 기본계획 연구 등 후속 운영·연구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구축사업의 범위를 넘어 사업 내용이 확대된 측면이 있음.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사업 구분 | | 내용 | 사업비 |
|---|---|---|---|
| 추가 구축 (진행중) | • 직선구간 LED WALL 확장 등 | • 기존 구축 구조물 활용 LED WALL U자형 확장 및 실링 LED 일체화 | 34.8 |
| | • 스튜디오 바닥평탄화 | • 바닥 편차 개선 | 3.4 |
| | • 트래킹 시스템 보완 | • Inside-Out 트래킹 시스템(장비추가)<br>• EZTrack(장비 추가) | 1.2 |
| | • 촬영운영장비 추가 설치 | • 스테빌라이저(진동방지) 헤드, 달리시스템(카메라 촬영 거치장비), 트라이팟, 접이식 이동데크, 조명플래그 | 4.9 |
| | • 기타 보완사항 | • 사이드LED 이동시스템, 데이터관리 스토리지, 스튜디오 설비 보완 | 1.3 |
| | 소계 | | 45.6 |
| **• VP스튜디오 위탁운영사업** | | • 2차년도 위탁운영 사업비<br>[1차: 25.7.15~12.31 , 2차: 26.1.1~12.31] | 6.1 |
| **• 야외촬영장 기본계획 연구** | | • 스튜디오큐브(VP스튜디오 포함) 연계 야외촬영장 구축 필요 및 타당성 연구 | 3 |
| **기타** | | •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등 운영비 | 6.5 |
| 합계 (2026년 이월액) | | | **6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특히 ‘VP스튜디오 위탁운영사업(6억 1,000만원)’의 경우 2025년 예산으로 2026년 1월~12월(2차) 위탁운영 계약분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국가재정법」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야외촬영장 기본계획 연구(3억원)’의 경우 별도의 야외촬영장 구축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로서 당초 사업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조금법」제22조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20)21)]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유사한 대규모 구축사업 추진 시 시설기능 및 소요예산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사업비가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범위를 넘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22)]

---

20)「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문화체육관광부는 ‘VP스튜디오 위탁운영사업’의 경우 버추얼 스튜디오는 구축과 기술 안정화·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구축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정상 가동을 위해 불가피한 구축 부대경비에 해당한다는 설명임. 또한 ‘야외촬영장 기본계획 연구’의 경우 버추얼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실내 스튜디오와 지역 로케이션(야외 배경·로케이션 데이터·실경촬영 및 후반작업 등)을 연계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로, 당초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임.

22)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향후 확장 가능성 및 가격 변동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는 보다 세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이월 및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5. 창작역량 강화 사업: 예술활동 증명 제도 처리지연 개선 필요

## 가. 개 요

**‘창작역량 강화’**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및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65억 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3)]

[2025년도 창작역량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82,770 | 82,770 | - | △20 | 82,750 | 82,678 | - | 72 | 89,722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78,507 | 78,507 | - | △20 | 78,487 | 78,415 | - | 72 | 80,292 |
| 창작역량 강화 | 66,503 | 66,503 | - | - | 66,503 | 66,503 | - | - | 67,179 |
| 예술활동 증명 | 1,400 | 1,400 | - | - | 1,400 | 1,400 | - | - | 3,47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 내의 **‘예술활동 증명’** 사업은 예술활동 증명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심의 비용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4)]

---

23) 일반회계-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예술정책관)

24)「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검토의견

**예술활동 증명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각종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초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최근 신청 증가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정 인력 및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각종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예술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예술활동 증명 처리 현황을 보면 신청건수는 2024년 5만 322건에서 2025년 6만 6,45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4월말 기준 이미 5만 7,57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말 기준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7주로 나타남.

[예술활동 증명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신청건수 | 처리건수 | 월평균 신청건수 | 월평균 처리건수 | 평균 처리 소요기간 | 담당 인력 |
|---|---|---|---|---|---|---|
| 2024 | 50,322 | 102,472 | 4,194 | 8,539 | 11주 | 10명 |
| 2025 | 66,456 | 130,649 | 5,538 | 10,887 | 12주 | 9명 |
| 2026. 4월말 | 57,579 | 92,346 | 14,394 | 23,086 | 7주 | 10명 |

주 1) 처리건수: 행정심의-보완검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건수 합계
2) 담당인력: 연말 기준 재직자(정규직, 계약직 합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하였으나, 인력·시스템 등 운영기반 부족과 계약직 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로 심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임.[25)]

---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5)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유효기간 연장 조치 종료에 따른 재신청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2024년부터 정규인력 확충·시스템 개선 및 지역 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단기 계약직 인력을 상시 서류 검토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였으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신청이 급증하여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임.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예술인 심리상담 및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등 다수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처리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후속 지원사업 참여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증가 추세를 고려한 적정 인력 및 심사체계를 확보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처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6.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아트코리아랩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자부담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제작, 시연·유통, 창업·성장의 예술활동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 센터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6]

[2025년도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예술의 산업화 추진 | 26,675 | 26,675 | - | - | 26,675 | 26,662 | - | 13 | 28,588 |
|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11,000 | 11,000 | - | - | 11,000 | 11,000 | - | - | 9,6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예술 및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공유오피스·회의실·제작스튜디오·편집실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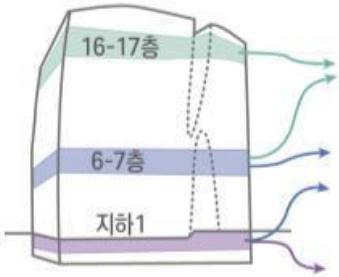
‘아트코리아랩’ 센터 건물은 서울 종로구 내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소유 건물의 일부 층을 장기 임차(2022.11.~2032.10.)하여 운영 중임.

26) 일반회계-예술의 산업화 추진(1633-306)(예술정책관)

[아트코리아랩 센터 주요 현황]

○ (시설위치)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5개 층, (전용 1,213평 / 연면적 2,390평)

○ (주요 기능 및 공간구성)




| 주요 기능 | 주요 공간구성 |
|---|---|
| 기업 입주 | · 예술기업의 입주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 비즈니스 지원 | · 비즈센터 (컨설팅 분야 : 법률·세무·마케팅·기술 등) |
| 교육·훈련 | · 강의실, 미디어교육실, 가변형 행사공간 등 |
| 네트워킹 | · 네트워킹 라운지, 쇼룸, 커뮤니티룸 등 |
| 창·제작 스튜디오 | · 이머시브사운드 스튜디오, 키네틱룸, 영상·편집실 등 |
| 시연·유통 | · 블랙박스형 시연 공간 (창·제작 시연, 시제품 검증 등) |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건물을 장기 임차하여 매년 40억원 수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공간 및 장비 이용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자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 따른 집행액 중 아트코리아랩 건물 운영비용은 임대료 및 관리비로 구성되며, 연간 약 40억 내외의 비용이 건물 운영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아트코리아랩 건물 운영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집행액 (A) | 건물 운영비용 (B) | | | 전체 사업비 재비 건물 운영비 비중 (B/A) |
|---|---|---|---|---|---|
| | | | 임대료 | 관리비 | |
| 2022. 11.~12. | 14,328 | **638** | 563 | 75 | 4.5 |
| 2023 | 9,653 | **3,828** | 3,380 | 448 | 39.7 |
| 2024 | 11,512 | **3,923** | 3,464 | 459 | 34.1 |
| 2025 | 10,905 | **4,021** | 3,551 | 470 | 36.9 |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은 시연장・제작 스튜디오・편집실 및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창・제작 지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예술인・예술단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기업 및 비입주기업(멤버십)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음.

2025년도의 경우 공유오피스 3,930건・회의실 2,125건・편집실 678건 등 총 8,515건의 시설 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2025년도 아트코리아랩 대관시설 이용 현황]

(단위: 건)

| 이용대상 | 구 분 | 주요용도 | 이용료 | 이용가능 시설, 장비 등 | 2025년 이용건수 |
|---|---|---|---|---|---|
| 일반 | 시연장 (A, B-C, D) | 시연・전시・리허설 | 무료 | 분장실, 무대조명 및 음향 장비 등 | 170 |
| | 제작스튜디오 (키네틱, 다목적, 이머시브 사운드) | 프로토타입 제작 | | 팹랩 장비(3D 프린터, CNC 등), 촬영・입체음향 녹음 장비 등 | 190 |
| | 미디어랩 | 워크숍 | | 고사양 컴퓨터, 영상・음향 프로그램 등 | 34 |
| | 편집실 A, B | 영상・음향 편집 | | 고사양 컴퓨터, 영상・음향 프로그램 등 | 678 |
| | 미디어월 | 시연・전시 | | LED 스크린, 음향 장비 등 | 8 |
| | AKL 아고라 | 행사・포럼・워크숍 | | 전동 스크린, 음향 장비 등 | 103 |
| | 톡톡룸(커뮤니티룸) | 회의・네트워킹 | | 모니터 장비 등 | 603 |
| | 공유오피스 (36석) | 업무・네트워킹 | | 정수기, 사물함, 폰부스 등 | 3,930 |
| 입주기업, 멤버십 | 쇼룸 | 시연・전시・리허설 | | 프로젝션 맵핑, 음향 장비 등 | 28 |
| | 회의실 7-A | 회의 | | 스크린, 음향 장비 등 | 181 |
| 입주기업 | 메이커 스튜디오 | 프로토타입 제작 | | 팹랩 장비(3D 프린터, CNC 등), 환기시설 등 | 186 |
| | 프린팅 스튜디오 | 프로토타입 제작 | | 플로터 프린터, 전사 프린터 등 | 279 |
| | 회의실 16-A,B,C 17-A,B | 회의 | | 전자칠판, 스크린, 영상회의 시스템 등 | 2,125 |
| 합 계 | | | | | 8,515 |

주) 이용대상
- 일반 : 예술인(예비예술인 및 예술관련 종사자 포함), 예비 창업자, 예술관련 교육생, 예술관련 취업준비생, 예술기업 또는 예술단체 재직자(공공기관 포함)
- 입주기업 : 입주(장기/단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기술 융합 기업 및 프로젝트팀(예비창업팀)
- 멤버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기술 융합 분야 기업 및 단체(비입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상시 입주 중인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공유오피스·회의실·스튜디오 등 모든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건물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및 예술기업의 초기 창·제작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폭넓은 예술 관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유오피스·회의실 등 일반 업무공간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매년 40억원 내외의 건물 운영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운영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소수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 대상 및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자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부담 부과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설 이용자 특성 및 개관 이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단계적 비용 부담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입주기업 대상 관리비 부과방안 등을 중심으로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 7.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 거점별 한국미술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미술기관의 한국미술 프로젝트 운영 지원·해외 방문연구 지원 및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7)]

[2025년도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 | 46,860 | 46,860 | 17,918 | △15 | 64,763 | 54,802 | 8,174 | 1,787 | 42,661 |
| 미술진흥 | 18,328 | 18,328 | 229 | △15 | - | 18,542 | - | 864 | 12,490 |
|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 1,500 | 1,500 | - | - | 1,500 | 1,500 | - | - | 1,5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해외 미술대학·미술관과 협약을 맺어 한국미술 작품 전시 등 패키지 지원, 국내 연구자 해외 방문연구 지원, 한국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비용 등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13억 7,000만원)로 지원하고, 이 중 컨퍼런스 개최 비용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수용비·국내여비(1억 3,000만원)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27) 일반회계-미술진흥기반구축(1635-311)(예술정책관)

##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계획하였던 ‘한국 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사업 예산의 일부를 내부 조직인 시각예술디자인과 사업운영비와 보조사업 기관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예산의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또는 이용 절차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28)]

동 사업은 당초 ① 해외 미술대학·미술관·비엔날레 대상 한국미술 패키지 지원(12억원), ② 해외 방문연구 지원(1억원), ③ 한국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2억원)를 내용으로 총 15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있던 ‘한국 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사업 예산은 컨퍼런스 개최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업운영비(일반수용비·국내여비)와 예술경영지원센터(보조사업자)의 자체사업비 및 운영비로 활용되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③ ‘한국 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 ① ‘해외 미술대학·미술관·비엔날레 대상 한국미술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통합 추진하는 것이 사업 성과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지 않고 패키지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현지 컨퍼런스 방식으로 조정하여 진행하였다는 입장임.

---

2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진행하였다면, 당초 ‘한국 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사업의 예산(2억원)은 통합 추진된 현지 컨퍼런스 사업에 투입하거나, 통합 추진으로 컨퍼런스 사업의 소요예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는 당초 편성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운영비 및 예술경영지원센터(보조사업자)의 자체사업비·운영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2025년도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계획 및 추진내용]

| 예산안 편성 근거 | 2025년 당초 사업계획 (2025. 1.) | 2025년 변경 사업계획 (2025. 6.) |
|---|---|---|
| ① 해외 미술대학·미술관 비엔날레 대상 한국미술 패키지 지원 **12억원**<br>- 4건×3억원 | **(공모) 12억원**<br>① 해외 미술기관 프로젝트 지원<br>- 6건 내외 | **(공모) 10억원**<br>① 해외 미술기관 프로젝트지원<br>- 8건 내외<br>**※ 해외 컨퍼런스 통합 추진** |
| ② 국내 연구자 및 매개자 해외 방문 연구지원 **1억원**<br>- (10명×10백만원) | **(연구) 9,000만원**<br>② 국외미술관 한국 현대미술 작품 소장 현황 및 확대 방안 연구<br>- 1건×9,000만원 | **(연구) 2억 4,400만원**<br>- 국외미술관 한국 현대미술 작품 소장 현황 및 확대 방안 연구 9,000만원<br>- 한국미술의 해외진출 중장기 방안 연구 9,900만원<br>- 해외 미술품 통관 및 관세제도 관련 연구 5,500만원 |
| **③ 한국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2억원** | **(운영) 8,000만원**<br>③ 사업운영 | **(운영) 1억 2,600만원**<br>① 한국미술해외진출 지원사업 결과공유회<br>② 회계정산 모니터링 용역<br>**③ 예술경영지원센터 20주년 백서제작**<br>④ 전문가활용비, 사업 추진 홍보비, 교육, 평가 등 |
| | **(문체부) 사업운영 1.3억** | **(문체부) 사업운영 1.3억**<br>(일반수용비 0.8억, 국내여비 0.5억)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술진흥기반구축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는 내 내역사업인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8,000만원) · ‘미술생태계 기반마련’(8,000만원) 및 ‘미술정책 지원’(2,100만원) 사업에 각각 편성 목적을 달리하여 총 1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음.[29)]

이 중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내 일반수용비는 ‘한국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를 위하여, ‘미술생태계 기반마련’ 사업 내 일반수용비는 ‘케이아트 전시개최’를 위해 별도로 편성되었으므로, 시각예술디자인과의 포괄적인 정책 운영경비 성격의 지출은 그 용도에 맞게 ‘미술정책 지원’ 사업 내에서 집행했어야 함.

그러나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내 ‘한국미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 개최’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일반수용비(8,000만원)의 집행 내역을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회 사례비’,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간담회 사례비’,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자문회의 사례비’ 등 당초 편성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시각예술디자인과 소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함.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지급내역 | 지급액 |
|---|---|
| **사례비 지급 요청(2024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유사업평가 자체평가단)** | 5,800 |
| 심사위원 사례비 지급요청 | 3,450 |
| 조달수수료 납부 요청(공기순환기 구매 등 2건) | 3,319 |
| 노무 관련 자문료 지급요청 | 3,300 |
| 회계 자문료 지급요청 | 3,000 |

29) [2025년도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세부사업) 내 일반수용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 | 181 | 181 | - | △24 | 157 | 134 | 23 |
| 미술진흥 | 181 | 181 | - | △24 | 157 | 134 | 23 |
|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 80 | 80 | - | | | | |
| 미술 생태계 기반마련 (케이아트 전시개최) | 80 | 80 | - | | | | |
| 미술정책 지원 | 21 | 21 | - | | | | |
| 공예진흥 | - | - | - | - | -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천원)

| 지급내역 | 지급액 |
|---|---|
| 법률 자문료 지급요청 | 2,750 |
| 조달청 자문수당 지급요청 | 2,580 |
| 조달수수료 납부 | 2,350 |
| 사례비 지급요청(미술품 물납제 세미나) | 2,300 |
| 사례비 지급 요청 | 1,850 |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사례비 지급요청** | 1,800 |
|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간담회 사례비 지급요청** | 1,800 |
| 조달수수료 납부 요청 | 1,593 |
| 조달수수료 지급요청(레미콘3차) | 1,534 |
| **2025년 제2차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회 위원 사례비 지급** | 1,400 |
|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자문회의 사례비 지급요청** | 1,400 |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심의회 위원 사례비 지급** | 1,400 |
| **사례비 지급요청(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 및 공공미술은행 운영방안 토론회)** | 1,400 |
| 조달수수료 지급요청(덱플레이트) | 1,256 |
| **공예 유통분야 간담회 사례비 지급요청** | 1,200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수용비는 미술진흥기반구축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 성격이 강하여 미술진흥 및 공예진흥 등 내역사업 간 공동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라는 입장임.

사업 변경에 따라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의 편성 취지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며,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이라는 이유로 목적과 성격이 다른 사업의 경비를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30]

30)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부터는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1635-300)’·‘미술진흥기반구축(1635-311)’ 및 ‘공예문화산업 육성(1635-320)’으로 나뉘어 있는 공예 관련 사업을 ‘공예문화산업진흥지원’ 세부사업으로 통합하고 기본운영경비를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이 목적 외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목적과 성격이 다른 사업은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②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집행 단계에 있어서도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해 보임.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연중 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미술기관 프로젝트 지원 예산은 축소(12억원 → 10억원)된 반면 연구사업 및 운영비 예산은 확대되었음.

확대된 운영비 예산 내역을 보면 예술경영지원센터 20주년 백서 제작(700만원)과 같이 기관 운영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졌음.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 권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집행점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음.[31)]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있어서도 변경 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토하는 등 보조금이 당초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 8.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6억 8,100만원 중 66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2025년도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도사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 22,919 | 25,419 | - | - | 25,419 | 25,196 | - | 223 | 20,935 |
|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6,681 | 6,681 | - | - | 6,681 | 6,644 | - | 37 | 6,64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통합 검색·모바일 이용증 제공 및 모바일 뷰어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약 14만 건 수준임.

32) 일반회계-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3031-500)(국립중앙도서관)

## 나. 검토의견

**국립중앙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은 유지관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공공앱 평가에서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로그인 오류와 접속 불안정 등 이용자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매년 약 21억 8,900만원 규모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에는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유지보수 관련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 계약명 | 계약일 | 계약액 | | 계약기간 | 계약 방법 |
|---|---|---|---|---|---|
| | | | 어플 유지보수 | | |
| 2025~2026년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 '25.12.17. | 2,189 | 10 | '26.1.1. ~'26.12.31. | 일반경쟁 |
| 2024~2025년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 '24.12.16. | 2,189 | 10 | '25.1.1. ~'25.12.31. | 일반경쟁 |
| 2023~2024년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계약 | '23.12.27. | 2,189 | 10 | '24.1.1. ~'24.12.31. | 일반경쟁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앱 평가에서 총점 64점을 받아 '개선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업데이트 최신성 항목에서 0점을 받았고, 이용자 만족도 또한 60% 수준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2025년 공공앱 평가 결과]

(단위: 점)

| 구 분 | 항목 (배점) | 취득점수 | 평가 내용 |
|---|---|---|---|
| 배포/보급 | 누적 다운로드건수 (10) | 10 |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의 합산 |
| | 전년대비 설치율 (15) | 9 | 전년 동기간 대비 다운로드 건수의 비율 |
| | 투입예산 대비 활용도 (5) | 5 | 총 투입예산 백만원당 누적 다운로드 건수 |
| | 서비스지속기간 (10) | 6 | 공공앱 서비스 지속기간 측정 |

(단위: 점)

| 구 분 | 항목 (배점) | 취득점수 | 평가 내용 |
|---|---|---|---|
| 관리 | 업데이트 최신성 (20) | 0 | 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지<br>* 업데이트가 가장 오래된 앱스토어의 최근 업데이트일 반영 |
| | 앱만족도 (15) | 9 |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공공앱에 대한 평가점수 |
| | 이용자관리 (10) | 10 | 최근 1년간 작성된 앱 이용자 리뷰에 대한 앱 관리자의 답변율 |
| 접근성 | 하위 OS버전 지원여부 (6) | 6 | 최소수준의 OS버전 지원 여부 (최소 수준은 매년 평가 전 결정) |
| | 복수 앱스토어 게시여부 (9) | 9 | 복수 앱스토어 게시를 통한 다양한 접근채널 제공여부 평 |
| 총점 | | 64 | |

주) 총점 60점 미만: 폐기,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 70점 이상: 유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앱스토어 이용자 평가를 보면 로그인 오류, 접속 불안정 및 이용 불편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비스 지속기간의 수치 등록 오류(-4점), 업데이트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만 구성되어 업데이트 불필요(-20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에서 감점이 있었고, 앱스토어 이용자 불편사항은 이용자 단말기 환결설정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임.

업데이트 최신성 항목은 최종 업데이트 이후 41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장기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충분하였는지는 의문이 있고, 서비스 지속기간 항목의 감점은 등록 오류에 따른 것이나, 해당 오류가 시정되어도 68점(64점→68점)으로 여전히 개선권고 구간(60점 이상 70점 미만)에 해당하며, 해당 오류가 상당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33]

아울러 이용자 만족도 역시 15점 만점 중 9점에 그치는 등 평가 감점 여부와 별개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33)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30일 공공앱 평가결과가 공개되었으나, 서비스 지속기간 수치 등록 오류와 관련하여 2026년 5월에 오류 시정을 요청하였음.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계약의 과업내용을 보면 모바일앱 관련 요구사항은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및 보안규정 준수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나 서비스 품질 개선과 관련한 별도의 관리 요구사항은 확인되지 않음.[34]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은 유지관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공공앱 평가에서 개선권고를 받았고 이용자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어플리케이션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어플 이용평가(구글 앱스토어)

★☆☆☆☆ 2026년 1월 15일

저 컴공 이제 졸업했는데 저 채용해주세요 이거보다는 훨씬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웹에서는 로그인되는데 앱에서는 로그인이 안되질 않나, 아이디비밀번호찾기 UX도 최악이고, UI도 텍스트 입력칸에 어떤식으로 입력해라 힌트 표시되는것도 없고, 말도 안되네요 그냥. 그냥 웹에서 로그인해서 거기서 뜨는 책이음 이용증 캡쳐해갖고 다녀야겠습니다. 양심있으면 제대로 개선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앱스토어에서 이 앱 내리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 19명이 이 리뷰가 유용하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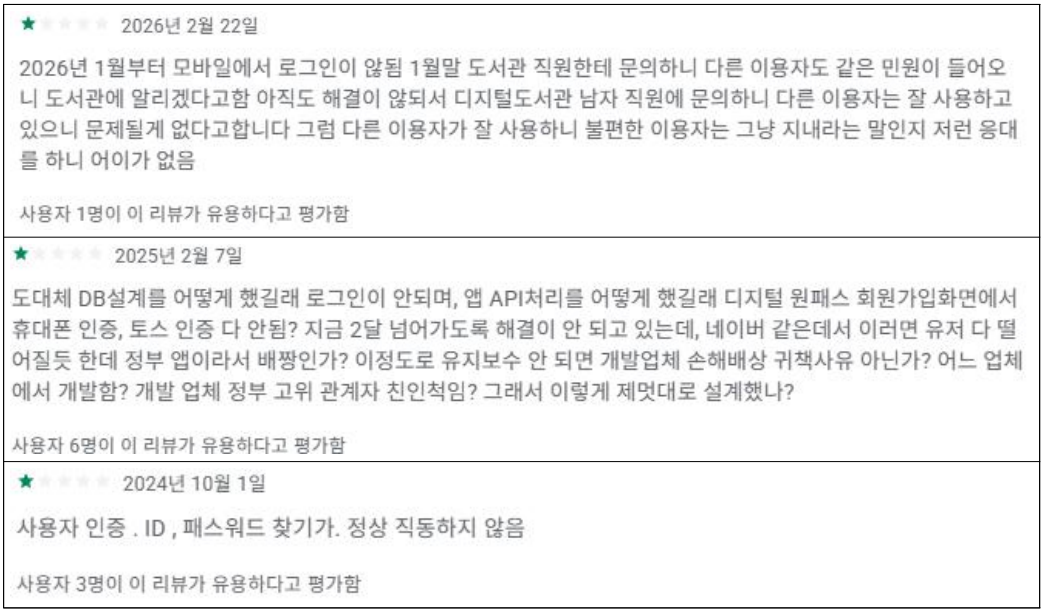
★☆☆☆☆ 2026년 4월 1일

작년부터 있었던 로그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됨.

34) ‘2025년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계약 내 도서관 앱과 관련된 요구사항으로는 ① 디지도서관 정보광장 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② 유지 관리, ③ 보안규정 준수 사항임.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운영·관리 및 기능 개선<br>o 통합자료관리시스템·통합회원관리시스템·**모바일앱**·통계정보시스템 등 연계 시스템 기술지원 |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유지관리 요구 | □ 기관 대표홈페이지, 영문홈페이지, **모바일앱 운영 및 유지관리**<br>o 대표홈페이지 대한 유지운영 및 기능 관리<br>-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br>- 법령·도서관 내부 규정, 도서관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보완<br>o 소규모 기능 개선(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정보DB 개선 등) |
|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아래의 보안가이드를 준수해야 함<br>-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br>-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br>-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br>-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 검색일: 2026.5.21.
자료: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 9. 해외거점 운영: 신규 해외비즈니스 센터 개소 지연 문제

## 가. 개 요

**‘해외거점 운영’** 사업은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비즈니스 센터(30개소)·해외기업지원센터(일본 도쿄) 및 권역별 특화 콘텐츠 행사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52억 2,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5]

[2025년도 해외거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 90,373 | 92,373 | - | - | 92,373 | 92,362 | - | 11 | 93,032 |
| 콘텐츠 수출지원 | 47,006 | 47,006 | - | - | 47,006 | 47,006 | - | - | 40,216 |
| 해외거점 운영 | 25,225 | 25,225 | - | - | 25,225 | 25,225 | - | - | 20,150[3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해외비즈니스센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현지 시장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기업 현지 진출 직·간접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둔 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 신규 5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총 30개소를 운영할 계획임.[37]

35) 일반회계-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3132-304)(국제문화정책관)

36) 2026년부터 ‘권역별 특화 콘텐츠 행사’ 사업비 60억원이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으로 이관됨.

37)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현황

(단위: 개)

| 연도 | 신규 개소수 | 누적 개소수 | 위치 | 연도 | 신규 개소수 | 누적 개소수 | 위치 |
|---|---|---|---|---|---|---|---|
| 2001 | 2 | 2 | 중국(북경), 일본(도쿄) | 2021 | 1 | 8 | 태국(방콕) |
| 2003 | 1 | 3 | 미국(LA) | 2022 | 2 | 10 | UAE(두바이), 러시아(모스크바) |
| 2016 | 1 | 4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2023 | 5 | 15 |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푸르트), 미국(뉴욕), 멕시코(멕시코시티), 인도(뉴델리) |
| 2017 | 1 | 5 | 중국(심천) | | | | |
| 2019 | 1 | 6 | 프랑스(파리) | 2024 | 10 | 25 |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

## 나. 검토의견

**해외거점 운영 사업은 해외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 및 예산 집행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총 5곳의 신규 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인력 미파견·사업지 변경 등의 사유로 개소 지연이 재차 발생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인력 파견 및 사업지 확정 여부 등 사업 추진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3~2025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해외비즈니스센터 인력 파견 및 센터 개소가 연례적으로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도 83.2%, 68.0%, 67.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2023~2025년 해외거점 운영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문화체육관광부 |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 | | | | | |
|---|---|---|---|---|---|---|---|---|---|---|---|---|
| | 예산액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현액 (A)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B/A) |
| | 본예산 | 추경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 | |
| 2023 | 10,173 | 10,173 | 10,173 | 10,173 | - | 10,173 | 8,468 | 10,173 | 8,486 | 1,051 | 636 | 83.2 |
| 2024 | 21,950 | 21,950 | 21,950 | 21,950 | 1,051 | 23,001 | 15,633 | 21,950 | 14,582 | 4,798 | 2,570 | 68.0 |
| 2025 | 25,225 | 25,225 | 25,225 | 25,225 | 4,798 | 30,023 | 20,223 | 25,225 | 15,425 | 6,547 | 3,253 | 67.4 |

주) 연도별 개소 실적은 2023년 1개소(계획 5개소), 2024년 9개소(계획 10개소), 2025년 3개소(계획 5개소)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에도 미국(댈러스)·폴란드·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 및 칠레 등 5개소의 신규 거점 개소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연내 인력 파견 및 개소가 완료된 곳은 폴란드·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소에 불과하였으며, 미국(댈러스)은 파견인력 미선발로 개소가 보류되고 칠레는 사업 대상지가 중국(상하이)으로 변경되면서 연내 개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 | | | | | | |
|---|---|---|---|---|---|---|---|
| | | | | | | |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오사카), 싱가포르, 튀르키예, 호주 |
| 2020 | 1 | 7 | 베트남(하노이) | 2025 (계획) | 5 | 30 |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폴란드, 칠레, 미국(댈러스)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해외비즈니스 센터 신규 개소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거점 현황 | | | 2025 | | | | | | 2026 |
|---|---|---|---|---|---|---|---|---|---|---|
| | 위치 | 인력 파견일 | 개소일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25 신규 | 미국(댈러스) | - | - | 185 | - | 185 | - | 185 | - | 300 |
| | 폴란드 | '25.11.2. | '25.8.18. | 185 | - | 185 | 81 | 104 | - | 400 |
| | 필리핀 | '26.1.15. | '25.11.5. | 185 | - | 185 | 51 | 134 | - | 400 |
| | 사우디아라비아 | '25.12.30. | '25.12.31. | 185 | - | 185 | 104 | 81 | - | 400 |
| | 칠레→ 중국(상하이) | '26 예정 | '26 예정 | 185 | - | 185 | 17 | 168 | - | 400 |
| 합 계 | | | | 925 | - | 925 | 253 | 672 | - | 1,900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간 해외비즈니스센터가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운영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추가 배정된 인력은 10명에 불과하여 숙련된 파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칠레의 경우 남미 지역에 이미 2개 거점이 운영 중인 점과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비한 중국 시장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임.

해외비즈니스 센터 설치는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현지 수요·인력 확보 가능성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거점 확대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이 이루어진 이후 인력 확보 문제로 개소가 보류되거나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운영 여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특히 칠레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상하이)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상하이 거점 역시 현지 제도상 설립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지 선정 과정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및 유사 사업 추진 시 운영 여건, 인력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해외비즈니스센터 신규거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도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을 지적하며, 연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센터 확대 속도를 조절하여 집행 부진을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에도, 2025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미이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구분 | |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
| 2023 | 시정요구명 | (20)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집행 부적정 (주의) |
| | 지적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5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된 33억 9,000만원을 전부 교부하였으나, 센터장 파견 지연·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인해 5개소 모두 연내 개소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29억 1,500만원을 기존 비즈니스센터 10개소에 배정하여 집행함 |
|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는 센터의 조속한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연내 추진가능한 규모로 센터 확대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집행부진을 개선**하고, 향후 신규 센터 개소를 위한 예산이 기존 센터에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조치결과 | ○ 정부안 기준으로 '25년 **신규 비즈니스센터는 5개소로 전년도 10개소에 비해 5개소 감소하여 연내 추진 가능하도록 확대 속도를 조절**하였음<br>○ '25년 신규 비즈니스 센터의 예산을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개소당 1.85억원으로 편성('24년 4.25억원)하여, 신규센터 예산을 기존센터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편성단계부터 조치완료함<br>○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30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0.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사업방식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가. 개 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은 2024년에 지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12곳에 대한 문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60억원 중 353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었고 6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38)]

[2025년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역지원) | 37,000 | 37,000 | - | 37,000 | 35,970 | 136 | 894 | 500[39)] |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 36,000 | 36,000 | - | 36,000 | 35,350 | - | 65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5월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지정된 이후, 2023년 공모·평가를 거쳐 7개 권역 13개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음.[40)]

---

3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2141-301)(지역문화정책관)

39) 2026년 예산의 경우 동 사업에는 문화도시 관리·홍보 지원 및 문화도시 평가·성과관리를 위한 예산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도시 조성 지원 예산(12곳, 자치단체경상보조 460억원)은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었음.

40) 2024년 지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총 13곳(대구 수성, 부산 수영, 경기 안성, 세종, 충북 충주, 충남 홍성, 강원 속초, 경북 안동, 경남 진주·통영, 전북 전주, 전남 순천·진도)이나, 이 중 세종은 별도의 ‘대한민국

이후 2024년 예비사업 추진·컨설팅 및 실적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가 최종 지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함.

2025년도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1차년도 사업비를 위한 360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를 위한 10억원(민간 경상보조, 국비 100%)이 편성되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은 사업 방식에 대하여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당시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다가 회계연도 중 전용을 통해 직접사업비로 변경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당초 (재)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업무에 해당하는 4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사업비(일반수용비·임차료·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41]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사업 전용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1,000 | 1,000 | **△400** | 600 | 600 | - | - |
| 직접 사업비 | - | - | **400** | 400 | 20 | 136 | 244 |
| 일반수용비 (210-01) | - | - | 40 | 40 | 16 | - | 24 |
| 임차료 (210-07) | - | - | 10 | 10 | 4 | - | 6 |

문화도시 조성(세종)' 사업에서 지원하고, 동 사업에서는 나머지 12곳에 대한 조성 지원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

41) 2025년 직접사업비로 전용된 예산 중 일반용역비는 현장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강릉 지역 재난 발생 등으로 평가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하에 평가를 미실시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일반연구비는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1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2026년 4월 기준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이월액 전액이 집행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 - | - | 150 | 150 | - | - | 150 |
| 일반연구비 (260-01) | - | - | 200 | 200 | - | 136 | 64 |
| 합 계 | 1,000 | 1,000 | - | 1,000 | 620 | 136 | 24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용 사유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2.9.) 당시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업무는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42]는 지적에 따라 직접사업비로 전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당 지적은 이미 2022년에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2024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방식 및 예산과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안에 미리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이 부실하였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방식 및 예산과목의 적정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회계연도 중 전용을 통해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2) 「202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Ⅰ)」(2022.9.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와 제16조는 문화도시 지정과 취소 및 심사·평가 업무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동 업무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엄정성을 요하는 업무이므로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내역사업 중 '문화도시지정과 평가업무'는 특성상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아닌 문체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비(1억5천만원)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환하고, 전환되는 사업비만큼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예산의 감축이 필요함.

**둘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은 2025년 본사업 1차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이 부진하며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분할 교부되었으므로, 향후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조성계획 승인과 2024년 심층컨설팅 및 최종 지정평가를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되었고, 2025년도 실집행 현황을 보면 교부현액 353억 5,000만원 중 215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시행 주체 | 교부액 | 교부현액(A) | 집행액(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B/A) | 이월 사유 |
|---|---|---|---|---|---|---|---|
| 강원(속초시) | 3,000 | 3,000 | 1,110 | 1,890 | - | 37.0 | 공간조성 추진 중으로,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경북(안동시) | 3,000 | 3,000 | 1,307 | 1,570 | 123 | 43.6 | 관련 행정절차 협의 및 이행 지연('25상반기 안동시대형산불피해로인해 문화행사 사업연기 및 취소) |
| 대구(수성구) | 3,000 | 3,000 | 1,391 | 1,609 | - | 46.4 | 공간조성 추진 중으로,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충남(홍성군) | 3,000 | 3,000 | 1,449 | 1,539 | 12 | 48.3 | 사업추진시기 조정 및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전남(진도군) | 3,000 | 3,000 | 1,517 | 1,393 | 90 | 50.6 | 사업추진시기 조정 및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충북(충주시) | 3,000 | 3,000 | 1,688 | 1,312 | - | 56.3 | 사업추진시기 조정 및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전북(전주시) | 2,350 | 2,350 | 1,538 | 812 | - | 65.4 | 공간조성 추진 중으로,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부산(수영구) | 3,000 | 3,000 | 1,964 | 901 | 135 | 65.5 | 행사추진 지연, 공공건축 심의등 집행절차 지연 |
| 전남(순천시) | 3,000 | 3,000 | 2,286 | 714 | - | 76.2 | 공간조성 추진 중으로,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경기(안성시) | 3,000 | 3,000 | 2,293 | 350 | 357 | 76.4 |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
| 경남(통영시) | 3,000 | 3,000 | 2,313 | 250 | 437 | 77.1 | 공간조성 추진 중으로,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
| 경남(진주시) | 3,000 | 3,000 | 2,663 | 256 | 81 | 88.8 | 시민 문화 향유, 문화 교류 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중 연말 실시 행사 비용 연내 집행 불가로 인한 이월 |
| 합 계 | 35,350 | 35,350 | 21,519 | 12,596 | 1,235 | 60.9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간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관련 행정절차 협의 및 이행 지연 등을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고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2025년도 교부 현황을 보면 사업 수행 자치단체 12개소 중 11개소에 예산 전액이 교부되었고, 이 중 10개소는 2회에 걸쳐 분할교부가 이루어졌으나 2차 교부가 대부분 12월에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 및 관련 행정절차 지연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교부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사업계획의 추진 현황 및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교부 규모 조정 및 분할교부를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예산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문화체육관광부 | | 지방자치단체 | | | 교부현황 | | |
|---|---|---|---|---|---|---|---|---|
| | 예산액 | 교부액 | 교부현액 (A) | 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1차 | 2차 | 3차 |
| 강원 (속초시) | 3,000 | 3,000 | 3,000 | 1,110 | 37.0 | 2,100 ('25.3.7.) | 900 ('25.12.2.) | - |
| 경북 (안동시) | 3,000 | 3,000 | 3,000 | 1,307 | 43.6 | 2,100 ('25.3.7.) | 900 ('25.12.15.) | - |
| 대구 (수성구) | 3,000 | 3,000 | 3,000 | 1,391 | 46.4 | 2,100 ('25.3.7.) | 900 ('25.12.15.) | - |
| 충남 (홍성군) | 3,000 | 3,000 | 3,000 | 1,449 | 48.3 | 2,100 ('25.3.7.) | 900 ('25.12.15.) | - |
| 전남 (진도군) | 3,000 | 3,000 | 3,000 | 1,517 | 50.6 | 1.515 ('25.7.9.) | 468 ('25.12.2.) | 1,017 ('25.12.18.) |
| 충북 (충주시) | 3,000 | 3,000 | 3,000 | 1,688 | 56.3 | 1,675 ('25.7.9.) | 1,325 ('25.12.15.) | - |
| 전북 (전주시) | 3,000 | 2,350 | 2,350 | 1,538 | 65.4 | 2,100 ('25.3.7.) | 250 ('25.12.15.) | - |
| 부산 (수영구) | 3,000 | 3,000 | 3,000 | 1,964 | 65.5 | 2,000 ('25.7.9.) | 1,000 ('25.12.15.) | - |
| 전남 (순천시) | 3,000 | 3,000 | 3,000 | 2,286 | 76.2 | 2,100 ('25.3.7.) | 900 ('25.12.15.) | - |
| 경기 (안성시) | 3,000 | 3,000 | 3,000 | 2,293 | 76.4 | 2,100 ('25.3.7.) | 900 ('25.12.2.)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문화체육관광부 | | 지방자치단체 | | | 교부현황 | | |
|---|---|---|---|---|---|---|---|---|
| | 예산액 | 교부액 | 교부현액 (A) | 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1차 | 2차 | 3차 |
| 경남 (통영시) | 3,000 | 3,000 | 3,000 | 2,313 | 77.1 | 2,100 ('25.3.7) | 900 ('25.12.15.) | - |
| 경남 (진주시) | 3,000 | 3,000 | 3,000 | 2,663 | 88.8 | 2,100 ('25.3.7) | 900 ('25.12.15.)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 11.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43]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운용함.

2025년도 수정계획액은 5,811억 5,900만원이며, 이 중 5,293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1%)되었고, 이는 2024년도 결산액 대비 7.3% 증가한 수준임.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4 결산 | 2025 수정계획액(A) | 2025 결산액(B) | 증감 (B-A) | (B-A)/A |
|---|---|---|---|---|---|---|
| 수입 | 자체수입 | 98,519 | 97,154 | 82,730 | △14,424 | △14.8 |
| | 정부내부수입 | 378,786 | 397,707 | 397,707 | - | - |
| | 여유자금회수 | 16,026 | 86,298 | 48,900 | △37,398 | △43.3 |
| **합계** | | 493,331 | 581,159 | 529,336 | △51,823 | △8.9 |
| 지출 | 사업비 | 410,343 | 447,387 | 439,594 | △7,793 | △1.7 |
| | 기금운영비 | 21,399 | 23,446 | 23,313 | △133 | △0.6 |
| | 정부내부지출 | 39,233 | 22,253 | 22,133 | △120 | △0.5 |
| | 여유자금운용 | 22,356 | 88,073 | 44,298 | △43,775 | △49.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3)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 · 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의견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자체수입 확충 방안 마련이 미흡하므로,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발굴하는 한편, 정책적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설치 및 심사 규정을 보면,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야 함.[44)]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구조를 보면, 2025년 정부내부수입(3,977억 700만원)과 여유자금회수액(489억원)이 전체 수입의 84.3%를 차지한 반면, 자체수입은 2024년 이후 비중이 감소하여 2025년 15.6%, 2026년 14.8%에 그치고 있음.

[2022~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구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2026 계획 |
|---|---|---|---|---|---|---|
| | | | | | 전년대비 증감률 | |
| **자체수입 (비중)** | 79,069 (18.0) | 82,979 (14.4) | **98,519 (20.0)** | **82,729 (15.6)** | **△16.0** | **93,623 (14.8)** |
| 경륜경정전입 | - | - | 8,971 | 10,999 | 22.6 | 11,061 |
| 융자원금회수 | 13,917 | 12,635 | 17,669 | 17,810 | 0.8 | 15,344 |
| 재산수입 | 2,860 | 5,932 | 3,749 | 3,839 | 2.4 | 5,694 |
| 기타경상이전수입 | 57,701 | 58,007 | 58,909 | 43,004 | △27.0 | 52,526 |
| 기타 | 4,591 | 6,404 | 9,221 | 7,077 | △23.3 | 8,998 |
| **정부내부수입 (비중)** | 300,868 (68.5) | 365,674 (63.5) | 378,786 (76.8) | **397,707 (75.1)** | **5.0** | 420,871 (66.5) |
| 일반회계 전입금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0.0 | 30,000 |

44)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2026 계획 |
|---|---|---|---|---|---|---|
| | | | | | 전년대비 증감률 | |
| 기금전입금 | 270,868 | 335,674 | 348,786 | 367,707 | 5.4 | 390,871 |
| 복권기금 | 173,868 | 235,674 | 248,786 | 267,707 | 7.6 | 290,871 |
| 국민체육진흥기금 | 97,000 | 100,000 | 100,000 | 100,000 | 0.0 | 100,000 |
| **여유자금회수 (비중)** | 59,242 (13.5) | 126,943 (22.1) | 16,026 (3.2) | **48,900 (9.2)** | **205.1** | 118,055 (18.7) |
| **합 계** | 439,179 | 575,596 | 493,331 | 529,336 | 7.3 | 632,54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은 재원구조는 과거 주요재원이었던 공연장·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모금제도가 2003년 「문화예술진흥법」상 징수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 자체재원이 현재까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함.[45)]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대상 도입·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추징금 및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서울CC의 입장료 수입 확대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임.

45)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자체수입 | 84,479 | 94,523 | 50,066 | 44,533 |
| 모금액 | 48,863 | 53,582 | 7,943 | 267 |
| 자체수입 외 | 1,583 | 44,231 | 434,039 | 501,419 |
| 수입합계 | 86,062 | 138,754 | 484,105 | 545,952 |

주) 2003년 말 모금행위는 전면 중단되었으며, 2004년 및 2005년 모금액의 경우 과거 미납분에 대한 수납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수입 확보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안(의안번호) | 주요 내용 | 수입 추정액 |
|---|---|---|
|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1.16. 의안번호: 2216122) | ㅇ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 2027년 **3,139억원 추정**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6.1.16. 의안번호: 2216121) | ㅇ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따른 몰수 및 추징액 일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근거 신설 | 연간 **32~303억원 전입 추정**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6.1.16. 의안번호: 2216124) | ㅇ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근거 신설 | 연간 **19~37억원 내외 전입 추정** |

주) 미분배 보상금: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보상금 분배 공고 후 10년이 지나도록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장 큰 규모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시된 복권기금 전입금(3,139억원 추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이 아니며,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재원 목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독자적 재원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움.[46]

또한 「공연법」 및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전입금 예상 규모는 연간 총 51~340억원 규모로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수입액(5,293억 3,600만원) 대비 약 0.9~6.4% 수준에 불과하며,[47] 그 재원으로 제시된 부정판매 적발에 따른 추징금과 저작권 미분배

46) 이에 더하여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 대상은 2004년 복권제도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 등의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만을 법정배분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 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47) 「공연법」 개정에 따른 자체수입 예측

| 2024년 공연시장 매출 | 암표대상 매출 가정 | 시나리오 | 암표 평균 프리미엄(α) | 환수비율 | 산출결과* |
|---|---|---|---|---|---|
| 14,538억원 | 2,777억원 (최근 5개년 상위 10개 작품 매출비중 19.1% 적용) | 최소 | 30% | 5% | **32억원(최소)** |
| | | | | 12% | 77억원 |
| | | | | 20% | 128억원 |
| | | 기준 | 60% | 5% | 52억원 |
| | | | | 12% | 125억원 |
| | | | | 20% | 208억원 |
| | | 최대 | 120% | 5% | 76억원 |
| | | | | 12% | 182억원 |
| | | | | 20% | **303억원(최대)** |

* 산식 = 암표 대상 매출규모 × 암표 프리미엄 발생 수입[(α/(1+α))] × 환수비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자체수입 예측

보상금은 부정판매 및 미분배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 재원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정적인 자체수입원 발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금 재원과의 연계성이 낮거나 일반적인 문화예술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 회계·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기금 수입과 지출구조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뉴서울CC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재원 조성을 위한 시설임에도, 동일한 정책기금 조성 목적으로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88CC와 달리 매년 약 60억원의 제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그만큼 기금으로 수납되는 자체수입 규모가 적은 상황이므로, 국가 소유 전환을 통해 자체수입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뉴서울CC는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라 함)가 소유·관리하는 36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87년 개장하였으며, 현재 문예위의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

골프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 결산 기준 총수입은 349억 5,500만원에서 운영비 및 제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은 62억 6,200만원이 기금의 입장료 수입(64-641) 비목으로 수납되었음.

한편 국가보훈부 소유의 88CC는 뉴서울CC와 동일한 36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뉴서울CC보다 적은 수준임에도 국가 소유 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세금이 면제됨에 따라, 88CC 운영에 따른 보훈기금의 자체재원 규모가 뉴서울CC 운영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보다 큰 수준으로 나타남.[48]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음반제작자 | 3,357 | 2,795 | 3,537 | 6,546 | 3,860 |
| 음악실연자 | 6,050 | 5,924 | 6,509 | 6,833 | 6,545 |
| 저작권자 | 23,015 | 23,592 | 23,823 | 25,447 | 27,066 |
| 합계 | 32,422 | 32,311 | 33,869 | 38,826 | 37,470 |
| **배분율 5%** | **1,621** | **1,616** | **1,693** | **1,941** | **1,874** |
| **배분율 10%** | **3,242** | **3,231** | **3,387** | **3,883** | **3,747** |

주) 「저작권법」: 연간 저작권보상금 미분배액의 5~10% 이내 배분율 적용(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통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8) 2023~2025년 뉴서울CC 및 88CC 입장료 수입 현황

[뉴서울CC(문화체육관광부) 및 88CC(국가보훈부) 골프장 주요 사항]

| 구분 | 뉴서울CC 골프장 | 88CC 골프장 |
|---|---|---|
| 소유 |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하여 조성<br>→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br>198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 | 보훈기금으로 조성<br>→ **국가보훈부** 소유 |
| 관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br>(문예기금 관리주체) | 국가보훈부<br>(보훈기금 관리주체) |
| 운영 | 문예위의 자회사인<br>한국문화진흥(주)이 위탁운영 | 국가보훈부가 20억원 출자하여 설립한<br>88관광개발(주)에 위탁 |
| 주요시설 | 클럽하우스, 연습장, 그늘집 | 클럽하우스, 연습장, 그늘집 |
| 홀 개수 | 36홀 | 36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뉴서울CC(문화체육관광부) 및 88CC(국가보훈부) 2024~2025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 결산 | | | | 2025 결산 | | | |
|---|---|---|---|---|---|---|---|---|
| | 수입 | 비용 | | 순이익 | 수입 | 비용* | | 순이익 |
| | | 운영비 | 제세금 | | | 운영비 | 제세금 | |
| 뉴서울골프장<br>(36홀) | 40,470 | 28,448 | **5,758** | **6,264** | **34,955** | 22,892 | **5,801** | **6,262** |
| 88골프장 (36홀) | 32,596 | 21,719 | - | **10,877** | **35,080**** | 24,610 | - | **10,470** |

주 1) 88골프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소유로 제세금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면제됨
2) * 뉴서울골프장 : 비용에 한국문화진흥(주) 위탁운영비(인건비(133명) 등 94억원) 포함
88골프장 : 비용에 88관광개발(주) 위탁운영비(인건비(149명) 등 110억원) 포함
3) ** 88골프장의 경우 2025년 결산 수치가 공시되지 않아, 예산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부

(단위: 명, 천원)

| 구 분 | | 입장인원 | | | 입장료 수입 |
|---|---|---|---|---|---|
| | | 총계 | 지역회원 | 비회원 | |
| 2023 | 뉴서울CC | 175,291 | 50,892 | 124,399 | 23,114,893 |
| | 88CC | 179,976 | 55,973 | 124,003 | 20,783,107 |
| 2024 | 뉴서울CC | 172,138 | 47,625 | 124,513 | 23,966,182 |
| | 88CC | 167,923 | 52,806 | 115,117 | 20,163,471 |
| 2025 | 뉴서울CC | 173,677 | 45,952 | 127,725 | 23,495,065 |
| | 88CC | 165,391 | 49,479 | 115,912 | 20,307,92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뉴서울CC는 국가 소유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년 약 60억원 내외의 제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 소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제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서울CC의 회원권 시세(2026년 6월 기준 약 8,891억원)가 자산총액(2025년 말 기준 3,547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국유화(기부채납) 시 회원권 반환채무를 국가가 승계하게 되어 국고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유화 가능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 역시 공공기관인 만큼 회원권 반환채무는 국유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하여야 할 재무적 부담이라는 점, 국가보훈부의 88CC도 동일한 정책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뉴서울CC의 국가 소유 전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 출〉

#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집행실적 부진 개선 필요 등

## 가. 개 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65억 1,000만원 중 103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9.0%)되고 47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4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49)]

[2025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문화예술향유지원 | 280,581 | 290,581 | 9,510 | 300,091 | 283,900 | 4,737 | 11,454 | 327,638 |
| 청년문화예술패스 | 17,000 | 17,000 | 9,510 | 26,510 | 10,340 | 4,737 | 11,433 | 36,146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청년문화예술패스)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 청년의 첫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 상당의 문화예술 관람 바우처(패스)를 지급하는 사업임.

이용자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패스 발급을 신청하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신청자 정보를 검증한 뒤 자격 충족자에 한해 예매처를 통해 패스를 발급하며, 이용자가 예매처에서 티켓 예매 시 패스를 사용하면, 예매처가 사용내역을 증빙하여 이용대금을 청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증빙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금을 정산·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됨.

49)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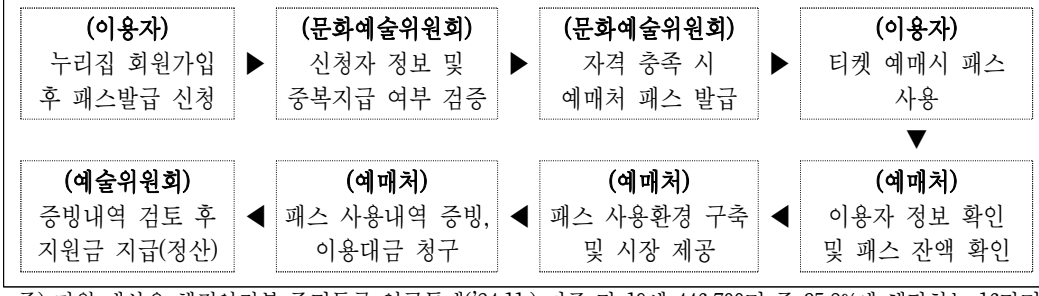
[2025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25년 민법상 성년인 19세 청년 16만명*

○ (사업예산) 170억원 (지원금 160억원(16만명×10만원(국비)) + 운영비 10억원)

○ (지원내용)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포인트 등) 연간 최대 15만원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주)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4.11.) 기준 만 19세 446,700명 중 35.8%에 해당하는 16만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계획대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용 실적, 수요 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지원현황을 보면 계획인원 16만명 중 실제 신청인원은 11만 8,745명으로 신청률이 74.2%로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지원금 집행액은 117억 4,100만원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이 73.4%에 그쳤음.

[2025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지원현황]

(단위: 명, %, 백만원)

| 구분 | 대상인원 (A) | 신청인원 (B) | 신청률 (B/A) | 이용인원 (C) | 이용률 (C/B) | 계획액 (D) | 집행액 (E) | 집행률 (E/D) |
|---|---|---|---|---|---|---|---|---|
| 2024 | 160,000 | 127,706 | 79.8 | 70,772 | 55.4 | 16,000 | 7,999 | 50.0 |
| **2025** | **160,000** | **118,745** | **74.2** | **102,194** | **86.1** | **16,000** | **11,741** | **73.4** |
| 2026 | 280,000 | - | - | - | - | 280,000 | - | - |

주) 2025년 12월말 사용에 따른 2026년 이월 정산분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초기 인지도 부족, 19세 단일 연령층의 특성, 예매처 연계 방식에 따른 진입장벽 및 지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 등을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사업 시행 2년차임에도 신청인원 및 신청률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제도 인지도 부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사업 규모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지원 규모를 산정하면서 2022년 문화예술 관람률 및 관람 의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혜율 35.8%를 적용하였고, 2026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혜율 약 31%를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28만명으로 산정하였음.[50]

실제 사업 운영 결과 신청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에도 과거 설문조사상의 관람률·관람 의향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신청 및 이용 실적,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를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51]

**둘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집행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성 홍보사업을 다수 추진하였는데, 신청률 저조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경품 제공 등 현금성 혜택을 통해 단기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실제 수요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액사용 이벤트, 소문내기 이벤트, 교통비 지원 이벤트, 캐릭터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 포인트·상품권·기프티콘·교통비 지원 등 현금성 또는 현금에 준하는 경품을 다수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50) (2025년) 15~19세의 문화예술 관람률 22.7%, 의향률 47% 고려, 수혜율 36% 반영하여 주민등록 인구통계('24.7.) 기준 만 19세 45만명 중 35.8%에 해당하는 16만명을 산정.
(2026년) 수혜율을 전년도와 같이 문화예술 관람률, 의향률 반영하여 수혜율을 약 31%로 산정 후 주민등록 인구통계(‘25.6.) 기준 만 19~20세 91만명 중 31%에 해당하는 28만명을 산정.

51)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이 추진 중인 2026년 상반기의 경우 발급률이 94.7%이고, 2026년 7월 말 기준 이용자는 전체 지원 대상자인 28만명의 85.1%인 약 23만 8,000명으로 나타나 집행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임.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홍보 내용]

| |
|---|
| ○(전액사용 이벤트) 네이버 포인트 10만원 (5명), 교보문고 5만원 (10명)<br>CJ 기프트 카드 3만원 (20명), 배달의민족 2만원 (40명)<br>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 (120명), 뮤지컬 관람권 2매 (4명)<br>○( 소문내기 이벤트) CU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 (30명)<br>○(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 국공립 예술단체 공연 초대권 2매 (15명)<br>○(대학로 예술공간 워킹투어) 워킹투어 및 뮤지컬 〈빨래〉 관람 (15명)<br>○(캐릭터 공모전) 네이버 포인트 상품권<br>30만원(1인), 20만원(1인), 10만원(1인), 1만원(30인)<br>○(캐릭터 선호도 투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30명)<br>○(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매월 활동비 50,000원 (10명)<br>○(관람인증 및 기대평 이벤트) 뮤지컬 〈위키드〉 2매 (10명)<br>○(이벤트 게시물 댓글 친구 태그 이벤트) 스타벅스 2만원권 (50명)<br>○(홍보 콘텐츠 의견 제안 이벤트) 〈안트로폴리스〉 공연 2매 (6명)<br>○(교통비 지원 이벤트 1탄) 지역별 3만원~10만원 네이버 포인트 (100명)<br>○(교통비 지원 이벤트 2탄) 지역별 3만원~10만원 네이버 포인트 (100명)<br>○(사용후기 이벤트) 뮤지컬 관람권 2매 (25명) |

자료: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업이 사업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으며, 현금성 경품 규모 또한 전체 홍보예산의 10% 이내로 관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목적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는 바, 신청 및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업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음.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 제시된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이용절차의 불편, 사업 인지도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개선보다는 경품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적을 제고하는 방식에 의존할 경우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이용수요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교통비 지원 이벤트, 전액사용 이벤트 등은 문화예술 관람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이미 이용한 지원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여, 결과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 대한 중복 지원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홍보를 명목으로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과도한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 제시된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및 이용절차의 불편 등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실질적인 이용 확대와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최근 지원 장르를 영화 및 도서 분야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순수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초기 정책 목적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문화소비 욕구는 높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순수예술 분야의 소비 확대 및 창작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 초기에는 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 등 공연예술과 미술·공예 등 전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24년 11월부터 음악 콘서트·페스티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6년에는 영화 및 도서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반영하여 이용 편의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주요 내용]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사업목적 | ○ **문화소비 욕구가 크나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 되는 성년기진입 청년(만 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 지원<br>○ 바우처를 통한 **순수예술 이용 촉진**으로 직접적인 문화소비 확대,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 | |
| 지원대상 | ○ 19세 청년 16만명 | | ○ 19~20세 청년 28만명 |
| 지원규모 | ○ 1인당 연 10~15만원<br>※ 지방비 정액 5만원 임의 매칭 | | ○ 1인당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
| 예산(안) | ○ 170억원 | ○ 170억원 | ○ 361억 4,600만원 |
| 발급기간 및 횟수 | ○ '24.03.28.~11.30. | ○ 1회차: '25.3.6.~5.31.<br>2회차: '25.7.7.~11.30. | ○ 1회차 : '26.2.25.~6.30.<br>추가 발급 : '26.8.10.~11.30. |
| 선정방식 | ○ 선착순 | ○ 선착순 | ○ 선착순 |
| 이용범위 | ○ (공연)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등<br>○ (전시) 미술, 공예,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시 등<br>※ '24.11.22.부터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추가 | | ○ (공연)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br>○ (전시) 미술, 공예,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시 등<br>○ (영화)<br>※ '26.8.부터 도서 추가 예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대중음악 콘서트, 영화 및 도서 분야는 순수예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이미 시장 규모와 소비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로, 당초 사업이 지향하였던 순수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관련 분야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는 차이가 있음.[52)]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순한 이용률 제고나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업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지원 장르 확대가 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넷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구조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성격을 가짐에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국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분을 국비로 우선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비 10만원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사에 따라 지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 2025년에는 11개 시·도가 지방비를 부담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음.

[2024~2025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지자체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2024 | | | | 2025 | | | |
|---|---|---|---|---|---|---|---|---|
| | 지자체 부담여부* (O / X) | 배정인원 | 국비 | 지방비 | 지자체 부담여부** (O / X) | 배정인원 | 국비 | 지방비 |
| 서울 | O | 25,895 | 2,590 | 1,295 | O | 26,233 | 2,623 | 1,312 |
| 부산 | O | 8,925 | 893 | 446 | O | 8,881 | 888 | 444 |
| 대구 | O | 7,586 | 759 | 379 | X | 7,407 | 741 | - |
| 인천 | O | 9,221 | 922 | 461 | O | 9,350 | 935 | 468 |
| 광주 | O | 5,200 | 520 | 260 | O | 5,126 | 513 | 256 |
| 대전 | X | 4,853 | 485 | - | X | 4,862 | 486 | - |
| 울산 | O | 3,708 | 371 | 185 | O | 3,608 | 361 | 180 |
| 세종 | O | 1,477 | 148 | 74 | X | 1,533 | 153 | - |
| 경기 | X(성남, 안산, 의정부) | 44,268 | 4,427 | 1,893 | X(성남, 안산), | 44,956 | 4,496 | 2,006 |

52) (사업목적)
- **문화소비 욕구가 크나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 되는 성년기진입 청년(만 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 지원
- 바우처를 통한 **순수예술 이용 촉진**으로 직접적인 문화소비 확대,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2024 | | | | 2025 | | | |
|---|---|---|---|---|---|---|---|---|
| | 지자체 부담여부* (O / X) | 배정인원 | 국비 | 지방비 | 지자체 부담여부** (O / X) | 배정인원 | 국비 | 지방비 |
| | O(그 외) | | | | O(그 외) | | | |
| 강원 | O | 4,726 | 473 | 236 | O | 4,571 | 457 | 229 |
| 충북 | O | 4,984 | 498 | 249 | O | 4,926 | 493 | 246 |
| 충남 | O | 6,834 | 683 | 342 | O | 6,939 | 694 | 347 |
| 전북 | X(전주), O(그 외) | 5,955 | 596 | 176 | X(전주), O(그 외) | 5,749 | 575 | 171 |
| 전남 | O | 5,549 | 555 | 277 | O | 5,428 | 543 | 271 |
| 경북 | O | 7,730 | 773 | 387 | O | 7,554 | 755 | 378 |
| 경남 | O | 10,715 | 1,072 | 536 | O | 10,566 | 1,057 | 528 |
| 제주 | O | 2,374 | 237 | 119 | O | 2,311 | 231 | 116 |
| 계 | | 160,000 | 16,000 | 7,315 | | 160,000 | 16,000 | 6,952 |

주 1) 2024년 미매칭 지역(5개처): 대전, 경기(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전북(전주시)
2) 2025년 미매칭 지역(6개처):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성남시, 안산시), 전북(전주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사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고,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하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수용비(210-01) 비목에 편성하여 직접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교부결정, 지방비 확보 확인, 정산 및 집행점검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비 확보 및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문예위에 지방비를 예탁하고, 예매처는 이용자에게 패스를 발급한 후 문예위에 정산을 요청하면, 문화예술위원회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지원금을 정산·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됨.

2025년 집행 내역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분이 사전에 예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로 대납이 이루어진 후 지방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동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는 1,489만 4천원을 국비로 우선 지급한 후 총 5차례에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지방비 대납 및 상환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자치단체 | 사용기간 | 대납액 | 상환일 |
|---|---|---|---|---|
| 1차 | 충남 13개처 | 3월 | 8,153 | 2025.4.16. |
| 2차 | 제주 | 3월 | 3,219 | 2025.5.8. |
| 3차 | 충남 1개처 | 3~4월 | 1,556 | 2025.5.30. |
| 4차 | 전남 1개처 | 3~5월 | 348 | 2025.6.18. |
| 5차 | 충남 1개처 | 3~6월 | 1,618 | 2025.8.7. |
| 합 계 | | | **14,894** | |

주 1) 2024년 미매칭 지역(5개처): 대전, 경기(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전북(전주시)
2) 2025년 미매칭 지역(6개처):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성남시, 안산시), 전북(전주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방비 부담분이 적기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 국고 선지출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을 전제로 운영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비 확보 여부 확인·정산 및 집행점검 등 재원분담에 따른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53]

53)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사업부터 발급 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 후 지방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패스를 발급하고 있어, 대납 및 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신청·발급, 자격검증, 예매처 연계, 정산 및 부정사용 관리 등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 특성상, 현행과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비와 지방비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이 행정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임.

# 13.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 미흡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등

## 가. 개 요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000억 9,100만원 중 2,839억원이 집행(집행률 94.6%)되고, 47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4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54)]

[2025년도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문화예술향유지원 | 280,581 | 290,581 | 9,510 | 300,091 | 283,900 | 4,737 | 11,454 | 331,738 |
| 공연예술 관람료지원 | - | 5,100 | - | 5,100 | 5,100 | - | - | 4,100 |
| 미술전시 관람료지원 | - | 4,900 | - | 4,900 | 4,900 | - | -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관람료지원’** 사업은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내수진작을 위하여 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 분야 티켓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 50만장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1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54)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2025년도 공연예술 관람료지원 사업 개요]

| |
|---|
| ○ (사업목적) 공연 관람 할인쿠폰 지급을 통한 예술 소비 진작 및 시장 활성화<br>○ (사업예산) 관람료지원 50억원 및 운영비 1억원, 총 51억원<br>○ (지원내용) 온라인 티켓예매처에서 공연 예약 시 예매처별 1인당 2매의 공연 할인 쿠폰 제공<br>- (1차 발행, 8/8~9/19) 5개 예매처에 1만원 정액 할인 쿠폰 지원(1개 예매처에 비수도권 전용 1만원 쿠폰 추가 지원)<br>- (2차 발행, 9/23~12/31) 7개 예매처에 1만원 정액 할인 쿠폰 지원(4개 예매처에 비수도권 전용 1.5만원 쿠폰 추가 지원)<br>○ (대상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등(대중음악, 대중무용 제외)<br>○ (지원제한) 1인당 최대 14매 한도 (1인×2매×7개 예매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인 **‘미술전시 관람료지원’** 사업은 미술향유 기반 확대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전시 할인쿠폰 3천원권을 160만장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9억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미술전시 관람료지원 사업 개요]

| |
|---|
| ○ (사업목적) 미술전시 할인권 지원을 통한 국민의 미술 전시 접근성 및 문화향유, 미술시장 소비 활성화<br>○ (사업예산) 관람료지원 48억원 및 운영비 1억원, 총 49억원<br>○ (지원내용)<br>- 온라인 티켓예매처를 통한 정액 할인쿠폰 지급(전국권 3천원, 비수도권 5천원)<br>- 현장 할인 참여 기관 모집을 통해 전시별 비정액 쿠폰 지급(1천원~5천원)<br>○ (대상장르) 전국 국공립, 사립 등의 미술관·박물관·전시공간(화랑, 비영리 전시 공간, 문예회관, 문예회관, 미디어아트 전용 전시관, 대규모 전시장 등)에서 진행되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및 아트페어·비엔날레<br>* 대규모 전시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산업 박람회 등은 제외<br>○ (지원제한) 1인당 최대 10매 한도 (1인×2매×5개 예매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연도 중 계획되었음에도 면밀한 계획 수립없이 과거 사업추진 물량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기금운용계획 편성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실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당시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관람료지원(51억원) 및 미술관전시 관람료 지원(49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5년도 실집행 실적을 보면, 실제 지원 규모는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74.5%,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10.1%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 또한 각각 70.7% 및 13.5%로 나타나 실제 사업수요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임.

[2025년 공연 및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장, 백만원)

| 구분 | 발행기간 | 쿠폰 물량 | | | 예산 | | | |
|---|---|---|---|---|---|---|---|---|
| | | 목표 (A) | 집행 (B) | 집행률 (B/A) | 예산액 (a)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불용액 |
| 공연예술 | (1차) '25.8.8.~9.19.<br>(2차) '25.9.25.~12.31. | 451,450 | 336,347 | **74.5%** | 5,100 | 3,604 | 70.7% | **1,496** |
| 미술전시 | (1차) '25.8.8.~9.19.<br>(2차) '25.9.25.~12.31. | 1,600,000 | 162,315 | **10.14%** | 4,900 | 662 | 13.51% | **4,23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은 전년 동기간 티켓 판매량의 6% 수준,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사업은 2020년 추경 당시 지원 규모를 기준(16만장)으로 수요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티켓 판매량 대비 6% 수준을 적용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55] 미술전시 분야의 경우에도 과거 사업 규모를 단순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55)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시장에 과도한 왜곡 없이 관람확대 효과를 유도, 과도한 물량 투입 시 쿠폰 의존 및 가격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는 설명임.

특히 미술전시 수요 산정의 근거로 활용된 2020년 미술전시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최종 사용쿠폰 물량이 목표(16만장) 대비 7.4%, 예산 실집행률도 19.5%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당시 계획 물량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 연내 긴급한 소요에 의해 편성된 추경사업임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56)]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편성 시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계획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등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원실적 저조에 대응하여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복수급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중복발급 방지 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지원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① 발행기간 및 관람기간 연장, ② 예매처 확대, ③ 발행주기 변경 등을 추진하였음.

예매처 확대 과정에서 예매처 간 중복발급 방지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전국 기준으로 예매처별 1인당 2매씩 최대 14매까지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발행방식 또한 주차별 발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주차별 중복수령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음.

---

56) [2020~2021년 공연 및 미술전시 할인쿠폰 집행실적]

(단위: 장, 백만원)

| 구분 | 발행기간 | 쿠폰 물량(장) | | | 예산(백만원) | | | |
|---|---|---|---|---|---|---|---|---|
| | | 목표(A) | 집행(B) | 집행률(B/A) | 예산액(a) | 실집행액(b) | 실집행률(b/a) | 불용액 |
| 공연 | (1차)'20.10.22.~11.23.<br>(2차)'21.5.18.~12.5. | 1,800,000 | 201,780 | 11.2% | 15,880 | 3,054 | 19.2% | 12,826 |
| 미술 | (1차)'20.10.22.~11.22.<br>(2차)'21.11.1.~12.5. | 1,600,000 | 111,005 | 7.4% | 5,200 | 1,013 | 19.5% | 4,18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인이 최대 30매의 할인쿠폰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사업에서도 동일인이 최대 17매의 할인쿠폰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사업의 한정된 사업기간(6개월)으로 인해 예매처 간 중복발급 방지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반복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혜택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공연예술 관람료지원 사업 변경 내용]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최초 계획</th><th colspan="2">변경 계획</th></tr>
<tr><th>공연예술</th><th>미술전시</th><th>공연예술</th><th>미술전시</th></tr>
<tr><td colspan="2">발행기간</td><td colspan="2">1차 '25.8.8.~9.19.</td><td>2차 '25.9.25.~12.31.</td><td>2차 '25.9.25.~12.31.</td></tr>
<tr><td colspan="2">관람기간</td><td colspan="2">~'25. 11. 30일까지 관람하는 공연・전시</td><td colspan="2">~ '25. 12. 31일까지 관람하는 공연・전시</td></tr>
<tr><td rowspan="4">쿠폰 금액</td><td rowspan="2">전국</td><td>1인당 2매, 10,000원</td><td>1인당 2매, 3,000원</td><td>1인당 2매, 10,000원</td><td>1인당 2매, 3,000원</td></tr>
<tr><td colspan="2">5개 예매처</td><td colspan="2">7개 예매처</td></tr>
<tr><td rowspan="2">비수도권</td><td>1인당 2매, 10,000원</td><td>1인당 2매, 3,000원</td><td>1인당 2매, 15,000원</td><td>1인당 2매, 5,000원</td></tr>
<tr><td colspan="2">1개 예매처</td><td colspan="2">4개 예매처</td></tr>
<tr><td colspan="2">발행주기</td><td colspan="2">1차 발행기간 내 1회</td><td colspan="2">주차별 총 10회 중복수령 가능</td></tr>
<tr><td colspan="2">단체관람[57]</td><td colspan="2">-</td><td>비수도권 초중고 단체관람 대상 1인 관람료 15,000원 지원 약 3만장 (4.5억원)</td><td>-</td></tr>
</tabl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사업의 개인별 평균 쿠폰 사용량이 1.8매 수준으로 나타나 중복수령이 크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전체 평균 수준일 뿐, 제도적으로 동일인의 반복 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58]

57) 단체관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지원금 1차(8.8.~9.19.) 사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비수도권에서의 사용량이 저조하여 지역간 형평성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학생의 공연 관람지원(1인당 1매)를 추진하였고, 164개 학교 4,703명의 단체관람(4,703장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임.

58)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복 발급이 관리되지 않은 동일한 사업 구조 하에서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관람료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추진 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변경이 지원 혜택의 편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예매처 간 중복발급 방지체계 등 기본적인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및 재산요건 강화 필요 등

## 가. 개 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하여 자생적 생활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8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9]

[2025년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 18,000 | 18,000 | - | 18,000 | 18,000 | - | - | 60,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보유자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60](기타공공기관)의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확정되며, 이후 재단이 직접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59)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1761-305)(예술정책관)

60) 이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서, 기금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타공공기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기타공공기관)에 사업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구조를 가짐.

[2025년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 구 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
|---|---|---|
| | 생활안정자금 | 전세자금 |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61] 보유자 | |
| 융자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 전세자금 |
| **소득기준** | **긴급생활자금 용도에 한하여,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원 이하** | **신청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25년 3,444만원, '26년 3,692만원)** |
| **재산기준** | **-** | **본인 및 배우자 전원 무주택자** |
| 대출한도 | 700만원 이내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500만원 이내) |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
| 융자기간 | 3년 (거치기간 최대 1년 포함) | 2년 (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 대출금리 | 2.5% | 1.9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현행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재산요건이 미흡하여 실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산요건 보완 등 지원대상 선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예술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결혼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 및 긴급생활자금) 및 전세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하는 것이나, 융자 심사 시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심사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는, 소득요건의 경우 긴급생활자금 용도에 한하여 '직전년도 개인소득 2,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두고 있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부재한 상황임.

61)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 수입 및 분야별 활동 실적을 심사하여 발급함.

‘전세자금’에 있어서는, 소득요건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요건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전원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타 지원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반영한 자산가액 요건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경제적 취약계층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62]

이와 같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융자가 지원될 경우, 한정된 융자재원 하에서 실제 금융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63]

실제 2025년 융자지원을 받은 예술인의 소득 현황을 보면, 최고 소득이 연 8,820만원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은 예술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62) [주요 전세자금 대출 요건 비교]

| 구 분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br>(문화체육관광부)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br>(국토교통부) |
|---|---|---|
| 소득기준 | 신청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br>중위소득 120% 이하<br>('25년 3,444만원, '26년 3,692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재산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전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br>소득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이하<br>('25년 3억 3,700만원, '26년 3억 4,500만원) |

주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가구 기준
2) 순자산가액 : 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 차감
자료: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누리집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63) 동 사업은 월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2025년에는 금액 기준 경쟁률이 유형별로 각각 약 1.22:1 및 1.01:1로 나타났으며, 융자 예산도 모두 소진되는 등 지원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됨.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 융자사업집행부문 | | | | | | |
|---|---|---|---|---|---|---|---|
| | 융자사업 예산 | 신청 | | 융자지원 | | 경쟁률 | |
| |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 생활안정자금 | 9,000 | 10,947 | 2,168 | 9,000 | 1,901 | 1.22:1 | 1.14:1 |
| 전세자금 | 9,000 | 9,050 | 115 | 9,000 | 114 | 1.01:1 | 1.01:1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융자지원 예술인 소득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 용도 | 소득평균 | 최솟값 | 하위 25% | 중앙값 | 상위 25% | 최댓값 |
|---|---|---|---|---|---|---|---|
| 생활안정자금 | 긴급생활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장례비 | 557 | - | 119 | 412 | 841 | **8,820** |
| 전세자금 | 주택 전세자금 | 672 | - | 177 | 497 | 966 | 3,051 |

주) 2025년 실제 지원자의 연소득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보장정보원 등 소득정보 연계기관과의 전산 연계가 어려워 현재 확보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설명임.

동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인까지 저리의 정책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정된 재원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므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음.[64]

**둘째, 동 사업은 최근 연체율 및 부실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융자금 회수 재원이 신규 융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기금 운용 구조를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채권관리 체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원리금의 연체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연체율 및 부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1~2025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연체 및 부실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신규 공급액 | 기말 대출잔액 (A) | 연체액 (B) | 연체율 (B/A) | 부실금액 (C) | 부실률 (C/A) | 누적 | | |
|---|---|---|---|---|---|---|---|---|---|
| | | | | | | | 누적 공급액 | 누적 회수액 | 누적 회수율 |
| 2021 | 19,810 | 39,524 | 130 | 0.3 | 516 | 1.3 | 45,322 | 5,803 | 12.8 |
| 2022 | 22,482 | 51,661 | 373 | 0.7 | 660 | 1.3 | 67,804 | 16,129 | 23.8 |
| 2023 | 21,000 | 59,704 | 1,013 | **1.7** | 1,746 | **2.9** | 88,804 | 29,058 | 32.7 |

64)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산기준 추가 도입은 국가 행정망과의 연계가 어려운 기관 특성상 행정적 한계가 존재하고, 다만 소득기준이 생활안정자금 중에서는 긴급생활자금 유형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내 타 유형에 대한 소득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신규 공급액 | 기말 대출잔액 (A) | 연체액 (B) | 연체율 (B/A) | 부실금액 (C) | 부실률 (C/A) | 누적 | | |
|---|---|---|---|---|---|---|---|---|---|
| | | | | | | | 누적 공급액 | 누적 회수액 | 누적 회수율 |
| 2024 | 18,000 | 59,953 | 1,787 | **3.0** | 2,376 | **4.0** | 106,804 | 46,724 | 43.7 |
| 2025 | 18,000 | 61,091 | 2,293 | **3.8** | 2,922 | **4.8** | 124,804 | 63,453 | 50.8 |

주 1) 연도별 기말 기준
2) 연체액: 연체 1회차 이상(연체 31일 이상) 연체원금
3) 부실금액: 연체 3회차 이상(연체 90일 이상) 대출잔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고정' 이하 여신에 해당
4) 누적회수액: 누적 원금 회수액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융자 방식의 지원정책으로 차입자의 상환을 전제로 운영한다는 점, 상환된 융자원금이 신규 융자재원으로 활용되는 순환구조[65]를 갖고 있어 채권 회수 여부가 추후 사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체 및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동 사업의 운영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채권관리 인력은 1인에 불과하고, 의무 금융교육 또한 일반적인 금융상식 위주로 운영되는 등 채무이행에 대한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66]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채권관리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차입자의 상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금융교육을 마련하는 등 채권관리 체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65) 동 사업 융자금의 재원은 융자원금 회수액과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전액 구성됨.
[2021~2025년 융자금 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 융자원금회수 | - | 7,000 | 9,783 | 14,781 |
| 복권기금 전입금 | 23,000 | 14,000 | 8,217 | 3,219 |
| 합 계 | 23,000 | 21,000 | 18,000 | 18,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6) 현재 대출 심사 시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의 예술인복지재단 기관 맞춤형 교육(총 8개 강의 중 1개 선택)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맞춤형 교육용 강의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신용관리', '집 계약할 때 알아두면 좋은 비법', '예술인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등 일반적인 금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제도의 이해 및 상환 관리 교육 목적으로는 한계가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 15.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연례적인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개선 필요

### 가. 개 요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관광 수요의 균형적 분산과 국내여행 총량 확대를 위해 국민 대상 여행가는 달 캠페인 및 숙박할인권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68억 7,900만원 중 1,068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7]

[2025년도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국내관광 역량 강화 | 42,780 | 106,879 | - | 106,879 | 106,851 | - | 28 | 83,653 |
| 국내관광 캠페인 | 8,193 | 55,893 | - | 55,893 | 55,865 | - | 28 | 24,847 |
| 숙박할인권 지원 | - | 47,699 | - | 47,699 | 47,699 | - | - | 15,203 |
| 국민관광지원 | 26,886 | 43,286 | - | 43,286 | 43,286 | - | - | 50,406 |
| 근로자 휴가 지원 | 7,000 | 15,900 | - | 15,900 | 15,900 | - | - | 14,9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내역사업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지역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2만원권 13만장, 3만원권 129만장, 5만원권 8만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76억 9,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 되었음.

67) 관광진흥개발기금-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관광정책실)

내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59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 되었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소속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자부담 20만원에 기업분담금 10만원과 정부 분담금의 합을 적립금 포인트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나. 검토의견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과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수요를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 변경을 통한 반복적인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①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기금변경을 통해 사업을 신규·확대 추진해왔으며, 2025년에도 당초 사업예산이 없었으나 총 4차례의 기금변경을 통해 총 477억원 규모(150만장)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기금변경 현황]

| 구 분 | |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변경액 | 쿠폰수량 (증가분) |
|---|---|---|---|---|---|
| 2024 | 1차 변경 (자체) (2.2.) | 설 민생 안정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34억원 | 11만장 |
| | 2차 변경 (자체) (4.24.) | 2024 경제정책방향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72억원 | 25만장 |
| | 3차 변경 (자체) (8.23.)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60억원 | 20만장 |

| 구 분 | |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변경액 | 쿠폰수량 (증가분) |
|---|---|---|---|---|---|
| | 4차 변경<br>(자체)<br>(9.23.) | 추석<br>민생안정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br>및 내수진작 | 89억원 | 30만장 |
| 2025 | **1차 변경<br>(자체)<br>(1.23.)** | **2025년<br>경제정책방향,<br>설 민생안정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br>및 내수진작** | **298억원** | **100만장** |
| | **2차 변경<br>(자체)<br>(5.20.)** | **산불 피해 및<br>여객기 참사<br>피해지역 지원** | **산불 피해 및<br>여객기 참사 피해지역<br>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18억원** | **-<br>(기존 10만장에 대한<br>지원단가 상향)** |
| | **3차 변경<br>(국회의결)<br>(7.4.)** | **지역 관광<br>확대 및 내수활성화<br>(추경)** | **지역 관광 활성화<br>및 내수진작** | **147억원** | **50만장** |
| | **4차 변경<br>(자체)<br>(10.20.)** | **추석 민생안정대책** | **산불 피해 및<br>여객기 참사 피해지역<br>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14억원** | **-<br>(기존 8만장에 대한<br>지원단가 상향)**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②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연례적으로 기금 변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당초 70억원을 편성하여 6만 5,000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기금변경을 통해 총 150억원(15만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음.

[2023년~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기금변경 현황]

| 구 분 | |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변경액 | 목표 지원인원 |
|---|---|---|---|---|---|
| 2023 | 1차 변경<br>(자체)<br>(4.24.) | 2023 내수활성화 | 내수진작 | 50억원 | 추가 5만명 ×10만원 |
| 2024 | 1차 변경<br>(자체)<br>(8.23.) | 2024 경제정책방향 | 내수진작 | 60억원 | 추가 6만명×10만원 |
| **2025** | **1차 변경<br>(자체)<br>(5.20.)** | **설 민생안정대책** | **내수진작** | **89억원** | **추가 8.5만명<br>×10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두 사업 모두 특정 재난이나 일회성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지역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실상 사업 확대 수요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계획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국회는 과거 시정요구를 통해 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으나, 2026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일한 사업이 재차 확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 및 내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경우 2027년에는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관련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구분 | |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
| 2024 | 시정요구명 | (34)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한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 시정 필요 |
| | 지적사항 |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계획액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및 변경안**을 통해 집행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함<br>(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지적되어 왔고, 2022년 평가 결과 '감축'으로 결정된 바 있음 |
| | 시정요구사항 |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사실상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br>(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 2024년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계획액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매년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집행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것 |
| | 조치결과 |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2026년 숙박할인권 사업 **본예산 편성 완료**<br>- 총 20만장(3,963백만원), 지방비 50% 매칭<br>○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26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여 편성함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수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적정 규모를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반복적인 사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6.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사업구조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가. 개 요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으로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0억원 중 39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1%)되었고, 10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68][69]

[2025년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 591,863 | 593,500 | - | 593,500 | 592,352 | - | 1,148 | 844,066 |
| 이차보전 운영지원 | 5,000 | 5,000 | - | 5,000 | 3,909 | - | 1,091 | 6,203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8)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관광정책관)

69)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융자·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세 가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26년 관광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신용보증 비교]

| 구 분 | 융자지원 | 이차보전 운영지원 | 신용보증기관 출연 |
|---|---|---|---|
| 지원방식 | 은행을 통해 융자금 전대 |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 보전 | 신용보증 |
| 적용이율 | 기준금리 또는 기준금리에서 0.75~1.25%p 차감 | 은행 규정에 따른 금리 중 3% 또는 2.5%p 보전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 융자분야 | 시설·운영자금 | 시설·운영자금 | 운영자금 |
|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13년(거치기간 5년 포함) | 3년(만기일시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6년(거치기간 3년 포함) |
| 대출한도 | 최대 150억원 이내 | 최대 150억원 이내 | 최대 2억원 이내 |
| 지원규모 (당초) | 6,375억원 | 62억원 | 10억원 |

주) 재정경제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관광사업자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 융자를 신청하면,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중 12개 취급은행에서 담보심사 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을 취급은행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차보전은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에 따라 운영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간 지원되며, 해당 기간 동안 융자금 상환 시까지 동일한 이차보전율이 적용됨. 2023년부터 매년 신규 대출 실행 한도를 1,000억원 규모로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에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은 1차년도 자금 실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계획 대비 집행률은 2023년 1.5%, 2024년 28.0%로 저조하였으며, 2025년에도 계획액 50억원 중 39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8.2%에 그쳤음.

[2023~2025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구 분 | 신규 대출 | | | | 전체 누적 | | 계획액 | 이차보전 지원액 | 집행률 |
|---|---|---|---|---|---|---|---|---|---|
| | 신청건수 | 신청금액 | 실행건수 | 실행금액 | 건수 | 금액 | | | |
| 2023 | 31 | 21,204 | 23 | 15,711 | 23 | 15,711 | 2,500 | 37 | **1.5** |
| 2024 | 74 | 89,222 | 56 | 76,169 | 79 | 91,880 | 5,000 | 1,401 | **28.0** |
| 2025 | 126 | 144,331 | 105 | 98,423 | 184 | 190,303 | 5,000 | 3,909 | **78.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예산 편성 근거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및 2024년 선정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를 1,000억원, 2025년 신규 선정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를 1,000억원으로 가정한 후, 이차보전율 2.5%p를 일괄 적용하여 총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70)]

그러나 실제 이차보전 지원금은 선정 이후 대출심사와 담보심사 등을 거쳐 실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기업의 상환에 따라 잔여 대출액이 감소하므로, 실제 이차보전 지원액은 연중 대출액 평잔 규모에 따라 결정됨.

실제로 2023~2025년 선정업체 전체의 계획 기준 대출규모는 2,000억원이었던 반면, 2025년 실제 평잔액은 1,424억 9,000만원으로 계획 기준액 대비 약 71.2% 수준에 그쳤음.

70) [2025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23년~'24년 선정업체 지원: 1,000억원×이차보전율 2.5% = 25억원
○ '25년 선정업체 지원: 1,000억원×이차보전율 2.5% = 25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2025년 선정업체의 대출잔액 추이를 보면, 대출심사·담보심사 등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25년 6월말 655억 4,600만원, 12월말 984억 2,3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초 가정한 대출규모(1,000억원)에 도달하는 데에만 사실상 한 해 전체가 소요되었음.

실제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액은 선정 및 대출 실행 절차에 따라 연중 순차적으로 형성되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예산은 연간 대출규모(1,000억원)가 즉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 발생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023~2025년 선정업체의 대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선정 연도 | 선정 업체수 | 2025 계획 기준액 | 2025 평잔액 | 시점별 대출액 | | |
|---|---|---|---|---|---|---|
| | | | | 2024. 12. | 2025. 6. | 2025. 12. |
| 2023 | 23 | 100,000 | 15,711 | 15,711 | 15,711 | 15,711 |
| 2024 | 56 | | 76,169 | 76,169 | 76,169 | 76,169 |
| 2025 | 105 | 100,000 | 50,610 | - | 65,546 | 98,423 |
| 합 계 | | 200,000 | 142,490 | 91,880 | 157,426 | 190,30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정책 수요와 함께 대출 실행 시기 등 사업 집행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제 소요 예상액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71]

71)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차보전은 적용금리를 취급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실부담 금리가 낮은 일반융자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2026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신규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에는 기존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만 예산에 편성·집행할 계획이라고 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　출〉

## 17.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실제 수요를 반영한 기금 운용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촉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60억원 중 25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6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72)]

[2025년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31,282 | 157,282 | 10 | 157,292 | 156,661 | - | 631 | 118,422 |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 - | 26,000 | - | 26,000 | 25,395 | - | 605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60억원 중 시설 이용료에 해당하는 245억원은 자치단체 경상 보조 사업비(국비 70%)이며, 사업 운영비에 해당하는 15억원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국비 100%)임.

동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의 신청·접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모바일 상품권(5만원)을 지급하고, 대상자는 이를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하게 됨.

72)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체육국)

[2025년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절차]

|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대상자 선정 | ③ 상품권 지급 | ④ 대금 정산 |
|---|---|---|---|---|
| 주체 | 기초연금수급자 | 공단 | 제로페이→선정자 | 공단, 지자체→제로페이 |
| 방식 | 온라인·전화 신청 및 현장접수 | 지자체별 예산 고려하여 선정 후 SMS 발송 통보 |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5만원권 지급(모바일) | (지자체) 선정자 사용금액 납부<br>(공단) 제로페이 수수료 납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실제 수요와 연내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 2025년 실집행률이 29.2%에 그쳤으며 사업 기간 연장에도 최종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수정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29.2%에 그쳤으며, 사업 종료 후 최종(2026년 6월말) 실적 기준으로도 58.3%로 저조함.

[2025년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문화체육관광부 | | | 지방자치단체·국민체육공단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교부 현액 | '25.12월말 기준 | | '26.6월말 기준 | |
| | 당초 | 수정(A) | | | | 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방자치단체) | - | 24,500 | 24,500 | 24,500 | 24,150 | 6,463 | 26.4 | 13,446 | 55.7 |
| 운영비 (국민체육진흥공단) | - | 1,500 | 1,500 | 1,500 | 1,850 | 1,127 | 75.1 | 1,704 | 92.1 |
| 합 계 | - | 26,000 | 26,000 | 26,000 | 26,000 | 7,590 | **29.2** | 15,150 | **58.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 실적 저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사업 도중에 사업계획 변경('25.12.)에 따라 2025년 1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2026년 6월말 종료로 연장(6개월) 하였고,[73]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지원금→운영비, 3억 5,000만원)하였음.

[2025년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 당초 | 변경 |
|---|---|---|
| 사업기간 | 2025년 7월~12월 | 2025년 7월 ~ 2026년 6월<br>**(6개월 연장)** |
| 사업예산 | (지원금) 245억원<br>(운영비) 15억원 | (지원금) 241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감)**<br>(운영비) 18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증)**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원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초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700만명의 10%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미참여·지방비 확보 및 신청자 주소지 검증 절차의 지연 등 예견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 상품권 발급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사·지방비 확보 여건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실제 수요와 연내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음에도 지원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사업 기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계획액이 실제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미흡하게 편성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수요와 연내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73)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6월 30일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2027년 12월까지 집행잔액 등을 최종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18.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부적정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가. 개 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운영, 올림픽공원 시설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29억 5,200만원 중 219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고,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74)]

[2025년도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 23,233 | 22,717 | 235 | 22,952 | 21,950 | 46 | 956 | 15,153 |
| 서울올림픽 기념관 전시공간 복구 | 8,698 | 8,698 | - | 8,698 | 8,698 | - | - | - |
| 올림픽수영장~KSPO DOME 구역 주차개선사업 | 100 | 100 | - | 100 | 100 | - | - | 338 |
| 올림픽공원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연구 용역 | 300 | 300 | - | 300 | 300 | - | -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 복구’**(2023~2026)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스포츠·올림픽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86억 9,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

내역사업인 **‘올림픽수영장~KSPO DOME 구역 주차개선사업’**(2025~2028)은 주차면수 확보 및 주차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74) 국민체육진흥기금-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5364-303)(체육협력관)

내역사업인 **‘올림픽공원 복합문화공간 기능강화 연구용역’**(2025)사업은 올림픽공원의 노후시설 개선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 나. 검토의견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사업준비 미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발주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업 내용·관련 절차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국민체육공단의 2025년 실집행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154억 4,8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349억 7,000만원 중 167억 8,3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48.0%로 저조하고 180억 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문화체육관광부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당초 | 수정 | | | | | | | | |
|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 19,522 | 19,522 | 19,522 | 19,522 | **15,448** | **34,970** | **16,783** | **18,023** | 108 | **48.0** |
| 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 복구 | 8,698 | 8,698 | 8,698 | 8,698 | 668 | 9,366 | 3,857 | 5,403 | 106 | 41.2 |
| 올림픽수영장~KSPO DOME 구역 주차개선 | 100 | 100 | 100 | 100 | - | 100 | 47 | 53 | - | 47.0 |
| 올림픽공원 복합문화공간 기능강화 연구용역 | 300 | 300 | 300 | 300 | - | 300 | 133 | 167 | - | 44.3 |
| 올림픽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 | 4,893 | 4,893 | 4,893 | 4,893 | 14,780 | 19,673 | 8,452 | 11,165 | - | 43.0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문화체육관광부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당초 | 수정 | | | | | | | | |
| KSPO 스포츠 가치센터 운영 | 5,023 | 5,023 | 5,023 | 5,023 | - | 5,023 | 3,788 | 1,235 | - | 75.4 |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 | 508 | 508 | 508 | 508 | - | 508 | 506 | - | 2 | 99.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 내의 2025년도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공사구간 매장유산 발굴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례도 있으나, 설계안 변경·사전작업에 따른 용역발주시점 지연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사례가 총 4건 중 3건에 해당함.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사업 중 실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2025년 | | | 부진사유 |
|---|---|---|---|---|
| | 교부현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
| **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 복구** | **9,366** | **3,857** | **37.9** | **설계안 변경에 따른 용역 과업기간 연장** |
| **올림픽수영장~KSPO DOME 구역 주차개선** | **100** | **47** | **47.0** |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용역 발주시점 지연** |
| **올림픽공원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연구용역** | **300** | **133** | **44.3** | |
| 올림픽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 | 19,673 | 8,452 | 43.0 | 공사구간 매장유산 발굴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 복구' 사업은 전시 주제 변경에 따른 재설계 및 방재실 공간 재배치 등을 사유로 2025년 12월에 이르러 설계안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졌으나 전시 주제 및 범위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핵심사항으로서 이러한 변경이 연말에서야 이루어진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올림픽수영장~KSPO DOME 구역 주차개선’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전문가 자문 및 세부과업 조정 등을 사유로 2025년 11월에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주변 지역이 문화재 관련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역시 초기 사업 계획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75]

또한 ‘올림픽공원 복합문화공간 기능강화 연구용역’의 경우 대관 수요자 의견수렴·세부과업 구체화 등의 준비작업을 예산 편성 이후에 사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및 사전규격 수정공고 등을 거쳐 2025년 9월 25일에야 입찰공고가 이루어졌음.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상당 부분 사업 착수 이전에 검토하거나 일정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바, 전반적으로 사전계획 수립 및 사업 일정관리가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76]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업 내용·관련 행정절차 및 추진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 및 과도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75)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공원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가 자주 발견되는 지역으로 관련 법령(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및 서울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국가유산청과의 자문 및 협의가 필요하였다고 설명함.

76)「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 19.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실수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필요 등

## 가. 개 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및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637억 3,000만원 중 1,123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6%)되고, 514억원이 불용되었음.[77]

[2025년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 248,057 | 163,730 | - | 163,730 | 112,330 | - | 51,400 | 248,057 |
| 기타민간융자금 | 241,507 | 157,180 | - | 157,180 | 106,807 | - | 50,373 | 241,647 |
| 이차보전금 | 6,550 | 6,550 | - | 6,550 | 5,523 | - | 1,027 | 6,41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타민간융자금’** 은 체육시설업체·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은행을 통해 시설설치자금·개보수자금·설비자금을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5~10년, 거치기간포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571억 8,000만원 중 1,068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0%)되고, 503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차보전금’** 은 체육시설업체·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연구개발자금 대출 시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2.5%p,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경우 3.0%p)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65억 5,000만원 중 55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3%)되고, 10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77)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5365-300)(체육국)

## 나. 검토의견

**첫째,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가용예산 규모를 역산하여 융자 한도를 설정하거나, 대출 상환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소요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등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① 기타민간융자금은 당초 계획액 대비 실제 집행액은 1,068억 700만원에 그쳐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44.2%에 불과하였으며, ② 이차보전금의 경우 65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55억 2,3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84.3%로 나타남.

[2025년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획액 | | 집행액 (C) |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C/A) | 수정 계획 대비 집행률 (C/B) | 불용액 | 2026년도 계획액 |
|---|---|---|---|---|---|---|---|
| | 당초(A) | 수정(B) | | | | | |
| 기타민간융자금 | 241,507 | 157,180 | 106,807 | **44.2** | 68.0 | 50,373 | 241,647 |
| 이차보전금 | 6,550 | 6,550 | 5,523 | **84.3** | 84.3 | 1,027 | 6,41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의 사업연기 및 포기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융자 등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선정 후에도 담보 부족 등으로 실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근거를 보면 ① 기타민간융자금은 기성고 융자 건당 평균 집행액과 신청건수 추세를 반영하여 '가용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한 수혜 규모'를 산출하였고,[78] ② 이차보전의 경우 지원대상 대출 규모 및 이차보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는 설명임.

78)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담보능력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차년도 신청건수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최근 기성고 융자 집행 평균 금액을 활용하여, 가용 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대 수혜 규모를 산출하였다는 설명임.

[2025년도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예산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산출근거 | | 계획액 |
|---|---|---|---|
| 융자 | 당초 | - 건당 581백만원* × 신청건수 415.7건<br>*'21~'23년 3개년 기성고 융자 집행 건당 평균 금액 | 241,507 |
| | 수정 | - 건당 627백만원* × 신청건수 250.7건<br>*'21~'24년 4개년 기성고 융자 집행 건당 평균 금액 | 157,180 |
| 이차보전 | 1) 23년 선정업체 지원규모 **115,002**백만원 × 이차보전율 2.5% = 2,875백만원<br>2) 24년 선정업체 지원규모 **119,000**백만원 × 이차보전율 2.5% = 2,975백만원<br>3) 25년 선정업체 지원규모 **40,000**백만원 × 이차보전율 2.5~3.0%× 70%*<br>= 700백만원<br>*신규의 경우, 공고·신청접수·심의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70% 적용 | | 6,55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내수 부진 상황 및 신청 후 미실행 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기타민간융자의 경우 가용예산 규모를 한도로 역산하여 지원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산출 근거에 있어서도 실제 '지원' 건수가 아닌 '신청' 건수를 반영하여 미실행 대출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음.[79)]

79) [융자 신청·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 신청 | | | 지원 | | |
|---|---|---|---|---|---|---|---|
| |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 전체 융자 | 건수 | **292** | **407** | **385** | **143** | **147** | **170** |
| | 금액 | 287,561 | 362,718 | 350,142 | 76,100 | 112,351 | 106,807 |
| | 건당 금액 | 985 | 891 | 909 | 532 | 764 | 628 |

주) 이차보전 대출액은 이차보전 지원의 대상이 된 대출액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성고 융자 집행건당 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건)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신청건수 | 1,855 | 1,175 | 926 | 292 | 407 | 385 |
| 전체 융자 집행 금액 | 126,100 | 136,100 | 228,900 | 76,100 | 112,351 | 106,807 |
| 기성고 | 64,899 | 92,292 | 180,112 | 76,100 | 112,351 | 106,807 |
| 전체 융자 집행 건수 | 822 | 549 | 488 | 143 | 147 | 170 |
| 기성고 | 131 | 188 | 264 | 143 | 147 | 170 |
| 기성고 융자 집행건당 평균 금액 | 495 | 491 | 682 | 532 | 764 | 628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25년 신규 선정분은 지원 공고상 대출지원 규모(400억원) 중 실제 대출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70%(280억원)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23년 선정분은 대출 상환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선정 규모(1,150억원) 전액을 기준으로, 2024년 선정분은 지원 공고상 지원 규모(1,190억원) 전액을 기준으로 각각 이차보전율(2.5%p)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 규모와 대출 상환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 감소분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80]

이에 2024년 12월말 이미 2023~2024년 선정기업의 대출액(각 1,118억 3,000만원, 786억 2,600만원)은 2025년 지원 계획상의 기준액(각 1,150억원, 1,190억원)에 미달하고, 실제 2025년 총 대출 평잔액도 2,307억 6,300만원으로 계획 기준액(2,620억원)의 88.1%로 나타남.

[2023~2025 이차보전 지원 선정업체의 대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선정 연도 | 선정 업체수 | 2025 계획 기준액 | 2025 평잔액 | 계획 대비 비율 | 시점별 대출액 | | |
|---|---|---|---|---|---|---|---|
| | | | | | 2024. 12. | 2025. 6. | 2025. 12. |
| 2023 | 254 | 115,000 | 104,775 | 91.1 | 111,830 | 108,476 | 95,521 |
| 2024 | 278 | 119,000 | 76,735 | 64.5 | 78,626 | 76,953 | 76,116 |
| 2025 | 253 | 28,000 | 49,253 | 175.9 | - | 46,958 | 70,368 |
| 합 계 | | 262,000 | 230,763 | 88.1 | 190,456 | 232,387 | 242,005 |

주 1) 2025년의 경우 공고·신청접수·심의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400억의 70%(280억원) 적용하여 편성
2) 2025년 평잔액의 경우 분기말 대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가용예산 규모를 역산하여 융자 한도를 설정하거나, 실제 대출 수요를 적정하게 산출하지 못한 결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등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81]

80) 2024년 선정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24년 선정 기업의 실제 융자 실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공고상 대출지원 규모(1,190억원)에 이차보전율(2.5%p)을 적용하여 지원 규모 예측치에 기반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81)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년도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수요 추이를 분석하여 유효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둘째, 기타민간융자금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융자 지원액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가상체험체육시설을 포함한 종목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쿼터제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종목에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사업임에도, 실제 융자 지원은 특정 종목인 특정 종목(골프)에 편중되어 사업 목적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종목별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대중형골프장·골프연습장·비회원제 골프장 및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골프 관련 종목 지원액은 총 680억 5,800만원으로 전체 융자 지원액 1,068억 700만원의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융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 종 목 | | 신청건수 | | 지원 건수 | | 지원금 | |
|---|---|---|---|---|---|---|---|
| |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가상체험 체육시설 | **스크린 골프** | **112** | **29.1** | **66** | **38.8** | **46,386** | **43.4** |
| | 스크린 야구 | - | - | - | - | - | - |
| | 합계 | 112 | 29.1 | 66 | 38.8 | 46,386 | 43.4 |
| **대중형골프장** | | **5** | **1.3** | **5** | **2.9** | **15,527** | **14.5** |
| **골프연습장** | | **54** | **14.0** | **10** | **5.9** | **5,226** | **4.9** |
| **비회원제 골프장** | | **2** | **0.5** | **1** | **0.6** | **587** | **0.5** |
| **파크골프장** | | **3** | **0.8** | **1** | **0.6** | **332** | **0.3** |
| **골프관련 소계** | | **176** | **45.7** | **83** | **48.8** | **68,058** | **63.6** |
| 수영장 | | 33 | 8.6 | 18 | 10.6 | 9,934 | 9.3 |
| 테니스장 | | 33 | 8.6 | 10 | 5.9 | 6,908 | 6.5 |
| 체력단련장 | | 38 | 9.9 | 12 | 7.1 | 5,649 | 5.3 |
| 풋살장 | | 13 | 3.4 | 7 | 4.1 | 3,576 | 3.3 |
| 체육교습업 | | 4 | 1.0 | 9 | 5.3 | 2,728 | 2.6 |
| 인공서핑장 | | 3 | 0.8 | 2 | 1.2 | 1,419 | 1.3 |
| 탁구장 | | 7 | 1.8 | 5 | 2.9 | 1,100 | 1.0 |
| 종합체육시설 | | 4 | 1.0 | 2 | 1.2 | 1,040 | 1.0 |
| 볼링장 | | 8 | 2.1 | 2 | 1.2 | 1,000 | 0.9 |
| 배드민턴장 | | 4 | 1.0 | 1 | 0.6 | 768 | 0.7 |
| 승마장 | | 3 | 0.8 | 1 | 0.6 | 617 | 0.6 |

(단위: 건, %, 백만원)

| 종 목 | 신청건수 | | 지원 건수 | | 지원금 | |
|---|---|---|---|---|---|---|
|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양궁장 | 1 | 0.3 | 1 | 0.6 | 605 | 0.6 |
| 체육도장 | 9 | 2.3 | 1 | 0.6 | 550 | 0.5 |
| 요트장 | 1 | 0.3 | 1 | 0.6 | 500 | 0.5 |
| 스포츠마케팅업 | 1 | 0.3 | 1 | 0.6 | 435 | 0.4 |
| 야구장 | 1 | 0.3 | 1 | 0.6 | 400 | 0.4 |
| 인공암벽장 | 3 | 0.8 | 2 | 1.2 | 318 | 0.3 |
| 축구장 | 1 | 0.3 | 1 | 0.6 | 300 | 0.3 |
| 체육용구생산업 | 1 | 0.3 | 1 | 0.6 | 270 | 0.3 |
| 요가 | 2 | 0.5 | 1 | 0.6 | 149 | 0.1 |
| 필라테스 | 7 | 1.8 | 2 | 1.2 | 113 | 0.1 |
| 농구장 | 1 | 0.3 | 1 | 0.6 | 100 | 0.1 |
| 수상스키장 | 2 | 0.5 | 1 | 0.6 | 80 | 0.1 |
| 스쿼시장 | 3 | 0.8 | 1 | 0.6 | 67 | 0.1 |
| 우수체육용구생산업 | 7 | 1.8 | 1 | 0.6 | 50 | 0.0 |
| 당구장 | 1 | 0.3 | 1 | 0.6 | 50 | 0.0 |
| 기타스포츠교육기관 | 4 | 1.0 | 1 | 0.6 | 23 | 0.0 |
| 스포츠게임업 | 1 | 0.3 | - | - | - | - |
| 스포츠경기업 | 7 | 1.8 | - | - | - | - |
| 롤러스케이트장 | 1 | 0.3 | - | - | - | - |
| 배구장 | 1 | 0.3 | - | - | - | - |
| 사격장 | 2 | 0.5 | - | - | - | - |
| 썰매장 | 1 | 0.3 | - | - | - | - |
| 펜싱장 | 1 | 0.3 | - | - | - | - |
| 합 계 | 385 | 100.0 | 170 | 100.0 | 106,807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 관련 종목은 국민 수요가 높고 시설투자 규모가 크며 담보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융자지원이 집중된 결과이고, 골프 대중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과 같이 이미 사용자 수요가 높거나 담보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많은 분야라면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 융자의 필요성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종목 편중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 종목은 예산대비 50% 이내로 쿼터를 두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가상체험체육시설 제외), 2025년 1월「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체육용구생산업 및 스포츠서비스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정 종목 집중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2025년 기준 지원액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인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을 지원 쿼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지원 편중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음.

또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 종목에 예산의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쿼터 기준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체험체육시설을 포함한 골프 관련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종목별 지원 현황을 관리하고, 쿼터 비율을 재검토하는 등 정책금융이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체육시설 및 스포츠산업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2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시정요구 67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6건·주의 9건·제도개선 54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6 | 8 | 53 | 2 | 65 |
| 예비비 | - | - | - | 1 | 1 | - | 2 |
| 합계 | - | - | 6 | 9 | 54 | 2 | 67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요구사항 67건에 대해 5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7.6%)하고 15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65 | 50 | 76.9 | 15 |
| 예비비 | 2 | 2 | 100.0 | - |
| 합계 | 67 | 52 | 77.6 | 15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문화체육관광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br>본예산 | (23)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관련 국제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경기장의 사업 대상지를 사업부지가 우선 확보된 자치단체에 선정하도록 한다. |
| 2025년도 제1회<br>추경 | (6)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객기 참사 및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숙박할인권 지원 등을 위해 기금변경을 추진한다. |
| 2025년도 제2회<br>추경 | (17) 문화체육관광부는 12·29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및 인접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숙박할인권 특별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 2024회계연도<br>결산 | (33)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선발제도 및 적정 규모에 대해 점검한다. |

##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방식을 검토하고, 계속된 지적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실집행 부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시정요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무실 소관 국고보조금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월별 현장점검 및 집행점검 회의 등을 실시하는 등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52.5%, 2024년 48.8%, 2025년 50.5%에 그치는 등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어,[82] 기존 조치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83]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집행부진 시정요구 조치결과]

| 구분 | 내용 |
|---|---|
| 시정요구명 | (63)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
| 시정요구사항<br>(시정요구수준)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방식을 검토하고, 계속된 지적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을 |

82) [2021~2025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문화체육관광부 | | | | 대한불교조계종·지방자치단체 | | | | | | |
|---|---|---|---|---|---|---|---|---|---|---|---|
| | 예산 | | 이·전용 등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A) | 실집행액 (B)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 2021 | 12,411 | 12,411 | - | 10,967 | 10,967 | 10,619 | 21,586 | 14,866 | 6,667 | 53 | 68.9 |
| 2022 | 9,160 | 9,160 | - | 6,968 | 6,968 | 6,667 | 13,635 | 8,432 | 5,040 | 163 | 61.8 |
| 2023 | 26,026 | 26,026 | △3,750 | 19,440 | 19,440 | 5,040 | 24,480 | 12,853 | 11,389 | 238 | 52.5 |
| 2024 | 33,487 | 33,487 | △2,710 | 29,777 | 29,777 | 11,389 | 41,166 | 20,084 | 20,793 | 289 | 48.8 |
| 2025 | 38.914 | 38,914 | △5,471 | 32,744 | 32,744 | 16,804 | **49,548** | **24,755** | 24,148 | 645 | **50.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3) ‘3. 종교문화시설건립’ 검토의견 관련

| |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
|---|---|
| 조치상황 | 조치완료 |
| 조치결과 | ㅇ 종무실 소관 국고보조금 운용지침 개정 통해 제도개선 완료<br>- ①기본계획 수립 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사업 우선 지원을 통해 사전 준비 강화, ②자부담률 하한(10% 이상) 신설, ③동일 지역에 동일 종교의 당해 연도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1개만 인정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예산편성 되도록 ‘종무실 보조사업 운용지침’ 개정 및 배포 ('24.1.26)<br>ㅇ 집행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4.1~)<br>- 매월 집행률 부진한 현장점검 실시 및 격월마다 집행률 점검 회의 개최 통해 실집행률 밀착관리<br>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29일 |

# 국가유산청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1억 6,100만원(△6.3%)이 적은 62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8,000만원(△7.4%)이 감소함.[1)]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53,417 | 53,417 | 50,068 | △3,349 | 55,451 | 55,451 | 48,515 | △6,936 | △1,553 |
| 기 금 | 10,866 | 10,866 | 17,068 | 6,202 | 10,866 | 10,866 | 13,641 | 2,775 | △3,427 |
| 총수입 | 64,283 | 64,283 | 67,136 | 2,853 | 66,317 | 66,317 | 62,156 | △4,161 | △4,980 |

문의: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7억 2,700만원(△0.8%)이 적은 1조 3,78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5,500만원(2.5%)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206,701 | 1,206,701 | 1,187,158 | △19,543 | 1,243,972 | 1,245,172 | 1,235,881 | △9,291 | 48,723 |
| 기 금 | 159,179 | 159,341 | 157,482 | △1,859 | 143,450 | 144,050 | 142,614 | △1,436 | △14,868 |
| 총지출 | 1,365,880 | 1,366,042 | 1,344,640 | △21,402 | 1,387,422 | 1,389,222 | 1,378,495 | △10,727 | 33,855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54억 5,100만원으로, 684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85억 1,500만원이 수납(수납률 70.9%)되고, 197억 800만원은 미수납되어 1억 9,4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54,534 | 54,534 | - | 54,534 | 67,626 | 47,725 | 19,708 | 19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17 | 917 | - | 917 | 790 | 790 | - | - |
| - 지역지원계정 | 902 | 902 | - | 902 | 729 | 729 | - | - |
| - 지역자율계정 | - | - | - | - | 2 | 2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5 | 15 | - | 15 | 59 | 59 | - | - |
| 합 계 | 55,451 | 55,451 | - | 55,451 | 68,417 | 48,515 | 19,708 | 194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2,706억 3,900만원으로, 1조 2,358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157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9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1,214,364 | 1,215,564 | 25,467 | ±5,329 | - | 1,241,031 | 1,206,352 | 15,775 | 18,90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9,608 | 29,608 | - | ±83 | - | 29,608 | 29,529 | - | 79 |
| 합 계 | 1,243,972 | 1,245,172 | 25,467 | ±5,412 | - | 1,270,639 | 1,235,881 | 15,775 | 18,983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689억 6,900만원으로, 1,941억 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26억 2,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2%)되고, 14억 8,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국가유산보호기금 | 168,969 | 168,969 | 194,105 | 192,622 | 1,483 | - |
| 합 계 | 168,969 | 168,969 | 194,105 | 192,622 | 1,483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690억 1,800만원으로, 1,926억 2,2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4.0%)되고 14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국가유산보호기금 | 168,969 | 168,969 | 49 | 169,018 | 192,622 | - | 1,484 |
| 합 계 | 168,969 | 168,969 | 49 | 169,018 | 192,622 | - | 1,484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유산청 자산은 전년 대비 286억 2,000만원이 증가된 1조 1,888억 7,1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94억 1,100만원, 유무형자산이 139억 9,900만원, 기타자산이 52억 1,0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억 1,300만원 증가한 956억 6,600만원으로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가 5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차입부채가 3,2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81억 700만원 증가한 1조 932억 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2,144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억 6,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1,294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4억 8,500만원 감소함.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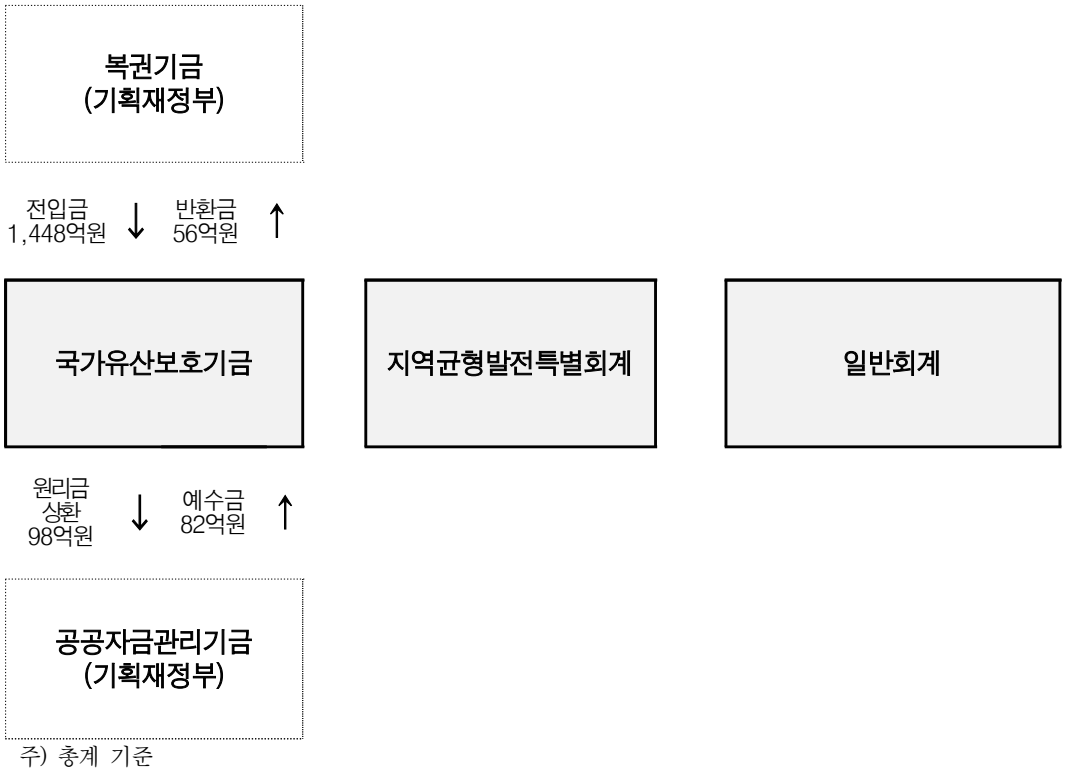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1,188,871 | 1,160,251 | 28,620 | 2.5 |
| | | 금융자산 | 61,269 | 51,858 | 9,411 | 18.1 |
| | | 유무형자산 | 1,097,244 | 1,083,245 | 13,999 | 1.3 |
| | | 기타자산 | 30,358 | 25,148 | 5,210 | 20.7 |
| | 부 채 | | 95,666 | 95,153 | 513 | 0.5 |
| | | 차입부채 | 93,362 | 93,394 | △32 | 0.0 |
| | | 충당부채 | 13 | - | 13 | 순증 |
| | | 기타부채 | 2,291 | 1,759 | 532 | 30.2 |
| | 순자산 | | 1,093,205 | 1,065,098 | 28,107 | 2.6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214,467 | 1,246,530 | △32,063 | △2.6 |
| | 재정운영순원가 | | 1,268,796 | 1,317,618 | △48,822 | △3.7 |
| | 재정운영결과 | | 1,129,468 | 1,168,953 | △39,485 | △3.4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와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으며,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448억원을 전입 받고, 56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2억원을 예수하였고 98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 국가유산청은 ‘미래가치를 품고 도약하는 국가유산 체계 구현’을 목표로 ①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② 국가와 지역 발전의 신성장동력이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확대, ③ 세계 속의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 강화까지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총 104개 세부사업에서 국가유산 보수정비・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강화・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총액인건비제 운영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국가유산청은 인건비 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자체재원 활용계획에 기반한 인력・예산 운용을 통해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임.

둘째,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2025년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2026년 사업 종료예정이므로, 국가유산청은 단축된 사업기간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에는 주민편의 및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과 유사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바, 국가유산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분담 측면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범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관련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2025년도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고,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도 분할교부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관련 지침의 철저한 준수 필요 등

### 가. 개 요

총액인건비 제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연구원 운영’·‘해양유산연구소 운영’·‘궁능유적본부 운영’ 및 ‘국가유산행정지원’ 등 4개 프로그램의 총 15개의 세부사업을 총액인건비대상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음.[2)]

국가유산청 총액인건비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1,234억 7,600만원 중 1,221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3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 일반회계-국립문화유산연구원인건비(총액)(3102-101)(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일반회계-국립문화유산연구원기본경비(총액)(3118-211)(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일반회계-해양유산연구소인건비(총액)(3502-102)(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일반회계-해양유산연구소기본경비(총액)(3518-212)(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일반회계-궁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3601-101)(궁능유적본부)
일반회계-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3618-211)(궁능유적본부)
일반회계-인건비(총액)(7101-101)(기획조정관)
일반회계-본청기본경비(총액)(7111-201)(운영지원과)
일반회계-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7101-102)(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7118-20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7118-202)(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현충사기본경비(총액)(7118-204)(현충사관리소)
일반회계-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7118-206)(칠백의총관리소)
일반회계-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7118-207)(국립무형유산원)
일반회계-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7118-209)(만인의총관리소)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문화유산연구원 운영(3100) | 18,889 | 18,889 | ±281 | 18,889 | 18,741 | - | 148 | 20,534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인건비(총액) | 15,947 | 15,947 | ±135 | 15,947 | 15,844 | - | 103 | 17,013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경비(총액) | 1,992 | 1,992 | ±138 | 1,992 | 1,968 | - | 24 | 2,481 |
| 해양유산연구소 운영(3500) | 7,568 | 7,568 | ±16 | 7,568 | 7,466 | - | 102 | 7,847 |
| 해양유산연구소인건비(총액) | 6,315 | 6,315 | - | 6,315 | 6,262 | - | 53 | 6,484 |
| 해양유산연구소기본경비(총액) | 300 | 300 | - | 300 | 280 | - | 20 | 313 |
| 궁능유적본부 운영(3600) | 16,312 | 16,312 | 290 | 16,602 | 16,420 | - | 182 | 16,375 |
| 궁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 | 14,738 | 14,738 | 290 | 15,028 | 14,909 | - | 119 | 15,024 |
|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 | 210 | 210 | - | 210 | 199 | - | 11 | 210 |
| 국가유산행정지원 (7100) | 79,476 | 80,676 | △259 | 80,417 | 79,498 | - | 919 | 51,121 |
| 인건비(총액) | 38,503 | 38,503 | △190 | 38,313 | 38,026 | - | 287 | 40,333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총액) | 7,798 | 7,798 | △70 | 7,698 | 7,558 | - | 140 | 8,280 |
| 본청기본경비(총액) | 1,516 | 1,516 | 19 | 1,535 | 1,532 | - | 2 | 1,523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총액) | 192 | 192 | △3 | 189 | 186 | - | 3 | 192 |
|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 | 154 | 154 | ±3 | 154 | 138 | - | 16 | 161 |
| 현충사기본경비(총액) | 509 | 509 | ±0.0 | 509 | 461 | - | 48 | 554 |
|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 | 19 | 19 | +3 | 22 | 22 | - | - | 19 |
|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 | 40 | 40 | ±2 | 40 | 37 | - | 2 | 40 |
|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 | 19 | 19 | - | 19 | 19 | - | - | 19 |
| 합 계 | 122,245 | 123,445 | 31 | 123,476 | 122,125 | - | 1,351 | 95,87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유산청은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사업의 예산을 대상 사업으로 전용하여 인건비 소요를 충당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위반하는 집행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향후 인건비 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해야 함.[3)]

2025년도 국가유산청의 이·전용 내역을 보면,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이 아닌 '본청기본경비(7111-251)' 사업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인 '본청기본경비(총액)(7111-201)' 사업으로 총 1,87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 중 1,080만원은 수시직제 개정에 따라 발생한 예산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된 것임.

---

3)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p.4-p.5)

1. 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4)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3)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2025년 본청 총액인건비 사업 관련 이·전용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자체전용 ('25.11.5.) | **본청기본경비** (7111-251) | 임차료 (210-07) | 18,700 | **본청기본경비 (총액)** (7111-201) | 직책 수행경비 (250-02) | · **수시직제 (역사유적정책관 신설)**<br>· 4급 복수직급 결원 보충 |

주) 수시직제 개정에 따른 총 예산 소요액은 1,080만원이고 4급 복수직급 결원 보충에 따른 소요액은 810만원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지침」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전용에 해당하며, 특히 수시직제 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는 것임.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담당자가 동일한 물건비(200) 내 세목이라는 이유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상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예산편성 시 조직개편 등 인력운영에 따른 총액인건비 소요를 면밀히 계획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시에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궁능유적본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과 상이한 인력 운영으로 인해 인건비 부족 및 이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자체재원 절감 및 활용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인력과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한도 내에서 조직·보수 및 예산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되, 그 결과를 환류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에 국가유산청의 총액인건비 시행기관(본청·궁능유적본부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침에 따라 직제상의 기준정원과 별도로 운영정원을 두는 등 인력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되, 시행기관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에 수반되는 재원은 의도적 절감 노력으로 확보하여야 함.[4)5)]

---

4) 국가유산청 총액인건비제 수행기관 구분

| | |
|---|---|
| 총액인건비제 수행기관 | 국가유산청 (**본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
| | **궁능유적본부** |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자료: 국가유산청

5)「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 보수분야 세부 운영방안
2) 총액인건비 재원 활용 방안
①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조정, 성과 상여금 및 성과연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추가 지급, 맞춤형복지 예산증액 또는 인력증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 | | |
|---|---|---|
| 인건비 | 기본항목 | 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
| | 자율항목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

3. 조직·정원분야 세부 운영방안 (p.12)
1) 조직·정원 운영의 원칙
③ 각 시행기관은 통칙 제4조2항에 따라 직제에 규정해야 하는 정원을 그대로 반영한 계급별·직급별 정원(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과 이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정원을 신설·조정하는 경우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을 직제시행규칙에 각각의 정원표로 규정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따라 **자율적인 기구·인력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도적 절감 노력에 의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5년도 궁능유적본부의 경우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3,936만원을 절감하여 직급조정에 3,910만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음.

[2025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상 의도적 절감 및 절감재원 활용 계획]

| 구 분 | 계획 | 실제 |
|---|---|---|
| 궁능유적본부 | ○ 의도적 절감 계획액 **3,936만원**<br>- 초과근무수당 2,922만원<br>- 연가보상비 1,014만원 | ○ 의도적 절감액 **10,489만원**<br>- 초과근무수당 5,411만원<br>- 연가보상비 5,078만원 |
| | ○ 절감액 집행계획 **3,910만원**<br>- 직급조정 3,910만원<br>* 7 → 6급 1인 / 6 → 5급 3인 | ○ 절감액 집행액 **3,910만원**<br>- 직급조정 3,910만원<br>* 7 → 6급 1인 / 6 → 5급 3인 |
| | | ○ 추가 이용 **2억 9,000만원**<br>(급여)<br>- 예산편성 기준정원 대비 직급별 인원 차이<br>(기준) 7급 26명, 9급 85명<br>(지급) 7급 74명, 9급 31명<br>- 공로연수자, 질병·유학 휴직자 발생<br>(수당)<br>- 가족·육아휴직 수당 등 증가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도 예산집행 결과, 의도적 절감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본부는 예산 편성 시 기준정원 대비 직급별 인원 차이, 공로연수 및 질병휴직 등을 사유로 사유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여 2억 9,000만원을 이용하였음.[6)]

구체적으로 근속승진 소요에 따라 기준인원(7급 26명, 9급 85명)과 지급인원(7급 74명, 9급 31명) 간 차이에 따라 급여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가족 가족·육아휴직 수당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2억 9,000만원을 이용(증)하였음.

6) [2025년 궁능유적본부 총액인건비 사업 관련 이용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승인이용 ('25.11.20.) | **인건비(총액) (7101-101)** | 보수 (110-01) | 190,000 | **궁능유적본부 인건비 (총액) (3601-101)** | 보수 (110-01) |
| 승인이용 ('25.11.20.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총액) (7101-102)** | 보수 (110-01) | 100,000 | | 보수 (110-01) |
| 합 계 | | | 290,000 | |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025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가족·육아휴직 등 예측이 어려운 인력 변동과 현안업무 대응하기 위한 인사조치 과정에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인건비 예산을 이용하였다는 설명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자체 절감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근속승진 및 기준정원 외 인력 운영에 따른 부족 재원을 타 사업 예산의 이용으로 충당한 것은 「총액인건비제 운영 지침」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궁능유적본부의 경우 독립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국가유산청 본청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인건비 예산을 이용하여 부족 재원을 충당한 것은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7)]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시행기관별 자체재원 절감·활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력과 예산을 운용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궁능유적본부는 궁궐·왕릉 유적의 개방·관람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등 대국민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현장인력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임. 또한 본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궁능유적본부는 모두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라는 동일 정책 목표를 수행하고 있고 국가유산청 전체의 관점에서 통합적 인력 운영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임.

## 2.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기준의 정비 필요

### 가. 개 요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위원회는 총 121회(각 83회·19회 및 19회)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예산의 결산 내역을 보면,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 4,600만원 중 13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고, 1억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8)]

[2025년도 위원회(문화·자연·무형유산) 운영예산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문화유산위원회 | 1,303 | - | - | - | 1,303 | 1,239 | - | 102 | 1,271 |
| 국가유산보존 관리정책강화 | 202 | - | - | - | 202 | 189 | - | 13 | 216 |
|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동산) | 148 | - | - | - | 148 | 148 | - | - | 150 |
|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건축) | 113 | - | - | - | 113 | 129 | - | - | 118 |
| 사적관리 | 195 | - | - | - | 195 | 189 | - | 6 | 142 |
| 매장유산보존 | 371 | - | - | - | 371 | 337 | - | 34 | 371 |
| 근현대 및 국가 민속유산관리(근현대) | 94 | - | - | - | 94 | 68 | - | 25 | 94 |
| 근현대 및 국가 민속유산관리(민속) | 80 | - | - | - | 80 | 57 | - | 23 | 80 |
| 세계유산등재 | 24 | - | - | - | 24 | 24 | - | 0.2 | 24 |

8) 일반회계-무형유산보호(1431-301)(무형유산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 년 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및 보존관리 | | | | | | | | | |
| 궁궐유산 관리운영 | 75 | - | - | - | 75 | 75 | - | - | 75 |
| 자연유산위원회 | 94 | - | - | - | 94 | 88 | - | 5 | 94 |
| 자연유산보존관리 | 94 | - | - | - | 94 | 88 | - | 5 | 94 |
| 무형유산위원회 | 30 | - | - | 19 | 49 | 49 | - | - | 30 |
| 무형유산보존관리 | 30 | - | - | 19 | 49 | 49 | - | - | 30 |
| 합 계 | 1,427 | - | - | 19 | 1,446 | 1,376 | - | 107 | 1,39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위원회 수당의 내부 지급 기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지급 요건이 상이하여 수당 지급기준의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내부 지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의 경우 ① (기본 참석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참석 시간에 따라 1일당 15~20만원 이내로 지급하되, ② (추가 자문료 등)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자료수집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9)]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내부 기준인 「문화유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보면, 추가 자문료를 참석 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문료가 지급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문화유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 구 분 | 금액 | 비고 |
|---|---|---|
| 2시간 미만 | 25만원(참석비 15 + **자문료 10**) | 비과세 |
| 2~3시간 | 35만원(참석비 20 + **자문료 15**) | |
| 3시간 초과 | 40만원(참석비 20 + **자문료 20**) | |
| * 「 '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사항 반영 (150쪽 차. 위원회 참석비)<br>- 위원회 참석비 2시간 이내 15만원(서면심사시 10만원) + 1일 1회 5만원 추가(2시간 추가 시) | |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0)
1-1. 일반수용비(210-3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2025년도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참석위원에게 회당 25만원에서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어 참석위원 모두에게 추가 자문료가 지급되었고, 추가 자문료가 참석시간 외에 별도 용역의 내용・난이도 또는 수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2025년도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 분 | 지급 건수 및 금액 | | | | | |
|---|---|---|---|---|---|---|
| 회당 지급단위 | 400 | 350 | 300 | 250 | 200 | 지급액 소계 |
| 문화유산위원회 | 585 | 185 | 18 | 95 | - | 327,900 |
| 자연유산위원회 | 103 | 38 | - | 46 | - | 66,000 |
| 무형유산위원회 | 10(18)* | 23 | - | 114 | 4 | 44,550 |

주) 400천원 18건 중 8건의 경우 1일 2종류의 회의 참여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유산청은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위원들이 회의 참석에 앞서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기술적・학술적 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사전검토에 대한 보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현행 내부 지급기준은 실제 별도의 용역 제공 여부나 그 내용・난이도와 관계없이 참석 시간만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 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지급 요건이 상이하여, 이로 인해 자문료 지급기준의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비하여 자문료가 실제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상응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입〉

## 3.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징수결정액 404억 2,500만원 중 261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64.6%)되고 미수납액 142억 6,900만원, 불납결손액 4,300만원이 발생되었음.[10]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66억 2,300만원 중 52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78.7%)되고 미수납액 14억 1,100만원이 발생되었음.[11]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0,000 | 30,000 | 40,425 | 26,112 | 14,269 | 43 | 64.6 | 30,000 |
| 기타재산이자수입 | 3,000 | 3,000 | 6,623 | 5,212 | 1,411 | - | 78.7 | 3,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0)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11)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의 수납률이 저조하고, 2019~2023년 추진한 보조사업의 정산액이 남아있어 장기 미수납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실효적인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60%대,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 70%대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도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64.6%, 기타재산이자수입은 78.7%의 수납률에 그쳤음.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미수납액 중 상당 부분(각각 75.6%, 99.4%)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발생이자 미수납액에 의한 것임.

[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 예산액 | | 징수결정액(A) | 수납액(B)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수납률(B/A) |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21 | 25,000 | 25,000 | 32,837 | 28,670 | 4,167 | - | 87.3 |
| | 2022 | 30,000 | 30,000 | 40,182 | 29,551 | 10,625 | 6 | 73.5 |
| | 2023 | 30,000 | 30,000 | 43,985 | 28,066 | 15,884 | 35 | 63.8 |
| | 2024 | 30,000 | 30,000 | 44,038 | 28,633 | 15,386 | 19 | 65.0 |
| | **2025** | 30,000 | 30,000 | 40,425 | 26,112 | **14,269** | 43 | **64.6** |
|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 | 34,867 | 24,084 | **10,783 (75.6)** | - | **69.1** |
| 기타재산이자수입 | 2021 | 1,150 | 1,150 | 3,974 | 3,374 | 600 | - | 84.9 |
| | 2022 | 2,000 | 2,000 | 3,628 | 2,903 | 725 | - | 80.0 |
| | 2023 | 2,600 | 2,600 | 2,904 | 2,094 | 810 | - | 72.1 |
| | 2024 | 3,000 | 3,000 | 4,301 | 3,313 | 988 | - | 77.0 |
| | **2025** | 3,000 | 3,000 | 6,623 | 5,212 | **1,411** | - | **78.7** |
| |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 | | 6,024 | 4,622 | **1,402 (99.4)** | - | **76.7**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완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면 2개월(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사업이 완료된 해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되도록 하여야 함.[12)]

국가유산청은 2025년도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지자체 추경 예산 편성 지연에 의한 것이라고 함.

[2025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주요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보조사업자 | 결의내용 | 징수결정액 | 미수납액 | 미수납 사유 |
|---|---|---|---|---|---|
| 집행잔액 | 경북 | 2024년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 3,221 | 3,221 |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 |
| | 전북 | | 1,372 | 1,372 | |
| | 충남 | | 1,272 | 1,272 | |
| | 강원 | | 1,178 | 1,178 | |
| | 전북 | | 362 | 362 | |
| 발생이자 | 경북 | 2024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이자발생액 | 448 | 448 |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 |
| | 전북 | | 242 | 242 | |
| | 충남 | | 105 | 105 | |
| | 강원 | | 72 | 72 | |
| | 전남 | | 66 | 66 | |

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미수납액 상위 5개 건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2019~2023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미수납액도 각각 16억 5,000만원, 2억 8,300만원으로 장기 미수납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2019~2024년 추진한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미수납액 | 미수납 사유 |
|---|---|---|---|
| 집행잔액 | **2019~2023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 **1,650** |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 |
| | 2024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 9,133 | |
| | 합 계 | 10,783 | |
| 발생이자 등 | **2019~2023년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이자 등** | **283** |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 |
| | 2024년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이자 등 | 1,117 | |
| | 합 계 | 1,400 |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2025년 납부계획을 제출 요청('25년 3~8월)하고, 주기적인 납부실적 점검·독려를 실시하였으며,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해 별도 특별 점검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하고 장기 미수납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따른 일시정지·상계조치를 적용하는 등 실효적인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3)]

13)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시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 지자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신설하였다는 설명임.

# 4. 변상금: 태릉사격장 관련 누적 변상금 회수를 위한 실효적 방안 강구 필요

## 가. 개 요

**‘변상금’** 은「국유재산법」제7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34억 3,800만원 중 1억 500만원이 수납(수납률 3.1%)되고, 미수납액 33억 1,000만원, 불납결손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음.[14)]

[2025년도 변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변상금 | 3,506 | 3,506 | 3,438 | 105 | 3,310 | 23 | 3.1 | 45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태릉사격장(서울 노원구)은 1971년에 국유지에 준공된 사격훈련 시설로, 국가유산인 태릉 지정구역 내 위치하여 능제복원 차원에서 사격장의 폐쇄 및 철거가 추진되었음.

태릉사격장 건물의 최초 소유자인 태릉푸른동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인 태릉사격장 토지를 불법 전대받아 사용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유지 사용허가가 1998년 취소되었고, 태릉푸른동산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되었음. 이후 변상금이 체납됨에 따라 해당 건물이 공매에 부쳐졌으며, 2002년 (재)한국사격진흥회로 소유권이 이전됨.

(재)한국사격진흥회는 국가유산청과의 소송과정에서 건물 24동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6동만 기부채납하였고 나머지 8동은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유산청은 건물 8동의 바닥면적 및 주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였음. 이후 건물 8동은 채권자의 경매를 통해 개인 김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재)한국사격진흥회 건물 1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음.

14) 일반회계-변상금(57-571)(유산정책국, 궁능유적본부)

김OO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8동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무단점유자 및 사격단체가 사용 중이던 5동을 제외한 3동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2018년 철거됨.

서울특별시사격연맹은 (재)한국사격진흥회로부터 기부채납된 16동 중 일부에 대해, 대체사격장 건립을 조건으로 2008년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으나, 대체사격장 마련에 진전이 없어 2022년 사용허가 신청이 불허되었고, 이에 약 1년간 무단점유 상태가 발생함. 이후 2027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027년 이후에는 사용허가를 불허한다는 조건 하에 2023년부터 사용허가가 재개됨.[15)]

## 나. 검토의견

**태릉사격장 무단점유와 관련한 변상금 미수납액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으며 무단점유 상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해소 및 변상금 채권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변상금 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34억 3,800만원 중 1억 5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3.0%에 그쳤음.[16)]

15)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발생 현황]

| 채무자 | 징수결정액 (부과 기간) | 부과 대상 | 변상금 발생 사유 |
|---|---|---|---|
| (재)한국사격진흥회 | 18억 2,000만원 ('10.1.~'12.3.) | 공릉동 26 등 4필지 | ○기부채납 예정 건물(8동)에 대한 기부채납 미이행 및 건물 사용허가 불허에 따라 건물 부지(국유지) 무단점유<br>* 2012년 해당 부지 위 건물이 경매를 통해 김○○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변상금 부과 종료 |
| | 2억 500만원 ('11.11.~현재) | 공릉동 산228-51 1필지 |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300m 사격장 건물의 국유지 무단점유 |
| 서울특별시사격연맹 | 2억 7,800만원 ('22.1.1.~'22.12.31.) | 공릉동 26-26외 1필지 및 건물 2동 | ○대체사격장 이전 지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불허 및 무단점유<br>○현재 2027년 추진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027년 사용허가 불허를 조건으로 2023년부터 사용허가 재개 |
| 김OO | 8억 2,900만원 ('12.3.~'18.12.) | 공릉동 26-23 등 3필지 |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사용허가 불허에 따라 건물 부지 (국유지) 무단점유<br>* 2018년 행정대집행에 의해 일부 건물 철거로 무단점유 면적 축소 |
| | 9,300만원 ('19.1.~현재) | 공릉동 산223-19 1필지 | ○행정대집행 이후 잔여 건물 부지(국유지) 무단점유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2026년 예산액의 경우 실제 징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2022~2024년) 수납액의 평균치인 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2025년 변상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1 | 3,506 | 3,506 | 3,506 | 4,435 | 1,182 | 33.7 | 26.7 | 3,242 | 11 |
| 2022 | 3,506 | 3,506 | 3,506 | 3,896 | 670 | 19.1 | 17.2 | 3,157 | 69 |
| 2023 | 3,506 | 3,506 | 3,506 | 4,100 | 657 | 18.7 | 16.0 | 3,371 | 72 |
| 2024 | 3,506 | 3,506 | 3,506 | 3,429 | 45 | 1.3 | 1.3 | 3,291 | 93 |
| 2025 | 3,506 | 3,506 | 3,506 | **3,438** | **105** | 3.0 | **3.0** | 3,310 | 23 |
| 2026 | 457 | - | - | - | - | - | - | - | - |

자료: 국가유산청

2025년도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33억 1,000만원 중 32억 2,500만원(97.4%)이 태릉사격장(서울 노원구) 무단 점유와 관련된 변상금에 해당함.

[2025년도 주요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채무자 | 징수결정액 | 미수납액 | 미수납 사유 |
|---|---|---|---|
| (재)한국사격진흥회 | 2,025 | 2,025 | 재산조회(한국자산관리공사) 상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유 건물이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 어려움 |
| 서울특별시사격연맹 | 278 | 278 | **재산조회 상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 |
| 김○○ | 922 | 922 | **변상금부과취소소송 진행 중**으로 판결확정 전 징수 어려움 |
| **합 계** | **3,225** | **3,225 (97.4%)** | |
| 기타 개인 및 단체 | 213 | 85 | |
| **합 계** | **3,438** | **3,310 (100%)** |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태릉사격장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2007년부터 폐쇄 및 철거가 추진되었으나,[17] 사격장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으로 국유지 무단점유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변상금 채권이 누적되고 있음.

17) 태릉사격장(서울 노원구)은 1971년 국유지에 준공된 사격훈련 시설로, 국가유산인 태릉과 인접하여 국가유산 보호 차원에서 2000년대 사격장의 폐쇄 및 철거가 추진되었음.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재)한국사격진흥회의 경우 재산이 없고 소유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채권 회수가 어려우며, 서울특별시사격연맹의 경우 재산이 없고, 김OO의 경우 변상금부과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조치가 어렵다는 설명임.[18)]

그러나 2010년 이후 15년 이상 장기간 동일한 사유로 변상금 채권이 누적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만으로는 무단점유 해소 및 채권 회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유산청은 「국유재산법」상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등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상태 해소와 변상금 회수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9)20)]

---

18) 김OO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진행경과
- ㅇ 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88 (원고: 김OO, 피고: 국가유산청장, 궁능유적본부장)
  소송 접수일자: 2023.4.24. / 판결 선고일자: 2025.8.21.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원고의 변상금 전부 무효 주장(주위적 청구)은 배척, 변상금 일부 무효 주장(예비적 청구)은 일부 인정
- ㅇ 2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8203 (원고: 김OO, 피고: 국가유산청장, 궁능유적본부장)
  소송 접수일자: 2025.9.22. / 판결 선고예정일: 2026.7.21.
  경과: 현재 변론은 종료된 상태로, 선고기일 2026.7.21. 예정

19)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0)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재)한국사격진흥회는 조회된 재산이 없어 소유건물에 대한 압류 외 별도 강제징수 등 조치가 어려우며, 서울특별시사격 연맹 또한 조회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설명임. 김OO의 경우 일부 건물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되었으며,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도 진행되었으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잔여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공매 재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세 출〉

# 5.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ODA) 사업: 수행기관 선정 관리 강화 및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차질없는 마무리 필요

## 가. 개 요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시설 구축·디지털 기록 전문가 양성 및 기록유산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0%)되었음.[21][22]

[2025년도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유산기반국제협력(ODA) | 13,113 | 13,113 | | △1 | 13,112 | 10,712 | - | 2,400 | 11,120 |
| 양자 ODA | 12,859 | 12,859 | - | - | 12,859 | 10,459 | - | 2,400 | 10,858 |
|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 2,400 | 2,400 | - | - | 2,400 | - | - | 2,400 | 7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집트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기반의 보존·관리 체계는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이집트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유산 분야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21) 일반회계-유산기반국제협력(ODA)(1134-302)(유산정책국)

22) 2022년 한-이집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국가유산청과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es)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고고유적 발굴복원·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디지털기술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ODA).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됨.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류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한-이집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수행 사업으로는, ‘이집트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 사업과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있음.

동 사업은 2022년 ODA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2027년까지의 5개년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사업시행주체의 경우 매년 공모를 거쳐 국가유산청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23~'25)되었음.

2023년에는 수원기관과의 협의의사록 체결·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였고, 2024년에는 센터 내 시설 구축·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디지털화 작업·데이터베이스(DB)·플랫폼 구축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개요]

| |
|---|
| ㅇ (사업목적) 이집트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국제위상 제고 |
| ㅇ (사업내용) -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내 시설 구축(기자재 지원, 장비설치 등)<br>- 디지털 기록 전문가 양성(관계자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등)<br>- 기록유산 디지털화, DB 시스템 및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
| ㅇ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5개년) |
| ㅇ (총사업비) 84억원 (2025년 24억원) |
| ㅇ (사업시행주체) 2023~2025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6년 국가유산진흥원 |
| ㅇ (대상국가 및 협약기관)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 |

자료: 국가유산청

## 나. 검토의견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2025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2026년 종료 예정이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는 동 사업의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탁 사업자(ODA 사업 시행자)의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내부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23)24)]

현재 국가유산청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유산진흥원(기타공공기관)'을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집행부진을 사유로 2027년 사업에 대한 외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초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은 2026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음.[25)]

---

23)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해충돌관련 지적사항은 ① 2022년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추후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이었다는 점과 ② 국가유산청 사업 실무자가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이직하여 산학협력단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진행 중인 감사 종료 후 판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24) 국가유산청은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익명 제보에 따라 2025년 8월 자체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2026년 6월 말 현재 사업의 선정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임.

[2025년 사업 중단 경위]

| 일자 | 내용 |
|---|---|
| 2025. 3. ~ 4. |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및 접수(1, 2차) *단독응찰에 따른 재공모 |
| 2025. 4. 30. |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심사 |
| 2025. 5. ~ 7. | 공모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자료 요구 |
| 2025. 8. ~ 9. | 내부 감사 등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 지연 |
| 2025. 10.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절차 중단 |

자료: 국가유산청

25)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외교부의 2027년도 사업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이 집행부진 사업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업 종료가 통보되었다는 설명임.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계획]

| 연도<br>(예산액) | 사업 내용 |
|---|---|
| 2023<br>(2억 2,000만원) | • 기록유산 아카이브 현황 점검<br>•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보존환경 설계<br>• 유형별 작업 프로세스 정립 등 |
| 2024<br>(24억원) | • 디지털화 작업 수행 (9.0%)<br>• DB시스템 설계 등 |
| **2025<br>(24억원)** | **• 디지털화 작업 수행 (39.9%)<br>• 디지털 플랫폼 개발방향 연구<br>• 디지털 헤리티지 취득 기술 공동연구 등** |
| 2026<br>(7억원) | • 디지털화 작업 수행 (70.8%)<br>• 디지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교육 등 |
| 2027<br>(26억 9,800만원) | • 디지털화 작업 수행 (100%)<br>• DB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 자료연계 검색 프로토타입 개발<br>• UI/UX 기능 고도화 등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5개년 사업이 3개년으로 종료되어 기존 계획과 성과가 상이할 수 있으나, 성과가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집트 현지 장비 등 시설 운영 교육 및 디지털 기록유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완료 등 내용을 압축·재구성하여 운영·관리할 예정이라는 설명임.[26)]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가 축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6) 국가유산청은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수원국인 이집트 측에 사업 중단 사유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원국으로부터 사업 중단에 따른 별도의 애로사항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다는 설명임.

# 6.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주민편의·지역개발 성격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범위 검토 필요

## 가. 개 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오랜 규제로 인해 훼손된 국가유산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의 경관을 회복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7)]

[2025년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사적관리 | 3,417 | 3,417 | - | △27 | 3,390 | 3,347 | - | 43 | 8,195 |
| 국가유산 경관개선 | 2,000 | 2,000 | - | - | 2,000 | 2,000 | - | - | 6,9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오랜 규제로 인해 훼손된 국가유산 내 마을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가유산 경관회복
○ (사업대상)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및 지정구역으로 둘러싸인 마을(36개소)
○ (사업내용) 전선지중화, 빈집, 골목, 담장 등 정주여건 및 탐방로 등 방문객 편의시설 정비
○ (사업방식)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 50%)
○ (사업비)

| 연도별 | 사업내용 | 대상 | 사업비 |
|---|---|---|---|
| ’24년 | • 가이드라인 마련(1차사업) | 5개소 | 5억원 (1억×5개소) |
| ’25년 | • 경관개선 정비 지원 | 5개소 | 20억원 (4억×5개소) |
| ’26년 | • 경관개선 정비 지원 | 5개소 | 70억원(14억×5개소) |
| ’27년 | • 경관개선 정비 지원(1차) 및 기본 및 실시설계(2차) | 9개소 | 30억원(7.5억×4개소, 1차사업) 7.5억원(1.5억×5개소, 2차사업 설계) |

자료: 국가유산청

27) 일반회계-사적관리(1231-301)(문화유산국)

##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에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보이는 내용과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고 주민 편의 및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면 주민복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도로의 보수 및 유지·주거 생활환경 개선의 지원 및 관광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동 사업의 자치단체별 기본계획 및 2025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거장·주민운동시설·주차장 설치·관광안내시설 조성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 조성 성격을 갖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28)]

28) 「지자체별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

| 구 분 | 계획 | |
|---|---|---|
| 태안<br>안흥진성 | 주민 | **·쓰레기 수거장, 주민 운동시설 설치**<br>·성내 도로 정리 및 지중화<br>·야간환경 개선공사 등 |
| | 주민 및 탐방객 | **·진입로 정비, 주차장조성** |

[2025년 사업 추진 내용]

| 구 분 | 추진 내용 |
|---|---|
| 태안 안흥진성 | ·('25) - 우물 수각 설치 및 주변 정비<br>- 폐콘크리트 건물 철거<br>- 거점별 **주차장 조성**<br>- 1차 내부탐방로 및 포토존 조성 설계<br>·('26) - **관광안내소 및 사랑모임관 조성** 공사(이월)<br>- **쓰레기 수거장** 설치(이월)<br>- **관람객 휴게시설** 조성(이월)<br>- **마을회관 별관 조성** 설계(이월) |
| 남원읍성 | ·('25) - 의총유지 시·발굴조사<br>·('26) - 기본 및 실시설계(이월) |
| 나주읍성 | ·('25) - 마을안길 공사 |
| 완도 청해진 유적 | ·('25) - 장좌리 마을안길 개선사업<br>- 장군샘 정비사업 |

자료: 국가유산청

---

| | | |
|---|---|---|
| | | ·관람객 휴게시설 조성<br>·관광안내소, 탐방안내소 조성 등 |
| 남원읍성 | 기반시설정비 | ·마총길 특화도로 조성 |
| | 기초생활환경 조성 | ·골목길, 담장 및 대문 정비<br>·마당 및 정원 정비<br>·건축물 지붕 정비 |
| | 역사공간 조성 | ·만인의총유지 발굴조사<br>·충혼역사공원 조성<br>·마총역사정원 조성 |
| 나주읍성 | 생활기반 시설개선 | ·흙콘크리트 포장&관람유도 사인<br>·담장 철거 및 신설 등<br>·스마트 보안등 |
| | 주민 향유공간 개선 | ·가로수 화분, 파고라 쉼터, 휴게 벤치, **클린하우스** 설치 |
| | 국가유산 경관개선 | ·관람유도 사인, 도보친화로 가로등, 바닥 관광 안내도 등 설치<br>·우물터 복원 |
| 완도 청해진 유적 | ·마을 안길 개선: 바닥 안내사인, 차량 유도 안내선, 벽면 도색 등<br>·장군샘 개선: 체험공간 조성, 기와지붕, 안내사인 설치 등<br>·매단 개선: 계단 및 난간 설치, 시니어 운동기구 설치, 안내판 설치 등<br>·**마을회관·빈집 리모델링**, 지붕 색채 정비, 무장애 데크길 조성, 해변 포토존 조성 등 |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그 비용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의 증진의 성격도 있어 국비 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업 대상 마을은 국가유산과 함께 유산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주여건이 악화되어 주민이 이탈하고 지역이 공동화 된다면 유산의 역사적 진정성이 훼손되고 유산 보존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동 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제11조 및 「문화유산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목적의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임.[29)]

그러나 마을회관 리모델링·주민 운동시설 조성 등 주민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성격이 강한 일부 내용의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기초생활인프라 정비·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주차환경 개선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임.[30)]

---

29) 「국가유산기본법」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유산법」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173. 관광지 개발조성
174.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77. 관광안내체계 구축
178.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83.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184. 문화특화지역 조성
189.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91. 복합문화시설 조성
**208.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286. 상수도시설 확충 관리

따라서 현행 법령에 비춰보아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비 지원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31]

**290. 주차환경 개선 지원**

31) 국가유산청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문화유산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시, 주민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도 마련하게 되어 동 사업의 일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임.
「문화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595, 2025.10.15. 발의)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 시행) ① 시 ·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 시행) ①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신 설〉 | 5. 제1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정한다) |

# 7.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토지이용정보체계를 기반으로한 대국민 정보 공개 체계 마련 필요

## 가. 개 요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에 근거하여 매장유산 정밀지표 조사를 실시하고,[32]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 및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6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3]

[2025년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 | 11,484 | 11,484 | - | - | 11,484 | 11,156 | - | 328 | 5,001 |
|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 6,000 | 6,000 | - | - | 6,000 | 6,000 | - | - | -[3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사전조사·정밀지표조사·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제작 및 보존조치 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축된 정보는 향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정보체계(국토e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연계·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2) 「매장유산법」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3) 일반회계-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1231-303)(역사유적정책관)

34) 2026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으며, 2026년도 관련 예산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자율)’(3235-310) 87억 7,400만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세종)’(3239-308) 4억 6,600만원 총 89억 4,000만원 규모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가 주도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 '21년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 및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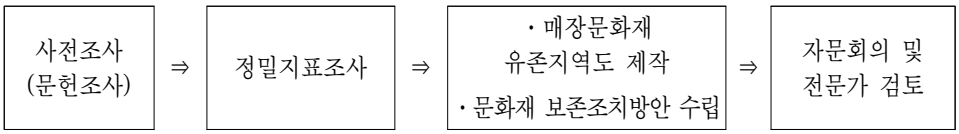
○ (사업내용) 사선조사 및 정밀지표조사·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제작 및 문화재 보존조치 방안 수립 등

○ (사업기간) 5년(2021년~2025년)

○ (총사업비) 490억원(20,617㎢×24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70%)

* 단위면적당 조사비용(2.4백만원/㎢)은 지표조사 표준품셈으로 산출

○ (사업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 나. 검토의견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매장유산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 5년차인 현재까지 당초 사업 계획상의 토지이용정보체계 및 토지계획확인원을 통한 정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정보 공개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종전에는 매장유산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 및 토지거래 등 토지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였고, 이에 매장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편성되었음.

사업의 근거 규정인 「매장유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상시 유지·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35] 이에 동 사업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조사 이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정보체계(토지e음)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35)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4월 말 기준 조사 완료된 91건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정보는 국가유산청 공간정보서비스인 ‘국가유산GIS’를 통해 일부(17건) 공개되고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정보체계(토지e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한 대국민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36]

국가유산GIS는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매장유산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야 하는 반면, 토지이용정보체계(토지e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이용·개발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현재의 공개 방식만으로는 토지 이용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완료 정보 등록 현황]

(단위: 건)

| 조사완료 연도 | 조사완료 건수 | 정보 등록 현황 | | | |
|---|---|---|---|---|---|
| | | 국가유산청 인트라넷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GIS | 국토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 국토부 국토e음 |
| 2022 | 39 | 38 | 16 | - | - |
| 2023 | 32 | 30 | 11 | - | - |
| 2024 | 14 | 3 | - | - | - |
| 2025 | 6 | - | - | - | - |
| **합 계** | **91** | **71** | **17** | - | - |

주) 2026년 4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토지이용정보체계(토지e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연계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36) 정보 시스템별 주요사항 비교

| 구분 | 국가유산청 인트라넷 등록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GIS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국토교통부 국토e음 |
|---|---|---|---|---|
| 운영주체 | 국가유산청 | | 국토교통부 | |
| 정보범위 | 매장유산 공간정보 및 기본 정보(소재지, 유적분류 등) | | 매장유산 공간정보 | |
| 활용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조사기관 | 국가 및 지자체, 조사기관, 일반국민 | | |

자료: 국가유산청

그러나 동 사업은 매장유산 정보를 토지이용정보와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사업 추진 5년차인 현재까지 토지이용정보체계(국토e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한 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사업계획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등 매장유산 정보의 공개·활용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37]

37)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024년 이후 토지이용 규제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및 토지e음 운영기관과 함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록방안 및 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 기준「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개정을 위해 관련자 의견 조회 중이라는 설명임.

# 8.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등

## 가. 개 요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팔만대장경 및 인경본의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유사시 보수·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38]

[2025년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 16,291 | 16,291 | - | +68<br>-70 | 16,290 | 16,071 | 143 | 76 | 12,045 |
|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 10,000 | 10,000 | - | - | 10,000 | 10,000 | - | - | 4,92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내용) 팔만대장경판 기초조사 및 보존상태 진단, 인경 및 인경본 제책·디지털화, 종합 DB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2023년 ~ 2029년 (예정)
○ (총사업비) 424억 500만원
○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보조사업자(공모):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 (사업계획)

(단위: 판, 백만원)

| 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안) | (2029(안) | 계 |
|---|---|---|---|---|---|---|---|---|
| 사업물량 | 1,523 | 2,000 | 20,000 | 9,900 | 6,500 | 19,750 | 21,585 | 81,258 |
| 소요예산(안) | 1,050 | 1,270 | 10,000 | 4,927 | 3,000 | 10,000 | 12,158 | 42,405 |

자료: 국가유산청

38) 일반회계-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1232-301)(문화유산국)

## 나. 검토의견

**첫째,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용역 수행 및 용역기간 연장으로 실집행 단계에서 예산액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규제·연구 범위 및 데이터 관리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실집행 내역을 보면, 교부현액 100억원 중 67억 7,8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67.8%)되고, 29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음.[39]

[2025년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비목별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가유산청 | | |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 | | | 이월액 주요 내용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현액 (B) | 실집행액 (C)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인건비 | 3,209 | 3,209 | 3,209 | 3,209 | 2,465 | 742 | 1 | 76.8 | · 연구원 인건비 : 742 |
| 운영비 | 6,572 | 6,572 | 6,572 | 6,572 | 4,160 | 2,185 | 228 | 63.3 | · 연구용역: 1,811<br>· 사업 운영 경비 : 374 |
| 여비 | 1 | 1 | 1 | 1 | 1 | 0 | 0 | 100.0 | |
| 자산 | 218 | 218 | 218 | 218 | 152 | 66 | 0 | 69.7 | |
| **합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6,778** | **2,993** | 229 | **67.8** | |

자료: 국가유산청

39) 동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국가유산청 | | |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교부 현액 (B) | 집행액 (C)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B) |
| | 본예산 | 추경 (A)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 | | |
| 2023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 | 1,050 | - | 1,050 | - | - |
| 2024 | 1,270 | 1,270 | 1,270 | 1,270 | 2,320 | 2,272 | 1,270 | 1,222 | - | 48 | 97.9 |
| 2025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6,817 | 10,000 | 6,817 | - | - | 68.2 |

자료: 국가유산청

2025년도 팔만대장경판 20,000판에 대한 기초조사와 인경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에 없었던 추가 용역 수행과 용역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원 인건비·연구용역비 및 운영경비 이월이 발생되었음.

[추가 용역 수행 현황]

| 구 분 | 당초 일정 | 변경 일정 | 추가기간 소요 사유 |
|---|---|---|---|
|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용역 | '25. 6. 23. ~'25. 12. 15. | '25. 6. 23. ~'26. 2. 20. | · 방사선 안전규제에 따라 X-ray 촬영장소와 CT 촬영장소를 함께 사용할 수 없음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통보받았고, 관련 자문회의 개최 후 차폐시설 구축 및 CT 사용장소 변경신고 승인 조치(3개월) 후 촬영 진행<br>· 동절기 경판 손상 우려로 안전성 확보 검토 필요 |
| 인경본 장책 방안 연구 용역 | '25. 11. 14. ~'25. 12. 15. | '25. 11. 14. ~'26. 2. 28. | ·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경본 장책의 형태 조사·분석하여 반영하기 위해 용역기간 연장 |
| 전산 인프라 및 보관·관리 용역 | - | '26. 02. 05. ~ '26. 02. 26. |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 9. 26.) 계기 범정부 차원의 국가 디지털 데이터의 백업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팔만대장경 인경본 디지털 자료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해 연도말 가용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잔여예산을 검토한 후 부득이하게 사업이월 조치 후 추가 수행 |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방사선 안전규제에 따른 현장 조치, 전문가 자문에 따른 인경본 장책 연구의 필요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디지털 자료의 백업체계 구축 필요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용역 수행이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임.

다만 전산 인프라 및 보관·관리 용역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추가 추진이 필요하였던 측면이 있으나, 방사선 안전규제 대응과 전문가 자문에 따른 연구범위 조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위험요인과 사업범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 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 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지연이나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40]

4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둘째,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의 추가 용역 중 ‘전산 인프라 및 보관·관리 용역’은 2026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이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 예산의 이월이 승인되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음.[41]

동 사업의 추가용역 중 ‘전산 인프라 및 보관·관리 용역’에 있어서는 2026년 1월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2월 5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비로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음에도 해당 용역의 계약금 및 제반 비용 11억 8,235만원이 2025년도에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이월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국가유산청이 이월을 승인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보조사업비 이월 승인 시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4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9.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및 먹이주기 지원 사업: 기존 유사사업과의 통합 운영 검토 필요

## 가. 개 요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및 먹이주기 지원’** 사업은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활동 및 먹이주기의 등 보호활동과 축양동물 질병관리 및 분산 사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2,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42)]

[2025년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 1,927 | 1,927 | - | - | 1,927 | 1,873 | - | 54 | 1,835 |
| 천연기념물 동식물 지정 확대 및 상시관리 강화 | 1,077 | 1,077 | - | - | 1,077 | 1,050 | - | 27 | 885 |
|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및 먹이주기 지원 | 420 | 420 | - | - | 420 | 390 | - | 30 | 28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단체 및 연산오계재단을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 ①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2025년 결산 3억 3,000만원) 및 ② ‘질병관리’ 사업(2025년 결산 6,0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경상 보조(국비 100%)사업임.

42) 일반회계-천연기념물동식물보호(1331-303)(자연유산국)

## 나. 검토의견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먹이주기 지원 사업 내 ‘구조활동·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일반회계) 사업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과 동일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 및 사업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유사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내의 ‘구조활동·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사업은 조수류·수달·산양·남생이 등 4개의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단체의 구조활동·먹이주기 등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국비 100%)임.

그런데 국가유산보호기금 내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에서도 동일한 보조사업자인 천연기념물 관리단체의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199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음.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및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 비교]

| 구분 |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
| 회계/기금 | 일반회계 | 국가유산보호기금 |
| 세부사업명<br>(사업코드) |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br>(1331-303) |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br>(1332-303) |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1998년 ~ 계속<br>(조수류: 1998년 ~ 계속, 수달: 2005년 ~ 계속,<br>산양: 2009년 ~ 계속, 남생이: 2023년 ~ 계속) |
| 지원대상 | 4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br>(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 4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br>(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
| 지원내용 | 보호활동 지원<br>(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 보호활동 지원<br>(구조 및 치료 재활 활동, 먹이주기 행사 등 보호활동,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
| 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보조율 100%) | 민간경상보조 (보조율 100%) |
| '25 결산 | 3억 3,000만원 | 6억 9,800만원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은 보조사업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함.[43]

국가유산청은 2023~2024년 겨울철 산양 집단 폐사를 계기로 야생 천연기념물 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사업이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 증액이 어려운 실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일반회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동 사업은 '야생'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치료·재활 및 방사' 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먹이 공급을 지원하는 기존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및 2025년 보조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야생 상태의 개체에 대한 먹이 지원과 구조 이후 개체에 대한 먹이 지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44]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천연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1331-303)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1332-303)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 혼용 방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45]

따라서 동일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목적의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운용 및 사업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국가유산청은 사업 간 기능 및 지원 범위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3)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107)
14. 민간보조사업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요구
□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44) 2025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지출 내역을 보면, 독수리 먹이 구입(250만원), 겨울새 두루미 모이 구입(94만원) 등은 구조·치료·재활 및 방사 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100만원) 사례도 확인되므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야생 개체와 구조·치료 중인 개체에 대한 먹이 지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5) 국가유산청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 혼용 방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후위기 등에 따라 멸종위험에 처해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이 먹이부족으로 집단폐사, 절종될 경우 향후 개체 수 회복 및 종 복원에 더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므로, 선제적 보호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10. 무형유산 보전·관리 사업: 국가무형유산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의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가. 개 요

**‘무형유산 보전·관리’** 사업은 무형유산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 및 신규종목 지정 연구 등 무형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5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2%)되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46][47]

[2025년도 무형유산 보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무형유산보호 | 9,513 | 9,513 | - | △153 | 9,360 | 9,319 | - | 41 | 59,441 |
| 무형유산 보전·관리 | 783 | 783 | - | - | 705 | 664 | - | 41 | 79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전년도)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가치 조사 및 무형유산위원회 검토·심의를 통해 신규 국가무형유산 종목이 지정됨.

한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의 경우,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조사계획이 수립되고, 공모 신청을 받아 이후 서면·실연 및 면담 등 조사를 거쳐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이 결정되며, 이후 선정된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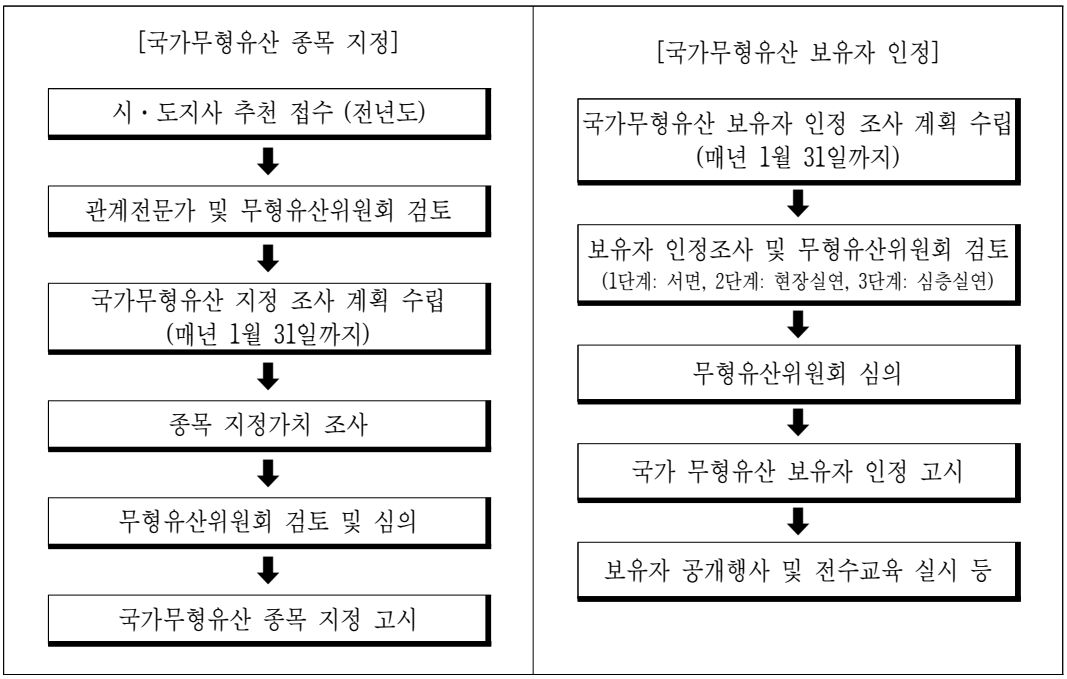
46) 일반회계-무형유산보호(1431-301)(무형유산국)

47) 무형유산 보전·관리 사업 결산 세부 내역

- 공무직 인건비 97백만원
- 무형유산 보전·관리 운영 174백만원
- 무형유산 관리 운영 및 지정(인정) 조사 178백만원
- 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연구 215백만원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의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사·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처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공고계획을 수립하고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을 보면, 연내 미처리된 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고, 2025년의 경우 종목 지정은 공고된 9건 중 2건(22.2%), 전승자 인정은 공고된 31건 중 17건(54.8%)만 연내 처리되는 데 그쳤음.

[2025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 분야 | 연내 | | | | | 최종('26.4.30.기준) | | | |
|---|---|---|---|---|---|---|---|---|---|---|
| | | 공고 | 처리 | | | 미처리 | 공고 | 처리 | | 미처리 |
| | | | | 지정 | 미지정 | | | 지정 | 미지정 | |
| 2023 | 종목 지정 | 5 | 5 | 5 | - | - | 5 | 5 | - | - |
| | 보유자 인정 | 18 | 9 | 6 | 3 | 9 | 18 | 10 | 8 | - |
| | 합 계 | 23 | 14 | 11 | 3 | **9** | 23 | 15 | 8 | - |
| 2024 | 종목 지정 | 8 | 2 | 1 | 1 | 6 | 8 | 2 | 4 | 2 |
| | 보유자 인정 | 21 | 13 | 4 | 9 | 8 | 21 | 12 | 9 | - |
| | 합 계 | 29 | 15 | 5 | 10 | **14** | 29 | 14 | 13 | 2 |
| 2025 | 종목 지정 | **9** | **2** | - | 2 | 7 | 9 | 1 | 2 | 6 |
| | 보유자 인정 | **31** | **17** | 12 | 5 | 14 | 31 | 14 | 6 | 11 |
| | 합 계 | 40 | 19 | 12 | 7 | **21** | 40 | 15 | 8 | 17 |

주 1) 최종 현황의 경우 2026년 4월말 기준
2) 연도별 공고는 전년도 미처리 건을 이월하여 재공고한 건수를 포함함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과거 미처리 안건의 누적과 심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연초 공고계획은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는 점에서, 공고 물량 결정 단계에서 연간 처리 가능 규모, 조사·심의 소요기간, 인력 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보유자 인정은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 참여의 전제가 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인정 지연이 반복될 경우 전승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조사·심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심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공고 및 심의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절차 지연에 따른 전승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절차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1.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등

### 가. 개 요

**‘양산 통도산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 내 문화시설·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5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8]

[2025년도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 4,500 | 4,500 | - | - | 4,500 | 4,500 | - | - | 3,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총사업비 316억 300만원 규모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이 1차 보조사업자인 경상남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경상남도 및 양산시의 지방비가 매칭되어 양산시(통도사)가 사업을 수행함.

조성시설은 크게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되며, 문화시설의 경우 통도사 제3주차장 인근 부지에 도서관·북카페 및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고, 편의시설의 경우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사이 부지에 사찰음식점·화장실 및 불교용품 판매점 등으로 구성됨.

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3237-307)(문화유산국)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세계유산인 양산 통도사의 체계적 보존관리·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지산리 586일원

○ (사업기간) 2022 ~ 2027년 (6년)

○ (총사업비) 316억 300만원 (국비 147억 1,500만원, 지방비 147억 1,500만원, 자부담 10억원)[49]

- 2025년 (국비 45억원, 경상남도 13억 5,000만원, 양산시 31억 5,000만원)

○ (시행주체) 경상남도 양산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참여)

○ (사업내용)

| 구 분 | | 면 적 | 용 도 |
|---|---|---|---|
| 문화시설 | 지상1층 | 2,374.11㎡ | • 도서관, 전시실, 세미나실, 기타 등 |
| | 지상1층 | 57.60㎡ | • 북카페 등 |
| | 지상2층 | 596.16㎡ | • 도서관, 전시실 등 |
| 편의시설 | 지상1층 | 774.00㎡ | • 사찰음식점, 화장실, 휴게마당 등 |
| | 지상1층 | 118.80㎡ | • 불교용품 판매점 |
| | 지상2층 | 261.36㎡ | • 사찰음식점, 카페테리아, 휴게테라스 등 |

자료: 국가유산청

49) 양사 통도사의 자부담(10억원)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보조 대상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사업 대상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부지 관련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사업대상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비를 산정하여 자부담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설명임.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문화시설) 사업 위치도]




자료: 국가유산청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편의시설) 사업 위치도]




자료: 국가유산청

## 나. 검토의견

**첫째,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관련 행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1차년도 공사비 공정률을 47.4%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일괄 교부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액 45억원 전액이 실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단계에서도 관련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5년 통도사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1차년도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총 45억원이 편성 및 교부되었으나, 45억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5년도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국가유산청 | | | 보조사업자(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현액 | 실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공사비 | 4,243 | 4,243 | 4,243 | 4,243 | — | 4,243 | - |
| 감리비 | 254 | 254 | 254 | 254 | — | 254 | - |
| 시설부대비 (관리비) | 3 | 3 | 3 | 3 | — | 3 | - |
| **합 계** | **4,500** | **4,500** | **4,500** | **4,500** | **—** | **4,500** | **-** |

자료: 국가유산청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2025년도에 환경영향평가·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거치며 사업이 중단되었음.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추진 일정]

| 당초 | | 변경 | |
|---|---|---|---|
| 2022 | • **기본설계** | 2022 | •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6월)<br>•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10월~11월) |
| 2023 | • **실시설계** | 2023 | • **기본설계 ('23.2월 ~ '24.6월)**<br>• 사업부지 변경 및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7월~12월)<br>• 총사업비 조정협의 (12월)<br>: 사업기간 오기재 사항 정정 |
| 2024 | •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4 |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7월)<br>• 총사업비 조정협의(7월) : 기본설계 결과 반영, 사업기간 연장<br>- (당초) '22~26년 → (변경) '22~27년<br>• **실시설계 ('24.6월 ~ '25.12월)**<br>•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4.12월~'25.5월) |
| 2025 | • **준공** | 2025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월~5월)<br>•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4월~7월)<br>• 총사업비 조정협의 (7월) : 중간설계 결과 반영<br>• 총사업비 자율조정 (9월) : 설계비 집행잔액 감액<br>•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8월~10월)<br>• 총사업비 조정협의 ('25.11월~'26.3월) : 실시설계 결과 반영<br>•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12월) |
| | | 2026. 4월 | • **공사 입찰 및 계약 (4월)** |
| | | 2026.<br>~ 2028. | • 시설공사 ('26.4월 ~ '28.4월 예정)<br>• **준공** |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전에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계약 입찰·발주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야 함.[50]

그런데 2025년도 예산편성 시점(2024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1차년도(2025년도) 공정률을 47.4%를 적용하여 45억원을 편성한 것은 관련 지침상 고려되어야 하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5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단계에 있어서도 2025년 예산액 45억원을 1회에 일괄 교부(2025.12.3.)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분할 교부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51]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대규모 건축사업 등 유사사업 추진 시 관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도 연내 집행 가능성에 기반한 분할 교부를 실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통도사 경내와 분리된 부지에 일반적인 문화·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상 경쟁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계약법」 제9조는 일반입찰에 따른 경쟁계약을 계약의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52]

동 사업의 2025년도 이월사업의 계약 현황을 보면 총 11건(287억 1,400만원)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남.

---

5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관련 계약 사항]

(단위: 백만원)

| 연번 | 계약명 | 계약기간 | | 계약업체 | 계약액 | 계약방식 |
|---|---|---|---|---|---|---|
| | | 시작 | 종료 | | | |
| 1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총괄) | '26.04.17. | '28.04.16. | 금명종합건설㈜ | 23,621 | 수의계약 |
| 2 | 통도사 문과공간 건립사업 전기공사 | '26.04.17. | '28.04.16. | ㈜대영전기 | 1,331 | 수의계약 |
| 3 | 통도사 문과공간 건립사업 통신공사 | '26.04.17. | '28.04.16. | ㈜영창시스템 | 785 | 수의계약 |
| 4 | 통도사 문과공간 건립사업 소방공사 | '26.04.17. | '28.04.16. | ㈜대영전기 | 737 | 수의계약 |
| 5 |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 건축상주감리용역(총괄) | '26.04.17. | '28.05.31. | ㈜으뜸건축사사무소 | 1,714 | 수의계약 |
| 6 |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총괄) | '26.04.17. | '28.05.31. | ㈜원이앤지 | 261 | 수의계약 |
| 7 |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 통신감리용역(총괄) | '26.04.17. | '28.05.31. | ㈜원이앤지 | 141 | 수의계약 |
| 8 |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 소방감리용역(총괄) | '26.04.17. | '28.05.31. | ㈜원이앤지 | 94 | 수의계약 |
| 9 |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전기)공사 | '26.04.17. | '28.04.16. | 한국재해예방 안전원(주) | 10 | 수의계약 |
| 10 |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통신)공사 | '26.04.17. | '28.04.16. | | 10 | 수의계약 |
| 11 |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소방)공사 | '26.04.17. | '28.04.16. | | 10 | 수의계약 |
| 합 계 | | | | | 28,714 | |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 공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며, 본 사업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임.[53]

5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규정은 문화재 공사 및 문화재와 직접 연계되는 시설공사 등 특성상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성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경쟁계약 원칙의 예외인 만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은 통도사 경내와 분리된 주차장 인근 부지에 조성되는 시설로, 문화시설(도서관・북카페・세미나실 등) 및 편의시설(사찰음식점・화장실・불교용품 판매점 등) 모두 문화재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사업수행자 선정이 필요한 공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편의시설 건립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불사심의위원회(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참여업체 현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행능력・수행실적・가격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선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동 사업은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계약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지방계약법」상 경쟁계약 원칙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 · 종묘 · 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 · 농기계 포함)

**셋째,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은 문화시설·편의시설 성격상 시설 조성에 따른 편익이 대부분 통도사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시지가 10억원에 상당하는 토지 제공 외에 통도사의 실질적 자부담이 없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수익자부담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고 보조사업 운영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54]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체 부담이 가능한 사업은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수혜범위와 편익의 귀속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확대하는 등 국고보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55]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비와 양산시 지방비를 재원으로 통도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이 강함. 그럼에도 사업계획상 통도사의 자부담은 제공 부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인 10억원만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56]

---

54) 「보조금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5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4)
□ 민간보조 제외사업
○ 자체적인 수입 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
□ 사업의 수혜범위·효과성이 제한적이거나, 자체수입이 충분하여 자부담률 제고가 가능한지 면밀히 점검 후 예산 요구

○ 특히,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은 적정수요관리를 위해 자부담 신규 설정 및 자부담률 제고 등을 통해 민간의 책임성·자율성 강화 추진

○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

56)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사업비 구성

| |
|---|
| ○ (총사업비) 316억 300만원 (국비 147억 1,500만원, 지방비 147억 1,500만원, 자부담 10억원)<br>* 2025년 (국비 45억원, 경상남도 13억 5,000만원, 양산시 31억 5,000만원) |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은 통도사 경내와 분리된 부지에 도서관·전시실·세미나실 등 문화시설과 사찰음식점·카페테리아·불교용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의 직접적인 보존·관리보다는 방문객 편의 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의 성격이 큰 사업이며, 시설 조성에 따른 편익 역시 상당 부분 통도사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 추진 시 자부담 수준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내부 관련지침에는 자부담 비율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나,[57] 동 사업은 특정 민간주체의 이용 및 운영상 편익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수익자부담원칙과 국고보조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사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의 경우, 「종무실 보조사업 운용지침」 개정('24.1.)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30% 이하, 자부담률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수익자부담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고 보조사업의 운영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57) 「종무실 보조사업 운용지침」

| 세부사업명 | 국고보조율(안) |
|---|---|
| 종교문화시설건립 | 국비 30% 이하<br>(부지매입비 제외, 설계 이전의 타당성 조사비용, 기본계획 수립비 등은 지원 불가)<br>* 자부담률 10% 이상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12.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실집행 부진 개선 및 분할교부 원칙 준수 필요

## 가. 개 요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은 고도(古都)의 특성에 맞는 역사 도시 이미지 조성 등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51억 800만원 중 250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58]

[2025년도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고도 보존 및 육성 | 25,108 | 25,108 | - | ±71 | 25,108 | 25,029 | | 79 | 31,819 |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4,000 | 4,000 | - | - | 4,000 | 4,000 | - | - | 5,000 |
| 고도 역사도시 조성 | 6,333 | 6,333 | - | - | 6,333 | 6,333 | - | - | 5,400 |
| 고도 탐방거점 조성 | 1,145 | 1,145 | - | - | 1,145 | 1,145 | - | - | 1,565 |
|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 13,033 | 13,033 | - | - | 12,992 | 12,992 | - | 41 | 19,28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고도 보존 및 육성(3237-309)(문화유산국)

## 나. 검토의견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내 국고보조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분할교부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교부된 사례가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2025년도의 경우 교부현액 280억 9,500만원 중 186억 8,100만원이 실집행 되고 92억 6,7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66.5%에 불과함.

[2025년도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국가유산청 |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 | | | | | |
|---|---|---|---|---|---|---|---|---|---|
| | 예산액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A) | 실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2021 | 9,588 | 9,518 | 8,740 | 2,470 | 11,210 | 9,451 | 1,757 | 11 | 84.3 |
| 2022 | 16,178 | 16,178 | 16,178 | 1,764 | 17,942 | 12,290 | 5,557 | 95 | 68.5 |
| 2023 | 16,703 | 16,703 | 16,703 | 5,557 | 22,260 | 14,074 | 7,992 | 194 | 63.2 |
| 2024 | 18,492 | 18,492 | 18,492 | 7,992 | 26,475 | 17,193 | 8,989 | 293 | 64.9 |
| **2025** | **23,711** | **23,711** | **23,711** | **4,384** | **28,095** | **18,681** | **9,267** | **147** | **66.5** |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4,000 | 4,000 | 4,000 | 277 | 4,277 | 3,440 | 827 | 10 | 80.4 |
| 고도 역사도시 조성 | 6,333 | 6,333 | 6,333 | 2,212 | 8,545 | 7,024 | 1,521 | - | 82.2 |
| 고도 탐방거점 조성 | 1,145 | 1,145 | 1,145 | - | 1,145 | 161 | 984 | - | 14.1 |
| 역사문화권 정비 | 12,233 | 12,233 | 12,233 | 1,895 | 14,128 | 8,056 | 5,935 | 137 | 57.0 |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대체 부지 확보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국비 교부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59)]

59) 국가유산청은 2023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월별 집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2025년에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임.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절차 이행여부·연내 집행 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여야 함.[60]

그러나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40% 미만 사업의 교부 현황을 보면, 5건 중 2건은 보조금을 1회에 전액 교부하여 분할교부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대부분 1~2회에 걸쳐 교부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 40% 미만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교부현액 (A)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집행부진 사유 |
|---|---|---|---|---|---|
| 내역사업명 | 수행주체 (교부횟수) | | | | |
| 고도역사도시 조성 | 부여군 (1) | 2,467 | 982 | 39.8 | ·충남 문화유산위원회 심의<br>·관련 토지 협의 불가에 따른 위치 및 계획변경<br>·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보류<br>·관계부서 협의(경관심의, 건축허가 등) |
| 고도 탐방거점 조성 | 경주시 (2) | 627 | - | - | ·건립 예정부지 중요 유구 확인 및 대체 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
| | 부여군 (1) | 518 | 161 | 31.08 | ·문화유산위원회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 역사문화권 정비 | 강릉시 (5) | 3,259 | 400 | 12.27 | ·수시배정사업으로 교부 지연 및 행정절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이행 기간 소요 |
| | 나주시 (2) | 3,045 | 262 | 8.6 | |

주) 2025년도 총 31건의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횟수는 1회(3건) 2회(26건) 4회(1건) 5회(1건)**임
자료: 국가유산청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반복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가 보조금 교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분할교부 원칙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6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과거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와 관련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점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실효적인 개선방안의 마련과 그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해 보임.

[관련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구분 | |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
| 2023 | 시정요구명 | (20)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사업점검 필요 (주의) |
| | 지적사항 | ○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고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각 50%씩을 2회로 형식적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향후 형식적 분할 교부를 지양하고, 고도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조치결과 | ○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의 집행률 부진에 따른 '25년도 예산 감액 및 매월 집행현황 점검 ('24.12.31) |
| 2024 | 시정요구명 | (10) 보조사업자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주의)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함 |
| | 시정요구사항 | ○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집행 촉구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
| | 조치결과 |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 추진을 완료함 ('25.12.31) |

【기　타】

# 1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유산청에 대해 시정요구 25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 · 주의 10건 · 제도개선 15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1 | 10 | 15 | 1 | 25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1 | 10 | 15 | 1 | 25 |

국가유산청은 시정요구사항 25건에 대해 2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4%)하고 4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25 | 21 | 84 | 4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25 | 21 | 84 | 4 |

##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집행 촉구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집행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임.**

국가유산청은 내역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수시 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2025년도에도 계약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교부현액 141억 2,800만원 중 80억 5,6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57.0%에 그쳤음.[61)]

동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과거 지방비 미확보 문제를 해소하여 ‘역사문화권정비(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을 완료(’25.12.31.)하였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계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여전히 대규모 이월과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방비 미확보 사례를 해소하는 데 그쳤을 뿐 보조사업자의 집행여건을 고려한 예산 교부 및 집행관리라는 시정요구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지방비 확보 여부,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실효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임.[62)63)]

---

61) 내역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은 역사문화권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29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2024~2025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국가유산청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 (A)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 집행률 |
| | 본예산 | 추경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 | |
| 2024 | 5,550 | 5,550 | 5,541 | 5,541 | - | 5,541 | 3,568 | 5,541 | 3,568 | 1,873 | 101 | **64.4** |
| 2025 | 12,233 | 12,233 | 12,233 | 12,233 | 1,895 | 14,128 | 8,056 | 12,233 | 6,701 | 5,935 | 137 | **57.0** |

자료: 국가유산청

6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시정요구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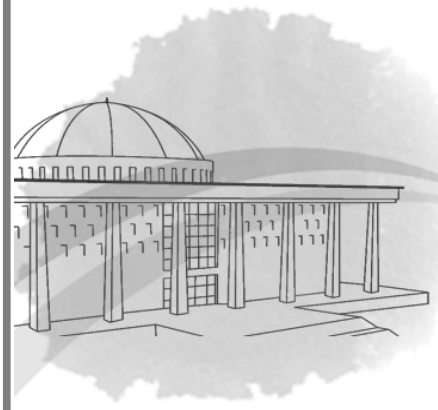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시정요구명 | (10) 보조사업자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
| 시정요구사항<br>(시정요구수준) |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집행 촉구를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주의) |
| 조치상황 | 조치완료 |
| 조치결과 | ㅇ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 추진을 완료함<br>- 전주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사업 추진 완료 (’25.12.31.) |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3) ‘12. 고도 보존 및 육성’ 검토의견 관련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조 3,781억 600만원(10.6%)이 많은 14조 4,305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499억 5,300만원(19.5%)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8,464,230 | 8,464,230 | 8,016,367 | △447,863 | 8,159,239 | 8,159,239 | 10,171,632 | 2,012,393 | 2,155,265 |
| 기 금 | 5,042,077 | 5,042,077 | 4,064,210 | △977,867 | 4,893,186 | 4,893,186 | 4,258,900 | △634,286 | 194,690 |
| 총수입 | 13,506,307 | 13,506,307 | 12,080,578 | △1,425,729 | 13,052,425 | 13,052,425 | 14,430,531 | 1,378,106 | 2,349,953 |

문의 :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200억 600만원(2.2%)이 많은 19조 8,721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259억 8,300만원(12.0%)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9,896,323 | 9,896,323 | 9,551,049 | △345,274 | 10,481,861 | 10,839,597 | 11,577,512 | 737,915 | 2,026,463 |
| 기 금 | 8,574,788 | 8,574,788 | 8,195,109 | △379,679 | 8,259,777 | 8,612,538 | 8,294,629 | △317,909 | 99,520 |
| 총지출 | 18,471,111 | 18,471,111 | 17,746,158 | △724,953 | 18,741,638 | 19,452,135 | 19,872,141 | 420,006 | 2,125,983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7조 2,816억 9,500만원으로, 20조 7,453억 6,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0조 7,275억 8,200만원이 수납(수납률 119.9%)되고, 177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21,333 | 21,333 | - | 21,333 | 21,249 | 15,234 | 6,015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4,005,522 | 14,421,258 | - | 14,421,258 | 17,549,558 | 17,542,061 | 7,497 | - |
| - 구조개선사업계정 | 6,527,083 | 6,942,819 | - | 6,942,819 | 8,187,761 | 8,185,238 | 2,523 | -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7,478,439 | 7,478,439 | - | 7,478,439 | 9,361,797 | 9,356,823 | 4,973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3,047 | 43,047 | - | 43,047 | 3,339 | 3,320 | 19 | - |
| - 투자계정 | 21,033 | 21,033 | - | 21,033 | 887 | 868 | 19 | - |
| - 융자계정 | 22,014 | 22,014 | - | 22,014 | 2,453 | 2,453 | -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34 | 34 | - | 34 | 49 | 4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481 | 3,481 | - | 3,481 | 29,854 | 27,039 | 2,815 | - |
| - 지역자율계정 | 3,067 | 3,067 | - | 3,067 | 27,169 | 24,528 | 2,641 |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 지역지원계정 | 414 | 414 | - | 414 | 2,279 | 2,195 | 84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 - | 305 | 305 |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 160 | 160 | -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 2,792,542 | 2,792,542 | - | 2,792,542 | 3,141,160 | 3,139,719 | 1,441 | - |
| - 자본계정 | - | - | - | - | 1 | 1 | - | - |
| - 손익계정 | 2,792,542 | 2,792,542 | - | 2,792,542 | 3,141,160 | 3,139,719 | 1,441 | - |
| 합 계 | 16,865,959 | 17,281,695 | - | 17,281,695 | 20,745,369 | 20,727,582 | 17,787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6조 4,811억 6,200만원으로, 26조 1,012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981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817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7,259,351 | 7,710,151 | 4,841 | 6,335<br>△6,335 | 83,410 | 7,798,402 | 7,779,261 | 3,930 | 15,211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281,344 | 12,604,016 | 1,611,977 | 25,138<br>△25,138 | 83,410 | 14,299,403 | 14,032,129 | 8,044 | 259,230 |
| - 구조개선사업계정 | 5,634,434 | 5,992,170 | 1,003,089 | 25,021<br>△25,021 | 83,410 | 7,078,669 | 7,038,043 | 8,044 | 32,582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6,646,910 | 6,611,846 | 608,888 | 117<br>△117 | - | 7,220,734 | 6,994,087 | - | 226,647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6,495 | 16,495 | - | - | - | 16,495 | 16,495 | - | - |
| - 투자계정 | 16,495 | 16,495 | - | - | - | 16,495 | 16,495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62,423 | 1,389,820 | 167,803 | 1<br>△1 | - | 1,557,623 | 1,467,113 | 83,518 | 6,992 |
| - 지역자율계정 | 710,758 | 710,758 | 167,803 | - | - | 878,561 | 793,787 | 83,518 | 1,255 |
| - 지역지원계정 | 634,059 | 661,456 | - | 1<br>△1 | - | 661,456 | 656,079 | - | 5,37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5,789 | 15,789 | - | - | - | 15,789 | 15,789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1,817 | 1,817 | - | - | - | 1,817 | 1,457 | - | 36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697 | 15,697 | - | - | - | 15,697 | 15,697 | -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 2,792,542 | 2,792,542 | 1,000 | 134,077 △134,077 | - | 2,793,542 | 2,790,594 | 2,645 | 303 |
| - 손익계정 | 2,792,542 | 2,792,542 | 1,000 | 134,077 △134,077 | - | 2,793,542 | 2,790,594 | 2,645 | 303 |
| 합 계 | 23,727,852 | 24,528,721 | 1,785,621 | 165,552 △165,552 | 166,820 | 26,481,162 | 26,101,290 | 98,137 | 281,735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0조 6,463억 3,400만원으로, 10조 6,984억 4,800만원이 징수결정(순계)되어 9조 6,092억 6,200만원이 수납(순계)(수납률 89.8%)되고, 1조 888억 5,000만원은 미수납되어 3억 3,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 2,597,796 | 2,725,462 | 3,921,709 (2,367,277) | 3,918,184 (2,363,752) | 3,525 | - |
| 농지관리기금 | 2,328,915 | 2,328,915 | 3,538,143 (3,117,246) | 2,462,088 (2,041,191) | 1,075,718 | 336 |
| 축산발전기금 | 1,025,446 | 1,025,446 | 1,929,949 (991,276) | 1,929,374 (990,701) | 575 | - |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 3,104,461 | 3,104,461 | 5,667,256 (3,201,804) | 5,658,223 (3,201,772) | 9,032 | - |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 482,612 | 505,284 | 492,036 (256,880) | 492,036 (256,880) | - |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 405,862 | 405,862 | 230,178 (230,178) | 230,178 (230,178) | - | - |
| 양곡증권정리기금 | 550,904 | 550,904 | 625,047 (524,787) | 625,047 (524,787) | - | - |
| 합 계 | 10,495,996 | 10,646,334 | 16,404,319 (10,698,448) | 15,315,132 (9,609,262) | 1,088,850 | 336 |

주 1) 총계 기준
2) 괄호안의 금액은 징수결정액(순계), 수납액(순계)임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0조 6,690억 2,200만원으로, 9조 6,092억 6,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0.1%)되고 607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398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 2,597,796 | 2,725,462 | 6,367 | 2,731,829 | 2,363,752 | 14,248 | 21,189 |
| 농지관리기금 | 2,328,915 | 2,328,915 | - | 2,328,915 | 2,041,191 | - | 110,016 |
| 축산발전기금 | 1,025,446 | 1,025,446 | 1,321 | 1,026,767 | 990,701 | - | 16,290 |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 3,104,461 | 3,104,461 | - | 3,104,461 | 3,201,772 | - | 210,211 |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 482,612 | 505,284 | 15,000 | 520,284 | 256,880 | 46,529 | 36,256 |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 405,862 | 405,862 | - | 405,862 | 230,178 | - | - |
| 양곡증권정리기금 | 550,904 | 550,904 | - | 550,904 | 524,787 | - | 45,857 |
| 합 계 | 10,495,996 | 10,646,334 | 22,688 | 10,669,022 | 9,609,262 | 60,777 | 439,820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자산은 전년 대비 2,834억 3,100만원이 감소된 78조 9,218억 1,2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3,193억 7,900만원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이 각각 176억 6,600만원, 5,851억 4,400만원 감소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648억 3,700만원이 감소된 9조 7,719억 2,000만원으로 차입부채 3,215억 7,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5억 9,500만원이 감소된 69조 1,498억 9,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4조 426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011억 2,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3조 7,66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848억 7,1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78,921,812 | 79,205,243 | (283,431) | (0.4) |
| | | 금융자산 | 20,024,051 | 19,704,672 | 319,379 | 1.6 |
| | | 유·무형자산 | 56,487,020 | 56,504,686 | (17,666) | (0.0) |
| | | 기타자산 | 2,410,741 | 2,995,885 | (585,144) | (19.5) |
| | 부 채 | | 9,771,920 | 10,036,757 | (264,837) | (2.6) |
| | | 차입부채 | 9,182,907 | 9,504,486 | (321,579) | (3.4) |
| | | 충당부채 | 381,163 | 386,692 | (5,529) | (1.4) |
| | | 기타부채 | 207,850 | 145,578 | 62,272 | 42.8 |
| | 순자산 | | 69,149,892 | 69,168,487 | (18,595) | (0.0)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4,042,633 | 11,541,511 | 2,501,122 | 21.7 |
| | 재정운영순원가 | | 14,553,539 | 12,304,320 | 2,249,219 | 18.3 |
| | 재정운영결과 | | 13,766,105 | 11,181,234 | 2,584,871 | 23.1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개 회계와 양곡증권정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축산발전기금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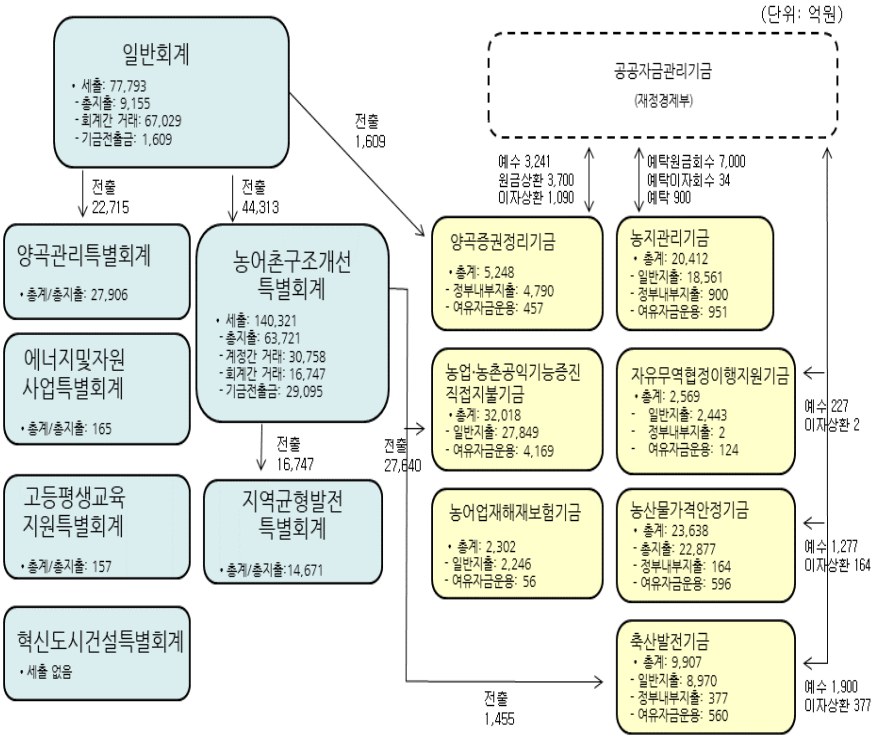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4,313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2조 2,715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609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6,747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7,640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55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농지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7,000억원의 예탁원금 및 34억원의 이자를 회수하였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3,241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227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1,277억원, 축산발전기금은 1,900억원을 각각 예수하였음.

또한 농지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게 900억원을 예탁하였음.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게 3,700억원의 예탁원금을 상환하였음. 공공자금관리기금에게 양곡증권정리기금은 1,090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2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164억원, 축산발전기금은 377억원의 이자를 각각 상환하였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흐름도]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308개 세부사업에서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복지·지역개발, 양곡관리·유통혁신, 재해대비·기반정비, 식품, 동물복지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토고) ODA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집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교부되어 과도한 이월재원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사업관리기관이 태양광 공급·구축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문업체 활용 여부와 역할 분담 구조 등을 확인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본사업 전환에 따라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38.1%에 그치는 등 품목별 가입 수요와 보험료 지원 규모에 대한 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품목별 가입 특성과 농가의 가입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은 당초 대규모 기반조성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설 현대화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 과수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해졌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의 불용예정액 46억원을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사업의 성과확산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이는 당초 공동영농 성과확산 및 유통 효율화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밀·콩 소비촉진 홍보 및 할인행사 사업으로 확대 운영한 것으로서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조건위반 시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체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여섯째,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사업의 최종 수요자이자 활용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연구관리전담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성과의 국가소유를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으로 개발된 기술이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2025년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실시한 공공비축미 대여제도는 국가 비축양곡을 민간에 제공한 후 현물로 회수하는 제도임에도 「양곡관리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회수 방법・이익 환수 방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논콩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콩의 정부 수매 및 비축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산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기반의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13개 사업) 중 글로벌육성지원 융자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존 수혜업체에 반복 지원되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속 지원받는 업체의 비중도 높아 정책금융의 신규 지원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출〉

## 1. 농촌지역 사회· 경제적 인프라 개발사업(토고) 사업: 실제 집행 여건을 고려한 예산교부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토고)’** 사업은 토고(Togo)의 취약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성 양자 ODA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2025년도 농촌지역 사회· 경제적 인프라 개발(토고) 사업 등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국제농업협력(ODA) | 243,926 | 243,926 | 2,200 | - | 246,126 | 246,126 | - | - | 114,151 |
| 다자성양자 | 202,382 | 202,382 | - | - | 202,382 | 202,382 | - | - | 72,711 |
| 농촌지역 사회· 경제적 인프라 개발사업(토고) | 1,800 | 1,800 | - | - | 1,800 | 1,800 | - | - | 1,8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4년-2026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국제기구인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임.

2) 일반회계-국제농업협력(ODA)(5031-300)(국제농식품협력관실)

## 나. 검토의견

**첫째,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토고) ODA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교부되어 이월재원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토고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GGGI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정부 개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예산 8억 5,000만원 중 집행액은 3,500만원(실집행률 4.1%)에 그쳐 8억 1,5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고, 2025년에도 사업대상지 관련 행정절차, 현지 정부 개편 및 선거 일정, 일부 현장활동 추진방식 조정 등의 사유로 이월예산 3억원 이상이 다시 2026년으로 재이월되었음.[3)]

또한 2025년 예산 대부분도 이월됨에 따라, 2026년 기준 이월재원은 총 21억 8,300만원으로 본예산 18억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음.

[농촌지역 사회· 경제적 인프라 개발(토고)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수행기관(GGGI) 기준 | | | | | |
|---|---|---|---|---|---|---|---|---|
| | 예산액 | 교부액 (A)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현액 (C=A+B) | 집행액 (D)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D/C) |
| 2024년 | 850 | 850 | - | 850 | 35 | 815 | - | 4.1 |
| 2025년 | 1,800 | 1,800 | 815 | 2,615 | 432 | 2,183 | - | 16.5 |
| 2026년 | 1,850 | - | 2,183 | 2,183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전년도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해 이월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자성 양자 ODA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 진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재원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3) - 2024년 예산 이월사유: 사업 추진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의, 사업팀 구성 등 지연
- 2025년 예산 이월사유: 사업대상지 관련 행정절차, 현지 정부 개편 및 선거 일정, 일부 현장 활동의 추진방식 조정에 따라 전액이월

**둘째, GGGI의 2025년 집행내역을 보면, 태양광 공급·구축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문업체 활용 여부와 역할 분담 구조 등을 확인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GGGI는 2025년 수확후처리 기기 및 태양광 시스템의 설계·공급·구축 사업을 위하여 약 13억 6,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임. 해당 계약의 수행기관은 국제개발 NGO인 '더멋진세상'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됨.[4)]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멋진세상'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여러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태양광 설비의 설계·조달·구축 및 유지관리 등 전문적인 기술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임.

그럼에도 해당 사업이 기술 전문기업이 아닌 국제개발 NGO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상대방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업 수행체계와 기술 전문성 확보 방식 또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더욱이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만큼, 해당 기관이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인지,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사업

4) 더멋진세상(www.betterworld.or.kr)은 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NGO 기구임.

수행 역량과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도 명확하지 않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자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임.

[GGGI의 태양광 시스템 공급·구축 계약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용 | 예산 | 집행 | 이월 | 계약자 | 계약기간 | 계약방법 (수의 등) |
|---|---|---|---|---|---|---|
| 수확후처리 기기 및 태양광 시스템 설계, 공급 및 구축 | 1,362 | 276 | 1,086 | 더멋진세상 | 2025.4.14. ~ 2027.4.14. | 수의계약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업은 ODA 사업의 특성상 수행기관인 GGGI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으나, 대한민국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부처로서 GGGI의 사업 추진 전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사업: 연구용역과제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와 중복문제 개선 필요 등

### 가. 개 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사업은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논의 및 대통령 자문 목적의 대통령 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28억 700만원이 집행(81.5%)되고 3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5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 3,447 | 3,447 | | 48<br>△48 | 3,447 | 2,807 | 318 | 322 | 3,01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시장 개방과 농촌 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위촉직 위원 24명·당연직 위원 6명(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 추진 시 관계부처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연구계획 수립과 발주 시기를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일반회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7033-341)(농촌정책국)

이 위원회는 2025년에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두 달 앞서 추진한 ‘농업법인 제도발전 방안 연구’와 비교할 때 수행기관이 동일하고 농업법인 활성화 등 연구 주제와 정책방향이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음.

[2025년도 용역수행과제 중 유사·중복 소지가 있는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연구용역과제 | 발주 | 계약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 |
|---|---|---|---|---|---|---|
| 농식품부 정책연구개발사업 (7031-300) | 농업법인 제도발전 방안 연구 | 40 | 36 | 지에스앤 제이 인스티튜트 | 2025.6.~ 2025.11. | 제한경쟁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7033-341) |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45 | 40 | | 2025.8.~ 2026.2. | 일반경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에 대해 위원회는 연구 목적과 세부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연구 모두 농업 고령화, 영농승계, 경영규모화 등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공동영농 조직 육성·농업법인 역할 강화 등 제시된 정책방향 또한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두 용역 과제 비교]

| 구분 | 농업법인 제도 발전방안 연구 (농식품부, 2025) |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6) | 유사성 |
|---|---|---|---|
| 서론 | 연구 필요성·목적, 선행연구 | 연구 필요성·목적, 선행연구 | 매우유사 |
| 농업법인 제도 | 제도 및 운영실태 | 제도적 기반 및 활성화 필요성 | |
| 해외사례 | 일본·프랑스 농업법인 | 일본·프랑스 농업법인 | |
| 공동영농 | 농업생산법인 중심 | 공동영농조직 중심으로 확대 | 유사 |
| 세대전환 | 일부 포함 | 별도 장으로 확대 | 일부유사 |
| 정책과제 | 사업범위, 농업생산법인, 역량강화 | 사업범위, 농업생산법인, 역량강화 등 | 매우유사 |

동일 연구기관이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유사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이 분산 추진됨으로써 연구비가 중복투입되고 연구 성과가 중복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외에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중점추진과제 발굴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은 2025년 12월 이후 발주되어 대부분 다음 연도까지 수행되는 일정으로 추진되었음.

연구용역은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사실상 이월을 전제로 연말에 발주된 것은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용역수행과제 중 연도말 추진과제]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용 | 발주 | 계약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 (수의 등) |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중점추진과제 발굴 연구 | 20 | 20 | ㈜농00 | 2025.12.~ 2026.3. | 수의계약 |
|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연구 | 80 | 80 | 법무법인 00 | 2026.1.~ 2026.7. | 제한경쟁 |
| 농축수산물의 CPI 영향평가와 국민인식 개선방안 | 63 | 63 | 0000경제연구원 | 2025.12.~ 2026.6. | 수의계약 |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둘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홍보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는 2025년 정책 언론홍보, 뉴미디어 광고 및 광고대행 용역 등에 총 2억 9,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책 제안과 관계부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업집행기관과 유사하게 대외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홍보사업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하고, 한정된 예산이 정책 개발과 자문 기능 수행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홍보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용 | 발주 | 계약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 (수의 등) |
|---|---|---|---|---|---|
| 2025년 농어업위 정책 언론홍보<br>(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br>- 다큐멘터리 60분 1건 (2025.03.28.)<br>- 전문가 패널 토론 60분 1건 (2025.04.11.) | 160 | 160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5.2.~<br>2025.4. | 수의 |
| 2025년 뉴미디어광고대행사 선정 용역 | 118 | 118 | | 2025.3..~<br>2025.12. | 수의 |
| 2025년 농어업위 뉴미디어 광고 | 15 | 15 | | 2025.4.~<br>2025.12. | 수의 |
| 계 | 293 | 293 | | | |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3.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품목별 가입수요 추계 정확성 제고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체계 개선 필요

### 가. 개 요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 감소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55억 5,100만원 중 791억 8,800만원이 집행(92.6%)되고 63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5년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농업재해보험 | 801,929 | 801,929 | 29,687 | △7,690 | 823,926 | 817,563 | - | 6,363 | 887,089 |
| 농업수입안정보험 | 207,817 | 207,817 | - | △122,266 | 85,551 | 79,188 | - | 6,363 | 275,18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순보험료의 약 50%는 국비로, 30%는 지방비로 지원)은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를 모두 반영하여 가입연도 수입이 평년수입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이루어짐. 대상 품목은 2025년 기준 15개[7)](본사업 9개, 시범 6개)에서 2026년에 20개[8)]로 확대됨.

---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농업재해보험(1031-300)(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7) 2025년 본사업 9개: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시범사업 6개: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8) 2026년: 2025년 + 5개 (사과・배・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데 반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임.

[농업수입안정보험 대 농작물재해보험 비교]

| 구분 | 농업수입안정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
| 대상품목 | ('24) 시범사업 9개<br>→ ('25) 시범사업 6개, 본사업 9개 | ('24) 73개 → ('25) 76개 |
| 보상기준 |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품목별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5% 미만으로 감소 | 자연재해로 인해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 수량의 60~90% 미만으로 감소 |
| 보장수준 |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 60%, 70%, 80%, 85%, 9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
| 지원내용 | 순보험료 중 약 50% 국비, 약 30% 지방비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첫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본사업 전환에 따라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38.1%에 그치는 등 품목별 가입 수요와 보험료 지원 규모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에는 품목별 가입 특성과 농가의 가입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콩・고구마・가을감자 등 9개 품목을 본사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벼・가을무・가을배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예산은 2024년 81억원에서 2025년 2,078억 1,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그러나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은 791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 38.1%에 그쳤으며, 1,222억원의 재원이 내역변경을 통해 다른 보험사업 재원으로 활용되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가입률이 19.0%로 목표 가입률(17%)을 상회하였으나 보험료 수준이 낮은 품목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고,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의 가입이 저조하여 국고 지원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로 품목별 가입률을 보면 보리(46.8%), 가을감자(28.7%), 가을무(25.8%)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인 반면, 복숭아(0.2%), 감귤(1.3%), 포도(2.4%), 옥수수(2.8%) 등은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품목별 가입 실적에 큰 편차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산과 실제 집행액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전체 가입률은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집행률이 38.1%에 불과한 것은 품목별 가입 수요와 보험료 지원 규모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품목별 가입 실적과 가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계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가입률]

(단위: 백만원, %)

| 구분 | | 예산액(A) | 결산액(B) | A-B | 가입률 |
|---|---|---|---|---|---|
| 본사업 (목표 가입률 25%) | 콩 | 15,325 | 16,853 | △1,528 | 21.5 |
| | **고구마** | **11,250** | **2,041** | **9,209** | 9.0 |
| | **감자** | **16,266** | **2,509** | **13,757** | 24.6 |
| | 보리 | 966 | 777 | 189 | 46.8 |
| | 옥수수 | 1,293 | 223 | 1,070 | 2.8 |
| | **마늘** | **25,866** | **16,664** | **9,202** | 17.2 |
| | **양파** | **22,800** | **10,721** | **12,079** | 18.1 |
| | 양배추 | 4,121 | 2,514 | 1,607 | 16.9 |
| | **포도** | **28,088** | **2,416** | **25,672** | 2.4 |
| 시범사업 (목표가입률 15%) | **벼** | **32,452** | **1,780** | **30,672** | 19.2 |
| | 가을무 | 1,190 | 176 | 1,014 | 25.8 |
| | 가을배추 | 2,360 | 587 | 1,773 | 22.7 |
| | 단감 | 3,008 | 283 | 2,725 | 5.3 |
| | **복숭아** | **9,224** | **34** | **9,190** | 0.2 |
| | 감귤 | 1,530 | 115 | 1,415 | 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농업재해보험사업과 달리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은 보험료 지원예산과 사업운영비가 구분되지 않은 채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어 집행단계에서 운영비 증액 교부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료 지원과 운영비를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예산편성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과 달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예산과 사업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9)]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편성 내역 및 개선방안]

| 2025년 예산편성 내역 | 개선방안 |
|---|---|
| ○ 민간경상보조(320-01)<br>**- '25년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207,817백만원**<br>〈신 설〉<br>〈신 설〉 | ○ 민간경상보조(320-01): 207,817백만원<br>**- '25년 보험료 지원 175,739백만원**<b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운영비 지원 435백만원**<br>**- 농협손해보험 운영비 지원 31,643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안 설명자료

그러나 현행 예산구조에서는 실제 보험료 지원에 사용된 금액과 사업 운영기관인 농협손해보험과 관리·감독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 2025년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은 전체 예산의 38.1%만 집행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모는 당초 4억 3,500만원에서 15억 700만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A) | 결산액(B) | A-B |
|---|---|---|---|
| 보험료 지원(국비 50%) | 175,739 | 57,712 | 118,027 |
| 농협손보 운영비지원 | 31,643 | 19,906 | 11,737 |
| **농금원 운영비 지원** | 435 | 1,570 | △1,135 |
| 합계 | 207,817 | 79,188 | 128,62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별도 세부사업(1031-301)에 편성하고 있음.

그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설명회 운영, 가격기준 재정립, 수확량 신고제 성과분석, 표준수확량 실측조사 및 대국민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정책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까지 동 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사업 운영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역시 별도의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감독기관과 운영기관이 각각 홍보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능 중복과 예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5년 홍보예산 집행현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협손해보험 |
|---|---|
| 열차 내 영상광고 1억 5,000만원 등 6건<br>총 2억 5,900만원 집행 | 농작물재해보험 홍보 포함 총 31억 9,700만원 집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홍보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용 | 예산 | 집행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br>(수의 등) |
|---|---|---|---|---|---|
| 농업수입안정보험 열차 내 영상광고<br>((주)연합뉴스) | 150 | 150 | 한국언론<br>진흥재단 | 2025.8.1.<br>~2025.8.16. | 위탁 |
| 농업수입안정보험 유튜브 트루뷰 광고<br>(주식회사 케이티 나스미디어) | 70 | 70 | 한국언론<br>진흥재단 | 2025.3.24.<br>~2025.9.23. | 위탁 |
| 농업수입안정보험 온라인 신문 배너광고<br>(농촌경제신문) | 2 | 2 | 한국언론<br>진흥재단 | 2025.4.28.<br>~2025.5.9. | 위탁 |
|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기술회보 광고<br>((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1 | 1 | 한국언론<br>진흥재단 | 2025.6.1.<br>~2025.6.30. | 위탁 |
| 농업수입안정보험 신문 지면광고<br>(아시아투데이(주)) | 6 | 6 | 한국언론<br>진흥재단 | 2025.7.31. | 위탁 |
| 기타 현장 설명회 자료 등 제작 | 30 | 30 | - | - | - |
| 계 | 259 | 259 | | | |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험료 지원예산과 사업운영비를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여 운영비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홍보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별도 내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가 두 사업 실적을 통합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감독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한 사업결과보고서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별 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별도 내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책 목적과 보장 구조에 차이가 있음. 또한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가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사업성과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농협손해보험이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면 가입농가 수·가입면적 및 가입금액 등의 실적을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실제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의 전환 규모와 품목별 가입 실적·보험 수요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2,07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성과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실적은 구분하여 정산·관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결과보고서의 경우 두 보험의 사업대상, 방식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일괄 작성 중이나, 향후에는 구분 작성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농가 수·가입면적·가입금액·보험금 지급액 등 주요 실적을 농작물재해보험과 구분하여 관리·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과와 정책효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 기존 과수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미흡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은 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은 높은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생산기반 정비, 신품종 전환, 공동농기계 및 교육·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억 7,8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2%)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5년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조성 | 1,278 | 1,278 | - | - | 1,278 | 1,242 | - | 36 | 9,13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4.2.)에 따라 2030년까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1,200ha(6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됨. 내역사업별 국비지원 비율과 연부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기간은 과수의 더딘 생장속도, 기반조성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지당 최대 3년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재원분담비율 및 연부율]

| 내역사업 | 재원분담 | 연부율(%) | | |
|---|---|---|---|---|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생산기반 조성 | 조사·설계(국비 100), 기반조성(국비 70, 지방비 30) | 30 | 70 | - |
| 과원 정비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30 | 30 | 40 |
| 농가 교육·컨설팅 | 국비 50, 지방비 50 | 50 | 50 | - |
| 공동이용 장비 | | - | 100 | - |
| 홍보·마케팅 | | - | - |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2220-371)(유통소비정책관실)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개념 |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 |
| 기대효과 | 스마트과수원 조성으로 노동력 30% 절감, 생산성 2배 향상, 기계화율 31%→50% 제고 |
| 특징 | - (全 단계 지원) 기반조성·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통합 지원<br>- (집단화·조직화) 개소당 20㏊ 내외로 집단화하고, 지자체·생산유통 통합조직·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br>- (품종 다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조중생종 또는 내재해품종 우선 지원 |
| 대상지 | 2025년에 사과단지 4개소(양구군, 장수군, 포항시, 거창군) 선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은 당초 대규모 기반조성[11]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설 현대화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 과수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해졌으므로,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당초 생산기반조성, 과원 정비, 교육・컨설팅, 공동이용장비, 홍보・마케팅 등을 연계하여 과수 생산・유통 기반을 집단화한 스마트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음.

특히 내역사업 중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관정・용배수로・진입로 등 공용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개별 농가 단위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집단화・규모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과수원이 분산되어 있어 공동 용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미 개별 관정을 활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공동 용수시설 및 용배수로 설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생산기반조성 실시설계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

11) 과수단지 내 공동의 관정・용배수로 확보, 공동 진입로 등 공용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025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업시행주체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 | **33** | **33** | **26** | **26** | **-** | **26** | **-** | **-** | **26** | **0.0** |
| 선정 지자체 4곳 | 1,245 | 1,245 | 1,215 | 1,215 | - | 1,215 | 394 | 672 | 149 | 31.6 |
| 계 | 1,278 | 1,278 | 1,241 | 1,241 | - | 1,241 | 394 | 672 | 175 | 30.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 결과 현재 이 사업은 기존 과수원에 대한 관수시설·재배시설·스마트 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 현대화 중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FTA 기금”)의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한편 당초 사업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제시되었던 생산기반조성 사업 역시 기존 FTA 기금의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사업과 비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
|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 (변경 전)<br>개소당 20ha 내외로 집단화하여 기반조성 및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결쳐 통합 지원 | (사업내용) 고품질 생산시설(품종갱신, 지주 시설 등)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br>*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 과원 경지정리<br>*기본조사비 (국고보조 100%)<br>*기반조성비(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 (변경 후) 5개(생산기반조성, 과원정비, 공동이용장비,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로 구분되었던 내내역을 2개(기반조성및 과원정비, 교육·홍보)로 통합 | ('25예산) 31,990백만원<br>('25결산) 31,990백만원<br>(실집행 24,030) | ('25예산) 17,674백만원<br>('25결산) 17,665백만원<br>(실집행 15,7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실제로 2025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포항시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이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의 생산기반조성 부분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즉, 당초 사업의 차별화 요소로 제시되었던 생산기반조성 기능도 기존 FTA 기금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고, 해당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사업 내용은 기존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은 신설 당시 제시되었던 “생산기반조성부터 시설 현대화까지 통합 지원하는 특화단지 조성 사업” 목적과 실제 집행내용 간 괴리가 크고 현행 사업 구조만으로는 기존 과수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의 정책 목적과 기존 과수 지원사업과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고,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재설계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 가. 개 요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은 밀·콩 등 논 타작물 생산의 성과를 확산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5억 2,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2)]

[2025년도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내역 변경(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전략작물산업화 | 53,308 | 53,308 | - | - | 53,308 | 51,818 | - | 1,490 | 56,361 |
|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 1,825 | 1,825 | - | 4,698 | 6,523 | 6,523 | - | - | 1,825 |
| 교육훈련 | 1,210 | 1,210 | - | - | 1,210 | 1,210 | - | - | 1,210 |
| 성과확산 | 615 | 615 | | 4,698 | 5,313 | 5,313 | | | 615 |
|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 6,400 | 6,400 | - | △4,598 | 1,802 | 1,802 | - | - | 4,400 |
| 제품화패키지지원 | 9,850 | 9,850 | - | △100 | 9,750 | 9,750 | - | - | 14,8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사업의 내내역사업에는 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보조하는 교육훈련 사업(개별 농업인 및 개별 경영체의 첨단 기술 활용과 전문 재배 역량 향상)과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조하는 성과확산 사업(대형 법인 대상 공동영농 성공 모델 확산, 유통 효율화)이 있음.

한편 2025년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내역사업인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과 **‘제품화패키지지원’** 사업의 불용예정 예산 46억 9,800만원을 성과확산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성과확산 사업비는 당초 6억 1,500만원에서 46억 9,800만원이 증가한 53억 1,300만원으로 확대 편성·집행되었음.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전략작물산업화(2131-351)(식량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의 불용예정액 46억원을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사업의 성과확산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이는 당초 공동영농 성과확산 및 유통 효율화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밀·콩 소비촉진 홍보 및 할인행사 사업으로 자의적 운영한 것으로서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에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사업의 '성과확산' 사업에는 대형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영농 우수사례 확산·유통 효율화 및 선도경영체 육성 성과 공유 등을 목적으로 당초 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에서 예산 64억원 중 18억 100만원만 집행하여 45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재원을 다른 내역사업인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사업의 성과확산'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성과확산 사업비는 당초 예산의 약 7.6배 수준인 53억 1,3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2025년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집행잔액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당초계획 | | 2025년 집행 | | 집행잔액 (A-B) |
|---|---|---|---|---|---|
| | 내역 | 예산액(A) | 내역 | 집행액(B) | |
| 가루쌀 가공확대지원 | 2만톤×0.4백만원×국비50% | 4,000 | 가루쌀 가공업체 10개, 약 2,815톤 지원 | 564 | 3,436 |
| 밀 가공확대지원 | 12천톤×0.4백만원×국비50% | 2,400 | 밀 가공업체 10개소, 약 6,183톤 지원 | 1,237 | 1,163 |
| 계 | - | 6,400 | - | 1,801 | 4,59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확대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보면, 전국민 대상 국산 콩 소비홍보 방송·캠페인 광고에 30억 400만원, 전략작물 온·오프라인 할인전에 13억 4,2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대부분이 밀·콩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사업의 성과확산 사업 중 내역변경 증액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비고 | 집행일자 | 사업내용 | 집행내역 | 집행액 |
|---|---|---|---|---|
| 자체 | '25.11 ~ 12. | 오프라인 유통매장 소비(할인) 판촉 지원 | 제품 할인비 등 | 655 |
| | '25.12. | 온라인 할인 기획전 | 할인쿠폰 등 | 79 |
| | '25.12. | 국산 콩·밀 업체 대상 홈쇼핑 판촉 지원 | 홈쇼핑 입점료 174 | 174 |
| | '25.10~12. | 국산밀 홍보 및 제빵대회 지원 등 | 제빵대회 부스비 및 운영 등 | 72 |
| | '25.11~12. | 가루쌀 제과·제빵 할인 지원행사 | 제품 할인쿠폰 등 | 362 |
| | **소계 (자체집행, A)** | | | 1,342 |
| | **계약기간** | **계약내용** | **계약업체** | **계약금액** |
| 외주 | '25.9.3 ~12.19 | 국산콩 소비 홍보기획 대행용역 | 소00 | 32 |
| | '25.10.27. ~ '26.1.31. | 국산밀 우수성 인지도 제고 캠페인 (국산밀 데이 2차) | 식생활0000 | 140 |
| | '25.10.21 ~ 11.21. | 2025년 푸드위크 전략작물 홍보관 운영 | 주식회사0000 | 110 |
| | '25.11.14 ~ 12.19. | 전략작물 온·오프라인 연계 소비촉진 홍보행사 대행용역 | 000코리아 | 200 |
| | '25.11.20 ~ 12.31. | 가루쌀 제과·제빵 할인 지원행사 정산용역 | (사)00경제정보 연구소 | 10 |
| | '25.9.8. ~ 12.31. | 국산콩 소비 홍보 (TV방송 10건, SNS 10건, 언론매체 31건) | 한국언론진흥재단 | 1,866 |
| | '25.12.3 ~ 12.31. | 베이킹 경영대회 우리밀 미디어 홍보 (MBN 천하제빵) | | 100 |
| | '25.12.16. ~ 12.31. | 국산 밀·콩 소비홍보 (TV방송 5건, SNS 7건) | | 898 |
| | **소계 (외주발주, B)** | | | 3,356 |
| **합 계 (A + B)** | | | | 4,69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밀·콩 소비촉진 홍보 및 할인행사 사업은 당초 성과확산 사업의 목적인 공동영농 성과 확산 및 유통 효율화 지원과는 성격이 상이한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재원을 활용하여 사실상 별도의 소비촉진 사업을 확대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밀과 콩 소비는 가격 경쟁력·가공산업 기반· 소비자 선호 및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홍보와 할인행사에 대규모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이 국내산 밀·콩 소비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도 불분명함.

실제로 국내산 밀 소비량은 2023년 3만 2,917톤에서 2025년 1만 8,437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산 콩 소비량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1년-2025년 국내산 밀·콩 소비량 추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국내산 밀 소비량 (톤) | 21,496 | 21,990 | 38,162 | 26,368 | 28,602 |
| 국내산 콩 소비량 (톤) | 113,474 | 113,542 | 113,937 | 115,967 | 120,79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불용예정 예산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 별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6. 귀농귀촌정착지원 이차보전 사업: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가. 개 요

**‘귀농귀촌정착지원 이차보전’**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자금 저리(低利)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66억 5,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3)]

[2025년도 귀농귀촌정착지원 이차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농업자금이차보전 | 681,878 | 682,500 | 188,829 | 7,690 | 879,019 | 879,019 | - | - | 729,661 |
| 귀농귀촌정착 지원 이차보전 | 41,114 | 41,114 | 15,541[2)] | - | 56,655 | 56,655 | - | - | 39,980 |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귀농농업창업자금 전년도 이월액은 ’24년도 귀농농업창업자금의 예산 비중(’24년도 당해연도분 이차보전 예산액 중 귀농자금 비중 8.23%)을 적용하여 추정

이 사업은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에 대한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임.

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농업정책국)

## 나. 검토의견

**귀농귀촌정착지원 대출자금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의 경영 안정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영농컨설팅·판로지원 등 정착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귀농인 창업지원 대출의 누적 대출잔액은 2025년말 기준 1조 6,680억원에 달하며, 연체율도 2021년 0.82%에서 2025년 1.67%로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귀농귀촌정착지원 이차보전 – 대출액 및 연체율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귀농인 창업지원 | 대출액 | 176,743 | 164,531 | 164,778 | 182,780 | 159,064 |
| | 상환액 | 117,587 | 117,518 | 96,778 | 143,628 | 159,582 |
| | 누적 대출잔액 | 1,514,370 | 1,561,383 | 1,629,383 | 1,668,535 | 1,668,017 |
| | 이차보전 집행 | 11,174 | 21,025 | 48,374 | 48,511 | 43,116 |
| | **연체율** | **0.82** | **0.85** | **0.96** | **1.24** | **1.6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의 영농규모가 작고 농업경영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을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실제로 귀농가구의 평균 경작규모는 0.55ha에 불과하고 전체의 76.1%가 0.5ha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귀농 5년차 가구의 평균 소득도 3,300만원으로 전체 농가 평균의 65.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전체 평균 농가가구 및 귀농 5년차 가구의 소득 비교]

| 구분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계 |
|---|---|---|---|---|---|
| 전체 평균 농가가구(A) | 958만원 | 2,015만원 | 1,824만원 | 263만원 | 5,060만원 |
| 귀농 5년차 가구(B) | 1,539만원 | 1,103만원 | 625만원 | 33만원 | 3,300만원 |
| B/A | 160.6% | 54.7% | 34.3% | 12.5% | 65.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귀농가구의 농외소득과 이전소득도 일반 농가에 비해 낮은 54.7%와 34.3% 수준을 보이고 있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판로 확보, 소득 안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 근로 제한 완화, 귀농닥터 컨설팅 지원 및 상환기간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자금 지원 이후 귀농인의 경영실태와 상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컨설팅·판로지원 등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연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인증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가. 개 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저탄소 농업의 확산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8,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4]

[2025년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4,068 | 4,068 | - | - | 4,068 | 4,068 | - | - | 5,416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3,583 | 3,583 | - | - | 3,583 | 3,583 | - | - | 4,93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제로 구분됨.

## 나. 검토의견

**첫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조건위반 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15]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16]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법률에 인증의 요건・절차・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규칙인 고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인증 절차 위반・허위 또는 거짓 인증・인증마크 무단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증 취소나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정책과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인증 수요와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인증요건・인증절차・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17]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신뢰성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인증절차・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대 환경표지 인증제 비교]

| 구분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br>(농업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표지 인증제<br>(환경산업기술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
| 목적 |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추진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
| 시행근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br>*** 법률상 직접적 근거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br>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
| 대상품목 |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임산물 65개 품목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대상 제품 |
| 인증<br>수수료 | 해당 없음 | 신청수수료<br>(기본수수료 5만원+인증심사비+제경비+출장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현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취득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제 참여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인증지원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다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효 인증농가도 농산물 기준 2021년 5,753호에서 2025년 1만 4,124호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인증비용 지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인증 및 신청 현황]

(단위: 호)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농산물 | 신규인증<br>(신청) | 1,220<br>(2,029) | 2,848<br>(3,868) | 1,520<br>(1,806) | 2,703<br>(3,203) | 3,746<br>(6,452) |
| | 갱신인증<br>(신청) | 1,984<br>(2,056) | 2,049<br>(2,141) | 2,684<br>(2,687) | 4,147<br>(4,538) | 3,571<br>(4,088) |
| | 유효 인증농가 | 5,753 | 8,098 | 9,085 | 11,028 | 14,124 |
| 축산물 | 신규인증<br>(신청) | - | - | 71<br>(112) | 190<br>(311) | 339<br>(503) |
| | 갱신인증<br>(신청) | - | - | - | - | - |
| | 유효 인증농가 | - | - | 71 | 261 | 6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산물의 경우 건당 평균 390만원, 축산물은 평균 590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며, 현재는 농가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초기 단계에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증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인증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신청수수료를 부과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18)]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중소농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농가 규모별 차등지원 체계를 추진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은 신청수수료(기본수수료+인증심사비+제경비+출장여비)로 약 660만원을 징수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항목 중 제경비*를 면제함.
* 제경비: 인증심사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심사 운영, 자료관리, 행정지원 등 인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 8. 기후변화대응 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 사업: 국가소유를 명시한 과제관리 필요

### 가. 개 요

**‘기후변화대응 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사업은 기후변화 및 가뭄·홍수 등 재해대비 첨단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공급을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3억 1,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9]

[2025년도 기후변화대응 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기후변화대응 지능형농업기반관리 기술개발(R&D) | 4,312 | 4,312 | - | - | 4,312 | 4,312 | - | - | 7,06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5년에 신규 착수되어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농업기반시설의 재해·안전관리 첨단화를 위한 4개 과제와 농업용수의 통합적 이용·관리 효율화를 위한 2개 과제 등 총 6개 R&D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기후변화대응지능형 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2280-530)(식량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첫째,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사업의 최종 수요자이자 활용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연구관리전담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성과의 국가소유를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재정으로 개발된 기술이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저수지·양배수장 및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연구원이 일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사업기간 (국비) | 2025년 예산 | 세부과제 | 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참여 (2025 수탁) |
|---|---|---|---|---|
| 농업기반시설 재해·안전관리 첨단화 | '25.4~'29.12 (21,868) | 3,000 | 미래 기후변화 및 복합영농 시나리오를 고려한 맞춤형 배수개선 기술 개발 등 4개 과제 | 주관 2개 과제·참여연구 2개 과제 (3억 600만원 수탁) |
| 농업수자원 통합적 이용·관리 효율화 | '25.4~'29.12 (20,315) | 1,312 | 빅데이터 기반 극한 가뭄 대비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기술 개발 등 2개 과제 | 참여연구 1개 과제 (5,100만원 수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또한 개발되는 기술은 농업용수 관리, 재해예측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저수지·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은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요 수요자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일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과제 공고 단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국가소유 여부나 공공 활용방안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향후 연구성과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2조[20]에 따라 원칙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여부에 관계없이)에 부여될 것으로 보임.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임에도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계약 또는 기술료 지급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공부문이 다시 비용을 부담하여 활용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농업용수 관리기술과 농업기반시설 재해 대응기술은 민간 사업화보다는 공공 인프라 운영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간 활용 중심 연구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이 사업의 공공성과 최종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의 국가소유 적용 여부와 공공기관 무상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3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공공성이 높은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과제 공모 단계부터 연구성과의 국가소유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둘째, 2025년에 착수된 기후변화대응 지능형 농업기반 관리기술개발(R&D) 사업은 2030년 이후 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미 개발·실증한 물관리 기술과의 기술이전·공동 활용 가능성을 적극 강구하여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현장 적용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성과가 적용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과 비교할 때 규모와 운영 목적에는 차이가 있으나, 수위 관측·시설물 모니터링·재해 예측 및 원격 관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댐 관리와 홍수 대응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반 물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실시간 수문정보 모니터링,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홍수 예측,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은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관리 및 재해 대응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21)]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저수지·양수장·배수장 등 동 공사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전체 농업기반시설의 61%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저수지의 96%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집중호우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기술의 조속한 현장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홍수·가뭄 대응 물관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술 이전·공동 활용·공동 실증 등을 통해 연구성과가 실제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1) 이데일리(2026.6.16.), “가상 홍수 시연해보니, 이 곳 침수” … “ ‘디지털트윈’ 으로 피해 막는다” / 파이낸셜뉴스(2025.12.17.), “디지털트윈 기반 ‘K물관리’ … 美·사우디 등 해외서도 주목”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9.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 가. 개 요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54억 6,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2)]

[2025년도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친환경농자재지원 (자율) | 55,465 | 55,465 | - | - | 55,465 | 55,465 | - | - | 64,96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2025년 예산 실집행내역을 보면 15개 시도에 554억 6,5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458억 4,100만원이 실집행(집행률 82.6%)되고 96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친환경농자재지원(2271-302)(농산업혁신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친환경농자재(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논과 밭에 각각 다른 목적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가 밭토양 산도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논에 대한 성과지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논을 대상으로 규산질 비료 21만 2천톤, 밭·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석회질 비료 11만 9천톤을 공급하였음.

그러나 현재 성과지표는 '밭토양 산도(pH)'만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친환경농자재(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성과지표 설정현황]

| 성과지표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5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
|---|---|---|---|---|---|---|---|---|
| 밭토양 산도 (pH) | 목표 | 6.4 | 6.4 | 6.4 | 6.4 | 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산도 목표 pH 6.5에 근접하도록 설정 | 전국 농경지 중 토양산도(pH)를 검정한 밭토양의 토양산도 평균 | 전국 토양검정 자료(농진청) |
| | 실적 | 6.4 | 6.4 | 6.4 | - | | | |
| | 달성도 | 100.0 | 100.0 | 100.0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규산질 비료는 토양 산도 조절보다는 유효규산 공급을 통한 벼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저항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자재임에도,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논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논·밭 적정 토양 기준(적정범위)]

| 구분 | pH (1:5H2O) | 유기물 함량 (g/kg) | 유효인산 (mg/kg) | 교환성 칼륨(K) (cmolc/kg) | 교환성 칼슘(Ca) (cmolc/kg) | 교환성 마그네슘(Mg) (cmolc/kg) | 유효규산 (mg/kg) | 전기 전도도 (dS/m) |
|---|---|---|---|---|---|---|---|---|
| 논(답) | 5.5~6.5 | 20~30 | 80~120 | 0.20~0.30 | 5.0~6.0 | 1.5~2.0 | 157 이상 | 2 이하 |
| 밭(전) | 6.0~7.0 | 20~30 | 300~550 | 0.50~0.80 | 5.0~7.0 | 1.5~2.0 | - | 2 이하 |

주) 농촌진흥청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 밭은 일반밭 기준이며, 작물에 따라 적정범위 상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산질 비료 공급 효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논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0. 일반농산어촌개발: 실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배정 필요

## 가. 개 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604억 9,100만원 중 5,757억 1,800만원이 집행(87.2%)되고, 835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일반농산어촌개발 | 512,509 | 512,509 | 147,982 | - | 660,491 | 575,718 | 83,518 | 1,255 | 493,75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① 읍·면 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② 기초생활거점조성, ③ 시군역량강화, ④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한 권역단위거점개발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분담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30%임.

## 나. 검토의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시점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실제 공사 진행 및 대금 지급은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공사에 유보된 이월액이 2025년 기준 7,710억원에 달하는 등 이월규모가 과다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필요해 보임.**

이 사업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설계,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일반농산어촌개발(4180-360)(농촌정책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보조금 집행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공사 집행 상황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24)]

최근 3년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실집행률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기준 64.6~70.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기준 이월액은 2023년 8,003억원, 2024년 7,882억원, 2025년 7,7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집행률은 보고된 집행률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임.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 실제 집행 수준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2023년-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 | | 지방자치단체 기준 | | | | | |
|---|---|---|---|---|---|---|---|---|
| | 예산액 | 교부액 (A)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현액 (C=A+B) | 집행액(D)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D/C) |
| 2023년 | 547,918 | 553,867 | 197,567 | 751,434 | 485,275 | 255,091 | 11,068 | 64.6 |
| 2024년 | 565,350 | 517,360 | 255,091 | 772,451 | 540,624 | 222,426 | 9,401 | 70.0 |
| 2025년 | 512,509 | 575,518 | 222,426 | 798,143 | 547,217 | 235,621 | 15,274 | 68.6 |
| * 농어촌공사 기준 이월액(지자체 매칭 포함): '23년 8,003억원, '24년 7,882억원, '25년 7,710억원 | |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실제 공사 집행액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교부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더라도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25)]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재이월이 가능한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한 교부 실적만으로는 실제 사업 추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 기준의 실제 집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24) 12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80여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의뢰(동 공사가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70%)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30%)을 더한 사업비 전체를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위탁함.

25)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일부 일반농산어촌 사업지구에서 기본・세부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시공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어 불가피한 미집행・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내용과 대상지 등이 변경되어 사업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처럼 대규모 이월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집행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교부될 경우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더욱 중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지구부터 e나라도움 사용을 의무화하여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현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관리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된 이후 실제 사업비 집행 현황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 집행실적과 별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탁기관의 실제 집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교부 과정에서도 실제 사업 집행률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하는 수탁자금 중 미집행 금액의 운용방식 개선”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계 보조금계좌를 MMDA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개선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1.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반영 필요

### 가. 개 요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15억 4,500만원 중 961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5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113,662 | 113,662 | - | - | 113,662 | 108,301 | - | 5,361 | 11,217 |
| 영농정착지원금 | 101,545 | 101,545 | - | - | 101,545 | 96,184 | - | 5,361 | 95,415[2] |

주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영농정착지원금은 2026년 예산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편성됨(2026년: 95,415백만원)

이 사업을 통한 청년농 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청년농을 선정한 후 총괄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영농정착지원금[27)]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분담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30%임.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300)(농업정책관실)

27) 2025년 예산 산출근거: {(신규 5,000명×9개월×1.1백만원) + (2년차 5,000명×12개월×1.0백만원) + (3년차 4,000명×12개월×0.9백만원)}×70%×95%= 101,545백만원

## 나. 검토의견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272억원이 불용된 데 이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352억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소요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5년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준 예산현액 961억 8,4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689억 4,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8.0%에 그쳤으며, 272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더욱이 실제 지급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2025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사업비 1,337억 1,700만원 중 352억 2,600만원이 불용되어 반납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전체 불용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불용액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불용액 중 국고분을 합산할 경우 518억 9,800만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준 예산현액(961억 8,400만원)의 약 5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최종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임.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101,545 | 101,545 | 96,184 | 96,184 | - | 96,184 | 68,944 | - | 27,240 | 6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입액(지자체로부터) | 지출액 | 이월액 | 반납액 |
|---|---|---|---|---|
| 2024 | 117,984 | 80,648 | 9,600 | 27,737<br>(국고 19,416 + 지방비 8,321) |
| 2025 | 133,717 | 87,057 | 11,433 | 35,226<br>(국고 24,658 + 지방비 10,568) |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하반기 청년농 육성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정예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선정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이 실제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됨.

특히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단계의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실집행 실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및 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출〉

## 12.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사업: 공공비축미 대여분 환수 등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가. 개 요

**‘공공비축 및 APTERR[28] 미곡 매입비’** 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APTERR 물량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2,229억 8,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9]

[2025년도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정부양곡매입비 | 1,732,193 | 1,732,193 | - | 36,000 | 1,768,193 | 1,768,193 | - | - | 1,600,409 |
|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 1,186,982 | 1,186,982 | - | 36,000 | 1,222,982 | 1,222,982 | - | - | 1,025,38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을 통한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2024년 51만톤에서 2025년 43만톤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2025년에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산지유통업체 및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5.5만톤을 대여하였는데, 그 결과 2025년말 기준 공공비축미곡 비축량은 88.5만톤임.

28) 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29)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정부양곡매입비(2131-360)(식량정책관실)

[공공비축비 대여 및 비축량 현황]

| 구 분 | | 재고량 | 비고 |
|---|---|---|---|
| 적정 비축량 | | 80~100만톤 수준 | FAO 권고(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 식량안보, 수급상황 등 감안 |
| 2024년 비축량 | | 91만톤 | 2023년 매입량(40만톤) + 2024년 매입량(51만톤) |
| 2025년 | 매입량 | 43만톤 | (결산) 1,222,982백만원 |
| | 대여량 | 5.5만톤 | 2024년산 대여 |
| | 연말 비축량 | 88.5만톤 | 2024년 매입량(51만톤) + 2025년 매입량(43만톤) - 대여량(5.5만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2025년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실시한 공공비축미 대여제도는 국가 비축양곡을 민간에 제공한 후 현물로 회수하는 제도임에도 「양곡관리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대상·회수 방법·이익 환수 방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제16조[30]의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을 근거로 공공비축미 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보유한 양곡을 민간에 대여한 후 현물로 회수하는 형태의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舊 「양곡관리법(2005년 개정 전)」에는 정부관리양곡의 대여에 관한 규정[31]이 존재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음을 고려할 때, 법률상 명시적 근거 없이 사실상 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30)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 1. 29.>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31) 舊양곡관리법(법률 제7275호)
**제7조 (정부관리양곡의 대여)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대여기간·대여조건 및 상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5.7.1. 시행된 법률 제7432호에 의해 제7조 삭제**

또한 공공비축미 대여는 국가가 보유한 양곡 자산을 민간에 제공하고 향후 현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양곡 판매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국가와 민간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회수 절차와 이익 환수 방식 등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대여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대여 대상·대여 조건·회수 절차 및 이익 환수 방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적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　출〉

## 13. 비축지원 사업: 논콩 공급 과잉에 따른 수매비·재고관리비 부담과 기금 손실 우려

### 가. 개　요

**‘비축지원’** 사업은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9,109억 400만원 중 9,069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었음.[32)]

[2025년도 비축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비축지원 | 812,532 | 910,652 | 252 | 910,904 | 906,946 | 854 | 3,104 | 898,394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별도 내역사업 구분 없이 한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품매입비(430-02) 중 2025년 수매비축 집행실적을 보면, 콩 5만톤에 2,687억원, 양파 2.7만톤에 365억원, 배추 2.1만톤에 328억 등 총 3,98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음.

또한 강원농산물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계획현액 33억 900만원 중 2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되고 2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32)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유통소비정책관실)

[2025년도 저장품 매입비 및 강원농산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 | | | | | |
|---|---|---|---|---|---|---|
| | 계획액 | | 계획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당초 | 수정 | | | | |
| 저장품매입비(420-03) | 749,750 | 847,870 | 847,870 | 847,704 (793,241) | 166 | - |
| **수매비축 (콩, 양파, 배추 등)** | **251,696** | **398,706** | **398,706** | **398,706 (388,064)** | **-** | **-** |
| 수입비축 | 491,054 | 446,164 | 446,164 | 445,998 (404,886) | 166 | - |
| **강원농산물 비축기지** | **3,057** | **3,057** | **3,309** | **283 (283)** | **287** | **2,739** |
| 건설보상비(410-00) | 2,351 | 2,351 | 2,351 | - | - | 2,351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706 | 706 | 958 | 283 [283] | 287 | 38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논콩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콩의 정부 수매 및 비축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산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기반의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논콩 재배를 적극 장려해 왔으며, 그 결과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1만 658ha에서 2025년 2만 6,242ha로 약 2.5배 증가하였음.[33)]

반면 콩 소비는 생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부 수매량과 비축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실제 정부 수매량은 2021년 2,248톤에서 2025년 5만 6,919톤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량 대비 정부 수매 비중도 2021년 2.0%에서 2025년 36.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부 비축재고는 2021년말 5,429톤에서 2025년말 12만 3,687톤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약 23배나 확대되었음.

33)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논콩 재배를 적극 장려해 왔음.

이에 따라 수매비용뿐만 아니라 저장·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 부진이 지속될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 부담도 확대될 우려가 있음.

[2021년-2025년 콩 생산량과 재고량 등 현황]

(단위: 톤)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재배면적 (ha) | 논콩 | 10,658 | 12,590 | 18,314 | 22,438 | 26,242 |
| | 밭콩 | 43,786 | 51,366 | 49,357 | 51,580 | 47,773 |
| | 계 | 54,444 | 63,956 | 67,671 | 74,018 | 74,015 |
| 생산량(A) | | 110,781 | 129,925 | 141,477 | 154,954 | 156,145 |
| 기초재고량(B) | | 8,122 | 5,429 | 21,812 | 49,352 | 88,339 |
| 정부수매량(C) (연산 기준) | | 2,248 | 18,697 | 32,524 | 49,766 | 56,919 |
| 판매량(D) (공급계획연도 기준) | | 4,902 | 2,313 | 4,287 | 10,189 | 21,425 |
| | 2019년산 | 4,901 | 2,313 | 303 | - | - |
| | 2020년산 | 1 | - | 106 | 424 | - |
| | 2021년산 | - | - | 12 | 1,835 | - |
| | 2022년산 | - | - | 3,866 | 6,686 | 4,975 |
| | 2023년산 | - | - | - | 1,244 | 12,011 |
| | 2024년산 | - | - | - | - | 4,439 |
| 감모량(E) | | 39 | 1 | 697 | 590 | 146 |
| **정부 기말재고량(F=B+C-D-E)** | | **5,429** | **21,812** | **49,352** | **88,339** | **123,68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의 논콩 지원 대상을 2025년 직불금 지급 면적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재고 규모 및 생산·소비량을 고려할 때 단순한 생산 증가 억제만으로는 재고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생산 확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생산 확대보다는 가공·급식·식품산업 연계 등을 통한 실수요 확대 및 적정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강원농산물비축기지 구축사업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산현액의 82.8%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노후화된 정부 비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농산물비축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산현액 33억 900만원 중 2억 8,300만원만 집행되고 27억 3,900만원이 불용되는 등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였음.[34)]

그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 설치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입지 적정성 검토 사항에 해당하며, 사업 부지 선정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임.

구체적으로, 2024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선정된 후보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농지전용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음.[35)]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사업 추진 시 인허가, 농지전용, 입지 적정성 등 주요 선행절차의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34) 정부 비축기지는 14개소가 있으며, 이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소유한 6개소가 건립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35)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계획을 중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14.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 융자예산의 기존업체 지원 비율 과다 및 반복지원 문제 개선 필요

## 가. 개 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은 농식품수출업체에 원료 구매・시설 현대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622억 6,000만원 중 4,594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28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5년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 | 458,246 | 462,260 | - | 462,260 | 459,410 | - | 2,850 | 510,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을 통한 융자사업에는 글로벌육성지원・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농공상융합형육성・노지채소수급안정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담당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

## 나. 검토의견

**첫째,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13개 사업) 중 글로벌육성지원 융자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존 수혜업체에 반복 지원되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속 지원받는 업체의 비중도 높아 정책금융의 신규 지원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만기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임.

---

36)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2835-404)(식품산업정책관실)

2025년에는 220개 업체에 4,576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가운데 기존 지원 업체 비중은 98.4%에 달한 반면 신규 지원업체 비중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5년 이상 연속하여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145개사로 전체 지원업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융자액은 3,830억원으로 전체 융자액의 83.7%에 달하고 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이행(대출금액의 50% 이상) 및 국산 농산물 사용(대출금액의 30% 이상) 의무 부과로 신규업체의 진입 부담이 높아 기존업체에 융자가 집중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자금 융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신규 수출업체의 자금 접근 기회를 제약하고 정책자금의 순환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지원업체의 상당수가 매년 융자를 반복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업체가 정책자금을 상시적인 운영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 연속 수혜업체 현황과 지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융자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023년-2025년 글로벌육성지원 융자 사업 집행내역]

| 구분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
| 총 융자액 (백만원) (A) | | 453,646 | 453,646 | 457,660 | 1년만기 운영자금 |
| 융자업체수(개) | | 226 | 234 | 220 | - |
| 기존업체 비율 | | 97.2% | 95.8% | 98.4% | 전년대비 기존업체 융자액 비율 |
| 신규 업체 비율 | 융자액 | 2.8% | 4.2% | 1.6% | 전년대비 신규 업체수 및 융자액 비율 |
| | 업체수 | 11.5% | 10.3% | 5.0% | |
| 5년이상 융자업체 | 업체수 | 134 | 144 | 145 | 당해연도 포함 최근 5년 연속 융자지원 |
| | 융자액 (B) | 388,719 | 382,247 | 383,032 | |
| | 비중 (B/A) | 85.7% | 84.3% | 83.7% | |
| 평가 탈락 비율 | | 0.8% | 1.5% | 0.4% | 신청업체 대비 미배정업체 비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둘째, 글로벌육성지원 운영자금 융자사업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를 보면, 탈락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하여 신청업체 대부분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가 지원대상 선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대상업체 선정은 수출 실적·사업계획 및 경영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평가 탈락 비율은 2023년 0.8%, 2024년 1.5%, 2025년 0.4%에 불과하여 신청업체 대부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정책자금 사업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지원 필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는 기능이 중요함.

탈락 비율이 낮은 것이 반드시 평가체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탈락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평가체계가 신규 수출업체 발굴보다는 기존 수혜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선별 기능보다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기존 수혜업체 비중이 98%를 상회하고 5년 이상 연속 수혜업체 비중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항목과 배점체계를 재점검하여 신규 수출업체의 성장 가능성, 수출성과 및 정책효과 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농지관리기금】

〈지　출〉

## 15.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반복적 이월 방지 및 청년농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정비 후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8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7]

[2025년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1,113,440 | 1,113,440 | - | 1,113,440 | 1,113,440 | - | - | 1,807,690 |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 18,000 | 18,000 | - | 18,000 | 18,000 | - | -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 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조·융자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2025년 실집행률을 보면 2025년 기반조성을 위한 보조액 1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계획현액 199억 4,100만원 중 8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4.0%)되고 180억원이 이월되었음.

또한 2024년에 이월되었던 토지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예산 280억원 중 40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4.3%)되고 239억 8,800만원이 재이월되었음.

37)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농업정책관실)

[2025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업시행주체(한국농어촌공사)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A)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당초 | 수정 | | | | | | | | |
| 민간자본보조 (320-07)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1,941 | 19,941 | 801 | 18,000 | 1,140 | 4.0 |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 - | - | 28,000 | 28,000 | 4,012 | 23,988 | - | 14.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첫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조성 예산이 신규 편성·교부되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를 확보한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업법인에 공급하는 구조로, 토지매입이 기반조성의 선행 절차에 해당함.

그러나 토지매입을 위한 융자예산 280억원은 2024년에 교부되었음에도 집행되지 못해 전액 이월되었으며, 2025년에도 40억 1,200만원만 집행되고 239억 8,800만원이 재이월되었음.[38)]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에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예산 180억원을 신규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억 10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2025년에 교부된 기반조성 보조예산의 실집행률은 4.0%에 그쳤고, 2024년에 교부된 토지매입 융자예산의 실집행률은 전액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4.3%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지 확보 등 선행 절차의 추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38)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6.5월기준 사업대상지(고흥, 남원) 토지매입비 집행 현황
- 고흥지구: 감정평가 완료(2025.4월), 2025년에 토지 매입대금 일부 40억원 실집행 완료 후 사업대상 부지 내 잔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용도 폐지·매입 절차 추진중
- 남원지구: 토지 보상공고(2025.9~11월) 및 감정평가(2025.12월), 토지 소유주 매수협의·보상 등 매입 절차 추진중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단계에 맞는 예산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목적인 청년농 육성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농업법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게 되는 부지의 일부(15%)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청년농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법인 선정 과정에서도 청년농 고용창출계획과 교육·육성계획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였음.

그런데 농업법인 선정 과정과 달리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선정의 핵심 평가요소였던 청년농 육성계획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국고지원과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농 창업공간 조성 및 청년농 육성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반 조성 후 농업법인에게 매각 시 공모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준수되도록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반영하는 등 청년농 육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의견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 창업공간이 계획대로 조성·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청년농 고용·교육·실습 및 기술전수 계획 등을 부지 공급계약의 의무사항으로 반영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년농 육성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농업 · 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　출〉

## 16. 친환경축산직불: 실적 부진 요인 점검 및 교육·컨설팅 사업에 있어 농가 직접 지원예산 확대 필요

### 가. 개　요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은 친환경 축산(유기) 인증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축산과의 생산비 차이를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0억 8,500만원 중 23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7.4%)되고 17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공익기능증진직불 | 2,953,622 | 2,953,622 | - | 2,953,622 | 2,743,677 | - | 209,945 | 2,969,914 |
| 친환경축산직불 | 4,085 | 4,085 | - | 4,085 | 2,345 | - | 1,740 | 4,085 |
| 직불금 | 3,460 | 3,460 | - | 3,460 | 1,720 | - | 1,740 | 3,460 |
| 친환경축산협회 교육・컨설팅 | 625 | 625 | | 625 | 625 | - | - | 625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2025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금으로 당초 예산 34억 6,000만원 중 49.8%인 17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7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친환경축산협회 교육・컨설팅 사업비는 6억 2,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3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첫째,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지급단가와 지원한도를 확대하였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급요건 미충족 원인과 축종별 참여 격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개편하여 한우 지급단가를 마리당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유기지속직불제[40]를 신설하는 등 참여농가 확대를 추진하였음.

그 결과 지급 농가는 2024년 21호에서 2025년 66호로 증가하였고 지급액도 3억 200만원에서 17억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예산액 34억 6,000만원 대비로는 여전히 집행률이 49.8%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100호 중 34호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HACCP 미인증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단순한 인증 미취득 외에도 인증 유지 부담, 지급요건의 적정성, 제도 운영방식 등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2025년 지급실적을 보면 지급농가 및 지급액 모두에서 젖소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우 등 타 축종의 경우에는 지급단가 인상이 참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축종별 참여 여건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점검도 필요해 보임.

[2025년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종별 직불금 집행현황]

(단위: 호, 백만원)

| 축종 | 2024년 | | 2025년 | |
|---|---|---|---|---|
| | 농가수 | 지급액 | 농가수 | 지급액 |
| **젖소(우유)** | 9 (42.9%) | 217 (71.9%) | 42 (63.6%) | 1,270 (73.8%) |
| 산란계(계란) | 7 (33.3%) | 48 (15.9%) | 13 (19.7%) | 315 (18.3%) |
| 한우 | 5 (23.8%) | 37 (12.3%) | 10 (15.2%) | 103 (6.0%) |
| 돼지 | - | - | 1 (1.5%) | 32 (1.9%) |
| **합계** | 21 (100.0%) | 302 (100.0%) | 66 (100.0%) | 1,720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40)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급요건 미충족 농가의 현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축종별 참여 실태를 토대로 인증 유지 부담·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둘째, 친환경축산협회를 통한 교육·컨설팅 사업은 홍보·행사성 사업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가 직접 지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친환경축산협회를 통한 교육·컨설팅 사업을 위해 6억 2,500만원을 보조하였음.

그러나 집행 내역을 보면 소비기반 확대 사업 3억 2,600만원, 소비자 연계형 행사 및 콘텐츠 제작 1억 4,100만원, 매거진 발행 등 홍보사업 2,3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인 경영컨설팅은 친환경축산농장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등 4개소에 대한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친환경축산협회 교육·컨설팅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집행액 | 주요내용 |
|---|---|---|
| 매거진 발행 등 콘텐츠 확산 | 23 |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소식지 및 오프라인 소식지 발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확산 |
| 친환경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 326 |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과 이를 연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 및 지속가능 축산물 소비 활성화 연구 추진 |
| 소비자 연계형 〈찾아가는 친환경축산〉 운영 등 | 141 | 전시관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친환경축산 확산 활동 진행 |
| 친환경 인증(희망)농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135 | 유기·무항생제 인증 기본교육, 유기축산물 전환 교육·컨설팅, 지속가능축산농장 현장점검,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워크숍 등 친환경축산 교육프로그램 진행 |
| 계 | 625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 및 인지도 제고, 소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장 탐방, 콘텐츠 제작 등 홍보·행사성 사업을 일부 편성하였다는 의견임.

다만 친환경축산직불제의 목적이 친환경 인증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축산 확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행사와 홍보사업보다는 농가의 인증 유지·생산성 향상·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　출〉

## 17. 축사시설개선 사업: 반복적인 이월 발생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사 등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201억 9,400만원 중 668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55.7%)되고 465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7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41]

[2025년도 축사시설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축사시설현대화 | 133,517 | 155,917 | 15,000 | 170,917 | 113,166 | 46,529 | 11,222 | 142,653 |
| 　축사시설개선 | 77,521 | 105,194 | 15,000 | 120,194 | 66,888 | 46,529 | 6,777 | 82,4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축사 신축・개보수와 축산시설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자부담 20%, 연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임. 사업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임.

4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융자・보조)(3760-332・346)(축산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공사 완료 이후 대출이 실행되는 사업 구조로 인해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과 추경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축사 신축·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5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2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현액 1,201억 9,400만원 중 668억 8,8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55.7%에 그쳤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설·산불 등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면서, 융자사업대상자의 시공계약 체결 및 착공을 근거로 사고이월하였다는 의견임.[42)]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 구조상 대출 실행이 공사 완료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액은 2024년 150억원에서 2025년 465억 2,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 예산, 추경예산까지 함께 운영되었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공사 추진 상황과 대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선정 단계에서 자부담 조달능력과 공사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며,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2)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월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규정」 제7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는 진척되었으나 대출 실행은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사업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함. 이에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 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원인행위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 가능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　출〉

## 18. 재보험금 사업: 재보험료 정산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가. 개　요

**‘재보험금’** 사업은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에 손해 발생 시 그 피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24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3)]

[2025년도 재보험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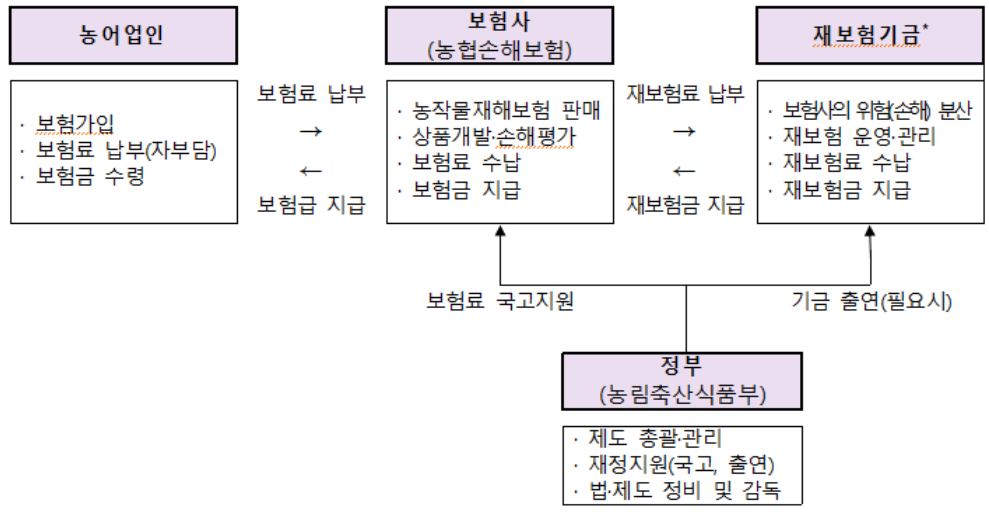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재보험금 | 50,000 | 224,000 | - | 224,000 | 224,000 | - | - | 50,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재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보험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의 일부를 국가재보험에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됨. 정부는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과 재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재보험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4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재보험금(1032-301)(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작물재해보험 및 국가재보험 재정흐름도]




* 재보험기금: 손해율이 100% 미만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재보험료를 수납하고, 100% 이상인 경우 재보험금을 지급

국가재보험의 운영방식은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국가와 보험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운영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손해율이 140%를 초과하는 손실을 국가가 부담하는 초과손해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2025년에 보험사업자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재보험금 2,240억원을 조기 지급하였으나, 2025년 기금 결산결과를 보면 국가가 회수하여야 할 재보험료 1,156억 7,800만원이 미수보험수익[44]으로 계상되었다가 2026년 3월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가가 지급할 재보험금과 회수할 재보험료 간 정산시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또는 개산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4) 기금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을 재보험료를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함.

이 기금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재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로 재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재보험금 지급액은 2023년 1억 1,900만원에서 2024년 1,586억 8,000만원, 2025년 2,240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연도말 여유자금은 2024년 2,492억 1,800만원에서 2025년 55억 7,3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지급여력비율도 26.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2025년 재보험금 지급추이]

| 구분 | 지급내용 |
|---|---|
| 2022 | 태풍, 적조 등으로 714백만원(양식수산물) 지급 |
| 2023 | 태풍, 봄동상해, 적조 등으로 119백만원(농작물 4, 양식수산물 115) 지급 |
| 2024 | 냉해, 집중호우, 고수온 등으로 158,680백만원(농작물 158,198, 양식수산물 482) 지급 |
| 2025 | 산불, 호우, 병충해 등으로 224,000백만원(농작물 218,581, 양식수산물 5,419) 지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 사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산불·호우 등으로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재보험금 중 2,040억원을 연말에 조기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45)]

반면, 2025년 계약분에서 발생한 재보험료는 기존 정산 절차에 따라 연말 결산 시점에는 수납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보험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재보험료 1,157억원(양식수산물 포함)이 재무상태표상 미수보험수익으로 계상되었음.

이는 전년도 미수보험수익(35억 6,1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이며, 해당 금액은 2026년 3월 최종 정산을 거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사유에 대해, 2025년도 계약분 정산 결과 발생한 재보험료 1,157억원을 결산 시 '미수보험수익'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적으로 모든 연도별 그룹의 손익을 합하여 정산하나 2025년도에는 2024년 이전 계약분에 대한 재보험금을 조기 정산하였고, 2025년 계약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수납하였으나 기금에 납부할 재보험료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미수보험수익으로 재무상

45) 그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복합 재해(산불, 호우 등)로 8월 이후 보험사업자인 농협손보의 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보험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보험금 2,040억원을 조기지급하였다는 의견임.
(*) 보험금 지급액: ('25.8) 3,730억원(전년동기 대비 +78.7%)→('25.9) 6,230억원(+57.5%)→('25.10) 6,903억원(+50.6%)→('25.11) 8,815억원(+50.8%)

태표에 계상되었다는 의견임.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로서, 기금의 현금성자산은 보험사에 대한 재보험금 조기지급에 따라 2025년말 475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2026년 5월말 재보험료가 보험사로부터 수납됨에 따라 1,65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지급여력비율도 26.4%에서 91.5%로 회복되었음.

[2024~2026년 지급여력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2024년 결산 | 2025년 결산 | 2026년 5월말 기준 |
|---|---|---|---|
| 현금성자산(A) | 2,560 | 475 | 1,650 |
| 지급준비금(B) | 1,488 | 1,803 | 1,803 |
| 지급여력비율 달성도(A/B) | 100% | 26.4% | 91.5% |

주 1) 지급여력비율 달성도: 목표를 100% 설정하여 도달하면 100%로 측정
2) 2026년 지급여력비율은 5월말 현금성자산 규모(1,650억원)를 2025년 지급준비금(1,803억원)으로 나누어 추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보험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보험금을 일부 조기 지급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상응하여 국가가 회수할 재보험료의 조기 정산이나 중간정산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국가재보험기금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불과 2~3개월 사이 26.4%에서 91.5%로 크게 변동한 것은 기금의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개선되었다기보다 재보험료 정산 시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보험사업자는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점에도 1,156억 7,800만원의 미수보험수익을 계상할 정도로 재보험 정산액을 상당한 수준까지 추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러한 추정치를 기초로 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금을 조기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보험금은 추정 손익을 바탕으로 조기 지급하면서 재보험료는 최종 정산 이후에만 회수하는 현행 방식은 보험사업자의 유동성은 신속하게 지원하는 반면 국가재보험기금의 자금운용 효율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2025년과 같이 대규모 미수보험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손익 확정 이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추정 손익을 반영한 중간정산 또는 개산정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급과 회수 간 정산 시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연도별 손익 정산 구조와 자금운용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사업자의 유동성 지원과 국가재보험기금의 지급여력 관리 간 균형을 확보하고, 기금의 자금운용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　타】

# 1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시정요구 6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5건·제도개선 55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5 | 54 | - | 59 |
| 예비비 | - | - | - | - | 1 | - | 1 |
| 합계 | - | - | - | 5 | 55 | - | 60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정요구사항 60건에 대해 5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6.7%)하고 8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59 | 51 | 86.4 | 8 |
| 예비비 | 1 | 1 | 100.0 | - |
| 합계 | 60 | 52 | 86.7 | 8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농림축산식품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 본예산 | (8)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빈집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
| | (1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 2024회계연도 결산 | (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 |
| | (14)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
| 2026년도 본예산 | (37)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하는 수탁자금 중 미집행금액의 운용방식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

# 농촌진흥청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8억 5,700만원(40.0%)이 많은 20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6,300만원(31.1%)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5,286 | 15,286 | 15,651 | 365 | 14,657 | 14,657 | 20,514 | 5,857 | 4,863 |
| 총수입 | 15,286 | 15,286 | 15,651 | 365 | 14,657 | 14,657 | 20,514 | 5,857 | 4,863 |

문의 :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03억 9,900만원(△2.9%)이 적은 1조 311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억 1,900만원(△3.1%)이 감소됨.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097,374 | 1,097,374 | 1,064,247 | △33,127 | 1,061,527 | 1,061,527 | 1,031,128 | △30,399 | △33,119 |
| 총지출 | 1,097,374 | 1,097,374 | 1,064,247 | △33,127 | 1,061,527 | 1,061,527 | 1,031,128 | △30,399 | △33,119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6억 5,700만원으로, 220억 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05억 1,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2%)되고, 14억 9,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12,023 | 12,023 | - | 12,023 | 15,007 | 14,005 | 1,002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118 | 1,118 | - | 1,118 | 235 | 204 | 31 | - |
| - 구조개선사업계정 | 1,118 | 1,118 | - | 1,118 | 235 | 204 | 31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 - | 4,325 | 4,325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16 | 1,516 | - | 1,516 | 2,438 | 1,980 | 458 | - |
| - 지역자율계정 | 1,115 | 1,115 | - | 1,115 | 1,616 | 1,227 | 389 | - |
| - 지역지원계정 | 346 | 346 | - | 346 | 679 | 610 | 69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53 | 53 | - | 53 | 143 | 143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2 | 2 | - | 2 | - | - | - | - |
| 합 계 | 14,657 | 14,657 | - | 14,657 | 22,005 | 20,514 | 1,491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24억 7,000만원으로, 1조 311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21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1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940,866 | 940,866 | 10,943 | 37,506<br>△37,506 | - | 951,809 | 911,006 | 2,160 | 38,643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849 | 6,849 | - | 10<br>△10 | - | 6,849 | 6,768 | - | 81 |
| - 구조개선사업계정 | 6,849 | 6,849 | - | 10<br>△10 | - | 6,849 | 6,768 | - | 8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3,812 | 113,812 | - | 216<br>△216 | - | 113,812 | 113,354 | - | 458 |
| - 지역자율계정 | 58,500 | 58,500 | - | - | - | 58,500 | 58,500 | - | - |
| - 지역지원계정 | 52,528 | 52,528 | - | 216<br>△216 | - | 52,528 | 52,470 | - | 58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384 | 2,384 | - | - | - | 2,384 | 2,384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400 | 400 | - | - | - | 400 | - | - | 400 |
| 합 계 | 1,061,527 | 1,061,527 | 10,943 | 37,732<br>△37,732 | - | 1,072,470 | 1,031,128 | 2,160 | 39,182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농촌진흥청 자산은 전년 대비 565억 4,300만원이 증가된 3조 3,317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타자산이 11억 8,200만원 감소하였고 금융자산이 7억 2,000만원, 유·무형자산이 570억 600만원 각각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2억 2,700만원 감소된 30억 1,500만원으로 차입부채 12억 4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77억 7,000만원이 증가된 3조 3,287억 3,6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600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25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5,0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3,331,751 | 3,275,208 | 56,543 | 1.7 |
| | | 금융자산 | 2,631 | 1,911 | 720 | 37.7 |
| | | 유·무형자산 | 3,328,935 | 3,271,929 | 57,006 | 1.7 |
| | | 기타자산 | 186 | 1,368 | △1,182 | △86.4 |
| | 부 채 | | 3,015 | 4,242 | △1,227 | △28.9 |
| | | 차입부채 | 2,994 | 4,198 | △1,204 | △28.7 |
| | | 충당부채 | - | 10 | △10 | △100.0 |
| | | 기타부채 | 21 | 34 | △13 | △38.2 |
| | 순자산 | | 3,328,736 | 3,270,966 | 57,770 | 1.8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860,061 | 860,465 | △404 | △0.0 |
| | 재정운영순원가 | | 1,002,542 | 997,792 | 4,750 | 0.5 |
| | 재정운영결과 | | 1,002,542 | 997,792 | 4,750 | 0.5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내역은 없음.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 세입 | 세출 |
|---|---|
| 일반회계<br>(140) | 일반회계<br>(9,110)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br>(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br>(67)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br>(43)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br>(-)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r>(2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r>(1,134) |

주) 총계 기준
자료 : 농촌진흥청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농촌진흥청은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실현을 2025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총 99개 세부 사업에서 디지털육종·스마트농업 혁신,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등 농업정책 지원, 밭농업기계화, 병해충 대응 강화,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역농업 활력 제고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을 통해 추진된 신규 R&D 기획 연구용역 중 4건이 4분기에 계약되어 단 2~3개월만에 완료되었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 기술수요 분석, 기술·시장 전망 등 R&D 기획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위성 발사 일정이 2025년에서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성 활용을 전제로 추진된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국가위성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시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일정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지표인 ‘자격증 취득비율’은 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농업인의 역량 향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재설계하고 실적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출〉

## 1.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 단기간 내 완료된 R&D 기획연구 용역사업 재점검 필요 등

### 가. 개 요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은 농업부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발굴 및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원 중 13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시험연구활동 지원(R&D) | 6,996 | 6,996 | - | - | 6,996 | 6,972 | - | 24 | 7,071 |
|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 1,400 | 1,400 | - | - | 1,400 | 1,390 | - | 10 | 1,4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시험연구활동지원(R&D)(1136-305)(연구정책국)

## 나. 검토의견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을 통해 추진된 신규 R&D 기획 연구용역 중 4건이 4분기에 계약되어 단 2~3개월만에 완료되었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술수요 분석, 기술·시장 전망 등 R&D 기획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에서는 신규 R&D 사업 발굴·기획 및 평가 등을 위해 2025년 총 28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1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액을 연도 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 연구용역이 4분기에 집중 계약·종료되었으며, 특히 '2027년 신규 R&D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 4건은 10월 이후 계약되어 약 2~3개월 만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2025년도 10월~12월까지 추진된 연구용역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집행액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유형 |
|---|---|---|---|---|
|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트렌드 및 과학기술 전망 용역 | 60 | (사)한국농식품 000000 | 2025.10-2025.12 | 제한경쟁 |
|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분야 농생명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R&D 산업수요 발굴 용역 | 60 | 00 주식회사 | 2025.10-2025.12 | 수의계약 |
| 폭염, 가뭄 등 극한기후 대응 신품종 개발 전략연구용역 | 80 | | 2025.10-2025.12 | 수의계약 |
| 신재생에너지 활용 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 수립 용역 | 20 | 00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5.10-2025.12 | 수의계약 |
| 농업분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성과분석 및 실천기술 개발 용역 | 15 | 00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5.10-2025.12 | 수의계약 |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용역 | 20 | 000연구소 주식회사 | 2025.11-2025.12 | 수의계약 |

자료: 농촌진흥청

이 중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분야 농생명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R&D 산업수요 발굴’ 연구용역은 2027년 신규 기획한 「지능형 육종-정밀발효 융합기술 개발(2027~2033년)」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로 추진되었음에도 계약 후 약 3개월 만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연구비(260-01)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기간 내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정된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연구를 약 3개월 만에 완료한 것은 미래 기술수요 분석,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기술성·시장성 검토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 신규 대형사업 기획에 필요한 검토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단순한 기술조사를 넘어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이며, 재정투입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일수록 충분한 검토기간과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관련 연구에서도 사업 필요성 및 수요 검증 부족, 유사사업 중복 검토 미흡,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성 부족 등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3)]

향후에는 단순히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일정 관리에 치중하기보다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국회입법조사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과정에서 위험요인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관리자(PM)의 경험을 중심으로」(2023)

## 2.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사업지연 문제 해소 및 관련 R&D 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은 디지털 재배기술 등의 농업현장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3,000만원 중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3.3%)되고 6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5년도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과수디지털 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 630 | 630 | - | - | 630 | 21 | - | 609 | 1,22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이고 주관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이며 총사업비는 387억 9,100만원(국비 90.9%, 지방비 9.1%)임.

### 나. 검토의견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문제[5)]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복소지가 없도록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사업’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실증연구소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4) 일반회계-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1131-307)(국립농업과학원)

5)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사업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어 2027년 내 준공은 불가한 상황임. 현재, 정부의 국유지 매각 중단 방침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추진 중이며, 기획처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 중임.
* 정부의 국유지 매각 중단(2025.11.3.)으로 국방부 토지매각 방식변경: (기존) 수의 → (변경) 손실보상매각

이 사업은 부지 내 암반 발견, 공시지가 상승, 국방부의 토지 매각 방식 변경 등 복합적인 사유로 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사업 추진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개년 누적 불용액은 22억 2,700만원(누적 불용률 48.0%)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건설보상비 집행 부진으로 연간 집행률이 3.3%에 그치는 등 공정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2023년-2025년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B) |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부진사유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3 | 783 | 783 | 783 | 636 | 81.2 | - | 147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불용 |
| 2024 | 3,228 | 3,228 | 3,228 | 1,757 | 54.4 | - | 1,471 | 부지내 암반발견에 따른 사업순연으로 불용 |
| 2025 | 630 | 630 | 630 | 21 | 3.3 | - | 609 | 사업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국방부 토지매각 방식 변경에 따른 건설보상비 등 불용 |
| **계** | **4,641** | **4,641** | **4,641** | **2,414** | **52.0** | | **2,227** | |
| 2026 | 1,223 | 1,223 | 1,223 | - | | | | |

자료: 농촌진흥청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사업의 당초 계획일정 대비 실제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 당초 계획일정 (완료 기준) | 실제 추진 현황 (완료 기준) | 변동 사유 등 |
|---|---|---|---|
| 기본설계 | 2024년 9월 | 2025년 5월 | 기존 부지암반으로 인한 부지변경 총사업비 협의조정(기재부) 및 기재부 국유지 사용승인 행정 소요 |
| 중간설계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 기본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설계 반영(4개월), 중간설계(3개월) |
| 실시설계 | 2025년 6월 | 2028년 3월 | 타당성재조사(타재) 기간(10개월 소요) 동안 설계용역 사업 중지로 타당성재조사 완료 이후에 실시설계 개시 |
|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6년 3월 | 2028년 6월 | 타당성재조사로 사업 순연 |
| 착공 | 2026년 4월 | 2028년 7월 | 타당성재조사로 사업 순연 |
| **준공** | **2027년 12월** | **2030년 12월** | 난공사 구간으로 인한 공기 연장 필요 |

주 1) 총사업비에 반영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나, 농촌진흥청은 타당성재조사 이후 사업기간(2030년으로) 조정을 신청할 계획임

2) 당초 계획일정은 총사업비 협의 조정('24. 9.)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농촌진흥청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재 사과·배·감귤 및 포도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영농 로봇 및 통합 솔루션 등 스마트 영농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 중임.

양 사업 간의 중복 우려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사업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단계인 반면,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는 개발된 기술의 종합 실증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사업 비교]

| 구 분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br>(농촌진흥청) |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 개발<br>(농촌진흥청) |
|---|---|---|
| 성격 | 과수재배 디지털기술 실증연구소 설립 | 노지스마트농업 기술 연구개발(R&D)<br>(논, 밭, 과수 분야 스마트영농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 | 2025년~2028년 |
| 예산 | 총 38,791(백만원)<br>총사업비<br>- 국비 35,271 + 지방비 3,520(토지보상비) | 총 18,750(백만원) 중 과수분야 6,000(백만원)<br>- 출연금 3,600 + 시험연구비 2,400 |
|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과수재배 디지털농업기술 실증연구소 기반 구축<br>- 개발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재배 디지털 농업 기술(기계화, 자동화, 로봇화)의 농가 보급 전 실증 및 양산 전 단계의 수정·보완<br>- 타 사업(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 개발 등 부·청 주관)의 결과물로 도출된 기술 포함 통합 실증 | 노지 과수(사과, 배, 감귤, 포도) 스마트 영농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br>- 재배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br>- 과수, 과실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br>- 병해충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br>- 과수 전정로봇 개발, 경사지 과수원 제초로봇 안정화 기술 개발<br>- 스마트영농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 주요 차이점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의 실증 포장은 미래형 재배작형으로만 재배될 계획이며, 모든 포장이 기계화, 로봇화의 실증에 적합하도록 계획중임 | 사과·배 연구센터의 포장은 신품종 육종, 유전자원 보존, 재배작형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형 작형(다축평면형 재배 등)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작은 규모로 한정됨 |

자료: 농촌진흥청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는 미래형 재배 작형과 기계화·자동화·로봇화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차별성이 인정됨.

다만 연구소 구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개발 기술의 실증·검증 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까지 포함하여 통합 실증 거점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활용체계 및 실증연구소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실증·보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디지털농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 파속채소연구소구축 사업: 추가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가. 개 요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사업은 산업적 파급력이 큰 양파·마늘·파 등 파속채소의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2억 1,600만원 중 71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54.0%)되고 60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5년도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파속채소연구소 구축(R&D) | 12,310 | 12,310 | 906 | - | 13,216 | 7,132 | - | 6,084 | 2,49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당초 2023년~2026년이었으나, 2년 연장되어 2028년까지로 변경되었고, 주관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며 총사업비는 343억 2,200만원(국비 100%)임.

## 나. 검토의견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사업은 부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농수관로 이설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지연과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고, 향후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단계에서 추가지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관리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23년 80.7%에서 2024년 73.2%, 2025년 54.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유관기관 협의 지연

6) 일반회계-파속채소연구소구축(R&D)(1231-306)(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으로 공사비 60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2025년 파속채소연구소 구축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부진사유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3 | 560 | 560 | - | 560 | 452 | 80.7 | 107 | 1 | |
| 2024 | 3,830 | 3,830 | 108 | 3,937 | 2,881 | 73.2 | 906 | 151 | 농수관로이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연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 |
| 2025 | 12,310 | 12,310 | 906 | 13,216 | 7,132 | 54.0 | - | 6,084 | 유관기관 협의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등 6,084백만원 불용 |
| 2026 | 2,498 | 2,498 | - | - | - | - | - | - | |

자료: 농촌진흥청

총사업기간 역시 당초 2023~2026년에서 2023~2028년으로 이미 2년 연장되었으며, 향후 토지보상·수용재결 및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농수관로 이설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에 약 8개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에 약 5개월이 소요되는 등 주요 행정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것임.

그 사유로 농촌진흥청은 지하 매설물 정보의 부정확성과 현장 여건 변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부지 적정성, 지장물 현황, 인허가 가능성 및 관계기관 협의 소요기간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한편 현재 총사업비는 설계비 낙찰차액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소폭 감소한 상태이나,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농촌진흥청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의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일정과 비용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 사업: 농림위성 발사일정과 연구개발 일정 간 연계관리 필요 등

## 가. 개 요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 사업은 농림위성 영상 수집·처리·활용·저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정책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3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7)]

[2025년도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농업위성정보활용 센터구축(R&D) | 5,350 | 5,350 | - | - | 5,350 | 5,35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촌진흥청 R&D 사업은 자체연구사업(고유연구사업)과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25년에 종료된 이 사업은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부터 5년간 3개 내역사업(위성영상 수집·활용 체계 개발, 위성영상활용 인프라 구축(건축), 위성영상활용 인프라 구축(장비))에 집행액 기준 206억 4,400만원이 투입되었음.

[2021년~2025년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
| 위성영상 수집·활용 체계 개발 | 시험연구비 (210-13) | 50 | 30 | 30 | 20 | 20 | 150 |
|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 2,350 | 1,300 | 1,300 | 1,300 | 1,200 | 7,450 |
| 위성영상활용 인프라 구축(건축)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114 | - | - | - | 114 |
| | 실시설계비 | - | 229 | - | - | - | 229 |

7) 일반회계-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1131-304)(연구정책국)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
| | (420-02) | | | | | | |
| | 공사비 (420-03) | - | - | 4,161 | 2,026 | - | 6,187 |
| | 감리비 (420-04) | - | - | 62 | 34 | - | 96 |
| | 시설부대비 (420-05) | - | 6 | 8 | 4 | - | 18 |
| 위성영상활용 인프라구축(장비) | 자산취득비 (430-01) | - | - | - | 2,270 | 4,130 | 6,400 |
| 계 | | 2,400 | 1,679 | 5,561 | 5,654 | 5,350 | 20,644 |

자료: 농촌진흥청

## 나. 검토의견

**첫째, 농림위성 발사 일정이 2025년에서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성 활용을 전제로 추진된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국가위성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시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일정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3년에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2호(국토)와 4호(농림)를 2025년 중 동반 발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R&D) 사업 역시 이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이후 해외발사 용역업체의 사정에 의해 발사 방식이 동반발사에서 분리발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 4호)의 발사 시기도 당초 2025년에서 2026년 7월로 연기되었음.[8)]

8)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38회('25.2.19) 발사일정 변경 안건 의결 및 제39회('25.7.17) 발사순서, 사업기간 연장 안건 의결

| 구 분 | 당 초 (제34회 추진위, 2023.10.) (제35회 추진위, 2023.11.) | 변 경 (제38회 추진위, 2025.2.19.) (제39회 추진위, 2025.7.17.) | |
|---|---|---|---|
| 발사형태 | 차중 2호/4호 동반발사(Falcon-9) | 분리발사(Falcon-9) | |
| 발사시기 (Launch Period) | 2025.2.1. ~ 2025.12.31. | 2026.2.1. ~ 2026.4.30. ※ 차중2호(국토) | 2026.6.1. ~ 2026.8.31. ※ 차중4호(농림) |

자료: 농촌진흥청

이는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인 위성 발사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연구개발 일정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특히 이 사업은 농림위성으로부터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정보 분석체계와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제 위성 운용환경에서의 연계 및 성능 검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 이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 농림위성 데이터와 연계하여 검증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

농촌진흥청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1년간 무상 유지보수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유지보수는 통상적인 오류 수정 및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위성 데이터 적용 과정에서 알고리즘 개선이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충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실제 운용 과정에서 성능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할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시에는 실제 운용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고려하여 인프라 구축 일정과 연구개발 일정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업위성센터 구축 및 농림위성 활용이 농산물 수급전망의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성정보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은 농업위성센터를 구축하여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작물 재배면적, 생육상태, 병해충 발생 및 재해 현황 등 농업 분야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농림위성 발사에 맞춰 관련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생산량, 출하량, 가격 및 소비동향 등을 분석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림위성 정보를 농업관측에 활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농업위성센터와 농업관측센터 비교]

| 구분 |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
| 역할/기능 | 위성 기반 농업분야 공간정보 생산 | 농산물 수급·가격 전망 |
| 핵심 데이터 | 위성영상, 공간정보, AI 분석 결과 | 생산량, 재배면적, 출하량, 가격, 소비동향 |
| 관심 대상 | 작물 생육상태, 재배면적, 병해충, 재해, 토지이용 등 | 품목별 수급, 시장동향, 가격 등 |
| 산출물 | 위성 산출물, 지도, 공간정보 서비스 | 관측월보, 수급전망, 가격전망 |
| 활용 목적 | 정책 이행·현장 모니터링, 재해 대응 지원 | 시장예측을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
| 주요 수요자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경연, 공공기관, 농업인 등 | 농식품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농업인 등 |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가 생산하는 재배면적, 작황 및 생육 관련 정보는 농업관측센터의 생산량 예측 및 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은 농산물 수급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농업위성센터 구축과 농림위성 활용 확대는 위성정보 생산 자체보다 해당 정보가 농산물 수급전망과 정책 의사결정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가 보다 중요함.

따라서 향후에는 위성정보 활용이 재배면적 추정 정확도 향상, 생산량 예측 오차 감소 및 수급전망 신뢰도 제고 등에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가. 개 요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및 신규 농업인 육성 등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2억 7,200만원 중 62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농업전문인력 양성 | 6,272 | 6,272 | - | - | 6,272 | 6,255 | - | 17 | 10,5702) |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2026년 예산부터 일부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되었는데, 이를 포함한 금액임

이 사업은 2025년까지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우리쌀·밀 이용 가공기술교육 등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예산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되었고, 지역자율계정(신규 농업인 육성 등)에 36억 9,500만원, 지역지원계정(농산업교육훈련지원)에 68억 7,500만원 등 총 105억 7,000만원이 증액·편성됨.

## 나. 검토의견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지표인 ‘자격증 취득비율’은 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농업인의 역량 향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재설계하고 실적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일반회계-농업전문인력양성(2431-300)(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사업은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업인 대상 교육·연수 사업임.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의 핵심 역량 향상, 농업 경영 실무 적용도, 또는 교육 수료 후의 생산성 변화 등 실제 농업 현장의 인적 자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함.

현재 성과지표인 '자격증 취득비율'은 일선 농촌지도공무원의 국가자격증 취득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사업의 목적 및 실제 수혜대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정은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025년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자격증 취득비율 (%) | 목표 | 89.2 | 90.25 | 93.03 | 96.9 | 97.5 | (국가자격취득자/지도공무원수) ×100 | 내부 통계자료 |
| | 실적 | 96.5 | 96.5 | 96.7 | 97.2 | - | | |
| | 달성도 | 108.2 | 106.9 | 103.9 | 100.3 | - | | |
| 교육인원수 (명) | 목표 | 711,000 | 732,000 | 733,460 | 735,047 | 736,000 | 전문인력양성교육 수료인원(농업인대학+새해농업인실용교육+품목별상설교육+신규농업인교육 등) | 교육결과보고,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 분석 자료 등 |
| | 실적 | 736,100 | 737,710 | 733,994 | 737,128 | - | | |
| | 달성도 | 103.5 | 100.8 | 100.1 | 100.3 | - | | |
| 교육만족도 (%) | 목표 | - | - | - | 신규 | 4.42 | 교육과정 수료 후 설문조사 | 농업인교육 만족도 및 학습유용성 조사 용역 |
| | 실적 | - | - | - | 4.41 | - | | |
| | 달성도 | - | - | - | - | - | | |
| 학습유용성 (%) | 목표 | 4.59 | 4.64 | 4.64 | 4.67 | 4.67 | 교육과정 수료 후 설문조사 | 농업인교육 만족도 및 학습유용성 조사 용역 |
| | 실적 | 4.61 | 4.66 | 4.65 | 4.67 | - | | |
| | 달성도 | 100.4 | 100.4 | 100.2 | 100.0 | - | |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농업인 교육의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격증 취득비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지표는 사업 수혜자인 농업인의 역량 향상 정도가 아니라 교육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실적 산정 과정을 보면 해당 사업의 교육 참여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 실적까지 포함되고 있어 사업 성과보다 공무원의 자격 보유 현황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농업인의 역량 향상 정도와 무관하게 성과가 높게 나타나 사업 성과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현행 자격증 취득비율 지표를 재검토하고, 교육 이수 농업인의 전문역량 향상도, 교육내용 현장 활용도, 전문자격 취득률 등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　타】

# 6.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농촌진흥청에 대해 시정요구 1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3건·제도개선 1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3 | 11 | - | 14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3 | 11 | - | 14 |

농촌진흥청은 시정요구사항 14건에 대해 1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2.9%)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4 | 13 | 92.9 | 1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4 | 13 | 92.9 | 1 |

# 산 림 청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9억 3,000만원(1.4%)이 많은 4,333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2,800만원(6.4%)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456,242 | 456,242 | 407,265 | △48,977 | 427,463 | 427,463 | 433,393 | 5,930 | 26,128 |
| 총수입 | 456,242 | 456,242 | 407,265 | △48,977 | 427,463 | 427,463 | 433,393 | 5,930 | 26,128 |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693억 6,100만원(△5.5%)이 적은 2조 9,145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56억 4,400만원(13.5%)이 증가함.

문의 :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612,591 | 2,612,591 | 2,568,946 | △43,645 | 2,616,930 | 3,083,951 | 2,914,590 | △169,361 | 345,644 |
| 총지출 | 2,612,591 | 2,612,591 | 2,568,946 | △43,645 | 2,616,930 | 3,083,951 | 2,914,590 | △169,361 | 345,644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2,641억 6,400만원으로, 1조 3,950억 1,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2,772억 2,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6%)되고, 1,173억 4,900만원은 미수납되어 4억 3,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98,504 | 98,504 | - | 98,504 | 185,436 | 154,018 | 30,982 | 436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 | | | | |
| - 임업진흥사업계정 | 975,596 | 1,093,740 | - | 1,093,740 | 1,116,863 | 1,037,906 | 78,957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3,219 | 1,973 | 1,246 | - |
| - 투자계정 | - | - | - | - | 3,219 | 1,973 | 1,246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16,555 | 12,936 | 3,619 | - |
| - 지역자율계정 | - | - | - | - | 15,656 | 12,208 | 3,448 | - |
| - 지역지원계정 | - | - | - | - | 133 | 133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 - | 282 | 185 | 97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 - | 484 | 410 | 74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71,920 | 71,920 | - | 71,920 | 72,940 | 70,395 | 2,545 | - |
| - 손익계정 | 38,258 | 38,258 | - | 38,258 | 39,950 | 37,405 | 2,545 | - |
| - 자본계정 | 33,662 | 33,662 | - | 33,662 | 32,990 | 32,990 | - | - |
| 합 계 | 1,146,020 | 1,264,164 | - | 1,264,164 | 1,395,013 | 1,277,228 | 117,349 | 436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3,933억 4,100만원으로, 이 중 4조 1,206억 5,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3.8%)하고 1,507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19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2,188,082 | 2,655,103 | 20,196 | 122,172<br>△122,172 | - | 2,675,299 | 2,559,592 | 88,143 | 27,564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75,596 | 1,093,740 | 46,692 | 1,949<br>△1,949 | - | 1,140,432 | 1,035,295 | 25,617 | 79,520 |
| - 임업진흥사업계정 | 975,596 | 1,093,740 | 46,692 | 1,949<br>△1,949 | - | 1,140,432 | 1,035,295 | 25,617 | 79,52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계정 | - | - | - | - | - | - | -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97,328 | 498,153 | 1,075 | - | - | 499,229 | 456,816 | 30,387 | 12,026 |
| - 지역자율계정 | 177,097 | 177,097 | - | - | - | 177,097 | 177,080 | 17 | - |
| - 지역지원계정 | 214,199 | 315,024 | 1,076 | - | - | 316,100 | 273,954 | 30,370 | 11,776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3,680 | 3,680 | - | - | - | 3,680 | 3,680 | - | -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 2,352 | 2,352 | - | - | - | 2,352 | 2,102 | - | 25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71,920 | 71,920 | 6,461 | - | - | 78,381 | 68,954 | 6,576 | 2,851 |
| - 손익계정 | 38,258 | 38,258 | - | - | - | 38,258 | 37,258 | 124 | 876 |
| - 자본계정 | 33,662 | 33,662 | 6,461 | - | - | 40,123 | 31,696 | 6,452 | 1,975 |
| 합 계 | 3,632,926 | 4,318,916 | 74,424 | 124,121<br>△124,121 | | 4,393,341 | 4,120,657 | 150,723 | 121,961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산림청 자산은 전년 대비 4,070억 8,600만원이 증가된 32조 824억 8,4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406억 400만원, 기타자산이 49억 8,100만원 각각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4,526억 7,100만원 크게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0억 100만원 증가된 612억 7,900만원으로 차입부채 69억 7,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030억 8,500만원 증가된 32조 212억 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산림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조 3,36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40억 5,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3,736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52억 1,4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산림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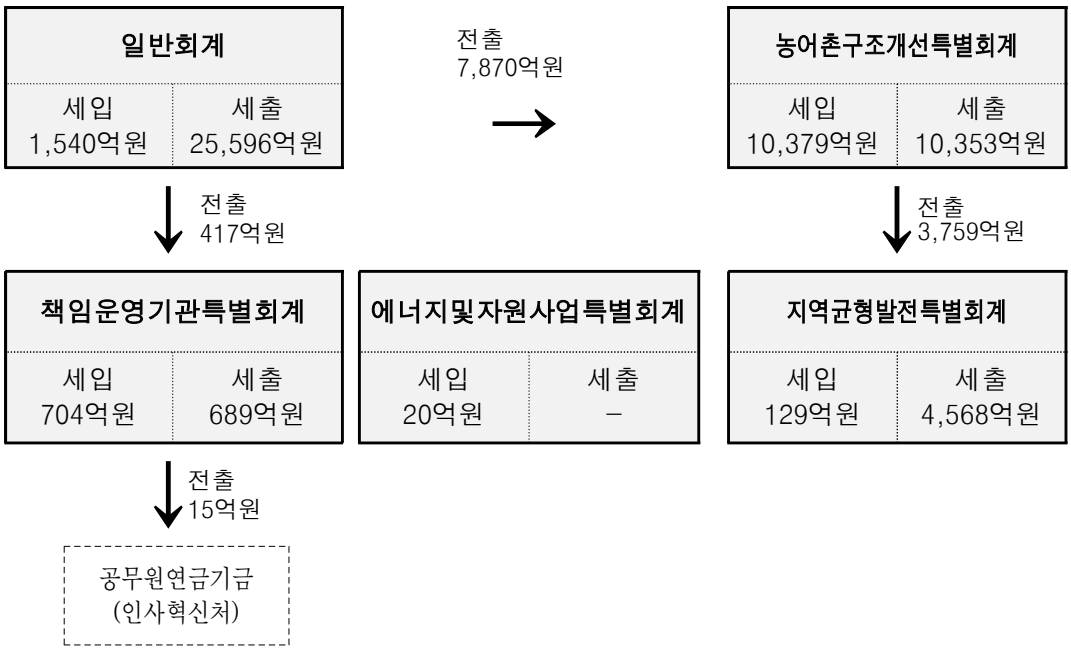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32,082,484 | 31,675,398 | 407,086 | 1.3 |
| | | 금융자산 | 378,810 | 419,414 | △40,604 | △9.7 |
| | | 유·무형자산 | 31,598,597 | 31,145,926 | 452,671 | 1.5 |
| | | 기타자산 | 105,077 | 110,058 | △4,981 | △4.5 |
| | 부 채 | | 61,279 | 57,278 | 4,001 | 7.0 |
| | | 차입부채 | 23,812 | 16,836 | 6,976 | 41.4 |
| | | 충당부채 | - | - | - | - |
| | | 기타부채 | 37,467 | 40,443 | △2,976 | △7.4 |
| | 순자산 | | 32,021,205 | 31,618,120 | 403,085 | 1.3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2,336,520 | 2,082,461 | 254,059 | 12.2 |
| | 재정운영순원가 | | 2,373,714 | 2,118,595 | 255,119 | 12.0 |
| | 재정운영결과 | | 2,373,659 | 2,118,445 | 255,214 | 12.0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7,870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17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759억원이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림청 재정흐름도]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경제·사회·환경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산림자원 조성·보호·이용 및 임업 육성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산림과학기술개발,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산림재난관리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임도시설 설치의 경우 임도집중지역의 목재수확 등 산림경영 활동의 감소로 활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신규 간선임도 설치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설 확충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타당성 평가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림치유원·치유의 숲·숲체원 등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운영은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체계를 녹색자금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정책공모 사업 중 일부는 녹색자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이 산림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사업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임업진흥원의 R&D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외부용역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산림복원사업은 사전타당성 평가부터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산림청 소속 기관 중심으로 반복 수행되고 있어 독립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 등 외부 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고정익항공기 물탱크와 산불방지드론 도입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반복적인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 장비 도입 시에는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임도시설 사업: 활용도 저하 및 산림경영면적 감소추세를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필요 등

### 가. 개 요

**‘임도시설’** 사업은 임도를 설치하여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등 4개 계정을 합한 2025년도 예산현액 3,858억 6,100만원 중 3,437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1%)되고 303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7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임도시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임도시설(자율) | 92,579 | 92,579 | - | - | 92,579 | 92,579 | - | - | 99,567 |
| 임도시설(지원) | 190,049 | 290,874 | 1,076 | - | 291,950 | 249,809 | 30,370 | 11,771 | 185,411 |
| 임도시설(제주) | 280 | 280 | - | - | 280 | 280 | - | - | 280 |
| 임도시설(세종) | 1,052 | 1,052 | - | - | 1,052 | 1,052 | - | - | 1,364 |
| 계 | 283,960 | 384,785 | 1,076 | - | 385,861 | 343,720 | 30,370 | 11,771 | 286,62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계정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제주·세종계정’은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 2개 사업이, 산림청이 직접 집행하는 ‘지원계정’은 5개 사업(간선임도·산불진화임도·작업임도·노폭확장, 구조개량 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자율)(1537-301)·임도시설(지원)(1536-302)·임도시설(제주)(1537-301)·임도시설(세종)(1536-301)(산림산업정책국)

으로 구성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계정 사업에 한하여 임도시설 확충 예산을 총 1,008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산불진화임도 150㎞, 간선임도 100㎞ 추가 확충 등에 집행되었음.

[2025년도 임도시설 사업 계정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5년 결산 | | | | | | | | 2026년 예산 |
|---|---|---|---|---|---|---|---|---|---|---|
| | | 당초 | 추경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실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임도시설 (자율) | 간선임도 | 70,909 | 70,909 | - | 70,909 | 70,909 | 70,909 | - | - | 60,770 |
| | 산불진화임도 | 21,670 | 21,670 | - | 21,670 | 21,670 | 21,670 | - | - | 38,797 |
| | 소계 | 92,579 | 92,579 | - | 92,579 | 92,579 | 92,579 | - | - | 99,567 |
| 임도시설 (지원) | 간선임도 | 22,240 | 50,040 | 267 | 50,307 | 42,834 | 42,834 | 3,620 | 3,853 | 11,120 |
| | 산불진화임도 | 135,270 | 185,370 | - | 185,370 | 161,723 | 161,723 | 19,640 | 4,007 | 139,868 |
| | 작업임도 | 4,576 | 4,576 | - | 4,576 | 3,931 | 3,931 | - | 645 | 2,288 |
| | 노폭확장 | - | 21,600 | - | 21,600 | 15,498 | 15,498 | 5,691 | 411 | |
| | 구조개량 등 | 27,963 | 29,288 | 809 | 30,098 | 25,823 | 25,823 | 1,419 | 2,855 | 32,135 |
| | 소계 | 190,049 | 290,874 | 1,076 | 291,950 | 249,809 | 249,809 | 30,370 | 11,771 | 185,411 |
| 임도시설 (제주) | 간선임도 | 280 | 280 | - | 280 | 280 | 280 | - | - | 280 |
| 임도시설 (세종) | 간선임도 | 585 | 585 | - | 585 | 585 | 585 | - | - | 780 |
| | 산불진화임도 | 457 | 457 | - | 457 | 457 | 457 | - | - | 584 |
| | 소계 | 1,052 | 1,052 | - | 1,052 | 1,052 | 1,052 | - | - | 1,364 |

자료: 산림청

## 나. 검토의견

**첫째, 임도가 집중된 지역의 목재수확 등 산림경영 활동의 감소로 임도 활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산림청은 신규 간선임도 설치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체 국가임도의 약 70%가 집중된 강원·경상권의 조림·숲가꾸기·목재수확 등 실질적인 산림경영 활동 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신규 임도 개설 수요는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3)]

3) 강원·경상권 조림·숲가꾸기 면적(㏊) : ('22) 243.0 → ('23) 246.7 → ('24) 213.3 → ('25) 184.8

또한 간선임도 활용도 지표는 2023년 94.2%에서 2024년 91.5%, 2025년 9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최근의 임도 확충 규모가 실제 산림경영 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도 개설에는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임도 활용 실적과 산림경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간선임도 설치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 임도시설 활용도]

| 성과지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5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방법 |
|---|---|---|---|---|---|---|---|---|
| 임도시설 활용도(천명) | 목표 | 2,900 | 3,000 | 3,104 | 3,148 | 3,148 | 최근 3년간('22~'24년) 국가 임도시설 활용도 평균 2,862천명 대비 9.1%p 상향한 3,148천명을 목표치로 설정 | 당해 연도 국가 임도시설 이용자 수 |
| | 실적 | 2,921 | 2,825 | 2,840 | 2,857 | - | | |
| | 달성도 | 100.7 | 94.2 | 91.5 | 90.8 | - | | |

자료: 산림청

**둘째, 임도사업은 양적 확충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산림청은 타당성 평가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30년까지 임도밀도 5.5m/ha(누적 34,639km)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도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 품질을 확보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치된 전국 1,531개 임도 중 표본 점검 대상 135개소의 76%에 해당하는 103개소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행 임도사업의 품질관리 및 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산림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임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개경쟁 계약을 확대하여 시공 품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부실시공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보강공사까지 다시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과 하자관리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그동안 예산 배정부터 설계·시공까지 모든 절차를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단년도 사업 추진 방식은 동절기 해빙 직후 촉박한 공사 일정에 따른 현장조사 부실과 장마철 붕괴 위험 증가 등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초래해 왔음.

따라서 임도타당성평가 시기 조정 및 필요시 다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충분한 현장조사, 설계 및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임도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산불 확산의 바람길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산림청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재난관리를 위한 임도의 영향 분석 연구 결과보고(1차)」를 통해 전국 산사태 9,656개소 중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사태가 35.9%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임도로 인한 산사태가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4)]

또한 임도 구간의 평균 풍속이 임내보다 1.3~2.4배 높아 산불 확산 시 바람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도와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반면 산림청은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도-바람 상관관계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임도와 산불 확산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공공기관 간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임.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임도시설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이러한 시공상 하자가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간선임도·산불진화임도 구축에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2025년 3,279억원, 2026년 2,505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의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임도의 산사태 및 산불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임도 설치·관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4)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재난관리를 위한 임도의 영향 분석 연구 결과보고(1차)」, 2024. 12.

##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되는 녹색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등

### 가. 개 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공공기관으로, 산림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함.

2025년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일반회계를 통한 국고보조금 446억 6,100만원[5], 복권기금 법정배분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775억 2,800만원 및 사업수입 275억 2,0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1,556억 1,1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 및 산림복지서비스 사업비 등에 집행하였음.

[2025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입·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수 입 | | | | 지 출 | | | |
|---|---|---|---|---|---|---|---|
| 구 분 | '25예산 (A) | '25결산 (B) | B-A | 구 분 | '25예산 (C) | '25결산 (D) | D-C |
| 일반회계(국고보조금) | 44,661 | 44,661 | 0 | 인 건 비 | 32,442 | 32,442 | 0 |
| 녹 색 자 금 | 77,528 | 77,528 | 0 | 경 상 경 비 | 4,612 | 3,558 | △1,054 |
| 수 탁 사 업 | 5,980 | 5,902 | △78 | 사 업 비 | 112,967 | 112,081 | △886 |
| 사업수입 등 | 22,568 | 27,520 | 4,952 | 예 비 비 | 716 | 716 | 0 |
| | | | | 집행잔액 | - | 1,940 | 1,940 |
| | | | | 결산잉여금 등 | - | 4,874 | 4,874 |
| 합 계 | 150,737 | 155,611 | 4,874 | 합 계 | 150,737 | 155,611 | 4,874 |

자료: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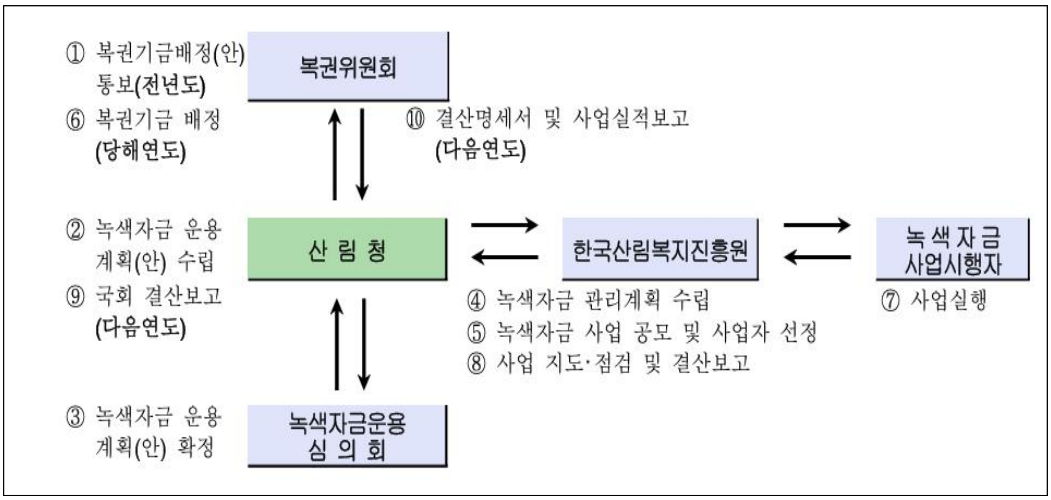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입재원의 약 50%에 달하는 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6]에 따라 산림청장이 운용·관리

5) 일반회계(세출)-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산림복지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하고, 진흥원이 녹색자금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됨에 따라 자금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성있게 집행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복권기금 법정배분액 및 녹색자금 조성·집행 체계]




## 나. 검토의견

**첫째, 산림치유원·치유의 숲·숲체원 등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운영은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므로, 산림청은 그 지원체계를 녹색자금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2025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93억원으로 산림치유원 2개소와 치유의 숲 13개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녹색자금 112억원을 투입하여 구미시와 신안군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일반공모)과 김해·김천·정읍 숲체원 조성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②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2025년 일반예산과 녹색자금을 통한 치유원·치유의 숲 및 숲체원 조성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 예산액 | 비고 |
|---|---|---|---|
| 일반예산 | 산림치유원(영주) 운영 | 4,170 | 영주 · 예천 |
| | 산림치유원(진안고원) 운영 | 3,090 | 진안고원 |
| | 치유의 숲 운영 | 2,080 | 횡성, 장성, 양평, 대관령, 대운산, 김천, 제천, 예산, 곡성, 고창 등 |
| | 계 | 9,340 | |
| 녹색자금 | 구미시 치유의 숲 조성(선산읍) | 1,768 | |
| | 신안군 치유의 숲 조성(안좌도) | 1,001 | |
| | 국립김해숲체원 조성 | 6,901 | |
| | 국립김천숲체원 조성 | 19 | |
| |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 1,517 | |
| | 계 | 11,206 | |

자료: 산림청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및 숲체원 등은 국민 건강 증진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대표적인 산림체험활동시설로서, 녹색자금의 사용 목적에도 부합하는 시설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7]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고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8]에서는 녹색자금의 용도로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및 숲체원 등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 홍보사업
4. 수목원 · 휴양림 · 수목장림의 조성 · 운영사업

그럼에도 현재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은 녹색자금으로, 운영사업은 일반회계로 각각 지원되고 있어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 서로 다른 재원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시설의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재정투자 규모와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사업 간 연계성 및 재원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산림치유원·치유의 숲·숲체원 등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이 녹색자금의 법정 사용용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일반회계와 녹색자금으로 분리되어 있는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지원체계를 녹색자금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녹색자금의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문화 홍보사업 등 직접적인 공익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조정하고,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9)]

**둘째, 정책공모 사업 중 일부는 녹색자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이 산림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사업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2025년 녹색자금 정책공모 사업을 통해 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정원 활동 지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산림문화전집 및 산림문학지 발간,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 산림레포츠대회 운영 등 다양한 과제에 총 22억 7,500만원을 배정하고 2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지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산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자금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산림문화전집 및 산림문학지 발간, 각종 공모전 개최, 산림레포츠대회 운영 등은 산림복지시설 확충이나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과 비교할 때,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녹색자금의 설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

9) 녹색자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특수목적성 재원으로서 사업별 국회 통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목적사업에 집중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림레포츠대회와 같은 행사는 특정 종목 참여자 또는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한정된 녹색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2025년도 녹색자금 중 정책공모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배정액 | 지출액 | 비고 |
|---|---|---|---|
| 올해의 나무 산림관광 자원화<br>(서울특별시 송파구 느티나무 등 9개소) | 200 | 189 | |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 1,000 | 993 | |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사회적약자 정원활동 지원) | 300 | 293 | |
| (사)숲과문화연구회(산림문화전집 발간) | 100 | 100 | 24년 50 지원 |
| (사)한국산림문학회(산림문학지 발간) | 100 | 100 | 24년 21 지원 |
| 목재문화진흥회(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 | 200 | 200 | |
| 전라북도 남원시(백두대간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300 | 266 | |
| 대전광역시산악연맹(산림레포츠대회 운영_암벽등반) | 15 | 15 | |
| 영양군체육회(산림레포츠대회 운영_산악마라톤) | 15 | 15 | |
|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산림레포츠대회 운영_패러글라이딩) | 15 | 15 | 24년 10 지원 |
| 사단법인 한국트리플레이밍협회<br>(산림레포츠대회 운영_로프체험) | 15 | 15 | |
|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br>(산림레포츠대회 운영_오리엔티어링) | 15 | 15 | 24년 10 지원 |
| 계 | 2,275 | 2,216 | |

자료: 산림청

**셋째,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사업은 특정 기관(목재문화진흥회)에 발주 업무를 포함한 사업 관리를 전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수억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예외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어 낙찰차액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반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녹색자금 일반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실내환경 개선사업(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57억 8,900만원, 2025년 5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이 사업은 목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음.

목재문화진흥회에 사업 수행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목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사업체 선정부터 시설 설치까지의 발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일반공모 사업임에도 특정 기관이 사업관리와 집행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한편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2023년 7억 3,200만원, 2024년 5억 2,800만원, 2025년 6억 1,100만원 등 매년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금액은 녹색자금 관리규정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승인을 거쳐 국산 목재 맞춤형 수납장·책상 제작, 편백나무 교구 구입 등 사업 관련 용도로 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녹색자금 관리규정은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예외적 사용이 반복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발생한 예산 절감 효과가 실제 재원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청은 낙찰차액 승인 기준과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녹색자금 중 일반공모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 배정액 | 지출액 |
|---|---|---|---|
| 숲체험공모_효과증진형·체험확산형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19개소 | 12,000 | 11,936 |
| 무장애나눔길 조성 | 강원도 평창군_평창치유의숲 등 20개소 | 11,448 | 7,182 |
|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 **목재문화진흥회 (수의)** | 5,400 | 5,400 |
|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 경기도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등 21개소 | 3,910 | 3,801 |
| 치유의숲 조성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등 2개소 | 2,769 | 984 |
| 산림복지 도시숲 조성 | 경기도 이천시 진암공원 등 8개소 | 2,000 | 1,285 |
| 산림복지제공자 편의개선 |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등 8개소 | 1,280 | 1,280 |
| 수목장림 나눔숲 지원 | 수목장문화진흥재단 기억의 숲 운영 | 418 | 401 |
| 계 | | 39,225 | 32,269 |

자료: 산림청

**넷째, 산림청은 녹색자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을 별도 기금으로 설치하거나 세입·세출예산 내에 편입하는 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10]에서는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 산림환경기능 증진과 관련한 임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산림복지 진흥사업 등 녹색자금의 활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녹색자금 관리 운용을 위한 별도 특별회계·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해당 사업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11]

따라서 산림청은 녹색자금의 운용체계를 재정제도 내로 편입하여 자금의 조성·배분·집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12]

참고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은 대부분 국가기금으로 전출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통제 체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법정배분사업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및 산

---

10) 「산림자원법」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 홍보사업
4. 수목원 · 휴양림 · 수목장림의 조성 · 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산림청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녹색자금 결산서를 보고하고 있어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결산보고는 국회 전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그칠 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결산심사 및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는 국가재정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통제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임.

12) 참고로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다가 국가재정 내로 편입된 사례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기술료 징수액(2014년부터 산업기술진흥기금으로 편입), 대법원 소관의 법원 공탁금(2016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편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공익사업적립금(2018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 등이 있음.

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 지원은 민간보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은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은 법률에 따라 민간 복지사업을 배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녹색자금과는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음.

[2025년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의 운영방식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기관명 | 사업방식 | 배분율 | 2025 예산액 |
|---|---|---|---|---|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금간거래 | 12.6 | 137,447 |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간거래 | 10.4 | 92,044 |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공단 | 기금간거래 | 5.3 | 61,699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금간거래 | 6.4 | 82,620 |
|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 문화재청 | 기금간거래 | 14.2 | 144,815 |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보조 | 17.3 | 190,639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지자체보조 | 17.3 | 190,825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민간보조 | 6.4 | 80,127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민간보조 | 4.3 | 47,401 |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민간보조 | 5.8 | 77,528 |

자료: 산림청

## 【일반회계】

### <세 출>

## 3.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 농림위성 발사일정과 연구개발 일정 간 연계관리 필요

### 가. 개 요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은 농림위성 영상을 활용한 산림특화정보의 수집·처리·분석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5억 9,600만원 중 65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5년도 농림위성융합지능형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농림위성융합지능형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 6,596 | 6,596 | - | - | 6,596 | 6,577 | - | 19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은 그 전제가 되는 농림위성 발사가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음에도 당초 일정대로 2025년말에 종료되어 연구개발성과를 실제 위성운용환경에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국가위성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연구개발사업은 인프라 구축 일정과 연구개발 일정을 연계하여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음.**

13) 일반회계-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1251-402)(산림산업정책국)

당초 정부는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2호(국토)와 4호(농림)를 2025년 중 동반 발사할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발사 방식이 분리발사로 변경되면서 농림위성의 발사 시기가 2026년 6~8월로 연기되었음.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인 농림위성 발사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의 일정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특히 이 사업은 농림위성으로부터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산림특화정보를 생산·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실제 위성 운용환경에서의 연계 및 성능 검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 이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 농림위성 데이터와 연계하여 검증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

산림청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 운영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통상적인 오류 수정과 기능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농림위성 데이터 적용 과정에서 알고리즘 개선이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충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실제 운용 과정에서 성능 보완이나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할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위성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용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고려하여 인프라 구축 일정과 연구개발 일정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사업: 수의 계약 중심의 R&D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방식 개선 필요

## 가. 개 요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사업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성과확산 등을 전담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7억 6,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4]

[2025년도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 1,762 | 1,762 | - | - | 1,762 | 1,762 | - | - | 1,93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 예산은 R&D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비, 과제공모 및 선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비, 과제 종료 이후의 성과확산 등을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사업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집행액 | 주요 집행 내역 |
|---|---|---|
| 기획비 | 774 | ㅇ 사전기획, 투자전략 수립, 현장 연구개발수요 분석 등 용역 추진<br>ㅇ 기획·RFP 검토위원회 및 기획 추진 방향 자문 등 추진 등 |
| 평가비 | 212 | ㅇ 산림과학기술 출연 R&D 최종·단계·특별평가, 신규사업 선정평가 |
| 관리비 | 583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br>ㅇ 산림과학기술 출연R&D 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등 |
| 인건비 | 117 | ㅇ 산림과학기술 출연R&D 평가·관리 인력 인건비 |
| 간접비 | 76 | ㅇ 전산장비 임차료 및 전산장비·사무용품 등 자산취득<br>ㅇ 직무관련 교육훈련 및 부서 운영관련 소모품성 물품 구입 |
| 계 | 1,762 | |

자료: 산림청

14) 일반회계-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1544-309)(산림산업정책국)

##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임업진흥원의 R&D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외부용역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진흥원은 2025년 기획평가관리비로 15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외부용역 34건 중 33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는 전체 35건 중 32건, 2023년에는 전체 31건 중 26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5년도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주요 용역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용 | 발주 | 집행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 (수의 등) |
|---|---|---|---|---|---|
| AI기반 스마트 임도시공 및 유지관리 사업 기획연구(잔금) | 30 | 30 | 전략컨설팅 00㈜ | 2024.7.25. ~2025.6.30. | 수의 |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형산불 대응력 강화 기술개발 기획연구(잔금) | 30 | 30 | ㈜비00 | 2024.12.4. ~2025.6.30. | 수의 |
| 기후변화 대응 산림 병해충 피해저감 기술개발 기획연구(잔금) | 30 | 30 | 0000전략컨설팅㈜ | 2024.12.4. ~2025.6.30. | 수의 |
| 단기소득임산물 그린바이오 제품 및 안정적 생산 기술개발 기획연구(잔금) | 30 | 30 | ㈜00오랩 | 2024.12.4. ~2025.6.30. | 수의 |
| 산림자원 활용 미래현장 콜럼버스 기술개발 기획연구(잔금) | 20 | 20 | ㈜00씽크 | 2024.12.4. ~2025.6.30. | 수의 |
| 산림과학기술 출연R&D 전략 강화 연구 | 100 | 100 | ㈜00오랩 | 2025.8.7. ~2025.12.12. | 수의 |
| 산림경영 인공지능 대전환 R&D사전기획 연구 | 100 | 100 | ㈜비00, 한국00연구원 | 2025.8.11. ~2025.12.12. | 수의 |
| 2024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 110 | 110 | ㈜0000컴퍼니 | 2025-01-08~ 2025-12-12 | 수의 |
| 2025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80 | 80 | ㈜0000파트너스 | 2025-06-09~ 2025-12-12 | 조달 |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용 | 발주 | 집행 | 계약업체 | 계약기간 | 계약방법 (수의 등) |
|---|---|---|---|---|---|
| 제2회 포레테크 · 그린바이오 정책 · 현장연계 포럼 운영지원 용역 | 50 | 50 | ㈜000뮤지엄 | 2025-10-22~ 2025-11-16 | 수의 |
| 2025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전 부스운영지원 | 54 | 54 | ㈜00스울 | 2025-11-19~ 2025-12-19 | 수의 |

자료: 산림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업무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최근 3년간 외부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용역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경쟁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2025년 집행 내역을 보면, 일부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예를 들어, OO업체는 2024년 3건, 2025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 업무는 사업의 방향 설정과 연구과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획·평가 경험과 전문성이 기관 내부에 축적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진흥원은 수요 분석, 전략 수립 및 행사 지원 등 유사 목적의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합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 연구 등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하여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하는 R&D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외부 위탁 중심의 단순 행정관리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획·평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021년 471억 2,900만원에서 2026년 614억 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 수 또한 10~14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1년-2026년 한국임업진흥원 관리 R&D 사업 및 과제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사업 수 | 13 | 12 | 11 | 10 | 14 | 13 |
| 과제 수 | 185 | 187 | 157 | 95 | 109 | 95 |
| 정부출연금 | 47,129 | 52,733 | 50,986 | 31,261 | 51,079 | 61,402 |

자료: 산림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는 사업의 방향 설정과 연구과제 선정, 성과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사업의 최종 성과와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충분한 전문성과 관리 역량이 요구됨.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흥원은 산림청 소관 R&D 전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R&D 사업의 기획·평가 업무를 수의계약 중심의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바, R&D 사업의 최종 성과와 품질은 초기 기획 단계와 중간 평가 단계의 전문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특정업체 중심의 외부 의존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업 전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담인력은 총 14명 수준이며, 이 중 기획 인력은 4명, 평가 인력은 6명에 불과하여, 고도화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진흥원은 연구용역 활용과 별도로 인력 재배치,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자체 기획·평가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관리 인력현황]

(단위: 명)

| 기관명 | 계(A+B) | 주요 연구관리 업무 전담(A) | | | | 기타(B) |
|---|---|---|---|---|---|---|
| | | 소계 | 기획 | 평가 | 성과관리 | |
| 한국임업진흥원 | 14 | 12 | 4 | 6 | 2 | 2 |

자료: 산림청

# 5. 산림복원 사업: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외부기관 참여확대를 통한 객관성 확보

## 가. 개 요

**‘산림복원’** 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생태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림을 복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9억 6,800만원 중 320억 3,200만원이 집행(91.6%)되고 12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5년도 산림복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림복원 | 34,744 | 34,744 | 224 | - | 34,968 | 32,032 | 1,241 | 1,695 | 23,47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산림복원사업은 사전타당성 평가부터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산림청 소속 기관 중심으로 반복 수행되고 있어 독립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 등 외부 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이 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림복원 관련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음.[16]

---

15) 일반회계-산림복원(1933-302)(산림보호국)

16)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은「산림자원법」시행령 제48조의7조제2항 및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산림청고시 제2024-126호)」에 따라 산림현장에 특화된 인력, 기술력, 장비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025년 집행내역을 보면, 산림복원 대상지 타당성 평가 용역은 대부분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동서생태축 산림 실태조사 및 복원방안 마련 연구’ 역시 동 협회가 단독 응찰을 통해 수행하였음. 또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사업은 한국산지보전협회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도 산림복원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액) | 사업명 | 발주액 | 집행액 | 계약업체 | 기간 | 계약유형 | 비고 (발주기관) |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 2025년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용역(3차) | 21 | 38* | 한국치산기술협회 | 25.2. ~25.3. | 수의계약 | 소속기관 (북부청) |
| | 2025년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용역(4차) | 12 | 28* | | 25.6. ~25.6. | 수의계약 | 소속기관 (북부청) |
| | 2026년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용역(1차) | 13 | 12 | | 25.12. ~25.12. | 수의계약 | 소속기관 (남부청) |
| | 2025년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복원 타당성평가 용역 | 9 | 8 | | 25.5. ~25.6. | 수의계약 | 소속기관 (동부청) |
| | 2026년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 28 | 25 | | 25.11. ~25.12. | 수의계약 | 소속기관 (동부청) |
| | 2025년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용역(2차) | 18 | 16 | 00산림생태·입지연구소 | 25.3. ~25.5. | 수의계약 | 소속기관 (남부청) |
| | 소계 | 101 | 127 | | | | |
| 산림생태복원 | 동서생태축 산림 실태조사 및 복원방안 마련 연구 | 100 | 98 | 한국치산기술협회 | 25.4. ~25.11. | 단독응찰 (수의) | 본청 |
|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체계 수립 | 50 | 45 | (사)한국00학회 | 25.6. ~25.11. | 단독응찰 (수의) | 본청 |
| | 경북·경남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전략 마련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 | 180 | 176 | 수목원정원관리원, 산지보전협회, 등 | 25.6. ~25.10. | 수의계약 | 본청 |
| | 소계 | 330 | 319 | | | | |
|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 2025년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용역(1차) | 644 | 599 | 한국산지보전협회 | 25.4. ~25.10. | 일반경쟁 (협상) | 소속기관 (남부청) |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 2025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기번1) | 570 | 559 | | 25.3. ~25.11. | 단독응찰 (수의) | 본청 |
| | 2025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기번2) | 47 | 45 | 수목원정원관리원 | 25.3. ~25.11. | 일반경쟁 (협상) | 본청 |
| | 소계 | 1,261 | 1,203 | | | | |

* 물량 증가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집행액 증가

자료: 산림청

그러나 사업의 최초 기획·평가부터 최종 모니터링 업무까지 산림청 소속 특정 기관 및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조사·평가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도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를 통한 대상지 선정과 복원 성과 평가는 향후 예산 투입과 사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비교]

| 구분 |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
|---|---|---|
| 수행기관 | 「산림기술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전문업(산림생태·공학), 산림복원업 | 「산림자원법」제42조의8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 기관 |
| 수행업무 |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 마련 |

자료: 산림청

아울러 타당성 평가 및 실태조사 용역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단독 응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 수행체계가 충분한 검증과 견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산림청은 특정 지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사업 수행체계를 재검토하여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 등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사·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6. 산불방지대책 사업: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필요

### 가. 개 요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64억 6,700만원 중 861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3%)되고 103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5년도 산불방지대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불방지대책 | 57,869 | 101,499 | 729 | 913<br>△6,674 | 96,467 | 86,163 | - | 10,304 | 85,377 |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 - | 8,000 | - | - | 8,000 | - | - | 8,000 | - |
|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 - | 3,600 | - | △2,700 | 900 | 873 | - | 27 | 8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사업은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으로 공중진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현액 8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은 2025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액 36억원 중 27억원(△75.0%)이 전용(감) 되어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17)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산림재난통제관실)

## 나. 검토의견

**첫째, 고정익항공기 물탱크와 산불방지드론 도입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반복적인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 장비 도입 시에는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의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사업은 2024년 군 수송기 확보를 위한 국방부 및 공군과의 사전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80억원 예산 전액이 불용된데 이어, 2025년에도 물탱크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패널[18] 장착 가능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못하면서 추경 예산 80억원 전액이 다시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특히 2025년 추경사업의 경우, 물탱크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력패널 설치가 항공기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기술 지원과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예산 편성 이후에야 확인함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추경예산 불용경과]

| 구분 | 예산(추경) 전액 불용경과 |
|---|---|
| 2024년 | - '24년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구입예산 80억원이 편성됨.\<br>- 물탱크를 장착할 군 수송기 및 운용인력 확보를 위한 국방부·공군 등과의 협의실패로 예산액 80억원 전액 불용<br>* 산림청에 따르면 '24.8월 국방부는 군 작전 임무수행 제약, 비행안전 확보 등의 사유로 군 수송기 지원 불가 통보 |
| 2025년 | - '25년 추경으로 다시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구입예산 80억원이 반영되어 '27.2월까지 공군에서 운용 중인 수송기(C-130J)에 장착할 계획이었음<br>-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송기(C-130J)에 전력패널을 장착해야 하나 물탱크 제작사로부터 전력패널 장착은 수송기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社에서 장착해야 된다고 통보받음<br>- C-130J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社에 전력패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소요 비용, 소요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불용 |

자료: 산림청

또한 고성능 산불방지드론[19] 도입사업 역시 국내 기술 수준과 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입찰이 반복적으로 유찰되었고, 이로 인해 27억원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20]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18) 산불진화 시 물 또는 지연제 분사를 위한 전기공급 필수 장비로, 전력패널 미장착 상태로 물탱크는 운용 불가

19) 야간 최대고도 1,500m, 비행거리 3km 이상, 40분 비행 가능

이처럼 신규 특수장비 도입사업에서 관계기관 협의, 제작사 기술검토 및 시장조사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조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대규모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 추경예산은 대규모 산불 발생이라는 긴급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의 핵심 진화장비 도입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편성되어 전액 불용된 점은 추경 편성 및 국회 심의 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향후 신규 특수장비 도입 시 관계기관 협의, 제작사 기술검토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장비의 확보 가능성과 운용 여건이 확인된 이후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은 핵심 장비인 드론 도입이 무산되었음에도 관련 차량 구입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바, 향후에는 핵심 장비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차량 등 지원장비의 도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은 당초 드론 45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 유찰로 인해 구입예산 27억원 전액이 타 사업으로 이·전용(감)되면서 계획했던 드론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025년도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 - | 3,600 | - | △2,700 | 900 | 873 | - | 27 | 88 |
| 드론(45대*6천만원) | | 2,700 | | △2,700 | 0 | 0 | - | - | |
| 드론운용차량 (15대*6천만원) | | 900 | | - | 900 | 873 | - | 27 | |

자료: 산림청

20) 군 헬기 143대 산불진화 지원으로 산불진화용 물버킷(51대)·인양줄(143개)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

반면 드론 운반 및 운용을 위한 차량 구입(대당 6천만원) 예산은 예산현액의 97%에 해당하는 8억 7,300만원이 집행되어 총 15대의 차량이 구입되었음.

산림청은 기존에 보유한 열화상 드론의 현장 활용을 위해 차량 도입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 구입비는 당초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45대의 운용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핵심 장비 도입이 무산된 이후에도 당초 계획된 규모의 차량 구입을 그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특히 고성능 산불방지드론과 같이 국내 도입 사례가 많지 않은 신규 특수장비의 경우 조달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핵심 장비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관련 지원장비의 도입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7.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사업: 감지·전달·대피 기술 간 연계성·상호운용성 검증 강화 필요 등

## 가. 개 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산사태 대응 전주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4억 4,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1)]

[2025년도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 | 4,445 | 4,445 | - | - | 4,445 | 4,445 | - | - | 5,92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약 2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연구관리 전담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임.

[2025년도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 사업 세부추진내역]

(단위: 백만원)

| 과 제 명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사업기간 | 2025년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
| | | | | | 현금 | 현물 |
| (총괄) 산사태 현장대응 관리기술 개발 | 서울대학교 | 국립산림과학원,한국치산기술협회,시선아이티 | 2025-04-01~ 2029-12-31 | 134 | - | - |
| (세부1) 산사태 현장위험 지능형 감지 및 전달시스템 개발 | (사)한국산림공학회 | 서울대산학협력단, 충북대산학협력단, 위디비 주식회사 | 2025-04-01~ 2029-12-31 | 715 | - | - |
| (세부2) 산사태 피해예방 신속대피 시스템 개발 | 한국치산기술협회 | 전남대산학협력단, (주)우림엔알 | 2025-04-01~ 2029-12-31 | 237 | - | - |

21) 일반회계(세출)-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1544-316)(산림산업정책국)

(단위: 백만원)

| 과 제 명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사업기간 | 2025년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
| | | | | | 현금 | 현물 |
| (세부3) 지능화장비 운용을 통한 산사태현장데이터 취득 고도화 | 경북대학교 | 대구대산학협력단, 강원대산학협력단, 시선아이티주식회사, (주)이노드, (주)이츠아이 | 2025-04-01~ 2029-12-31 | 751 | - | - |
| (세부 4)산사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기술개발 | 한국방재안전학회 | 백림에프알, 대흥미래기술, (사)한국산림복원협회 | 2025-04-01~ 2029-12-31 | 608 | - | - |
| 산사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딥러닝기반의 진동-충격 감지기능이 적용된 긴급방호용 침대겸용 생존구조물 개발 | 대영테크 | - | 2025-04-01~ 2029-12-31 | 200 | 7 | 60 |
| 산사태 현장맞춤형 복구 기술개발 | 상지대학교 | 공주대산학협력단, 경북대산학협력단, 숲산사 산림기술사 사무소 | 2025-04-01~ 2029-12-31 | 400 | 12 | 18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스마트 조사 기술 개발 | 충남대학교 | 한국환경연구원, 국민대산학협력단 | 2025-04-01~ 2029-12-31 | 400 | - | - |
| 멀티 AI 드론과 이동 중계기 기반 산사태 현장 긴급 통신망 구축 및 매몰자 탐지 시스템 | 투비유니콘 | 배재대산학협력단, 셀코, 대덕연구개발기술융합사회적협동조합 | 2025-04-01~ 2029-12-31 | 600 | 16 | 147 |
| 산사태 대피유도기술개발 | 대전대학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오텍컨설탄트㈜ | 2025-04-01~ 2029-12-31 | 400 | 6 | 50 |
| 계 | | | | 4,445 | 41 | 275 |

자료: 산림청

##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신규사업인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초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지-전달-대피’ 기술을 분리하여 개발한 후 2029년 사업 종료 시점에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나, 이러한 분리 개발 방식은 향후 통합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업 일정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통합 검증 및 실증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현장위험 지능형 감지, 신속대피 시스템, 대피유도기술 등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작동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구현될 때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 현재는 IoT 센서, 통신망, 대피유도 기술 등이 각각 개별 과제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음.

산림청은 사업 종료 시점에 각 기술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감지-전달-대피'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지능형 산사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개별 기술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 간 연계성과 상호운용성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는 점에서,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통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통합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개별 기술이 각각의 성능 목표를 충족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 지연, 시스템 간 연계 오류 또는 운영주체 간 역할 조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단계의 일회성 통합 검증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사업 종료 단계에서의 사후 통합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개발 과정에서부터 단계별 연계·통합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등을 활용한 통합 검증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산사태 예방·대응 등 산림재난통제관실의 핵심 업무와 직접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현행 산림산업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는 추진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사업은 현장위험 지능형 감지, 위험정보 전달, 신속대피 및 대피유도 기술 등을 개발하여 산사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주민 대피체계 운영 및 재난 대응 현장에 실제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므로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 현장 수요와 정책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현재 이 사업은 산림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산업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산사태 예방·대응,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주민 대피체계 운영 등 실제 정책 집행과 연구성과의 활용은 산림재난통제관실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과정에서 실제 활용 부서의 정책 수요와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구성과가 재난 대응체계로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산사태 대응 기술은 현장의 위험요인 분석, 정보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피 절차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재난통제관실 담당자를 기획위원 및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부서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고유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산림산업정책국이 R&D를 총괄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산림산업정책국은 산림자원의 활용과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인 반면, 산림재난통제관실은 산사태 예방·대응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산림재난 대응보다는 연구개발 또는 산업적 활용 측면에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사업이 재난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통제관실이 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활용을 총괄하고 산림산업정책국은 연구개발 행정과 연구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8.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산림청에 대해 시정요구 37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8건·제도개선 29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8 | 29 | - | 37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8 | 29 | - | 37 |

산림청은 시정요구사항 37건에 대해 2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5.7%)하고 9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37 | 28 | 75.7 | 9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37 | 28 | 75.7 | 9 |

# 해양수산부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491억 33백만원(△26.0%)이 적은 9,958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6억 1,900만원(8.9%)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80,477 | 280,477 | 312,061 | 31,584 | 655,951 | 655,951 | 431,451 | △224,500 | 119,390 |
| 기 금 | 626,468 | 626,468 | 602,133 | △24,335 | 688,995 | 688,995 | 564,362 | △124,633 | △37,771 |
| 총수입 | 906,945 | 906,945 | 914,194 | 7,249 | 1,344,946 | 1,344,946 | 995,813 | △349,133 | 81,619 |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653억 17백만원(△3.8%)이 적은 6조 6,60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1억 1,700만원(6.0%)이 증가됨.

문의: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5,877,865 | 5,877,865 | 5,654,102 | △223,763 | 5,985,982 | 6,129,809 | 6,001,417 | △128,392 | 347,315 |
| 기 금 | 810,011 | 810,011 | 630,881 | △179,130 | 795,603 | 795,603 | 658,678 | △136,925 | 27,797 |
| 총지출 | 6,687,876 | 6,687,876 | 6,284,981 | △402,895 | 6,781,585 | 6,925,412 | 6,660,095 | △265,317 | 375,114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조 2,782억 6,000만원으로, 2조 1,367억 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조 847억 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6%)되고, 502억 600만원은 미수납되어 17억 9,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423,100 | 423,100 | - | 423,100 | 137,932 | 129,552 | 8,377 | 2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2,171 | 32,171 | - | 32,171 | 115,228 | 102,014 | 13,214 | - |
| - 구조개선사업계정 | 25,142 | 25,142 | - | 25,142 | 73,692 | 68,772 | 4,920 | -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7,029 | 7,029 | - | 7,029 | 41,536 | 33,242 | 8,294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71,540 | 1,814,123 | - | 1,814,123 | 1,859,950 | 1,836,488 | 21,665 | 1,796 |
| - 항만계정 | 1,771,540 | 1,814,123 | - | 1,814,123 | 1,859,950 | 1,836,488 | 21,665 | 1,796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845 | 3,845 | - | 3,845 | 7,532 | 5,281 | 2,251 | - |
| - 투자계정 | 3,845 | 3,845 | - | 3,845 | 7,532 | 5,281 | 2,251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021 | 5,021 | - | 5,021 | 16,065 | 11,366 | 4,699 | - |
| - 지역자율계정 | 4,203 | 4,203 | - | 4,203 | 7,886 | 4,043 | 3,843 | - |
| - 지역지원계정 | 791 | 791 | - | 791 | 7,699 | 6,843 | 856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7 | 27 | - | 27 | 480 | 480 | - | - |
| 합 계 | 2,235,677 | 2,278,260 | - | 2,278,260 | 2,136,707 | 2,084,701 | 50,206 | 1,798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조 431억 8,400만원으로, 7조 4,683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고 2,281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466억 5,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3,420,330 | 3,471,093 | 20,800 | - | 89,681 | 3,581,573 | 3,355,001 | 25,981 | 200,591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671,078 | 1,764,142 | 73,744 | - | 3,000 | 1,840,886 | 1,768,427 | 24,981 | 47,478 |
| - 구조개선사업계정 | 912,076 | 970,076 | 66,715 | - | 3,000 | 1,039,791 | 988,029 | 17,582 | 34,180 |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759,002 | 794,066 | 7,029 | - | - | 801,095 | 780,398 | 7,399 | 13,298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71,540 | 1,814,123 | 101,904 | - | - | 1,916,027 | 1,653,352 | 172,551 | 90,124 |
| - 항만계정 | 1,771,540 | 1,814,123 | 101,904 | - | - | 1,916,027 | 1,653,352 | 172,551 | 90,124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61,802 | 61,802 | - | - | - | 61,802 | 61,802 | - | - |
| - 투자계정 | 61,802 | 61,802 | - | - | - | 61,802 | 61,802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39,194 | 639,194 | 3,702 | - | - | 642,896 | 629,801 | 4,634 | 8,460 |
| - 지역자율계정 | 69,278 | 69,278 | - | - | - | 69,278 | 69,278 | - | - |
| - 지역지원계정 | 490,394 | 490,394 | 3,702 | - | - | 494,096 | 481,001 | 4,634 | 8,460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79,522 | 79,522 | - | - | - | 79,522 | 79,522 | - | - |
| 합 계 | 7,563,944 | 7,750,354 | 200,150 | - | 92,681 | 8,043,184 | 7,468,383 | 228,147 | 346,653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8,203억 8,400만원으로, 1조 4,809억 7,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4,673억 9,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1%)되고, 135억 8,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수산발전기금 | 820,384 | 820,384 | 1,480,973 | 1,467,393 | 13,580 | - |
| 합 계 | 820,384 | 820,384 | 1,480,973 | 1,467,393 | 13,580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8,203억 8,400만원으로, 9,119억 5,0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1.2%)되고 7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73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수산발전기금 | 820,384 | 820,384 | 16,133 | 836,517 | 911,950 | 768 | 157,372 |
| 합 계 | 820,384 | 820,384 | 16,133 | 836,517 | 911,950 | 768 | 157,372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해양수산부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8,300억 1,300만원이 증가된 40조 6,019억 9,400만원으로, 이는 기타자산이 1,175억 6,3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이 각각 476억 5,900만원, 1조 8,999억 1,6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097억 1,700만원 증가된 2,736억 1,200만원으로 차입부채 1,013억 2,8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7,202억 9,600만원이 증가된 40조 3,283억 8,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조 5,232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 9,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조 8,04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7억 9,7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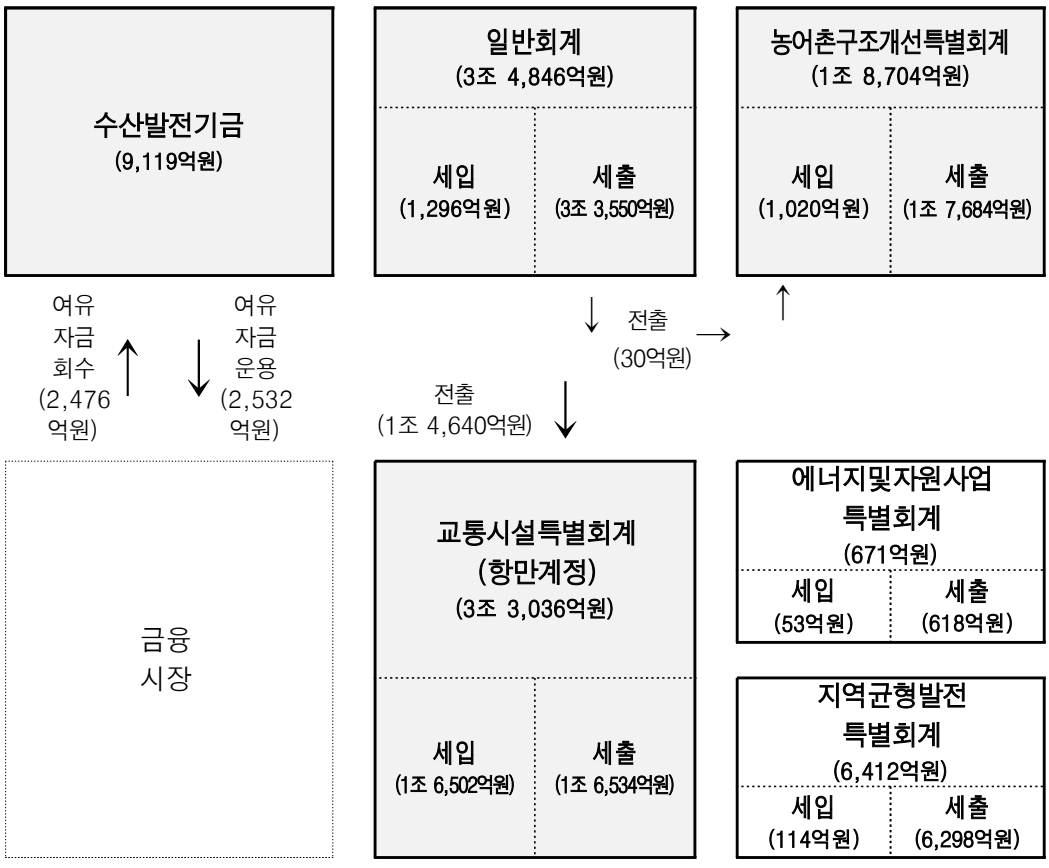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40,601,994 | 38,771,981 | 1,830,013 | 4.7 |
| | | 금융자산 | 3,174,375 | 3,126,716 | 47,659 | 1.5 |
| | | 유·무형자산 | 36,984,372 | 35,084,455 | 1,899,916 | 5.4 |
| | | 기타자산 | 443,248 | 560,810 | △117,563 | △21.0 |
| | 부 채 | | 273,612 | 163,894 | 109,717 | 66.9 |
| | | 차입부채 | 230,595 | 129,267 | 101,328 | 78.4 |
| | | 충당부채 | 24,714 | 17,390 | 7,324 | 42.1 |
| | | 기타부채 | 18,302 | 17,237 | 1,065 | 6.2 |
| | 순자산 | | 40,328,382 | 38,608,087 | 1,720,296 | 4.5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4,523,218 | 4,365,927 | 157,291 | 3.6 |
| | 재정운영순원가 | | 4,873,318 | 4,632,308 | 241,010 | 5.2 |
| | 재정운영결과 | | 4,804,735 | 4,558,938 | 245,797 | 5.4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4,64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흐름도]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394개의 세부사업에서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국민·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해양수산부는 전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연내 보급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업체의 공급능력 및 집행여건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집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관리용역비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2025년 예비비로 확보한 부산 청사 관리용역비 계약금액을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비비 편성·집행 취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부지선정, 설계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사업완료가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순연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인적·재정적 제재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을 확대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실상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함.

다섯째,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을 이·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타 사업 내용으로 집행하는 등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여섯째,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024~2025년에 걸쳐 사업비 35억원을 편성·교부하여 전액 이월

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부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일정 및 예산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은 일정이 계획대비 지연되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추경사업의 정책효과가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사전 준비 및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은 자동화장비 도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이 설계되어 사업신청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은 기술교육 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창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일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과 비용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해양수산부는 교육과정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창업희망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창업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열째,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 업체(수협유통)가 운영하는 '어부세상'의 가맹점주 모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창업 성과도 2025년 1건에 불과하므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필요

### 가. 개 요

국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으로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또한 예산의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2025년에 수행한 일부 사업에서 이러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을 이·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타 사업 내용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2]은 수산부산물 통계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로 보기 어려운 ‘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등에 총 1억 4,358만 8,320원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3140-355)(수산정책실)

을 집행하였음.

[2025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 목적 외 집행 내역]

(단위: 원)

| 집행일 | 내내역사업 | 집행내역 | 집행사유 | 집행액 |
|---|---|---|---|---|
| 2025. 2.17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청정어장 굴전략품목 육성사업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용 지출 | 수산부산물(굴) 연관사업 | 2,200,000 |
| 2025. 2.17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용 지출 | 수산부산물 연관사업(수산부산물 홍보 포함) | 3,245,000 |
| 2025. 3.7.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선금)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 수산부산물 연관사업(수산부산물 홍보 포함) | 32,000,000 |
| 2025. 4.23. |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 선금)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77,600,000 |
| 2025. 4.28.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2025년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수당 지급 | 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 | 450,000 |
| 2025. 5.14.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693,320 |
| 2025. 10.2.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준공금)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8,000,000 |
| 2025. 12.5. |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 준공금)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19,400,000 |
| 합계 | | | | 143,588,320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이나 사업 간 연관성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의 경비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사업 간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024~2025년에 걸쳐 사업비 35억원을 편성·교부하여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부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일정과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3]은 총사업비 35억원(국비 100%)의 민간자본보조사업임.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에 공사비 등 33억 5,000만원을 편성·교부하였고, 결국 집행된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되었음.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부처 | | 한국수산자원공단 | | | | | | | | |
|---|---|---|---|---|---|---|---|---|---|---|---|
| | 예산액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2025 | 3,350 | 3,350 | 3,350 | 150 | 3,500 | 150 | 3,350 | - | 3,350 | - | 0.0 |

자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은 국고보조금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교부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고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3150-304)(수산정책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 민간보조사업
12-2. 세부지침
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사업비를 2025년 12월 19일과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교부하여 형식적으로는 분할교부 원칙을 준수하였으나, 두 차례의 교부가 모두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분할교부 제도의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양수산부는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인적·재정적 제재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질병예방연구센터 건립 사업[6]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주문진시험포 건물을 철거한 후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건물 해체에 필요한 공사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건물 해체공사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해체공사를 추진하였고,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로부터 2025년 9월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을 사유로 기본경비 3,700만원 배정 유보와 담당자 인적 제재를 요구받았음.[7]

---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3140-350)(수산정책실)

7)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제107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등록·미등록·지연등록,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의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 및 정부출연·출자·보조기관의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배정이나 차년도의 예산안 편성 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출연·출자·보조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 기본경비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지침 위반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제재 외에 임의설계변경 금액 등(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으로 인한 제재 요구 및 조치사항]

| 차수 | 제재요구일 | 사유 | 제재 요구 사항 | 조치사항 |
|---|---|---|---|---|
| 1차 | 2023.11. | 기획재정부와 설계용역 변경 관련 사전협의 미실시 (기존 건물 해체공사 실시설계 등) | 담당자 인적 제재 | 주의(담당자 1인) |
| 2차 | 2025.9.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 증액 (기존 건물 해체공사) | 재정적 제재(당해연도 기본경비 3,700만원 배정 유보) | 기본경비(고용부담금) 3,700만원 배정 유보 |
| | | | 담당자 인적 제재 | 경고(담당자 1인)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3년에도 설계용역 관련 사전협의 미실시로 인적 제재 요구를 받았음에도, 재차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해체공사를 시행하여 다시 제재를 받은 것인바, 동일 사업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해양수산부의 내부통제 및 사업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해양수산부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전용하여 총액인건비 규모를 임의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등을 이유로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2,000만원을 전용(증)하였음.

[2025년 해양수산부 총액인건비 비대상-대상 사업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전용 (12.18.) | 청사시설관리 (7041-300) | 상용임금 (110-03) | 20 |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총액) (7002-103) | 보수 (110-01)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인건비 부족 |

자료: 해양수산부

총액인건비제도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8]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전용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9]

이러한 집행지침의 취지는 기관이 당초 배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과 보수를 자율적·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도의 자율과 책임 원칙을 확보하고, 인건비 부족을 사후적인 예산 조정으로 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전용하여 총액인건비 규모를 임의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9)「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세 출〉

## 2. 사후관리 사업: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후속대책 이행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사후관리’** 사업은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이후 사업의 실효성 및 사업 전·후 변화 확인 등을 위하여 오염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2,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0)]

[2025년도 사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오염퇴적물 정화, 복원 | 18,718 | 18,718 | - | - | 18,718 | 18,718 | - | - | 15,643 |
| 사후관리 | 720 | 720 | - | - | 720 | 720 | - | - | 36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후 다수 해역에서 재오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육상오염물질 차단계획 이행 등 후속조치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항만·만, 하구처럼 주변이 해안선으로 둘러싸여 해수의 순환이 제한되는 해역)의 오염퇴적물을

10) 일반회계-오염퇴적물 정화, 복원(1033-305)(해양정책실)

수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오염도를 줄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11)]

사업은 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도를 확인한 후 정화사업지를 선정하여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3~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화효과의 지속 여부와 재오염 발생 여부를 점검(사후관리)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 오염퇴적물 정화, 사후관리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한편 정화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정화지수(CI: Cleanup Index)를 활용하는데, 정화지수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와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로 구분하며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2 이상,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9 이상인 경우 정화사업의 대상이 됨.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지수]

| 구분 | 정화기준 | 평가항목 |
|---|---|---|
|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 2 이상<br>※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지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정화대상 선정 가능 |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수은(Hg), 니켈(Ni), 납(Pb), 아연(Z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유기주석화합물(TBT) |
|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 9 이상 | 강열감량 (IL), 화학적산소요구량 (COD),<br>산휘발성황화물 (AVS) |

자료: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 · 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정화 사업)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기초조사
2. 실태조사
3. 정화사업지 선정
4. 실시설계
5. 정화의 시행
6. 사후관리

2025년에는 여수 구항, 부산 용호만, 통영항, 부산 감천항 등 4개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음. 이 중 여수 구항은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업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산 용호만, 통영항, 부산 감천항은 사업 완료 직후에는 오염도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정화지수가 상승하는 등 재오염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2025년 사후관리 현황]

| 사업지 | 정화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억원) | 사후 관리 기간 |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2] | | | | | |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2] | | | | | |
|---|---|---|---|---|---|---|---|---|---|---|---|---|---|---|---|
| | | | | 사업 전 | 1 년차 | 2 년차 | 3 년차 | 4 년차 | 5 년차 | 사업 전 | 1 년차 | 2 년차 | 3 년차 | 4 년차 | 5 년차 |
| 여수 구항 | 2019~ 2020 | 51.5 | 2021~ 2025 | 2.6 | 1.3 | 1.0 | 1.7 | 1.0 | 0.6 | 3.2 | 5.1 | 2.8 | 3.1 | 3.3 | 2.3 |
| 부산 용호만[1] | (1차) 2009~ 2011 (2차) 2020 | 123 | 2021~ 2025 | 2.3 | 1.7 | 3.6 | 2.4 | 2.8 | 3.0 | 6.2 | 5.4 | 6.8 | 6.8 | 7.6 | 5.5 |
| 통영항 | 2020~ 2021 | 87.3 | 2022~ 2026 | 3.6 | 1.1 | 2.9 | 2.5 | 3.1 | | 4.2 | 5.0 | 8.1 | 6.0 | 6.8 | |
| 부산 감천항 | 2019~ 2021 | 178.8 | 2022~ 2026 | 23.0 | 2.3 | 3.0 | 4.4 | 6.3 | | 2.2 | 7.2 | 4.0 | 4.4 | 4.6 | |

주 1) 부산 용호만은 2차에 걸쳐 정화사업이 실시되었는데, 1차는 국비 97억원(2009~2011년)이, 2차는 국비·지방비 26억원(국비 18.2억원+지방비 7.8억원, 2020년)이 투입되었음.
2)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및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는 측정 당시의 기준[「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범위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5.12.16., 일부개정·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기준농도·산출방식 및 정화지수 기준이 변경되었음]

자료: 해양수산부

구체적으로 부산 용호만은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전 2.3에서 사업 완료 후 1년차에는 1.7로 개선되었으나 이후 3.6, 2.4, 2.8, 3.0으로 나타나 사업 전보다 상승하였고,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도 1년차에는 5.4로 감소하였다가 2~4년차에 6.8~7.6으로 상승하였음.

통영항 역시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사업 완료 1년차에는 1.1까지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시 2.5~3.1 수준으로 높아졌고,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도 최대 8.1까지 증가하였음.

부산 감천항은 사업 전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23.0으로 매우 높았다가 사업 완료 직후 2.3까지 감소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년차에는 6.3으로 나타났고,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는 사업 전 2.2였으나 사업 후에는 4.0~7.2로 오히려 증가

하였음.

정화사업 비용으로 여수 구항 51.5억원, 부산 용호만 123억원, 통영항 87.3억원, 부산 감천항 178.8억원 등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일부 사업지에서는 사업 완료 후 수년 내에 오염도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부산 용호만은 2009~2011년에 국비 97억원을 편성하여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육상오염물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 재오염이 발생하게 되었고, 2020년에 국비 18.2원·지방비 7.8억원 등 총 26억원을 투입하여 추가 정화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관련 지수들이 재차 상승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통영항 및 부산 감천항에서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지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육상오염 차단계획이 현장에서 원활히 연계·추진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어, 재오염이 확인된 해역에 대한 정확한 오염원 파악 및 재오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후관리 후속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완료 해역에서 오염 재발·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육상오염원 관리 등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정화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지의 사후관리 결과와 재오염 사례를 분석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 구명조끼보급 한시지원 사업(신규): 집행여건 검토 미흡으로 사업 지연 부적정

### 가. 개 요

**‘구명조끼보급 한시지원’** 사업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시 활동하기 편한 팽창형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1억 8,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2)]

[2025년도 구명조끼보급 한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 2,166 | 8,346 | - | - | 8,346 | 8,346 | - | - | 2,766 |
| 구명조끼보급 한시지원 | - | 6,180 | - | | 6,180 | 6,18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전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연내 보급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업체의 공급능력 및 집행여건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집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 어선사고 발생 시 어업인의 생존시간을 연장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연근해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임.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어선안전장비 지원 사업[13)]을 통해 연근해어선

12) 일반회계-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3132-304)(수산정책실)

13) 일반회계-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3132-304)의 내역사업

에 고체식 구명조끼 17,703벌, 팽창식 구명조끼 11,542벌을 보급한 바 있음. 그럼에도 동 사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에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이 의무화(2025.10.19. 시행)되고,[14] 기존에 보급한 구명조끼의 내용연수·손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어선원 10만 3,000명에게 연내에 구명조끼 보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구명조끼 보급은 2025년 내 완료되지 못하고 20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최종 완료되었음. 발주 및 납품 현황을 보면 승선 인원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직후인 2025년 10월 기준 누적 발주량은 60,303개였으나 누적 납품량은 12,122개에 불과하여 납품률이 20.1%에 불과하였고, 2025년 12월 말에도 누적 납품률은 74.5%에 그쳤으며 전체 물량의 25.5%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급되었음.

[구명조끼 발주 및 납품 현황]

(단위: 개, %)

| 시기 | 발주수량 | 납품수량 | 누적 발주수량 | 누적 납품수량 | 납품률(누계 기준) |
|---|---|---|---|---|---|
| 2025. 5. | - | - | - | - | - |
| 2025. 6. | - | - | - | - | - |
| 2025. 7. | - | - | - | - | - |
| 2025. 8. | 8,418 | 89 | 8,418 | 89 | 1.1 |
| 2025. 9. | 32,404 | 6,802 | 40,822 | 6,891 | 16.9 |
| **2025. 10.** | 19,481 | 5,231 | **60,303** | **12,122** | **20.1** |
| 2025. 11. | 28,710 | 35,092 | 89,013 | 47,214 | 53.0 |
| **2025. 12.** | 23,709 | 36,809 | **112,722** | **84,023** | **74.5** |

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08호, 2024.1.2.,일부개정, 2025. 10.19.시행]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67호, 2024.5.22.,일부개정, 2025.10.19.시행]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단위: 개, %)

| 시기 | 발주수량 | 납품수량 | 누적 발주수량 | 누적 납품수량 | 납품률(누계 기준) |
|---|---|---|---|---|---|
| 2026. 1. | 720 | 6,402 | 113,442 | 90,425 | 79.7 |
| 2026. 2. | 328 | 10,309 | 113,770 | 100,734 | 88.5 |
| 2026. 3. | - | 5,054 | 113,770 | 105,788 | 93.0 |
| 2026. 4. | 8 | 7,990 | 113,778 | 113,778 | 100.0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지연의 원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지연, 팽창식 구명조끼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Inflater,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부풀려주는 기폭 장치)의 해외 수급 차질 등에 있다고 하였음. 또한 사업은 수협중앙회가 구명조끼 생산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생산하여 어선원에게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수협중앙회와 계약한 생산업체(13개 업체)가 일시에 대량의 구명조끼를 제작함에 따라 업체별 생산능력에 차이가 발생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사유라기보다 추경 편성 이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제약요인에 해당함. 동 사업은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절차가 필요하였고, 인플레이터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임.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집행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국 어선원 10만 3,000명에 대한 일괄 보급을 전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지연되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대규모 물품보급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핵심부품 조달 여건,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실제 집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일정을 설정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집행결과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4.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사업(신규): 수요 대비 과다한 예산 편성 부적정

## 가. 개 요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사업은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원 중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8.2%)되고, 4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5년도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지원 | 757 | 757 | - | - | 757 | 743 | - | 14 | 714 |
| 상용화 기반구축 | 550 | 550 | - | - | 550 | 140.5 | | 409.5 | 550 |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 500 | 500 | - | - | 500 | 91 | - | 409 | 5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수요를 과다 산정하여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산업 성숙도와 기술개발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자율운항선박과 그 핵심 기자재가 실제 해상환경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에 안전성 평가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16)]

15) 일반회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지원(6133-356)(해운물류국)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12회의 안전성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여 평가수수료 등 사업비 5억원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교부하였으나,[17] 실제 안전성 평가는 2회만 실시되어 평가 수수료 및 부대비 등 직접 사업비 6,300만원과 일반관리비 2,800만원을 포함한 9,1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4억 900만원은 해양수산부로 반납되어 불용처리되었음.

[2025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사업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반납액 |
|---|---|---|---|
| 1. 경비 | 473 | 58 | 409 |
| - 안전성 평가 수수료(12회) | 464 | 56 | 407 |
| - 부대비(회의비, 인쇄비 등) | 9 | 7 | 2 |
| 2. 일반관리비(경비 합계액의 6% 범위 내) | 28 | 28 | - |
| 합계 | 500 | 91 | 409 |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내역]

| 평가대상 | 신청인 | 평가내용 |
|---|---|---|
| 해양누리호 (69톤)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위험도 평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위험관리 및 저감조치 마련하여 통보<br>(도면 평가) 위험도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확인, 구조와 배치 등 설계의 안전성 여부 확인<br>(현장 시험) 각 시스템의 적정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해상시험을 통해 위험상황 등 상황별로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검토 |
| 남이51호 (48톤) | ㈜남이섬 |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평가 신청이 예상보다 적어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16)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사업비를 관리하면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선급이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한국선급에 표준수수료 기준에 따라 평가 비용을 지급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5년부터 시행되었고, 국제적으로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2032년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Code)을 마련하고 있는 등[18] 아직 실증과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단계임.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충분한 수요 검증 없이 연간 12회의 평가를 전제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산업 성숙도와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실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8)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 전 세계에 소개 - 해양수산부, 2025 IMO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참가해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6.16.)

## 5.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상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은 관공선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7억 5,000만원 중 37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관공선 건조 및 운영 | 23,122 | 23,122 | 912 | - | 24,033 | 21,436 | 846 | 1,751 | 22,578 |
| 친환경 관공선 도입 | 4,650 | 4,650 | - | - | 4,650 | 4,602 | - | 48 | 4,990 |
|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 3,750 | 3,750 | - | - | 3,750 | 3,702 | - | 48 | 4,1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은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매년 6~11개월의 사업 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20](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2030년까지 국가 공공선박(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공선박)

19) 일반회계-관공선 건조 및 운영(6133-300)(해운물류국)

2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8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본계획상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목표]

(단위: 억원, 척)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예산 | 60 | 40 | 46 | 50 | 48.4 | 50 | 50 | 50 | 47.5 | 433.5 |
| 척수 | 3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9 | 189 |

자료: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선박 중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선령 약 10년 미만의 관공선에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은 항상 12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22년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연장되었고, 2023년 사업은 2024년 6월까지, 2024년 사업은 2025년 11월까지, 2025년 사업은 2026년 10월까지 각각 연장되었음.

[2022~2025년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실적]

(단위: 척)

| 연도 | 계획 | 개조 실적(2025년말 기준) | | | 사업기간[2] | |
|---|---|---|---|---|---|---|
| | | 합계 | 당해 연도 | 차년도 | 당초 계획 | 실제 |
| 2022 | 25 | 25 | 4 | 21 | 2022.4.20.~2022.12.9.(9개월) | 2022.4.20.~2023.6.30.(15개월)<br>(6개월 연장) |
| 2023 | 20 | 20 | 4 | 16 | 2023.3.30.~2023.12.15.(9개월) | 2023.3.30.~2024.6.30.(15개월)<br>(6개월 연장) |
| 2024 | 20 | 20 | - | 20 | 2024.2.28.~2024.12.20.(10개월) | 2024.2.28.~2025.11.30.(21개월)<br>(11개월 연장) |
| 2025[1] | 15 | - | - | - | 2025.3.27.~2025.12.19.(9개월) | 2025.3.27.~2026.10.30.(19개월)<br>(10개월 연장) |
| 합계 | 80 | 65 | 8 | 57 | | |

주 1) 2025년 사업은 15척 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에 개조된 실적은 없고 2026년에 개조 예정
2) 사업기간 산정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사업비도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수탁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 |
| 2022 | 5,943 | - | 5,943 | 4,069 | 5,943 | 4,069 | 1,874 | - |
| 2023 | 4,000 | 1,874 | 5,874 | 4,647 | 4,000 | 2,773 | 1,227 | - |
| 2024 | 4,600 | 1,227 | 5,827 | 5,093 | 4,600 | 3,866 | 734 | - |
| 2025 | 3,750 | 734 | 4,484 | 4,345 | 3,750 | 3,611 | 139 |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는 선박별 개조 설계와 미세먼지 저감장치 제작·설치 등에 6~8개월이 소요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관련 용역 발주가 통상 5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준비 및 발주 절차를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라장터 공고 내역]

| 연도 | 친환경 개조 설치 용역(개조 설계 및 설치) | 미세먼지 저감장치 제작 용역 |
|---|---|---|
| 2024 | 2024.5.29. 공고 | 2024.10.11. 공고 |
| 2025 | 2025.6.2. 공고 | 2025.10.16. 공고 |

자료: 나라장터 공고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실적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상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실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2030년까지 189척을, 2025년까지 9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친환경선박으로 개조된 공공선박은 동 사업을 통해 개조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선박 65척 외에는 없는 실정임.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 발주한 17척의 개조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97척)은 친환경 개조가 완료되는데, 타 기관의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는 해당 기관 예산 미편성 등의 이유로 개조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설명임.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는 공공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고 선박 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임. 따라서 친환경선박 보급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공공선박 개조를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6.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신규): 예비비로 편성한 관리용역비 전액 이월 부적정

## 가. 개 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현액 866억 8,100만원 중 687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3%)되고 137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1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5년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비비 (D) | 예산현액 (A+B+C+D)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 | - | - | - | 86,681 | 86,681 | 68,764 | 13,763 | 4,154 | 32,23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관리용역비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2025년 예비비로 확보한 부산 청사 관리용역비 계약금액을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비비 편성·집행 취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2025년 연도 중에 추진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7월 청사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8일부터 2주간 이전을 진행하여 12월 23일 개청하였음.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6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청사 주차장 관리, 미화(청소), 방호 및 보안을 위한 관리용역비 3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음.

21) 일반회계-해양수산부 부산 이전(7041-304)(운영지원과)

[2025년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 관리용역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비비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관리용역비 | 3,624 | - | 3,108 | 516 | 3,957 |
| 청사 주차장관리 용역 | 322 | - | 244 | 78 | 333 |
| 청사 미화(청소) 용역 | 1,362 | - | 1,030 | 332 | 1,410 |
| 청사 방호 및 보안 용역 | 1,940 | - | 1,834 | 106 | 2,21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개시되도록 주차장관리 용역 등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청구일이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낙찰차액 등 5억 1,600만원은 불용되었음.

[관리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계약명 | 계약기간 | 발주금액 | 낙찰액 |
|---|---|---|---|
| 해양수산부 청사 주차장관리 용역 | 2025.12.01.~2026.11.30. | 275 | 244 |
| 해양수산부 청사 미화(청소) 용역 | 2025.12.01.~2026.11.30. | 1,167 | 1,030 |
| 해양수산부 청사 방호 및 보안 용역 | 2025.12.01.~2026.12.31. | 2,072 | 1,834 |
| 합계 | | 3,514 | 3,108 |

자료: 해양수산부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일정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요를 산정해야 함.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실제 이전 및 개청 일정에 비추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관리용역비를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동일한 목적의 관리용역비를 2026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였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음.

관리용역은 청사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에 맞추어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연말 계약에 따른 장기 이월이 반복될 경우 회계연도별 비용부담이 왜곡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부산 이전과 같이 일정이 유동적인 사업에 대하여 예비

비를 요구할 경우 사업 착수 시기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7.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 반복적 사업 지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부적정

### 가. 개 요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연어류 국내양식 산업화를 위한 양식기술 개발 및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7억 8,6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1.5%)되고 86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5년도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 | 7,512 | 7,512 | 6,094 | - | 13,606 | 4,902 | - | 8,704 | 18,030 |
| 대량생산 기술개발 | 3,052 | 3,052 | 6,094 | - | 9,146 | 482 | - | 8,664 | 270 |
| 질병예방 연구센터 구축 | 2,692 | 2,692 | 6,094 | - | 8,786 | 133 | - | 8,653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부지선정, 설계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사업완료가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순연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3140-350)(수산정책실)

질병예방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연어류 국내양식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주문진시험포의 기존 연구시설을 해체하고 연어류 질병 연구,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양식기술 연구 등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임.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 개요]

| |
|---|
| ○ 목적: 양식핵심기술 개발과 질병예방을 위한 감염성 병원체의 발병 검증 및 주요 병원체의 예방백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질병예방연구센터 건축<br>○ 위치: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주문진시험포(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1번지)<br>○ 주요시설: 본관동, 질병관리연구동, 양성기술개발동, 부대시설(사육수 취수·여과 관리, 배출수 관리 시스템 등)<br>○ 주요 기능: 연어류 질병특성분석, 의약품(백신, 치료제 등) 개발, 우량품종 특성연구, 배합사료 개발, 양성 데이터 관리 등<br>○ 사업기간: 2022 ~ 2028 (당초 2022 ~ 2024)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부지선정 협의 장기화, 2023년 설계 분리 및 건축허가 방안 협의, 2024~2025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2025년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23)]

[질병예방연구센터 건립 사업 추진경과]

| 기간 | 사업내용 |
|---|---|
| 2021.6.~ 2022.5. | 당초 강릉원주대 보유부지 활용을 추진했으나 협의 장기화로 동해수산연구소 주문진시험포 부지 활용 결정 |
| 2022.12. |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
| 2022.12~2024.1 | 계획 설계 완료(본관동, 사육동 설계 분리로 건축허가 방안 협의 장기화로 설계 지연) |
| 2024.2.~8. | 조달청 계획 설계 적정성 검토 |
| 2024.9.~2025.3. | 조달청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
| 2025.4. |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구(224.6 → 342.3억원) |
| 2025.9. | 타당성 재조사 |

자료: 해양수산부

예산집행도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2025년에는 타당성 재조사 시행으로 예산현액

23) 조달청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시 해양수산부는 물가상승분 및 지반공사비·해체공사비 반영, 과소 산정된 기본공사비를 유사시설 공사비 수준으로 증액(1,940천원/㎡→3,800천원/㎡)해 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하였고, 조달청 검토 결과 총사업비 증액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증액 규모가 기존 총사업비의 20%를 초과(224억 6,000만원→342억 3,000만원)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87억 8,400만원 중 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시설부대비 1억 3,300만원만 집행되고 공사비 등 86억 5,1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2022 | 645 | - | - | 645 | - | 547 | 98 | 0.0 |
| 2023 | 9,259 | 547 | - | 9,806 | 1,587 | 502 | 7,716 | 16.2 |
| 2024 | 6,359 | 502 | - | 6,861 | 726 | 6,092 | 43 | 10.6 |
| 2025 | 2,692 | 6,092 | - | 8,784 | 133 | - | 8,651 | 1.5 |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건립 사업 추진 시 사업 여건 변화와 선행절차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재조사 이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인적·재정적 제재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질병예방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주문진시험포 건물을 철거한 후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건물 해체에 필요한 공사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건물 해체공사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해체공사를 추진하였고,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로부터 2025년 9월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을 사유로 기본경비 3,700만원 배정 유보와 담당자 인적 제재를 요구받았음.[24)]

2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제107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등록·미등록·지연등록,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의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 및 정부출연·출자·보조기관의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배정이나 차년도의 예산안 편성 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으로 인한 제재 요구 및 조치사항]

| 차수 | 제재 요구일 | 사유 | 제재 요구 사항 | 조치사항 |
|---|---|---|---|---|
| 1차 | 2023.11. | 기획재정부와 설계용역 변경 관련 사전협의 미실시 (기존 건물 해체공사 실시설계 등) | 담당자 인적 제재 | 주의(담당자 1인) |
| 2차 | 2025.9.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 증액 (기존 건물 해체공사) | 재정적 제재 (당해연도 기본경비 3,700만원 배정 유보) | 기본경비(고용부담금) 3,700만원 배정 유보 |
| | | | 담당자 인적 제재 | 경고(담당자 1인)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3년에도 설계용역 관련 사전협의 미실시로 인적 제재 요구를 받았음에도, 재차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해체공사를 시행하여 다시 제재를 받은 것인바, 동일 사업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해양수산부의 내부통제 및 사업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나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출연 · 출자 · 보조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 기본경비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지침 위반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제재 외에 임의설계 변경 금액 등(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를 활용한 연례적 사업 확대 시정 필요

## 가. 개 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의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30억원 중 1,529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9%)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5년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비비 (D) | 예산현액 (A+B+C+D)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수산물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101,748 | 151,748 | - | - | 3,000 | 154,748 | 154,741 | - | 7 | 101,748 |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100,000 | 150,000 | - | - | 3,000 | 153,000 | 152,993 | - | 7 | 100,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을 확대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실상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함.**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를 통해 530억원이 증액되었음.

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수산정책실)

[2022~2025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 이·전용 등(B) | 예비비(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22 | 20,000 | 41,000 | - | 20,000 | 61,000 | 61,000 | - |
| 2023 | 64,000 | 64,000 | △163 | 94,279 | 158,114 | 158,094 | 20 |
| 2024 | 133,773 | 133,773 | - | - | 133,773 | 133,735 | 38 |
| 2025 | 100,000 | 150,000 | - | 3,000 | 153,000 | 152,993 | 7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4년을 제외하고 2022년 이후 매년 예비비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2022년에는 410억원이 증액되었고, 2023년에는 본예산 640억원의 147.3%에 해당하는 942억 7,900만원의 대규모 예비비가 추가 배정되었음.

[2022~2025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구분 | 날짜 | 금액 | 사유 |
|---|---|---|---|---|
| 2022 | 예비비 | 2022.8.3. | 20,000 | 수산물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수산물 할인행사(추석 특별전 등) 지원 |
| 2023 | 예비비 | 2023.9.7. | 80,000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 |
| | | 2023.12.14. | 14,279 | 연말까지 장바구니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
| | | 소계 | 94,279 | |
| 2025 | 예비비 | 2025.12.22. | 3,000 |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물 오프라인 할인 행사 추진<br>※ 연말특별전: 2025.12.18.~2026.1.7. |

자료: 해양수산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반복적·상시적인 사업 수요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2022년 이후 추경 또는 예비비를 통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반복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예비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된 사업계획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대 집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22일 수산물 할인행사 추가 시행을 위해 예비비 30

억원을 배정받아 기존 예산 32억원과 함께 연말특별전(2025.12.17.~2026.1.7.)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예비비로 배정받은 30억원은 기존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 규모였다는 점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예비비를 활용한 것은 예비비의 보충성·예외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과 할인행사 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 예산소요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수요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9.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가. 개 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수산부산물 통계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800만원 중 5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4%)되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5년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 2,481 | 2,481 | - | - | 2,481 | 2,238 | 100 | 81 | 7,193 |
|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 708 | 708 | - | - | 708 | 527 | 100 | 81 | 9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을 이·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타 사업 내용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등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800만원 중 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3140-355)(수산정책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내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내내역사업 | 사업내용 | 비목 | 예산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정책 홍보 및 분석 | 일반수용비 | 50 | 50 | - | - |
| | | 일반용역비 | 150 | 72 | - | 78 |
| | | 소계 | 200 | 122 | - | 78 |
|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일반연구비 | 200 | 97 | 100 | 3 |
|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 수산부산물 법정 통계・실태조사 | 민간위탁 사업비 | 308 | 308 | - | - |
| 합계 | | | 708 | 527 | 100 | 81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로 보기 어려운 '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등에 총 1억 4,358만 8,32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 목적 외 집행 내역]

(단위: 원)

| 집행일 | 내내역사업 | 집행내역 | 집행사유 | 집행액 |
|---|---|---|---|---|
| 2025. 2.17.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청정어장 굴전략품목 육성사업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용 지출 | 수산부산물(굴) 연관사업 | 2,200,000 |
| 2025. 2.17.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용 지출 | 수산부산물 연관사업(수산부산물 홍보 포함) | 3,245,000 |
| 2025. 3.7.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선금)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 수산부산물 연관사업(수산부산물 홍보 포함) | 32,000,000 |
| 2025. 4.23. |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 선금)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77,600,000 |
| 2025. 4.28.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2025년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수당 지급 | 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 | 450,000 |
| 2025. 5.14.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693,320 |
| 2025. 10.2.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준공금)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8,000,000 |
| 2025. 12.5. |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 준공금)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 수산부산물(패류양식에 따라 패각 발생) 연관사업 | 19,400,000 |
| 합계 | | | | 143,588,320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사례는 2024년에도 확인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산업육성 및 발전방안 연구’, ‘해양수산 정책홍보(참치 어획 한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 평가’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5,610만 8,700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 목적 외 집행 내역]

(단위: 원)

| 집행일 | 내내역사업 | 집행내역 | 집행사유 | 집행액 |
|---|---|---|---|---|
| 2024. 6.14.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2025년 신규 R&D 예산 국과심 설명자료 인쇄비용 지출 | 수산부산물 신규사업 설명자료 포함 | 3,899,500 |
| 2024. 12.3.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해역 위생관리 홍보 전단 및 물티슈 제작비용 지출 | 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 | 6,000,000 |
| 2024. 12.20.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친환경양식어업육성(공동생산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사업 평가수당 지급 | 수산부산물(굴) 연관사업 | 568160 |
| 2024. 12.23.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2024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책자 인쇄비 지출 | 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 | 764,500 |
| 2024. 12.24.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2024년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안전성분과위원회 심의 수당 지급 | 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 | 1076700 |
| 2024. 12.26.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_OECD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영문 번역비용, 워크숍 발표자료 제작비용 | 한국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수산부산물 연관사업 | 4,399,840 |
| 2024. 12.30. |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 해양수산 정책홍보를 위한 정부 광고 집행비 지출(참치 어획 한도) | 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 | 10,000,000 |
| 2024. 12.30. | 수산부산물 수급관리 | (완수) 내수면 산업육성 및 발전방안 연구 | 타사업 연구용역비 부족 | 29,400,000 |
| 합계 | | | | 56,108,700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양수산부는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수당’ 등 일부 집행은 다른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이며,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등은 홍보 내용에 수산부산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사업연관성을 주장하는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홍보 등은 모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임.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비는 각 사업의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수산부산물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목적 외 집행 내역의 별도 예산 편성 현황]

| 연도 | 집행내역 | 당초 목적 사업<br>[세부사업(사업코드) - 내역사업] |
|---|---|---|
| 2025 | 청정어장 굴전략품목 육성사업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용 지출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농특회계 3140-350) -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
|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용 지출 | 수산 공익직불제(농특회계 3460-310)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
|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홍보 용역 | 수산물품질관리(농특회계 3045-301) - 수산물 인증제 운영 |
| | 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농특회계 3140-350) |
| | 스마트양식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농특회계 3140-350) |
| 2024 | 2025년 신규 R&D 예산 국과심 설명자료 인쇄비용 지출<br>※ 대상 연구과제<br>① 수산부산물 산업활용성 기술개발 사업, ②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 양식 기술개발, ③ 해양 아쿠아포닉스 기반 에너지 절감형 육상 양식시스템 구축 및 운용 기술 개발 | 수산종자산업육성(농특회계 3140-305),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농특회계 3140-350) (②, ③번 과제) |
| | 친환경양식어업육성(공동생산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사업 평가수당 지급 | 친환경양식어업육성(농특회계 3140-301) - 품종별 산업화시설지원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_OECD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영문 번역비용, 워크숍 발표자료 제작비용<br>※ 발표주제: 한국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농특회계 3140-350)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이나 사업 간 연관성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의 경비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간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사업은 통계조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실제로는 통계조사보다 인건비·교육·홍보 및 업무지원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당초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계절별·지역별 수산부산물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민간위탁사업비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는 2025년 2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통계·실태조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을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명시하였음.

그러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하고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는 통계·실태조사 외에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자원순환 대국민 교육·홍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기타 해양수산부 업무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위탁사업비 3억 800만원 중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용역에는 6,400만원(20.6%)만 집행되고 나머지 2억 4,400만원(79.4%)은 경상경비, 교육·홍보, 해양수산부 업무지원 등의 용도로 집행되었음.

[2025년도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내용 | 집행액 | 비율 |
|---|---|---|
| 경상경비(인건비, 여비, 전산장비 렌탈료 등) | 157 | 51.0 |
|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 64 | 20.6 |
| 자원순환 대국민 교육·홍보 | 53 | 17.1 |
| 위탁수수료(한국어촌어항공단 수취 수수료) | 23 | 7.6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업무지원<br>(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워크숍 및 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등) | 9 | 2.9 |
|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3 | 0.9 |
| 총합계 | 308 | 100.0 |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홍보나 행정지원이 수반될 수는 있으나, 통계조사에 직접 투입된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에 그친 반면, 경상경비와 교육·홍보, 업무지원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된 것은 당초 국회가 승인한 사업 목적 및 예산 편성 취지와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0.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교부 필요

## 가. 개 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3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7)]

[2025년도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 74,394 | 74,394 | 142 | - | 74,536 | 74,270 | 115 | 151 | 72,233 |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 3,350 | 3,350 | - | - | 3,350 | 3,350 | - | - | 1,03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024~2025년에 걸쳐 사업비 35억원을 편성·교부하여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부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일정과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노후화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5억원(국비 100%)의 민간자본보조사업임.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수산자원

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3150-304)(수산정책실)

공단에 교부하였으나, 집행된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되었음.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잔여 사업비 33억 5,000만원을 모두 편성·교부하였고, 이 역시 전액 이월되었음.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부처 | | 한국수산자원공단 | | | | | | | | |
|---|---|---|---|---|---|---|---|---|---|---|---|
| | 예산액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2024 | 150 | 150 | 150 | - | 150 | - | 150 | - | 150 | - | 0.0 |
| 2025 | 3,350 | 3,350 | 3,350 | 150 | 3,500 | 150 | 3,350 | - | 3,350 | - | 0.0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공공건축 사전기획 용역, 공단 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공공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사업 추진 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차별 사업비를 편성·집행하였어야 함.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 추진경과]

| 기간 | 사업내용 |
|---|---|
| 2024.5.~11. | 공공건축 사전기획 용역 |
| 2025.1.~6. | 한국수산자원공단 내부규정인「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정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 2025.7.~8. | 설계공모 |
| 2025.10.~2026.9.(예정) | 실시설계 및 전기설계 |
| 2026.7~8.(예정) | 기존 건물 해체공사 |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인 2024년 9월에는 공공건축 사전기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수산자원공단 내부규정 정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5년에 공사 착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에 공사비를 전액 편성·교부하여 대규모의 이월을 초래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였음.

한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8] 및「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8)「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29]은 국고보조금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교부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고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사업비를 2025년 12월 19일과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교부하여 형식적으로는 분할교부 원칙을 준수하였으나, 두 차례의 교부가 모두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분할교부 제도의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두 차례 교부 간격도 11일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 상황이나 집행 실적에 따라 후속 교부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음.

[2025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비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교부일 | 금액 |
|---|---|
| 2025. 12. 19. | 1,000 |
| 2025. 12. 30. | 2,350 |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사업의 예산은 각종 행정절차 등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산정하고, 사업

---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 민간보조사업

12-2. 세부지침

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 11. 김 건조기 교체 사업(신규): 사업 추진일정 검토 미흡으로 인한 추경 편성 사업의 대규모 이월 부적정

## 가. 개 요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은 마른김의 안정적 공급 및 가공·생산능력을 확보하고 마른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0]

[2025년도 김 건조기 교체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산식품산업육성 | 4,213 | 10,213 | - | - | 10,213 | 10,213 | - | - | 11,922 |
| 가공설비지원 | 2,134 | 8,134 | - | - | 8,134 | 8,134 | - | - | 10,234 |
| 김 건조기 교체 | - | 6,000 | - | - | 6,000 | 6,000 | - | - | 6,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은 일정이 계획대비 지연되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추경사업의 정책효과가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사전 준비 및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은 노후된 김 건조기를 교체하여 마른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물김의 안정적인 가공·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임.

해양수산부는 2025년 물김 생산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전남 고흥군·신안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식품산업육성(2832-313)(수산정책관)

그러나 2025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8억 4,000만원(14.0%)에 불과하였고, 51억 6,000만원(86.0%)은 이월되었음.

[김 건조기 교체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백만원, %)

| 부처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예산액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6,000 | 6,000 | 6,000 | - | 6,000 | 840 | 6,000 | 840 | 5,160 | - | 14.0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추경안 심의 당시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2025.9.), 사업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2025.10.), 김 건조기 계약 및 착수금 지급(2025.11.)을 거쳐 김 건조기 제작이 완료되면 2026년 10월부터 생산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비 확보가 2026년 1월까지 지연되었고, 사업대상자 선정도 2026년 3월까지 지연되는 등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하게 동 사업을 편성한 취지가 집행과정에서 상당 부분 퇴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그 결과 김 건조기 계약·제작·설치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되어 일부 김 건조기는 2027년 9월에야 생산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김 건조기 교체 일정]

| 내용 | 추경안 편성 시 계획 | 실제 소요(예상) 기간 |
|---|---|---|
| 지방비 추경 예산 확보 | 2025.9. | 2025.11.~2026.1. |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10. | 2025.10.~2026.3 |
| 김 건조기 주문 계약 및 착수금 지급 | 2025.11. | 2025.12.~2026.9. |
| 김 건조기 제작 | 2025.11.~2026.5. | 2025.12.~2026.12. |
| 김 건조기 설치 | 2026.6.~8. | 2026.5.~2027.9. |
| 생산현장 적용 | 2026.10.~ | 2026.10.~2027.9. |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추경안 편성 당시 지방비 확보, 공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 장비 제작기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2025년 물김 생산량 및 폐기량이 급증함에 따라 노후 건조기를 교체를 통해 마른김 생산능력을 확충하려는 취지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임.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수 건조기가 당초 목표였던 2026년산 물김 생산시기 이전에 설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이었던 물김 수급 안정 및 가공능력 확충 효과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추경사업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비 확보 가능성,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장비 제작기간 등 사업 추진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긴급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사업은 사업효과가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 물김 생산량 및 폐기량]

(단위: 톤, %)

| 연도 | 물김 생산량(A) | 물김 폐기량(B) | 폐기율(B/A) |
|---|---|---|---|
| 2021년산 | 554,632 | 1,452 | 0.26 |
| 2022년산 | 575,634 | 2,317 | 0.40 |
| 2023년산 | 507,938 | 1,412 | 0.28 |
| 2024년산 | 534,859 | 54 | 0.01 |
| 2025년산 | 718,447 | 5,989 | 0.83 |

주) 연도별 생산량은 전년 10월부터 해당연도 5월까지의 생산량을 의미함
자료: 해양수산부

# 12.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 사업설계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 부적정

## 가. 개 요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은 위생적인 굴 생산·가공 등 안전한 국내 굴 공급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굴 공장 현대화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9억 6,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1]

[2025년도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 | 7,512 | 7,512 | 6,094 | - | 13,606 | 4,902 | - | 8,704 | 18,030 |
|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 3,960 | 3,960 | - | - | 3,960 | 3,960 | - | - | 3,96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은 자동화장비 도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이 설계되어 사업신청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육성 사업은 굴 양식 주산지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굴 가공공장(박신장)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으로, 굴 가공공장 신축은 개소당 6억원까지, 개보수는 2억원까지 지원함.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3140-350)(어촌양식정책관)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 예산현액 34억 2,000만원 중 3억 7,1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0.8%에 그쳤고, 2025년에도 예산현액 55억 4,500만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7억 4,600만원만 집행되었음. 특히 2025년도 예산액 39억 6,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0.3%에 불과하여 사업 시행 이후 2년 연속 집행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지역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2024 | 전남 | 540 | - | 540 | - | 540 | - | 360 | 180 | - |
| | 경남 | 2,880 | - | 2,880 | 371 | 2,880 | 371 | 1,225 | 1,284 | 12.9 |
| | 합계 | 3,420 | - | 3,420 | 371 | 3,420 | 371 | 1,225 | 1,284 | 10.8 |
| 2025 | 전남 | 960 | 360 | 1,320 | 82 | 960 | - | 1,058 | 180 | - |
| | 경남 | 3,000 | 1,225 | 4,225 | 664 | 3,000 | 11 | 1,356 | 2,205 | 0.4 |
| | 합계 | 3,960 | 1,585 | 5,545 | 746 | 3,960 | 11 | 2,414 | 2,385 | 0.3 |

자료: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임. 2024년에는 23개소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17개소에 불과하였음. 2025년에는 2024년보다 15개소 많은 38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신청은 22개소에 그쳤음.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사업 업체 신청 및 최종 지원현황]

(단위: 개소)

| 연도 | 지역 | 목표 | 신청(A) | 신청 취소 등 (B) | 선정 (C=A-B) | 중도포기 등 (D) | 최종 지원 (C-D) |
|---|---|---|---|---|---|---|---|
| 2024 | 전남 | 3 | 2 | - | 2 | 1 | 1 |
| | 경남 | 20 | 15 | - | 15 | 2 | 13 |
| | 합계 | 23 | 17 | - | 17 | 3 | 14 |
| 2025 | 전남 | 8 | 10 | 2 | 8 | 1 | 7 |
| | 경남 | 30 | 12 | - | 12 | 2 | 10 |
| | 합계 | 38 | 22 | 2 | 20 | 3 | 17 |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2024~2025년 최종 선정된 31개 업체 가운데 26개 업체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연장기간은 평균 10.7개월, 최대 18개월에 이르고 있음.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사업 사업기간 연장 현황]

(단위: 개소)

| 연장한 사업기간 | 업체 수 | | |
|---|---|---|---|
| | 합계 | 2024년 선정 | 2025년 선정 |
| 미연장 | 5 | 5 | - |
| 6개월 | 2 | 1 | 1 |
| 9개월 | 9 | - | 9 |
| 12개월 | 14 | 7 | 7 |
| 18개월 | 1 | 1 | 0 |
| 합계 | 31 | 14 | 17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 신청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당초 건물 신축 및 개보수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생산설비 고도화 및 자동화 장비(로봇팔 등) 도입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를 지원하기에는 현행 지원한도가 부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굴 생산·출하 기간에는 가공공장을 계속 운영하여야 하므로 공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철거·개보수하기 어려워 상당수 사업자가 생산·출하 종료 이후로 공사를 미루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굴 가공업체의 시설투자 수요와 적정 지원 수준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며, 굴 생산·출하 시기에 공사 추진이 곤란한 점 또한 굴 산업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및 사업기간 설정 시 반영하였어야 할 요소임.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실제 현장의 투자 수요와 공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설계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당해연도 내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업 신청 저조와 반복적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2024년과 2025년 모두 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굴 가공업체의 실제 시설투자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굴 생산·출하 시기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현실화하고, 사업자 선정 및 공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부진과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3.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 친환경양식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 및 사업내용 개편 검토 필요

## 가. 개 요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은 양식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컨설팅,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억 3,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2]

[2025년도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 48,762 | 48,762 | 2,017 | - | 50,779 | 42,095 | 1,540 | 7,143 | 44,468 |
|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 9,519 | 9,519 | 691 | - | 10,210 | 6,835 | - | 3,374 | 17,618 |
|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 1,639 | 1,639 | - | - | 1,639 | 1,639 | - | - | 3,05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은 기술교육 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창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일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과 비용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해양수산부는 교육과정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창업희망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창업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창업지원 및 사업관리 사업은 크게 취·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컨설팅,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로 구분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친환경양식어업육성(3140-301)(어촌양식정책관)

이 중 기술교육은 친환경·스마트양식 예비창업자,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창업컨설팅은 친환경·스마트양식 예비창업자, 기술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경영, 행정, 수산물유통(마케팅), 양식기술의 4개 분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두 사업 모두 전액 국비지원임.

먼저 기술교육 실적을 보면 교육인원은 2021년 183명에서 2025년 20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교육 후 실제 취·창업자는 같은 기간 32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하였고, 취·창업률도 17.5%에서 8.3%로 하락하였음.

[창업컨설팅 및 기술교육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목표 |
|---|---|---|---|---|---|---|
| 창업컨설팅 | 130 | 73 | 95 | 38 | 39 | 40 |
| 기술교육 | 183 | 215 | 201 | 194 | 204 | 200 |
| 기술교육 후 취·창업자(비율) | 32(17.5) | 30(14.0) | 30(14.9) | 21(10.8) | 17(8.3) | - |
| 계 | 313 | 288 | 296 | 232 | 243 | 240 |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기술교육 과정별 운영실적을 보면 일부 과정의 중도포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 스마트양식 초급과정의 중도포기율은 47.1%, 바이오플락 주말초급과정은 33.3%, 해수순환여과 중급과정은 20.0%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일부 과정의 중도포기율이 15.0~17.9%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과정별 중도포기율의 편차가 확대되고 일부 과정에서는 교육 이수율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바이오플락 고급과정은 1인당 교육비가 약 922만원, 중급과정은 약 427만원에 달하는 등 일부 과정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교육과정별 취·창업 연계율이나 창업 유지율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과정별 운영의 효율성 및 비용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33)]

33) 해양수산부는 기술교육 후 취·창업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 확대, 창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술교육 수료 후 양식어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창업교육 중 초급과정 신청자는 창업가능성을 탐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본인의 기대와 다를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임.

[2025년 기술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 원)

| 과정명 | 구분 | 기간 | 모집 | 신청 | 선정 (A) | 중도 포기(B) | 수료 | 중도포기율 (B/A) | 1인당 교육비 |
|---|---|---|---|---|---|---|---|---|---|
| 바이오플락 | 초급 | 9.8.~12. | 20 | 19 | 18 | 4 | 14 | 22.2 | 885,677 |
| | 주말초급 | 12.13.~14., 12.20.~21. | 20 | 13 | 12 | 4 | 8 | 33.3 | 778,037 |
| 아쿠아포닉스 | 초급 | 6.30.~7.4. | 20 | 27 | 22 | 2 | 20 | 9.1 | 445,220 |
| | 주말초급 | 12.6.~7., 12.13.~14. | 10 | 11 | 10 | - | 10 | - | 445,220 |
| 해수순환여과 | 초급 | 7.14.~18. | 15 | 24 | 18 | 1 | 17 | 5.6 | 672,649 |
| | 초급 | 10.13.~17. | 15 | 27 | 18 | 1 | 17 | 5.6 | 672,649 |
| 스마트양식 | 초급 | 6.23.~27. | 15 | 17 | 17 | 1 | 16 | 5.9 | 1,176,666 |
| | 초급 | 8.25.~29. | 15 | 17 | 17 | 8 | 9 | 47.1 | 1,176,666 |
| 바이오플락 | 중급 | 3.10.~4.4. | 20 | 25 | 22 | - | 22 | - | 4,274,420 |
| | 중급 | 11.10.~12.5. | 25 | 22 | 22 | 3 | 19 | 13.6 | 4,739,406 |
| 아쿠아포닉스 | 중급 | 9.15.~10.2. | 20 | 16 | 14 | - | 14 | - | 445,220 |
| 해수순환여과 | 중급 | 11.10.~27. | 10 | 10 | 10 | 2 | 8 | 20.0 | 672,649 |
| 스마트양식 | 중급 | 10.20.~11.6. | 15 | 20 | 17 | - | 17 | - | 1,176,666 |
| 바이오플락 | 고급 | 4.14.~8.29. | 15 | 13 | 8 | - | 8 | - | 9,221,071 |
| 아쿠아포닉스 | 고급 | 4.21.~5.30. | 5 | 9 | 5 | - | 5 | - | 3,860,116 |
| 합계 | | | 240 | 270 | 230 | 26 | 204 | 11.3 | |

주) 중도포기는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료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2024년 기술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 원)

| 과정명 | 구분 | 기간 | 모집 | 신청 | 선정 (A) | 중도 포기(B) | 수료 | 중도포기율 (B/A) | 1인당 교육비 |
|---|---|---|---|---|---|---|---|---|---|
| 바이오플락 | 초급 | 9.23.~27. | 25 | 31 | 30 | 5 | 25 | 16.7 | 552,068 |
| | 주말초급 | 12.7.~8., 12.14.~15. | 25 | 25 | 23 | 4 | 19 | 17.4 | 355,065 |
| 아쿠아포닉스 | 초급 | 6.17.~21. | 20 | 31 | 31 | 1 | 30 | 3.2 | 333,050 |

(단위: 명, %, 원)

| 과정명 | 구분 | 기간 | 모집 | 신청 | 선정 (A) | 중도 포기(B) | 수료 | 중도포기율 (B/A) | 1인당 교육비 |
|---|---|---|---|---|---|---|---|---|---|
| | 초급 | 10.14.~18. | 15 | 14 | 13 | 1 | 12 | 7.7 | 880,562 |
| 큰징거미새우 | 초급 | 7.1.~5. | 20 | 20 | 20 | 3 | 17 | 15.0 | 490,517 |
| 해수순환여과 | 초급 | 5.20.~24. | 20 | 12 | 11 | 1 | 10 | 9.1 | 1,153,760 |
| 스마트양식 | 초급 | 9.2.~6. | 20 | 21 | 21 | 3 | 18 | 14.3 | 565,000 |
| 바이오플락 | 중급 | 3.11.~4.5. | 20 | 40 | 22 | 1 | 21 | 4.5 | 4,148,520 |
| | 중급 | 11.4.~29. | 20 | 28 | 28 | 5 | 23 | 17.9 | 4,085,001 |
| 스마트양식 | 중급 | 11.4.~14. | 15 | 11 | 11 | - | 11 | - | 1,028,527 |
| 바이오플락 | 고급 | 4.15.~8.30. | 8 | 17 | 8 | - | 8 | - | 8,282,312 |
| 합계 | | | 208 | 250 | 218 | 24 | 194 | 11.0 | |

주) 중도포기는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료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다음으로 창업컨설팅의 실적을 보면 컨설팅 제공 분야는 양식기술・경영・행정・수산물유통 등 4개 분야이나, 양식기술 분야에만 신청이 집중되고 나머지 경영・행정・수산물유통 분야는 신청이 매우 저조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에는 전체 컨설팅 신청 65회 중 양식기술 분야가 49회(75.4%)를 차지한 반면, 경영 분야는 13회(20.0%), 행정 분야는 2회(3.1%), 수산물유통 분야는 1회(1.5%)에 불과하였음. 2025년에도 전체 신청 48회 중 양식기술 분야가 38회(79.1%)를 차지한 반면, 경영 분야는 8회(16.7%), 행정 분야는 2회(4.2%)에 그쳤고, 수산물유통 분야는 신청 실적이 전혀 없었음.[34]

또한 해양수산부는 컨설팅 사업에 대해 수혜 인원, 실시 횟수만 관리하고 있을 뿐, 기술교육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미비한 상황임.[35]

34) 해양수산부는 경영・행정・수산물유통 분야의 경우 사업자등록, 인・허가, 자금조달, 판로 확보 등 창업 준비가 구체화된 이후 필요한 사항이므로 양식기술 분야보다 수요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창업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는 창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자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5)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창업 후 생존여부, 생산량,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 폐업률 등 성과를 측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임.

[컨설팅 참여 현황]

(단위: 명, 회, %)

| 연도 | 참여인원 | 분야 | 신청 인원 | 신청 횟수 | 신청률 (신청 횟수 기준) |
|---|---|---|---|---|---|
| 2024 | 38 | 경영 | 13 | 13 | 20.0 |
| | | 행정 | 2 | 2 | 3.1 |
| | | 양식기술 | 38 | 49 | 75.4 |
| | | 수산물유통 | 1 | 1 | 1.5 |
| | | 합계 | 54 | 65 | 100.0 |
| 2025 | 39 | 경영 | 7 | 8 | 16.7 |
| | | 행정 | 1 | 2 | 4.2 |
| | | 양식기술 | 32 | 38 | 79.1 |
| | | 수산물유통 | - | - | - |
| | | 합계 | 40 | 48 | 100.0 |

주) 컨설팅은 1인 최대 2회 신청 가능하여 참여 인원보다 신청 인원, 신청 횟수가 더 많을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기술교육의 경우 취·창업 연계성, 창업 유지율 등 실질적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과정 및 사업 추진에 환류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36]

아울러 창업컨설팅은 양식기술 분야를 제외한 경영·행정·수산물유통 분야는 신청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실제 수요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희망자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교육이나 현장체험 등 창업 과정의 애로를 보다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6) 해양수산부는 2024년과 2025년 실시된 기술교육 중 일부 과정에서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료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입교한 후 포기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설명임.

[2024년, 2025년 기술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 2024 | | | | | | 2025 | | | | | |
|---|---|---|---|---|---|---|---|---|---|---|---|
| 과정명 | 구분 | 교육대상 선정 | 중도 포기 | | | 과정명 | 구분 | 교육대상 선정 | 중도 포기 | | |
| | | | 입교 전 포기 | 입교 후 포기 | 합계 | | | | 입교 전 포기 | 입교 후 포기 | 합계 |
| 바이오 플락 | 초급 | 30 | 5 | - | 5 | 바이오 플락 | 초급 | 18 | 4 | - | 4 |
| | 주말초급 | 23 | 1 | 3 | 4 | | 주말초급 | 12 | 2 | 2 | 4 |
| 아쿠아 포닉스 | 초급 | 31 | 1 | - | 1 | 아쿠아 포닉스 | 초급 | 22 | 1 | 1 | 2 |
| | 초급 | 13 | 1 | - | 1 | | 주말초급 | 10 | - | - | - |
| 큰징 거미새우 | 초급 | 20 | 1 | 2 | 3 | 해수 순환여과 | 초급 | 18 | 1 | - | 1 |
| 해수 순환여과 | 초급 | 11 | 1 | - | 1 | | 초급 | 18 | 1 | - | 1 |
| 스마트 양식 | 초급 | 21 | 3 | - | 3 | 스마트 양식 | 초급 | 17 | - | 1 | 1 |
| 바이오 플락 | 중급 | 22 | 1 | - | 1 | | 초급 | 17 | 8 | - | 8 |
| | 중급 | 28 | 5 | - | 5 | 바이오 플락 | 중급 | 22 | - | - | - |
| 스마트 양식 | 중급 | 11 | - | - | - | | 중급 | 22 | 3 | - | 3 |
| 바이오 플락 | 고급 | 8 | - | - | - | 아쿠아 포닉스 | 중급 | 14 | - | - | - |
| 합계 | | 218 | 19 | 5 | 24 | 해수 순환여과 | 중급 | 10 | 2 | - | 2 |
| | | | | | | 스마트 양식 | 중급 | 17 | - | - | - |
| | | | | | | 바이오 플락 | 고급 | 8 | - | - | - |
| | | | | | | 아쿠아 포닉스 | 고급 | 5 | - | - | - |
| | | | | | | 합계 | | 230 | 22 | 4 | 26 |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 14.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특정 프랜차이즈 기반 직매장 지원 방식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가. 개 요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7]

[2025년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 2,850 | 2,850 | - | - | 2,850 | 2,803 | - | 47 | 2,505 |
|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 1,350 | 1,350 | - | - | 1,350 | 1,350 | - | - | 1,3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 업체(수협유통)가 운영하는 ‘어부세상’의 가맹점주 모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거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 특정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수도권에 수산물 직매장 개설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점포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2025년 신규로 추진한 민간보조사업임.

3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3040-322)(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수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수협유통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총괄기관으로 사업계획 수립・조정・승인 등 사업을 총괄하고, 수협중앙회는 중간 관리자로서 사업을 전담관리하며, 수협유통은 직매장 (예비)창업자 모집・선정, 점포 입지선정, 시설・설비 구축, 창업교육, 수산물 공급 등 직접적으로 창업지원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사업구조는 크게 창업교육지원과 점포개설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창업교육지원은 창업희망자의 수산물 유통・판매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판매 교육 (이론・실습・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점포개설지원은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점포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비, 설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것임.

사업 총예산은 국비 13억 5,000만원과 수협유통 부담금 13억 5,000만원을 더한 2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점포개설 지연 등의 사유로 6개월(2025.5.~2026.6.) 연장되어 사업비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 창업교육 60명 지원, 직매장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6년 4월 기준 창업교육 수료자는 25명이고 설치된 직매장은 1개소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

| 구분 | 내용 | 사업비 | 지원한도 | 2025년 목표 | 2025년 성과 (2026.4.기준) |
|---|---|---|---|---|---|
| 창업교육 지원 | 회계・재고관리, 수산물 손질 및 상품화, 판매기법, 고객응대 등 | 3억원 | 1인당 500만원 | 60명 | 25명 |
| 점포개설 지원 | 쇼케이스, 냉동창고, 수족관, 작업자 비품, 전산장비, 인테리어 및 간판 등 | 24억원 | 1개소당 8,000만원 | 30개소 | 1개소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은 일견 수산물 직매장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나, 실제는 수협유통이 운영하는 '어부세상' 의 가맹점주 모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협유통이 공고(2025.7.4.)한 '「2025년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 수도권 가맹사업자 모집 공고' 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할 가맹사업자(창업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수협유통이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판매점 '어부세상' 의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희망자를 모집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 중 평가를 거쳐 창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2가지 유형의 점포(내식

가능/내식 불가) 중 1가지 점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창업 이후에는 「직매장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수협유통과 수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 5년간 가맹점을 운영하는 조건을 부과함.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 수도권 가맹사업자 모집 공고]

**'25년「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 수도권 가맹사업자 모집 공고**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25년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할 가맹사업자(창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모개요
○ 공모내용: **수산물전문판매점(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 모집**
□ 창업자 지원내용
○ (사업장 시설구축비용 지원) 점포당 8천만원 한도(1인, 1점포, 1회 한)
※ 국고보조 4천만원, 수협유통 4천만원 각각 지원. 8천만원 초과시 창업자 본인 부담
○ (창업교육 지원) 1인당 500만원(1회 한)
- 이론교육: **가맹점주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가맹점주 역할·책임, 세무, 노무 등)**
- 실습교육: 수산물 손질(선어, 활어 등) 및 상품화 방법(회, 초밥 등)
- 현장교육: 고객응대, 판매기법, 발주 및 재고관리 등
□ 창업지원 대상자 점포유형 선택
○ 최종 선정된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점포면적 및 판매형태에 따른 2가지 유형의 점포 중 한가지 점포유형 최종 선택 권한 부여

| 점포유형 | 판매형태 | 비 고 | 모델점포 |
|---|---|---|---|
| A타입(20평내외) | 제철수산물, 냉동, 활어회, 초밥, 밀키트, 건어물 | 내식불가 | 어부세상(개롱역점) |
| B타입(30평내외) | 제철수산물, 냉동, 활어회, 초밥, 밀키트, 건어물, 요리식품 | 내식가능 | 어부세상(파주운정점) |

□ 창업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 점포 운영 기간 5년 이상(국고 보조금 지원 시설 감가상각 완료 기간). 점포 운영 중도 포기 시 잔여기간 비례하여 국고보조금 및 수협유통 지원금 반납(계약체결시 보증보험 징구)

2025. 7. 4.
㈜수협유통 대표이사

자료: 수협유통

일반적으로 정부의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 조직 육성, 공동물류 구축,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직매장 조성 등 공공성이 높은 유통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유통사업자의 판매망 확대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해양수산부가 유사 사례로 제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38] 역시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과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생산자 조직 중심의 유통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점포 개설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는 지원 방식과 정책수단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수협유통의 어부세상 가맹점주 모집사업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이유로 수산물 직매장 확충을 통해 중간 유통단계를 생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효과로, 특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확대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야 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려움. 더욱이 수산물 전문판매점 창업은 본질적으로 민간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정부가 특정 프랜차이즈 점포의 인테리어 및 설비 구축비를 직접 지원하여야 할 정도의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협유통의 어부세상 가맹점주 모집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직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정책수단인지, 보다 공공성이 높은 방식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업 추진 실적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사업 수요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는 2025년 사업 계획 시 창업교육 60명 지원, 직매장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12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그럼에도 교육신청자는 모집 목표인원보다 45명 모자란 75명이었고, 이 중 실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38명으로 신청자의 절반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교육 수료자는 25명이었으며, 점포 개설 희망자는 19명, 실제 점포 개설이 완료된 사례는 1개소밖에 없음.

3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85)

[창업교육, 점포개설 현황(2026.4.)]

(단위: 명, 개소)

| 교육 | | | | | | | | 점포개설 | | |
|---|---|---|---|---|---|---|---|---|---|---|
| 차수 | 공고기간 | 교육기간 | 모집 인원 | 신청 인원 | 실제 참여 | 중도 포기 | 수료 | 희망 인원 | 중도 포기 | 개설 점포 (개설 준비) |
| 1 | 2025.7.4.~8.6. | 2025.8.25.~10.3. | 30 | 18 | 9 | 2 | 7 | 5 | 1 | 0(4) |
| 2 | 2025.8.20.~9.28. | 2025.10.23.~11.21. | 30 | 32 | 11 | 0 | 11 | 10 | 7 | 1(2) |
| 3 | 2025.10.23.~11.16. | 2025.11.20.~12.26. | 30 | 12 | 8 | 3 | 5 | 4 | 2 | 0(2) |
| 4 | 2025.11.24.~12.21. | 2025.12.29.~2026.2.9. | 30 | 13 | 10 | 8 | 2 | 0 | 0 | 0 |
| 합계 | | | 120 | 75 | 38 | 13 | 25 | 19 | 10 | 1(8) |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창업희망자 모집→교육→창업지원 대상자 선정→점포 개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상한 창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산물 전문판매점 창업의 사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동 사업의 수요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 15.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신규): 감척어선 미확보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 부적정

### 가. 개 요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해양에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어구 등을 상시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억 4,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9)]

[2025년도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감척어선 공공활용 | 3,045 | 3,045 | - | - | 3,045 | 3,045 | - | - | 3,04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감척어선 확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향후 불법·폐어구 수거·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국회 심의 내용과 실제 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중국 불법 범장망과 유실·침적 폐어구를 상시적으로 철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음.

3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감척어선공공활용(3145-308)(수산정책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근해 안강망 어선 2척(청정바다1·2호)을 기확보하였고 2025년 본사업을 통해 대형트롤 어선 1척과 근해안강망 어선 2척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척의 감척어선으로 불법·폐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음.

[불법어구 및 폐어구 수거 작업을 위한 감척어선 도입 및 운영 계획]

<table>
<tr><th rowspan="2">시기</th><th colspan="4">2024년</th><th colspan="6">2025년</th></tr>
<tr><th>6월</th><th>7~8월</th><th>9월</th><th>10~12월</th><th>1·2월</th><th>3·4월</th><th>5·6월</th><th>7월</th><th>8·9월</th><th>10~12월</th></tr>
<tr><td>(시범사업) 근해안강망 어선 2척 (기존)</td><td>감척어선 확보 (2024 감척)</td><td>어선 검사 및 정비</td><td>선원 고용 선박 출항 준비</td><td>불법어구 수거</td><td colspan="2">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전담 (1~4월)</td><td colspan="3">국내 불법어구 (각망 등)·폐어구 수거 지원 (5~8월)</td><td>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전담 (9~12월)</td></tr>
<tr><td>(본사업) 대형트롤 어선 1척</td><td></td><td></td><td></td><td></td><td>감척어선 확보 (2024 감척)</td><td>어선검사 및 정비</td><td>선원고용 선박출항 준비</td><td colspan="3">침적 폐어구 수거 전담 (7~12월)</td></tr>
<tr><td>(본사업) 근해안강망 어선 2척 (신규)</td><td></td><td></td><td></td><td></td><td></td><td></td><td>감척어선 확보 (2025 감척)</td><td>어선 검사 및 정비</td><td>선원 고용, 선박 출항 준비</td><td>불법·침적 폐어구 수거 (3개월)</td></tr>
<tr><td>예산</td><td colspan="4">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사업 (15억 9,000만원)</td><td colspan="6">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30억 4,500만원)</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형트롤 어선의 감척 포기, 근해안강망 어선 감척 수요 부재 등으로 당초 계획한 감척어선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대체 선종인 근해 통발 어선 1척을 도입하였으나 이마저 2026년 2월에 최종 인수되어 2025년도 중에는 불법·폐어구 수거에 활용되지 못하였음.

또한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예산의 세부 집행구조도 크게 변경되었음. 최초 사업계획에서는 선박관리비 23억 6,800만원, 폐기물 처리비 5억 7,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선박관리비는 26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폐기물 처리비는 2억 2,700만원으로 축소 집행되었음.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 변경 내역]

| 구분 | 당초 계획 | 실제 |
|---|---|---|
| 사업기간 | 2025.1.1.~2025.12.31. | 2025.1.1.~2026.3.31. |
| 신규 감척어선 확보 | 3척<br>(대형트롤 어선 1척, 근해안강망 어선 2척) | 1척<br>(근해 통발 어선 1척. 2026.2. 확보) |
| 수거철거전용선 | 신규 3척, 기존 2척 | 기존 2척 |
| 폐·불법어구 처리 | 신규 100톤 내외, 기존 미정 | 기존 2척 399톤 |
| 비용 | 3,045백만원<br>· 인건비, 사업활동비 100백만원<br>· 선박관리 2,368백만원(5척)<br>· 폐기물 처리 577백만원 | 2,983백만원<br>· 인건비, 사업활동비 106백만원<br>· 선박관리 2,650백만원(3척)<br>· 폐기물 처리 227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결국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사업의 핵심 수단인 감척어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비 대부분이 기존 선박관리, 정비, 보험료 등 선박 유지·운영에 사용되는 등 향후 불법·폐어구 수거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감척어선 확보 가능성과 운영방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내용과 실제 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세 출〉

## 16.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침몰선 관리체계 정비 및 인양비용 회수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사업은 노후 손상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12억 2,200만원 중 104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고, 7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40]

[2025년도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항만시설유지보수 (총액) | 13,228 | 13,228 | - | △2,006 | 11,222 | 10,424 | - | 798 | 13,22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침몰선박을 장기간 방치하여 항행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31억 7,500여만원의 대집행 비용 회수도 불확실한 문제를 야기하였는바, 침몰선박에 대한 소유자 제거 명령 및 대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관리 및 비용회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2년 8월 인천 송도신항 건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장기 정박 중이던 준설선 대영 P-1호가 선체 노후화로 침몰하였으며, 이후 약 13년이 지난 2025년 4월에야 인천지방

40)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5060-460)(항만국)

해양수산청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인양이 완료되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41]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42] 관리청이 무역항 부근에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또는 방치선박이 공유수면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리청이 우선 제거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물의 제거)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 · 침몰 · 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 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 · 제5호 ·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 제15호 · 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 · 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 · 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대영P-1호의 소유자(00항만건설) 또는 점유자에게 선박 제거명령을 하여야 하나, 최초 1회를 제외하고 2013~2022년 간 16회에 걸쳐 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닌 자에게 선박제거명령을 통보하였고, 그 결과 선박 제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음.[43)]

[2013~2022년 대영P-1호 선박제거명령 통지내역]

| 연번 | 연월일 | 명령대상 | 명령내용 |
|---|---|---|---|
| 1 | 2012.8.24. | 00항만건설(주) | 항행장애물(대영P-1호) 제거(독촉) 명령 |
| 2 | 2013.7.10. | 00살베지(주) | |
| 3 | 2014.4.1. | 00살베지(주) | |
| 4 | 2014.12.17. | 00기업 박00 | |
| 5 | 2015.3.9. | 00기업 박00 | |
| 6 | 2015.6.5. | 00살베지(주), 00기업 | |
| 7 | 2015.12.4. | 00기업 박00 | |
| 8 | 2016.8.26. | 00살베지(주), 00기업 | |
| 9 | 2016.12.15. | 00살베지(주), 00기업, 00철강 | |
| 10 | 2019.1.10. | 송00 | |
| 11 | 2019.2.18. | 송00 | |
| 12 | 2019.5.23. | 00철강, 최00(송00) | |
| 13 | 2019.11.1. | 00철강(송00), 박00 | |
| 14 | 2020.12.17. | 박00 | |
| 15 | 2021.1.27. | 박00, 송00 | |
| 16 | 2021.2.25. | 박00, 송00 | |

자료: 해양수산부

침몰선박은 장기간 항로 인근에 방치되면서 항행 안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2019년에는 어선이 침몰선박과 충돌하여 선저가 파손되고 선원 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제거는 침몰 후 12년이 경과한 2024년에야 착수되어 2025년에 완료되었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신항 항로연장 및 준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침몰선박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인양용역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

43)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 선박을 점유·관리자로 추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제거(독촉)명령을 하였다는 설명임[침몰 당시 소유자는 00항만건설이었으나, 00살베지와 선박매매계약(2012.8.)을 체결. 00살베지는 침몰선 인양을 추진하며 00기업에 선체를 매매. 00기업은 00철강과 고철 인도 계약을 체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2024년 1월 법률자문을 통해 00항만건설을 정당한 선박제거명령 대상자로 인식하여 선박 제거명령 등의 문서를 발송(4회)하였으나, 00항만건설은 청산종결간주상태였음.

고 있음. 그러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침몰선박이 항행 안전에 미치는 경우 관리청이 침몰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고 위험성과 실제 사고 발생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이른 시점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침몰선박 인양에는 실태조사, 예정원가 조사 및 인양용역 등을 포함하여 약 31억 7,5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인양 선체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대집행 비용의 회수 가능성은 불확실한 실정임.

[대영P-1호 제거 관련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월일 | 세부사업 | 예산과목 | 집행내역 | 금액 |
|---|---|---|---|---|
| 2024.3.26. |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5060-460) | 공사비 | 침몰선박 실태조사 용역 | 19.8 |
| 2024.5.30. | | 공사비 | 침몰선박 인양 예정원가 조사 용역 | 2 |
| 2024.10.29. | | 부대비 | 용역 계약 조달수수료 납부 | 0.2 |
| 2024.11.1. | | 공사비 | 침몰선박 인양용역(1차) | 20 |
| 2024.12.24. | | 공사비 | 침몰선박 인양용역(2차) | 1,604 |
| 2025.2.17. | | 부대비 | 용역 계약 조달수수료 납부 | 4 |
| 2025.4.29. | | 공사비 | 침몰선박 인양용역(3차) | 1,508 |
| 2026.4.16. | | 부대비 | 침몰선박 인양 용역 계약체결 조달 수수료 | 17 |
| 합계 | | | | 3,175 |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침몰선박 등 항행장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항행장애물의 장기간 방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방안도 보다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7.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신규): 사전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가. 개 요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 승하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억 1,000만원 중 4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원이 불용되었음.[44)]

[2025년도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여객터미널 운영 | 16,488 | 16,488 | - | - | 16,488 | 14,827 | 410 | 1,251 | 17,549 |
|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 시설 | 1,110 | 1,110 | - | - | 1,110 | - | 410 | 700 | 1,07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은 수요예측과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연안여객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객선 승하선 리프트 설치 및 여객터미널 안전보강 탑승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 1,000만원이었으나 리프트 설치 예산 7억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안전보강 탑승교 설치 예산 4억 1,000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44) 교통시설특별회계-여객터미널 운영(5064-301)(해운물류국)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 내용]

| 구분 | 사업내용 | 예산편성내역 | 집행내역 |
|---|---|---|---|
| 리프트 설치 | 연안여객선사 대상 여객선 기항지에 승하선 리프트 설치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700백만원<br>(40대x35백만원x국비50%) | - |
| 안전보강 탑승교 설치 | 여객터미널에 난간을 높이고 안전망 보강한 탑승교 설치 | 410백만원<br>(324백만원x3개소x연부율40%) | -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승하선 리프트 설치를 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단 한 곳의 연안여객선사도 신청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을 승하선 리프트에서 선박 내·외 경사로, 교통약자용 손잡이, 선착장 캐노피, 대여용 휠체어·유모차 등으로 지속 확대하였으나 사업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 공모 내역]

| 차수 | 공모기간 | 지원내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변경 사유 | 신청 업체 수 |
|---|---|---|---|---|
| 1차 | 6.12~7.7. | 승하선 리프트 | - | - |
| 2차 | 7.18~8.8. | 승하선 리프트,<br>선박외 경사로 | 선사 참여 저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착장에서 사용되는 형태인 경사로도 지원내용에 포함 | - |
| 3차 | 10.17~11.14. | 승하선 리프트,<br>선박 내·외 경사로,<br>교통약자용 손잡이,<br>선착장 캐노피,<br>대여용 휠체어·유모차 등 | 선사 참여 저조에 따라 교통약자 승하선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모두 지원내용에 포함 | -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 참여 저조 사유로 연안여객선 업계의 영세성과 경영환경 악화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이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번 사업은 법적 의무가 없는 추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수요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사의 사업 참여 여건 및 의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반복적으로 확대하였음에도 사업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한편 안전보강 탑승교 설치 사업은 국가관리 여객선터미널에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탑승교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는 수요조사와 설계방안 협의만 진행되었을 뿐 설계 발주나 공사 착수는 이루어지지 못하

여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음.

해양수산부는 조차가 큰 항만 환경, 부두 공간 제약, 다양한 선박 형태에 적용 가능한 설계방안 마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4월에야 설계방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발주는 2026년 5월, 착공은 2026년 7월로 계획되어 있음.

[안전보강 탑승교 설치 추진 경과]

| 시기 | 추진내용 |
|---|---|
| 2025.2.~4. | 수요조사 |
| 2025.5 | 현장 방문 및 도입방식 협의 |
| 2025.6.~2026.4. | 설계방안 협의 |
| 2026.5. | 설계 발주 예정 |
| 2026.7. | 착공 예정 |

자료: 해양수산부

탑승교가 필요한 국내 대형 연안여객선은 일부 항로(포항~울릉항로 1척, 목포~제주항로 2척)에 한정되어 있고 사업 대상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선박별 운항 여건과 시설 설치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충실히 수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 수요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설계·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8. 동해신항 연결도로 사업: 사업 추진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가. 개 요

**‘동해신항 연결도로’** 사업은 동해신항 등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도38호선과 국도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3억 7,9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이 집행(집행률 2.6%)되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61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45)]

[2025년도 동해신항 연결도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동해신항 | 99,960 | 99,960 | 2,021 | △4,600 | 97,381 | 61,121 | 21,582 | 14,678 | 117,505 |
| 연결도로 | 9,000 | 9,000 | 172 | △2,793 | 6,379 | 165 | 100 | 6,114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수산부는 주민의견 수렴, 도로 이관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해신항 연결도로 공사비를 편성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해신항 사업은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의 만성적인 부두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멘트·유연탄·기타 광석 등 국가 기간산업 원자재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물부두 총 7개 선석과 방파제, 호안, 배후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동해신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물 물동량을 내륙으로 원활하게 수송할 교통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추진되는 도로 사업은 진입도로 사업

45)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신항(5050-326)(항만국)

과 연결도로 사업 두 가지임.

진입도로는 항만공단1로에서 동해신항 배후부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총 길이 760m)를 건설하는 공사로, 관계기관 협의 및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2025년 7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반면 동해신항 및 기존 동해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도38호선과 국도7호선을 잇는 연결도로(총 길이 2.7km) 사업은 노선 통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동해신항 연결도로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ㅇ 목적: 기존 동해항과 동해신항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도 38호선 및 국도 7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
- ㅇ 사업비/사업기간: 483억원 / 2022~2029년
- ㅇ 사업내용: 도로 2.7km(국도 38호선~7호선)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예산에 공사 착공을 전제로 연결도로 공사비 89억원과 감리비 1억원 등 총 90억원을 편성하였고, 결산 결과 2024년도에 이월된 실시설계비 등 1억 6,500만원만 집행되었음.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90억원 중 27억 9,300만원은 부산항 공사비 등 타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60억 700만원은 불용되고 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5년도 동해신항 연결도로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A)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2026년도 예산액 |
|---|---|---|---|---|---|---|---|---|
| 동해신항 연결도로 | 9,000 | 172 | △2,793 | 6,379 | 165 | 100 | 6,114 | - |
| 기본조사설계비 | - | 51 | - | 51 | 50 | - | 1 | - |
| 실시설계비 | - | 121 | - | 121 | 115 | - | 6 | - |
| 공사비 | 8,900 | - | △2,793 | 6,107 | - | 100 | 6,007 | - |
| 감리비 | 100 | - | - | 100 | - | - | 10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연결도로 인근 주민들이 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분진 저감대책 마련, 노선 변경, 주변 관광지 영향 최소화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협의가 장기간 지연되었고, 아울러 도로 준공 이후 관리주체 결정과 관련하여 동해시 및 삼척시와의 협의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이와 같은 주민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는 착공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나, 해양수산부는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공사비가 불용되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SOC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주민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의 진행상황과 실제 착공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일정에 부합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46)]

46) 한편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를 2025년 12월 완료하였고, 도로 관리주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협의도 2026년 6월 마무리하였으며,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현재는 공사 발주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2026년도에는 주민요구사항 수용 및 도로 이관 문제 해결 후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보상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수산발전기금】

〈지　출〉

## 19.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기존 어구 반납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회수체계 개선 필요

### 가. 개　요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은 폐어구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인 등이 사용 완료된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84억 1,7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7)]

[2025년도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46,341 | 46,341 | - | 46,341 | 45,797 | - | 544 | 52,710 |
| 어구・부표 보증금제 | 8,417 | 8,417 | - | 8,417 | 8,417 | - | - | 10,702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기존 어구 수매 예산은 실제 반납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어구 반납장소가 확충되었음에도 지역별 반납 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구 반납 실적을 반영하여 수매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반납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회수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폐어구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구 구매 시 보증

47)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수산정책실)

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이를 환급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보증금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보증금제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어구에 대해서도 개당 250원의 수매비를 지급하여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어구 수매 실적은 예산 편성 시 예상한 반납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기존 어구 321만 2,000개가 반납될 것으로 추계하여 국비 기준 4억 150만원의 수매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반납량은 2024년 11만 9,698개, 2025년 26만 1,338개에 그쳤음. 이에 따라 기존 어구 수매비 집행률은 각각 3.7%, 8.1%에 불과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집행률도 2024년 12.4%, 2025년 33.4%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음.

[기존 어구 수매비 예산집행현황]

| 연도 | 계획 | | 실제 | | |
|---|---|---|---|---|---|
| | 반납 | 예산액 | 반납개수 | 집행액 | 집행률 |
| 2024 | 321.2만개 | 401,500,000원<br>(321.2만개 × 250원 × 보조율 50%) | 119,698개 | 29,924,500원 | 3.7% |
| 2025 | 상동 | 상동 | 261,338개 | 65,334,500원 | 8.1%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수협 간 업무위탁계약 체결 지연 등에 따라 전국 192개 지정 반납장소 중 155개소만 실제 운영된 점을 제시하면서, 반납장소 확충, 무인반납장치 확대 보급, 폐어구 적재 전용 컨테이너 설치 등 반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반납 편의시설 확충은 기존 어구 회수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면 반납장소의 수가 어구 반납개수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음.

부산(30개소), 강원(31개소), 전남(29개소)은 반납장소의 수가 비슷하나 기존 어구 반납량은 각각 11,986개, 25,598개, 118,399개로 큰 차이를 보였고 반납장소가 15개소인 경남에서는 89,465개가 반납되었음. 반면 전북과 제주에서는 통발어업인이 존재함에도 반납 실적이 전혀 없어 지역별 운영성과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 통발어선·기존어구 반납 개수 및 반납장소 현황]

(단위: 척, 개, 개소, %)

| 연도 | 합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통발 어선 | 4,782 | 508 | 89 | 263 | 39 | 73 | 281 | 63 | 932 | 229 | 2,302 | 3 |
| 기존어구 반납 개수 | 261,338 | 11,986 | 7,560 | 1,198 | 5,430 | 25,598 | 1,702 | - | 118,399 | - | 89,465 | - |
| 반납장소 | 137 | 30 | 14 | 4 | 4 | 31 | 3 | 2 | 29 | - | 15 | 5 |
| 상시 | 56 | 1 | 10 | 2 | 1 | 23 | 1 | 2 | 4 | - | 7 | 5 |
| 수시 | 81 | 29 | 4 | 2 | 3 | 8 | 2 | - | 25 | - | 8 | - |

주 1) 통발어선은 2024년 기준, 기존어구 반납 개수 및 반납장소는 2025년 기준
2) 상시반납장소: 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정된 운영 시간 내에 상시 반납·적재 가능한 곳, 수시반납장소: 전용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폐어구 수거차량 순환일정에 맞춰 지정된 일시에만 반납하는 곳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반납장소 부족 외에 지역수협의 참여 정도, 반납장소 운영 방식, 어업인 참여 유도 등 지역별 운영체계도 반납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실제 반납 실적과 지역별 운영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기존 어구 반납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이에 맞게 예산 규모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납장소와 무인반납장치 등 반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운영성과 및 집행실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회수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　타】

# 2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시정요구 63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9건・주의 11건・제도개선 44건(중복 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9 | 11 | 44 | 1 | 63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9 | 11 | 44 | 1 | 63 |

해양수산부는 시정요구사항 63건에 대해 5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2.1%)하고 5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63 | 58 | 92.1 | 5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63 | 58 | 92.1 | 5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해양수산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해양수산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 제1회 추경 | (11) 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 정부 선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

# 해양경찰청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46억 1,500만원(492.5%)이 많은 416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200만원(164.5%)이 증가함.[1)]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6,216 | 6,216 | 15,741 | 9,525 | 7,028 | 7,028 | 41,643 | 34,615 | 25,902 |
| 총수입 | 6,216 | 6,216 | 15,741 | 9,525 | 7,028 | 7,028 | 41,643 | 34,615 | 25,902 |

문의: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86억 3,700만원(△1.9%)이 적은 1조 9,539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8억 2,100만원(3.0%)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1,896,654 | 1,896,654 | 1,897,122 | 468 | 1,992,265 | 1,992,580 | 1,953,943 | △38,637 | 56,821 |
| 총지출 | 1,896,654 | 1,896,654 | 1,897,122 | 468 | 1,992,265 | 1,992,580 | 1,953,943 | △38,637 | 56,821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0억 280만원으로, 453억 3,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16억 4,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8%)되고 36억 7,8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7,028 | 7,028 | - | 7,028 | 45,335 | 41,643 | 3,678 | 14 |
| 합 계 | 7,028 | 7,028 | - | 7,028 | 45,335 | 41,643 | 3,678 | 14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28억 5,900만원으로, 1조 9,539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262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26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1,992,265 | 1,992,580 | 10,279 | - | - | 2,002,859 | 1,953,943 | 26,289 | 22,627 |
| 합 계 | 1,992,265 | 1,992,580 | 10,279 | - | - | 2,002,859 | 1,953,943 | 26,289 | 22,627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해양경찰청 자산은 전년 대비 25억 1,400만원이 증가된 4조 3,689억 7,5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 및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41억 2,800만원, 593억 7,500만원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이 598억 6,500만원 감소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6억 5,500만원 증가한 299억 2,500만원으로, 이는 유동부채 32억 2,200만원, 장기차입부채 24억 3,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1억 4,200만원이 감소한 4조 3,390억 5,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948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8억 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1,328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89억 4,8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4,368,975 | 4,366,461 | 2,514 | 0.1 |
| | | 금융자산 | 25,219 | 24,642 | 577 | 2.3 |
| | | 유·무형자산 | 4,334,757 | 4,335,037 | △280 | △0.006 |
| | | 기타자산 | 8,999 | 6,783 | 2,216 | 32.7 |
| | 부 채 | | 29,925 | 24,270 | 5,655 | 23.3 |
| | | 차입부채 | 29,799 | 24,174 | 5,625 | 23.3 |
| | | 충당부채 | - | - | - | - |
| | | 기타부채 | 126 | 95 | 31 | 32.6 |
| | 순자산 | | 4,339,050 | 4,342,192 | △3,142 | △0.1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694,824 | 504,953 | 189,871 | 37.6 |
| | 재정운영순원가 | | 2,132,822 | 1,813,874 | 318,948 | 17.6 |
| | 재정운영결과 | | 2,132,822 | 1,813,874 | 318,948 | 17.6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해양경찰청은 신속한 해상사고 대응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창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연안해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정비창 연간 계획정비 및 소속기관 중간정비 등을 통한 장비성능 유지하고 선제적 방제인프라 확보를 통한 해양오염 대응역량 고도화와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예산 외 적립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자금 보유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해양경찰청은 민간위탁금을 국고로 반납하고,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되 대규모 재정 소요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오염 방제 예산의 편성·집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경찰청은 인사이동 후 업무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인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의 유지관리 공백이 9.5개월간 발생된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계약관리 체계를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양경찰청은 항공기도입지원 사업의 국외여비를 실제 집행가능성을 초과하는 범위로 편성한 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거나 불용하는 사례를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넷째, 해양경찰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고가의 국유재산인 중·대형 경비함정을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 보호와 국가재정의 위험 분산이라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함정 보험의 가입범위·담보한도 등은 함정의 자산가치와 운용 위험도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위성센터 건립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전액 이월한 것은 선행사업과 후속사업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향후 청사 신축사업과 연계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선행공정의 진행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재정 외 자금 운용 방식 개선 필요

### 가. 개 요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 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2]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금임.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0억원을 해양환경공단에 교부하였고, 교부된 자금 중 2025년 12월 현재까지 방제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은 30억 7,000만원이며, 해양환경공단이 보관 중인 금액은 이자수익 20억 4,500만원을 포함한 49억 7,500만원임.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현황(2025.12. 기준)]

(단위: 백만원)

| 기간 | 해양경찰청 교부액(A) | 해양환경공단 지출액(B) | 이자수익(C) | 잔액(A-B+C) |
|---|---|---|---|---|
| 1998~2025 | 6,000 | 3,070 | 2,045 | 4,975 |

자료: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교부·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 해양경찰청 교부내역 | | | | 해양환경공단 지출내역 | |
|---|---|---|---|---|---|
| 연도 | 세부사업(사업코드) | 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지출사유 |
| 1998 | 해양오염방제대책 (1111-211) | 민간위탁금 | 1,500 | - | - |
| 1999 | 해양오염방제대책 (1111-211) | 민간위탁금 | 500 | 6 | 해양오염사고 16건 방제비용 |
| 2000 | - | - | - | 7 | |
| 2001 | - | - | - | 149 | |
| 2002 | - | - | - | 200 | |

2) 해양수산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

(단위: 백만원)

| 해양경찰청 교부내역 | | | | 해양환경공단 지출내역 | |
|---|---|---|---|---|---|
| 연도 | 세부사업(사업코드) | 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지출사유 |
| 2003 | - | - | - | 252 |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
| 2004 | - | - | - | 49 | 해양오염사고 3건 방제비용 |
| 2005 | - | - | - | 59 | 해양오염사고 5건 방제비용 |
| 2006 | - | - | - | 6 |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
| 2007 | - | - | - | 1,823 |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
| 2008 | - | - | - | 9 |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
| 2009 |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 민간위탁금 | 1,000 | 31 | 해양오염사고 3건 방제비용 |
| 2010 |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 민간위탁금 | 1,000 | 2 |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
| 2011 |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 민간위탁금 | 1,000 | 173 |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
| 2012 | 해양오염방제활동 (1401-301) | 민간위탁금 | 1,000 | 89 |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
| 2013 | - | - | - | - | - |
| 2014 | - | - | - | 21 | 해양오염사고 1건 방제비용 |
| 2015 | - | - | - | 195 | 해양오염사고 2건 방제비용 |
| 2016~2025 | - | - | - | - | - |
| 합계 | | | 6,000 | 3,070 | |

주) 민간위탁금은 2025년도 예산 비목상 민간위탁사업비(320-02)에 해당함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 나. 검토의견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예산 외 적립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자금 보유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해양경찰청은 민간위탁금을 국고로 반납하고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

**영하되, 대규모 재정 소요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오염 방제 예산의 편성·집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3)]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1999년 12월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민간위탁금을 계속 보관·운용하고 있음. 형식적으로는 단년도 계약을 반복 연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출예산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유보·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세출예산 단년도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은 법률상 설치 근거를 가진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아님에도 장기간 누적·보유되면서 사실상 별도 자금처럼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95조의 자금 보유 제한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4)]

해양경찰청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방제 목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에 해양오염예방활동,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방제정 건조 등 해양오염 대응 관련 사업비로 총 292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5)]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는 발생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재난 유형이라는 점에서 긴급 필요 시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보다 부합함.[6)]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공단에 유보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을 국

---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 5. (생 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5) [2026년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 사업 예산 현황]

고로 반납하고,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되 대규모 재정 소요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오염 방제 예산의 편성·집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7]

(단위: 백만원)

| 사업명(사업코드) | 사업내용 | 2026년 예산액 |
|---|---|---|
| 해양오염예방활동(4333-300) | · 방제장비 및 물품 확보<br>· 방제 및 예방활동 지원<br>·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 6,070 |
|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4333-301) | ·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구매<br>· 화학사고대응요원 활동 지원 | 850 |
| 방제정 건조(4334-300) | · 노후 방제정 대체건조,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 22,315 |
| 합계 | | 29,235 |

자료: 해양경찰청

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7)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을 2026년 8월 7일 해지하였고, 같은 날 해양환경공단은 보관 중이던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을 국고 반납하였음.

## 2. 감리비 미편성: 법령상 의무 사항인 감리비의 반복적인 미편성 부적정

### 가. 개 요

**‘부산정비창 CCTV 설치공사’** 사업은 부산정비창의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7%)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5년도 부산정비창 CCTV 설치공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정비창관리 | 14,462 | 14,462 | 91 | - | 14,553 | 9,738 | 4,490 | 325 | 3,517 |
| 부산정비창 CCTV 설치공사 | 300 | 300 | - | - | 300 | 269 | - | 31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합신고시스템 이전공사’** 사업은 대구에 있던 해양경찰청 통합신고시스템 서버를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4,500만원 중 4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통합신고시스템 이전공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해양경찰정보화 관리(정보화) | 23,966 | 23,966 | 364 | - | 24,330 | 23,282 | 679 | 369 | 29,921 |
| 시스템구축 | 12,027 | 12,027 | 364 | - | 12,391 | 11,440 | 586 | 365 | 16,155 |
| 통합신고 시스템 이전공사 | 445 | 445 | - | - | 445 | 444 | - | 1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 일반회계-정비창관리(4231-303)(해양경찰정비창)

9) 일반회계-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7238-300)(장비기술국)

## 나. 검토의견

**해양경찰청은 법령상 필수 경비인 감리비를 누락하는 등 예산안의 부실 편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 감리 대상 여부 및 소요 비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리란 건축·토목·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 독립된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하며, 감리비는 이러한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임.

부산정비창 CCTV 설치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이며, 통합신고시스템 이전공사는 IT관제센터 서버실 구축 과정에서 소방시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공사에 해당함.[10][11]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들 사업의 감리비를 반영하지 않

---

10)「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 · 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 · 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 · 재해예방 및 운용 ·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 · 도시철도 · 도로 · 방송 · 항만 · 항공 · 송유관 · 가스관 ·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 · 재해예방 및 운용 ·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11)「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일부를 세목조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였음.

[부산정비창 CCTV 설치공사 및 통합신고시스템 이전공사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세목조정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세목조정 사유 |
|---|---|---|---|---|---|---|
| 부산정비창 CCTV 설치공사 | 300 | - | 300 | 269 | 31 | 부산정비창 CCTV 설치공사 감리비 재원 마련(2025.7.17.) |
| 공사비(420-03) | 300 | △6 | 294 | 264 | 30 | |
| 감리비(420-04) | - | 6 | 6 | 5 | 1 | |
| 통합신고시스템 이전공사 | 445 | - | 445 | 444 | 1 | IT관제센터 소방시설 공사 감리비 재원 마련(2025.10.20.) |
| 공사비(420-03) | 445 | △4 | 441 | 440 | 1 | |
| 감리비(420-04) | - | 4 | 4 | 4 | - | |

자료: 해양경찰청

이러한 사례는 2024년에도 발생하였는데, 해양경찰청은 '제주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육전시설 교체공사' 사업에서도 전력시설물 교체공사 감리비를 사전에 편성하지 않고 공사비를 감리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12)]

[2024년 감리비 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구 분 | 예산액 | 세목조정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세목조정 사유 |
|---|---|---|---|---|---|---|---|
| 2024 | 제주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육전시설 교체공사 | 104 | - | 104 | 104 | - | 제주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육전시설 교체공사 감리비 재원 마련(2024.5.28.) |
| | 공사비(420-03) | 104 | △6 | 98 | 98 | - | |
| | 감리비(420-04) | - | 6 | 6 | 6 | - | |

주) 제주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육전시설 교체공사 사업은 일반회계-함정정비유지(3103-300)의 내내역사업
자료: 해양경찰청

1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예산안 편성 시에는 해당 공사가 감리 대상 사업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가 집행 단계에서 이를 알게 됨에 따라 공사비를 일부 감액하여 감리비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감리비는 단순한 부대성 경비가 아니라 법령상 필수 절차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이며, 공사의 적정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임.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향후 건축·토목·통신·소방시설 등의 공사 추진 시 감리 대상 여부와 소요 비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리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담당자 및 예산안 편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사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 3.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사업(신규): 사업비 산정 및 사업관리 적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사업은 경비 임무를 마치고 입항한 경비함정에 유류와 청수·전기 등을 공급하는 유류바지선 3척(부산·부안·보령해양경찰서)이 노후화되어 대체 제작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억 8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13)]

[2025년도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함정유류관리 | 138,359 | 138,359 | 16 | - | 138,375 | 133,583 | 4,776 | 16 | 117,118 |
|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 3,408 | 3,408 | - | - | 3,408 | - | 3,408 | - | 3,44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사업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산정으로 반복 유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내용의 축소가 초래된바, 해양경찰청은 향후 선박 건조 시 원자재 등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부산·부안·보령해양경찰서의 유류바지 선령이 29~36년 이상으로 노

13) 일반회계-함정유류관리(3104-300)(장비기술국)

후되고, 안전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3등급)을 판정받음에 따라 3척에 대한 1차년도 건조비 34억 800만원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사업개요]

○ 대체건조 필요성
- (상황대응) 정유사 탱크로리는 최소 운송량이 있어 즉시 수급 불가, 바지는 해양사고등 긴급사고(야간 및 긴급출동) 발생 시 즉시 수급 가능
- (해양오염) 야간 및 긴급상황 시 유조차에서 경비함정으로 직접 공급시 해상누유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선제적 예방
- (직원복지) 낡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인 중·소형정 근무 직원들이 정박기간 중 유류바지의 행정·샤워시설 등 이용 가능

○ 소요기간: 28개월

○ 소요예산: 136.30억원(건조 132.28억원, 감리·수수료 4.02억원)

○ 사양서

| 구 분 | 길이 x 폭 x 흘수(m) | 승조원 | 탱크용량(ℓ) | | | 재질 |
|---|---|---|---|---|---|---|
| | | | 유류 | 청수 | 폐유 | |
| 1000톤급(부산) | 40 x 16 x 2.8 | 4명 | 100만 | 7만 | 11만 | 강재 |
| 600톤급(부안·보령) | 36 x 14 x 2.5 | 4명 | 65만 | 5만 | 6만 | |

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지연과 사업내용 축소가 발생하였음.

해양경찰청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천해양경찰서 유류바지선 건조 단가를 기준으로 동 사업의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계약포기와 무응찰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부 설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입찰 경과]

○ 1차 공고(2025.8.): 낙찰자 선정되었으나 낙찰자 계약 포기(2025.9.)
○ 2차 공고(2025.10): 무응찰
○ 재료비 조정(2025.11): 냉난방장치 등 일부 설비 제외(△6.52억원)
○ 3차 공고(2025.11.): 무응찰
○ 4차 공고(2025.12.): 단독응찰로 수의계약 체결(2026.2.)

자료: 해양경찰청

사업비 조정을 위해 제외된 설비는 앵커 및 싱커 철거비, 냉난방장치, 승무원실·행정지원실·휴게실·주방·식당·체육실 관련 설비, 이동식 방현대, 속구 비품 등이며, 해당 금액은 총 6억 5,268만원임.

[유류바지 노후대체(3척) 재료비 조정 내역]

(단위: 만원)

| 장비명 | 3척 조정액 | 조정 사유 |
|---|---|---|
| 앵커/싱커 철거비 | △9,720 | 기존 앵커/싱커는 유류바지를 고정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계속 사용 가능 |
| 냉난방장치 | △17,730 | 유류바지 운용에 필수적인 주요장비를 제외한 편의시설 및 의장분야 제외 |
| 승무원실 설비(매트리스, 이불, TV 등) | △1,569 | |
| 행정지원 및 휴게실 설비(의자, 복사기 등) | △3,027 | |
| 주방 및 식당 설비<br>(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취사도구 등) | △1,545 | |
| 체육실 설비(러닝머신 등) | △5,439 | |
| 이동식 방현대<br>※ 선박 접안·접촉시 충격완화 및 선체손상방지용 | △25,740 | |
| 속구 비품<br>(핸드 파렛트 트럭, 플렉시블 그라인더 등) | △498 | |
| 합계 | △65,268 | |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긴급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뿐 아니라 중·소형 함정 근무 직원들이 유류바지의 행정시설, 샤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실제 건조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직접 관련된 냉난방장치, 휴게실, 체육실 설비 등이 제외되어 당초 국회에 설명한 사업 내용과 실제 추진 내용 간 괴리가 발생하였음.

또한 해양경찰청은 현재 제외된 시설들에 대하여 선박 건조 완료 전까지 다른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사업내용을 축소하여 계약을 추진한 후 별도 예산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향후 선박 건조사업 추진 시 최근 계약 사례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과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4.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관리용역 사업: 해양경비지원시스템 유지관리 공백 발생 부적정

## 가. 개 요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관리용역’** 사업은 위성데이터, 국내외 선박신호 등 다양한 해양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단속, 경비, 구조, 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합정보체계인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 플랫폼, Maritime Domain Awareness Platform)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6,200만원 중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22.8%)되고, 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관리용역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구축관리(정보화) | 740 | 740 | - | - | 740 | 493 | 122 | 125 | 707 |
| 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관리용역 | 162 | 162 | - | - | 162 | 37 | - | 125 | 36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영역인지체계)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위성영상, 해상레이더, 감시자산 수집정보, 선박정보 및 항만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선박 이동, 불법조업, 밀수·마약, 해양오염, 해상재난 및 안보위협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체계로서, 이 가운데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 플랫폼)은 각종 감시정보를 통합·분석하여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함.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5개년에 걸쳐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3억 3,000만원임.

14) 일반회계-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7238-301)(경비국)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 2022(1차) | 2023(2차) | 2024(3차) | 2025(4차) | 2026(5차) |
|---|---|---|---|---|---|
| 예산 | 20.5 | 23.2 | 15.5 | 7.4 | 7.1 |
| 내용 | 시스템 설계 (신호연계, 기본틀 구성) | 기존 데이터 연계 (VTS신호·시스템 연계) | 기초 AI 모델링 (AI개발, 데이터 시각화) | 데이터 확장 (세계 선박정보 탑재) | 시스템 안정화 (현장 활용성 강화) |

주) 2022~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예산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 나. 검토의견

**해양경찰청은 인사이동 후 업무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인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의 유지관리 공백이 9.5개월간 발생된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계약관리 체계를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15)]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2025년도 해양경비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2025년 10월 14일 체결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약 9.5개월간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였음.

[해양경비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공고 및 계약 현황]

| 구분 | 조달청 공고 | 계약 체결(계약기간) |
|---|---|---|
| 2024년 해양경비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2023.11.23. | 2023.12.29.(2024.1.1.~2024.12.31.) |
| 2025년 해양경비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2025.8.8. | 2025.10.14.(2025.10.14.~2026.8.31.) |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4년도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2023년 11월 발주, 12월 계약 체결을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 · 운송계약 · 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통해 회계연도 개시 이전부터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인사이동 후 업무 인수인계 미비, 일상감사 절차 등을 사유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은 위성·레이더·AIS 등 각종 해양정보를 통합·분석하여 해양안보 및 해상치안 대응을 지원하는 한국형 MDA 체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보안패치 적용, 시스템 모니터링, 데이터 연계 오류 점검, 장애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장기간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한 것은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2025년에 해양경비지원시스템뿐만 아니라 VTS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도 6개월간의 유지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바, 해양경찰청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계약관리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VTS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 및 계약 현황]

| 구분 | 조달청 공고 | 계약 체결(계약기간) |
|---|---|---|
| 2025년 VTS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2025.3.19. | 2025.6.5.(2025.6.5.~2025.12.31.) |

자료: 해양경찰청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소관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실태, 보안관리 및 장애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사업 및 계약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백에 대한 타부처의 조치 사례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감사에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유지관리 공백 발생, 보안성 검토 미실시, 문제점 미조치 등을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한 바 있음.

# 5. 서부정비창 운영경비 사업(신규):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대규모 이·전용 및 불용 부적정

## 가. 개 요

**‘서부정비창 운영경비’** 사업은 2025년 완공된 서부정비창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8,200만원 중 15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4%)되고 2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서부정비창 운영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서부정비창 운영 | 23,843 | 23,843 | - | △2,393 | 21,450 | 16,498 | 4,599 | 353 | 14,191 |
| 서부정비창 운영경비 | 3,236 | 3,236 | - | △1,054 | 2,182 | 1,558 | 271 | 353 | 5,14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서부정비창은 해양경찰 부산정비창의 시설 노후, 함정정비 수요 과부하 등으로 함정 수리가 지연되고, 1,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정은 상가(上架) 수리[17)]가 어려워 경남 진해에 소재한 해군 정비창에 위탁 수리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에 항만시설·상가시설(上架) 및 계류시설을 갖춘 서부정비창을 2025년 12월 개창하였음.

16) 일반회계-서부정비창 운영(3103-304)(해양경찰청정비창)

17) 플로팅도크, 쉽리프트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함정 선체를 위로 올려놓고 수리하는 것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개요]

| |
|---|
| ○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181번지 일원(허사도 남쪽)<br>○ (규모/기간) 부지면적 100,698㎡, 연면적 22,754㎡ / 2019~2025<br>○ (총사업비) 2,608억원(결산 기준)<br>○ (주요시설)<br>- 상가(上架)시설: 플로팅도크 5천톤급 1기, 쉽리프트 7백톤급 1기<br>- 계류시설: 의장안벽 2선석(380m), 쉽리프트 측면 2선석(170m), 부잔교 130m<br>- 건물: 본관, 보급창고, 공장(수리, 통신), 시운전실(엔진, 발전기), 무기탄약고, 유류저장고, 식당, 복지관 등 |

자료: 해양경찰청

## 나. 검토의견

**서부정비창 개창 및 인력 확보 지연으로 운영경비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대규모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해양경찰청은 향후 대규모 시설 구축사업 운영예산 편성 시 준공 시점, 운영계획, 인력 충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서부정비창 운영경비는 2025년 중 신설 예정인 서부정비창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서부정비창을 2025년 7월 준공하고 직제개정 및 신규채용을 통해 165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서부정비창은 2025년 10월 29일 완공하고, 12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음. 또한 근무인력 역시 당초 165명(직제개정 86명, 신규채용 79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말 기준 실제 확보 인원은 계획 대비 77.6% 수준인 128명(직제개정 60명, 신규채용 68명)에 그쳤음.

[서부정비창 준공 일정·인력충원 변동내역]

| 구분 | 당초 계획 | 실제 |
|---|---|---|
| 준공 | 2025.7. | 2025.12. |
| 인력 충원<br>(2025.12.기준) | 165명<br>(직제개정 86명, 신규채용 79명) | 128명<br>(직제개정 60명, 신규채용 66명) |

자료: 해양경찰청

그 결과 예산액 32억 3,200만원의 32.6%에 해당하는 10억 5,400만원은 지방관서 공공요금(9억 8,500만원) 및 서부정비창 공사비 상승분 충당(6,900만원) 등을 위하여

이·전용되었고, 예산액의 10.9%에 해당하는 3억 5,300만원은 환경미화·청사방호 인력 채용 연기 등에 따라 불용되었음.

특히 상용임금은 전액 불용되었고, 공공요금은 예산액의 70.5%가 지방관서 기본경비로 이용되는 등 당초 운영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음.

[서부정비창 운영경비 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 예산액 | 이·전용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
|---|---|---|---|---|---|---|---|
| 상용임금 | 183 | - | 183 | - | - | 183 | 환경미화·청사방호 담당 공무직 채용 연기 |
| 일반수용비 | 340 | △28 | 312 | 312 | - | - | 개창지원단 임차료 확보(세목조정) |
| 공공요금 | 1,398 | △985 | 413 | 349 | - | 64 | 지방관서 공공요금 재원 마련(이용) |
| 피복비 | 64 | 16 | 80 | 80 | - | - | |
| 특근매식비 | 145 | △30 | 115 | 110 | - | 5 | 정비창 공사비 상승분 재원 마련(전용) |
| 임차료 | - | 28 | 28 | 28 | - | - | |
| 유류비 | 87 | - | 87 | 85 | - | 2 | |
| 시설장비유지비 | 174 | - | 174 | 150 | 24 | - | |
| 재료비 | 126 | △16 | 110 | 110 | - | - | 피복비 예산부족분 확보 |
| 복리후생비 | 2 | - | 2 | - | - | 2 | |
| 일반용역비 | 88 | △3 | 85 | 6 | 79 | - | 정비창 공사비 상승분 재원 마련(전용) |
| 관리용역비 | 252 | - | 252 | 83 | 168 | 1 | |
| 기타운영비 | 24 | - | 24 | 24 | - | - | |
| 국내여비 | 63 | - | 63 | 63 | - | - | |
| 관서업무추진비 | 6 | - | 6 | 6 | - | - | |
| 특정업무경비 | 140 | - | 140 | 44 | - | 96 | |
| 고용부담금 | 36 | △36 | - | - | - | - |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정비창 공사비 상승분 재원 마련(전용) |
| 자산취득비 | 108 | - | 108 | 108 | - | - | |
| 합계 | 3,232 | △1,054 | 2,182 | 1,558 | 271 | 353 | |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레미콘 공급업체의 토요일 휴무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2025년 7월에서 10월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준공일 및 인력 채용 일정도 순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등 일부 운영경비가 6개월분이 아닌 8~12개월분이 편성되었거나 실제 근무인원에 비해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8] 이번 불용 및 이·전용 발생은 단순히 공사 지연에 따른 결과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운영일정과 인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편성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향후 대규모 시설 구축사업의 운영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시설 준공 시점, 단계별 운영계획, 실제 인력 충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소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Ⅳ, p.355)

# 6. 항공기도입지원 사업: 실집행 가능성이 없는 국외여비 반복 편성 시정 필요

## 가. 개 요

**‘항공기도입지원’** 사업은 항공기 제작 공정점검 등을 위한 지원비를 편성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1,100만원 중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7%)되고, 1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항공기도입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항공기도입 | 37,796 | 37,796 | - | - | 37,796 | 37,675 | - | 121 | 66,641 |
| 항공기도입지원 | 211 | 211 | - | - | 211 | 90 | - | 121 | 19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해양경찰청은 항공기도입지원 사업의 국외여비를 실제 집행가능성을 초과하는 범위로 편성한 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거나 불용하는 사례를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항공기도입지원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대형헬기(5호기) 해외 제작에 따른 공정점검, 최종·인수 검사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2025년 예산액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800만원에 불과하였고, 7,700만원은 국내여비로 세목조정되었으며, 9,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음.

19) 일반회계-항공기도입(3101-301)(장비기술국)

[2025년 항공기도입지원 사업 국외업무여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 등 | 집행액 | 불용액 |
|---|---|---|---|---|
| 2025 | 192<br>·대형헬기 공정점검(27)<br>·대형헬기 공정감독(82)<br>·대형헬기 공정관리(83) | △77<br>·국내여비 부족분 충당(77) | 18<br>·대형헬기 공정점검(18) | 97 |

자료: 해양경찰청

[2025년 항공기도입지원 사업 국외업무여비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세목조정 (2025.6.2.)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77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내여비 (220-01) | 국내여비 부족 |

자료: 해양경찰청

대형헬기 제작·도입은 일반적으로 제작 착수, 제작 중 공정점검, 최종검사, 인수검사, 운용자 교육, 납품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제작기간은 통상 36~48개월이 소요됨. 해양경찰청은 연 1회 현장 방문을 통해 공정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사가 제출하는 월별 리포트를 서면검토하는 방식으로 공정관리를 수행하며, 제작 최종 단계에서는 공정감독·최종검사·인수검사·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함.

대형헬기(5호기) 도입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반복 유찰되어 2024년 10월에야 계약이 체결되었음. 따라서 제작기간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제작 착수 및 초기 제작공정 확인을 위한 공정점검 외에 최종검사 단계의 공정감독이나 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해양경찰청은 공정점검뿐 아니라 최종검사 단계에서 수행되는 공정감독과 서면작업인 공정관리를 위한 국외여비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집행된 예산은 공정점검 여비 1,800만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예산은 전용 또는 불용 처리되었음.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국외여비의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산이 감액되면 향후 증액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2024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형헬기(5호기)의 공정점검·공정감독·승무원 교육 등을 명목으로 국외업무여비 2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국내여비로 전용·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는바, 실제 집행소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20)]

[2024년 항공기도입지원 사업 국외업무여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 등 | 집행액 | 불용액 |
|---|---|---|---|---|
| 2024 | 211 | 211 | - | - |
| | ·대형헬기 공정점검(36)<br>·대형헬기 공정감독(93)<br>·대형헬기 공정관리(82)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211) | | |

자료: 해양경찰청

[2024년 항공기도입지원 사업 국외업무여비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세목조정 (2024.3.5.)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175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내여비 (220-01) | 국내여비 부족 |
| 세목조정 (2024.8.21.)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36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내여비 (220-01) | 국내여비 부족 |
| 세목조정 (2024.12.10.)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내여비 (220-01) | 96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국내여비 잔액 환원 |
| 전용 (2024.12.15.) | 항공기도입 (310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42 | 경비수사활동지원 (3102-300) | 국내여비 (220-01) | 국내여비 부족 |
| | | | 54 | 항공기정비유지 (3103-301) | 국내여비 (220-01) | |

자료: 해양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국외여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예산은 삭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국외 여비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소요와 달리 국외여비를 과다하게 반복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저해하였음.

20) 해양경찰청은 2026년에도 대형헬기 공정점검 등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억 1,400만원을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목적으로 세목조정하였으며,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한 금액은 2,300만원에 불과함(2026.6. 기준).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향후 항공기 도입 일정과 실제 사업 공정을 면밀히 반영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예산 확보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실집행 가능성을 초과하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7. 경비함정 보험 사업: 보험가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개 요

**‘경비함정 보험’** 사업은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에 대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억 9,700만원 중 8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7%)되고,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5년도 경비함정 보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 17,907 | 17,907 | 147 | △297 | 17,757 | 17,055 | 39 | 663 | 17,503 |
| 경비함정 운영지원 | 2,886 | 2,886 | - | △217 | 2,669 | 2,546 | - | 123 | 1,570 |
| 경비함정 보험 | 997 | 997 | | △100 | 897 | 805 | - | 92 | 99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해양경찰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고가의 국유재산인 중·대형 경비함정을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 보호와 국가재정의 위험 분산이라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22)]는 국유재산인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은 동 시행령에 따라 함정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형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 207척에 대해

21) 일반회계-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경비국)

2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 · 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말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함정은 372척으로, 중·대형 경비함정 등 165척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 보험가입 현황]

(단위: 척, %)

| 보유 함정 | 보험 가입 함정 | 보험 미가입 함정 | 보험 가입률 |
|---|---|---|---|
| 372 | 207 | 165 | 55.7 |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 보험가입 세부내역]

(단위: 척)

| 구분 | 함종 | 척수 | 보험 가입 | 구분 | 함종 | 척수 | 보험 가입 |
|---|---|---|---|---|---|---|---|
| 경비함정 | 대형함(3000톤 이상) | 18 | X | 특수함정 | 형사기동정 | 20 | X |
| | 대형함(1500톤) | 11 | X | | 방제정 | 40 | X |
| | 대형함(1000톤) | 9 | X | | 화학방제함 | 2 | X |
| | 중형함(500톤) | 24 | X | | 연안구조정 | 97 | O |
| | 중형함(300톤) | 18 | X | | 훈련함 | 1 | X |
| | 소형정(200톤) | 14 | O | | 예인정 | 9 | X |
| | 소형정(100톤) | 13 | O | | 소방정 | 1 | X |
| | 소형정(50톤) | 83 | O | | 공기부양정 | 4 | X |
| | 소계 | 190 | | | 특수기동정 | 7 | X |
| | | | | | 잠수지원함 | 1 | X |
| | | | | | 소계 | 182 | |

주) 2025.12.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중·대형 경비함정을 포함해 전체 함정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 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 규모인 9억 9,700만원을 초과하여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설명임.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선박 등 주요 국유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취지는 국가가 보유한 중요 재산이 화재·침몰·충돌 등으로 손실되었을 때 국가재정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유재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려는 데 있음.

특히 중·대형 경비함정은 건조비가 큰 고가의 국유재산[23]일 뿐만 아니라 원거리

23) 2026년 해양경찰청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3,000톤급 대형함의 건조비는 1,220억원, 500톤급 중형함의 건조

경비, 대형 해양사고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돌, 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모가 소형함정보다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현재 손해배상보험은 일부 소형함정을 중심으로 가입되고 있어 중·대형 경비함정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현행 보험 가입 범위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함정별 자산가치와 운용 특성, 사고 발생 시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 가입 범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경찰청은 객관적인 위험분석에 기초하여 함정보험의 가입범위·담보한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경비함정 보험료는 9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보험계약은 8억 500만원에 체결되어 1억 9,2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1억원은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용되었으며 나머지 9,2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과 2024년에도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는데, 2023년에는 낙찰차액 5,900만원이 지방관서 공공요금 및 경비함정 민간예인선료의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2024년에는 낙찰차액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2025년 경비함정 보험료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A) | 이·전용 등(B) | 예산현액 (A+B) | 집행액 | 불용액 | 이·전용 등 사유 |
|---|---|---|---|---|---|---|
| 2023 | 1,056 | △59 | 997 | 997 | - |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24,이용)<br>·경비함정 민간예인선료 부족분 충당 (△35, 세목조정) |
| 2024 | 1,056 | - | 1,056 | 1,026 | 30 | |
| 2025 | 997 | △100 | 897 | 805 | 92 |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이용) |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경비함정의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담보범위 추가 및 담보한도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구체적으로는 가입대상 등을 확대한 가입안을 작성하여 보험업체에 송부·견

비는 450억원임.

적을 받은 후 편성된 예산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을 진행하고 있음.

그 결과 경비함정 보험가입 대상은 2023년 193척에서 2025년 358척으로 증가하였고, 담보내용에 예인 중 발생비용이 추가되었으며, 담보한도도 척당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증액되었음.

[경비함정 보험 가입대상, 담보내용·한도 현황(2023~2025)]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가입대상 | 193척<br>・소형정(100척)<br>・연안구조정(93척) | 207척<br>・소형정(110척)<br>・연안구조정(97척) | 358척<br>・소형정(110척)<br>・연안구조정(97척)<br>・고속단정(중・대형함 탑재 RIB보트 126척)<br>・구조대 구조정(25척) |
| 항해구역 | 연해(국내항해) | 연해(국내항해) | 연해(국내항해) |
| 담보내용 | ・구조 중 발생비용<br>・타선과의 충돌배상 등 | ・구조 중 발생비용<br>・타선과의 충돌배상 등 | ・예인 중 발생비용<br>・구조 중 발생비용<br>・타선과의 충돌배상 등 |
| 담보한도 | 1건당 200만 달러 | 1건당 200만 달러 | 1건당 300만 달러 |

주 1) 2025.12. 기준
2) 고속단정과 구조대 구조정은 함정으로 분류하지 않으나 보험에 가입
자료: 해양경찰청

보험 가입규모는 국유재산의 가치, 사고 발생 가능성, 과거 손해발생 실적, 예상 손실 규모 등 객관적인 위험분석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나, 해양경찰청은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보험 가입 규모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제 계약금액과 보험시장의 낙찰 추세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보험료에 대한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과거 사고 규모, 실제 배상실적, 최대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보내용・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8.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신규): 위성센터 건립 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 가. 개 요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은 해양경찰위성센터에 내·외부 행정망 네트워크 구축, 전산·보안 등 업무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3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24)]

[2025년도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해양경찰청정보화관리(정보화) | 23,966 | 23,966 | 364 | - | 24,330 | 23,282 | 679 | 369 | 29,921 |
|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 93 | 93 | - | - | 93 | - | 93 | - | 37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위성센터 건립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전액 이월한 것은 선행사업과 후속사업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향후 청사 신축사업과 연계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선행공정의 진행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은 해양경찰청이 인천 중구에 건립 중인 해양경찰위성센터 청사에 방화벽, VPN, 네트워크 스위치, 영상회의 시스템,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보안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임.

24) 일반회계-해양경찰청정보화관리(정보화)(7238-300)(장비기술국)

동 사업은 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설치한 후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는 리스조건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계약 후 365일이며,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해양경찰청은 리스회사를 통해 분기별로 9,300만원씩, 5년간 리스료를 지급하게 됨.

동 사업은 신축 위성센터에 네트워크 장비, 영상회의 시스템 등 전산·정보화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위성센터 건물 내부 공간 확보와 전기·통신 기반시설 구축이 선행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선행사업인 위성센터 건립 일정과의 연계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건물 공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 절차를 진행하였음. 위성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사업 일정이 변경되어 2025년 11월 10일에야 착공되었고 준공 시점도 2027년 상반기로 연기되었음. 반면 해양경찰청은 위성센터가 착공되기 이전인 2025년 8월 28일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11월 15일에 입찰공고하여, 12월 22일 계약을 체결하였음.

[해양경찰위성센터 건립 및 위성센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진행경과]

| 위성센터 건립 | 정보통신망 구축 |
|---|---|
| · 기본·실시설계(2023.10.~)<br>·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기본·실시설계 중지(2024.3.~2025.10.)<br>· 건축·통신·소방공사 입찰공고(2025.6.11.)<br>· 전기공사 입찰공고(2025.6.23.)<br>· 건축공사 착공(2025.11.10., 착공일부터 600일) | · 조달청 계약의뢰(2025.8.28.)<br>· 입찰공고(2025.11.15.)<br>· 업체선정 및 계약<br>(2025.12.22., 계약기간 2025.12.22.~2026.12.22.) |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위성센터 신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또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위성센터 신축은 2027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정보통신망 구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계약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25]

2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향후 청사 신축사업과 연계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선행공정의 진행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공사의 추진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후속 정보화사업을 선행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간 연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해양경찰청에 대해 시정요구 1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13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1 | 13 | - | 14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 | 13 | - | 14 |

해양경찰청은 시정요구사항 14건에 대해 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4.2%)하고 5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4 | 9 | 64.2 | 5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4 | 9 | 64.2 | 5 |

## 나. 검토의견

**해양경찰청은 ‘항공보험 실집행실적과 낙찰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5년에도 낙찰차액을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제22대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9.3.)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양경찰청은 항공보험 실집행실적과 낙찰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결산 간 차이가 반복적으로 크게 발생한다는 점뿐 아니라, 남은 예산을 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시정요구사항 문구에도 단순한 적정 예산편성 외에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낙찰차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이·전용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통합보험 가입 대상 국가기관(해양경찰·경찰·소방·산림청) 간 협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 및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2025.12.3.)로 보고하였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바로 다음 달인 2025년 10월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7억 6,600만원을 자체 이용하였음.

[2025년 항공보험 낙찰차액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이용 (2025.10.27.) | 항공기정비유지 (3103-301) | 210-02 | 1,766 |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 210-02 |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액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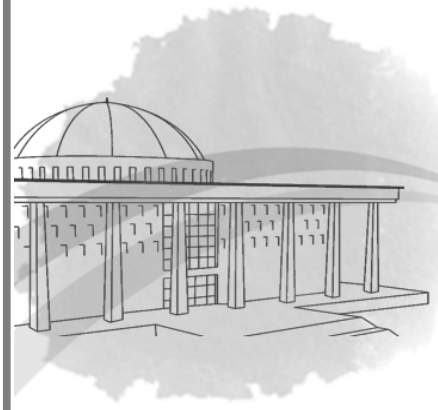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자료: 해양경찰청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예산추계 오차 및 낙찰차액의 이·전용 관행 개선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청의 이러한 행태는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항공보험 예산집행단계에서 낙찰차액의 불필요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항공보험 과다편성 및 불필요한 전용 발생 시정요구 조치결과]

| 구분 | 내용 |
|---|---|
| 시정요구명 | (22) 반복적인 예산 과다편성 지양 |
| 시정요구사항<br>(시정요구수준) | 해양경찰청은 항공보험 실집행실적과 낙찰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주의) |
| 조치상황 | 조치완료 |
| 조치결과 | ㅇ 2025년, 2026년 예산 편성 시 2024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2025년 34.8억(△24.1억), 2026년 30.2억(△4.6억)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음<br>- 통합보험 가입 대상 국가기관(해경, 경찰, 소방, 산림)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 및 편성 지속 추진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145억 5,400만원(△22.3%)이 적은 2조 1,355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7,149억 2,700만원(△68.8%)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708,665 | 2,708,665 | 2,196,834 | △511,831 | 2,688,536 | 2,688,536 | 2,056,897 | △631,639 | △139,937 |
| 기 금 | 4,750,504 | 4,750,504 | 4,653,679 | △96,825 | 61,604 | 61,604 | 78,689 | 17,085 | △4,574,990 |
| 총수입 | 7,459,169 | 7,459,169 | 6,850,513 | △608,656 | 2,750,140 | 2,750,140 | 2,135,586 | △614,554 | △4,714,927 |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453억 8,400만원(△3.4%)이 적은 9조 8,958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746억 100만원(△13.0%)이 감소됨.

문의: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9,065,142 | 9,065,142 | 8,906,954 | △158,188 | 9,084,104 | 10,099,152 | 9,753,768 | △345,384 | 846,814 |
| 기 금 | 2,453,680 | 2,482,192 | 2,463,490 | △18,702 | 142,075 | 142,075 | 142,075 | - | △2,321,415 |
| 총지출 | 11,518,822 | 11,547,334 | 11,370,444 | △176,890 | 9,226,179 | 10,241,227 | 9,895,843 | △345,384 | △1,474,601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조 9,166억 800만원으로, 6조 5,709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조 5,513억 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7%)되고, 196억 2,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188,767 | 188,767 | △197 | 188,570 | 186,458 | 172,920 | 13,538 | -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6,070,222 | 5,910,301 | △1,519,594 | 4,390,707 | 3,968,298 | 3,964,241 | 4,057 | - |
| 투자계정 | 5,582,571 | 5,422,650 | △1,285,644 | 4,137,006 | 3,669,879 | 3,665,822 | 4,057 | - |
| 융자계정 | 487,651 | 487,651 | △233,950 | 253,701 | 298,419 | 298,41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3,044 | 53,044 | - | 53,044 | 84,228 | 82,234 | 1,995 | - |
| 지역자율계정 | 570 | 570 | - | 570 | 1,815 | 1,807 | 9 | - |
| 지역지원계정 | 52,020 | 52,020 | - | 52,020 | 81,829 | 79,843 | 1,986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4 | 4 | - | 4 | 535 | 535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450 | 450 | - | 450 | 49 | 49 | - | -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2,284,287 | 2,284,287 | - | 2,284,287 | 2,331,814 | 2,331,814 |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 128 | 95 | 33 | - |
| 합 계 | 8,596,320 | 8,436,399 | △1,519,791 | 6,916,608 | 6,570,926 | 6,551,304 | 19,623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조 2,593억 8,400만원으로, 12조 1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1,458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34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6,084,286 | 6,782,799 | 1,813 | △7,019 | 1,995 | 6,779,588 | 6,743,085 | 1,187 | 35,316 |
|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 2,483,649 | 2,703,929 | 260 | △345,967 | - | 2,358,222 | 2,320,202 | 18,768 | 19,252 |
| 투자계정 | 1,973,984 | 2,194,264 | 260 | △187,723 | - | 2,006,801 | 1,968,784 | 18,768 | 19,249 |
| 융자계정 | 509,665 | 509,665 | - | △158,244 | - | 351,421 | 351,418 | - | 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87,855 | 1,288,670 | 4,392 | - | - | 1,293,062 | 1,108,323 | 125,892 | 58,848 |
| 지역자율계정 | 25,633 | 25,633 | - | - | - | 25,633 | 25,633 | - | - |
| 지역지원계정 | 1,148,326 | 1,249,141 | 4,392 | - | - | 1,253,533 | 1,069,486 | 125,335 | 58,712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6,515 | 6,515 | - | - | - | 6,515 | 6,515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7,381 | 7,381 | - | - | - | 7,381 | 6,689 | 557 | 136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1,822,812 | 1,822,812 | - | - | - | 1,822,812 | 1,822,803 | - | 9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5,700 | 5,700 | - | - | - | 5,700 | 5,700 | - | - |
| 합 계 | 11,584,302 | 12,603,910 | 6,465 | △352,986 | 1,995 | 12,259,384 | 12,000,113 | 145,847 | 113,425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6조 3,159억 4,500만원으로, 7조 6,347억 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조 771억 5,300만원이 수납(수납률 66.5%)되고 2조 5,255억 9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21억 3,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235,212 | 235,212 | 258,560 | 258,560 | - | - |
| 무역보험기금 | 5,780,733 | 6,080,733 | 7,376,236 | 4,818,593 | 2,525,509 | 32,134 |
| 합 계 | 6,015,945 | 6,315,945 | 7,634,796 | 5,077,153 | 2,525,509 | 32,134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6조 3,159억 4,500만원으로, 5조 771억 5,300만원이 지출(집행률 80.4%)되고, 1,253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235,212 | 235,212 | - | 235,212 | 258,560 | - | 19,086 |
| 무역보험기금 | 5,780,733 | 6,080,733 | - | 6,080,733 | 4,818,593 | - | 106,234 |
| 합 계 | 6,015,945 | 6,315,945 | - | 6,315,945 | 5,077,153 | - | 125,320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산업통상부 자산은 전년 대비 2,352억 5,300만원이 증가된 15조 5,111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전년대비 2,036억 8,5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422억 2,300만원 감소된 3조 4,546억 2,500만원으로 차입부채 3조 1,491억 6,1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조 2,774억 7,600만원이 증가된 12조 565억 2,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조 2,909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8억 7,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조 431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65억 2,4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15,511,150 | 15,275,897 | 235,253 | 1.5 |
| | | 금융자산 | 11,546,984 | 11,343,299 | 203,685 | 1.8 |
| | | 유·무형자산 | 3,929,067 | 3,902,501 | 26,566 | 0.7 |
| | | 기타자산 | 35,099 | 30,097 | 5,002 | 16.6 |
| | 부 채 | | 3,454,625 | 6,496,848 | △3,042,223 | △46.8 |
| | | 차입부채 | 483,448 | 3,632,609 | △3,149,161 | △86.7 |
| | | 충당부채 | 622,829 | 619,876 | 2,953 | 0.5 |
| | | 기타부채 | 2,348,347 | 2,244,363 | 103,984 | 4.6 |
| | 순자산 | | 12,056,525 | 8,779,049 | 3,277,476 | 37.3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8,290,982 | 7,390,106 | 900,876 | 12.2 |
| | 재정운영순원가 | | 8,044,829 | 7,108,648 | 936,181 | 13.2 |
| | 재정운영결과 | | 8,043,181 | 7,106,657 | 936,524 | 13.2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2조 1,829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109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7,574억원 전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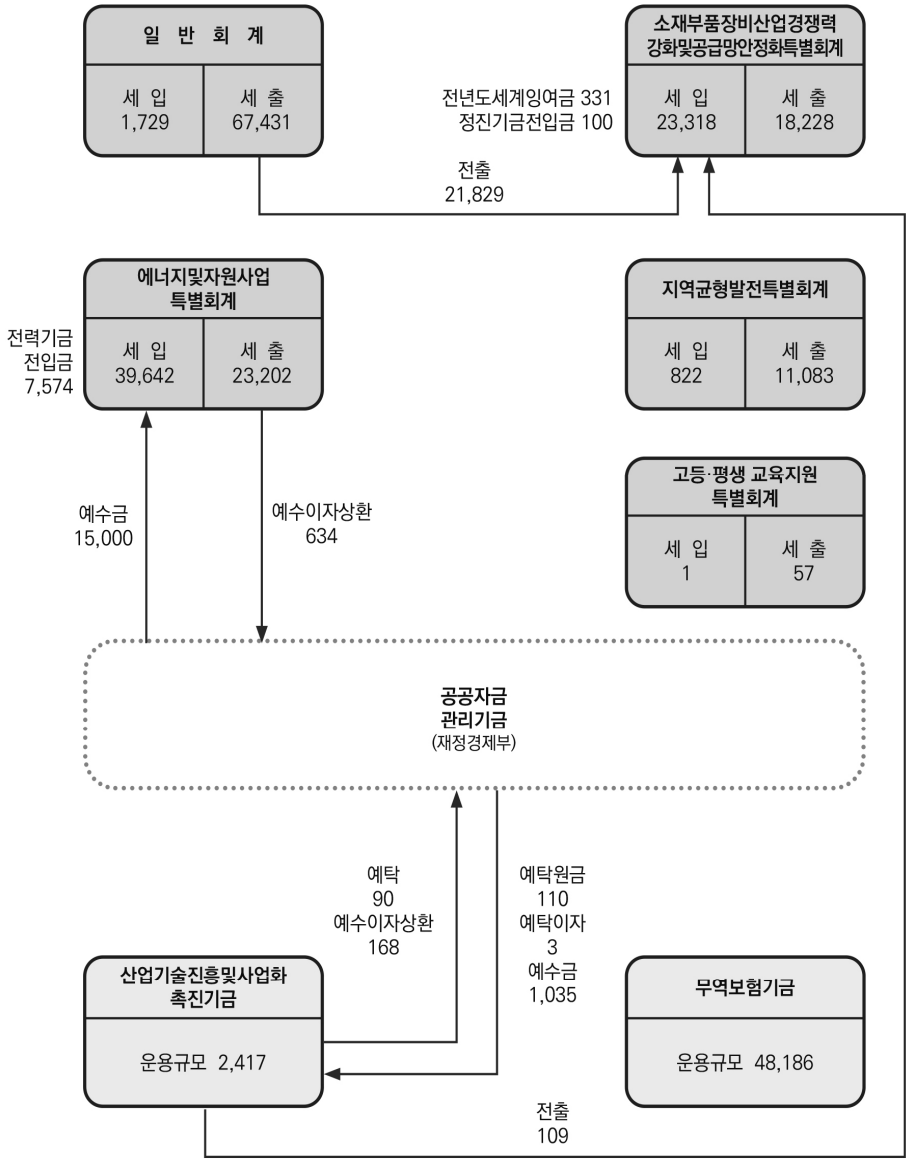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5,000억원을 예수하였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34억 예수이자 상환하였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9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고, 168억원을 예수이자 상환하였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110억원을 예탁원금 회수하였고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3억원의 예탁이자수입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1,035억원을 예수하였음.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재정흐름도]

(단위 : 억원)




주) 총계 기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산업통상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 수출·외투 상승모멘텀 유지, 산업위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457개 세부사업에서 산업혁신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무역 및 투자유치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 산업분야 일부 R&D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전문기관으로 R&D자금이 교부된 이후 전문기관에서 최종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이 전문기관에 유보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R&D 사업과 달리 비R&D 기반구축 사업들의 경우 기획평가관리비가 사업별로 편성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5년 4월말을 기준으로 무역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원별로 공개하고 있는 무역관련 통계가 상이하며 일부 무역원의 경우 최신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산업통상부는 통일된 기준 하에 체계적으로 무역원 실적을 공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산업통상부는 공고기간 내 신청기관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산업통상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을 통해 시제품 개발 사업들을 추진중이나, 한 기업이 여러 사업에서 지원받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사업은 협약 대비 실제 사업 예산 감액으로 2건의 과제 중단이 발생하였는데, 과거 연구 내용이 매몰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산업통상부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조건 하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을 기획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비 매칭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내실있는 사업 기획과 적기 지방비 매칭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사업선정 이후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초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과 투자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의 산업기술혁신계정은 2025년 기준 계정 수입의 약 47.5%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는 기술료 수입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열째, 무역보험 특례지원은 재무건전성이 낮아 지원이 어려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나 최근 특례지원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산업통상부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보증 제도 운영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R&D자금관리: 전문기관 자금 교부 이후 최종연구수행기관에 배정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 비효율 발생 등

### 가. 개 요

산업·자원분야 R&D사업은 산업·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일반회계 115개 사업 2조 4,276억 9,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6개 사업 319억 4,000만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8개 사업 1조 8,157억 7,9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개 사업 1,402억 7,100만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4개 사업 154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산업·자원분야 R&D 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명 | 사업수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 예산액 (A) | 전년도 이월액 (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일반회계 | 115 | 2,431,896 | - | - | 2,431,896 | 2,427,696 | - | 4,200 | 3,058,959 |
| 에특회계 | 6 | 31,940 | - | - | 31,940 | 31,940 | - | - | 32,753 |
| 소특회계 | 18 | 1,815,779 | - | - | 1,815,779 | 1,815,779 | - | - | 1,948,497 |
| 지특회계 | 9 | 140,271 | - | - | 140,271 | 140,271 | - | - | 152,125 |
| 산촉기금 | 4 | 15,490 | - | - | 15,490 | 15,490 | - | - | 22,178 |
| 합계 | 152 | 4,435,376 | - | - | 4,435,376 | 4,431,176 | - | 4,200 | 5,214,51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도 산업·자원분야 R&D사업은 산업통상부 산하 R&D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추진되었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3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1조 1,329억 4,000만원 중 1조 1,329억 4,000만원을 집행(집행률 100.0%)하였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115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3조 2,314억 300만원 중 3조 2,265억 3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8%)하고 49억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산업·자원분야 R&D 사업 전문기관별 결산]

(단위: 개, 백만원)

| 전문기관명 | 사업수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 예산액 (A)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43 | 1,132,940 | - | - | 1,132,940 | 1,132,940 | - | - | 1,337,369 |
|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 115 | 3,231,403 | - | - | 3,231,403 | 3,226,503 | - | 4,900 | 3,941,69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 나. 검토의견

**첫째, R&D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상 산업통상부에서 전문기관으로 R&D자금이 교부된 이후 전문기관에서 최종 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기까지 일정기간 시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이 전문기관에 유보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D자금은 각 R&D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통해 분리·관리되며, 전문기관이 산업부에 교부신청을 하고 이후 교부된 자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2)]

전문기관이 산업부로부터 교부받은 R&D자금은 하나의 세부사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R&D과제에 배분되는데, 전문기관들은 계속과제 여부·연차별 진도점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함.

2)「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2025년 일부 사업에서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R&D자금을 교부받은 시점과 전문기관에서 실제 최종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된 시점 간에 3~9개월 가량의 시차가 존재하였음.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은 산업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2025년 3월에 최초로 자금이 교부되었으나, 실제 연구수행기관에 자금을 지급한 시점은 12월임.

[2025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R&D자금 유보 사례(일부)]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산업부→KIAT 최초 교부월 (A) | KIAT→연구수행기관 최초 지급월 (B) | 지연월수 (C=B-A) |
|---|---|---|---|---|
|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 | 3 | 12 | 9 |
| 기업수요기반차세대 연구자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R&D) | 기업수요기반차세대 연구자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 | 3 | 8 | 5 |
| CVC투자연계대중견 중소기업협력(R&D) | CVC투자연계R&D | 3 | 8 | 5 |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 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 (R&D)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 단지 기술개발지원 | 2 | 7 | 5 |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R&D) | EV국민경차상용화지원 플랫폼구축사업 등 | 2 | 6 | 4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도 '공간컴퓨팅구현을위한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전체 예산 27억원 중 3억 2,400만원을 2025년 1월 24일에 교부받고 2025년 3월 18일에 잔액 23억 7,6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최종연구수행기관에 교부된 시점은 2025년 6월 2일로 2개월 이상 전문기관 단계에서 R&D 자금이 유보되었음.

[2025년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자금 유보 사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 예산 (회계) | 최초교부 이전 자금배정(산업부→산기평) | | | | | | | | | 최종연구수행기관 최초교부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
|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 17,301 (일반회계) | '25.1.23. (1,860) | '25.2.25. (844) | '25.3.21. (5,254) | - | - | - | - | - | - | '25.3.25. (410) |
| 건설현장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플랫폼및XR기반 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 1,008 (일반회계) | '25.3.20. (363) | '25.4.22. (135) | '25.5.26. (78) | '25.6.17. (78) | - | - | - | - | - | '25.7.14. (504) |
| 공간컴퓨팅구현을위한 첨단XR디바이스부품 통합형기술개발 | 2,700 (소특회계) | '25.1.24. (324) | '25.3.18. (2,376) | - | - | - | - | - | - | - | '25.6.2. (2,700) |
| 자율형소프트로봇 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 3,150 (일반회계) | '25.3.20. (1,134) | '25.4.22. (423) | '25.5.26. (244) | '25.6.17. (243) | '25.7.23. (183) | '25.9.24. (554) | '25.10.28. (110) | '25.11.27. (41) | '25.12.17. (217) | '25.12.18. (500) |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재정당국의 예산 신속집행 기조 및 과제 선정 절차 종료 후 신속지출을 위해 상반기 내에 R&D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교부 후 3개월 내 실집행이 완료되나 재공고, 협약 대비 예산 변동 등으로 인해 일부 지급이 지연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R&D자금이 최종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어 인건비・장비구입・실증・기술개발 등에 실제 활용될 때 R&D 예산 집행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전문기관에 장기간 유보되어있는 경우 한정된 재원이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엄밀한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적기에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R&D자금이 전문기관 단계에서 장기간 비효율적으로 유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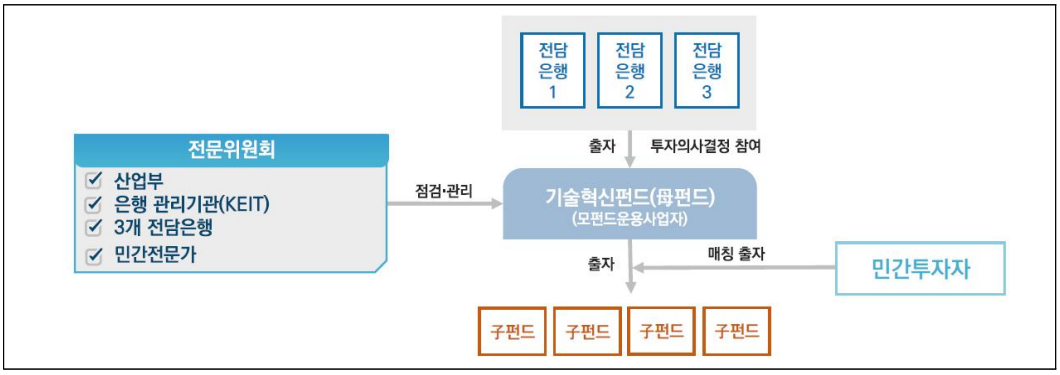
3) 산업통상부는 신규・계속과제의 실집행 시기를 반영한 월 단위 집행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비 집행 자체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적기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또한 회계연도 불일치 과제, 계획변경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집행시기를 점검할 예정이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각종 절차의 기한을 신설하여 사업비 집행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둘째, 산업통상부는 R&D자금 전담은행과 협약을 통해 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펀드의 공적 역할 등을 감안하여 국회에 운영 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 R&D전담기관은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협약(3차년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을 맺고 전담은행이 저리로 R&D자금을 예치[4]·운영[5]할 수 있도록 하되, 전담은행들이 산업기술혁신펀드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협약은행들은 2021년 900억원, 2022년 1,000억원, 2023년 1,600억원, 2024년 1,600억원, 2025년 890억원을 출자하였고 출자된 자금들은 다시 민간투자자들의 자금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결성해 투자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점검·관리함.

[산업기술혁신펀드 구조]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 「산업기술 자금 관리 협약서」('23~'25)
제5조(산업기술 자금의 예치 및 운영관리) ⑤ 전담은행의 산업기술 자금 예치 과목은 MMDA로 하며, 월별 수신금리는 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전월 기업MMDA 금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sum(\text{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 MMDA\text{금리} \times \text{전담은행별 예치비율})$$

5) 2021~2025년 R&D자금 전담은행의 예탁 규모·평균이자율·이자금액 등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평균잔액(A) | 1,161,532 | 1,360,987 | 1,417,983 | 1,425,717 | 1,761,588 |
| 이자금액(B) | 3,561 | 11,070 | 30,048 | 32,434 | 31,934 |
| 평균이자율 (C=B/A) | 0.31 | 0.81 | 2.12 | 2.27 | 1.81 |

주) 일 평잔 기준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국회는 정책펀드사업의 관리를 위해 투자완료금액 및 미투자금액들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6] 이후 관련 부처는 펀드 실적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 재정 외로 운용되는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7]

은행의 출자금은 정부 R&D자금의 예치 및 운용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적인 책임 하에 펀드를 점검·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전담은행의 약정이행 여부·펀드의 목적달성 여부·펀드 운용 및 투자 실적 등에 대한 국회 보고를 통해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8]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재정으로 출자되는 정책펀드와 동일하게 산업기술혁신펀드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음.[9]

---

6)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7) 재정 외로 운영되는 유사 펀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있음.

8) 참고로 2026년 3월 11일「국가재정법」제53조의2가 신설되어 정책펀드(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의 재투자 계획·해당연도의 회수재원 현황·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음.

> 「국가재정법」
>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산업통상부는 국회 요청 시 펀드 운영 현황 및 관련 실적 등을 성실히 보고하겠다는 입장임.

## 2. 비R&D 기반구축 사업: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체계화 노력 필요

### 가. 개 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10]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대학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에는 산업기술 연구장비나 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들도 존재하는데, 주로 사업명에 '기반구축'이 포함된 사업들이 이에 해당함.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11]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재정당국은 OECD 기준을 준용하여 각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R&D 통계포함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 대분류 | 소분류 | 내용 | 예시 사업 |
|---|---|---|---|
| 과학기술활동 | 연구개발(R&D) |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연구개발 과제 지원<br>·연구기관 지원<br>·고급인력양성<br>·연구시설·장비구축 등 |
| | 과학기술 교육훈련 | 과학기술 관련한 단순 교육훈련·연수활동<br>(고급인력 양성사업 제외) | ·이공계 장학사업<br>·교육과정개발<br>·강의·연수지원<br>·초중등교육지원 |
| | 과학기술 서비스 |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 |

자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년 기반구축 사업들은 연구개발(R&D)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이하 '비R&D) 기반구축 사업')으로도 추진되었는데, 전체 83개·1조 2,443억 6,000만원 중 R&D 기반구축 사업은 22개(26.5%)·1조 619억 9,600만원(85.3%)이 집행되었고, 비R&D 기반구축 사업은 61개(73.5%)·1,823억 6,400만원(14.7%)이 집행되었음.

[2025년 R&D 및 비R&D 기반구축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 구분 | R&D 기반구축 사업 | 비R&D 기반구축 사업 | 전체 |
|---|---|---|---|
| 사업 수 | 22<br>(26.5) | 61<br>(73.5) | 83<br>(100.0) |
| 예산 | 1,061,996<br>(85.3) | 182,364<br>(14.7) | 1,244,360<br>(100.0)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R&D기반구축사업과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큰 차이는 예산 편성 절차에 있는데, R&D사업의 경우 5~6월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만 비R&D사업의 경우 별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 없이 일반적인 사업과 동일하게 기획예산처의 심의만을 받고 있음.

[2025년 R&D 및 비R&D 기반구축사업 예산 편성 절차 비교]

| 구 분 | R&D | 비R&D |
|---|---|---|
| 각 부처 | 【4월】 부처안 제출 (→과기부, 4월말) | 【5월】 부처안 제출 (→기획처, 5.31)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5~6월】 과기부 심의 (국가연구개발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 【6월말】 과기장관회의 의결(6월말) → 예산처 제출(6월말)** | **- (별도 절차 없음)** |
| 기획예산처 | 【6월~8월말】기획처 심의 【8월말】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정부예산안 확정 【9월초】 국회제출(~9.2일) | |

자료: 산업통상부

## 나. 검토의견

**첫째, R&D 사업과 달리 비R&D 기반구축 사업들의 경우 기획평가관리비가 사업별로 편성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산업통상부의 비R&D 기반구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 중에 하나는 사업의 선정·평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기획평가관리비임.

통상 사업비의 3%를 기획평가관리비로 책정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됨에 따라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의 비율이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 구축' 사업은 0%, 'No-Code 제조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은 5.2%,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3.3%,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1.5%였음.

[2025년 비R&D 기반구축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사례]

(단위: 백만원, %)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출연기관 | 지원분야 | 2025년 | | | | |
|---|---|---|---|---|---|---|---|---|
| | | | | 추경 | 집행액 | 사업비 (A) | 기평비 (B) | B/A |
| 일반 |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플랫폼 구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뿌리산업 | 2,000 | 2,000 | 1,973 | - | - |
| 일반 |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AI | 2,250 | 2,250 | 2,138 | 112 | 5.2 |
| 일반 |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 체계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AI | 2,000 | 2,000 | 1,910 | 90 | 4.7 |
| 일반 |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AI | 2,240 | 2,240 | 2,128 | 112 | 5.3 |
| 일반 |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스마트농업 | 1,300 | 1,300 | 1,258 | 42 | 3.3 |
| 일반 |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기업성장성강화 -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로봇산업 | 57,446 (3,004) | 57,446 (3,004) | 2,920 | 84 | 2.9 |
| 일반 |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기업성장성강화 -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로봇산업 | 57,446 (1,160) | 57,446 (1,160) | 1,128 | 32 | 2.8 |
| 일반 |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농기계 | 2,229 | 2,229 | 2,157 | 72 | 3.3 |
| 일반 | 디지털융합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밀기계 | 3,000 | 3,000 | 2,904 | 96 | 3.3 |
| 일반 |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 (바이오산업기반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바이오 | 41,661 (15,627) | 41,661 (15,627) | 15,158 | 344 | 2.3 |
| 일반 |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백신 | 4,200 | 4,200 | 4,116 | 61 | 1.5 |
| 일반 |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백신 | 3,743 | 3,743 | 3,667 | 60 | 1.6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별로 편성하여 관리하였다고 설명함.

R&D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내역사업 감축 등을 이유로 기획평가관리비가 통합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유사한 비R&D기반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동시에 비R&D 기반구축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수행근거가 미흡하고 기관 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12] 및 제39조[13]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 제11조제4항[14]과 제19조제2항 및 제3항[15]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하위 규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정책연구・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전문인력양성의 수행 및 기획평가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개발사업 R&D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여 두 기관을 차별화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규정과 달리 2025년 산업통상부의 비R&D성 기반구축사업들의 일부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집행되었는데, 산업통상부는 비R&D 사업 관리 주체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주무 부처의 판단으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두 개 전문기관이 기반구축사업들의 기획평가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시스템반도체기반구축사업으로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팹리스기업첨단장비공동이용지원’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각각 관리하고 있음.

[팹리스기업첨단장비공동이용지원 및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사업 비교]

| 구분 | 팹리스기업첨단장비공동이용지원 |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
|---|---|---|
|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의 복잡도 증가에 따라 AI반도체분야 팹리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검증장비 구축 | 팹리스 기업 대상 반도체 설계・검증 지원을 위한 센터구축, 실습 교육장, 설계실 등 기반 환경을 구축하고 검증기술 및 전문인력 지원 |
| 사업기간 | 2025~2027년 (3년) | 2024~2028년 (5년) |
| 사업비 | 451억원 (국비 322억원) | 227억원 (국비 약143억원)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센터위치 | **경기도 성남 판교 글로벌 융합센터** 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 **경기도 성남 판교 글로벌 융합센터 내** |
| 사업내용 | **검증장비구축**,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 고성능 인프라 구축 (검증지원센터 구축 및 고가의 **설계검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비R&D 기반구축 사업 관리에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16] 산업통상부는 기반구축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16)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각 사업의 특성과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비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무 부처의 판단에 따른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필요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셋째, R&D 기반구축 사업과 비R&D 기반구축 사업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당초 R&D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이 관련 심의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비R&D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비R&D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R&D사업 수준의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R&D 사업의 장비도입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연구개발장비 도입 심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편성 단계에서는 본심의를 받도록 하고 집행단계에서는 상시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장비도입을 위한 관련 절차들이 제도화되어 있음.

반면 산업통상부의 비R&D 장비도입 사업의 경우 편성단계에서의 심의절차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2025년 신규사업 대상 장비도입심의를 추진하였으나 연구용역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여전히 별도의 심의내용·심의기준 및 추진근거 등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산업통상부 R&D/비R&D 구분에 따른 장비도입심의 비교]

| 구분 | | R&D | 비R&D |
|---|---|---|---|
| 규정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부 고시) |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산업부 고시, 본심의 규정 없음) |
| 1억원 이상 | 본심의 | 국가연구개발장비도입심의위원회 (과기부, 지원기관(NFEC)) | - (연구용역 형태로 실시) |
| | 상시 심의 |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비전담기관(KIAT)) |
| 3천만원 ~1억원 | 상시 심의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 본심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파악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며, 상시심의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것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R&D장비도입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국가연구개발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동일한 내용의 비R&D장비도입 사업으로 다시 추진되어 예산에 편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비R&D장비도입 사업의 경우에도 R&D사업 수준의 공식적인 심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총 괄>

## 3. 자유무역지역 무역원 운영: 투자율 및 입주율 제고 노력 필요 등

### 가. 개 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의미함.[17]

산업통상부는 2025년말 기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총 7개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무역원”)을 운영 중이며 무역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였음.[18]

[2025년도 무역원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마산무역원기본경비 | 344 | 344 | - | △36 | 308 | 295 | - | 13 | 342 |
| 군산무역원기본경비 | 258 | 258 | - | 13 | 245 | 231 | - | 14 | 256 |
| 대불무역원기본경비 | 246 | 246 | - | △3 | 244 | 242 | - | 2 | 245 |
| 동해무역원기본경비 | 162 | 162 | - | △8 | 154 | 140 | - | 14 | 161 |
| 율촌무역원기본경비 | 147 | 147 | - | △8 | 139 | 131 | - | 8 | 149 |
| 울산무역원기본경비 | 240 | 240 | - | 8 | 248 | 247 | - | 1 | 239 |
| 김제무역원기본경비 | 197 | 197 | - | 54.1 | 251.1 | 248.5 | - | 2.6 | 21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8) 일반회계-마산무역원기본경비(7118-261)(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외 6개 사업

##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 4월말을 기준으로 무역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원별로 공개하고 있는 무역관련 통계가 상이하며 일부 무역원의 경우 최신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산업통상부는 통일된 기준 하에 체계적으로 무역원 실적을 공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무역원은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액·수입액 및 수출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콘텐츠 유형 등을 기준으로 소관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자료의 현행화 등을 관리·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4월 29일 기준으로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를 보면, 울산과 율촌 무역원은 2021년 이후 통계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각 무역원별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도 모두 상이하였음.

[2026년 4월 29일 기준 무역원별 통계 공개 현황]

| 무역원명 | 공시기준 (마지막 공시년도) | 생산액 | 매출 | 수입액 | 수출액 | 무역수지 | 고용인원 | 입주업체 | 가동업체 | 가동준비업체 | 건설중 | 휴·폐업 | 입주율 | | | | 국가별 입주 현황 | | 투자액 | |
|---|---|---|---|---|---|---|---|---|---|---|---|---|---|---|---|---|---|---|---|---|
| | | | | | | | | | | | | | 표준 | 자가공장 | 청사 | 전체 | 외투 | 내국 | 내자 | 외자 |
| 군산 | 분기별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제 | 연도별 (20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불 | 연도별 (20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 연도별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해 | 연도별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산 | 연도별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율촌 | 연도별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공개, ×: 미공개
자료: 각 무역원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담당자 부재 등 개별 관리원 상황에 따라 통계항목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최신화되지 못하였으나, 2026년 5월 중에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산업통상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역원별 실적을 통일된 기준 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무역원의 경우 임대료·연체료·공동부담금 등이 체납되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산업통상부는 체납된 금액들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무역원은 무역원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임대료와 공동부담금을 납부받고 있으며 미납시 연체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21년도에 발생한 미납 임대료·연체료·공동부담금이 2025년말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마산무역원의 경우 2022년 약 1억 6,025만원의 임대료 미납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도 말 기준 9,118만원이 여전히 미납된 상태임.

[2021~2025년 무역원별 임대료·연체료·공동부담금 체납 발생 및 2025년말 미납 현황]

(단위: 건,원)

| 무역원명 | 연도 | 임대료 미납 | | 연체료 미납 | | 공동부담금 미납 | |
|---|---|---|---|---|---|---|---|
| |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 마산 | 2021 | 101 (23) | 104,234,810 (6,584,530) | 72 (34) | 4,424,230 (1,612,460) | 29 (8) | 14,427,730 (826,430) |
| | 2022 | 110 (56) | 160,257,300 (91,184,550) | 62 (41) | 3,819,980 (3,294,570) | 47 (11) | 21,406,750 (6,338,560) |
| | 2023 | 182 (58) | 252,391,610 (84,250,260) | 148 (49) | 17,521,160 (5,874,780) | 184 (123) | 34,402,760 (629,000) |
| | 2024 | 122 (53) | 396,746,380 (255,645,520) | 135 (90) | 25,246,190 (17,744,090) | 41 (11) | 8,526,340 (2,551,910) |
| | 2025 | 74 (74) | 339,482,030 (339,482,030) | 115 (115) | 58,450,100 (58,450,100) | 59 (59) | 4,575,150 (4,575,150) |
| 군산 | 2021 | 146 (58) | 110,808,460 (47,901,100) | 96 (72) | 15,656,790 (14,628,030) | 22 (9) | 13,388,880 (5,858,590) |
| | 2022 | 96 (24) | 100,056,840 (50,414,600) | 93 (68) | 14,782,620 (12,835,770) | 18 (7) | 10,313,220 (4,195,880) |
| | 2023 | 116 (46) | 198,812,020 (138,268,080) | 101 (86) | 17,306,530 (16,643,840) | 18 (7) | 15,423,200 (5,728,380) |
| | 2024 | 110 (52) | 133,871,110 (58,881,360) | 68 (63) | 12,097,900 (11,742,500) | 17 (8) | 10,757,030 (4,824,480) |
| | 2025 | 36 (36) | 40,409,600 (40,409,600) | 12 (12) | 4,490,330 (4,490,330) | 19 (19) | 4,706,260 (4,706,260) |

(단위: 건,원)

| 무역원명 | 연도 | 임대료 미납 | | 연체료 미납 | | 공동부담금 미납 | |
|---|---|---|---|---|---|---|---|
| |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 대불 | 2021 | 112 (54) | 156,770,560 (81,903,950) | 223 (174) | 31,799,010 (31,040,890) | 18 (-) | 7,024,260 (-) |
| | 2022 | 61 (25) | 132,159,530 (74,587,000) | 79 (46) | 21,633,760 (19,083,070) | 18 (-) | 3,670,300 (-) |
| | 2023 | 38 (9) | 90,476,380 (20,899,880) | 49 (46) | 13,154,160 (12,857,400) | 17 (1) | 7,296,320 (785,100) |
| | 2024 | 26 (11) | 58,979,220 (36,478,240) | 42 (37) | 12,114,460 (11,942,900) | 9 (3) | 1,599,600 (203,250) |
| | 2025 | 5 (5) | 9,148,060 (9,148,060) | 32 (32) | 6,641,630 (6,641,630) | 9 (9) | 902,970 (902,970) |
| 동해 | 2021 | 16 (-) | 12,919,400 (-) | 3 (-) | 9,870 (-) | 8 (-) | 1,654,010 (-) |
| | 2022 | 29 (1) | 27,088,880 (924,350) | 13 (-) | 190,650 (-) | 13 (-) | 2,336,320 (-) |
| | 2023 | 39 (4) | 38,225,340 (5,523,280) | 13 (2) | 84,180 (10,460) | 17 (2) | 3,523,950 (1,156,780) |
| | 2024 | 84 (58) | 73,304,740 (50,584,640) | 125 (111) | 1,881,330 (1,747,350) | 30 (21) | 13,831,110 (10,770,350) |
| | 2025 | 165 (165) | 94,902,400 (94,902,400) | 221 (221) | 5,290,300 (5,290,300) | 122 (122) | 9,977,660 (9,977,660) |
| 율촌 | 2021 | 42 (42) | 45,005,270 (45,005,270) | 32 (32) | 1,916,440 (1,916,440) | 15 (15) | 5,474,150 (5,474,150) |
| | 2022 | 40 (36) | 93,218,260 (91,587,960) | 45 (45) | 21,277,850 (21,277,850) | 16 (12) | 6,729,940 (5,408,440) |
| | 2023 | 50 (31) | 74,925,280 (47,548,460) | 78 (67) | 17,419,520 (16,394,270) | 19 (9) | 6,720,860 (2,707,370) |
| | 2024 | 73 (62) | 76,535,070 (65,634,870) | 74 (72) | 13,193,700 (13,174,100) | 12 (10) | 7,303,830 (6,767,110) |
| | 2025 | 69 (69) | 88,740,030 (88,740,030) | 81 (81) | 14,213,310 (14,213,310) | 58 (58) | 5,242,240 (5,242,240) |
| 울산 | 2021 | 7 (-) | 14,946,950 (-) | 61 (54) | 28,279,880 (27,997,570) | 4 (-) | 11,181,350 (-) |
| | 2022 | 23 (1) | 70,984,410 (2,301,710) | 117 (72) | 41,086,380 (27,101,150) | 11 (1) | 2,705,050 (424,150) |
| | 2023 | 26 (2) | 105,556,150 (289,800) | 83 (51) | 30,908,210 (21,787,140) | 13 (3) | 2,855,440 (13,400) |
| | 2024 | 3 (-) | 1,670,070 (-) | 47 (41) | 13,218,670 (13,149,750) | 4 (-) | 236,040 (-) |
| | 2025 | 11 (11) | 18,163,890 (18,163,890) | 44 (44) | 2,519,390 (2,519,390) | 8 (8) | 261,840 (261,840) |
| 김제 | 2021 | 104 (52) | 73,086,180 (72,008,510) | 17 (-) | 803,360 (-) | 26 (17) | 13,790,790 (11,135,470) |
| | 2022 | 126 (63) | 162,096,550 (98,720,400) | 141 (115) | 940,970 (560,260) | 34 (27) | 14,574,460 (10,590,760) |
| | 2023 | 240 (120) | 282,558,620 (212,071,140) | 127 (74) | 1,619,570 (949,730) | 66 (30) | 16,772,070 (9,375,320) |
| | 2024 | 236 (118) | 287,789,450 (238,392,410) | 180 (120) | 1,831,050 (1,224,700) | 67 (48) | 13,353,710 (8,480,500) |
| | 2025 | 264 (264) | 238,639,290 (238,639,290) | 304 (304) | 3,406,520 (3,406,520) | 128 (128) | 11,861,010 (11,861,010) |

주) 괄호 안의 값은 2025년도말 기준 미납 현황을 의미하고, 괄호 밖의 숫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납 건 및 미납 금액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도입과 같은 체납관리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담당 직원 지정 및 정기적인 기업면담을 통한 입주기업 관리강화로 임대료·공동부담금·연체료 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산업통상부는 체납관리 제도 개편과 입주기업 관리강화가 실제 임대료·공동부담금·연체료의 체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셋째, 투자액이나 입주율 등이 저조한 무역원들이 존재하므로, 산업통상부는 무역원별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간 동해무역원은 외자 투자실적이 전무하나, 같은 기간 타 무역원은 외자 투자가 이루어졌음.

[2021~2025년 무역원별 업체 수 및 투자액 현황]

| 무역원명 | 연도 | 업체수(외투기업수) | 투자액 | |
|---|---|---|---|---|
| | | | 내자(백만원) | 외자(천$) |
| 마산 | 2021 | 126(66) | 24,468 | 4,989 |
| | 2022 | 127(65) | 5,308 | 519 |
| | 2023 | 131(61) | 11,178 | - |
| | 2024 | 127(57) | 1,722 | - |
| | 2025 | 125(55) | 891 | 750 |
| 군산 | 2021 | 31(17) | 205,800 | - |
| | 2022 | 28(15) | 6,230 | - |
| | 2023 | 28(14) | 67,300 | - |
| | 2024 | 28(14) | - | - |
| | 2025 | 28(14) | 136,600 | 239 |
| 대불 | 2021 | 33(17) | 15,000 | - |
| | 2022 | 32(16) | - | - |
| | 2023 | 31(15) | 4,000 | - |
| | 2024 | 30(16) | 40,900 | 76 |
| | 2025 | 29(14) | 7,300 | - |
| 동해 | 2021 | 19(8) | 338 | - |
| | 2022 | 20(9) | 3,670 | - |
| | 2023 | 26(8) | 8,184 | - |
| | 2024 | 24(8) | 765 | - |
| | 2025 | 26(8) | 114 | - |
| 율촌 | 2021 | 20(14) | 1,335 | 109 |
| | 2022 | 20(15) | 6,967 | 77 |
| | 2023 | 18(16) | 24,510 | 603 |
| | 2024 | 20(16) | 6,201 | 105 |
| | 2025 | 18(15) | 3,426 | 76 |

| 무역원명 | 연도 | 업체수(외투기업수) | 투자액 | |
|---|---|---|---|---|
| | | | 내자(백만원) | 외자(천$) |
| 울산 | 2021 | 39(9) | 30,845 | - |
| | 2022 | 41(8) | 39,402 | 86 |
| | 2023 | 41(7) | 6,260 | - |
| | 2024 | 41(7) | 4,700 | 75 |
| | 2025 | 40(7) | - | - |
| 김제 | 2021 | 34(23) | 20,686 | - |
| | 2022 | 37(23) | 23,988 | 100 |
| | 2023 | 40(23) | 17,710 | - |
| | 2024 | 37(22) | 34,283 | - |
| | 2025 | 39(23) | 25,414 | 520 |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기준 입주율[19]의 경우 대부분의 무역원이 90% 이상이었으나, 동해 79.6%, 율촌 78.5%, 김제 83.5%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무역원들이 존재함.

[2021~2025년 무역원별 가동현황]

(단위: 개사, %, 명)

| 무역원명 | 연도 | 가동업체 | 휴·폐업 | 건설 및 가동준비 | 입주율 | 고용인원 |
|---|---|---|---|---|---|---|
| 마산 | 2021 | 121 | 5 | 5 | 97.2 | 5,314 |
| | 2022 | 125 | 4 | 2 | 96.9 | 5,625 |
| | 2023 | 127 | 2 | 4 | 98.1 | 5,662 |
| | 2024 | 125 | 5 | 2 | 98.8 | 5,551 |
| | 2025 | 124 | 3 | 1 | 99.4 | 5,537 |
| 군산 | 2021 | 26 | - | 5 | 98.5 | 1,905 |
| | 2022 | 26 | - | 2 | 89.7 | 1,977 |
| | 2023 | 27 | - | 1 | 91.9 | 1,994 |
| | 2024 | 28 | - | 0 | 92.0 | 1,951 |
| | 2025 | 25 | - | 3 | 93.3 | 2,208 |
| 대불 | 2021 | 29 | - | 4 | 97.8 | 962 |
| | 2022 | 30 | - | 2 | 97.3 | 1,236 |
| | 2023 | 30 | - | 1 | 97.5 | 1,320 |
| | 2024 | 30 | - | 0 | 97.8 | 1,475 |
| | 2025 | 29 | - | 0 | 97.8 | 1,546 |

19) (입주면적/입주가능면적)×100

(단위: 개사, %, 명)

| 무역원명 | 연도 | 가동업체 | 휴·폐업 | 건설 및 가동준비 | 입주율 | 고용인원 |
|---|---|---|---|---|---|---|
| 동해 | 2021 | 14 | - | 5 | 92.9 | 130 |
| | 2022 | 14 | 1 | 5 | 95.9 | 129 |
| | 2023 | 18 | 3 | 5 | 95.9 | 154 |
| | 2024 | 20 | 2 | 2 | 73.7 | 179 |
| | 2025 | 20 | 2 | 4 | 79.6 | 198 |
| 율촌 | 2021 | 12 | - | 8 | 77.2 | 284 |
| | 2022 | 12 | - | 8 | 82.9 | 260 |
| | 2023 | 12 | - | 6 | 83.5 | 228 |
| | 2024 | 13 | - | 7 | 87.1 | 256 |
| | 2025 | 15 | - | 3 | 78.5 | 283 |
| 울산 | 2021 | 39 | - | 0 | 98.8 | 1,401 |
| | 2022 | 36 | - | 5 | 100 | 1,197 |
| | 2023 | 36 | - | 5 | 100 | 1,241 |
| | 2024 | 36 | - | 5 | 100 | 1,268 |
| | 2025 | 38 | - | 2 | 100 | 1,525 |
| 김제 | 2021 | 28 | - | 6 | 61.0 | 597 |
| | 2022 | 29 | - | 8 | 70.2 | 559 |
| | 2023 | 30 | - | 10 | 80.4 | 737 |
| | 2024 | 28 | - | 9 | 80.4 | 710 |
| | 2025 | 30 | - | 9 | 83.5 | 789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원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각 무역원에 개별 피드백을 주고 개선방향을 공유·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B등급[20]을 받은 동해와 율촌 무역원에 대한 피드백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입주율 제고 등과는 무관하였음.

20) 무역원 평가등급은 S·A·B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B등급 무역원 대상 제공 피드백 및 개선여부]

| 평가연도 | 무역원명 | 제공된 피드백 내용 | 피드백 반영 및 개선여부 |
|---|---|---|---|
| 2024년 | 동해 | ㅇ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R&D 사업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ㅇ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강원TP 기업지원사업, 동해시 기업지원 등을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br>- AI 활용·마케팅·실무·직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9개사 참여)<br>- 기업 진단·컨설팅을 통해 8개사에 대해 공정개선, 디자인·마케팅, 물류지원,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등 지원 실시 |
| | 율촌 | ㅇ 미가동 업체에 대한 실효적인 계획 및 방안 마련 필요 | ㅇ 미가동 업체 2개사에 시정명령, 1개사에 직권 입주계약 해지 조치<br>→ '25년 입주기업 18개(가동 15, 가동준비 3)로 실가동률 83% (전년대비 29% 상승) |

자료: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를 통해 무역의 진흥, 고용 창출, 기술의 향상 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입주율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21]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유관기관(지자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함께 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자유무역지역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투자유치를 강화하고[22] 건축 미이행 업체 등 부실기업 퇴출 및 관리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실가동률 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므로,[23]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무역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1) 산업통상부는 입주율은 부실기업 퇴출 등 일시적인 재구조화의 일환이며, 유사지역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임.

22) 김제관리원은 2025년에 국내외 전시회 홍보활동(3회), 입주상담(16건), 방문상담(3회), 유관기관 수시협의 등을 통해 3개 기업(투자액 573억원, 387명 고용)을 유치하였음.

23) 율촌관리원은 2025년에 시정명령(2건), 청문(2건), 계약해지(1건) 등 지속적인 실가동률 제고활동을 통해 65%('24) → 83%('25) 실가동률 상승

<세 출>

# 4.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가. 개 요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은 23,000$m^3$급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 건조지원 및 국내 개발 기자재 시스템 탑재 및 해상 실증을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5억원 중 2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45.8%)되고 2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5년도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한국형암모니아 벙커링선박건조지원 | 500 | 500 | - | - | 500 | 229 | - | 271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부는 공고기간 내 신청기관이 없어 계획대로 사업의 추진과 집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24) 일반회계-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3171-370)(제조산업정책관)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6]

산업통상부는 암모니아벙커링 선박 건조 이후 해상 실증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요 추진 근거인 국제 해운 탄소 중립 규제의 적용시점이 연기되고,[27] 국내 암모니아 수요가 불확실해지는 등 사업여건이 변화하여 수행기관이 미선정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2025년도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사업 당초 계획대비 추진 실적]

| 절차 | | 당초계획 | 실제 |
|---|---|---|---|
|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기관 공모)** | **'25.1.20.~ '25.3.20.(60일)** | **(1차)'25.1.20.~'25.3.20.(60일) (2차)'25.4.2.~'25.4.30.**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공고기간 내** | **신청기관 없음** |
|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4월 | - |
| 평가결과 보고 및 산업부 확정 / 평가결과 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 → 신청기관 | 4월 | - |
| 이의신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5월 | - |
| 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전문기관 → 신청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5월 | - |
| 신규과제 협약 체결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5월 | - |
| 과제 진도점검 등 관리 |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12월 | - |
| 최종 평가 |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9.3월 | - |
| 연구개발비 정산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29.3월 | - |
|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29.12월 | - |

자료: 산업통상부

2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5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27) 산업통상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결정이 2026년 하반기로 연기('25.10.)되는 등 국제 탈탄소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해운업계의 관련 투자가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5년 연내 총 3차례에 걸쳐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였는데, 산업통상부는 공고 기간(2025년 4월 30일까지) 내 접수한 기업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2025년 5월 26일에도 보조사업자가 요청한 3,094만 2,720원을 교부하였음.

[2025년도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현황]

(단위: 원)

| 차수 | 보조금 교부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부) | |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신청일 | 신청금액 | 교부일(결정통지일자) | 교부금액 |
| 1차 | 2025.3.21. | 144,000,000 | 2025.3.24. | 144,000,000 |
| 2차 | 2025.4.21. | 53,760,000 | 2025.4.25. | 53,760,000 |
| 3차 | 2025.5.20. | 30,942,720 | 2025.5.26. | 30,942,720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 공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암모니아 선박기술 선점 경쟁 하에서 빠른 선박 설계 및 계약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수행기관이 미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신청·교부한 것은 교부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실상 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 디자인산업진흥 사업: 시제품 개발 사업들의 중복지원 부적정 등

## 가. 개 요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출연하여 디자인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시장확대 및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328억 4,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8)]

[2025년도 디자인산업진흥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디자인산업진흥 | 32,840 | 32,840 | - | - | 32,840 | 32,840 | - | - | 34,52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을 통해 시제품 개발 사업들을 추진 중이나, 한 기업이 여러 사업에서 지원받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수요맞춤 디자인개발 지원·양산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시제품 개발사업들을 추진하였음.[29)]

다만 2021~2025년간 시제품 개발사업을 2개 또는 3개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들이 존재함. 예를 들어 2025년에는 4개 기업이 2개 시제품 개발 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총 2억 5,200만원을 지원받았고, 1개 기업이 3개 시제품 개발 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총 1억 700만원을 지원받았음.

28) 일반회계-디자인산업진흥(3688-301)(제조산업정책관)

29) ①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수요맞춤 디자인개발 지원, 양산화, 홍보·마케팅 지원), ②디자인·온라인제조 플랫폼서비스, ③디자인-기술협업전주기지원, ④지속가능디자인지원, ⑤디자인전문기업육성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시제품 개발 사업 중복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복참여 사업 수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기업 수 | 지원 금액 | 기업 수 | 지원 금액 | 기업 수 | 지원 금액 | 기업 수 | 지원 금액 | 기업 수 | 지원 금액 |
| 2개 | 3 | 170 | 7 | 308 | 4 | 150 | 5 | 249 | 4 | 252 |
| 3개 | - | - | - | - | - | - | 1 | 122 | 1 | 107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시제품 제작이라는 지원내용은 공통적이나 사업간 목적이 차별화되어 있고, 각 사업에서 지원되는 세부 과업은 분리되어 있으며, 사업 운용과정에서 동일한 내역에 대한 중복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디자인산업진흥과 정책의 균형적인 배분 측면에서는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기업이 시제품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시제품 개발사업의 중복 지원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30)]

**둘째,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5극3특 전략과 연계하여 미구축 지역에도 추가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 구축 이전에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의 활성화와 지역별 차별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2025년말 기준으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7곳(서울・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울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5극3특 전략과 연계하여 미구축 지역에도 추가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2021~2025년간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비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상품화 지원기업 수는 2025년 전년 대비 20개 감소하였으며 홍보영상제작 실적도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0) 산업통상부는 관련 지적 내용에 공감하며, 향후 디자인에 애로를 겪고 있는 다양한 기업이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2021~2025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개사, 명)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
| 사업비 | | 5,087 | 8,007 | 7,752 | 6,752 | 6,252 | 2022년 이후 지속 감소 |
| 기업 지원 | 디자인 개발 | 73 | 95 | 119 | 120 | 100 | 2025년 지원금액 증액으로 지원기업 감소 (지원금액 2,500만원→3,000만원) |
| | 상시 컨설팅 | 300 | 419 | 438 | 522 | 566 | - |
| 홍보 지원 | 홍보영상 제작 | - | 127 | 50 | 15 | 13 | 제조기업이 필요한 국내 · 외 판로개척 지원 체계로 전환 (2025년부터 해외홍보 추가 지원) |
| | 국내외 홍보 | 35 | 58 | 33 | 45 | 42 | |
| 인프라 활용 | 교육 | 7 | 8 | 6 | 1 | - | 인프라 활용 확대를 통한 지역 내 구심점 역할 강화 |
| | 스마트 스튜디오 등 | 119 | 219 | 880 | 1,105 | 1,235 | |
| | 세미나 | - | 12 | 8 | 15 | 15 |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제조혁신센터에서의 상시컨설팅과 스마트스튜디오 활용 지원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혁신센터를 통한 기업의 디자인 개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31)]

다만 상시컨설팅 횟수 증가와 스마트스튜디오 활용 지원실적 증가를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전반의 기능 고도화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연계한 제조혁신센터별 차별화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의 추가 구축에 앞서 센터의 기능 고도화 및 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1) 제조혁신센터 디자인 개발 수요: ('23년) 4.7:1 → ('24년) 6:1 → ('25년) 7.5:1

# 6.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사업: 협약 대비 실제 예산 감액에 따른 중단 과제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는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의 기술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4억 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2)]

[2025년도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민군기술협력(R&D) (산업부) | 18,403 | 18,403 | - | - | 18,403 | 18,403 | - | - | 18,97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협약 대비 실제 사업 예산 감액으로 2건의 과제 중단이 발생하였는데, 과거 연구 내용이 매몰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추진되었던 ‘건선거용 상가 블록 설치 자동화 시스템 개발’[33)], ‘DDH 구축함용 고내식(PREN 40 이상) 해수 펌프 제조기술 개발’[34)] 2개 과제가 당초 협약 대비 사업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2025년 연도 중 중단되었음.

---

32) 일반회계-민군기술협력(R&D)(산업부)(3173-406)(제조산업정책관)

33) 해양에서 우수한 특성(인장특성/내부식성/응력부식균열 등)을 보유한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Gr. 5A) 스틸을 적용한 DDH 구축함(헬기탑재 구축함)용 해수 펌프 부품 3종을 개발하는 과제임.

34) 함정 점검·보수를 위한 도크 블록 설치 시 민간의 무인화 로봇(자재 부품 운반 기술)을 적용하여 무인 자동화함으로써 정비시간을 감소하고, 도크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임.

[2025년도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과제 중 예산 감액에 따른 과제 중단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당초 연구 기간 | 실제 연구 기간 | 당초총 연구비 | 실제지급 연구비 | 연구 기관 | 중단사유 | 중단일 |
|---|---|---|---|---|---|---|---|
| 건선거용 상가 블록 설치 자동화 시스템 개발 | '22.6.1.~ '25.5.31. | '22.6.1.~ '25.5.28. | 5,000 | 4,110 | ○○○ | 정부예산감액에 따른 과제중단 | '25.5.27. |
| DDH 구축함용 고내식 (PREN 40 이상) 해수 펌프 제조 기술 개발 | '23.6.1.~ '25.5.31. | '23.6.1.~ '25.5.28. | 2,000 | 1,413 | ○○○ | 정부예산감액에 따른 과제중단 | '25.5.27. |

주) 실제 연구기간과 중단일은 공식적으로 과제가 중단된 시점 기준이며, 과제는 실질적으로 중단일 이전부터 수행되지 못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감액이 연구과제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음.

실제로 '건선거용 상가 블록 설치 자동화 시스템 개발' 과제의 경우 당초 협약에 따르면 2024년에 8억원, 2025년에 5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편성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4년 4억 1,000만원, 2025년 2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에 최종 국방 규격화를 위한 추가 공정 재현 실험과 개발품 신뢰성 평가가 불가능하여 중단되었음.

'DDH 구축함용 고내식(PREN 40 이상) 해수 펌프 제조 기술 개발' 과제의 경우 당초 협약에 따르면 2024년 10억원, 2025년 1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편성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2024년 5억 1,300만원, 2025년 5,400만원만 편성되었으며, 2025년에 로봇 플랫폼 제작·수정 및 시험평가용 테스트 블록 제작비 등 부족으로 중단되었음.

[2025년도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예산 감액에 따른 중단과제 정부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협약 | 실제 | 협약 | 실제 | 협약 | 실제 | 협약 | 실제 |
| 건선거용 상가 블록 설치 자동화 시스템 개발 | 2,900 | 2,900 | 800 | 800 | 800 | 410 | 500 | 271 |
| DDH 구축함용 고내식(PREN 40 이상) 해수 펌프 제조 기술 개발 | - | - | 900 | 900 | 1,000 | 513 | 100 | 54 |

자료: 산업통상부

중단 과제 성과의 직접적인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제중단은 연구비의 부정사용 또는 불성실 실패 등으로 인한 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중간 성과물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중단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결과들이 매몰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과제 검토·파생연구 기여 등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7.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내실있는 수요조사 및 적기 지방비 매칭 노력 필요

## 가. 개 요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은 지역 유통산업 관련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문제 해결형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과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8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4%)되고 1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35)]

[2025년도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 2,000 | 2,000 | - | - | 2,000 | 848 | - | 1,152 | 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부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조건 하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비 매칭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내실있는 사업 기획과 적기 지방비 매칭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코로나 및 지방소멸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유통 역량을 활용한 상생협력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5월 24일간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59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설문조사 결과가 회수되었고, 산업통상부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하였는데, 설문조사에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35) 일반회계-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4302-303)(중견기업정책관)

[2025년도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사전설문조사 항목]

**1. 귀 기초지자체는 전통시장의 보존과 활성화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우수하다
⑤ 매우 우수하다

**2. 귀 기초지자체는 전통시장/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

① 정부의 지원(예산 등) ② 대형유통의 상생협력
③ 상인들의 자구 노력 ④ 대형유통에 대한 규제
⑤ 기타( )

**3. 귀 기초지자체는 전통시장/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상생협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4. 전통시장/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상생협력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선택 가능) ( )**

① 대형마트의 기술력, 경험·노하우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② 대형마트와 물류망 연계, 공동구매 등을 통한 구매력 강화
③ 전통시장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주차장, 문화시설 등)
④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상생 FESTA(할인행사) 개최
⑤ 기타( )

**5. 사업의 세부 지원유형으로 ①배송·물류 지원, ②홍보·마케팅 지원, ③인프라 조성 지원, ④상생 FESTA 개최 지원 등을 검토중입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업 지원유형이나 사업추진에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실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2025년 2차에 걸친 모집을 통해 총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안성의 경우 실집행률이 29.2%로 부진하였고, 전주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36]

36) 산업통상부는 사업이 2025년 연내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2026년 7월까지 전주와 안성 모두 이월액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도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공모 현황]

| |
|---|
| 1차 공모('25.2.3.-5.9.) : 3개 지자체 지원(안성, 전주, 창원), 1개 지자체 선정(안성)<br>2차 공모('25.7.25.-8.31.) : 3개 지자체 지원(부산, 전주, 청주), 3개 지자체 선정 |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도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전체 | 2,000 | 2,000 | 848 | 848 | - | 848 | 527 | 848 | 527 | 285 | 35 | 26.4 |
| 부산 | 500 | 500 | 500 | 500 | - | 500 | 465 | 500 | 465 | - | 35 | 92.9 |
| 청주 | 500 | 500 | 48 | 48 | - | 48 | 48 | 48 | 48 | - | - | 100.0 |
| 안성 | 500 | 500 | 50 | 50 | - | 50 | 15 | 50 | 15 | 35 | - | 29.2 |
| 전주 | 500 | 500 | 250 | 250 | - | 250 | - | 250 | - | 250 | - | - |

자료: 산업통상부

이러한 집행 부진의 원인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모 단계에서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지연되었고, 자본보조 제한에 따른 기획·추진 제한, 지자체 차원의 대형유통사와의 협력 미흡,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지연 등이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결국 수요조사 당시와는 상이한 조건 하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상보다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면밀한 사업기획과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향후 지자체와 관련된 유사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여력 등을 사전에 고려하는 등 정교한 수요 파악과 기획을 위해 노력하고, 적기 지방비 매칭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8.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사업수행 지연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노력 필요 등

## 가. 개 요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양자협력국과 전략적 분야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942억 2,4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7]

[2025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업기술국제협력 (R&D) | 208,832 | 209,832 | - | - | 209,832 | 209,832 | - | - | 232,178 |
| 국제공동기술개발 | 94,224 | 94,224 | - | - | 94,224 | 94,224 | - | - | 91,37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상대국의 예산 환경 변화·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국제공동기술개발 협약체결이 지연되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협약지연이 발생한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 R&D 사업은 상대국이 있는 사업으로 각국의 상이한 예산 집행 방식과 사전절차 등의 조건 속에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과제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2025년 산업통상부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국제협력 R&D 과제 중 일부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사정으로 협약 체결 등이 지연되었으며, 연도 말에서야 관련 자금이 배정되었음.

37) 일반회계-산업기술국제협력(R&D)(3171-320)(산업기술융합정책관)

[2025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중 지연 사례]

(단위: 백만원)

| 연구과제명 | 자금교부시점 | | 연구수행국가 | 전략/양자/다자 | 당초 계획 대비 연구지연 사유 |
|---|---|---|---|---|---|
| | 교부액 | 교부시점 | | | |
| 차세대 배선용 금속 소재 증착을 위한 배치형 ALD 장비개발 | 250 | '25.12.26. | 체코 | 양자 | ㅇ상대국과 사전 합의된 절차별 일정을 근거로 공동공고(5.7.)에 명기, 과제접수마감(~7.9.) 이후 적격성 검토→ 결과 상호 공유 → 국별 평가 → 양국 평가결과 공유 → 최종 선정 과제 동시 통보 → 과제 협약 등을 공고문 기준 지체없이 진행함<br><br>※ 지원일정(공고문 기준):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1월)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12월)<br>**- 체코 측의 사정(체코측 10월~11월초까지 평가 실시)으로 체코 측 평가 직후 11.6. 양국 평가결과 컨센서스 미팅 진행, 12월말에 협약 체결**<br><br>※ 체코 측은 정례적으로 정기이사회(12월말)상정 과제 승인 후 차년도 1월 이후 과제 협약 진행 |
| RGB+D 영상 기반 고건축물/유물의 고해상도 3D 모델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 250 | '25.12.26. | 체코 | 양자 | |
| 차세대 2차전지 전극재 개발을 위한 스마트 급속 생산 장치개발 | 250 | '25.12.26. | 체코 | 양자 | |
| 산업용 수소보일러 안전 극대화를 위한 독립전원기반 100ppm급 미연소 수소감지 센서모듈 개발 | 260 | '25.12.29. | 독일 | 양자 | ㅇ상대국과 사전 합의된 절차별 일정을 근거로 공동공고(2.6.)에 명기, 과제 접수마감(~6.25.) 이후 적격성 검토→ 결과 상호 공유 → 국별 평가 → 양국 평가 결과 공유 → 최종 선정 과제 공동 통보 → 과제 협약 등 지체없이 진행함, 특히 11.21.에 컨센서스 미팅을 진행, 12월말 협약 체결<br><br>※ 지원일정(공고문 기준): 평가(~10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1월)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12월)<br><br>**※ 독일은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제시하고 각 4주의 기간을 주고 보완 요청받는 평가 구조** |
| 차세대 무선통신에 기반한 센서 탑재형 In-Track Type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자기부상 물류 이송시스템 개발 | 260 | '25.12.29. | 독일 | 양자 | |
| 정전용량형 미세가공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반 초고감도 초소형 공진형 힘 센서 개발 | 260 | '25.12.29. | 독일 | 양자 | |
| 차량용 rCF/Hemp Fiber 기반 섬유 구조체에서 비롯한 테이프, Net-shape 직물 그리고 복합재 개발을 위한 탄소섬유의 고효율 회수 및 가공 기술 개발 | 260 | '25.12.29. | 독일 | 양자 | |

(단위: 백만원)

| 연구과제명 | 자금교부시점 | | 연구수행국가 | 전략/양자/다자 | 당초 계획 대비 연구지연 사유 |
|---|---|---|---|---|---|
| | 교부액 | 교부시점 | | | |
| rCF/rAR/CF 하이브리드 원사 적용의 인발성형 기반 열경화성 복합재 및 이를 통한 구조물 보강공법 개발 | 260 | '25.12.29. | 독일 | 양자 | |
| Gaia-X 신뢰 프레임워크 및 IDSA 참조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데이터 주권 보장형 화학 데이터스페이스 및 지능형 서비스 개발 | 250 | '25.12.23. | 프랑스 | 양자 | ㅇ상대국과 사전 합의된 절차별 일정을 근거로 공동공고(5.12.)에 명기, 과제접수마감(~7.9.) 이후 적격성 검토→ 결과 상호 공유 → 국별 평가 → 양국 평가 결과 공유 → 최종 선정 과제 공동 통보 → 과제 협약 등 진행<br><br>※ 지원일정(공고문 기준):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8월) → 결과확정(~9월)→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10월)<br><br>- 다만, 국내평가는 8월에 진행하였으나 **프랑스 측의 평가 일정 지연으로 지원할 과제에 대한 양국 컨센서스 일정이 2개월 가량 지연되어 11.21.에 진행, 12월 말에 협약 체결** |
| 발암 표적 단백질의 특이적 제거를 위한 차세대 엑소좀 치료제 개발 | 250 | '25.12.23. | 프랑스 | 양자 | |
| AI 신뢰성 글로벌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데이터 및 모델의 진단・평가 자동화 통합 플랫폼 개발 | 250 | '25.12.23. | 프랑스 | 양자 | |
| 중대형 조선 부품 제조혁신을 위한 와이어-아크 기반 적층제조 및 품질 향상 AI 제어기술 개발 | 250 | '25.12.24. | 싱가포르 | 양자 | ㅇ상대국과 사전 합의된 절차별 일정을 근거로 공동공고(4.14.)에 명기, 과제접수마감(~7.11.) 이후 적격성 검토→ 결과 상호 공유 → 국별 평가 → 양국 평가 결과 공유 → 최종 선정 과제 공동 통보 → 과제 협약 등을 진행함<br><br>※ 지원일정(공고문 기준): 평가(~10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월)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11월)<br><br>**- 다만, 싱가포르측의 사정으로 양국 평가결과 컨센서스 미팅을 11.24.에 진행하고 12.23.에 협약 체결** |
| AI-RAN 융합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철 역사 인구 흐름 시뮬레이션 및 안전 최적화 기술 개발 | 250 | '25.12.24. | 싱가포르 | 양자 | |
| 복합 상황 인지 기반 도로 안전 기술 및 서비스 개발 | 250 | '25.12.23. | 다자 클러스터 (세부국가) | 다자 | ㅇ룩셈부르크, 핀란드, 스페인, 터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과제로 **해외국(핀란드) 평가결과가 특히 지연되어 12.17. 협약 체결** |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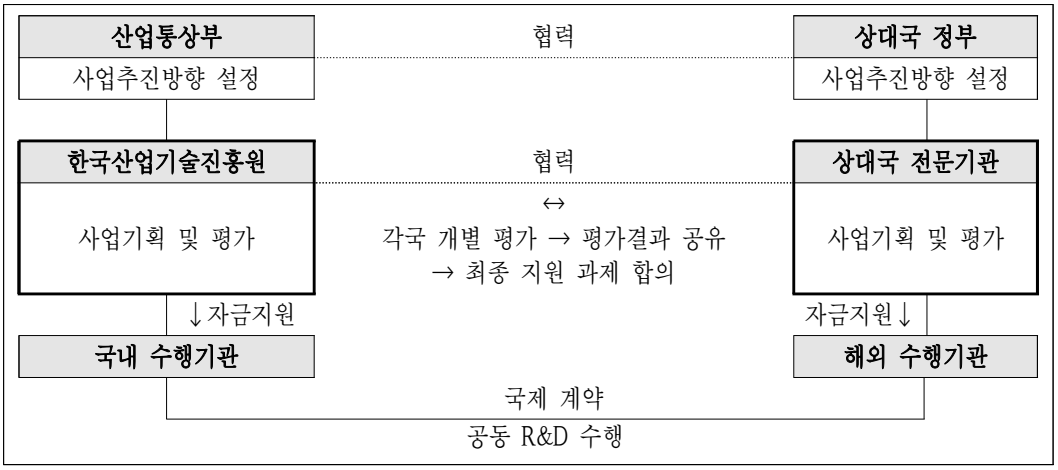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상대국의 예산 환경 변화·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25년은 특히 독일·프랑스·체코 및 싱가포르와의 과제 확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산업통상부는 협약지연이 발생한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들이 향후 추가 지연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내외공동연구기관의 과제 포기 및 경영악화 등으로 5건의 과제가 연도 중 중단되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춘 국내외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는 한국과 상대국이 각각의 R&D전문기관에서 연구기관의 경영상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상호교환하여 평가 진행 여부 등을 합의하는 절차로 추진되고 있음.

[2025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양자공동펀딩형 사업추진체계]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R&D) 세부사업 내 5개 과제가 연도 중 중단되었는데, 이 중 2개 과제가 국외공동연구기관의 과제 포기 및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으며, 2개 과제는 국내공동연구기관의 경영악화 및 수행지연으로 중단되었음.

[2025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중 중단 사례]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당초 연구기간 | 실제 연구기간 | 당초 총연구비 | 실제지급 연구비 | 제재사유 | 제재일 |
|---|---|---|---|---|---|---|
| 최신 정보보안 및 물리 표준규격과 성능을 만족하는 통합칩 | '22.7.1. ~'25.6.30. (1,095일) | '22.7.1. ~'25.6.30. (1,095일) | 3,000 | 3,000 | 연구비 용도외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 제1항 제1호) | '25.12.1. |
| 46xx 이차전지의 원통형 JELLEY ROOL 제조용 권치 장치 개발 | '23.10.1. ~'25.9.30. (730일) | '23.10.1. ~'25.7.28. (667일) | 1,000 | 750 | 국외공동연구기관의 과제 포기로 인한 계속수행 불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 제1항 제5호) | '25.7.28. |
| 천연컬러멜라닌을 활용한 친환경 컬러코스메틱 상용화기술개발 | '24.7.1. ~'27.6.30. (1,094일) | '24.7.1. ~'25.12.1. (518일) | 3,000 | 1,500 | 국내기관 경영악화 및 수행지연으로 인한 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 제1항 제5호) | '25.12.1. |
| 범용 항바이러스 및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 '24.7.1. ~'27.6.30. (1,094일) | '24.7.1. ~'25.12.1. (518일) | 3,000 | 1,500 | 국내기관 경영악화 및 수행지연으로 인한 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 제1항 제5호) | '25.12.1. |
| 귀뚜라미의 영양학적 특성의 활용을 위한 먹이원, 분석,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 | '24.11.1. ~'26.10.31. (729일) | '24.11.1. ~'25.12.24. (418일) | 400 | 300 | 국외공동연구기관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 제1항 제5호) | '25.12.24.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국내연구기관 선정 시 정해진 재무건전성 요건과 전문가 검토(회계사)를 통해 경영 부실기업은 사전에 제외하고 있으며, 국외연구기관 선정은 해당국 정부가 검토하여 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함.[38)]

그러나 '천연컬러멜라닌을 활용한 친환경 컬러코스메틱 상용화기술개발' 및 '범용 항바이러스 및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사업은 국내기관의 경영악화로 당초 연구기간(1,094일)의 절반도 수행하지 못하였음.

또한 '귀뚜라미의 영양학적 특성의 활용을 위한 먹이원, 분석,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 과제의 경우 2024년 11월 1일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약 1년 뒤인 2025년 12월 24일에 국외공동연구기관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계속 수행이 불가능해졌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제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수준의 연구역량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상대국 정부에서 자국의 평가지표와 재무건전성 기준 등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운 한계는 있으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전담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39)]

38)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해외 정부와 공동 펀딩하는 양자형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상대국 전문기관이 자국 연구기관의 적격성 및 재무 건전성을 자국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토·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상대국 연구기관의 경영상태는 해당 국가 전문기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자료요구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입장임. 또한 국가별 회계·공시·기업정보 체계가 상이하여 동일 기준에 따른 비교·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의 민감한 경영정보를 직접 요구할 경우 협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39) 해외 연구기관과의 사전적격성 검토결과 상호의견 교환 등의 관련 절차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9. 포항·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사업: 추경 편성 시 면밀한 기업수요 파악 및 인허가 가능성 검토 필요

## 가. 개 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사업은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적기 준공 지원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 전력·도로 및 용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119억 3,000만원 중 119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9억 2,400만원 중 18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70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40)]

[2025년도 포항·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첨단전략산업특화 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 25,213 | 142,221 | - | △8,366 | 133,855 | 114,812 | - | 19,043 | - |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 7,130 | 11,930 | - | - | 11,930 | - | - | 11,930 | - |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 10,780 | 17,290 | - | △8,366 | 8,924 | 1,881 | - | 7,043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포항과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인허가 및 신규투자 지연 등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거나 이월되어 타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추경 편성 시 기업의 수요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0) 일반회계-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3171-364)(첨단산업정책관)

이 사업 추진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41]에 따르면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포항의 경우 염처리수 지하관로 착공에 필요한 관할기관(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공사가 미착공 되어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새만금의 경우 전기차 캐즘(chasm)[42] 등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공장 신규투자 지연으로 전기 공급시설이 미착공되어 관련 예산 대부분이 타 사업으로 이용 또는 불용되었음.

[2025년도 포항·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 2025년 | | | | | | | |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 |
|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 7,130 | 11,930 | - | - | 11,930 | - [-] | 11,930 | - [-] | - | 11,930 |
| 새만금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 10,780 | 17,290 | - | △8,366 | 8,924 | 1,881 [1,881] | 8,924 | 1,881 [1,881] | - | 7,043 |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사업의 경우 염처리수 지하관로 설치 비용 지원비율 확대(30%→50%)를 위해 추경으로 4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사업의 경우 전력공급시설 설치 비용 지원비율 확대(25%→40%)를 위해 추경으로 6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83억 6,600만원을 환율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를 이유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부사업에 이용(증)하여 집행하였음.

4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지원방법) **①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42) 조기 수용자(early adopters)의 수요가 끝난 후, 다수 대중의 수요가 따라오지 않아서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간극'을 보여주는 현상이나 그 시기를 의미함.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
| | 세부사업 명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 목-세목 코드 |
| 이용 ('25.12.15)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364) | 350-02 (사업출연금) | 8,36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10) | 320-01 (민간경상보조) |

자료: 산업통상부

추경 증액분이 전액 불용된 것은 추경 편성 당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재원의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을 이용하여 타 사업에 집행한 것은 추경의 당초 취지대로 집행하지 못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짐.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추경편성 시 수요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43]

43) 산업통상부는 이 사업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투자 수요 제출 시 기업투자 규모·부담금·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원기업 요건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지원 검토기준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함.

# 10. 통합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가. 개 요

**‘통합지원사업’** 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민·관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04억 3,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4]

[2025년도 통합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출지원기반활용 | 91,364 | 180,171 | - | - | 180,171 | 180,171 | - | - | 181,074 |
| 통합지원사업 | 61,628 | 150,435 | - | - | 150,435 | 150,435 | - | - | 154,31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수출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요건(통상애로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평가를 통과한 후 선정되어야함.

이후 기업분담금(국고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을 부담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은 뒤 14개 분야[45]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

44)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무역정책관)

45) 조사/일반 컨설팅,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관리, 홍보동영상,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국제운송,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보험보증

[수출바우처(긴급지원바우처) 진행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으로부터 바우처서비스를 수임하지 못한 기업들이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역량 있는 수행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산업통상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 건수 및 바우처 금액을 살펴보면,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분야’에 집중되어있음.

[2025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단위: 건, 백만원, %)

| 서비스분야 | 서비스 건수 | 비중 | 바우처 금액 | 비중 |
|---|---|---|---|---|
| 조사/일반 컨설팅 | 586 | 2.5 | 5,586 | 4.4 |
| 디자인개발 | 1,678 | 7.1 | 8,969 | 7.1 |
| 브랜드개발/관리 | 78 | 0.3 | 935 | 0.7 |
| 홍보동영상 | 503 | 2.1 | 6,718 | 5.3 |
| 통번역 | 333 | 1.4 | 521 | 0.4 |
| 역량강화 교육 | 297 | 1.3 | 313 | 0.2 |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4,178 | 17.7 | 40,770 | 32.3 |
| 해외규격인증 | 2,989 | 12.6 | 9,858 | 7.8 |
| 특허/지재권 | 2,716 | 11.5 | 8,241 | 6.5 |

(단위: 건, 백만원, %)

| 서비스분야 | 서비스 건수 | 비중 | 바우처 금액 | 비중 |
|---|---|---|---|---|
| 홍보/광고 | 1,637 | 6.9 | 11,779 | 9.3 |
| 국제운송 | 7,891 | 33.4 | 29,517 | 23.4 |
| 서류대행/현지등록 | 302 | 1.3 | 682 | 0.5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247 | 1.0 | 2,071 | 1.6 |
| 무역보험보증 | 200 | 0.8 | 329 | 0.3 |
| 총합계 | 23,635 | 100.0 | 126,288 | 100.0 |

주) 바우처 금액은 기업분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분야별 수행기관 현황을 보면,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의 전체 수행기관 중 서비스를 미제공한 수행기관은 약 45.8%이고, 국제운송은 29.5%임.[46)]

[2025년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

(단위: 개사, 건, %)

| 구분 | 분야별 수행기관수 (A) | 서비스 제공 건수 | 2025년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B) | 비율(B/A) |
|---|---|---|---|---|
| 조사/일반 컨설팅 | 297 | 1,980 | 108 | 36.4 |
| 디자인개발 | 545 | 6,618 | 123 | 22.6 |
| 브랜드 개발/관리 | 54 | 367 | 18 | 33.3 |
| 홍보동영상 | 347 | 1,872 | 89 | 25.6 |
| 통번역 | 61 | 1,040 | 11 | 18.0 |
| 역량강화 교육 | 49 | 746 | 14 | 28.6 |
|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 277 | 2,293 | 127 | 45.8 |
| 해외규격인증 | 99 | 2,028 | 15 | 15.2 |
| 특허/지재권 | 402 | 7,662 | 50 | 12.4 |
| 홍보/광고 | 326 | 2,545 | 129 | 39.6 |
| 국제운송 | 319 | 4,458 | 94 | 29.5 |
| 서류대행/현지등록 | 91 | 612 | 37 | 40.7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101 | 425 | 30 | 29.7 |
| 무역보험보증 | - | - | - | - |

주) 분야 간 중복 포함(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46) 서비스 제공 건수에 지방자치단체 수출바우처 사업의 활용 실적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출바우처 사업 활용 실적을 반영할 경우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는 감소함.

수행실적이 없는 공급기업은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급기업 간 경쟁력에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공급기업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인이 악화될 수 있고, 해당 공급기업들의 경영악화나 서비스 품질 부실 등이 바우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 바우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자격 연장여부를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고 수입실적 등이 없는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있으며,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적이 없는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미수임 현황 및 계약종료 예정 안내 등으로 수임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들을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 또한 중요하나, 처음부터 충분한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춘 서비스 공급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47]

47)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①수행기관의 대외 정보공개에 관한 평가기준 신설, ②최근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기간 조정(3년→2년), ③우수 수행기관 발굴 및 유치, ④신규 수행기관 홍보강화 등을 통해 선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 11. 개별지원사업: 해외진출 기업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

## 가. 개 요

**‘개별지원사업’** 은 해외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7억 3,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8]

[2025년도 개별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출지원기반활용 | 91,364 | 180,171 | - | - | 180,171 | 180,171 | - | - | 181,074 |
| 개별지원사업 | 29,736 | 29,736 | - | - | 29,736 | 29,736 | - | - | 26,76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사화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 지사가 없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조사, 수출거래선발굴 등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또한 해외 주요 거래선관리 서비스, 마이오피스 서비스, 디지털 긴급 해외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또한 지원 받을 수 있음.

[2025년도 지사화 사업 분류표]

|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
| 일반 지사화 | 발전 (6개월 또는 1년) | 수출성약지원,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 법인설립 지원 등 |
| | 광역 (6개월 또는 1년) | |
| 지사화 부가 서비스 | 프리미엄지사화(1년) | 일반지사화 지원내용 또는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지원 |
| | 긴급지사화(3개월) | 긴급 성약 지원, 필수거래선관리, 전시회참가 및 후속지원 등 |
| | 거래선관리(1년) | 기존 거래선을 관리하여 거래관계 유지·확대 지원 |
| | 마이오피스(1년) | 참여기업이 무역관에 인력을 파견하여 무역관을 자사사무실로 활용 |
| | 디지털긴급출동지원 | 장비시운전, 제품시연 등 실시간 현장을 보여주며 긴급현안해결 |

자료: 산업통상부

48)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무역정책관)

## 나. 검토의견

**지사화 사업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존재하므로,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영세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을 통해 지사화사업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선정) 불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 중 지원(선정) 불가 기업]

다. 평가 시 참고사항
1) 지원(선정) 불가 기업 : 대기업 및 출자회사, 유관기관, 현지거점 보유기업, 휴 · 폐업 기업
①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갱신 · 발표하는 대기업* 및 소속회사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유관기관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ALIO 등재 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 출자 또는 민간기관
* 다수의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 등의 경우 회원사 지원을 위한 협회 명의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회원사의 개별 가입 필요
* 단, 차후 사업 취지 및 필요성 검토 후, 해외진출지원 등 공사와 협업이 가능한 선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원 가능
**③ 현지거점 보유기업 : 지사화사업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현지 법인이 무역관 소재 도시에 없는 경우 지원 가능**
④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자료: 산업통상부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지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지사화 사업을 지원받은 사례가 5건 확인되었음.

산업통상부는 지원받은 기업은 현지에 직원 1인만 파견한 영세 사업자이거나 현지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형식적인 지사만을 설립한 경우로 지사화 사업이 종료될 경우 향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이었다고 설명함.

[2025년 현지거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화 사업이 지원된 사례]

| 무역관 (국가) | 기업명 | 현지 거점 보유 기업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 지사화 사업 유형 | 협약기간 | 지사화사업 지원 사유 |
|---|---|---|---|---|---|
| 마드리드 (스페인) | (주)○○○○ | ○○○○ ○○○○○○○○○○○○○○ ○.○○ (판매법인,2022) | 긴급 지사화 | 2025.5.12. ~2025.8.9. | 파견 1인 법인 |
| 비엔티안 (라오스) | ㈜○○○ ○○○ | ○○○○○○○ ○○○○○○ ○○○ ○○○○ ○○., ○○○. (지사/지점,2020) | 거래선 관리 | 2025.7.1. ~2026.6.30. | 지사만 설립 인력 없음 |
| 로스 앤젤레스 (미국) | (주)○○○○ | ○○○○ ○○○ ○○○. (판매법인,2014) | 일반 지사화 | 2025.7.1. ~2026.6.30. | 파견 1인 법인 |
| 도쿄 (일본) | 주식회사 ○○○○ | ○○○○○○○○○○ ○○○○○○○., ○○○. (서비스법인,2015) | 일반 지사화 | 2025.5.1. ~2026.4.30. | 파견 1인 법인 |
|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 주식회사 ○○○○ | ○○○ ○○○○○ ○○○○○○○○○○ ○○, ○○○ (지사/지점,2016) | 일반 지사화 | 2025.7.1. ~2026.6.30. | 파견 1인 법인 |

자료: 산업통상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거점의 물리적인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사화 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보다 기업의 영세성 또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사화사업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해외거점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필요 시 지사화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2.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 노력 필요

## 가. 개 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는 향후 10~20년 내 도래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49]을 확보하기 위해 10대 판기술 연구테마의 도전·혁신형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중 8억원을 집행(집행률 16.0%)하고 42억원이 불용되었음.[50]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 5,000 | 5,000 | - | - | 5,000 | 800 | - | 4,200 | 4,03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조정되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업통상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51]에 따라 예

49)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판기술’은 신시장 창출 또는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으로 우리 산업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를 의미함.

50) 일반회계-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3174-367)(산업기술융합정책관)

5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

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예산안 편성 당시 기준으로 총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이며, 산업통상부가 요구한 총사업규모는 9,785억 8,200만원 규모였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52]은 이 사업과 같이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은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결국 2025년 1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적정성 검토 결과 1차년도 총사업비가 8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42억원이 불용되었음.[53]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 요약]

| | 사업계획서(원안)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대안) |
|---|---|---|
| 사업비<br>(정부/민간) | 9,785.82억 원<br>(7,250억 원 / 2,535.82억 원) | 3,026억 원<br>(2,726억 원 / 300억 원) |
| 사업기간 | 2025 ~ 2034년(10년) | 2025 ~ 2035년(11년) |
| 사업비<br>구성 | ㅇ 테마별 연구비 : 평균 961.7억 원<br>ㅇ 총괄 과제 : 168.5억 원<br>ㅇ 민간 분담 : 2,535.82억 원 | ㅇ 테마별 연구비 : 평균 288억 원<br>ㅇ 총괄 과제 : 146억 원<br>ㅇ 민간 분담 : 300억 원<br>※ 선행 유사 사업 단가 준용 : 총 10개 테마 |

자료: 산업통상부

---

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5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한다.

53) 1차년도는 테마 발굴 및 기획 중심으로 추진하고 2차년도부터 테마별 연구를 착수하는 방식으로 조정됨.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산 총괄표]

(단위: 억원)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합계 |
|---|---|---|---|---|---|---|---|---|---|---|---|---|
| 국비 | 8 | 40.3 | 75.9 | 202.3 | 292.9 | 410.5 | 408.5 | 412 | 413.5 | 292.2 | 169.9 | 2,726 |
| 민자 | - | - | - | 15 | 30 | 50 | 50 | 50 | 50 | 35 | 20 | 300 |
| 총예산 | 8 | 40.3 | 75.9 | 217.3 | 322.9 | 460.5 | 458.5 | 462 | 463.5 | 327.2 | 189.9 | 3,026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고 재정당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편성된 예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간의 괴리로 인해 관련 예산이 불용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음.[54)]

따라서 정부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54)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 13. WTO 분쟁 대응 사업: 자금확보 이전 입찰공고 주의 필요

## 가. 개 요

**‘WTO 분쟁 대응’** 은 WTO 통상 규범 위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통상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5억 6,600만원 중 115억 1,2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5%)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55)]

[2025년도 WTO 분쟁 대응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통상분쟁대응 | 18,031 | 18,031 | 68 | - | 18,099 | 17,754 | - | 345 | 15,432 |
| WTO 분쟁 대응 | 11,566 | 11,566 | - | - | 11,566 | 11,512 | - | 53 | 8,04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세목조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이전에 WTO Public Forum 한국 세션 개최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계약에 필요한 세목이 아직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이와 같은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WTO Public Forum 한국 세션’[56)] 개최를 위해 2025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내었음.

입찰공고를 실시한 시점에는 아직 ‘WTO Public Forum 한국 세션’ 개최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산업통상부는 2025년 8월 21일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9,8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증)하고 바로 당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55) 일반회계-통상분쟁대응(1936-401)(다자통상법무관)

56) WTO에서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하여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로, 2025년에는 WTO 사무국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한국이 선정되었으며 ‘디지털 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함.

[2025년도 통상분쟁대응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세목조정 (2025.8.21.) | 통상분쟁대응 (1936-401) | 210-01 | 98 | 통상분쟁대응 (1936-401) | 210-14 | WTO Public Forum 한국 세션 개최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WTO Public Forum 한국 세션 개최가 확정된 후 사업 추진의 시급성으로 인해 세목조정 이전에 용역공고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세목조정을 통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를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하면, 추후 세목조정 등을 통한 예산조정이 어렵거나 조정 규모가 상이할 경우 안정적인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가급적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4.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사업: 법적근거 없는 출연금 예산 편성 주의 필요

## 가. 개 요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사업은 비R&D 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집행률 12.8%)하고 2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57]

[2025년도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 1,199 | 1,199 | 110 | 320 | 1,309 | 843 | 142 | 324 | 838 |
| 산업기술 개발장비도입 심의지원 | 320 | 320 | - | 320 | 320 | 41 | - | 279 | 32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내역과 달리 출연이 아닌 연구용역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관련 사업 기획을 철저히 하고 비R&D장비 도입과 관련된 공식적인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비R&D장비도입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R&D장비도입 심의 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NFEC”)에 출연하여 추진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NFEC의 심의 수요 과다로 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25년 6월 2일 출연금(320-02) 3억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260-01)로 전용(증)한 후 NFEC과 연구용역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추진되었으며, 4,100만원만 집행되고 2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음.

57) 일반회계-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3133-304)(정책기획관)

[2025년도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전용 (2025.6.2.) | 산업기술정보화 및정책지원 (3133-304) | 320-02 | 320 | 산업기술정보화 및정책지원 (3133-304) | 260-01 | 사업특성과 전문 검토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NFEC의 본래 업무인 R&D장비도입 심의에 추가로 비R&D 장비도입 심의를 하는 것은 검토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방식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연구용역을 통해 10건의 장비도입을 불인정하고, 103억원의 비용을 조정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로 보이나, NFEC 검토 수요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별도의 전용절차나 불용액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 연구용역 조정 결과]

(단위: 점, 백만원)

| 금액대 구분 | 수량 조정 결과 | | | | 비용 조정 결과 | | | |
|---|---|---|---|---|---|---|---|---|
| | 수량 | 도입인정 | 조건부 인정 | 도입 불인정 | 총 구축액 | 2026년 요구액 | 2026년 인정액 | 비고 |
| 1~3억원 미만 | 12 | 11 | 1 | - | 2,270 | 1,982 | 1,870 | △112 |
| 3~10억원 미만 | 15 | 12 | - | 3 | 6,710 | 4,561 | 3,716 | △845 |
| 10~50억원 미만 | 14 | 8 | - | 6 | 30,247 | 11,952 | 5,874 | △6,078 |
| 50억원 이상 | 2 | 1 | - | 1 | 17,300 | 5,695 | 2,430 | △3,265 |
| 합계 | 43 | 32 | 1 | 10 | 56,527 | 24,190 | 13,890 | △10,300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출연기관의 기존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단년도 연구용역방식이 아닌 공식적인 비R&D 장비 도입 심의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기술개발장비도입심의지원은 출연을 통해 비R&D사업을 통한 장비도입의 경우에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출연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통상부는 법적근거 없는 출연금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음.[58]

예를 들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59]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출연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던 비R&D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심의 지원은 R&D장비 도입과 달리 법적으로 의무인 절차가 아니며 이에 따라 비R&D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심의를 위한 출연의 법적근거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이 사업 출연의 근거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60] 및 제8조[61]를 제시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 정부

---

58)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5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6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연연구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출연금 근거 규정 입법례와 달리 비R&D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심의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출연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산업통상부는 출연금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는「국가재정법」제12조에 따라 법적근거가 미흡한 출연금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5.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산단환경 개선 실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 주의 필요

### 가. 개 요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산단환경개선펀드 제외)은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09억 2,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2]

[2025년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업단지환경조성 | 331,378 | 387,478 | - | - | 387,478 | 387,478 | - | - | 409,920 |
|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산단환경개선펀드 제외) | 99,828 | 110,928 | - | - | 110,928 | 110,928 | - | - | 179,940 |
| 휴폐업공장리모델링 | 8,400 | 8,400 | - | - | 8,400 | 8,400 | - | - | 14,000 |
| 청년문화센터건립 | 48,100 | 48,100 | - | - | 48,100 | 48,100 | - | - | 68,340 |
| 혁신지원센터구축 | 1,575 | 1,575 | - | - | 1,575 | 1,575 | - | - | 2,100 |
| 활력있고아름다운 거리조성플러스 | 29,253 | 29,253 | - | - | 29,253 | 29,253 | - | - | 52,300 |
| 노후청년공장리뉴얼 | 10,800 | 15,600 | - | - | 15,600 | 15,600 | - | - | 7,200 |
| 문화를담은브랜드 산단조성 | 1,700 | 3,000 | - | - | 3,000 | 3,000 | - | - | 21,000 |
| 청년친화형 공용편의시설 | - | 5,000 | - | - | 5,000 | 5,000 | - | - | 15,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지역경제정책관)

## 나. 검토의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 실집행 단계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재재이월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출연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자체 및 산단관리기관과 자금을 매칭하여 추진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 단계에서 집행이 부진하고 과거에 이월된 금액이 다시 재이월되었는데, 산단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자금 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단 환경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동해시는 작년에 이월된 36억 8,600만원 중 2,000만원만을 집행하고 36억 6,600만원은 다시 재이월되었으며, 당진시는 전년도 이월금 9,700만원과 새로 교부받은 17억원, 매칭자금 1,400만원을 합한 18억 1,100만원을 집행할 수 있었으나, 6,900만원만 집행하고 17억 4,2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2025년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집행 부진 사례]

(단위 : 백만원, %)

| 지자체명 | 내역사업명 | 2024년 | | | 2025년 | | | | | | | |
|---|---|---|---|---|---|---|---|---|---|---|---|---|
| | | 전전년도 이월금 ('23→'24)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금 ('24→'25) (A-B) | 교부액 | 매칭 | 교부 현액 | 최종 집행액 | 최종 집행률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동해시 | 혁신지원센터 구축 | 2,078 | 3,806 | 120 | 3,686 | - | | 3,686 | 20 | 0.54 | 3,666 | - |
| 춘천시 | 혁신지원센터 구축 | 647 | 1,218 | 638 | 580 | - | | 580 | - | - | 580 | - |
| 화순군 | 청년문화센터 건립 | 1,451 | 2,868 | 2,797 | 71 | - | - | 71 | - | - | 71 | - |
| 원주시 | 청년문화센터 건립 | 1,410 | 2,518 | 99 | 2,419 | - | 15 | 2,434 | 39 | 1.60 | 2,395 | - |
| 횡성군 | 청년문화센터 건립 | 1,536 | 2,594 | 227 | 2,367 | - | 46 | 2,413 | 46 | 1.91 | 2,367 | - |
| 금산군 | 청년문화센터건립 | 48 | 758 | 18 | 740 | 790 | 95 | 1,625 | 222 | 13.63 | 1,404 | - |
| 당진시 | 청년문화센터 건립 | - | 97 | - | 97 | 1,700 | 14 | 1,811 | 69 | 3.81 | 1,742 | - |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89조제1항[63]에서 특정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재이월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련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사업 준공까지 3~4년 이상 소요되는 건축(토목)사업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복잡한 사전 행정절차와 공공건축 심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최근 건축비 급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설계변경 및 지방비 추가 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대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사업통합세부운영요령을 2026년 1월 5일에 개정하여 조기착공 유도, 사업관리 강화, 협의체 정례화 등을 통해 실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2025년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통합세부운영요령 개정 내용]

| 전략 | 주요 내용 | 추진실적 |
|---|---|---|
| ① 예산구조 개편 | ㅇ (사업선정) 공모일정을 전년도 말로 조정하여 연초 사업 착수 가능하도록 조정<br>ㅇ (사업비 조정) 적정 연차별 사업비 배분액을 산출하여 조정<br>* 1~2년차(행정·설계 단계) 예산 축소, 3~5년차(공사 단계) 예산 확대 | ㅇ 거리사업 1차년도 사업비 조정 (2억~'25년→ 1억'26년) |
| ② 조기착공 유도 | ㅇ (해지기준 명시) 1년 이내 설계용역 未착수 또는 연차별 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 이후 6개월 내 개선 未이행 등으로 구체화<br>ㅇ (착공지연 방지) 착공기한 연장 한도를 최대 3년으로 설정 | ㅇ 운영요령 개정 ('26.1.5.) |
| ③ 사업관리 강화 | ㅇ (평가지표 조정)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배점 하향 조정<br>ㅇ (온라인시스템 활성화) 사업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상황 관리<br>ㅇ (참여제한) 사업부진으로 해지시 전담기관 3년 이내 범위에서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참여 제한 가능 | |
| ④ 협의체 정례화 | ㅇ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협의체 운영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br>* 지연 요소 확인 및 대응, 현장 애로 청취, 컨설팅 제공 등 | |
| ⑤ 관리의무 강화 | ㅇ 사업기간, 해지기준, 온라인시스템 입력 등 주요사항을 협약서 내 명문화<br>* 주요사항 구체화 및 명시하여 사업관리 의무에 대한 이행력 확보 | ㅇ '26년 선정 사업부터 반영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개정된 사업통합세부운영요령에 따라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추가 지연 없이 계획대로 산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16.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면밀한 투자처 선정 및 수익회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정부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93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4]

[2025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산업단지환경조성 | 331,378 | 387,478 | - | - | 387,478 | 387,478 | - | - | 409,920 |
| 산단환경개선펀드 | 119,300 | 119,300 | - | - | 119,300 | 119,300 | - | - | 72,5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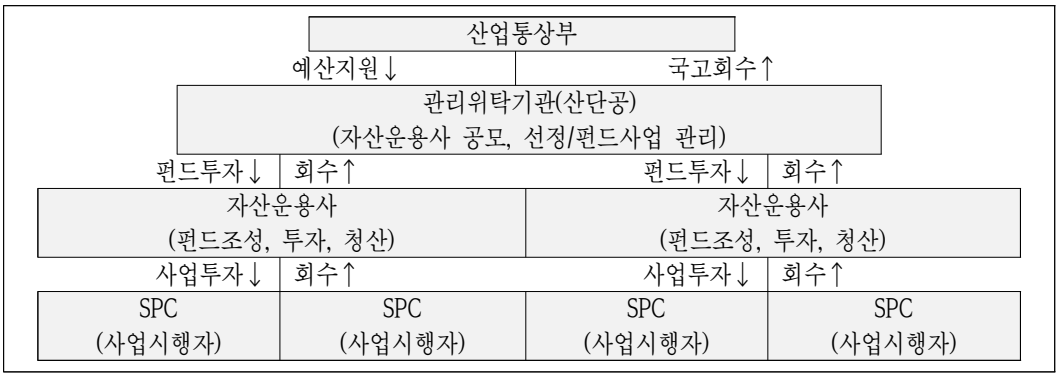
정부자금을 토대로 펀드를 결성한 후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SPC)에 교부되면, 사업시행법인이 근로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에 투자하게 됨.[65]

2020년 이전 조성된 펀드는 펀드결성 시점부터 10년간, 2021년 이후 조성된 펀드는 25년간 운용하고, 청산 시 출자금 및 배당이 국고로 귀속됨.

6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지역경제정책관)

65) 투자분야는 산업집적화촉진분야(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협동화시설 등), 창업·R&D·교육분야(창업·R&D센터, 직업훈련시설 등), 주거·편의·문화 분야(기숙사형 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서비스 분야(판매시설,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산업),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유통 시설 등)로 설정하고 있음.

[2025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체계]




자료: 산업통상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선정 이후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초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19~2025년간 선정 후 취소사업 규모는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2025년의 경우 9개 사업이 취소되어 전년 대비 5개 증가하였음.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총사업비 6,899억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선정 후 취소되었으나, 2025년의 경우 총사업비 1조 5,698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이 취소되었음.

[2019~202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선정 후 취소사업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
| 총사업비 | 722 | 4,047 | 4,454 | 5,578 | 8,872 | 6,899 | 15,698 | 46,270 |
| 건수 | 2 | 6 | 8 | 8 | 7 | 4 | 9 | 44 |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선정 후 취소사업 증가는 산단환경개선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대체 투자처 발굴 소요 시간 및 펀드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투자실적 부진 및 청산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최근 대외환경 악화와 사업부지 확보 곤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부 취소사업이 발생 되었고, 사업선정 전에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검토 및 부동산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5년 취소된 9개의 사업 중 5개의 사업이 2024년 2월 또는 6월에 선정되었으나 불과 1년만인 2025년 6월에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선정 후 2025년에 취소된 산단환경개선펀드 투자 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산업단지 | 투자사업 | 총사업비 | 정부 투자액 | 민간 투자액 | 취소사유 | 선정 시기 | 취소 시기 |
|---|---|---|---|---|---|---|---|
| 명지녹산 | 물류센터 | 2,027 | 100 | 1,927 |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 2023.2 | 2025.5 |
| 시화 | 물류센터 | 2,224 | 350 | 1,874 |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 2022.2 | 2025.2 |
| 양산 | 물류센터 | 3,750 | 430 | 3,320 |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 2020.5 | 2025.2 |
| 광주평동 | 지식산업센터 | 1,535 | 250 | 1,285 | 운용사해지(사업 지연) | 2021.4 | 2025.4 |
| 구미 | 비즈니스호텔 | 916 | 150 | 766 |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 2024.6 | 2025.6 |
| 울산미포 | 공업용수 공급시설 | 1,670 | 280 | 1,390 | 운용사해지(인허가 지연) | 2024.2 | 2025.6 |
| 천안제3 | 업무복합시설 | 801 | 250 | 551 |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 2024.2 | 2025.6 |
| 여수 | 암모니아 배관망 | 450 | 100 | 350 | 운용사해지(인허가 지연) | 2024.2 | 2025.6 |
| 창원 | 업무복합시설 | 2,325 | 400 | 1,925 | 사업자포기(사업성 악화) | 2024.2 | 2025.6 |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초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함으로써,[66] 선정 후 취소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산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매각지연 및 신규 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청산이 지연되거나 펀드 존속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투자 후 수익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1~2016년 투자된 펀드 중 일부는 2026년에 청산될 예정이나, 수요 부재 등으로 인해 자산이 매각되지 못하여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66) 산업통상부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의 사업성 검증, 인허가 가능여부, 현장실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변별력 및 심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청산시점이 도래한 산단환경개선펀드 투자 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조성 년도 | 산업 단지 | 사업내용 (투자대상) | 펀드결성액 | | | 청산 계획 | 청산지연 사유 |
|---|---|---|---|---|---|---|---|
| | | | 총 | 정부 | 민간 | | |
| 2011 | 반월 | 호텔 & 오피스텔 | 606 | 150 | 456 | 2026년 | 호텔 매각 진행 중이나, 시장침체 등 수요 부재로 매각 지연 |
| 2016 | 창원 | 지식산업센터 | 1,055 | 150 | 905 | 2026년 | 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
| 2016 | 익산 | 호텔·컨벤션 & 지식산업센터 | 657 | 220 | 437 | 2026년 | 호텔 매각 진행 중이나, 수요 부재로 매각 지연<br>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
| 2016 | 남동 | 지식산업센터 | 560 | 80 | 480 | 2026년 | 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
| 2016 | 청주 | 지식산업센터 | 930 | 150 | 780 | 2026년 | 금융권의 지식산업센터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 기업 신규수요 감소로 분양 지연 |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존속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 악화 및 매수수요 위축 등으로 미분양이 지속되어 2021~2025년 동안 5개 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수익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1~202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존속기간 연장사례]

(단위: 억원)

| 연장 연도 | 조성 연도 | 산업 단지 | 투자대상 | 펀드 규모 | 출자액 | | 당초 존속기한 | 연장 존속기한 | 연장 사유 |
|---|---|---|---|---|---|---|---|---|---|
| | | | | | 정부 | 민간 | | | |
| 2021 | 2011 | 반월 | 호텔& 오피스텔 | 606 | 150 | 456 | '11.12.29 ~'21.12.29. | '11.12.29. ~'26.12.29. | 호텔 자산가치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감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호텔경영 여건 악화 지속 |
| 2024 | 2014 | 구미 | 오피스텔 | 888 | 140 | 748 | '14.12.31. ~'24.12.31. | '14.12.31. ~'29.12.31. |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

(단위: 억원)

| 연장 연도 | 조성 연도 | 산업 단지 | 투자대상 | 펀드 규모 | 출자액 | | 당초 존속기한 | 연장 존속기한 | 연장 사유 |
|---|---|---|---|---|---|---|---|---|---|
| | | | | | 정부 | 민간 | | | |
| 2025 | 2015 | 부평 | 지식 산업센터 | 530 | 85 | 445 | '15.9.25. ~'25.9.25. | '15.9.25. ~'27.9.25. |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
| 2025 | 2015 | 성서 | 지식 산업센터 | 425 | 85 | 340 | '15.9.25. ~'25.9.25. | '15.9.25. ~'27.9.25. |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
| 2025 | 2015 | 시화 | 오피스텔 | 444 | 100 | 344 | '15.9.25. ~'25.9.25. | '15.9.25 ~'27.9.25. | 준공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수요는 있으나 실질적 매수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지속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대출규제 및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기업 수요가 감소하여 호텔 매각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최근 10년간(2016~2025년) 청산된 2개 펀드의 수익금 및 수익률 현황을 보면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할인분양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였는데, 존속기간이나 청산시점만을 연기할 경우 부실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할인매각의 가능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음.[67]

[2016~202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청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조합명 (펀드명) | 선정일 | 만료일 | 청산일 | 청산 | | 수익률 저조 사유 |
|---|---|---|---|---|---|---|
| | | | | 수익금 | 수익률 | |
| ○○○ | '12.12.27. | '22.12.27. | '22.12.16. | 15,441 | △3.49% | 일부 근린생활시설 할인분양에 따른 청산손실 |
| △△△ | '13.12.17. | '23.12.18. | '22.12.16. | 10,881 | 8.81% | - |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미청산 및 존속기간을 연장한 펀드들의 수익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미청산과 존속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펀드들의 관리 방안도 사전에 준비하여 수익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67)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존속기간 연장은 단순 연기가 아니라 자산별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수익원 발굴 등 자산가치 제고 노력을 병행하며, 시장 회복 시 수익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17.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 등

## 가. 개 요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유턴기업에게 입지・설비 투자액, 이전비용 등을 국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4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8]

[2025년도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투자유치기반조성 | 364,246 | 403,796 | - | - | 403,796 | 288,023 | 115,631 | 142 | 383,981 |
| 국내복귀투자보조 | 104,500 | 124,500 | - | - | 124,500 | 124,500 | - | - | 124,4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해외 진출을 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복귀기업[69]으로 선정된 기업[70]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의 타당성평가와 산업부의 보조금신청서류 검토 절차를 통과하면,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투자보조금은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으로 나뉘며, 입지 보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토지매입금액을 지원하고 설비 보조금은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임.

신규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전체 보조금액의 70%를 먼저 지급받고, 투자완료 이후에 남은 30%를 지급받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됨.

---

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투자유치기반조성(4901-302)(무역투자실)

6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을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또는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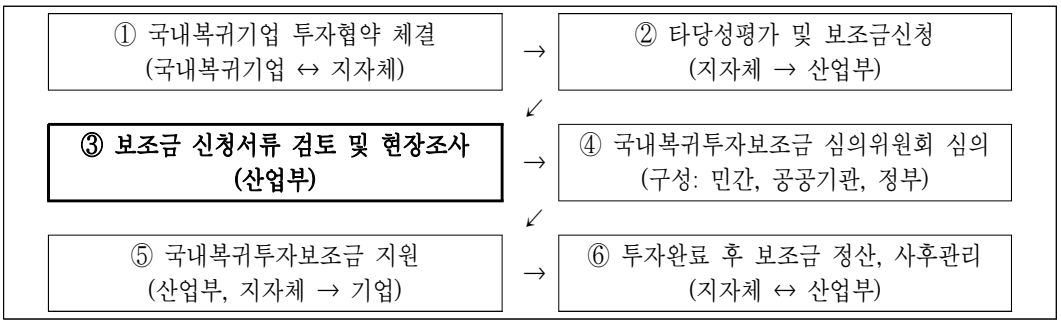
70)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②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이어야 하며, ③해외사업장에서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25% 이상 감소)), ④국내사업장 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나. 검토의견

**첫째,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에 최소 14일에서 최대 177일이 소요되어 편차가 존재하는데, 소요되는 검토기간이 과도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원활한 투자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국내복귀기업이 지자체와 먼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산업통상부는 보조금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

[2025년도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 집행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사업진행경과를 보면, 보조금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절차에 최소 14일에서 최대 177일이 소요되는 등 검토소요기간에 편차가 존재하였음.

[2025년도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 신규 지원기업 지원 경과]

| 연번 | 유턴기업 투자협약 체결일 | 보조금 신청 및 산업부 타당성평가 | |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
|---|---|---|---|---|---|
| | | 신청일 | 결정일 | 검토기간(소요일수) | 현장조사일 |
| 1 | '24.2.28. | '25.2.3. | '25.3.31. | '25.2.3~'25.3.25.(50일) | '25.2.21. |
| 2 | '24.8.22. | '25.2.21. | '25.6.11. | '25.2.21~'25.6.4.(103일) | '25.4.25. |
| 3 | '24.10.14. | '25.4.17. | '25.6.11. | '25.4.17~'25.6.4.(48일) | '25.4.28. |
| **4** | **'25.1.9.** | **'25.3.31.** | **'25.9.26.** | **'25.3.31~'25.9.24.(177일)** | **'25.5.8.** |
| 5 | '25.3.27. | '25.7.24. | '25.9.26. | '25.7.24~'25.9.24.(62일) | '25.9.9. |
| 6 | '25.2.12. | '25.4.23. | '25.9.26. | '25.4.23~'25.9.24.(154일) | '25.8.7. |
| 7 | '24.9.10. | '25.9.15. | '25.12.8. | '25.9.15~'25.12.3.(79일) | '25.10.24. |
| 8 | '24.11.18. | '25.11.19. | '25.12.8. | '25.11.19~'25.12.3.(14일) | '25.11.13. |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검토기간의 원칙을 규정한 지침 등은 없고 보조금 심의회를 통상 분기별로 개최해 2~3개 신청기업을 모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신청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재검토요청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함.[71]

소요되는 검토기간의 편차가 과도하고 일관성이 없을 경우 신청기업이 보조금 지원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경영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추가 투자 등이 지연되면서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심의회 간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업의 보조금 신청 준비사항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여 재검토 사안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비 매칭 지연으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적기 지방비 매칭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 사업 국비 보조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국비를 보조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매칭하여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국비 보조금과 광역지자체 지방비를 지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방비까지 조달하여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 국고보조금 교부일과 지방비 매칭일을 비교하면,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시점과 지방비가 매칭된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음.

예를 들어, 대구지역의 일반업종은 2025년 6월 5일 국내복귀투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6월 25일에 214억 9,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2025년 12월 18일에서야 지방비가 매칭되어 국고보조금 교부시점으로부터 실제 투자까지 약 176일 이상 소요되었음.

71) 한편 산업통상부는 14일이 소요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25년 8월)된 이후 투자지역의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문의하였고, 지자체에서 신청서 공식 접수 이전에 해당 기업과 상담형식으로 투자계획 확인, 지원 가능여부 검토 등 사전 검토를 진행 한 바, 실제로는 선정 이후부터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방비 매칭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 업종 | 지자체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보조금 지원 | | | | |
|---|---|---|---|---|---|---|---|---|
| | | | | 국고 | | 지방비 | | 국고 교부 후 지방비 매칭까지 소요기간 |
| | | | | 교부일 | 교부액 | 매칭일 | 매칭 금액 | |
| 1 | 우대업종 | 경북 | '25.3.26. | '25.4.30. | 22,329 | '25.6.20. | 9,570 | 51일 |
| 2 | 일반업종 | 대구 | '25.6.5. | '25.6.25. | 21,492 | '25.12.18. | 7,164 | 176일 |
| 3 | 첨단업종 | 전북 | '25.6.5. | '25.6.18. | 3,806 | '25.8.29. | 1,269 | 72일 |
| 4 | 우대업종 | 경북 | '25.9.25. | '25.10.2. | 1,899 | '25.12.24. | 814 | 83일 |
| 5 | 공급망핵심 | 충북 | '25.9.25. | '25.10.2. | 4,357 | '25.10. | 1,452 | - |
| 6 | 공급망핵심 | 경남 | '25.9.25. | '25.10.~12. | 20,507 | '25.11.17. | 6,835 | - |
| 7 | 우대업종 | 충남 | '25.12.4. | '25.12.12. | 6,535 | '25.12.23. | 7,987 | 11일 |
| 8 | 공급망핵심 | 충남 | '25.12.4. | '25.12.12. | 19,872 | '26.2.13. | 6,624 | 63일 |

주) 일부 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를 지자체 확인 중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지방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시차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지방비 매칭이 지연될 경우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 순연되어 산업현장의 보조금 수요가 적기에 충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지방비 매칭 지연에 따른 실집행 지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72]

72)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실집행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부터 사업비 집행방식을 현행 지자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국비를 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입〉

# 18. 석유수입부과금: 실제 수납실적 등을 반영한 세입 예산 현실화 필요

## 가. 개 요

**‘석유수입부과금’** 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수입 석유에 대한 부과금을 계상한 세입항목으로, 징수결정액 1조 262억 4,300만원 중 1조 253억 8,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8억 5,6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73]

[2025년도 석유수입부과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석유수입 부과금 | 1,498,810 | 1,498,810 | 1,026,243 | 1,025,387 | 856 | - | 99.9 | 1,404,76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석유수입부과금은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부과기준은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에 따름.[74]

---

7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석유수입부과금(59-593)(자원산업정책관)

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검토의견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예산이 실제 징수 실적에 비해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세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실제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 세입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이 징수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특정용도(수출·공업원료·비축 등 12종)로 공급하거나 사용한 경우, 수입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함.

환급 등을 고려하여 2021~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 수납된 석유수입부과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규모가 적었음.

예를 들어 2025년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예산은 1조 4,988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1조 253억 8,700만원만 수납(수납률 68.4%)되어 세입예산 대비 4,734억 2,3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5년도 석유수입부과금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 징수 결정액 | 징수액 | 환급 결정액 | 환급액 | 실제 에특회계 납부액 | 당해연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
|---|---|---|---|---|---|---|
| 2021 | 3,530,972 | 3,530,115 | 2,231,943 | 2,231,943 | 1,298,172 | 1,591,308 |
| 2022 | 3,682,309 | 3,678,181 | 2,168,936 | 2,168,936 | 1,509,245 | 1,290,011 |
| 2023 | 3,579,429 | 3,578,573 | 2,660,207 | 2,660,207 | 918,366 | 1,453,366 |
| 2024 | 3,675,387 | 3,674,530 | 2,601,872 | 2,601,872 | 1,072,658 | 1,560,069 |
| 2025 | 3,506,885 | 3,506,029 | 2,480,642 | 2,480,642 | 1,025,387 | 1,498,810 |

자료: 산업통상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2025년 6월 30일까지는 16,730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20,605원)으로 한다.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석유사업법상 환급가능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석유정제업자의 환급신청 시기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예상 환급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나, 2021~2025년간 환급액은 2022년 최소 2조 1,689억 3,600만원에서 2023년 최대 2조 6,602억 700만원까지 비교적 일정한 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데, 세입예산이 과다계상될 경우 세입결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원 부족에 따라 세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음.

실제로 2025년 에특회계 세입 결손으로 비축유 구입을 위한 출자예산 492억 8,100만원 중 185억 4,800만원이 연도 내 미교부(이월)되고 한국석유공사가 단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는 에특회계 세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실제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세　출〉

# 19.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에특회계 사업의 적시 자금배정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가. 개　요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금을 교부하여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를 구입하고 비축기지를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99억 100만원 중 611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5%)되고 187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음.[75)]

[2025년도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석유비축사업출자 | 79,901 | 79,901 | - | - | 79,901 | 61,133 | 18,768 | - | 55,3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손으로 비축유 구입을 위한 출자예산 492억 8,100만원 중 185억 4,800만원이 연도 내 미교부(이월)되고 한국석유공사가 단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산업통상부와 관련부처는 적시 자금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 799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611억 3,300만원(76.5%)을 집행하고, 187억 6,800만원(23.5%)을 이월하였음.

7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석유비축사업출자(5432-301)(자원산업정책관)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①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 492억 8,100만원과 ②비축기지 유지보수를 위한 306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 492억 8,100만원 중 185억 4,800만원과 비축기지유지보수를 위한 출자금 2억 2,000만원이 에특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교부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임.

비축유 구입을 위한 출자금을 적시에 교부 받지 못한 한국석유공사는 사전계약 물량(46.5만B)에 대한 대금 부족액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금리 3.916%에 187억 4,800만원 상당의 미화를 단기차입('26.1.6.~'26.7.3.)하였으며, 산업통상부는 2026년 1월말에서야 이월액을 한국석유공사로 교부하였음.

위와 같은 대응으로 당초 석유비축계획량인 1억 12만 1,000배럴 대비 47만 2,000배럴 초과한 1억 59만 3,000배럴을 비축할 수 있었으나, 한국석유공사가 월 약 6천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음.

산업통상부는 2025년 10월 1일자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특회계 총괄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자금배정 조정에 다소 한계가 있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함.

산업통상부와 관련 부처는 에특회계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자금의 적시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 <세 입>

# 20. 일반회계전입금: 소특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의존 개선을 위한 세입 다변화 방안 모색 필요

## 가. 개 요

**‘일반회계전입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로 전입받는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조 1,829억 4,1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76]

[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일반회계 전입금 | 2,182,941 | 2,182,941 | 2,182,941 | 2,182,941 | - | - | 100.0 | 2,308,38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소특회계는「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68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임.[77]

76)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일반회계전입금(91-911)(산업공급망정책관)

77)「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나. 검토의견

**소특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는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자체 세입원을 확보하는 등 세입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특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78)]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 소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비율이 높을 경우 특별회계의 자립성이 사라지거나 정책적 특수성이 희석되는 결과를 지양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2021~2025년 전년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은 대부분 1조원에 미달하였고 2025년에는 그 금액이 6,972억 2,700만원임에 따라 1조 4,857억 1,400만원의 수입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으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 기준을 초과하였음.

[2021~2025년 결산 기준 세입 총계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년도 관세(A) | 7,058,540 | 8,227,000 | 10,324,118 | 7,288,282 | 6,972,267 |
| 일반회계 전입금 기준 (B=A×10%) | 705,854 | 822,700 | 1,032,412 | 728,828 | 697,227 |
| 수입 부족액(C) | 1,547,143 | 1,526,579 | 1,220,585 | 1,293,516 | 1,485,714 |
|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B+C) | 2,252,997 | 2,349,279 | 2,252,997 | 2,022,344 | 2,182,941 |

주) 수입부족액(C): 총 세출액-일반회계 전입금 기준액(B)-기금전입금-세외수입액-전년도 세계잉여금
자료: 산업통상부

78)「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세입 ·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또한 2021~2025년 소특회계의 세입 총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결산)은 매해 90%이상이며, 2025년에는 전년대비 1.5%p 증가한 93.6%임.

[2021~2025년 결산 기준 세입 총계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비중]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총계(A) | 2,565,814 | 2,437,965 | 2,417,131 | 2,196,928 | 2,331,814 |
| 일반회계전입금(B) | 2,514,098 | 2,349,279 | 2,217,000 | 2,022,344 | 2,182,941 |
| 비중(B/A) | 98.0 | 96.4 | 91.7 | 92.1 | 93.6 |

주) 소특회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결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재정법」 제14조에서 특별회계의 신설 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과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특회계 또한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79]

산업통상부는 소특회계의 세출 사업들은 소부장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구성하여 정책적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특정 세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입 다변화 및 운영계획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임.[80]

---

79)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80) 참고로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구조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산업통상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 추진 검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겠음'(조치중)으로 보고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10월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6~'30)」을 수립하고 소부장 특별회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특별회계 존속기간의 연장과 규모 확대에 앞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세입 다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세 출>

# 21.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 중단(성실)과제 연구결과물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가. 개 요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은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1,779억 9,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소재부품기술개발 (R&D) | 1,177,993 | 1,177,993 | - | - | 1,177,993 | 1,177,993 | - | - | 1,290,94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11건의 중단(성실)과제가 발생하였는데, 산업통상부는 확보된 연구개발성과 등이 매몰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후속연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에서 총 11건의 중단(성실)과제가 발생하였으며, 중단(성실)과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재무상황 악화, 세부과제 중단, 시장환경변화로 인한 수행포기 등임.[82]

---

81) 일반회계-소재부품기술개발(R&D)(3231-302)(산업공급망정책관)

82) 중단(성실)과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환수 및 별도의 참여제한 조치는 없음.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 중단(성실)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총 연구기간 | 지급 출연금 | 주관기관 | 결과 및 사유 | 중단일 |
|---|---|---|---|---|---|
| 반도체 제조공정용 초순수 생산을 위한 수처리 소재 및 모듈 개발 | '20.4. ~'24.12. | 100 | ○○○○○ | 세부과제 중단 | '25.6.25. |
| 6000 Dalton 급 UF 분리막 소재 및 모듈개발 | '20.4. ~'24.12. | 5,953 | ○○○○○ | 환경변화 수행불가 | '25.6.25. |
| 고순도(18 Mega ohms 이상) 초순수 생산을 위한 연속식탈이온장치 개발 | '20.4. ~'24.12. | 4,546 | ○○○○○ | 세부과제 중단 | '25.6.25. |
| 비공개과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세부과제 중단 | '25.2.17. |
| 비공개과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세부과제 중단 | '25.2.17. |
|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용 20um이하 박막 특수 아크릴전착 절연코팅 기술개발 | '23.4. ~'24.12. | 1,246 | ○○○○○ | 경영악화 | '25.7.11. |
| 내전압이 우수한 24KV급 친환경 계기용변성기에 적합한 바이오기반 저탄소 에폭시 절연소재 개발 | '23.4. ~'24.12. | 1,311 | ○○○○○ | 경영악화 | '25.7.11. |
|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혈액 내 순환 종양 DNA 탐침 시약 개발 | '23.4. ~'24.12. | 1,311 | ○○○○○ | 경영악화 | '25.7.11. |
| 비공개과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세부과제 중단 | '25.4.28. |
| 비공개과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세부과제 중단 | '25.4.28. |
| ku대역 안테나용 RF 송수신 모듈 개발 | '24.7. ~'24.12. | 800 | ○○○○○ | 세부과제 중단 | '25.10.17. |

주) 소특회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결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은 일반적으로 ‘소재-부품-실증’의 3~4개 세부과제에 5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대형과제로 운영되나,[83] 컨소시엄 내 특정 1개 수행기관에 의해서 과제중단이 발생하면 함께 참여한 나머지 기관들의 과제도 동시에 중단된다고 설명하였음.[84]

이러한 과제중단은 연구비의 부정사용 또는 불성실 실패 등으로 인한 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단 전까지의 연구결과가 단순히 매몰·방치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중단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결과들이 매몰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실적의 양수·양도, 후속과제 연계, 연구결과 공개 등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83) 2025년 중단과제 12개 중 여러 수행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패키지형은 9개, 하나의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단독과제형은 3개임.

84) 2025년 중단된 패키지형 과제 9개 중 타과제 중단에 따른 중단과제는 6개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수 입>

## 22.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산업기술혁신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의존 개선 및 기술료 수입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가. 개 요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의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수납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액 1,035억원 중 1,03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수납률 100.0%)하였음.[85]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103,500 | 103,500 | 103,500 | 103,500 | - | - | 100.0 | 76,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7조의2에 따라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설치된 기금임.[86]

동법 제37조의3에 따라 기금은 산업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산업기술혁신계정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됨.[87]

85)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94-943)(산업기술융합정책관)

8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87)「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나. 검토의견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의 산업기술혁신계정은 2025년 기준 계정 수입의 약 47.5%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는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산촉기금’)의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총수입은 2,178억 5,700만원인데, 이 중 1,035억원(47.5%)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인 반면 기술료 수입은 712억 3,300만원으로 전체 총수입의 약 32.7%에 불과하였음.

[2021~2025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전체 | 250,824 | 139,067 | 140,916 | 192,237 | 241,718 |
| 산업기술혁신계정 | 232,689 | 121,576 | 121,812 | 170,605 | 217,857 |
|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기술료 | 71,745 | 68,882 | 65,228 | 56,324 | 71,233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87,923 | - | - | 60,000 | 103,500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이에 대해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2024~2027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의 사업비가 5,500억원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융자사업은 융자회수 기간 내 전액 상환예정이므로 융자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로는 예수금 의존 없이 기술료 중심의 사업 운영 및 안정적인 기금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은 재정당국에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분기별 변동 금리)보다 2%p를 차감한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조달금리가 융자금리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88)]

또한 산업통상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료 통합요령(산업부 고시) 등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료를 징수·수납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료 납부요율이 1/2 수준으로 하향조정 되는 등

88) 2024~2025년간 73건의 융자가 제공되었고 융자금리는 모두 1.39%임.

기술료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료 수입이 감소하여 산촉기금의 장기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임.[89]

[기술료 제도 변화 경과]

| 구분 | | 기존 (~'20년)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년~)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5년 협약~) | | |
|---|---|---|---|---|---|---|---|---|---|---|
| | | 대기업 | 중견 | 중소 | 대기업 | 중견 | 중소 | 대기업 | 중견 | 중소 |
| 정액기술료 | | 정부출연금 40% | 20% | 10% | | | | | | |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 4% | 2% | 1% | | | | | | |
| | 매출정률기술료 | 매출액 4% | 2% | 1% | 매출액 20% | 10% | 5% | 매출액 10% | 5% | 2.5% |
| | 납부한도 | 정부출연금 48% | 24% | 12% | 정부출연금 40% | 20% | 10% | 정부출연금 40% | 20% | 10% |
| 납부기한 | | 정액: 5년이내<br>경상: 매출 발생 후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 | | 매출 발생 후 5년 또는<br>과제종료 후 7년 중 빠른 시점 | | | | | |
| 납부방식 | | 정액/경상기술료 방식 선택 가능 | |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만 납부가능<br>* 일시납시 한도액에서 20% 감면한 금액 납부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실제 산업통상부의 산촉기금 기술료 수입 전망에서도 2030년에 2,618건・485억원의 기술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90] 이는 2025년 2,693건・712억원에 비해 발생건수는 유사하나 금액은 227억원(31.9%) 감소한 것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기술료 수입 예측]

(단위: 억원, 건)

| 구분 | 결산 | | | | | 예측 | | | |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기술료 | 717 | 689 | 652 | 563 | 712 | 469 | 400 | 407 | 453 | 485 |
| 발생건수 | 2,971 | 3,254 | 3,290 | 3,027 | 2,693 | 2,598 | 2,097 | 2,004 | 2,231 | 2,618 |

자료: 산업통상부

89) 다만 산업통상부는 국가 R&D 예산 증가로 감면분이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함.

90) 과거 기술료 납부방식(정액/경상)과 과제 협약연도에 따라 각 징수연도의 출연금, 평균정산률, 사업화 성공률, 기업 규모별 납부요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

산촉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국가 R&D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이전과 함께 기술료 부과·징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기술료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기금】

<수 입>

## 23. 기타경상이전수입: 환변동보험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노력 필요

###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등이 수납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2,745억 5,900만원으로 이 중 2조 7,557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980억 7,900만원을 수납(수납률 7.2%)하였으며 2조 5,255억 900만원을 미수납하고 321억 3,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음.[91]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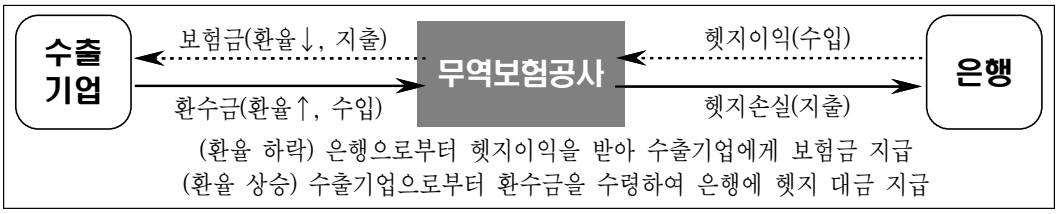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 274,559 | 274,559 | 2,755,722 | 198,079 | 2,525,509 | 32,134 | 7.2 | 274,003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무역보험공사는 환율하락 시 은행으로부터 헷지이익을 받아 수출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환율 상승 시 환수금을 수출기업으로 받아 은행에게 헷지대금을 지급함.

[2025년도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종목 구조(환변동보험)]




자료: 산업통상부

91) 무역보험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6)(무역정책관)

## 나. 검토의견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변동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산업통상부와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환수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출선물환의 보장환율 대비 결제시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자는 무역보험공사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함.

환수금 미수납액은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인 분할상환잔액과 환수금 납부 미이행으로 사후관리로 이관한 금액인 사후관리이관금액으로 구분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상승으로 거액의 환수금이 발생하였고 중소조선사 등 환수금 납부불가 기업 증가로 2008~2010년 3년간 미수납금액이 2,918억원 발생하였으며, 사후관리이관금액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2008~2010년 환변동보험 환수금 발생액 및 미수납금액]

(단위: 억원)

| 구 분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
|---|---|---|---|---|---|
| 환수금 | | 15,886 | 12,732 | 3,175 | 31,793 |
| | 미수납금액 | 1,217 | 1,413 | 288 | 2,918 |

자료: 산업통상부

최근 회수 실적의 경우, 2025년 사후관리이관 금액은 3억 8,000만원 증가하였으나, 회수금은 7,800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음.

[2021~2025년 환변동보험 환수금 미수납액 및 회수 실적]

(단위: 백만원)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발생액 | 5,838 | 49,597<br>(749.6) | 27,433<br>(△44.7) | 47,741<br>(74.0) | 37,940<br>(△20.5) |
| 수납액 | 5,838 | 49,477<br>(747.5) | 26,437<br>(△46.6) | 46,617<br>(76.3) | 37,182<br>(△20.2) |
| 미수납액(누적) | 297,328 | 297,448<br>(0.04) | 298,444<br>(0.33) | 299,568<br>(0.38) | 300,241<br>(0.22) |
| 사후관리 이관금액(누적) | 297,328 | 297,448<br>(0.04) | 298,444<br>(0.33) | 299,484<br>(0.35) | 299,864<br>(0.13) |
| 회수금(누적) | 19,346 | 19,350<br>(0.02) | 19,367<br>(0.09) | 19,369<br>(0.01) | 19,447<br>(0.40)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 미수납액의 대부분(97.2%)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 누적 채권으로 회수가 쉽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채권은 인수한도 관리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부분 정상 수납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환율 변동성 심화 등 경제여건 변화로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환수금의 발생 및 미납 규모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와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채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지　출〉

# 24. 무역보험금지급 사업: 특례지원 확대에 따른 특례심사 강화 노력 필요 등

## 가. 개　요

**‘무역보험금지급’** 사업은 무역기업이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입한 후 무역보험에 가입된 계약 건에 대해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770억원 중 3,773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1%)되고 996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92)]

[2025년도 무역보험금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무역보험금지급 | 477,000 | 477,000 | - | 477,000 | 377,392 | - | 99,608 | 400,021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특례지원은 재무건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나 최근 특례지원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산업통상부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보증 제도 운영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례지원은 대외변수 또는 시설투자·설비확충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무역보험공사 내규상 보험·보증 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미래 성장성과 기술력 등 비재무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92) 무역보험기금-무역보험금지급(1531-400)(무역정책관)

무역보험 특례지원 실적을 보면, 2020~2024년간 연평균 152.8억원, 10.6건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에는 특례지원 제도개선[93] 및 중소중견기업 우대보증[94] 지원 수요 증가로 41건에 대해 2,143억원을 지원하여 특례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2020~2025년 무역보험 특례지원(공급) 실적]

(단위: 억원, 건)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연평균 | 2025년 |
|---|---|---|---|---|---|---|---|
| 공급실적 | 139 | 183 | 254 | 115 | 73 | 152.8 | 2,143 |
| 공급건수 | 5 | 15 | 15 | 10 | 8 | 10.6 | 41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현재 특례지원 여부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특례인수위원회(이하 '특례위')의 심의·의결 통해 결정되는데,[95] 2025년의 경우 특례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위원회 회의 개최건수는 4배, 심사건수는 약 4.6배 증가하는 등 특례위의 심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2021~2025년 무역보험 특례인수위원회 개최·심사 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개최건수 | 11 | 12 | 7 | 6 | 24 |
| 심사건수 | 16 | 15 | 10 | 9 | 42 |
| 특례지원건수 | 15 | 15 | 10 | 8 | 41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에 심사방식 개선·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특례위의 심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특례위 운영현황 결과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93) 지원대상(우량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 추가), 지원금액(종목별 특별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지원종목(5개 종목 추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특례지원 저변 확대

94) 국내 주요 산업 대표기업과 은행의 동반 출연기금을 기반으로 무보가 출연기업의 中企 협력사에 특별 우대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지원 사업

95) 금융·평가·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위원단(32명)을 구성하고, 특례위 개최 시마다 위원단에서 5명을 선정하여 특례위를 구성하고 있음.

특례지원 제도가 민간이 기피하는 고위험 거래가 무역보험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작용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96]에 따른 무역보험의 위험과 손실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타 금융지원 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함.

산업통상부는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특례보증 제도 운영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 연장심사 시 휴업기업은 폐업기업과 달리 보증기간 연장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폐업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현장방문 실사를 의무화하고 보증중단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무역보험공사는 G등급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약 1,049억 9,800만원을 만기연장하였는데, 수출기업의 신용등급이 G등급 이하인 경우 신규보증 인수가 불가함.

[2025년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만기연장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보험종목 | 신용등급별 만기연장액 | | | | | | | |
|---|---|---|---|---|---|---|---|---|
| | A | B | C | D | E | F | G등급 이하 | 합계 |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22,038 | 129,694 | 489,168 | 553,470 | 389,385 | 133,421 | 104,998 | 1,822,174 |
| | 1.2 | 7.1 | 26.8 | 30.4 | 21.4 | 7.3 | 5.8 | 100.0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유사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무역보험공사는 '폐업기업'에 한해 보증기간 연장을 중단할 뿐 '사실상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을 중단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보증 한도를 감액하지 않고 보증기간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음.

사실상 폐업기업에 대해 보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여신처럼 유지되어 부실 인식시점이 이연되고, 한정된 보증 여력 하에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정책금융 자원이 고착됨에 따라 정상적인 성장 가능 기업에 보증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96)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을 의미함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4월 사실상 폐업 여부 의심기업에 대해 보증중단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방문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규를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사실상 폐업기업에 대한 보증중단 검토절차 신설 주요내용]

| 구분 | 기존 | 변경 |
|---|---|---|
| 방문조사 의무화 | 5억원 이하 생략 가능 | 모든 건에 대해 실사 의무화 |
| 보증중단 처리 | 폐업기업에 한하여 보증중단 | 방문조사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 점검 후, 사실상 폐업기업으로 판단 시 보증중단 처리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부는 개정된 내규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실상 폐업기업을 관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업무사례 등을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의 사후관리 시 임금체불 및 4대 보험 체납에 대해 보증 제한 등 별도의 사후조치가 없는 관찰 등급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및 4대 보험 체납 기업은 원칙적으로 보증거절 대상에 해당함.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생한 보증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은 보증심사 후 사후 모니터링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으며, 4대보험 체납의 경우 별도의 사후조치가 없는 '관찰' 등급만을 부여하고 있었음.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전·후 조치]

| 구 분 | 임금 체불 | 4대보험 체납 |
|---|---|---|
| 보증 심사 전 |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 확인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 |
| 보증 심사 후 | ①국내기업 불량거래 등록절차로 확인 후 특례R급 처리 | ①국내기업 불량거래 등록절차로 확인 후 특례 R급 처리<br>②국내기업 조기경보 모니터링으로 확인 후 '관찰' 지정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 거절 대상임을 고려하면, 보증 후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기업의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사후조치가 없는 '관찰' 등급이 아닌 보다 강화된 등급을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기존에는 보증기간 내에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보증기간에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체납이 발생한 경우 '관찰' 경보에서 '연체' 경보로 상향 조정하여 신규 보증 한도 책정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 내 임금을 체불하거나 4대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산업통상부는 관리 현황 및 사후조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2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산업통상부에 대해 시정요구 44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3건·제도개선 38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1 | 3 | 38 | 2 | 44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1 | 3 | 38 | 2 | 44 |

산업통상부는 시정요구사항 44건에 대해 40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0.9%)하고 4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44 | 40 | 90.9 | 4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44 | 40 | 90.9 | 4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산업통상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산업통상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 제1회 추경 |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역사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br>·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 2025년도 제2회 추경 | · 정부는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 지식재산처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2억 5,600만원(△0.3%)이 적은 6,436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 2,100만원(5.4%)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792,258 | 792,258 | 727,180 | △65,078 | 781,052 | 781,052 | 771,289 | △9,763 | 44,108 |
| 총수입 | 645,012 | 645,012 | 610,708 | △34,304 | 645,885 | 645,885 | 643,629 | △2,256 | 32,921 |

문의: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8억 5,100만원(△0.5%)이 적은 5,612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4,400만원(2.8%)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792,258 | 792,258 | 714,531 | △77,727 | 788,272 | 788,272 | 766,979 | △21,293 | 52,448 |
| 총지출 | 548,530 | 548,530 | 545,918 | △2,612 | 564,113 | 564,113 | 561,262 | △2,851 | 15,344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810억 5,200만원으로, 7,742억 6,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712억 8,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29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781,052 | 781,052 | - | 781,052 | 774,266 | 771,289 | 2,987 | - |
| 손익계정 | 656,438 | 656,438 | - | 656,438 | 659,223 | 656,245 | 2,987 | - |
| 자본계정 | 124,614 | 124,614 | - | 124,614 | 115,044 | 115,044 | - | - |
| 합 계 | 781,052 | 781,052 | - | 781,052 | 774,266 | 771,289 | 2,987 |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898억 7,700만원으로, 7,669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1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27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 | - | - | +1,605<br>±2 | - | 1,605 | 1,122 | 113 | 371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781,052 | 781,052 | | ±900 | | 781,052 | 758,637 | - | 22,415 |
| 손익계정 | 656,438 | 656,438 | - | ±900 | - | 656,438 | 643,594 | - | 12,844 |
| 자본계정 | 124,614 | 124,614 | - | - | - | 124,614 | 115,043 | - | 9,571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7,220 | 7,220 | - | - | - | 7,220 | 7,220 | - | - |
| 합 계 | 788,272 | 788,272 | - | +1,605<br>±903 | - | 789,877 | 766,979 | 113 | 22,786 |

주) 총계 기준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지식재산처 자산은 전년 대비 135억 2,500만원이 감소된 5,041억 1,7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14억 2,4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이 각각 114억 6,200만원, 34억 8,700만원 감소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1억 1,200만원 감소된 2,526억 6,700만원으로 차입부채 11억 4,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24억 1,300만원이 감소된 2,514억 5,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48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억 3,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19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7,200만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504,117 | 517,642 | △13,525 | △2.6 |
| | | 금융자산 | 396,665 | 408,127 | △11,462 | △2.8 |
| | | 유무형자산 | 107,128 | 105,704 | 1,424 | 1.3 |
| | | 기타자산 | 324 | 3,811 | △3,487 | △91.5 |
| | 부 채 | | 252,667 | 253,779 | △1,112 | △0.4 |
| | | 차입부채 | 8,702 | 9,851 | △1,149 | △11.7 |
| | | 충당부채 | 64 | 16 | 48 | 300.0 |
| | | 기타부채 | 243,901 | 243,912 | △11 | 0.0 |
| | 순자산 | | 251,450 | 263,863 | △12,413 | △4.7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84,891 | △55,958 | △28,933 | 51.7 |
| | 재정운영순원가 | | △70,337 | △45,311 | △25,026 | 55.2 |
| | 재정운영결과 | | 21,937 | 28,509 | △6,572 | △2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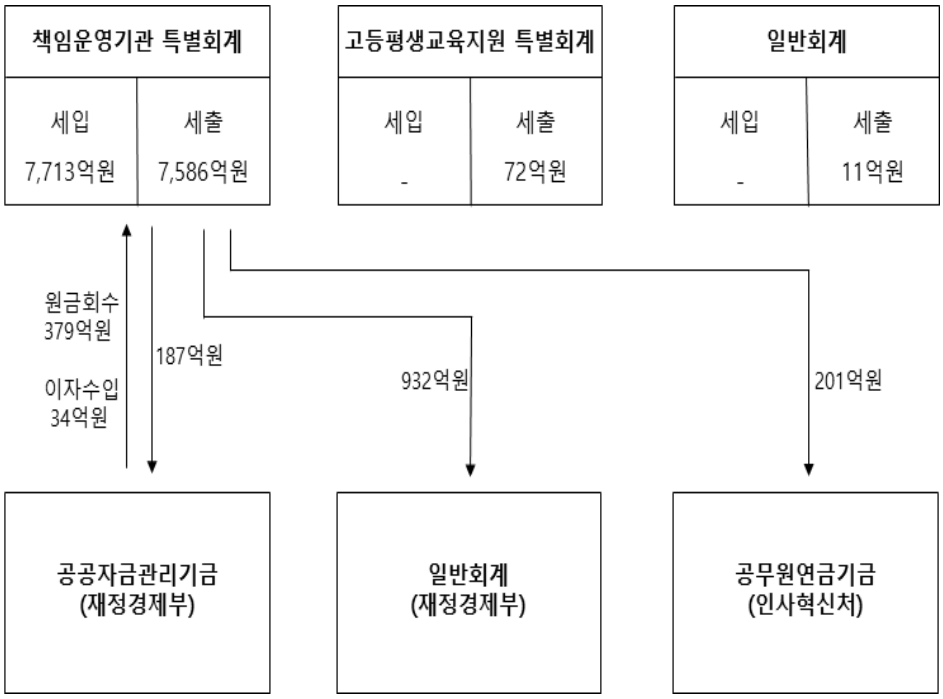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932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01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87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79억원의 원금이 상환되었고, 34억원의 이자수입이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식재산처 재정흐름도 (총계기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지식재산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를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1개 세부사업에서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원·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조성 및 심사·심판처리 지원 등을 수행함.

2025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태료가 연례적으로 수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과태료 미수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지연되어 설계용역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향후 차질없이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단축과 건축비용 절감 등을 위해 폐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1~2025년간 모두의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을 위해 투입한 예산보다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진 아이디어 거래금액 규모가 현저히 적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입>

## 1. 과태료: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의 과태료 미납 해소 필요

### 가. 개 요

**‘과태료’**는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가 납부하는 과태료 등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0억 2,600만원 중 9,1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되고 19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2)]

[2025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과태료 | 30 | 30 | 2,026 | 91 | 1,935 | - | 4.5 | 30 |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2022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 지적에 따라 2024년부터 과거부터 발생한 미수납액 전체를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반영함

### 나. 검토의견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태료가 연례적으로 수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과태료 미수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과태료(56-563)(지식재산정책국)

「변리사법」 제15조[3] 및 동법 시행령[4]에 따라 변리사로서의 전문성·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모든 '개업' 변리사는 의무적으로 2년의 단위기간 동안 24시간의 연수를 받아야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5]

2016~2023년간 연수미이수자가 매 단위기간 동안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교육 미이수자로부터 수납하여야 하는 과태료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음.

[2016~2023년 변리사 의무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

| 연도 | 등록 변리사 | 연수이수 대상자 (A) | 연수미이수자 (B) | 미이수율 (B/A) |
|---|---|---|---|---|
| 2016년~2017년 | 9,305 | 3,594 | 281 | 7.8 |
| 2018년~2019년 | 9,755 | 2,897 | 169 | 5.8 |
| 2020년~2021년 | 10,401 | 3,877 | 160 | 4.1 |
| 2022년~2023년 | 10,809 | 4,248 | 141 | 3.3 |

주) 2025년 12월말 기준 통계
자료: 지식재산처

2025년의 경우 과거에 징수결정되었으나 수납되지 못하고 이월된 20억 800만원과 당해연도에 새로 징수결정된 1,800만원의 과태료를 합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20억 2,600만원이었으나, 이 중 실제 수납된 금액은 9,100만원에 불과하였음.

---

3)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 연속 2회 | 연속 3회 이상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 | |
| 가. 연수교육 실적: 없음 | | 150 | 300 | 500 |
| 나. 연수교육 실적: 50% 미만 | | 100 | 200 | 400 |
| 다. 연수교육 실적: 50% 이상 75% 미만 | | 75 | 150 | 300 |
| 라. 연수교육 실적: 75% 이상 100% 미만 | | 50 | 100 | 200 |

주) 연수교육 실적은 2년을 주기로 산정함
자료: 「변리사법 시행령」

5) 「변리사법」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한다.

[2023~2025년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 | 징수결정액 | |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 계 | 당해 | 이월 | | | |
| 2023 | 44 | 42 | - | - | 42 | 2,475 | - |
| 2024 | 30 | 2,972[1)] | 498 | 2,474 | 31 | 2,942 | - |
| 2025 | 30 | 2,026 | 18 | 2,008[2)] | 91 | 1,935 | - |

주 1) 2022년도 결산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4년부터 그동안 발생한 미수납액 전체를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증가함
2) 2024년도 결산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4년 미수납액 29억 4,200만원 중 9억 3,400만원을 가산금 세입 항목(58-581)으로 분리하여 이월징수액이 조정되었음

자료: 지식재산처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상 변리업 수행이 가능하고, 변리사의 정보변경 미신고 시 변리업 지속 수행 여부, 주소·연락처 변경 여부, 사망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과태료 납부 독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다만 과태료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촉하는 등 미납된 과태료를 수납하기 위한 독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국세청(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협력하여 체납 과태료 수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과 같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의무연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에서 지식재산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위탁 이후에도 지식재산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변리사의무연수 미이수자들의 체납 과태료 수납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6)]

6) 한편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등록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등록거부사유로 의무연수미이수 및 과태료 미납 등을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세　출〉

## 2.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주의 필요 등

### 가. 개　요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제공하기 발명교육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7억 3,400만원 중 37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9%)되고 10억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발명교육 활성화 (초・중・고) | 10,448 | 10,448 | - | ±3 | 10,448 | 9,447 | - | 1,001 | 11,060 |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 4,734 | 4,734 | - | ±3 | 4,734 | 3,734 | - | 1,000 | 4,734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지연되어 설계용역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향후 차질없이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단축과 건축비용 절감 등을 위해 폐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는 충주시 탄금공원 일대에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당초 지식재산처(국비)가 53억원, 충청북도교육청(지방비)이 388억원, 충주시가 27억원, 충청북도가 10억원을 부담하여 총 478억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음.

7) 일반회계-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1235-302)(지식재산정책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7조[8]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 ) 대상이 되었으며, 1차 투자심사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공동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기존 유사시설과 차별성 있는 운영프로그램 구체화, 사업규모 재검토, 객관적 수요 분석을 통한 수요 재검토’를 이유로 2024년 11월 재검토 결정을 통보 받았음.

이후 교육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재검토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규모 축소 방안 검토’를 이유로 2025년 4월 또 다시 재검토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9] 다시 발명교육 프로그램 수를 조정(35종→25종)하고 사업규모를 축소(409억원→349억원)하여 2025년 7월에서야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함.

지식재산처는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투자심사의 지연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투자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건축사업 설계 용역단계에서 집행될 계획이었던 용역비 10억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예산 및 규모 변경 과정]

| | 행안부-교육부 심의 ('24.10, 재검토) | 1차 교육부 심의 ('25.4, 재검토) | 2차 교육부 심의 ('25.7, 통과) |
|---|---|---|---|
| 관련 예산 | 478억원 (정부 53억원, 충북교육청 388억원, 충주시 27억원, 충북도청 10억원) | 409억원 (정부 53억원, 충북교육청 356억원) | 349억원 (정부 53억원, 충북교육청 296억원) |
| 시설 규모 | 부지 8,561$m^2$, 건축면적 10,025$m^2$ | 부지 8,561$m^2$, 건축면적 9,696$m^2$ | 부지 8,561$m^2$, 건축면적 8,346$m^2$ |

자료: 지식재산처

8)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식재산처는 재검토 통보 이후 ① 사업 규모를 당초 총 478억원에서 총 409억원으로 감축하고, ②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 분석 및 운영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으며, ③ 충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받아 행안부 투자심사 제외를 통해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산출하였고 ‘One Stop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사업내용의 차별성을 기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심사 통과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중앙투자심사 경과를 고려하면, 당초 사업규모가 과도하게 설정되었고 기존 유사시설의 운영프로그램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 사업규모 산정과 프로그램 차별화 내용을 포함한 광역센터 건축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유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남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폐교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한 선례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10] 추진 시 폐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11]

**둘째, 지식재산처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충청북도에 한정되지 않고, 중부권의 거점센터로서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교육청 대상 공모를 통해 최종 우선협상 교육청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충북교육청”)을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건축비 349억원의 약 84.8%인 296억원을 충북교육청이 부담함.

충북교육청이 건축비의 대부분을 부담함에 따라 추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충북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당초 의도와는 달리 중부권의 다른 지역인 대전·세종 및 충남 지역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음.

국회도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집행하며, 중부권의 거점센터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

10)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발명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5극3특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11) 중부권 광역센터는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비 349억원과 사업기간 6년이 소요되나, 폐교를 활용하여 구축한 영남권 광역센터는 건축비 236억원 및 사업기간 3년이 소요되었음.

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중부권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중부권에 속한 모든 지역의 학생·교원·일반인을 위해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3.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노력 필요

## 가. 개 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 1,500만원 중 14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5년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 26,853 | 26,853 | - | ±299 | 26,853 | 26,851 | - | 2 | 34,698 |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 1,121 | 1,121 | - | 294 | 1,415 | 1,414 | - | 1 | 6,25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2021~2025년간 모두의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을 위해 투입한 예산보다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진 아이디어 거래금액 규모가 현저히 적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의 특징은 국민의 아이디어 창출 및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이디어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국민)가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상시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임.

따라서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상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유의미한 규모의 금액과 횟수의 아이디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 일반회계-지식재산 활용(사업화,거래,평가) 지원(1332-303)(지식재산정책국)

그런데 2021~2025년간 연평균 11억 4,000만원이 플랫폼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으나, 평균적인 연간 거래횟수는 210.6건, 연간 거래금액은 약 7,254만원에 불과하였음.

[2021~2025년 연도별 플랫폼 운영 예·결산 및 아이디어 거래 실적]

(단위: 백만원, 건)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5년 평균 |
|---|---|---|---|---|---|---|
| 예산 | 1,204 | 1,164 | 1,164 | 1,164 | 1,121 | 1,163.4 |
| 결산 | 1,071 | 1,068 | 1,072 | 1,075 | 1,414 | 1,140 |
| 거래횟수 | 112 | 155 | 295 | 301 | 190 | 210.6 |
| 거래금액 | 59.3 | 49.0 | 142.1 | 79.0 | 33.3 | 72.54 |

자료: 지식재산처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2021년 3월 플랫폼 운영을 개시한 이후 공모전 확대, 자문단 운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플랫폼 활성화와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에는 플랫폼 개편 및 홍보를 위해 동 세부사업 내 타 민간위탁사업의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 11억 2,100만원의 약 26.2%인 2억 9,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고, 기존 아이디어 거래 지원 사업 관리용역계약 낙찰차액 8,900만원까지 활용하였으나[13] 거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2025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당초 계약 대비 실제 집행]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당초 계약(A) | 2025년 실제 집행(B) | 증감(B-A) |
|---|---|---|---|
| 인건비 | 435 | 435 | - |
| 홍보비 | 79.5 | 360 | 280.5 |
| 시스템 | 110 | 258 | 148 |
| 운영비 | 175 | 130 | △45 |
| 여비・전산처리비 등 | 26 | 25.5 | △0.5 |
| 일반관리비 | 63 | 63 | - |
| 합계 | 888.5 | 1271.5 | 383 |

주) 운영비는 기획공모전・아이디어 자문단 및 아이디어 선행조사 등에 활용되었음
자료: 지식재산처

13) 당초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의 과업 내용을 연도 중 변경하였으며, 지식재산처는 실적 감소에 대해 플랫폼 개편으로 아이디어 신규 등록 기능이 2025년 9월부터 중단된 것이 영향을 일부 미쳤다고 설명함.

지식재산처는 플랫폼과 아이디어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실제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14]

14) 지식재산처는 향후 ①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대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확보하여 플랫폼의 양적 기반을 강화, ② 전문가 중심의 면밀한 심사 및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선별함으로써 플랫폼의 신뢰성을 제고, ③ 선별된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정책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 지원을 강화, ④ 우수 아이디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수요자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반영·사업화·창업 가능성을 제고, ⑤ 기업 및 정부·공공 수요와의 매칭을 강화하여 실제 정책 반영과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함.

# 4. 모태조합 출자 사업: 출자 자금의 투자집행 노력 필요 등

## 가. 개 요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특허 활용률 제고 및 K-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여 로열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직접투자 펀드’ 등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5)]

[2025년도 모태조합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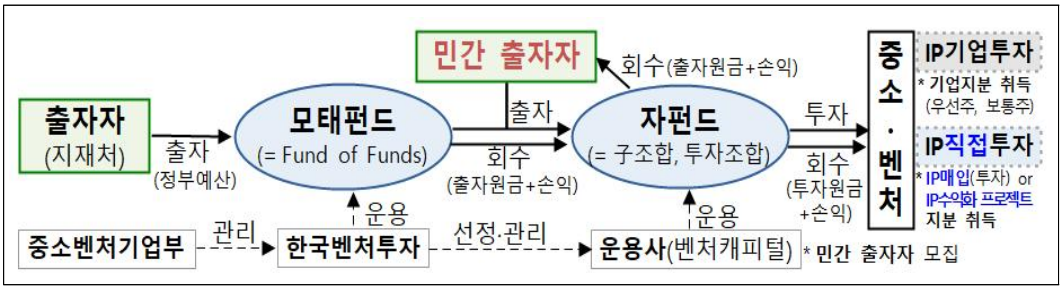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모태조합 출자 | 8,000 | 8,000 | - | - | 8,000 | 8,000 | - | -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특허청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한국벤처투자가 자펀드를 선정하고, 해당 자펀드(운용사)에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자펀드를 결성하게 됨.

이후 자펀드 운용사는 사전에 정해진 존속기간만큼 자펀드를 운용하게 됨. 통상 펀드의 존속기한은 8년(투자 4년+회수 4년)이며,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청산된 펀드로부터 발생한 회수금은 다른 자펀드에 재투자됨.

[모태조합 출자 사업 추진 체계]




자료: 지식재산처

15) 일반회계-모태조합 출자(1332-304)(지식재산정책국)

## 나. 검토의견

**첫째, 지식재산처가 2020~2025년까지 출자한 출자금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출자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6년 3월 기준 모태펀드 특허계정 내 출자금이 투자(자펀드 결성)로 이어진 성과를 살펴보면, 상당 규모의 투자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유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임.

예를들어 2022년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해 총 2,261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나 2026년 3월말 기준으로 534억 1,700만원의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잔여기간은 2년 미만임.

[2020~2025년 정부출자에 따른 모태펀드 특허계정 내 투자운용 현황(2026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 분야 | 결성규모 | | | 투자 집행액 (B) | 미투자 금액 (C=A-B) | 운용 비용 (D) | 예상 투자 여력 (C-D) | 투자 잔여 기간 |
|---|---|---|---|---|---|---|---|---|---|
| | | 정부 출자금 | 민간 | 총액 (A) | | | | | |
| 2020년 | IP기반 스타트업육성 | 5,000 | 4,000 | 9,000 | 7,616 | 1,384 | 900 | 484 | - |
| | IP직접투자 | 24,000 | 16,700 | 40,700 | 36,920 | 3,780 | 4,070 | - | - |
| | 공공IP 사업화 | 18,500 | 30,250 | 48,750 | 46,438 | 2,312 | 4,875 | - | - |
| | 특허기술사업화 | 30,000 | 176,200 | 206,200 | 178,610 | 27,590 | 20,620 | 6,970 | - |
| 2021년 | IP직접투자 | 30,000 | 20,400 | 50,400 | 47,404 | 2,996 | 5,040 | - | 4년미만 |
| | IP크라우드펀딩 | 7,500 | 6,500 | 14,000 | 11,501 | 2,499 | 1,400 | 1,099 | - |
| | 특허기술사업화 | 12,500 | 380,000 | 392,500 | 352,336 | 40,164 | 39,250 | 914 | 1년미만 |
| 2022년 | IP기반 지역기업 | 22,500 | 20,300 | 42,800 | 31,603 | 11,197 | 4,280 | 6,917 | 3년미만 |
| | IP기반 창업기업 | 9,000 | 6,650 | 15,650 | 11,866 | 3,784 | 1,565 | 2,219 | 2년미만 |
| | IP직접투자 | 36,000 | 24,200 | 60,200 | 31,700 | 28,500 | 6,020 | 22,480 | 2년미만 |
| | 특허기술사업화 | 12,500 | 213,600 | 226,100 | 150,073 | 76,027 | 22,610 | 53,417 | 2년미만 |
| 2023년 | 특허기술사업화 | 30,000 | 28,250 | 58,250 | 42,687 | 15,563 | 5,825 | 9,738 | 5년미만 |
| 2024년 | IP직접투자 | 11,400 | 11,400 | 22,800 | 5,500 | 17,300 | 2,280 | 15,020 | 2년미만 |
| | 특허기술사업화 | 12,500 | 100,000 | 112,500 | 11,500 | 101,000 | 11,250 | 89,750 | 4년미만 |
| 2025년 | IP직접투자 | 8,000 | 12,210 | 20,210 | 3,000 | 17,210 | 2,021 | 15,189 | 2년미만 |
| | IP지역특화 | 5,000 | - | - | - | - | | - | - |
| | 특허기술사업화 | 22,500 | - | - | - | - | | - | - |

주 1) 운용비용(D)은 운용사 관리보수, 법률검토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펀드 청산 시 확정되나, 결성총액(A)의 10%로 임의 가정

2) 2025년 IP지역특화,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 운용사 선정 후 자펀드 결성 중

자료: 지식재산처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투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금액은 재출자 금액으로 활용하여 신규 자펀드를 결성하고 있으며, 운용사 선정 시 자펀드를 조기 결성하는 운용사에 가점부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5년 신규 출자된 'IP지역특화' 분야와 '특허기술사업화' 분야는 아직 모펀드 민간투자금도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운용사들이 기한 내 결성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펀드 결성시한을 3개월 연장한 경우가 존재하는 등 투자지연 및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16)]

지식재산처는 정부 출자금이 민간 투자 유치 및 실제 투자로 조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14~2025년간 결성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 18개 중 2026년 3월말 기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5개에 불과한데, 지식재산처는 적기 청산과 수익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는 통상 7~8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운용사는 자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됨.

원칙적으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총회개최가 원칙이나, 90일 이내로 잔여자산 처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기간의 연장이 가능함.[17)]

2014~2025년 결성된 자펀드 중 2026년 3월말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는 18개이고,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5개에 불과함.

16) 다만, IP지역특화 분야의 경우 2026년 7월 26일까지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26년 6월 4일에 결성됨.

17)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내용>

| 참고 |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공통 내용 |
|---|---|
| (중략)<br>④ 청산인(운용사)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br>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014~2025년 결성된 특허계정 자펀드 중 존속기간 만료 및 청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조합명 (펀드명) | 펀드결성액 | | | 결성일 | 만료일 | 기간연장 여부 (연장일수) | 청산 여부 | 기준 (목표) 수익률 | 청산시 수익률 | 존속기관이 도과에도 불구한 미청산 사유 |
|---|---|---|---|---|---|---|---|---|---|---|
| | 총 | 모태 | 모태 외 | | | | | | | |
| 알ㅇㅇㅇㅇ조합 | 17,000 | 10,000 | 7,000 | 2014.2.28. | 2022.2.27. | O (730일) | O | 7.0 | 7.32 | - |
| Iㅇㅇㅇㅇ조합 | 30,000 | 10,000 | 20,000 | 2014.7.11. | 2022.7.10.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SPC 청산을 통한 회수 예정 |
| Iㅇㅇㅇㅇ조합 | 10,000 | 8,000 | 2,000 | 2014.10.31. | 2022.10.30. | O (424일) | O | 7.0 | 17.7 | - |
| Pㅇㅇㅇㅇ펀드 | 56,000 | 10,000 | 46,000 | 2014.12.5. | 2022.12.4. | O (1,096일) | O | 7.0 | 7.12 | - |
| Kㅇㅇㅇㅇ조합 | 50,000 | 10,000 | 40,000 | 2015.2.10. | 2023.2.9. | O (1,096일) | O | 7.0 | 7.77 | - |
| 서ㅇㅇㅇㅇ조합 | 10,000 | 5,000 | 5,000 | 2015.7.6. | 2023.7.5. | O (169일) | O | 5.0 | 19.4 | - |
| Bㅇㅇㅇㅇ조합 | 10,000 | 5,000 | 5,000 | 2015.10.2. | 2023.10.1.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
| Iㅇㅇㅇㅇ조합 | 15,000 | 10,000 | 5,000 | 2015.11.13. | 2023.11.12.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기존주주,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
| 아ㅇㅇㅇㅇ조합 | 15,000 | 10,000 | 5,000 | 2016.4.25. | 2024.4.24. | O (청산중) | X | 6.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
| Mㅇㅇㅇㅇ펀드 | 15,000 | 10,000 | 5,000 | 2016.9.3. | 2024.9.29.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

(단위: 백만원, %)

| 조합명 (펀드명) | 펀드결성액 | | | 결성일 | 만료일 | 기간연장 여부 (연장일수) | 청산 여부 | 기준 (목표) 수익률 | 청산시 수익률 | 존속기관이 도과에도 불구한 미청산 사유 |
|---|---|---|---|---|---|---|---|---|---|---|
| | 총 | 모태 | 모태 외 | | | | | | | |
| 알ㅇㅇㅇㅇ펀드 | 15,000 | 10,000 | 5,000 | 2016.6.21. | 2024.6.20.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기존주주 및 신주 유상증자 시 구주매각 예정 |
| Iㅇㅇㅇㅇ조합 | 15,000 | 10,000 | 5,000 | 2016.6.23. | 2024.6.22.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 M&A를 통한 회수 예정 |
| Iㅇㅇㅇㅇ조합 | 45,000 | 34,000 | 11,000 | 2016.9.9. | 2024.9.8. | O (청산중) | X | 6.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제3자 매각 및 M&A를 통한 회수 예정 |
| Iㅇㅇㅇㅇ2호 | 20,000 | 10,000 | 10,000 | 2016.10.27. | 2024.10.26.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SPC 청산을 통한 회수 예정 |
| 유ㅇㅇㅇㅇ조합 | 15,000 | 10,000 | 5,000 | 2017.9.26. | 2025.9.25. | O (청산중) | X | 6.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기존주주 및 신주 유상증자 시 구주매각 예정 |
| Bㅇㅇㅇㅇ조합 | 15,000 | 10,000 | 5,000 | 2017.10.17. | 2024.10.16.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
| 시ㅇㅇㅇㅇ펀드 | 18,000 | 10,000 | 8,000 | 2018.1.8. | 2026.1.7. | O (청산중) | X | 5.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최대주주 및 신주 유상증자 시 구주매각 예정 |
| 2ㅇㅇㅇㅇ조합 | 76,500 | 5,600 | 70,900 | 2019.11.15. | 2024.11.14. | O (청산중) | X | 8.0 | - | 잔여자산 매도 지연에 따른 청산기한 연장 / IPO 및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수 예정 |

자료: 지식재산처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일부 펀드의 청산 지연은 자펀드 운용사가 수익 극대화 등을 위해 청산 연장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존속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구주매각시스템에 잔여자산을 의무로 등록하게 하고, 이후 제3자에 구주를 매각하거나 운용사가 잔여자산을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자펀드 청산이 지연될 경우 신규 정책펀드 출자나 재투자로 연결되지 못해 정책자금의 회전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매각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잔여자산이 부실·비유동 자산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할인매각의 가능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가급적 계획대로 자펀드의 청산과 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5.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관리 필요

## 가. 개 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중심의 유·무형 종합지원을 통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9억 6,6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8]

[2025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지식재산 창출지원 | 20,660 | 20,660 | - | - | 20,660 | 20,642 | - | 18 | 24,373 |
| 중소기업 IP 창출지원 | 16,368 | 16,368 | - | - | 16,368 | 16,350 | - | 18 | 19,882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11,966 | 11,966 | - | - | 11,966 | 11,966 | - | - | 15,48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포함) 중소기업이며,[19]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해외출원 비용 지원·해외 OA,등록지원·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18) 일반회계-지식재산 창출지원(1132-304)(지식재산정책국)

19)「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25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결산]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 지원기간 | 3년간(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지원한도 | 기업 당 7,000만원 이내 |
| 지원분야 | 해외출원 비용 지원. 해외OA・등록 지원(특허/상표/디자인), 특허, 디자인, 브랜드, 기타 |
| 기업분담금 | 40%(현금 20% + 현물 20%) |

주) 해외권리화(출원・중간대응・등록)의 경우 현금 40%
자료: 지식재산처

## 나. 검토의견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받은 이후 기업의 해외출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식재산처는 참여 기업의 해외출원 실적을 관리하는 등 해외출원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①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지원만 받거나, ②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지원을 받은 후 해당 성과물의 해외출원 지원까지 연계하여 받을 수도 있고, ③ 자체 개발한 디자인 또는 브랜드에 대해 해외출원 지원만 받을 수도 있는 등 희망하는 지원분야를 선택할 수 있음.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개발된 디자인과 브랜드들이 실제 해외에 출원되어 권리를 인정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1~2025년간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과 브랜드의 출원실적은 국내출원 실적만 관리되고 해외출원 실적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예를 들어 지식재산처는 2025년 112건의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개발된 디자인 중 73건이 국내에 출원된 실적만 확인할 수 있고, 해외출원 실적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2021~2025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개발 사업 참여 후 출원실적]

(단위: 건)

| 구분 | | 2021 | | | 2022 | | | 2023 | | | 2024 | | | 2025 | | |
|---|---|---|---|---|---|---|---|---|---|---|---|---|---|---|---|---|
| | | 개발 | 출원 | | 개발 | 출원 | | 개발 | 출원 | | 개발 | 출원 | | 개발 | 출원 | |
| | | | 국내 | 해외 | | 국내 | 해외 | | 국내 | 해외 | | 국내 | 해외 | | 국내 | 해외 |
| 디자인 | 제품 | 155 | 155 | 확인 | 145 | 145 | 확인 | 95 | 94 | 확인 | 113 | 113 | 확인 | 107 | 107 | 확인 |
| | 화상 | 7 | 7 | | 26 | 26 | | 27 | 27 | | 34 | 34 | | 19 | 15 | |
| | 포장 | 138 | 137 | | 161 | 161 | | 111 | 111 | | 159 | 159 | | 152 | 151 | |
| 브랜드 | 비영어권 | 12 | 14 | 12 | 12 | 11 | 31 | 7 | 8 | 9 | 6 | 6 | 8 | 4 | 4 | 2 |
| | 신규 | 89 | 86 | 불가 | 100 | 100 | 불가 | 52 | 52 | 불가 | 86 | 86 | 불가 | 67 | 67 | 불가 |
| | 리뉴얼 | 33 | 33 | | 39 | 39 | | 31 | 31 | | 43 | 43 | | 42 | 42 | |

자료: 지식재산처

또한 2025년 기준 249개 기업이 디자인 또는 브랜드 지원을 받았으나 이 중 95개(38.15%) 기업만 해외권리화(출원·중간대응·등록) 지원을 받아 개발 후 출원까지 연계지원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2~2025년간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지원받은 이후 해외 권리화까지 지원받은 기업 수]

(단위: 건,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디자인 또는 브랜드개발 지원기업 수(A) | 311 | 227 | 290 | 249 |
| 개발지원 이후 해외권리화 지원 수혜기업 수(B) | 164 | 89 | 89 | 95 |
| B/A | 52.73 | 39.21 | 30.69 | 38.15 |

자료: 지식재산처

결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이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국내활동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산업통상부의 사업들과 큰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20)21)]

20) 예를들어 산업통상부의 디자인산업진흥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속가능디자인지원' 내역사업은 지속가능디자인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컨설팅, 역량강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함.

21)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부의 사업과 디자인이라는 지원수단은 일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선행디자인 검토·권리화 가능성 판단·출원·IP포트폴리오 구축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기업은 국내출원을 통해 권리 범위와 시장 반응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국내권리화를 기반으로 우선권을 확보한 뒤 주요 수출국에 해외출원을 연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이고, 반드시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업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브랜드도 해외출원이 있어야 해외에서 권리를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 기준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받은 기업의 60% 이상이 해외권리화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으므로 개발 후 해외권리화 연계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향후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해외출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사업 참여 후 해외권리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6. 미스터리 수사지원단(디자인 침해 지원단) 운영 사업: 하반기에 집중되는 채증 물품 구입 개선 검토 필요

## 가. 개 요

**‘미스터리 수사지원단(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사업은 지식재산 범죄수법의 지능·다양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모니터링과 침해정보 채증 및 보호조치를 통해 특사경의 디자인 침해 단속·수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1,200만원 중 2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5년도 미스터리 수사지원단(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12,782 | 12,782 | - | ±19 | 12,782 | 12,693 | - | 89 | - |
| 미스터리 수사지원단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 212 | 212 | - | - | 212 | 211 | - |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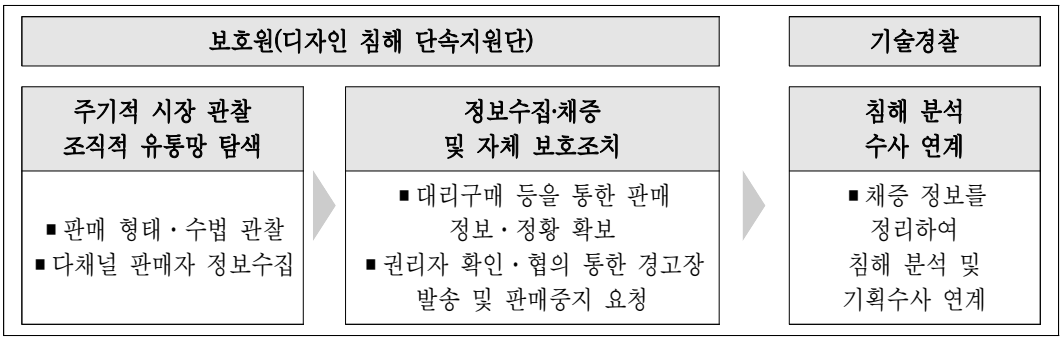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지식재산처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탁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의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 주기적으로 시장을 관찰하고 유통망을 탐색하며, 필요시 대리구매 등을 통한 판매 정보와 정황을 확보한 후 채증 정보를 정리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술경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2026년부터 이 사업은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변경되었음.

22) 일반회계-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1)(지식재산분쟁대응국)

[2025년도 미스터리 수사지원단(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사업 추진 체계]




자료: 지식재산처

## 나. 검토의견

**채증물품의 구입이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식재산처는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해 구입 시점이 연내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을 통한 채증물품의 구입 시점은 2024~2025년간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었음. 예를들어 2024년의 경우 9~12월 4개월 간 채증물품을 구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8월·11월·12월 3개월간 채증물품을 구입하였음.

[2024~2025년간 월별 채증물품 구입 실적]

(단위: 건, 원)

| 연도 | 구분 | 1~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건 | - | - | 11 | 8 | 135 | 39 |
| | 금액 | - | - | 704,970 | 891,000 | 23,686,460 | 2,621,970 |
| 2025년 | 건 | - | 37 | - | - | 39 | 4 |
| | 금액 | - | 2,573,360 | - | - | 4,702,730 | 9,730,670 |

자료: 지식재산처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사업인력(계약직)의 신규 채용과 교육 등으로 인해 침해 모니터링이 4월부터 개시되고, 구매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한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모방품 구매가 하반기에 집중되었다고 설명함.[23)]

23) 2024년 3월 채용, 2025년 3월 채용, 2026년 4월 채용

현재와 같이 ‘단년도 계약직 채용→교육→모니터링→채증물품 구입’ 순으로 이어지는 사업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하반기에서야 채증물품 등을 활용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24]

또한 단년도 계약직 인력에 과다하게 의존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축적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상시인력으로의 고용형태 변경이나 지식재산처 담당 공무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채증물품 구입 시점을 연내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권리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25]

24) 지식재산처는 유사성과 권리의 무효가능성 등 침해여부를 검토한 이후에도 권리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함.

25) 지식재산처는 단일 건마다 권리자로부터 처벌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판매 플랫폼 측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침해가 확인되는 건마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나, 모니터링 후 구매가 필요한 건에 대해 분기별로 분류·정리하여 특사경에 보고 후 구매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분기별로 채증물품을 구매하여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 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노력 필요

### 가. 개 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IP전문인력 양성(학·석·박) 및 지역 IP교육 확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운영·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2억 2,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6)]

[2025년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7,220 | 7,220 | - | - | 7,220 | 7,220 | - | - | 7,22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지식재산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지역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권역의 他대학·기관·기업·고교 등에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하 “중점대학”)을 선정하여 최대 10년동안 연 5.5~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임.

이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중점대학은 지식재산 강좌를 전담할 전담교수(3명 이상), 중점대학 운영을 지원할 전담직원(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을 연차별 대응투자하여 참여교수 인건비, 직접비(교육시설 임대료, 특허검색 유료 DB 사용료, 장학금 등)로 집행하여야 하며,

2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1237-325)(지식재산정책국)

정부지원금은 지식재산 전담교수·전담직원 인건비(보수, 복리후생비),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경비(교육과정 개발, 장학금,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 등),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 기타 간접경비로 각각 사용하게 됨.

## 나. 검토의견

**2025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중점 대학의 경우 장학금을 계획보다 적게 지급하고 잔여금액을 운영비에 당초 계획 대비 초과집행 하였는데, 지식재산처는 보조금 배분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가급적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중점대학은 보조금을 인건비·운영비·장학금·유형자산취득비(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기타 간접경비로 활용할 수 있음.[27)]

2025년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장학금을 계획보다 적게 지급하고 운영비를 계획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들이 존재함.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는 당초 7,670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3,720만원(48.5%)만 지급하였으며, 운영비는 2,353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725만원(115.8%)을 집행하였음.[28)]

[2025년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대학별 보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 학교명 | 정부 지원액 | | | 인건비 | | | 운영비 | | | 장학금 | | | 유형자산 취득비 | | | 기타 운영비 | | | 보조금전체 집행률 | | |
|---|---|---|---|---|---|---|---|---|---|---|---|---|---|---|---|---|---|---|---|---|---|
| | 예산(A) | 결산(B) | B/A | 예산(A) | 결산(B) | B/A | 예산(A) | 결산(B) | B/A | 예산(A) | 결산(B) | B/A | 예산(A) | 결산(B) | B/A | 예산(A) | 결산(B) | B/A | 예산(A) | 결산(B) | B/A |
| 경상국립대 | 750 | 750 | 100.0 | 311.0 | 310.9 | 100.0 | 150.0 | 138.4 | 92.3 | 161.0 | 172.7 | 107.3 | - | - | - | 128.0 | 128.0 | 100.0 | 750 | 750 | 100.0 |
| 충북대 | 750 | 750 | 100.0 | 249.2 | 249.2 | 100.0 | 192.5 | 224.1 | 116.4 | 187.4 | 157.5 | 84.0 | 0.6 | 0.6 | 100.0 | 120.3 | 118.6 | 98.6 | 750 | 750 | 100.0 |
| 전남대 | 750 | 750 | 100.0 | 249.7 | 249.7 | 100.0 | 296.3 | 297.8 | 100.5 | 86.0 | 84.5 | 98.3 | - | - | - | 118.0 | 118.0 | 100.0 | 750 | 750 | 100.0 |
| 충남대 | 750 | 750 | 100.0 | 372.2 | 372.2 | 100.0 | 177.8 | 181.4 | 102.0 | 82.0 | 79.3 | 96.7 | - | - | - | 118.0 | 117.1 | 99.2 | 750 | 750 | 100.0 |

27) 지식재산처는 중점대학 선정 시 1차년도 배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후 매년 정부지원금 배분계획을 제출받고 있음.

28) 장학금 예산은 학부 22명, 대학원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학생 모집 인원이 미달되어 학부 12.5명, 대학원 3.5명에게 지급되었음.

(단위: 백만원, %)

| 학교명 | 정부 지원액 | | | 인건비 | | | 운영비 | | | 장학금 | | | 유형자산 취득비 | | | 기타 운영비 | | | 보조금전체 집행률 | | |
|---|---|---|---|---|---|---|---|---|---|---|---|---|---|---|---|---|---|---|---|---|---|
| | 예산 (A) | 결산 (B) | B/A | 예산 (A) | 결산 (B) | B/A | 예산 (A) | 결산 (B) | B/A | 예산 (A) | 결산 (B) | B/A | 예산 (A) | 결산 (B) | B/A | 예산 (A) | 결산 (B) | B/A | 예산 (A) | 결산 (B) | B/A |
| 경북대 | 750 | 750 | 100.0 | 305.0 | 305.0 | 100.0 | 284.0 | 284.3 | 100.1 | 75.0 | 75.0 | 100.0 | 4.5 | 4.4 | 97.8 | 81.5 | 81.3 | 99.8 | 750 | 750 | 100.0 |
| 강원대 | 750 | 750 | 100.0 | 313.0 | 313.0 | 100.0 | 221.0 | 222.2 | 100.5 | 105.0 | 105.0 | 100.0 | 3.0 | 3.0 | 100.0 | 108.0 | 106.8 | 98.9 | 750 | 750 | 100.0 |
| 부산대 | 750 | 750 | 100.0 | 321.1 | 321.1 | 100.0 | 223.7 | 223.7 | 100.0 | 67.5 | 67.5 | 100.0 | 12.1 | 12.1 | 100.0 | 125.6 | 125.6 | 100.0 | 750 | 750 | 100.0 |
| 전북대 | 750 | 736.9 | 98.3 | 302.2 | 298.5 | 98.8 | 235.3 | 272.5 | 115.8 | 76.7 | 37.2 | 48.5 | 4.8 | 4.8 | 100.0 | 131.0 | 123.8 | 94.5 | 750 | 736.9 | 98.3 |
| 제주대 | 750 | 750 | 100.0 | 284.1 | 284.1 | 100.0 | 271.7 | 274.6 | 101.1 | 66.2 | 59.8 | 90.3 | - | - | - | 128.0 | 131.5 | 102.7 | 750 | 750 | 100.0 |

자료: 지식재산처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수강생 예측 실패와 일부 학생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장학금 지급이 저조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학금 집행 잔액은 비교과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 최초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였다고 설명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분계획과 달리 자금을 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계획 대비 실제 수강생 규모와 장학금 지급인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2025년과 같이 수강인원이 계획 대비 미달되어 운영비가 초과집행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 아닌 대학의 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사업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29)]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엄격하게 평가·관리하고, 가급적 보조금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사업자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9) 타 대학에서 장학금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가 지식재산 관련 비교과 사업 운영비에 충당하는 집행이 반복될 우려도 있음.

【기　타】

#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지식재산처에 대해 시정요구 15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14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1 | 14 | - | 15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 | 14 | - | 15 |

지식재산처는 시정요구사항 15건에 대해 1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3.3%)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15 | 14 | 93.3 | 1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15 | 14 | 93.3 | 1 |

# 중소벤처기업부

# Ⅰ. 개 관

## 1. 결산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415억 9,100만원(4.7%)이 많은 9조 8,624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 2,500만원(1.0%)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213,471 | 213,471 | 251,428 | 37,957 | 270,781 | 270,781 | 198,376 | △72,405 | △53,052 |
| 기 금 | 8,255,288 | 8,255,288 | 9,513,574 | 1,258,286 | 9,221,460 | 9,150,055 | 9,664,051 | 513,996 | 150,477 |
| 총수입 | 8,468,759 | 8,468,759 | 9,765,002 | 1,296,243 | 9,492,241 | 9,420,836 | 9,862,427 | 441,591 | 97,425 |

문의: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81억 300만원(△0.3%)이 적은 20조 8,939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9,464억 9,400만원(39.8%)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회계연도 | | | | 2025회계연도 | | | | 전년대비 (D-B) |
|---|---|---|---|---|---|---|---|---|---|
| | 예산액 | | 결산 (B) | 예산대비 (B-A) | 예산액 | | 결산 (D) | 예산대비 (D-C) | |
| | 본예산 | 추경(A) | | | 본예산 | 추경(C) | | | |
| 예 산 | 3,500,367 | 3,500,367 | 3,492,685 | △7,682 | 3,637,208 | 4,021,855 | 4,015,095 | △6,760 | 522,410 |
| 기 금 | 11,449,293 | 11,720,845 | 11,454,792 | △266,053 | 11,611,588 | 16,940,219 | 16,878,876 | △61,343 | 5,424,084 |
| 총지출 | 14,949,660 | 15,221,212 | 14,947,477 | △273,735 | 15,248,796 | 20,962,074 | 20,893,971 | △68,103 | 5,946,494 |

##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07억 8,100만원으로, 2,013억 6,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83억 7,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5%)되고, 29억 2,4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6,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입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B) | 세입 예산현액 (A+B)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일반회계 | 249,821 | 249,821 | - | 249,821 | 178,788 | 176,039 | 2,688 | 6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960 | 20,960 | - | 20,960 | 22,573 | 22,337 | 236 | - |
| - 지역자율계정 | - | - | - | - | 1,359 | 1,123 | 236 | - |
| - 지역지원계정 | 20,960 | 20,960 | - | 20,960 | 19,232 | 19,232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 - | 1,625 | 1,625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 - | 358 | 358 | - | - |
| 합 계 | 270,781 | 270,781 | - | 270,781 | 201,361 | 198,376 | 2,924 | 61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조 6,415억 1,700만원으로, 9조 6,347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3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출예산액 | | 예산결정후증감액(B) | | | 세출 예산현액 (C=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6,171,533 | 9,189,886 | 1,111 | - | - | 9,190,997 | 9,185,063 | 437 | 5,497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35,711 | 35,711 | - | - | - | 35,711 | 35,711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14,809 | 414,809 | - | - | - | 414,809 | 413,982 | - | 827 |
| - 지역지원계정 | 155,065 | 155,065 | - | - | - | 155,065 | 155,063 | - | 2 |
| - 지역자율계정 | 240,925 | 240,925 | - | - | - | 240,925 | 240,880 | - | 45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1,088 | 11,088 | - | - | - | 11,088 | 11,088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7,731 | 7,731 | - | - | - | 7,731 | 6,951 | - | 780 |
| 합 계 | 6,622,053 | 9,640,406 | 1,111 | - | - | 9,641,517 | 9,634,756 | 437 | 6,324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7조 3,590억 600만원으로, 39조 194억 4,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8조 5,901억 6,8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3%)되고 9조 246억 6,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조 4,046억 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 계획액 |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 당초 | 수정 | | | | |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11,559,453 | 12,595,168 | 14,100,566 | 12,715,699 | 752,318 | 632,549 |
| 기술보증기금 | 3,308,026 | 3,378,026 | 11,517,131 | 4,291,482 | 6,453,590 | 772,059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7,085,996 | 11,385,812 | 13,401,744 | 11,582,987 | 1,818,757 | - |
| 합 계 | 21,953,475 | 27,359,006 | 39,019,441 | 28,590,168 | 9,024,665 | 1,404,608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7조 3,644억 5,900만원으로, 28조 5,901억 6,8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4.5%)되고 1,261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출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11,559,453 | 12,595,168 | 5,453 | 12,600,621 | 12,715,699 | - | 25,089 |
| 기술보증기금 | 3,308,026 | 3,378,026 | - | 3,378,026 | 4,291,482 | - | 4,788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7,085,996 | 11,385,812 | - | 11,385,812 | 11,582,987 | - | 96,237 |
| 합 계 | 21,953,475 | 27,359,006 | 5,453 | 27,364,459 | 28,590,168 | - | 126,114 |

주) 총계 기준

##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자산은 전년 대비 8,516억 5,100만원이 감소된 48조 9,096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금융상품과 대여금의 감소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9,258억 1,100만원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1,482억 1,300만원 증가된 48조 4,189억 1,700만원으로, 이는 정부내예수금의 증가 등에 따라 차입금이 1조 639억 5,300만원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9,998억 6,300만원이 감소된 4,907억 4,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2조 772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387억 1,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조 4,79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092억 1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2025 (A) | 2024 (B) | 증 감 | |
|---|---|---|---|---|---|---|
| | | | | | 금액 (A-B) | 증가율 (A-B)/B |
| 재정 상태표 | 자 산 | | 48,909,665 | 49,761,316 | △851,651 | △1.7 |
| | | 금융자산 | 47,393,316 | 48,319,127 | △925,811 | △1.9 |
| | | 유·무형자산 | 1,507,775 | 1,426,392 | 81,383 | 5.7 |
| | | 기타자산 | 8,574 | 15,796 | △7,222 | △45.7 |
| | 부 채 | | 48,418,917 | 47,270,704 | 1,148,213 | 2.4 |
| | | 차입부채 | 46,562,402 | 45,703,535 | 858,867 | 1.9 |
| | | 충당부채 | 1,639,487 | 1,373,278 | 266,209 | 19.4 |
| | | 기타부채 | 217,028 | 193,890 | 23,138 | 11.9 |
| | 순자산 | | 490,749 | 2,490,612 | △1,999,863 | △80.3 |
| 재정 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 12,077,253 | 7,438,534 | 4,638,719 | 62.4 |
| | 재정운영순원가 | | 12,469,398 | 7,755,832 | 4,713,566 | 60.8 |
| | 재정운영결과 | | 11,479,366 | 6,870,165 | 4,609,201 | 67.1 |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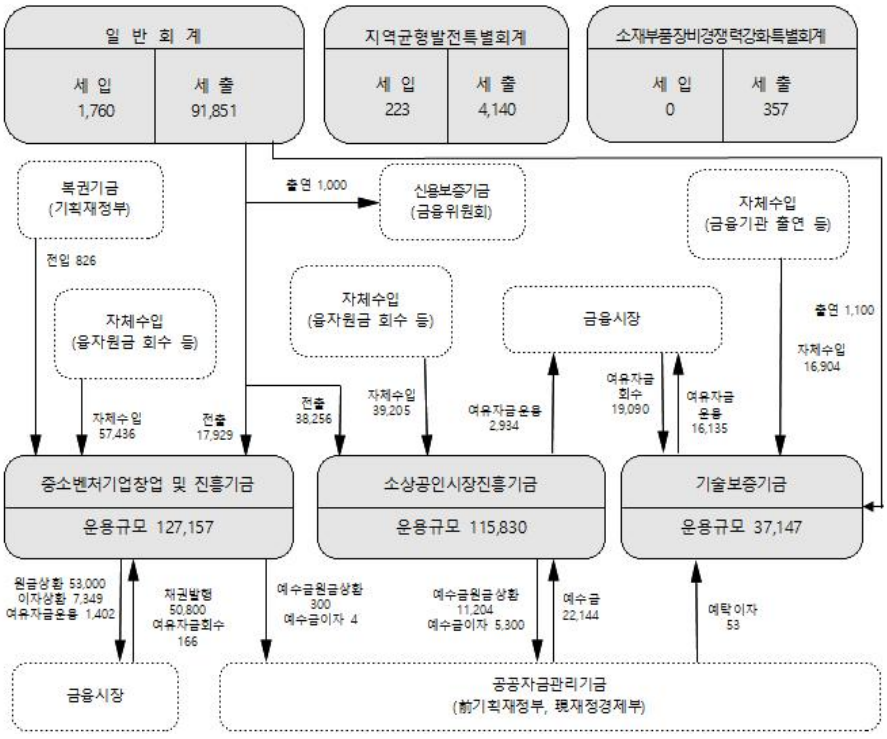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먼저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3조 8,256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1조 7,929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조 6,504억원이 상환되었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304억원이 상환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②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③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④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 ⑤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대규모의 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집행하거나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다수의 내내역사업 또는 내내내역사업을 편성·집행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우회, 사업 간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내역사업을 세부사업화하는 등 예산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R&D 예산 감액 기조에 따라 연구과제 예산이 대폭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중단된 연구과제 중 일부는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매몰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예산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원분을 비롯하여 매년 수출바우처 중 일부가 공시된 사용기한 도과 후에 사용되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가 공시된 사용기한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매년 여성기업 부정신청 적발에 따른 확인서 발급취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부서의 자원 투입량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조사·연구 등 기관 역할 수행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재 유치 방안을 비롯한 결원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가 창업초기기업, 소외분야 및 엔젤투자, 국내 투자자 확충 등 민간자금을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소상공인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 설정된 성과지표는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적극 발굴 및 관리하는 한편, 배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라는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달수수료의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배달비 경감 효과가 장기적 차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사업액의 조기 소진 또는 미집행,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 및 면밀하지 못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융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부실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열째,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연도 중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할인율과 규모를 국회 심의 시의 계획과 달리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9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완화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매장에도 상품권이 사용되었는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이 기금이 본 목적과 무관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예산액 과다 내역사업의 세부사업화 등 예산구조 재편 검토 필요

### 가.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7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現 산업통상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격상하여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출범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예컨대 2020년 재정사업 규모는 25.5조원으로 전년(11.5조원) 대비 122.3%, 2022년 재정사업 규모는 59.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87.7% 증가하였음.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 하에 2024년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① 경영부담 완화, ② 성장촉진 지원, ③ 재기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사업 규모는 2024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음.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 회계·기금명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일반회계 | 세부사업 수 | 122 | 122 | 134 | 130 | 144 | 155 | 169 | 164 | 146 | 144 | 143 |
| | 예산액 | 1.97 | 2.00 | 2.21 | 2.93 | 7.17 | 4.33 | 4.61 | 3.23 | 3.03 | 3.57 | 4.93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부사업 수 | 7 | 8 | 10 | 16 | 21 | 19 | 23 | 25 | 25 | 25 | 20 |
| | 예산액 | 0.27 | 0.26 | 0.47 | 0.44 | 0.46 | 0.55 | 0.49 | 0.59 | 0.39 | 0.41 | 0.47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 세부사업 수 | - | - | - | - | 7 | 8 | 9 | 7 | 7 | 4 | 2 |
| | 예산액 | - | - | - | - | 0.26 | 0.34 | 0.35 | 0.22 | 0.07 | 0.04 | 0.01 |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세부사업 수 | 27 | 26 | 27 | 27 | 26 | 25 | 26 | 27 | 23 | 24 | 22 |
| | 계획액 | 5.29 | 6.07 | 5.50 | 5.17 | 7.92 | 7.66 | 6.30 | 5.39 | 6.34 | 7.26 | 6.82 |
|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세부사업 수 | 13 | 12 | 11 | 12 | 16 | 16 | 15 | 17 | 14 | 13 | 13 |
| | 계획액 | 2.05 | 2.75 | 2.61 | 2.93 | 9.67 | 18.92 | 47.92 | 4.10 | 5.11 | 9.67 | 5.98 |
| 합계 | 세부사업 수 | 169 | 168 | 182 | 185 | 214 | 223 | 242 | 240 | 215 | 210 | 200 |
| | 계획액 | 9.59 | 11.09 | 10.79 | 11.46 | 25.48 | 31.79 | 59.69 | 13.52 | 14.95 | 20.95 | 18.21 |

주) 각 연도별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대규모의 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집행하거나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다수의 내내역사업 또는 내내내역사업을 편성·집행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우회, 사업 간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내역사업을 세부사업화하는 등 예산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사업 수와 재정사업 규모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전인 2016년은 169개의 세부사업 내에 9.59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재정사업 규모가 가장 컸던 2022년은 2016년 대비 6배 이상인 59.69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세부사업 수는 242개에 불과하여, 부 출범 이전 중소기업청의 소수 세부사업 위주 예산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사업의 양적 팽창만을 반복하였음.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부 재정사업은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대규모의 내역사업이 편성되거나, 다수의 내내역사업 또는 내내내역사업 등으로 분화되는 등의 구조를 취하게 되었음.

먼저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대규모의 내역사업이 편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폐업 및 코로나 피해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2025년 신설, 0.28조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한시)(2024년 신설, 0.24조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2025년 신설, 1.57조원)’, ‘상생페이백(한시)(2025년 신설, 1.37조원)’, ‘스케일업 팁스(2026년 신설, 0.29조원)’ 등의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바 있음.

[2022년 이후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내내역사업명) | 사업비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폐업 및 코로나 피해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 - | - | - | 281,269 | 9,625 |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38,300 | 68,200 | 68,200 | 60,000 | 60,000 |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 | - | 100,000 | 140,000 | 140,000 |
|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 | - | 600 | 58,496 | 56,484 |
| 창업패키지(지역창업패키지) | - | - | - | - | 51,080 |
| 글로벌창업허브구축 | - | - | 1,500 | 31,885 | - |
| 창업지원사업관리 | - | - | - | 32,841 | 32,779 |
| 유니콘브릿지 | - | - | - | - | 32,000 |
| 창업중심대학 | - | 67,415 | 67,475 | 77,475 | 112,250 |
|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 - | - | - | - | 155,000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한시) | - | - | 238,714 | - | - |
|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 - | - | - | 168,658 | - |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 - | - | - | 1,565,980 | - |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 - | - | - | 131,356 | - |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 | - | - | - | 64,500 |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R&D) | 33,057 | 32,176 | 43,665 | 51,690 | 23,326 |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주력산업생태계구축) | - | - | - | 13,720 | 72,847 |
| 재도약촉진 (도약(점프업)프로그램) | - | - | - | 29,900 | 59,500 |
| 상생페이백(한시) | - | - | - | 1,370,000 | -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내내역사업명) | 사업비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 | - | - | - | 30,000 | 45,000 |
| 프로젝트 방식 R&D 보증 | - | - | - | - | 30,610 |
| 지역주도형 AI대전환 | - | - | - | 35,000 | 49,000 |
| 구매연계·상생협력 | - | - | - | - | 91,245 |
| 스케일업 팁스 | - | - | - | - | 292,425 |
| 글로벌 팁스 | - | - | - | - | 74,706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 - | - | - | - | 70,873 |

주 1) 각 연도별 추경 기준
2) 신설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에 대해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세부사업이 아닌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이 현재 세부사업 단위로 실시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2)]

한편 하나의 세부사업이 다수의 내내내역사업 등으로 분화된 사례를 살펴보면,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은 ‘제조혁신 구축지원’,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 3개의 내역사업, ‘선도형 제조혁신’을 비롯한 8개의 내내역사업으로 분화되었고, 이 중 선도형 제조혁신 사업은 정부일반형, 자율형공장, 대중소 상생형, 디지털 협업 공장 등 4개의 내내내역사업으로 분화되었음.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사업이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와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구조]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내역사업명 |
|---|---|---|
|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제조혁신 구축지원 | 선도형 제조혁신 (정부일반형, 자율형 공장, 대중소 상생형, 디지털 협업 공장 등) |
| | | 제조혁신 자동화 |
|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 공급기업 역량진단 |
| |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
| |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
| |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 국가표준정책연구 |
| | | 제조데이터 표준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 예산안 심의는 세부사업을 기본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점,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국가결산 또한 세부사업을 최소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점,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의 정보는 세부사업에 비해 예・결산 자료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다수의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국회가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유사・중복 여부 등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목적 및 지원 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다수의 사업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라이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주관기관 및 커리큘럼 주요 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라이콘 창업지원 사업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간 비교]

| 구분 | 라이콘 창업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
|---|---|---|
| 목적 | 혁신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습·자금 등 단계별 창업 지원 |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 수행주체<br>(세부사업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br>(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창업진흥원<br>(창업사업화지원) |
| 주관기관 |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경제진흥원,<br>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전남, 충남) 등 |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민간협·단체,<br>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
| 커리큘럼<br>주요 내용 | ·선정자 대상 기초역량 교육 및 주관기관별 자율 창업역량 기초교육<br>·주관기관 창업기획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멘토링<br>·최초 선정 시 사업화자금 지급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등 추가 지급(최대 4,000만원)<br>·그 외 우수 소상공인 발굴, 네트워킹 및 연계사업 지원, 선배 창업가 특강 등 자율 프로그램, 창업전문인력 인프라 제공 | ·선정자 대상 사업모델 구체화교육을 통한 역량 검증 및 주관기관별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br>·최초 선정 시 사업화자금 지급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등 추가 지급(최대 8,000만원)<br>·그 외 네트워킹 및 연계사업 지원 제공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심지어 이들 사업이 속한 ‘창업사업화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세부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트랙’,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사업 관련 예산이 신설된 바 있는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각 트랙 또한 아이디어 심사, 권역·전국 단위 오디션, 사업화자금 지원 및 책임 멘토링 등 주요 커리큘럼이 사실상 동일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양 사업 간 유사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트랙의 단계별 진행 내용(1차 기준)]

| |
|---|
| ○ 아이디어 심사: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제출한 지원서 평가<br>- 선발 인원: 4,000명<br>- 지원 내용: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책임 멘토링, 범용 AI솔루션(총 2개월, 최대 100만원)<br>○ 1라운드(지역 예선): 멘토의 관찰 및 서면 평가<br>- 선발 인원: 500명<br>- 지원 내용: 초기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1,000만원, 책임 멘토링 및 기술 멘토링<br>○ 2라운드(지역 오디션): 지역별 멘토 기관 대상 공개 오디션<br>- 선발 인원: 200명<br>- 지원 내용: 초기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1,000만원, 책임 멘토링 및 선배 멘토링<br>○ 3라운드(권역 오디션): 기술분야별 전문 투자사 대상 권역별 비공개 오디션<br>- 선발 인원: 100명<br>- 지원 내용: 차년도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책임 멘토링<br>○ 4라운드(전국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br>- 선발 인원: 1명<br>- 지원 내용: 최종우승자 상금 및 투자금 최대 10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modoo.or.kr)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의 단계별 진행 내용(1차 기준)]

| |
|---|
| ○ 아이디어 심사: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제출한 지원서 평가<br>- 선발 인원: 1,000명<br>- 지원 내용: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책임 멘토링, 창업 기초교육, 오디션 준비과정 도움<br>○ 1라운드(권역 오디션): 권역별 창업 아이디어 공개 피칭<br>- 선발 인원: 600명<br>-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창업교육, 맞춤 멘토링, 육성공간(사무실) 지원<br>○ 2라운드(전국 예선): 멘토의 관찰 및 서면 평가<br>- 선발 인원: 100명<br>- 지원 내용: 분야별 책임 멘토링 및 선배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육성공간(사무실) 지원<br>○ 3라운드(전국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br>- 선발 인원: 1명<br>- 지원 내용: 최종우승자 상금 및 최대 1억원, 투자연계 지원,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modoo.or.kr)

또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익모델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과제 공고 후 400개 과제에 대해 과제마다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는데,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기존 ‘강한소상공인 지원 사업’, ‘로컬기업 육성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며, 목적 및 지원 내용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신규): 400억원<br>-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유사사업의 지원 현황과 경쟁률을 고려하여 400개 × 1억원 지원<br>* 신청규모: 강한소상공인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백년소공인 등에서 지원한 과제 수 1,610여 개를 반영<br>* 경쟁률: 2026년 시범운영 결과 50개 모집에 196개 신청(3.92:1)한 것을 고려함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과 유사 사업 간 비교]

| 구분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 강한 소상공인 지원 | 로컬기업 육성 |
|---|---|---|---|
| 목적 | 생활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기반 성장 촉진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생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앵커스토어·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원대상 | 지역 유망 소상공인 및 로컬창업가 |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 지원내용 | 생활문화 혁신 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생산 지원 (최대 1억원) | 소상공인이 로컬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BM고도화, 사업화 지원 (최대 1억원) | 로컬기업 발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및 사업화 지원 (최대 5,000만원) |
| 수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유사성이 높은 다수의 사업이 병존하는 경우 수혜자인 소상공인의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복수혜 여부 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3)]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의 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집행하거나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다수의 내내역사업 또는 내내내역사업을 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부 내역사업을 세부사업화하는 등 예산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①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내용상 유사하여 중복 지원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집단과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정보가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점, ③ 코로나19 이후 관련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 세부프로그램의 유사성이 심화된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음.(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2023. 10.)

## 2. 연구개발(R&D) 사업: 면밀한 예산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환수금·제재부가금 징수 실적 제고 필요

### 가.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에는 일반회계(12개 사업, 1조 3,542억 1,500만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4개 사업, 357억 1,1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개 사업, 1,370억 2,500만원) 등 3개 회계 소관 23개 사업에 1조 5,269억 5,100만원이 편성 및 집행되었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회계 | 사업수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일반회계 | 12 | 1,344,215 | 1,354,215 | - | - | 1,354,215 | 1,354,215 | - | - | 1,960,636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4 | 35,711 | 35,711 | - | - | 35,711 | 35,711 | - | - | 41,527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7 | 137,025 | 137,025 | - | - | 137,025 | 137,025 | - | - | 196,216 |
| 계 | 23 | 1,516,951 | 1,526,951 | - | - | 1,526,951 | 1,526,951 | - | - | 2,198,37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및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사업 수 및 예산현액 등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5년 상당 부분 원상회복되었는데, 이는 2024년 범정부 차원에서 단행된 연구개발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21~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및 과제 현황]

(단위: 개, 건, 백만원)

| 연도 | 사업 수 | 과제 수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2021 | 42 | 10,718 | 1,722,922 | 1,722,922 | - | - |
| 2022 | 51 | 12,364 | 1,761,482 | 1,761,482 | - | - |
| 2023 | 47 | 11,461 | 1,770,056 | 1,770,030 | - | 26 |
| 2024 | 32 | 10,729 | 1,393,220 | 1,393,220 | - | - |
| 2025 | 23 | 9,255 | 1,526,951 | 1,526,951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R&D 예산 감액 기조에 따라 연구과제 예산이 대폭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중단된 연구과제 중 일부는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매몰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는바, 향후에는 R&D 예산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R&D 예산을 조정하였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세부사업 단위에서의 예산 조정을 반영하여 R&D 과제 단위에서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였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집행 관련 처리기준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 「협약변경 보완방안」(중소벤처기업부, 2024. 1.) 등을 바탕으로 과제 변경 및 후속방안을 추진하였고, 20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액의 50%를, 그 외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20%, 25%를 감액 조정하였음.

그 결과 2024년 중소벤처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조정액은 당초 협약 대비 49.7% 조정된 2,02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가 조정된 2,477개 과제 중 169개가 중단되었고, 연구개발비 조정률이 50% 이상인 969개 과제 중 243개는 연구개발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421개는 목표·내용이 변경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특히 중단과제 중 포기한 152개 과제의 경우, 2021년 협약 과제가 5개, 2022년 협약 과제가 97개에 육박하는 등 2년 이상 진행 후 중단된 과제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R&D 계속과제 예산 조정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 계속과제 | 조정과제 | 당초 예산(A) | 조정 예산(B) | 조정액(C=B-A) | 조정률(=C/A) |
|---|---|---|---|---|---|
| 6,885 | 2,477 | 406,863 | 204,585 | △202,278 | △49.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R&D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조정률 및 결과]

(단위: 개)

| 구분 | | 2024년 연구개발비 조정률 | | | |
|---|---|---|---|---|---|
| | | 30% 미만 | 3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
| 계속 | | 58 | 1,281 | 969 | 0 |
| 중단 | 포기 | 152 | | | |
| | 문제과제 | 17 | | | |
| 총계 | | 2,477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R&D 계속과제 중 포기 과제 연차별 현황]

(단위: 개)

| 과제 협약연도 | 과제 수 |
|---|---|
| 2021 | 5 |
| 2022 | 97 |
| 2023 | 50 |
| 합 계 | 15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R&D 예산 감액에 따라 중단된 과제를 수행하였던 기업 중 2025년 신규 과제를 통해 R&D에 다시 참여한 기업이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5년 R&D 예산규모 회복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으로 인해 중단된 연구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매몰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2024년 중단된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수행기업 중 2025년 신규과제 참여 세부 현황]

| 기업명 | 2024년 중단과제 | | 2025년 신규과제 | |
|---|---|---|---|---|
| | 세부사업명 | 과제명 | 세부사업명 | 과제명 |
| 주식회사 한국 나노오트 |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 고집적 반도체 CMP 공정용 나노입자 합성 기술 및 양산장비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HBM 반도체 CMP 슬러리를 위한 초고순도 20nm급 산화세륨 및 산화세륨/지르코니아 복합체 나노입자 개발 |
| 주식회사 에어론 | 공정·품질 기술개발 | 단열재 제조공정 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된 방사율 0.03 이하의 저비용 고효율 복합 단열재 개발 |
| (주)삼보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머신러닝기법 적용 ICT 융복합형 밸브용 20~125N.m급 컴팩트 스마트 제어 액추에이터 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지역주력 밸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Needs의 Self-Locking 기능이 있는 1,600N.m급 쿼터턴 유성감속기(SB-SLPR16) 개발 |
| (주)에버켐텍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탈플라스틱을 위한 천연물 기반 고차단성 생분해 코팅제 및 응용 포장제품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하이브리드 배리어: 바이오폴리머 분산액을 활용한 수분 차단 및 열접착성 기능을 가지는 코팅제 |
| 포인투 테크놀로지 |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초고주파 광대역 RF 송수신기를 이용한 채널당 56Gbps급 초고속 플라스틱 도파관 통신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저전력 AI 데이터센터용 1.6Tbps Active RF Cable 구현을 위한 광대역, 고효율 RFIC 및 AiP 기반 패키지 솔루션 개발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R&D 예산에 대해 성과평가 등의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격히 조정한 결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였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비가 조정된 과제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면밀하게 수행하는 한편 향후에는 R&D 예산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R&D사업 종료과제의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부정행위 등에 따른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정산 후 미수납액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4]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5]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정산이 완료된 과제 중 2021년도 종료과제 22억 9,400만원, 2022년도 종료과제 70억 3,500만원, 2023년도 종료과제 80억 8,500만원, 2024년 종료과제 148억 100만원, 2025년 종료과제 64억 2,400만원이 여전히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과제 종료연도 | 종료 과제 수 | 미정산 과제 수 | 정산완료 과제 수 | 정산완료 과제 | | |
|---|---|---|---|---|---|---|
| | | | | 국고반납 대상액 | 국고 반납액 | 국고 미반납액 |
| 2021 | 4,225 | - | 4,225 | 10,834 | 8,530 | 2,294 |
| 2022 | 5,597 | - | 5,597 | 16,211 | 9,176 | 7,035 |
| 2023 | 5,608 | 1 | 5,607 | 15,885 | 7,800 | 8,085 |
| 2024 | 5,102 | 1 | 5,101 | 23,427 | 8,626 | 14,801 |
| 2025 | 4,701 | 1,641 | 3,060 | 8,956 | 2,532 | 6,424 |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해야만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제3항의 불인정 금액 및 다음 각 호에 대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 분담금 포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단, 지자체 분담금 회수절차는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한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인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역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보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6]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제재부가금 및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발생한 연구개발환수금 결정액 14억 6,500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분 수납액은 1억 5,200만원(10.4%)에 불과하였으며, 2021~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연구개발환수금 총 결정액 238억 9,800만원 중 2025년 말 기준 총 수납액은 109억 2,900만원(45.7%)에 불과하였음.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환수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계 |
|---|---|---|---|---|---|---|---|
| 연도별 환수 결정액(a) | | 10,152 | 4,912 | 4,492 | 2,877 | 1,465 | 23,898 |
| 연도별 환수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 2021 | 3,991 (39.3) | [해당 없음] | | | | 3,991 |
| | 2022 | 4,762 (46.9) | 2,369 (48.2) | | | | 7,131 |
| | 2023 | 5,271 (51.9) | 2,516 (51.2) | 1,124 (25.0) | | | 8,911 |
| | 2024 | 5,576 (54.9) | 2,722 (55.4) | 1,897 (42.2) | 171 (5.9) | | 10,366 |
| | 2025 (b) | 5,666 (55.8) | 2,583 (52.6) | 2,076 (46.2) | 452 (15.7) | 152 (10.4) | 10,929 (45.7) |
| 미수납 총액(=a-b) | | 4,486 | 2,329 | 2,416 | 2,425 | 1,313 | 12,969 |

주 1) 2025. 12. 31. 기준
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함
3) 소송패소 반납금은 2025년 수납액에 반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216억 200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분 수납액은 14억 7,500만원(6.8%)에 불과하였으며, 2021~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제재부가금 총 부과액 489억 9,000만원 중 2025년 말 기준 총 수납액은 86억 4,300만원(17.6%)에 불과하였음.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 2021 | 2022 | | 2023 | 2024 | 2025 | 계 |
|---|---|---|---|---|---|---|---|---|
| 적용법률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 |
|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a) | | 304 | 196 | 967 | 11,927 | 13,994 | 21,602 | 48,990 |
| 연도별 제재부가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 2021 | 256 (84.2) | 0 (0.0) | [해당 없음] | | | | 256 |
| | 2022 | 304 (100) | 0 (0.0) | 0 (0.0) | | | | 304 |
| | 2023 | 304 (100) | 0 (0.0) | 162 (16.8) | 391 (3.3) | | | 857 |
| | 2024 | 304 (100) | 0 (0.0) | 162 (16.8) | 2,072 (17.4) | 319 (2.3) | | 2,857 |
| | 2025 (b) | 304 (100) | 0 (0.0) | 162 (16.8) | 3,720 (31.2) | 2,982 (21.3) | 1,475 (6.8) | 8,643 (17.6) |
| 미수납 총액(=a-b) | | 0 | 196 | 805 | 8,207 | 11,012 | 20,127 | 40,347 |

주 1) 2025. 12. 31. 기준

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함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수납·징수하였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을 통해 납부한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고 협약위배, 연구결과 불량 등 기존 환수금에 포함되었던 항목을 제재부가금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음

4)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수납액에 대해서만 세입 예산으로 징수결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진흥원의 수납액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입 징수결정액을 계상하여 R&D 전문기관 단계에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 3.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정부보조금 환수금 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 가. 개 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관련 맞춤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69억 2,300만원 중 2,869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236,076 | 286,923 | - | - | 286,923 | 286,919 | - | 4 | 463,056 |
| 제조혁신 구축지원 | 221,166 | 270,141 | - | - | 270,141 | 270,137 | - | 4 | 372,290 |
|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 11,910 | 13,782 | - | - | 13,782 | 13,782 | - | - | 18,126 |
| 제조데이터 생태계구축 | 3,000 | 3,000 | - | - | 3,000 | 3,000 | - | - | 8,140 |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 | - | - | - | - | - | - | - | 64,5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7) 일반회계-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중소기업정책실)

스마트공장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제조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공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을 구축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측정·관리하면서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및 주요 내용]

| 수준 | 실적 관리 | 주요 내용 |
|---|---|---|
| 기초 | 기초공장 | 생산정보 수집(바코드, RFID 등) 및 모니터링 |
| 중간 1 | 고도화공장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 중간 2 | | 생산정보 실시간 제어 |
| 고도 | | CPS 기반 자율 생산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 및 8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음.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구조]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내역사업명 |
|---|---|---|
|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제조혁신 구축지원 | 선도형 제조혁신 (정부일반형, 자율형 공장, 대중소 상생형, 디지털 협업 공장 등) |
| | | 제조혁신 자동화 |
|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 공급기업 역량진단 |
| |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
| |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
| |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 국가표준정책연구 |
| | | 제조데이터 표준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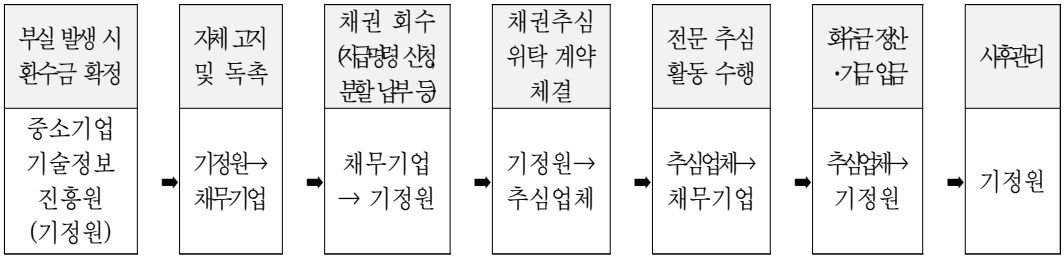
## 나. 검토의견

**최근 3년간 발생한 정부보조금 환수금 채권 중 추심 의뢰 중인 채권의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추심 단계 이전 부정수급 등의 발생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심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실패, 부정수급 등으로 인하여 정부보조금에 대한 환수금 채권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주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 중 채무기업의 비협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추심을 민간업체(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정부보조금 환수금 채권 관리 절차]




그런데 2023년 이후 동 사업의 채권추심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발생한 추심위탁액 73억 4,100만원 중 회수액은 2억 2,700만원(3.1%)에 불과하여 사실상 추심위탁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임.

[2023~2025년 채권 추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위탁 건수 | 위탁액 | 회수액 | 미회수액 | |
|---|---|---|---|---|---|---|
| | | | | | | 채무자 폐업·파산 등 |
| 2023 | 상반기 | 7 | 331 | 51 | 280 | 280 |
| | 하반기 | 14 | 1,042 | 100 | 942 | 942 |
| 2024 | 상반기 | - | - | - | - | - |
| | 하반기 | 77 | 3,574 | 5 | 3,569 | 719 |
| 2025 | 상반기 | 8 | 398 | 2 | 396 | 294 |
| | 하반기 | 23 | 1,995 | 69 | 1,926 | 1,288 |
| 3년 합계 | | 129 | 7,341 | 227 | 7,114 | 3,523 |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추심업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채권 관리 및 회수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나, ① 미회수액 71억 1,400만원 중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불가한 채권이 35억 2,300만원에 육박한

점, ② 2024년 하반기 이전에 발생하여 1년 이상 회수 진행 중 상태에 있는 채권의 규모 또한 47억 9,100만원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비의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추심 단계 이전 부정수급 등의 발생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심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사업: 제조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 및 AI 분석 지원도구 이용 실적 제고 필요

## 가. 개 요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 및 제조 데이터 거래·유통 등 AI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8억 3,6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

[2025년도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 5,836 | 5,836 | - | - | 5,836 | 5,836 | - | - | 5,92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AI 분석 기반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제조플랫폼(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KAM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인공지능제조플랫폼 내에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셋들이 등록되며, 중소 제조기업은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제조AI 데이터셋을 활용하거나, 기업 내에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이용 수요가 많은 무료 제조AI 데이터셋 등록 실적은 2023년 이후 전무하고, 유료 제조AI 데이터셋은 연간 이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무료 제조AI 데이터셋 및 실증 데이터셋 등 중소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확보함으로써 제조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제조플랫폼 내에 등록되는 데이터셋은 ① 비용 지출 없이 누구나 사용할

8) 일반회계-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2111-305)(중소기업정책실)

수 있는 무료 데이터셋, ② 상업적 가치 또는 가공 난이도 등으로 인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데이터셋, ③ 실제 산업 현장 등에서 수집된 실증 데이터셋 등으로 구분됨.

그런데 이들 데이터셋의 연간 등록·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2만 건 이상 이용되는 무료 데이터셋은 2022년 26건이 등록된 이후 2025년 말까지 등록 실적이 없어 업데이트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며, 매년 50건 이상 등록되는 유료 데이터셋은 연간 이용 실적이 100건 미만에 불과한 등 제조데이터 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025년 말 기준 제조AI 데이터셋 등록·이용 건수]

(단위: 건)

| 구분 | 무료 데이터셋 | | | 유료 데이터셋 | | | 실증 데이터셋 | | | 계 |
|---|---|---|---|---|---|---|---|---|---|---|
|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
| 등록 건수 | 50 | - | - | 88 | 55 | - | - | - | 100 | 293 |
| 이용 건수 | 51,577 | 22,556 | 23,418 | 59 | 94 | 30 | - | - | 2,257 | 99,991 |

주) 무료 데이터셋은 2020년 12건, 2021년 12건, 2022년 26건 등록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ICT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제공 시 가치분석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현물기여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셋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나, 관련 용역은 2026년 5월 계약이 체결되어 2027년 상반기에야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에는 해당 방법을 통한 데이터셋의 확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방안의 추진과 별개로 무료 제조AI 데이터셋 및 실증 데이터셋 등 중소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셋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제조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분석 지원도구 이용 실적은 생성형 AI 등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AI분석 지원도구가 민간 생성형 AI 등과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제조플랫폼은 중소 제조기업이 제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도입 가능성을 초기에 확인하는 'AI분석 지원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AI분석 지원도구는 제조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조AI 알고리즘 15종을 구축하여 데이터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분석환경을 제공하며, 기술통계·상관분석·회귀분석 등의 도구가 구축되어 있음.

그런데 AI분석 지원도구의 연도별 활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가 2023년 14,485건, 2024년 13,792건, 2025년 7,469건으로 최근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음.

[연도별 AI분석 지원도구 활용 실적]

(단위: 건)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누계 |
|---|---|---|---|---|---|---|---|
| 구축 건수 | 7 | 3 | 3 | 2 | - | - | 15 |
| 활용 건수 | 410 | 9,977 | 12,768 | 14,485 | 13,792 | 7,469 | 58,90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이후 생성형 AI 등과 같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대중화됨에 따라 매년 활용 실적이 감소하였다는 입장인데, 연도별 지원도구 구축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알고리즘 2종 구축 이후 2년 이상 최신 도구가 구축되지 않았는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신 지원도구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던 측면도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AI분석 지원도구가 민간 생성형 AI 등과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시정 필요

## 가. 개 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73억 6,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9)]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수출지원기반활용 | 127,560 | 217,360 | - | - | 217,360 | 217,360 | - | - | 250,203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평가·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10)]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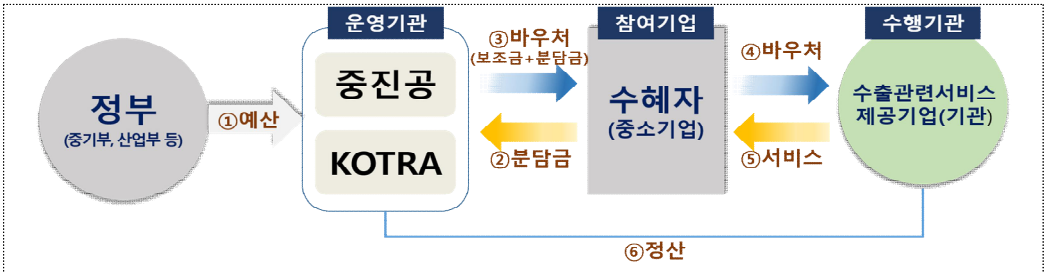
선발된 참여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지급 후,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부여하고 참여기업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소요비용을 정산함. 지원대상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최대 1억원 및 70%로, 전년도 수출액 및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9)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중소기업정책실)

10)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

11)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을 정산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프로세스(참여기업 기준)]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 서비스거래 | 바우처정산 |
|---|---|---|---|---|---|
| 홈페이지 접수 |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참여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계약·수행 |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정산 대금 지급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원분을 비롯하여 매년 수출바우처 중 일부가 공시된 사용기한 도과 후에 사용되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가 공시된 사용기한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수출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설정하였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포함하여 3차에 걸쳐 공고·선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세 차례 모두 사용기한을 2025년 내로 설정하였음.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추진 일정]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 모집 공고 | 23.1.27. | 23.5.10. | 24.1.23. | 24.6.17. | 24.12.30. | 25.4.10. | 25.5.20. |
| 신청기간 | 23.1.16.<br>~23.2.2. | 23.7.1.<br>~24.3.31. | 24.1.23.<br>~24.2.13. | 24.6.17.<br>~24.7.4. | 25.1.7.<br>~25.1.23. | 25.4.10.<br>~25.4.21. | 25.5.20.<br>~25.5.30. |
| 선정일 | 23.3.31. | 23.6.30. | 24.4.29. | 24.8.30. | 25.4.14. | 25.5.21. | 25.7.18. |
| 바우처 사용기간 | 23.4.1.<br>~23.12.31.<br>(9개월) | 23.7.1.<br>~24.1.31.<br>(7개월) | 24.4.1.<br>~24.12.31.<br>(9개월) | 24.7.1.<br>~25.1.31.<br>(7개월) | 25.3.1.<br>~25.11.30.<br>(9개월) | 25.4.1.<br>~25.12.31.<br>(9개월) | 25.6.1.<br>~25.12.31.<br>(7개월) |
| 사업기간 | 23.4.1.<br>~24.2.29.<br>(11개월) | 23.7.1.<br>~24.3.31.<br>(9개월) | 24.4.1.<br>~25.2.28.<br>(11개월) | 24.7.1.<br>~25.3.31.<br>(9개월) | 25.3.1.<br>~26.1.31.<br>(11개월) | 25.4.1.<br>~26.2.28.<br>(11개월) | 25.6.1.<br>~26.2.28.<br>(9개월) |

주 1) 각 연도 1차, 2차는 일반바우처 기준임
2) 2025년도 사업은 2026년 2월 사업기간 종료 이후 현재 정산 진행 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일부 기업이 사업기간을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오인하여 사용기한 도과 후에도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음. 연도별 공시된 사용기한을 도과하여 사용된 수출바우처는 금액 기준 2023년 208억원, 2024년 71억원, 2025년 193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용기한(12월 31일까지)을 도과하여 연내 미집행된 수출바우처 규모가 건수 기준 11.6%, 금액 기준 9.7%에 달하였음.

[연도별 공시된 사용기한을 도과하여 사용된 수출바우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연도 | 사용기한 도과 이후 사용된 규모(A) | | 전체 규모(B) | | 비중(=A/B)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기준 | 금액 기준 |
| 2023 | 3,752 | 20,811 | 20,245 | 112,457 | 18.5 | 18.5 |
| 2024 | 1,616 | 7,105 | 19,129 | 103,890 | 8.4 | 6.8 |
| 2025 | 4,229 | 19,291 | 36,613 | 199,008 | 11.6 | 9.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사업기간이 차년도 6월 말 이후까지 연장되면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2022년 이후 연도별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 현황에 따르면 매년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6월 말 이후에 직전년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8월 이후에서야 직전년도 사업의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음.

[연도별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 현황]

| 연도 | 사업기간 종료일 | | 결과보고서 제출일 | 정산 후 반납일 |
|---|---|---|---|---|
| | 당초 계획 | 연장 이후 | | |
| 2022 | 2023. 3. 31. | 2023. 7. 31. | 2023. 9. 13. | 2023. 9. 15. |
| 2023 | 2024. 3. 31. | 2024. 6. 30. | 2024. 8. 27. | 2024. 8. 29. |
| 2024 | 2025. 3. 31. | 2025. 6. 30. | 2025. 8. 27. | 2025. 9. 16. |
| 2025 | 2026. 2. 28. | 2026. 6. 30. | 사업 진행 중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12]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늦어도 차년도 2월 말까지는 실적보고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사업기간이 만성적으로 연장되면서 매년 6월 말 이후에 직전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8월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이 지연된 것임.

이와 같은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 사용기간 보장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해 가급적 사업기간 내에 기업이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 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정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사용기한을 도과한 사용 건에 대해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에 맞춰 보조사업 종료일을 회계연도 말일보다 6개월 이상,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회계연도 말일보다 8개월 이상 늦은 시기로 설정하는 것은 회계연도 내 실적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우처가 공시된 사용기한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 미제공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수행기관(분야 간 중복 포함) 2,943개사 중 1,605개사(54.5%)는 2025년 1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그 중 374개사(12.7%)는 2023~2025년 3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수행기관 등록 후 실제 서비스 수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록 후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참여기업으로부터 선호가 낮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 서비스 미제공 수행업체의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수출바우처 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

(단위: 개, 건)

| 구분 | 분야별 수행기관 수 | 서비스 제공 건수 |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 | |
|---|---|---|---|---|
| | | | 2025년 | 2023~2025년 |
| 국제 운송 | 319 | 1,808 | 158 | 59 |
| 디자인개발 | 541 | 2,216 | 251 | 43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100 | 88 | 67 | 12 |
| 브랜드개발/관리 | 51 | 173 | 28 | 6 |
| 서류대행/현지등록 | 90 | 187 | 61 | 11 |
| 역량강화 교육 | 49 | 288 | 23 | 4 |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276 | 997 | 161 | 56 |
| 조사/일반 컨설팅 | 290 | 641 | 186 | 51 |
| 통번역 | 59 | 564 | 15 | 4 |
| 특허/지재권 | 401 | 3,133 | 125 | 23 |
| 해외규격인증 | 99 | 631 | 32 | 7 |
| 홍보/광고 | 325 | 246 | 261 | 60 |
| 홍보동영상 | 343 | 230 | 237 | 38 |
| 사후정산 | - | 10,347 | - | - |
| 합 계 | 2,943 | 21,549 | 1,605 | 374 |

주 1) 분야 간 중복 포함(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2) 타 중앙행정기관 소관 수출바우처 수행 실적은 미반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6. 여성기업육성 사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가. 개 요

**‘여성기업육성’** 사업은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판로·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4억 8,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3]

[2025년도 여성기업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여성기업육성 | 10,485 | 10,485 | - | - | 10,485 | 10,485 | - | - | 10,48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중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 ②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여성사업자, ③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였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 조합원인 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함.[14]

---

13) 일반회계-여성기업육성(4234-302)(중소기업정책실)

14)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나. 검토의견

**첫째, 매년 여성기업 부정신청 적발에 따른 확인서 발급취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신청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신청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음.[15]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기준을 규정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거나(제1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성(제2호)인 기업도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남성 경영자가 여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지분을 명목상 이전하거나 여성인 가족 구성원의 명의만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자신이 행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각 호의 특정 요건에 부합하였다는 것만을 토대로 해당 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요건의 부합 여부와 별개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전담 인력을 두고 부정신청 적발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발급 취소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15)「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건수]

(단위: 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신청 건수 | 25,160 | 24,652 | 31,154 | 31,503 | 34,355 |
| 발급 건수 | 23,285 | 22,951 | 28,772 | 28,142 | 31,616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여성기업 부정 신청 관련 사후관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확인서 사후관리 실시 건수 | 4,980 | 4,993 | 2,000 | 2,000 | 2,000 |
| 발급 취소 건수 | 620 | 587 | 369 | 251 | 286 |
| 여성기업 통합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 | 5 | 20 | 18 | 17 | 40 |
| 발급 취소 건수 | 2 | 4 | 5 | 4 | 17 |
| 현장 조사 건수 | 19,558 | 19,384 | 17,981 | 18,350 | 18,6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실사에 투입 가능한 인력 규모의 한계[16] 등을 이유로 전수 조사 대신 의심군을 특정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 및 발급 건수에 비해 확인서 사후관리 실시 건수는 2023년 크게 감소한 이후 매년 발급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건수 또한 2025년 기준 전체 발급 건수의 58.8%에 불과한바, 현재와 같이 부분적인 현장 조사에만 의존하는 사후관리는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임.

특히 여성기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 관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여성기업의 제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17]에 따라 공

16) 2025년 말 기준 여성기업 확인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 규모는 상근 20명, 비상근 약 200명임.

17)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공기관 등의 구매 촉진 대상이 되는바, 여성기업 부정신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 공공기관 물품구매 우대 조치의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제도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부서의 자원 투입량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혜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 개선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동 사업 내에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18] 사업을 신설하였음.

---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18)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lobal Accelerating)은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희망하는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현지 시장 조사,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해외 안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2025년부터 3년 미만 → 7년 미만으로 확대)
◦ (지원 내용)
  - 교육: 여성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우수사례, 수출 통관절차 등 노하우 전수
  - 컨설팅 및 글로벌 홍보: 해외진출 역량진단 전문가 컨설팅, 영문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 전시회 참가기업 참가비 등 지원
◦ (신청 접수)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 참조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절차]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교육 | | 컨설팅·멘토링 | | 글로벌 홍보지원 | | 해외시장 개척 |
|---|---|---|---|---|---|---|---|---|---|---|
|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 ➡ | 온라인 신청 | ➡ | 해외진출 우수사례 및 전략 등 (희망기업) | ➡ | 글로벌 역량 진단 컨설팅 및 멘토링 (100팀 내외) | ➡ | 컨설팅 진단 후 홍보 지원 (20팀 내외) | ➡ |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전시회 참가 지원 (15팀 내외) |
| 1월 | | 2~3월 | | 3~4월 | | 4~5월 | | 5~9월 | | 5~11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동 사업 시행 이후 참가자 수, 컨설팅 실시 횟수, 수혜자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음.

[연도별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성과관리 항목]

| 2024 | | | 2025 | | |
|---|---|---|---|---|---|
| **항목명** | **목표** | **성과** | **항목명** | **목표** | **성과** |
| 참가자 | 800팀 | 1,002팀 | 교육 | 800팀 | 1,281팀 |
| 실무교육 | 800팀 | 1,399팀 | 컨설팅 | 70팀 | 73팀 |
| 컨설팅 | 70팀 | 173팀 | 사업화지원 | 30팀 | 31팀 |
| 글로벌 홍보지원 | 20팀 | 22팀 | 수혜자만족도 | 90점 | 96.3점 |
| 해외시장 개척 | 10팀 | 10팀 | | | |
| 수혜기업 만족도 | 90점 | 90.6점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참가자 수, 실무교육 횟수, 사업화 지원 등은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자원 투입량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여성창업기업들의 매출액 증가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특히 상기한 사업 절차를 고려하면, 컨설팅·홍보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항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으로, 이를 사업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달성한 성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고려하여, 수혜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 개선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7.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 구매 목표 과소설정 및 목표 미달성 부적정

## 가. 개 요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보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7억 300만원 중 56억 6,200만원(99.3%)이 집행되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5년도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공공구매제도운영 | 5,703 | 5,703 | - | - | 5,703 | 5,662 | - | 41 | 6,545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등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20)] 동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

19) 일반회계-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중소기업정책실)

2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23]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24](이하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구매목표를 설정·달성하여야 함.

## 나. 검토의견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가 과소 설정되었거나 목표치 대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의 주무기관으로서 소관 공공기관이 구매목표 수준을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운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법정 구매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구매목표가 과소 설정되었거나 목표치 대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문제가 있음.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매년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고, 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창업진흥원 등은 2025년 목표치 대비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벤처투자 등은 매년 구매목표가 실적치 대비 과소 설정되었음.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 기관명 | 구분 | 2023 | | | 2024 | | | 2025 | | |
|---|---|---|---|---|---|---|---|---|---|---|
| | | 총 구매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 중소벤처기업부 | 목표 | 35,999 | 26,932 | 74.8 | 33,338 | 24,981 | 74.9 | 23,000 | 16,100 | 70.0 |
| | 실적 | 30,319 | 23,958 | 79.0 | 22,836 | 15,200 | 66.6 | 29,357 | 22,564 | 76.9 |
| 기술보증기금 | 목표 | 15,556 | 12,444 | 80.0 | 15,200 | 13,500 | **88.8** | 20,000 | 16,000 | **80.0** |
| | 실적 | 15,117 | 13,420 | 88.8 | 19,870 | 15,583 | **78.4** | 32,523 | 21,477 | **66.0**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목표 | 57,280 | 45,900 | **80.1** | 90,379 | 63,181 | **69.9** | 107,730 | 95,587 | **88.7** |
| | 실적 | 90,785 | 63,178 | **69.6** | 107,728 | 95,585 | **88.7** | 94,465 | 53,066 | **56.2**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목표 | 86,078 | 68,891 | 80.0 | 96,784 | 76,962 | 79.5 | 75,648 | 61,676 | 81.5 |
| | 실적 | 96,784 | 76,962 | 79.5 | 75,646 | 61,350 | 81.1 | 99,785 | 77,004 | 77.2 |
| ㈜공영홈쇼핑 | 목표 | 10,927 | 5,471 | **50.1** | 11,602 | 5,813 | **50.1** | 9,642 | 7,228 | 75.0 |
| | 실적 | 11,602 | 9,151 | **78.9** | 12,053 | 9,035 | **75.0** | 3,929 | 2,597 | 66.1 |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목표 | 33,681 | 16,841 | **50.0** | 18,684 | 9,529 | **51.0** | 7,321 | 3,807 | **52.0** |
| | 실적 | 28,883 | 25,898 | **89.7** | 12,813 | 12,615 | **98.5** | 5,897 | 4,284 | **72.6** |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목표 | 4,960 | 2,480 | **50.0** | 3,900 | 3,330 | **85.4** | 4,020 | 3,620 | 90.0 |
| | 실적 | 7,522 | 7,140 | **94.9** | 4,328 | 4,198 | **97.0** | 3,636 | 3,223 | 88.6 |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목표 | 26,534 | 21,861 | 82.4 | 21,881 | 18,094 | 82.7 | 19,525 | 15,279 | 78.3 |
| | 실적 | 21,665 | 17,915 | 82.7 | 19,332 | 15,127 | 78.3 | 20,997 | 15,696 | 74.8 |
|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 목표 | 51,125 | 37,675 | 73.7 | 50,000 | 36,499 | 73.0 | 40,000 | 27,280 | 68.2 |
| | 실적 | 52,283 | 37,886 | 72.5 | 39,590 | 26,974 | 68.1 | 36,369 | 23,872 | 65.6 |
|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목표 | 7,800 | 5,927 | 76.0 | 6,800 | 5,305 | **78.0** | 4,563 | 2,328 | **51.0** |
| | 실적 | 6,711 | 5,323 | 79.3 | 4,559 | 2,329 | **51.1** | 3,864 | 2,443 | **63.2** |
| 창업진흥원 | 목표 | 25,266 | 20,971 | 83.0 | 23,622 | 20,079 | 85.0 | 25,748 | 21,886 | **85.0** |
| | 실적 | 23,128 | 19,921 | 86.1 | 23,656 | 19,768 | 83.6 | 28,466 | 17,523 | **61.6** |
| 한국벤처투자 | 목표 | 4,977 | 3,027 | **60.8** | 4,983 | 3,028 | **60.8** | 4,985 | 3,029 | **60.8** |
| | 실적 | 7,381 | 6,590 | **89.3** | 7,019 | 6,405 | **91.3** | 8,733 | 7,246 | **83.0** |

주) 구매비율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10%p 이상인 경우 볼드 처리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공영홈쇼핑은 매년 구매목표가 실적치 대비 과소 설정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24년 이후 2년 연속 구매목표가 실적치 대비 과소 설정되었음.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 기관명 | 구분 | 2023 | | | 2024 | | | 2025 | | |
|---|---|---|---|---|---|---|---|---|---|---|
| | | 총 구매액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 비율 |
| 중소벤처기업부 | 목표 | 13,310 | 4,445 | **33.4** | 11,766 | 2,258 | 19.2 | 3,873 | 699 | 18.0 |
| | 실적 | 7,030 | 1,198 | **17.0** | 4,544 | 724 | 15.9 | 5,590 | 1,463 | 26.2 |
| 기술보증기금 | 목표 | 4,736 | 756 | 16.0 | 5,050 | 980 | 19.4 | 5,120 | 1,280 | 25.0 |
| | 실적 | 4,942 | 954 | 19.3 | 4,988 | 1,256 | 25.2 | 9,412 | 2,802 | 29.8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목표 | 5,250 | 1,142 | **21.8** | 3,972 | 2,144 | **54.0** | 3,655 | 876 | 24.0 |
| | 실적 | 3,969 | 2,128 | **53.6** | 3,654 | 875 | **24.0** | 2,870 | 746 | 26.0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목표 | 8,690 | 2,465 | 28.4 | 8,085 | 1,680 | 20.8 | 7,590 | 2,151 | 28.3 |
| | 실적 | 8,085 | 1,726 | 21.3 | 7,546 | 2,134 | 28.3 | 12,004 | 2,713 | 22.6 |
| ㈜공영홈쇼핑 | 목표 | 643 | 97 | **15.1** | 407 | 61 | **15.1** | 217 | 33 | **15.0** |
| | 실적 | 550 | 414 | **75.2** | 363 | 101 | **27.9** | 423 | 184 | **43.6** |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목표 | 6,277 | 4,042 | **64.4** | 5,241 | 791 | **15.1** | 1,256 | 201 | **16.0** |
| | 실적 | 8,818 | 2,828 | **32.1** | 2,601 | 1,702 | **65.4** | 442 | 173 | **39.2** |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목표 | 1,190 | 180 | 15.1 | 810 | 122 | **15.0** | 460 | 72 | 15.5 |
| | 실적 | 1,581 | 172 | 10.9 | 304 | 96 | **31.7** | 308 | 59 | 19.2 |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목표 | 1,581 | 358 | **22.6** | 1,447 | 601 | 41.5 | 805 | 327 | 40.7 |
| | 실적 | 1,433 | 595 | **41.5** | 797 | 318 | 40.0 | 1,084 | 539 | 49.7 |
|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 목표 | 1,573 | 344 | 21.9 | 2,396 | 370 | 15.4 | 1,500 | 230 | 15.3 |
| | 실적 | 2,284 | 348 | 15.2 | 1,482 | 371 | 25.0 | 797 | 180 | 22.6 |
|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목표 | 672 | 102 | 15.2 | 670 | 101 | 15.1 | 416 | 65 | 15.6 |
| | 실적 | 421 | 73 | 17.3 | 410 | 28 | 6.8 | 348 | 47 | 13.6 |
| 창업진흥원 | 목표 | 1,786 | 268 | **15.0** | 1,572 | 236 | 15.0 | 1,532 | 230 | **15.0** |
| | 실적 | 1,560 | 402 | **25.8** | 1,348 | 276 | 20.5 | 911 | 553 | **60.7** |
| 한국벤처투자 | 목표 | 555 | 132 | **23.8** | 556 | 132 | **23.8** | 557 | 132 | **23.8** |
| | 실적 | 1,005 | 36 | **3.6** | 1,015 | 122 | **12.0** | 1,471 | 546 | **37.1** |

주) 구매비율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10%p 이상인 경우 볼드 처리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구매목표가 매년 실적치 대비 과소 설정되었음.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 기관명 | 구분 | 2023 | | | 2024 | | | 2025 | | |
|---|---|---|---|---|---|---|---|---|---|---|
| | | 총 구매액 |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 중소벤처기업부 | 목표 | 35,999 | 5,367 | 14.9 | 33,338 | 4,911 | 14.7 | 23,000 | 2,893 | 12.6 |
| | 실적 | 30,319 | 4,176 | 13.8 | 22,836 | 4,014 | 17.6 | 29,357 | 4,567 | 15.6 |
| 기술보증기금 | 목표 | 15,556 | 748 | **4.8** | 15,200 | 2,371 | 15.6 | 20,000 | 2,127 | 10.6 |
| | 실적 | 15,117 | 2,513 | **16.6** | 19,870 | 2,016 | 10.1 | 32,523 | 3,355 | 10.3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목표 | 57,280 | 4,710 | 8.2 | 90,379 | 22,193 | 24.6 | 107,730 | 23,874 | 22.2 |
| | 실적 | 90,785 | 13,853 | 15.3 | 107,728 | 23,873 | 22.2 | 94,465 | 12,501 | 13.2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목표 | 86,078 | 15,236 | 17.7 | 96,784 | 11,544 | 11.9 | 75,648 | 9,070 | 12.0 |
| | 실적 | 96,784 | 11,544 | 11.9 | 75,646 | 9,011 | 11.9 | 99,785 | 12,140 | 12.2 |
| ㈜공영홈쇼핑 | 목표 | 10,927 | 547 | 5.0 | 11,602 | 592 | 5.1 | 9,642 | 476 | 4.9 |
| | 실적 | 11,602 | 830 | 7.2 | 12,053 | 972 | 8.1 | 3,929 | 570 | 14.5 |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목표 | 33,681 | 1,416 | 4.2 | 18,684 | 953 | 5.1 | 7,321 | 381 | 5.2 |
| | 실적 | 28,883 | 1,747 | 6.0 | 12,813 | 1,845 | 14.4 | 5,897 | 726 | 12.3 |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목표 | 4,960 | 257 | **5.2** | 3,900 | 190 | **4.9** | 4,020 | 245 | **6.1** |
| | 실적 | 7,522 | 1,517 | **20.2** | 4,328 | 709 | **16.4** | 3,636 | 833 | **22.9** |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목표 | 26,534 | 2,865 | 10.8 | 21,881 | 2,367 | 10.8 | 19,525 | 2,959 | 15.2 |
| | 실적 | 21,665 | 2,344 | 10.8 | 19,332 | 2,930 | 15.2 | 20,997 | 2,985 | 14.2 |
|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 목표 | 51,125 | 4,235 | 8.3 | 50,000 | 7,000 | 14.0 | 40,000 | 3,886 | 9.7 |
| | 실적 | 52,283 | 6,760 | 12.9 | 39,590 | 3,877 | 9.8 | 36,369 | 3,259 | 9.0 |
|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목표 | 7,800 | 445 | 5.7 | 6,800 | 373 | 5.5 | 4,563 | 264 | **5.8** |
| | 실적 | 6,711 | 554 | 8.3 | 4,559 | 486 | 10.7 | 3,864 | 700 | **18.1** |
| 창업진흥원 | 목표 | 25,266 | 4,231 | 16.7 | 23,622 | 3,543 | 15.0 | 25,748 | 3,863 | 15.0 |
| | 실적 | 23,128 | 5,467 | 23.6 | 23,656 | 4,492 | 19.0 | 28,466 | 2,378 | 8.4 |
| 한국벤처투자 | 목표 | 4,977 | 633 | 12.7 | 4,983 | 634 | 12.7 | 4,985 | 634 | **12.7** |
| | 실적 | 7,381 | 1,315 | 17.8 | 7,019 | 1,348 | 19.2 | 8,733 | 2,220 | **25.4** |

주) 구매비율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10%p 이상인 경우 볼드 처리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일부 기관에서 목표를 법정의무비율인 1.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및 소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법령상 요구치를 상회하는 적극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 기관명 | 구분 | 2023 | | | 2024 | | | 2025 | | |
|---|---|---|---|---|---|---|---|---|---|---|
| | | 총 구매액 |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액 | 비율 |
| 중소벤처기업부 | 목표 | 35,999 | 394 | 1.1 | 33,338 | 367 | 1.1 | 23,000 | 483 | 2.1 |
| | 실적 | 30,319 | 308 | 1.0 | 22,836 | 401 | 1.8 | 29,357 | 535 | 1.8 |
| 기술보증기금 | 목표 | 15,556 | 312 | 2.0 | 15,200 | 1,216 | 8.0 | 20,000 | 650 | 3.3 |
| | 실적 | 15,117 | 1,117 | 7.4 | 19,870 | 629 | 3.2 | 32,523 | 288 | 0.9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목표 | 57,280 | 1,156 | 2.0 | 90,379 | 1,102 | **1.2** | 107,730 | 16,975 | **15.8** |
| | 실적 | 90,785 | 1,084 | 1.2 | 107,728 | 16,974 | **15.8** | 94,465 | 1,067 | **1.1**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목표 | 86,078 | 2,939 | 3.4 | 96,784 | 2,267 | 2.3 | 75,648 | 1,662 | 2.2 |
| | 실적 | 96,784 | 2,267 | 2.3 | 75,646 | 1,641 | 2.2 | 99,785 | 1,685 | 1.7 |
| ㈜공영홈쇼핑 | 목표 | 10,927 | 114 | 1.0 | 11,602 | 134 | 1.2 | 9,642 | 96 | 1.0 |
| | 실적 | 11,602 | 215 | 1.9 | 12,053 | 183 | 1.5 | 3,929 | 90 | 2.3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목표 | 33,681 | 338 | 1.0 | 18,684 | 206 | 1.1 | 7,321 | 76 | 1.0 |
| | 실적 | 28,883 | 302 | 1.0 | 12,813 | 172 | 1.3 | 5,897 | 168 | 2.9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목표 | 4,960 | 349 | 7.0 | 3,900 | 40 | 1.0 | 4,020 | 79 | 2.0 |
| | 실적 | 7,522 | 470 | 6.3 | 4,328 | 310 | 7.2 | 3,636 | 247 | 6.8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목표 | 26,534 | 297 | 1.1 | 21,881 | 279 | 1.3 | 19,525 | 561 | 2.9 |
| | 실적 | 21,665 | 277 | 1.3 | 19,332 | 555 | 2.9 | 20,997 | 449 | 2.1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목표 | 51,125 | 816 | 1.6 | 50,000 | 870 | 1.7 | 40,000 | 527 | 1.3 |
| | 실적 | 52,283 | 798 | 1.5 | 39,590 | 524 | 1.3 | 36,369 | 519 | 1.4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목표 | 7,800 | 140 | 1.8 | 6,800 | 75 | 1.1 | 4,563 | 49 | 1.1 |
| | 실적 | 6,711 | 66 | 1.0 | 4,559 | 20 | 0.4 | 3,864 | 139 | 3.6 |
| 창업진흥원 | 목표 | 25,266 | 403 | 1.6 | 23,622 | 472 | 2.0 | 25,748 | 515 | 2.0 |
| | 실적 | 23,128 | 721 | 3.1 | 23,656 | 950 | 4.0 | 28,466 | 757 | 2.7 |
| 한국벤처투자 | 목표 | 4,977 | 82 | 1.6 | 4,983 | 83 | 1.7 | 4,985 | 83 | 1.7 |
| | 실적 | 7,381 | 133 | 1.8 | 7,019 | 134 | 1.9 | 8,733 | 288 | 3.3 |

주) 구매비율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10%p 이상인 경우 볼드 처리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매년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음.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 기관명 | 구분 | 2023 | | | 2024 | | | 2025 | | |
|---|---|---|---|---|---|---|---|---|---|---|
| | | 총 구매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총 구매액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비율 |
| 중소벤처기업부 | 목표 | 35,999 | 3,600 | 10.0 | 33,338 | 3,334 | 10.0 | 23,000 | 2,299 | 10.0 |
| | 실적 | 30,319 | 3893 | 12.8 | 22,836 | 3,022 | 13.2 | 29,357 | 3,062 | 10.4 |
| 기술보증기금 | 목표 | 15,556 | 1,248 | 8.0 | 15,200 | 1,292 | 8.5 | 20,000 | 1,600 | 8.0 |
| | 실적 | 15,117 | 1,000 | 6.6 | 19,870 | 1,503 | 7.6 | 32,523 | 587 | 1.8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목표 | 57,280 | 4,736 | 8.3 | 90,379 | 7,524 | 8.3 | 107,730 | 21,658 | **20.1** |
| | 실적 | 90,785 | 8,053 | 8.9 | 107,728 | 21,657 | 20.1 | 94,465 | 8,773 | **9.3**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목표 | 86,078 | 15,372 | 17.9 | 96,784 | 15,294 | 15.8 | 75,648 | 12,380 | 16.4 |
| | 실적 | 96,784 | 15,293 | 15.8 | 75,646 | 12,306 | 16.3 | 99,785 | 11,652 | 11.7 |
| ㈜공영홈쇼핑 | 목표 | 10,927 | 875 | 8.0 | 11,602 | 940 | 8.1 | 9,642 | 771 | 8.0 |
| | 실적 | 11,602 | 1,053 | 9.1 | 12,053 | 996 | 8.3 | 3,929 | 453 | 11.5 |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목표 | 33,681 | 2,695 | 8.0 | 18,684 | 1,513 | 8.1 | 7,321 | 600 | 8.2 |
| | 실적 | 28,883 | 1,736 | 6.0 | 12,813 | 1,428 | 11.1 | 5,897 | 650 | 11.0 |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목표 | 4,960 | 398 | 8.0 | 3,900 | 307 | 7.9 | 4,020 | 334 | 8.3 |
| | 실적 | 7,522 | 914 | 12.2 | 4,328 | 479 | 11.1 | 3,636 | 692 | 19.0 |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목표 | 26,534 | 2,134 | 8.0 | 21,881 | 2,010 | 9.2 | 19,525 | 1,973 | 10.1 |
| | 실적 | 21,665 | 2,004 | 9.3 | 19,332 | 2,038 | 10.5 | 20,997 | 2,230 | 10.6 |
|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 목표 | 51,125 | 4,091 | 8.0 | 50,000 | 5,500 | 11.0 | 40,000 | 5,306 | 13.3 |
| | 실적 | 52,283 | 4,525 | 8.7 | 39,590 | 5,262 | 13.3 | 36,369 | 4,659 | 12.8 |
|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목표 | 7,800 | 630 | 8.1 | 6,800 | 550 | 8.1 | 4,563 | 370 | 8.1 |
| | 실적 | 6,711 | 160 | 2.4 | 4,559 | 130 | 2.9 | 3,864 | 93 | 2.4 |
| 창업진흥원 | 목표 | 25,266 | 2,021 | 8.0 | 23,622 | 1,890 | 8.0 | 25,748 | 2,060 | 8.0 |
| | 실적 | 23,128 | 2,199 | 9.5 | 23,656 | 2,937 | 12.4 | 28,466 | 2,279 | 8.0 |
| 한국벤처투자 | 목표 | 4,977 | 429 | 8.6 | 4,983 | 429 | 8.6 | 4,985 | 429 | 8.6 |
| | 실적 | 7,381 | 511 | 6.9 | 7,019 | 315 | 4.5 | 8,733 | 1,088 | 12.5 |

주) 구매비율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10%p 이상인 경우 볼드 처리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치 준수현황]

| 기관명 | 중소기업제품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 | 여성기업 | | | 장애인기업 | | | 창업기업 | | |
|---|---|---|---|---|---|---|---|---|---|---|---|---|---|---|---|
| | 23 | 24 | 25 | 23 | 24 | 25 | 23 | 24 | 25 | 23 | 24 | 25 | 23 | 24 | 25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보증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영홈쇼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업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벤처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표시는 기관이 해당 연도 공공구매제도의 목표 비율 이상으로 구매한 것을 의미하고, × 표시는 목표 비율 이하로 구매한 것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에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바,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의 주관 부처로서 소관 공공기관이 공공구매 목표를 솔선수범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사업: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 과다 문제 해결 필요

## 가. 개 요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사업은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지원사업 분석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4억 400만원 중 144억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5년도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 2026년도 예산액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B) | 이·전용 등(C) | 예산현액 (A+B+C)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중소기업 조사연구평가 | 14,404 | 14,404 | - | - | 14,404 | 14,400 | - | 4 | 15,84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조사·연구 등 기관 역할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재 유치 방안을 비롯한 결원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도 말 기준 결원율은 2022년 말 6.6%에서 점차 상승하여 2026년 1/4분기 말 기준 18.6%에 이르렀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공공기관 중 2025년에 10명 이상의 현원 감소가 발생한 창업진흥원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임.

25) 일반회계-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중소기업정책실)

[연도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결원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1Q |
|---|---|---|---|---|---|
| 정원 | 121 | 116 | 115 | 115 | 118 |
| 현원 | 113 | 105 | 99 | 97 | 96 |
| 결원 | 8 | 11 | 16 | 18 | 22 |
| 결원율 | 6.6 | 9.5 | 13.9 | 15.7 | 18.6 |

주) 연말 일반 정규직 기준(2026년 1Q의 경우 분기 말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1/4분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결원 현황]

(단위: 명, %)

| 기관명 | 정원(A) | 현원(B) | 결원(C=A-B) | 결원율(=C/A) |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118 | 96 | 22 | 18.6 |
| 창업진흥원 | 186 | 147 | 39 | 21.0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290 | 243.13 | 46.87 | 16.2 |
| 한국벤처투자 | 152 | 138 | 14 | 9.2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88 | 88 | 0 | 0.0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45 | 41 | 4 | 8.9 |
| 공영홈쇼핑 | 373 | 361.38 | 11.62 | 3.1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38 | 227.75 | 10.25 | 4.3 |

주) 일반 정규직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속적인 결원율 상승의 원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신규채용 등의 결원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및 인건비 배정의 한계와[26], 타 기관 대비 여성의 비중이 높아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빈번함을 제시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여성 비율은 50.5%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50%를 상회하였음.

26) 연도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총인건비 중 정부지원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90억 6,700만원 중 79억 4,600만원(87.6%)을, 2024년에는 88억 800만원 중 73억 5,900만원(83.5%)을, 2025년에는 93억 8,400만원 중 84억 2,600만원(89.8%)을, 2026년에는 101억 6,900만원 중 92억 9,600만원(91.4%)을 지원받았음.

[2025년 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현원 중 여성 비율]

(단위: 명, %)

| 기관명 | 현원 계 | 남성 | 여성 | 여성 비율 |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97 | 48 | 49 | 50.5 |
| 창업진흥원 | 150 | 92 | 58 | 38.5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248 | 162 | 86 | 34.7 |
| 한국벤처투자 | 142 | 91 | 51 | 35.9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89 | 60 | 29 | 32.6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41 | 23 | 18 | 43.9 |
| 공영홈쇼핑 | 363 | 224 | 139 | 38.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30 | 140 | 90 | 37.2 |

주) 일반 정규직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18명의 결원 중 6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은 6명으로 전체의 33.3% 수준에 불과한 점, 2025년 4회에 걸쳐 12명의 정규직 채용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 12명 중 실제 선발인원은 8명에 그쳤고, 미달 사유도 적격자 부재(3명), 단수 응시(1명) 등 연구원에 지원하는 인력풀 자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육아휴직만을 높은 결원율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결원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향후 중소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평가 기능과 같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므로[27],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결원 증가 및 저조한 신규 채용 실적의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토대로 인재 유치 방안을 비롯한 결원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27)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1인당 업무 강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인력은 2023년 42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감소한 반면, 수행 과제 수는 2023년 21개에서 2025년 2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책임연구자 1인당 과제 부담 및 행정업무 소요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 입〉

## 9. 기타잡수입: 수입 확충 및 수입계획의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기타잡수입’**은 연수사업,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이하 ‘GBC’라 함) 운영 등 경상지출사업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111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8억 7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28]

[2025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미수 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C/B) | |
| | 당초 | 수정(A) | | | | | | |
| 기타잡수입 | 11,172 | 11,172 | 20,807 | 20,807 | - | - | 100.0 | 7,480 |
| GBC운용수입등 | 3,128 | 3,128 | 1,483 | 1,483 | - | - | 100.0 | 2,400 |
| 레저장비산업 개발지원 | 154 | 154 | 176 | 176 | - | - | 100.0 | - |
| 연수사업수입 | 7,890 | 7,890 | 4,198 | 4,198 | - | - | 100.0 | 5,080 |
| 자금운용등수입 | - | - | 14,950 | 14,950 | - | - | 100.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GBC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현지 조기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시설로, 2026년 기준 북미(4개소)·중남미(2개소)·유럽(2개소)·아시아(7개소)·중국(5개소)·중동(2개소) 등 총 14개국 22개소가 설치되었음.

28)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기타잡수입(69-691)(중소기업정책실)

## 나. 검토의견

**GBC운용수입등, 연수사업수입, 자금운용등수입은 계획액과 수납액 간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임차료·시설사용료 감면 및 보조금 등의 정산 반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 수입 계획액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타잡수입의 세목 중 GBC운용수입등, 연수사업수입, 자금운용등수입은 매년 계획액과 수납액 간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GBC운용수입등 및 연수사업수입의 계획 대비 수납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연수사업수입의 수납률(53.2%)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의 수납률이 50%를 하회하는 반면, 자금운용등수입은 2025년 149억 5,000만원의 대규모 수입실적을 비롯하여 매년 수입실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계획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

[2021~2025년 기타잡수익 세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세목명 | 계획액 | | 계획현액 | 수납액 | 수납률 |
|---|---|---|---|---|---|---|
| | | 당초 | 수정 | | | |
| 2021 | BI운용수입등 | 2,200 | 2,200 | 2,200 | 1,430 | 65.0 |
|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수입) | 150 | 150 | 150 | 165 | 110.0 |
| | 연수사업수입 | 7,418 | 7,418 | 7,418 | 1,819 | 24.5 |
| | 자금운용등수입 | - | - | - | 1,179 | 순증 |
| | 정보제공사업수입등 | 250 | 250 | 250 | 256 | 102.4 |
| | 세목 합계 | 10,018 | 10,018 | 10,018 | 4,849 | 48.4 |
| 2022 | BI운용수입등 | 2,200 | 2,200 | 2,200 | 1,014 | 46.1 |
|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수입) | 150 | 150 | 150 | 267 | 178.0 |
| | 연수사업수입 | 7,592 | 7,592 | 7,592 | 3,055 | 40.2 |
| | 자금운용등수입 | - | - | - | 1,377 | 순증 |
| | 정보제공사업수입등 | 250 | 250 | 250 | 173 | 69.2 |
| | 세목 합계 | 10,192 | 10,192 | 10,192 | 5,885 | 57.7 |
| 2023 | GBC운용수입등 | 2,200 | 2,200 | 2,200 | 884 | 40.2 |
|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수입) | 150 | 150 | 150 | 134 | 89.3 |
| | 연수사업수입 | 7,592 | 7,592 | 7,592 | 3,388 | 44.6 |
| | 자금운용등수입 | - | - | - | 2,719 | 순증 |
| | 정보제공사업수입등 | 250 | 250 | 250 | 355 | 142.0 |
| | 세목 합계 | 10,192 | 10,192 | 10,192 | 7,480 | 73.4 |
| 2024 | GBC운용수입등 | 3,000 | 3,000 | 3,000 | 1,123 | 37.4 |
|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수입) | 143 | 143 | 143 | 140 | 97.9 |
| | 연수사업수입 | 7,742 | 7,742 | 7,742 | 3,745 | 48.4 |
| | 자금운용등수입 | - | - | - | 2,072 | 순증 |
| | 세목 합계 | 10,885 | 10,885 | 10,885 | 7,079 | 65.0 |
| 2025 | GBC운용수입등 | 3,128 | 3,128 | 3,128 | 1,483 | 47.4 |
|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수입) | 154 | 154 | 154 | 176 | 114.3 |
| | 연수사업수입 | 7,890 | 7,890 | 7,890 | 4,198 | 53.2 |
| | 자금운용등수입 | - | - | - | 14,950 | 순증 |
| | 세목 합계 | 11,172 | 11,172 | 11,172 | 20,807 | 186.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3개 세목의 계획액과 수납액 간 지속적 괴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GBC운용수입등은 현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입주기업의 사무실 임차료를 기금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매년 임차료 감면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수납률이 저조하였음.[29]

둘째, 연수사업수입은 연수기업이 납부하는 연수비와 연수시설 사용료를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① 정책연수·국정과제연수 등 민간 교육기관에서 대행하기 어려운 정책지원 관련 무료연수 운영, ② 지역사회단체 등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50% 이상 감면 등을 추진함에 따라 수납률이 저조하였음.[30]

셋째, 자금운용등수입은 보조금 반납금·보상금 등을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각 수입 건별 세부 내역의 종류가 다양하고 변동성도 큼에 따라 별도 수입 계획을 추계하지 않았으며, 2025년의 경우 2024년 한시사업인 '비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의 보조금 정산 반납금(88억원)이 발생하여 과년도 대비 대규모 수납실적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임차료 감면, 무료연수 운영 및 연수시설 사용료 감면 등은 사실상 매년 진행 중이고 수납률도 매년 40%~5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자금운용등수입의 경우에도 2021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입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임차료·시설사용료 감면 및 보조금 등의 정산 반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 수입 계획액의 추계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9)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글로벌화 지원을 위하여 입주 1년차 기업에 대해서는 임차료의 80%를, 2년차 기업에 대해서는 임차료의 50%를 감면 지원하는데, 2025년 말 기준 임차료 감면 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로 사실상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임차료를 감면받고 있음.

30) 무료연수 과정 수는 2022년 1,226건에서 2025년 669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과정이 운영 중에 있고, 시설사용료 감면 건수는 2022년 151건에서 2025년 41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지 출〉

## 10.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 이차보전 사업의 수요 과다예측 및 기업진단의 성과 저조

### 가. 개 요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성과창출 지원, 이차보전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755억 8,800만원 중 686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8%)되고 69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5년도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 75,588 | 75,588 | - | 75,588 | 68,615 | - | 6,973 | 73,783 |
| 기업진단 | 4,893 | 4,893 | - | 4,893 | 4,879 | - | 14 | 4,893 |
| 정책자금지원성과 창출지원 | 8,798 | 8,798 | - | 8,798 | 8,787 | - | 11 | 9,005 |
| 시설투자촉진 | 3,401 | 3,401 | - | 3,401 | 3,070 | - | 331 | 3,401 |
|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 | 58,496 | 58,496 | - | 58,496 | 51,879 | - | 6,617 | 56,484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내역사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설정함으로써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중소기업정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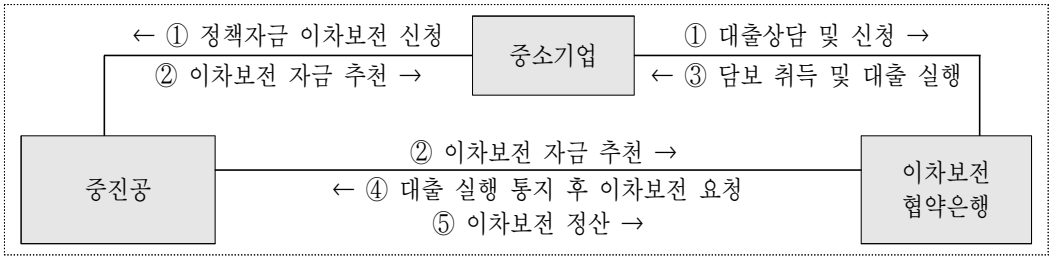
혁신창업화사업자금 내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R&D)가 감액된 기업의 대출이자 중 최대 5.5%p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안에는 연내 신규대출 4,300억원에 대해, 2025년도 계획안에는 2024년 기존대출 1,492억원과 2025년 신규대출 1,526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음.[32)]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 개요]

| |
|---|
|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br>○ (지원 대상) 정부 부처 R&D 20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담기관(전문기관)과 협약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중소기업<br>- 지원제외 : ① 산업부 소관 R&D과제 해당 기업, ② 융자제한기업, ③ R&D 중단과제 해당기업<br>○ (지원 내용)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br>- 대출한도 : 전문기관의 증빙자료(확인서 등)에 명시된 금액*(최대 10억원)<br>* 2024년도 R&D 계속·종료 과제 중 협약 당해연도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배 이내<br>- 이차보전율 : 5.5%p 이내<br>- 대출기간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br>○ (용도)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운전자금으로 대출<br>○ (지원 규모) 2024년의 경우 신규 대출에 대해, 2025년의 경우 기존 및 신규 대출에 대해 지원<br>- 2024년: 4,300억원 × 0.5(평잔) × 5.5%(이차보전율)<br>- 2025년: (기존) 1,492억원 × 5.5%, (신규) 1,526억원 × 0.5 × 5.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지원 방식]




그런데 연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은 계획액 120억원 중 41.7억원(34.8%)만 집행되었고, 2025년은 계획액 124억원 중 85.4억원(68.9%)만 집행되었으며, 신규 공급금액은 406억원으로 당초 목표(1,526억원) 대비 26.6% 수준에 불과하였음.

32) 동 사업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내 개발기술사업화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 내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내역사업으로 편성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차보전 지원 내역사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 2024년 2/4분기 | 2024년 3/4분기 | 2024년 4/4분기 |
|---|---|---|---|---|
| 신규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963 | 502 | 16 |
| | 이차보전액 | 3.0 | 17.7 | 21.0 |
| 2024 누적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963 | 1,465 | 1,481 |
| | 이차보전액 | 3.0 | 20.7 | 41.7 |
| 구 분 | | 2025년 1/4분기 | 2025년 2/4분기 | 2025년 3/4분기 |
| 신규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 | 115 | 166 |
| | 이차보전액 | - | 0.6 | 3.6 |
| 기존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1,481 | 1,481 | 1,471 |
| | 이차보전액 | 19.0 | 19.6 | 18.9 |
| 2025 누적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1,481 | 1,596 | 1,752 |
| | 이차보전액 | 19.0 | 39.2 | 61.7 |
| 구 분 | | 2025년 4/4분기 | 2025년 합계 | 2025년 당초 계획 |
| 신규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125 | 406 | 1,526 |
| | 이차보전액 | 5.0 | 9.2 | 42.0 |
| 기존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1,457 | 1,457 | 1,481 |
| | 이차보전액 | 18.7 | 76.2 | 78.0 |
| 2025 누적 |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1,863 | 1,863 | 3,007 |
| | 이차보전액 | 85.4 | 85.4 | 120.0 |

주) 신규 대출금액은 해당 분기에 신규로 편입된 대출에 대해, 기존은 누적된 대출에 대해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소관 R&D 사업의 감액과 관련된 모든 기업에 최대한도로 지원 가능한 규모로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 후 사업 홍보를 강화하였으나, 해당 기업 중 상당수는 이차보전이 아닌 보조 또는 직접융자 등을 기대하였던 경우가 많아 수요가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차보전은 대출 금리 부담만을 완화시킬 뿐 원금 상환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요 저조는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24년의 경우도 저조한 수요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설정함으로써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33)]

33) 한편, 동 사업은 보전금리 수준이 5.5%로 높고 최소한의 자부담 수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부터 5.5% 수준의 신규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업 운영 시 적정 보전금리 수준 및 최소한의 자부담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추후 관련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내역사업인 ‘기업진단’은 AI 진단의 활성화에 따라 진단건수, 맞춤형 연계지원 건수 등 실적치 대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규모 및 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업진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평가 후 진단기업에게 정책자금, 연수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표준진단·종합진단·챌린지진단 등으로 구성됨. ① ‘기업진단(표준)’은 기업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11개 분야 200개 표준솔루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및 맞춤형 연계지원을 수행하는 것이고, ② ‘기업진단(종합)’은 보다 전문적인 기업분석 모형을 통해 성장로드맵 및 연계지원을 수행하며, ③ ‘챌린지 진단’은 복합위기에 취약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기업진단 유형별 개요]

| 구분 | | 내 용 |
|---|---|---|
| 표준진단 | | (정의) 기업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연계지원<br>(대상)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 |
| 종합진단 | 사전 | (정의) 진단모형을 통해 기업경쟁력 분석 및 성장 로드맵 제시<br>(대상) ① 정책자금 중점 지원분야 등 영위 기업, ② 고용·수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대기업<br>③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등 시설투자 기업 |
| | 사후 | (정의) 정책자금 지원 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br>성과검증 및 계속기업 여부를 판단<br>(대상) 직접대출 잔액 5억원 이상 보유기업 우선 실시 |
| 챌린지진단 | | (정의) 재무·생산·품질·마케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원인분석,<br>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진단<br>(대상)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업 영위 기업 |
| AI진단(자체) | | (정의)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분석 결과 제공 및 맞춤사업 연계지원<br>(대상)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보유기업 |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런데 연도별 기업진단 지원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전문가 방문 없이 중소기업이 AI 비대면 진단을 통해 스스로 경영 전반을 분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집행액·대면진단건수·진단기반 맞춤형 연계지원건수·정책자금 지원 금액·지원 전후 성장기여 현황 등 실적치 대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음.

[2021~2025년 기업진단 지원 실적 현황]

(단위: 억원, 백만원, 건)

| 구분 | 기업진단 예산액 | 기업진단 집행액 (A) | 대면 진단건수 (B) | 대면 1건당 집행액 (=A/B) | 진단기반 맞춤형 연계지원 건수 | 진단기반 정책자금 지원 금액 | AI 비대면 진단건수 |
|---|---|---|---|---|---|---|---|
| 2021 | 50.7 | 50.5 | 5,352 | 94.4 | 10,799 | 22,228 | - |
| 2022 | 54.8 | 54.8 | 5,278 | 103.8 | 10,369 | 22,379 | - |
| 2023 | 54.8 | 54.8 | 4,404 | 124.4 | 9,557 | 16,858 | 5,650 |
| 2024 | 52.4 | 51.7 | 3,797 | 136.2 | 6,762 | 14,483 | 5,904 |
| 2025 | 48.9 | 48.8 | 3,011 | 162.5 | 6,013 | 12,348 | 8,52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2025년 기업진단 지원 전·후 성장기여 현황]

| 구 분 | 진단 전 매출액(A) | 진단 후 매출액(B) | 매출액 차이 (B-A) | 진단기업 약정해지율(C) | 미진단기업 약정해지율(D) | 해지율 차이 (D-C) |
|---|---|---|---|---|---|---|
| 2021년 | 85억 7,000만원 | 102억 4,000만원 | 16억 7,000만원 | 1.79% | 5.38% | 3.59%p |
| 2022년 | 123억 7,000만원 | 139억 4,000만원 | 15억 7,000만원 | 1.61% | 4.28% | 2.67%p |
| 2023년 | 104억 8,000만원 | 111억 4,000만원 | 6억 6,000만원 | 2.97% | 5.61% | 2.64%p |
| 2024년 | 97억 2,000만원 | 104억 2,000만원 | 7억원 | 2.78% | 6.05% | 3.27%p |
| 2025년 | 미집계 | 미집계 | 미집계 | 3.15% | 6.07% | 2.93%p |

주 1) 2025년 현황은 기업진단 성과분석 용역 실시 이후 집계 예정(2026.8.)

2) 약정해지란 대출 약정 이후 이를 정상 이행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것을 의미하며, 약정해지율이 낮을수록 기업이 약정된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진단 개요]

(개요) 신청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기업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외부환경·경영성과·내부역량 등 분석 후 맞춤사업 추천
(대상) 2개년 표준재무제표 보유 중소기업
(방법) PC·모바일앱에 접속 후 "진단하기" 클릭
(제공) 약 15페이지의 진단보고서 제공(무료)

【AI진단 프로세스】

| 시스템 접속 | AI 진단 로그인 | 시스템 內 "진단하기" 클릭 |
|---|---|---|
| ■ 웹(https://kdoctor.kosmes.or.kr)<br>■ 모바일앱(BIZ-BRAIN) | ■ ID/PW 입력<br>■ 로그인 버튼 클릭 | ■ 결과 및 솔루션 제공<br>- 평가등급,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전략방향, 맞춤정보 |

| 목 차 | 내용 |
|---|---|
| ① 요약 | 평가등급,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전략방향, 맞춤정보 |
| ② 기업현황 | 기업개요, 재무현황, 인증정보, 수출정보, 종업원 추이 |
| ③ 외부환경 | 산업지표, 산업환경 |
| ④ 유사업체 분석 | (동종업계 유사 매출액 기업) 재무상태, 손익계산, 재무비율 비교 |
| ⑤ 경영성과 | 재무비율, 손익분기점, 비용구조 건전성, 현금흐름 분석 |
| ⑥ 내부역량 | 기술확보, 생산관리, 마케팅 역량 등 기술성·사업성 분석 |
| ⑦ 전략방향 | (성장로드맵 제시) 전략방향, 전략 포지셔닝, 세부 실행내용 |
| ⑧ 맞춤정보 | 중소기업 맞춤 지원사업 정보 |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동 사업의 규모 및 체계를 AI 자체진단을 통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가 방문 위주의 현장 진단인 종합진단 및 챌린지 진단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 사업: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 사업은 미국 품목관세 조치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4]

[2025년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한시, 융자) | - | 100,000 | - | 100,000 | 100,000 | - | -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은 2025년 4월 시행된 美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관세부과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 중 유사 사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차이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철강・자동차 등 美 관세부과 품목 업종 및 향후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알루미늄・석유화학・반도체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설정된 바 있으며, 565개사에 대해 평균 1억 7,700만원 가량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었음.

3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1261-314)(중소기업정책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의 주요 내용]

| 구 분 | 융자 조건 |
|---|---|
| 지원 대상 |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br>① 철강・자동차 등 美 관세부과 품목 업종<br>② 향후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석유화학・반도체 등의 업종 |
| 지원 규모 | 1,000억원(565개사 × 1억 7,700만원) |
| 융자 한도 | (운전) 10억원 이내, (시설) 30억원 이내 |
| 융자 기간 | (운전) 6년 이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br>(시설) 10년 이내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 융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 융자 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간 비교]

| 구 분 |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
| 지원 목적 |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긴급자금 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 지원 규모(2025년) | 1,000억원 | 5,500억원 |
| 지원 대상 |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자동차・알루미늄・철강・석유화학・반도체・목재) | 환율피해, 원자재 가격급등, 주요거래처 도산, 기술유출 피해, 재해재난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
| 융자 조건 | 운전 10억원, 6년(3년 거치)<br>시설 30억원, 10년(4년 거치) | 운전 10억원, 5년(2년 거치)<br>* 3년간 15억원 이내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한시적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기존 융자사업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높게 설정하여 왔는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은 대출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낮게 설정되었는바, 향후 유사 사업에서 금리 산정 시 정책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실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융자사업을 성격에 따라 A·B·C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A그룹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B그룹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C그룹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기존 융자사업의 변동금리 수준 및 사유]

| 그룹 | 자금명 | 가감금리 적용사유 |
|---|---|---|
| A그룹<br>(기준금리 △0.3%p) | · 혁신창업사업화(창업기반지원) | 0.3%p 우대하여 창업기업 금융부담 완화, 유동성 강화로 시장진입 촉진 |
| B그룹<br>(기준금리) | · 혁신창업사업화(개발기술사업화)<br>· 신시장진출지원(내수기업수출기업화 등)<br>· 재도약지원(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br>· 신성장기반(협동화 등) | 中企 성장도약, 수출 활성화, 재도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 위해 기준금리 적용 |
| C그룹<br>(기준금리 +0.5%p) | · 신성장기반(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br>· 긴급경영안정(일시애로) | 0.5%p 가산하여 성장기 기업의 민간 금융활용 유도, **일시애로기업 지원에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 |

주) 2026년 1분기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과 기존 융자사업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시적 경영애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융자사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p 높게 설정하였으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사업은 오히려 0.3%p 낮게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일시적 경영애로 관련 융자사업의 금리수준을 살펴보면 e-커머스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에 적용한 대출금리 등에서도 유사 사업 간 금리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일시적 경영애로 관련 융자사업의 사유별 금리수준 비교]

| 구분 | 금리수준 |
|---|---|
| 코로나19 | (2021년 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br>(2022년 이후)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 e-커머스 미정산 | (2024년) 2.5% 고정<br>(202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 통상리스크 대응 |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 |
| 일반 경영애로 |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주)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고, 코로나 피해기업 중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2020.2.13.~2020.12.31) 및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2021.3.30~2021.12.31)에는 한시적으로 1.9%(고정금리)를 적용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계부처 협의 및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융자조건의 완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개별 사안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히 다르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개별 사안마다 완화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책목적에 따른 예외적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이 기존 사업과 지원 목적 및 대상이 유사한 신규 사업을 별개로 편성・운영하면서 전담기관이 정책적 필요성과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기존 융자사업의 원칙과 달리 대출 요건을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일관성・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금리 산정 시 정책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12.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건물 활용도 제고 필요

## 가. 개 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00억 3,100만원 중 999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35)]

[2025년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창업성공패키지 | 100,031 | 100,031 | - | 100,031 | 99,996 | - | 35 | 106,431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에서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전국 19개 캠퍼스에서 창업공간 및 교육·코칭 등 초기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과 글로벌 진출 유망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코로나19 이후 비입주 방식에 대한 입교생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년창업사관학교 건물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관학교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국 각지에 소재한 19개 청년창업사관학교 건물의 연간 가동률을 살펴보면, 2021년 54.2%에서 2022년 45.8%, 2023년 36.0%, 2024년 26.8%, 2025년 18.5%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캠퍼스의 경우 36개 기업을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입주 기업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0%의 가동률을 보였음.

3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창업성공패키지(5152-302)(창업벤처정책실)

[사관학교 건물별 연간 가동률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21 | | | 2022 | | | 2023 | | | 2024 | | | 2025 | | |
|---|---|---|---|---|---|---|---|---|---|---|---|---|---|---|---|
| | 수용 인원 | 입주 기업 | 가동률 | 수용 가능 | 입주 기업 | 가동률 | 수용 가능 | 입주 기업 | 가동률 | 수용 가능 | 입주 기업 | 가동률 | 수용 가능 | 입주 기업 | 가동률 |
| 안산 | 125 | 66 | 52.8 | 125 | 51 | 40.8 | 125 | 31 | 24.8 | 125 | 37 | 29.6 | 125 | 11 | 8.8 |
| 구리 | 16 | 11 | 68.8 | 16 | 8 | 50.0 | 16 | 5 | 31.3 | 16 | 5 | 31.3 | 16 | 4 | 25.0 |
| 서울 | 92 | 50 | 54.3 | 92 | 45 | 48.9 | 92 | 35 | 38.0 | 92 | 16 | 17.4 | 92 | 24 | 26.1 |
| 인천 | 28 | 13 | 46.4 | 28 | 11 | 39.3 | 28 | 15 | 53.6 | 28 | 12 | 42.9 | 28 | 5 | 17.9 |
| 파주 | 28 | 9 | 32.1 | 28 | 12 | 42.9 | 28 | 4 | 14.3 | 28 | 2 | 7.1 | 28 | 6 | 21.4 |
| 강원 | 36 | 10 | 27.8 | 36 | 9 | 25.0 | 36 | 11 | 30.6 | 36 | 2 | 5.6 | 36 | 0 | 0.0 |
| 천안 | 32 | 25 | 78.1 | 32 | 20 | 62.5 | 32 | 20 | 62.5 | 32 | 12 | 37.5 | 32 | 5 | 15.6 |
| 대전 | 20 | 16 | 80.0 | 20 | 6 | 30.0 | 20 | 12 | 60.0 | 20 | 3 | 15.0 | 20 | 8 | 40.0 |
| 세종 | 30 | 9 | 30.0 | 30 | 12 | 40.0 | 30 | 12 | 40.0 | 30 | 10 | 33.3 | 30 | 4 | 13.3 |
| 청주 | 30 | 10 | 33.3 | 30 | 10 | 33.3 | 30 | 4 | 13.3 | 30 | 0 | 0.0 | 30 | 2 | 6.7 |
| 광주 | 25 | 23 | 92.0 | 25 | 24 | 96.0 | 25 | 17 | 68.0 | 25 | 17 | 68.0 | 25 | 6 | 24.0 |
| 전주 | 31 | 23 | 74.2 | 31 | 13 | 41.9 | 31 | 8 | 25.8 | 31 | 8 | 25.8 | 31 | 1 | 3.2 |
| 나주 | 34 | 17 | 50.0 | 34 | 15 | 44.1 | 34 | 11 | 32.4 | 34 | 6 | 17.6 | 34 | 3 | 8.8 |
| 제주 | 18 | 9 | 50.0 | 18 | 9 | 50.0 | 18 | 7 | 38.9 | 18 | 5 | 27.8 | 18 | 7 | 38.9 |
| 경산 | 25 | 23 | 92.0 | 25 | 20 | 80.0 | 20 | 18 | 90.0 | 20 | 15 | 75.0 | 20 | 10 | 55.0 |
| 대구 | 40 | 18 | 45.0 | 40 | 16 | 40.0 | 40 | 11 | 27.5 | 40 | 10 | 25.0 | 40 | 10 | 25.0 |
| 창원 | 44 | 24 | 54.5 | 44 | 18 | 40.9 | 10 | 8 | 80.0 | 10 | 4 | 40.0 | 10 | 2 | 20.0 |
| 부산 | 30 | 19 | 63.3 | 30 | 16 | 53.3 | 30 | 5 | 16.7 | 30 | 6 | 20.0 | 30 | 10 | 33.3 |
| 울산 | 30 | 12 | 40.0 | 30 | 12 | 40.0 | 30 | 9 | 30.0 | 30 | 11 | 36.7 | 30 | 7 | 23.3 |
| 합계 | 714 | 387 | **54.2** | 714 | 327 | **45.8** | 675 | 243 | **36.0** | 675 | 181 | **26.8** | 675 | 125 | **18.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낮은 입주율의 원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관학교 입교생의 편의성 제고 취지에서 입교 방식을 입소(입주) 및 준입소(비입주) 등으로 병행하여 왔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준입소 방식에 대한 입교생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코칭·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즈니스 목적 미팅 공간 활용 등과 같이 가동률에 포함되지 않은 활용 현황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의 사관학교 시설의 낮은 입주율과 대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차료를 증액하거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을 증액하고 있는바, 매년 당초 계획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을 당초 목적 외 코칭이나 비즈니스 목적 미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023~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주요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목-세목 | 당초 | 변경 | 세목조정 사유 |
|---|---|---|---|---|
| 2023 | 210-02 | 620 | 706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기, 수도세 등 공공요금 증가분 |
| | 210-15 | 1,382 | 1,731 | 청년창업사관학교 시설유지관리 및 강의실 관리용역비 |
| 2024 | 210-02 | 620 | 700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기, 가스요금, 전화요금 등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
| | 210-15 | 1,382 | 2,331 | 청년창업사관학교 시설 유지 관리 및 시제품 제작실 관리 용역비 |
| 2025 | 210-02 | 655 | 755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기, 가스요금 등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
| | 210-07 | 2,737 | 3,810 |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전 등에 따른 임차료 소요 증가 |
| | 210-09 | 500 | 593 | 청년창업사관학교 시설 유지 보수 추가 소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 재정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사관학교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신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연내 실집행 실적 부진 부적정

## 가. 개 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AI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경영 변화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5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6]

[2025년도 재도약촉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재도약촉진 | 41,549 | 76,549 | - | 76,549 | 76,442 | - | 107 | 120,731 |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 - | 35,000 | - | 35,000 | 35,000 | - | - | 49,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한 대규모 AI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사업비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비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음.

3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재도약촉진(5161-302)(중소기업정책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지역 AI 사업단(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 혁신기관, 대학·출연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 (매칭 비율) 국비 60%, 지방비·민간부담금 40%

◦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활용·확산 사업 지원
- AI 솔루션: 지역 특성을 반영한 AI 솔루션 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AI 역량 진단 및 솔루션 지원
- AI 인프라: 실증 테스트 베드, 컴퓨팅 인프라, 공동 장비 및 입주공간 등 지원
- AI 인력: 현장 인력 양성, 실습 및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 | | 신청·접수 | | 선정 | | 예산 교부 및 사업 수행 | | 중간 점검 | | 실적조사 등 성과분석 |
|---|---|---|---|---|---|---|---|---|---|---|
| 중기부, 중진공 | ➡ | 지역 AI 사업단→ 중진공 | ➡ | 중진공 | ➡ | 중진공, 지역 AI 사업단 | ➡ | 중진공, 지역 AI 사업단 | ➡ | 중기부, 중진공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연내 신속 집행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복합적 이해관계를 내포한 중장기적 자본형성적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내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재원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본형성적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 혁신기관, 대학교 및 출연연구기관, AI 전문기업 등 복합적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과정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성과분석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 집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동 사업은 최초 계획 당시부터 사업 중간점검 이후 단계의 예상 추진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설정되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한 동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계획 및 추진 시기]

| 구분 | 최초 계획 | 실제 추진 시기 |
|---|---|---|
| 사업공고 | 2025. 7. | 2025. 7. |
| 선정·평가 | 2025. 9. | 2025. 9. |
| 협약 체결 | 2025. 10. | 2025. 10. |
| 사업 착수 | 2025. 10. | 2025. 10. |
| 사업 중간점검 | 2026. 3. | 2026. 2. |
| 최종점검 및 평가 | 2026. 5. | 2026. 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속 집행의 필요성에 따라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사업에 대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나, 최종 집행기관인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민간부담금 집행률이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도 19.3%(237억원 중 45.8억원)에 머물고 있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따라 편성된 사업이 부진한 실집행 실적을 보이는 등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공적 자금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수행 필요 등

## 가. 개 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8,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7]

[2025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500,000 | 800,000 | - | 800,000 | 800,000 | - | - | 880,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예산인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고, 민간자본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가 이루어지며, 자펀드는 조성 후 약 4년간 투자되고 5~8년간 운용된 후 청산됨.

[모태펀드 사업 집행 절차]

| | |
|---|---|
| 모태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의해 중진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br>■ 운용기관 : 한국벤처투자<br>(펀드출자 및 관리·감독 등 모태조합 자산 관리·운용) |
| ↓↑ | |
| 투자 자펀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의해 VC 등이 모태조합 출자를 받아 결성(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br>■ 중소·벤처기업에 자금공급 및 투자수익 배분 |
| ↓↑ | |
| 중소·벤처기업 | ■ 중소·벤처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받아 기업성장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7)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창업벤처혁신실)

2025년 말 기준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NEXT UNICORN PROJECT, 지역, 재도약, 글로벌, LP 플랫폼, 회수활성화, 임팩트, 청년창업, 여성기업 등의 분야에 출자하기 위하여 8,000억원이 편성된 바 있음.

[2025년 말 기준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자펀드 분야별 출자 내용]

(단위: 억원)

| 계정명 | 분야명 | 2025년 | | 출자 내용 |
|---|---|---|---|---|
| | | 당초 | 수정 | |
| 중진 | 스타트업코리아 | 1,500 | 좌동 | 초격차 10대 분야 관련 딥테크 스타트업, K-글로벌 등 |
| | 글로벌 | 700 |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
| | M&A | 200 | | 기업승계 등 M&A 목적 투자 |
| | 재도약 | 100 | | 재창업기업, 사업전환기업 등 재도약 기업 지원 |
| | 여성기업 | 100 |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여성인 기업 등 |
| | LP 첫걸음펀드 | 200 | |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투자자 등의 벤처투자 유도 |
| | NEXT UNICORN PROJECT | - | 3,000 |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등 |
| 청년 | 청년창업 | 200 | 좌동 | 대표이사가 만39세 이하인 청년기업 등 |
| 지방 | 지역 | 2,000 | | 지역혁신 기업, 규제자유특구 등 |
| 계 | | 5,000 | 8,000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가 창업초기기업, 소외 분야 및 엔젤투자, 국내 투자자 확충 등 민간자금을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사업은 제한된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시장의 규모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 목적인바, 동 사업은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을 영위하는 벤처·중소기업으로 최대한 많은 민간자금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기능을 수행할 것이 요구됨.

특히 동 사업의 계획액은 2023년 2,835억원, 2024년 4,500억원, 2025년 8,000억원, 2026년 8,8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한정된 정부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출자 규모의 확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민간자금이 유입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분야의 자펀드는 정부출자비율이 60% 이상으로 사실상 민간자금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의 정부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 모태펀드의 운용 취지인 민간 주도 투자시장 조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따른 공고상 정부 출자비율과 실제 출자비율]

| 계정 | 분야 | | | 공고상 출자비율 | 실제 출자비율 |
|---|---|---|---|---|---|
| 중진 | 루키리그 | | | 60% 이내 | 52% |
| | 여성기업 | | | 60% 이내 | 44% |
| | 재도약 | | | 60% 이내 | 57% |
| | 스케일업·중견도약 | | | 40% 이내 | 21% |
| | 바이오 | | | 60% 이내 | 28% |
| | 라이콘 | | | 60% 이내 | 50% |
| | 기업승계 M&A | | | 40% 이내 | 7% |
|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 | | 30% 이내 | 23% |
| | NEXT UNICORN PROJECT | 스타트업 | AI융합 | 60% 이내 | 48% |
| | | | 딥테크 | 60% 이내 | 43% |
| | | 스케일업 | AI융합 | 50% 이내 | 48% |
| | | | 딥테크 | 50% 이내 | 47% |
| 혁신모험 | 창업초기 | | | 60% 이내 | 46% |
| 문화 | IP | | | **60% 이내** | **60%** |
| | 수출 | | | 60% 이내 | 57% |
| | 신기술 | | | 60% 이내 | 55% |
| | 콘텐츠육성 | | | **60% 이내** | **60%** |
| | 문화일반 | | | 60% 이내 | 50% |
| 영화 | 중저예산한국영화 | | | 50% 이내 | 47% |
| | 애니메이션전문 | | | 50% 이내 | 50% |
| | 한국영화메인투자 | | | 50% 이내 | 49% |
| 스포츠 | 스포츠산업 | | | **70% 이내** | **70%** |
| | 스포츠전략 | | | **70% 이내** | **70%** |
| | 스포츠출발 | | | **70% 이내** | **70%** |
| 국토교통 혁신 | 국토교통혁신(일반) | | | 60% 이내 | 34% |
| 교육 | 대학창업1 | | | 75% 이내 | 59% |
| | 대학창업2 | | | 75% 이내 | 56% |
| 환경 | 미래환경산업 | 그린스타트업 | | **70% 이내** | **70%** |
| | | 사업화 | | **70% 이내** | **70%** |
| | | 스케일업 | | 70% 이내 | 56% |
| 과기정통 | 메타버스 | | | 57.5% 이내 | 56% |
| | 사이버보안 | | | 50% 이내 | 41% |
| | 공공기술사업화 | | | 50% 이내 | 50% |
| | 뉴스페이스 | | | 50% 이내 | 43% |
| | AI | | | 50% 이내 | 36% |
| | AI(대형) | | | 50% 이내 | 50% |
| 특허 | IP직접투자 | | | 50% 이내 | 40% |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투자실적은 약 13.6조원으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자금의 유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22년 26.9%에서 2025년 16.6%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21~2025년 계정별 투자실적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계정(6%), 보건계정(9%), 해양계정(6%) 등에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저조하였음.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

(단위: 억원)

| 구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초기(3년 미만) | 금액 | 30,585 | 33,594 | 26,808 | 22,243 | 22,666 |
| | 비중 | 19.2% | 26.9% | 24.6% | 18.6% | 16.6% |
| 중기(3~7년) | 금액 | 58,083 | 42,828 | 30,709 | 33,551 | 39,422 |
| | 비중 | 36.4% | 34.3% | 28.1% | 28.1% | 29.0% |
| 후기(7년 초과) | 금액 | 70,703 | 48,284 | 51,616 | 63,663 | 74,156 |
| | 비중 | 44.4% | 38.7% | 47.3% | 53.3% | 54.4% |
| 합계 | | 159,371 | 124,706 | 109,133 | 119,457 | 136,244 |

주)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회사·조합의 합산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계정 중 ‘엔젤’ 계정은 창업 극초기 단계에 있는 엔젤기업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엔젤매칭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되었는데, 최근 출자실적은 2021년 86억원, 2022년 408억원, 2023년 200억원에 그쳤으며, 2024년 이후에는 출자실적이 없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가 창업초기기업, 소외 분야 및 엔젤투자, 국내 투자자 확충 등 민간자금을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연내 신속 집행이 원칙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자금을 증액 후 연내 전액 미투자한 것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3,000억원을 활용하여 총 5,706억원 규모의 ‘NEXT UNICORN PROJECT’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5년 말 기준 결성된 펀드 규모는 3,352억원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도 전무하였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 투자 절차를 살펴보면 추경 통과(7.4.) → 공고(7.11.) → 운용사 선정(9.11.) → 펀드 결성(당초 시한 12.11.) 등을 거쳤는데 실제 펀드 결성은 2026년 1월에서야 완료되었으며, 이후에도 초기 검토 및 보고서 작성,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실사, 투자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AI·딥테크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이유로 연내 출자금을 증액한 것은 펀드 사업구조와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선정 연도별 자펀드 미투자 잔액]

(단위: 억원)

| 선정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미투자 잔액 | 2,478 | 9,458 | 7,610 | 16,341 | 25,026 |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최근 대규모의 미투자 잔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상당한 규모의 출자금이 편성되었다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에는 당초 1조 1,000억원의 출자금이 편성되었다가 국회 심의를 거쳐 8,200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으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시 9,900억원으로 증액되었다가 국회 심의를 거쳐 8,800억원으로 재차 감액되었음.

이와 같이 연내 신속 집행이 원칙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자금을 증액 후 연내 전액 미투자한 것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셋째, 모태펀드의 업무집행조합인 한국벤처투자의 관리보수 수익 및 내부유보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 관점에서 관리보수 체계 개편, 배당 성향 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부유보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한국벤처투자는 업무집행조합으로서 출자금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보수를 수령하고 있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매년 출자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보수 수익 및 내부유보금도 2023년 379억원에서 2025년 46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한국벤처투자가 수령한 관리보수 및 내부유보금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관리보수 | 379 | 417 | 462 |
| 내부유보금 | 583 | 722 | 866 |

주) 한국벤처투자는 출자금 규모가 2조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의 0.55%를, 2조원 이상인 경우 2조원의 0.55%에 더하여 2조원 초과분의 0.4%를 관리보수로 지급받고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의 주 운영 방향은 시설 투자가 아닌 인력 활용이므로 이익의 내부 유보를 통한 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낮은바, 관리보수 체계 개편 및 배당 성향 확대 등을 통해 내부유보금 규모를 축소하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5월 관리보수 개편 및 배당성향 확대 조치를 통해 ① 2조원의 0.55%에 더하여 2조원 초과분의 0.4%를 관리보수로 지급하던 기존 체계를 10조원의 0.4%에 더하여 10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4%보다 낮은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② 2025년 배당성향을 29.0%로 전년 대비 1.0%p 확대함으로써 배당금의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억원 확대하였다는 입장임.

[2026년 5월 모태펀드 관리보수 지급체계 개편 내용]

(단위: 억원)

| 납입출자금 총액 | 보수율 |
|---|---|
| 10조원 이하 | 0.4% |
| 10조원 초과 15조원 이하 | 0.38% |
| 15조원 초과 20조원 이하 | 0.34% |
| 20조원 초과 25조원 이하 | 0.28% |
| 25조원 초과 | 0.2% |

| 출자금 규모에 따른 관리보수 지급액의 개편 전후 비교 | | | |
|---|---|---|---|
| 출자금 규모 | 관리보수 지급액 | | |
| | 개편 전(A) | 개편 후(B) | 차이 |
| 10조원 | 430 | 400 | 30 |
| 12.9조원(현재) | **546** | **510** | **36** |
| 15조원 | 630 | 590 | 40 |
| 20조원 | 830 | 760 | 70 |
| 25조원 | 1,030 | 900 | 130 |
| 30조원 | 1,230 | 1,000 | 23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한국벤처투자 배당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023 | 2024(A) | 2025(B) | B-A |
|---|---|---|---|---|
| 당기순이익 | 87.5 | 160.7 | 189.1 | 28.4 |
| 배당금 | 21.7 | 45.0 | 54.9 | **9.9** |
| 배당성향 | 24.8% | 28.0% | 29.0% | 1.0%p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개편 내용에 따른 배당금 확대분 및 관리보수 감액분의 합(약 46억원)은 과거 연도별 관리보수의 전년 대비 증액분(2024년 38억원, 2025년 45억원)과 유사한 수준인바, 이와 같은 개편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국벤처투자 내부유보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중소기업모태조합에서 운용하는 지역성장펀드는 2026년도 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금융위원회 소관 국민성장펀드 중 지역성장 관련 부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향후 지역성장펀드 운용 시 국민성장펀드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모태조합에서 운용하는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방정부·금융기관·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권역별 펀드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는 2026년도 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금융위원회 소관 '국민성장펀드[38]'와 투자 대상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두 펀드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성장펀드는 지역성장펀드와 마찬가지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을 주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40%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극·3특 전략 및 지역 우대 정책과의 연계도 도모하고 있음.

38)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에 제공하여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펀드로, 2026년부터 1조원 규모의 한국산업은행 출자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이고,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의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국민성장펀드 및 중소기업모태조합 비교]

| 구분 | 국민성장펀드 | 중소기업모태조합 |
|---|---|---|
| 지원 방식 |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 간접투자 중심 |
| 분야 | 10대 첨단 전략 산업, 90개 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초기창업·청년·여성 등 시장 소외 분야, 콘텐츠·스포츠·관광·영화·해양 등 |
| 성장 단계 | 중소·중견·대기업, 인프라 등 메가프로젝트 중심 |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
| 재원 | 정책자금(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일부 펀드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 | (모태펀드) 정부 부처 재정 출자 (모태자펀드) 모태펀드, 민간자금 |
| 투자 규모 | 매년 30조원 중 4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 2026년 기준 재정 2,000억원 출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이미 2026년 3월 말 기준 울산 전고체배터리 생산시설 확장(0.1조원),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3.4조원) 등의 투자를 승인 완료하는 등 대규모 지역 거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모태조합과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방식(직접/간접)이나 지원분야(전략분야/소외분야), 성장단계 등이 상이하여 두 정책금융 상품 간 유사중복이나 간섭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상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약 60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중소기업모태조합이 아닌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역성장펀드 운용 시 국민성장펀드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차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한국벤처투자가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를 통해 국내 기업에 유입되는 투자금액이 모태출자액 규모를 하회하는 지역이 존재하므로, 해외사무소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목적인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VC·AC와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25년 기준 샌프란시스코·뉴욕·상해·싱가포르·런던 등에 5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일본 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임. 각 해외사무소는 모태펀드 중진계정을 재원으로 하여 글로벌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음.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단위: 명, 억원)

| 사무소명 | 소재지 | 설치연도 | 파견 인력 현황 | 예산 현황 | | |
|---|---|---|---|---|---|---|
| | | | | 2023 | 2024 | 2025 |
| 미국 서부사무소 | 샌프란시스코 | 2013 | 2 | 9.8 | 11.2 | 11.3 |
| 중국 사무소 | 상해 | 2014 | 1 | 7.7 | 7.7 | 6.7 |
| 싱가포르 사무소 | 싱가포르 | 2015 | 2 | 6.2 | 6.8 | 7.3 |
| 유럽 사무소 | 런던 | 2023 | 1 | 3.3 | 7.8 | 9.1 |
| 미국 동부사무소 | 뉴욕 | 2025 | 1 | - | - | 4.3 |
| 일본 사무소 | 도쿄 | 2026(예정) | 1 |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이들 해외사무소를 통해 결성한 펀드 총액 13.7조원 중 한국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10%인 1.4조원에 불과하며, 일본, 유럽·중동 지역 등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모태출자액 규모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해외사무소 운영 확대가 한국벤처투자의 주 설립 목적인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한국벤처투자 글로벌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개, 억원)

| 지역 | 펀드 수 | 모태출자액 | 결성총액 | 한국기업투자 | |
|---|---|---|---|---|---|
| | | | | 기업 수 | 투자액 |
| 미주 | 41 | 3,626 | 51,515 | 556 | 9,190 |
| 중국 | 10 | 1,778 | 15,174 | 44 | 2,765 |
| 일본 | 3 | 204 | 2,800 | - | - |
| 동남아 | 16 | 1,591 | 23,811 | 50 | 1,685 |
| 유럽·중동 | 12 | 1,193 | 43,428 | 13 | 339 |
| 계 | 82 | 8,392 | 136,727 | 663 | 13,979 |

주) 원/달러 환율 1,200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해외사무소가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작성 과정에서 각 계정 내 분야 단위로 규모가 설정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해당 출자금이 회수 후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분야 간 이전을 통해 당초 국회가 심의한 바와 달리 운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벤처투자는 향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정책펀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분야 간 이전 현황을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모태조합출자금의 규모는 총액뿐만 아니라 각 계정 내 분야 단위로 명시되어 매년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예컨대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 심의 당시에는 중진계정 내 재도전 분야, 지방계정 내 지역성장 분야, 혁신모험 내 창업초기 분야 등에서 출자금 규모 증액분이 명시된 바 있음.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모태조합 출자 자펀드 분야별 출자계획]

(단위: 억원)

| 계정명 | 분야명 | 당초 계획 | 제1회 변경안 | 투자 내용 |
|---|---|---|---|---|
| 중진 | NEXT UNICORN PROJECT | 4,000 | 좌동 | AI 등 딥테크 관련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 |
| | LP 플랫폼 | 500 | 좌동 |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투자자 등의 벤처투자 유도 |
| | 글로벌 | 500 | 좌동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
| | **재도전** | **300** | **500** | **재창업기업, 사업전환기업 등 재도약 기업 지원** |
| | 회수활성화 | 300 | 좌동 | 인수합병(M&A) 및 구주매각(세컨더리) 거래 지원 |
| | 임팩트 | 100 | 좌동 | 사회적기업 등 소셜 임팩트 분야 |
| | 여성기업 | 100 | 좌동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여성인 기업 등 |
| 지방 | **지역성장** | **2,000** | **3,200** | **지방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1,000억원 규모 모펀드 2개 추가 조성** |
| 혁신모험 | **창업초기** | **200** | **500** |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 열풍 참여기업 중심으로 벤처투자 유치 지원** |
| 청년 | 청년창업 | 200 | 좌동 | 대표이사가 만39세 이하인 청년기업 등 |
| 계 | | 8,200 | 9,900 (+1,700)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국회가 이와 같이 계정 내 분야 단위로 명시된 출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확정한 이후, 해당 출자금이 자펀드를 통해 투자되었다가 자펀드 청산에 따라 회수 후 재투자되면 계정 간·분야 간 이전을 통해 당초 국회가 심의한 바와 달리 운용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모태펀드 회수 재원의 계정 간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5년 동안 총 2,708억원의 회수 재원이 중진계정에서 지방·엔젤·혁신모험 등의 계정으로 이전되어 당초 국회가 심의한 기금운용계획 내용과 상이한 방향으로 운용된 바 있음.

[2021~2025년 모태펀드 회수 재원의 계정 간 이전 현황]

(단위: 억원)

| 이전 시점 | 계정 | | 금액 |
|---|---|---|---|
| | ~에서 | ~으로 | |
| 2021. 11. | 중진 | 지방 | 250 |
| 2021. 11. | 중진 | 엔젤 | 200 |
| 2022. 5. | 중진 | 혁신모험 | 1,000 |
| 2024. 1. | 중진 | 지방 | 1,25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물론 투자 환경과 그에 따른 계정·분야별 투자의 공공성 및 예상 기대수익률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 수준은 국회 심의 당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운용기관이 회수 재원을 이전하여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부적절한 운용 행태로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액은 매년 국회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회수 재원의 분야 간 이전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이 사후적으로라도 국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한국벤처투자는 계정 간 이전 현황과 별개로 분야 간 이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회수 재원이 당초 기금운용계획 확정 내용과 상이한 분야에 대해 재투자되어도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53조의2[39]에서는 정책펀드의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회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분야별로 검토하는 점을 고려하면 회수 재원의 분야 간 이전 내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향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정책펀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분야 간 이전 현황을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음.

---

39) 「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 출〉

## 15.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신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연내 실집행 실적 부진 부적정

### 가. 개 요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코로나 피해 등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812억 6,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0]

[2025년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10,940 | 825,246 | - | 825,246 | 825,246 | - | - | 168,128 |
|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 - | 281,269 | - | 281,269 | 281,269 | - | - | 9,625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폐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보증재원, 이차보전 및 보증료 등이 편성되었음.

4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글로벌성장정책관)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코로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보증지원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서민경제 유지 발전에 기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지원대상) 2020. 4. ~ 2025. 6.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① (코로나 피해기업) 2020. 4. ~ 2025. 6. 보증부 대출 이용 기업
  ② (폐업기업) 정상 상환 중이며,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폐업개인사업자
  (단, 해당 보증 이용시 사업자보증 제한)
- (지원내용)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2020. 4. ~ 2025. 6. 중 지원받은 보증부 대출을 장기(7년)·저리(1%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
  ② (폐업기업) 기존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7년 → 15년까지로 연장(거치기간 2년)하여 폐업 후 상환부담 완화
- (우대사항)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및 이차보전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보증기간(7년, 거치1년 + 분할상환 6년), 금리(3.4% 수준)

  ① 장기분할 상환: 7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이차보전 지원: 1%p의 이자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
  ③ 보증료 지원 : 보증기간 확대(5년→7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의 50%(0.4%)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

  ② (폐업기업) 보증기간(現 7년 → 15년, 거치 2년), 금리(2.7% 수준)

  ① 장기분할상환: 15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보증료 지원: 보증기간 확대(7년→15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0.9%)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

○ (수행주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원절차) 사업출연금은 신보중앙회에 교부한 후 용도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에 재교부한 후 정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연내 신속 집행의 필요성에 의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폐업 분할상환 보증의 계획 대비 수요 저조로 인해 계획액 2,812억 6,900만원 중 연내 실집행액은 1,947억 2,900만원(69.2%)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폐업 분할상환 보증' 내역사업은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도 공급실적(1,129억원)이 목표금액(3,750억원) 대비 30.1% 수준에 불과하였음.

[2025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당초 | 수정 (A)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 281,269 | 281,269 | 281,269 | - | 281,269 | 194,729 | 281,269 | 194,729 | - | - | 69.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의 공급목표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내역사업명 | 공급목표금액 | 실적(실행기준) | |
|---|---|---|---|
| | | 금액 | 달성률 |
| 코로나피해 분할상환 | 10,500 | 9,571 | 91.2% |
| 폐업 분할상환 보증 | 3,750 | 1,129 | 30.1% |

주) 2026년 2월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코로나피해 분할상환 보증의 경우 7월 말부터 폐업 분할상환 보증의 경우 9월부터 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최초 계획 당시부터 동 사업의 집행 완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편성되어 연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집행관리가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음.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부진하였던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41]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따라 편성된 사업이 부진한 실집행 실적을 보이는 등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1) 예컨대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 당시 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혜택이 지원되어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 실제 지원실적은 26만 4,242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113억 5,000만원(2024년 4/4분기 신청분 포함)이 지원된 것에 그쳤음.

# 16.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신규):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조 5,659억 8,000만원 중 1조 5,659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42)]

[2025년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소상공인성장지원 | 265,085 | 1,927,379 | - | 1,927,379 | 1,926,935 | - | 443 | 661,243 |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 - | 1,565,980 | - | 1,565,980 | 1,565,979 | - | 1 | 579,005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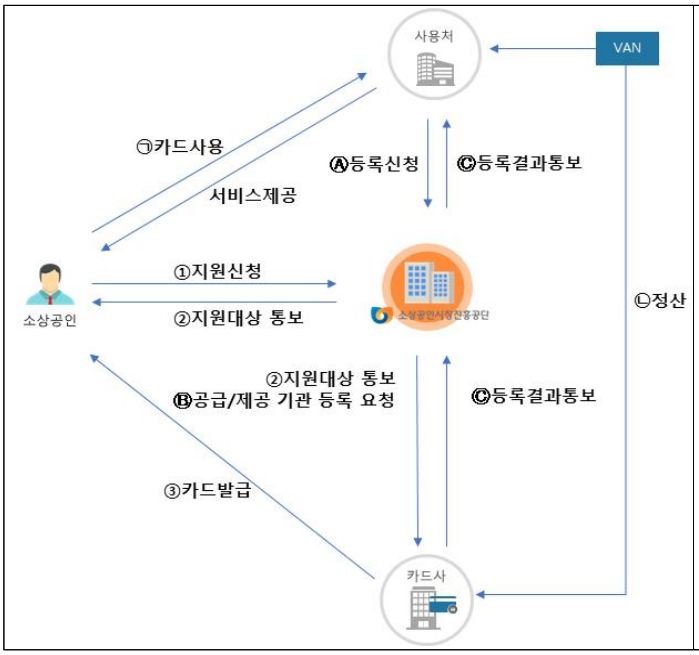
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충전금액) 카드를 발급하는 것임.

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영세 소상공인이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및 보험료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비용경감 지원
◦ (사업내용) 소상공인이 바우처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를 등록·발급받아 등록된 사용처에서 50만원 한도액 내에서 사용
- 지원대상: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약 306만명)
- 지원액: 국비 100%, 최대 50만원
◦ (사업비) 1조 5,659억 8,000만원 (2025년 한시)
◦ (집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처리절차]




① (크레딧 신청) 소상공인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카드사에 명단 제공

② (사용처 등록) 기존 사용처는 카드사 보유 정보를 통해 일괄 등록하고, 신규 사용처는 심사(업종확인 등)를 통해 새로 등록

③ (크레딧 사용) 사용자 희망에 따라 3종 카드로 운용(신용·체크·선불)하여, 자유롭게 필요항목에서 지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는 비용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등에 국한되었으나, 2025년 8월 4일 기본계획 수정을 거쳐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가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에 추가되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이 빈번히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설정된 성과지표는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적극 발굴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고정비용 완화 지원의 범위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①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한시), ② 2025년 소상공인역량강화-배달·택배비 지원, ③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 및 2026년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등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편성한 바 있음.

특히 부담경감크레딧은 당초 지원 대상이 되는 비용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만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8월 4일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상의 고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도 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에 추가되면서 현금성 지원 성격이 강화된 측면이 있음.[43]

그런데 이와 같이 전기요금, 배달·택배비,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2025년 기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정책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로, 소액의 현금성 지원이 소상공인의 생존율 제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44] 해당 사업이 소상공인의 생존에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생력이 아닌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적극 발굴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3)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담경감크레딧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소상공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될 뿐, 반드시 소상공인 본인이 신청한 통신 회선 사용 또는 본인 명의의 차량 운전 건에 대해서만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통신비용 및 차량 연료비용에 대해서도 부담경감크레딧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44)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으로, 2025년 배달·택배비 및 부담경감크레딧 등의 지원액 규모를 고려하면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본질적인 경영애로를 해소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의 지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배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라는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달수수료의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배달비 경감 효과가 장기적 차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배달플랫폼 시장은 상위 3개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의 가격설정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45] 이러한 상황에서 동 사업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를 지원하는 경우 배달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지원 혜택의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이 아닌 배달플랫폼에 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점주와 플랫폼 사업자, 배달라이더 단체 등의 견해차로 인해 단기간 내 결론이 도출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공배달앱은 10% 이하의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법률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관련 입법과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5) 2026년 3월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점유율 54%), 쿠팡이츠(29%), 요기요(10%) 등의 3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https://www.mk.co.kr/news/business/12002584).

[배달료 상한제 도입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 구분 | 의안번호 | 주요 내용 | 심사 상태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12769 | ·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 도입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 소관위심사 |
| | 2212603 | ·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료 정의, 이용료의 상한 및 위반제재조치 등 규정 | 소관위심사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5923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소관위심사 |
| | 2209688 | ·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 | 소관위접수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2204777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와의 중개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로 규정 | 소관위접수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재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 17. 지역소공인육성 사업: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가. 개 요

**‘지역소공인육성’**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56억 2,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6)]

[2025년도 지역소공인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소공인특화지원 | 119,870 | 119,870 | - | 119,870 | 119,870 | - | - | 135,261 |
| 지역소공인육성 | 15,620 | 15,620 | - | 15,620 | 15,620 | - | - | 17,967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소공인지원센터는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소공인의 협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디자인·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3년 이후 2개년에 걸쳐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2024년에는 서울 종로구, 전북 부안군, 강원 원주시를 대상으로 센터 구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2025~2026년에는 전남 무안군, 경북 경산시를 대상으로 센터 구축 사업비가 교부되었음.

4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공인특화지원(4131-318)(소상공인정책실)

[2023년 이후 소공인지원센터 구축 지역별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연도 | 지역명 | 국비 | | | 지방비 | | | 총사업비 합계 |
|---|---|---|---|---|---|---|---|---|
| | | 1년차 | 2년차 | 소계 | 1년차 | 2년차 | 소계 | |
| 2023~ 2024 | 서울 종로구 | 426 | 284 | 710 | - | 750 | 750 | 1,460 |
| | 전북 부안군 | 1,146 | 764 | 1,910 | 229 | 1,681 | 1,910 | 3,820 |
| | 강원 원주시 | 1,428 | 952 | 2,380 | - | 2,380 | 2,380 | 4,760 |
| | 합계 | 3,000 | 2,000 | 5,000 | 229 | 4,811 | 5,040 | 10,040 |
| 2025~ 2026 | 전남 무안군 | 1,000 | 1,500 | 2,500 | - | 2,500 | 2,500 | 5,000 |
| | 경북 경산시 | 1,000 | 1,500 | 2,500 | 979 | 1,521 | 2,500 | 5,000 |
| | 합계 | 2,000 | 3,000 | 5,000 | 979 | 4,021 | 5,000 | 10,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실집행 여력에 비해 과다한 수준의 사업비가 교부되어 이월 규모가 증가하는 문제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과정에서 매년 사업 지연 및 보조금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3년 선정된 3개 지역의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1년차 실집행률이 2.0% 미만에 그쳤으며, 전북 부안군은 행정절차 및 사업발주 지연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사업 완료 시점을 2025년 이후로 연기하였고, 강원 원주시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증가, 인·허가 및 건축물 구조 재계산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사업 완료 시점을 2025년 이후로 연기하였음.

[2023~2024년 소공인지원센터 구축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당해연도 교부액 | 전기 이월액 | 계획현액(A) | 실집행액(B) | 실집행률(=B/A) |
|---|---|---|---|---|---|---|
| 서울 종로구 | 2023 | 426 | - | 426 | 7 | 1.6 |
| | 2024 | 284 | 419 | 703 | 680 | 96.7 |
| 전북 부안군 | 2023 | 1,146 | - | 1,146 | 10 | 0.9 |
| | 2024 | 764 | 1,136 | 1,900 | 452 | 23.8 |
| 강원 원주시 | 2023 | 1,428 | - | 1,428 | 5 | 0.4 |
| | 2024 | 952 | 1,423 | 2,375 | 1,489 | 62.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사업 지연 및 보조금 이월 문제는 2025년에도 반복되었음. 2025년 진행된 4개 지역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 원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전북 부안군은 2024년 내 구축 완료를 전제로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2025년 말까지도 여전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

[2025년 소공인지원센터 사업의 지역별 세부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착수연도 | 2025년 국비 실집행 현황 | | | 2025년 말 기준 구축 미완료 사유 |
|---|---|---|---|---|---|
| | | 계획현액 | 실집행액 | 미집행액 | |
| 전북 부안군 | 2023 | 1,444 | 1,423 | 21 | 행정절차 및 사업발주에 따른 공기 부족, 제조가공설비 설계 변경 등으로 구축기간이 2026년 6월까지로 재연장 |
| 강원 원주시 | 2023 | 886 | 886 | - | 구축 완료 |
| 전남 무안군 | 2025 | 1,000 | 18 | 982 | 무안군 내 사전행정절차 수행이 9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9.8억원 이월 |
| 경북 경산시 | 2025 | 1,000 | 660 | 340 | ・입찰 업체 조건미달로 1회 유찰되어 2.4억원 이월, 낙찰잔액 1억원 발생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전북 부안군의 경우 전기 이월액(11억 3,600만원)보다 실집행액(4억 5,200만원)이 더 작았고, 2025년 전남 무안군의 경우 당초 계획상 11월 내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설계발주 단계조차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액이 1.8% 수준에 그쳤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전북 부안군의 경우 사업비의 추가 교부 없이 이월금만으로 2024년 사업 수행이 가능하였고, 2025년 전남 무안군의 경우 설계발주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으로도 2025년 사업 수행이 가능하였음에도 각각 당해 연도에 배정된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고, 그 결과 이월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8.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예방책 마련 필요

## 가. 개 요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은 신속한 폐업지원과 준비된 재기를 통해 자생력·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604억 5,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7]

[2025년도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소상공인재기지원 | 274,806 | 360,455 | - | 360,455 | 360,455 | - | - | 376,249 |
| 희망리턴패키지 | 245,010 | 311,492 | - | 311,492 | 311,492 | - | - | 330,150 |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14,827 | 14,827 | - | 14,827 | 14,827 | - | - | 15,312 |
| 손실보상 한시지원 | 10,400 | 20,400 | - | 20,400 | 20,400 | - | - | 8,800 |
|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 | 4,569 | 6,613 | - | 6,613 | 6,613 | - | - | 4,569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 - | 7,123 | - | 7,123 | 7,123 | - | - | 12,418 |
| 소상공인원스톱지원 | - | - | - | - | - | - | - | 5,00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는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음. 이 중 ①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폐업지원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것이고, ②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은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기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임.

특히,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임대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평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

4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소상공인정책실)

하는 것임.

[2025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임대차 점포에 한정)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평(3.3$m^2$) 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② 점포철거비 지원 기수혜자, ③ 유사사업 수혜자,
  ④ 주거용도 건축물, ⑤ 사업장 이전, ⑥ 지원 제외업종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 ① 신청서류 제출(1차)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점포철거 | ④ 정산서류 제출(2차) | ⑤ 정산서류 검토 | ⑥ 비용지급 | ⑦ 현장점검 |
|---|---|---|---|---|---|---|
| 소상공인 (온라인) | 소진공 (재기플래너)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온라인) | 소진공 (재기플래너) | 소진공 →소상공인 | 공단 (재기플래너)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첫째,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사업액의 조기 소진 또는 미집행,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중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평당 지원 단가 및 최대 지원 한도의 지속적 상향에 따라 실제 집행 건수가 2021년 15,679건에서 2025년 50,95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계획액 또한 2021년 195억원에서 2025년 1,79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사업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2021년과 2024년에는 실집행액이 계획액을 초과하여 타 사업에서의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었음.

[연도별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 1평당 지원단가 | 최대 지원 한도 | 계획액 | 실집행액 | 목표 건수 | 실제 건수 | 사업 마감일 |
|---|---|---|---|---|---|---|---|
| 2021 | 8만원 | 200만원 | 19,500 | 23,508 | 9,750 | 15,679 | - |
| 2022 | 8만원 | 250만원 | 33,200 | 30,487 | 13,280 | 16,323 | - |
| 2023 | 13만원 | 250만원 | 49,800 | 48,852 | 20,000 | 22,404 | - |
| 2024 | 13만원 | 250만원 | 54,700 | 62,439 | 22,000 | 29,533 | 2024-11-07 |
| 2025 | 20만원 | 400→600만원 | 179,545 | 179,545 | 50,613 | 50,952 | 2025-11-21 |

주 1) 계획액 및 목표 건수의 경우 각 연도 추경 기준으로 작성
2) 2025년 목표 건수의 경우 제2회 변경안에 따른 지원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지원은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와 같이 실집행액이 계획액을 초과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연도까지 기다리거나, 기금운용계획을 추가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잦은 변경은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심의한 계획안 및 변경안의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 간 과도한 괴리를 유발할 수 있음.

한편 또 다른 내역사업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 확정 직후 비교적 빠른 시기(7월 30일)에 사업 공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낮은 인지도,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총 이자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을 우려한 소상공인의 신청 유인 부족 등으로 수요가 저조하여 계획현액 71.2억원 중 실집행액이 29.9억원(42.0%)에 불과하였음.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설정하지 않으면 계획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점포철거비 사업의 1평당 지원단가와 최대 지원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점포철거 소상공인 및 철거업체가 철거비용을 실제 소요된 금액 대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또한 증가할 수 있으나, 2021~2024년간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이 2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 규모에 비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신고센터의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또한 지원요건에 따르면 유사 사업의 수혜자는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련 사업의 지원 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점포철거비를 중복으로 수령한 소상공인들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수령일자와 중복 수령 적발일자의 간격을 살펴보면 11건 중 3건은 중복 수령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적발되지 않았는바, 여전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 간 지원 실적 정보 공유가 미흡한 상황임.

[2026년 6월 기준 점포철거비 중복 수령 적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 지원금액 | 지원금 수령일자 | | 중복 수령 적발일자 | 조치 결과 |
|---|---|---|---|---|---|
| | | 지방자치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 | |
| 1 | 2.2 | 2024-10-24 | 2025-04-29 | 2026-02-20 | 환수 |
| 2 | 2.2 | 2024-08-27 | 2025-07-24 | 2026-02-20 | |
| 3 | 2.3 | 2025-06-30 | 2025-07-30 | 2026-02-12 | |
| 4 | 2.0 | 2025-07-08 | 2025-08-18 | 2026-02-10 | |
| 5 | 1.0 | 2025-07-03 | 2025-07-30 | 2026-02-20 | |
| 6 | 0.5 | 2025-08-14 | 2025-08-26 | 2026-02-12 | |
| 7 | 3.0 | 2024-08-27 | 2025-04-28 | 2026-02-20 | |
| 8 | 4.0 | 2025-07-18 | 2025-07-24 | 2026-04-16 | |
| 9 | 0.7 | 2024-07-14 | 2025-09-04 | 2026-04-16 | |
| 10 | 4.0 | 2025-04-23 | 2025-08-22 | 2026-04-16 | |
| 11 | 4.0 | 2025-09-04 | 2025-10-28 | 2026-04-16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기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점포철거비 이상징후 탐지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유사 사업 지원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9.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융자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조 2,200억원 중 4조 1,842억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358억원이 불용되었음.[48]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자체변경 (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소상공인지원(융자) | 3,770,000 | 4,220,000 | - | 4,220,000 | 4,184,200 | - | 35,800 | 3,682,000 |
| 일반경영안정자금 | 1,220,000 | 1,360,000 | 437,000 | 1,797,000 | 1,771,764 | - | 25,236 | 1,220,000 |
| 특별경영안정자금 | 1,600,000 | 1,790,000 | △124,500 | 1,665,500 | 1,654,965 | - | 10,535 | 1,670,000 |
| 성장기반자금 | 850,000 | 970,000 | △216,900 | 753,100 | 753,076 | - | 24 | 792,000 |
| 상생성장지원자금 | 100,000 | 100,000 | △95,600 | 4,400 | 4,395 | - | 5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부정확한 수요 예측 및 면밀하지 못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동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내역사업 중 ‘상생성장지원자금’과 내내역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 ‘재도전특별자금’ 등의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음.

4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융자)(4151-301)(소상공인정책실)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 건수 | | 금액 | | |
|---|---|---|---|---|---|
| | 계획(최종) | 실적 | 계획(당초) | 계획(수정) | 실적 |
| 일반경영안정자금 | 27,400 | 48,543 | 12,200 | 17,970 | 17,718 |
| 특별경영안정자금 | 41,000 | 55,724 | 16,000 | 16,555 | 16,450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난) | | | 1,000 | 1,000 | 1,704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 | | | 3,500 | **3,500** | **796**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 | 5,000 | 7,400 | 8,405 |
| 대환대출 | | | 2,000 | 2,000 | 1,705 |
| 재도전특별자금 | | | 2,500 | **2,000** | **1,325**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 500 | 500 | 627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 1,500 | 1,500 | 1,988 |
| 성장기반자금 | 19,000 | 13,759 | 8,500 | 7,531 | 7,531 |
| 상생성장지원자금 | 2,000 | 83 | 1,000 | **1,000** | **4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상생성장지원자금’**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과다 산정된 결과 연말 기준 실적이 44억원(83개사 × 5,300만원)으로 당초 계획(1,000억원) 대비 4.4% 수준에 불과하였음.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대출 금리 또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2%p 수준으로 타 지원사업 대비 메리트가 크지 않았던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한편 **‘재도전특별자금’** 사업은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산정하지 못한 결과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동 사업의 규모를 2,5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3차례에 걸쳐 968억원으로 계획액을 감액하였는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다시 사업규모를 2,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제1회 변경안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가, 5월 기준 실집행액이 408억원(16.3%)에 불과함에 따라 비로소 제2회 변경안에서 500억원을 감액하였음. 그러나 제2회 변경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 집행액은 1,325억원(53.0%)에 불과하여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였음.

[2021~2025년 재도전특별자금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 연도 | 당초 계획액(A) | 수정액 | 집행액(B) | 집행률(=B/A) |
|---|---|---|---|---|
| 2021 | 900 | 297 | 297 | 33.0 |
| 2022 | 1,400 | 243 | 243 | 17.4 |
| 2023 | 2,000 | 608 | 529 | 26.4 |
| 2024 | 2,500 | 968 | 902 | 36.1 |
| 2025 | 2,500 | 2,000 | 1,325 | 53.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설정하지 못하여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상당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계획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융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부실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유행 및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임차료융자, 코로나19 피해자금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책자금을 제공한 바 있음.

이들 융자사업의 부실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25년 말 기준 대체로 완화되었으나, 2023년부터 신규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16.6%), 2022년 일시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한 희망대출(15.0%), 2021년을 끝으로 신규대출 취급을 종료한 저신용소상공인융자(10.9%) 등은 여전히 두 자릿수의 부실률을 유지하고 있음.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중 2025년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사업의 연도별 부실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임차료융자 | 신규대출액 | 8,638 | - | - | - | - |
| | 대출잔액 | 8,589 | 8,471 | 7,051 | 3,949 | 1,573 |
| | 부실금액 | 19 | 129 | 562 | 509 | 121 |
| | 부실률 | 0.23 | 1.52 | 7.97 | 12.88 | 7.66 |
| 코로나19 피해자금 | 신규대출액 | - | - | - | - | - |
| | 대출잔액 | 7,657 | 6,507 | 4,542 | 2,249 | 1,124 |
| | 부실금액 | 293 | 473 | 659 | 354 | 43 |
| | 부실률 | 3.82 | 7.26 | 14.51 | 15.74 | 3.86 |
| 재도전특별자금 | 신규대출액 | 297 | 243 | 529 | 902 | 1,325 |
| | 대출잔액 | 816 | 1,045 | 1,469 | 2,154 | 2,891 |
| | 부실금액 | 47 | 89 | 152 | 206 | 244 |
| | 부실률 | 5.80 | 8.50 | 10.37 | 9.58 | 8.45 |
| 소상공인 고용연계융자 | 신규대출액 | 5,751 | - | - | - | - |
| | 대출잔액 | 5,741 | 5,699 | 5,157 | 2,984 | 1,381 |
| | 부실금액 | 10 | 109 | 463 | 468 | 115 |
| | 부실률 | 0.17 | 1.91 | 8.98 | 15.69 | 8.34 |
| 저신용소상공인융자 | 신규대출액 | 9,104 | - | - | - | - |
| | 대출잔액 | 9,101 | 9,086 | 8,468 | 5,020 | 2,742 |
| | 부실금액 | 5 | 447 | 1,673 | 1,695 | 299 |
| | **부실률** | **0.05** | **4.91** | **19.76** | **33.76** | **10.89** |
| 일상회복특별융자 | 신규대출액 | 2,709 | 3,528 | - | - | - |
| | 대출잔액 | 2,708 | 6,212 | 6,107 | 3,779 | 1,897 |
| | 부실금액 | - | 52 | 303 | 474 | 143 |
| | 부실률 | - | 0.83 | 4.96 | 12.55 | 7.53 |
| 희망대출 | 신규대출액 | - | 10,555 | - | - | - |
| | 대출잔액 | - | 10,544 | 10,183 | 7,188 | 4,178 |
| | 부실금액 | - | 348 | 1,696 | 1,823 | 626 |
| | **부실률** | **-** | **3.29** | **16.66** | **25.36** | **14.99** |
| 소공인특화자금 | 신규대출액 | 2,626 | 3,109 | 4,360 | 12 | - |
| | 대출잔액 | 13,222 | 13,198 | 13,663 | 9,766 | 5,657 |
| | 부실금액 | 359 | 245 | 619 | 795 | 547 |
| | 부실률 | 2.71 | 1.85 | 4.53 | 8.14 | 9.68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신규대출액 | - | - | - | 4,804 | 4,852 |
| | 대출잔액 | - | - | - | 4,696 | 8,595 |
| | 부실금액 | - | - | - | 49 | 538 |
| | 부실률 | - | - | - | 1.04 | 6.26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신규대출액 | - | - | 8,149 | 7,369 | 8,405 |
| | 대출잔액 | - | - | 8,115 | 13,724 | 17,869 |
| | 부실금액 | - | - | 1,007 | 2,580 | 2,961 |
| | **부실률** | **-** | **-** | **12.41** | **18.80** | **16.57** |
| 기타자금 | 신규대출액 | - | - | - | - | - |
| | 대출잔액 | - | 11,549 | 10,533 | 12,241 | 14,229 |
| | 부실금액 | - | 85 | 421 | 618 | 1,056 |
| | 부실률 | - | 0.01 | 4.00 | 5.04 | 7.4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 조치가 2025년 9월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만기 재연장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부실이 대규모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조치 현황]

| 구분 | 기간 | 대책 | 관련 지침 |
|---|---|---|---|
| 최초 | 20.4.1.~<br>20.9.30.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br>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br>(2020. 3. 19.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2020. 3. 중기부) |
| 1차<br>연장 | 20.10.1.~<br>21.3.31. |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br>유예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br>(2020. 8. 27.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0. 9. 중기부) |
| 2차<br>연장 | 21.4.1.~<br>21.9.3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br>대상의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br>이자상환 유예조치<br>(2021. 3. 2.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1. 3. 중기부) |
| 3차<br>연장 | 21.10.1.~<br>22.3.31.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br>(2021. 9. 16.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1. 9. 중기부) |
| 4차<br>연장 | 22.4.1.~<br>22.9.30.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br>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br>(2022. 3. 23.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2. 3. 중기부) |
| 5차<br>연장 | 22.10.1.~<br>25.9.30.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br>지원방안(2022. 9. 27. 금융위) |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br>보증운용 지침(2022. 9. 중기부) |
| 2026. 5. 현재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br>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br>점검회의 개최(2025. 9. 25. 금융위) | 전액 만기연장조치 종료에 따른<br>후속업무 지침(2025. 9. 중기부) |

자료: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단기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책자금의 부실이 미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리스크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2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잦은 발행 계획 변경 부적정 등

## 가. 개 요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조 9,401억 7,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9)]

[2025년도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도 | | | | | | | 2026년도 계획액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465,205 | 1,940,172 | - | 1,940,172 | 1,940,172 | - | - | 565,495 |
| 온누리상품권발행 | 390,748 | 493,715 | - | 493,715 | 493,715 | - | - | 457,958 |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16,142 | 16,142 | - | 16,142 | 16,142 | - | -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나. 검토의견

**첫째,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연도 중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할인율과 규모를 국회 심의 시의 계획과 달리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이와 같은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시중 금융기관(지류) 및 전용 모바일앱(모바일・카드형) 등을 통해 판매되고 개별가맹점에서 사용되며,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음.

4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실)

2024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한국조폐공사), 카드형(KT), 모바일형(비즈플레이) 등 발행 및 운영 대행기관이 각기 상이하였으나, 2025년 3월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출시 이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지류형·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에는 5.5조원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지류형 상품권은 비할인 또는 5%만큼,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5% 또는 10%만큼 할인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할인판매가 이루어졌음.

[2025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계획액 | 판매실적 | | |
|---|---|---|---|---|---|
| | | | 전체 판매 실적 | 특별판매 기간 (1.10.~2.10.) | 특별판매 기간 제외 |
| 지류 | 비할인 | 8,000 | 3,821 | 739 | 3,082 |
| | 5% 할인 | 9,000 | 7,590 | 1,135 | 6,455 |
| | 10% 할인 | - | - | - | - |
| | 15% 할인 | - | - | - | - |
| | 소계 | 17,000 | 11,411 | 1,874 | 9,537 |
| 디지털 | 비할인 | - | 1,338 | 70 | 1,268 |
| | 5% 할인 | 23,000 | - | - | - |
| | 10% 할인 | 15,000 | 17,116 | △10 | 17,126 |
| | 15% 할인 | - | 8,236 | 8,393 | △157 |
| | 소계 | 38,000 | 26,691 | 8,453 | 18,248 |
| 계 | | 55,000 | 38,102 | 10,327 | 27,775 |

주 1) 특별판매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지류 5%, 디지털 15%
2) 일부 판매실적이 음수인 이유: 해당 할인율로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판매분에 대한 환불 발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특별할인판매 및 환급행사 현황]

| 구분 | 2024 | 2025 | | | 2026 |
|---|---|---|---|---|---|
| 할인 기간 | (1차) 9.2.~9.5.<br>(2차) 9.9.~9.30. | 설 명절 | 동행축제 | 그랜드 페스티벌 | 1.1.~2.28. |
| | | 1.10.~2.10. | 3.17.~3.28. | 10.29.~11.9. | |
| 할인율 | 지류 5%→10%,<br>모바일・카드형<br>10%→15% | 디지털<br>10%→15% | 디지털 10% | | 디지털<br>7%→10% |
| 디지털 환급률 | - | 15% | 20% | 5~15%<br>(기금 변경) | - |
| 1인당 구매 한도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 월 100만원<br>(11.1.~) | 월 100만원 |
| 할인・환급 규모 | (1차) 지류 500억원,<br>디지털 2,500억원<br>(2차) 예산 소진<br>시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 | | 예산 소진<br>시까지 |

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친 할인행사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2025년 그랜드 페스티벌 환급행사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026년 할인행사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한도 내에서 진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당초 계획에 없던 특별할인판매 행사 등으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은 관련 예산 소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매년 계획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특히 2023년의 경우 실적치(2.0조원)가 계획치(4.0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2024년 이후에도 실적치가 계획치에 크게 미달하였음.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발행 계획 및 발행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지류 | 20,000 | 30,000 | 17,000 | 12,890 | 14,000 | 19,611 | 17,000 | 13,000 |
| 모바일 | 5,000 | 4,831 | 4,000 | 3,389 | 10,000 | 7,947 | 38,000 | 26,691 |
| 카드 | 10,000 | 560 | 19,000 | 3,963 | 26,000 | 8,413 | | |
| 계 | 35,000 | 35,391 | 40,000 | 20,242 | 50,000 | 35,970 | 55,000 | 39,691 |

주 1) 2022년 발행계획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개시 이후 수립한 계획임
2) 2025년부터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렇듯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상향 조정은 발행 가능 규모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국회가 당초 심사한 사업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할인율이 빈번히 조정되면 소비자가 추가적인 할인행사를 기대하여 상품권 구매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상품권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9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완화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매장에도 상품권이 사용되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이와 같이 기금이 본 목적과 무관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업 등 13개 업종을 영위하는 매장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2024년 9월 10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 및 별표 1 등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 이후 가맹제한이 완화된 13개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전통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대형 병원 및 치과병원을 비롯한 보건업 관련 매장에 사용 실적이 집중되었음.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가맹제한이 완화된 13개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

(단위: 백만원)

| 완화 업종명 | 2024 | | 2025 | | | | 계 |
|---|---|---|---|---|---|---|---|
|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담배 중개업 | - | - | - | - | - | - | - |
| 잎담배 도매업 | - | - | - | - | - | - | - |
| 담배 도매업 | - | - | - | - | - | - | - |
| 모피 제품 도매업 | - | - | - | - | - | - | -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 - | - | - | 0.3 | 0.1 | 0.4 |
|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 | - | - | 2 | 3 | 1 | 6 |
| 수의업 | 0.3 | 67 | 78 | 149 | 517 | 558 | 1,369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 한정) | 39 | 793 | 1,599 | 3,294 | 7,994 | 6,317 | 20,036 |
| 보건업 | 95 | 2,885 | 4,912 | 11,559 | 28,030 | 28,154 | 75,635 |
| 골프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노래연습장 운영업 | 1 | 19 | 16 | 53 | 78 | 117 | 284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 - | - | - | 3 | 3 | 6 |
| 계 | 135 | 3,764 | 6,605 | 15,057 | 36,625 | 35,150 | 97,336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16일에 동법 시행령 제9조의16 및 별표 1 등을 재개정하여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의 업종을 재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으로 설정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제한하였음.

즉,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약 1년 9개월 동안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조성된 기금이 이들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업종을 영위하는 매장 및 대형 매장에 활용되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이와 같이 기금이 본 목적과 무관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의 경우 타 사업 선정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 및 사업비 반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간 차별화 방안 마련 및 신청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의 반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시장경영패키지는 전통시장·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마케팅, 상인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

편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동마케팅・상인교육・경영자문・시장매니저 및 인력매니저 등을 지원하고 있음.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 (지원 내용)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등이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1곳 당 최대 3,600만원)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 항목) 사업지원 및 인력지원 패키지로 구성
- 공동 마케팅: 체험교실, 행사, 콘텐츠 제작, 미디어・인터넷 홍보 등
- 온라인 마케팅: 판매 촉진 및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 그 외: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시장 매니저 및 배송 매니저 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절차]

| 신청 | | 기초지자체 검토 | | 광역지자체 추천 | | 접수 | | 평가・선정 | | 선정결과 통보 |
|---|---|---|---|---|---|---|---|---|---|---|
| 전통시장 등 | ➡ | 시·군·구 | ➡ | 시・도 | ➡ | 소진공 | ➡ | 지방중기청 | ➡ | 중기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동 사업의 연도별 선정 및 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시장경영패키지를 신청한 이후 포기하는 시장이 존재하였음. 2025년의 경우 총 469개의 시장이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중 29개 시장이 패키지 지원을 포기하였음.

[연도별 시장경영패키지 신청 이후 포기 현황]

(단위: 개)

| 연도 | 선정시장 수 | 포기시장 수 |
|---|---|---|
| 2021 | 646 | 48 |
| 2022 | 381 | 51 |
| 2023 | 367 | 31 |
| 2024 | 430 | 22 |
| 2025 | 469 | 29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사후에 포기하는 시장 중 대다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됨에 따라 패키지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2025년 패키지 지원을 포기한 29개 시장 중 23개 시장은 타 사업 선정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5년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신청 이후 포기한 29개 시장의 포기사유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 타 사업 선정 | | | | 상인회 내부사정 | 인력 수급 곤란으로 인한 협약 전 포기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지자체 | | |
| | 첫걸음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디지털전통시장 | | | |
| 시장 수 | 4 | 12 | 5 | 2 | 5 | 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지원 사업별 지원 내용 및 한도]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 시장경영패키지 | ・주어진 예산 범위 내 6개 사업 부문(공동・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배송매니저)에 자유롭게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 | 1년간 최대 4,500만원 |
| 첫걸음시장 | ・결제 편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지원<br>・상인조직 강화(가입률 및 상인회비 증액 등), 안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H/W) | 1년간 최대 3억원 |
| 문화관광형시장 | ・ 지역특색(문학, 관광, 역사)과 연계한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br>・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br>・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를 지원하여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 2년간 최대 10억원 |
| 디지털전통시장 | ・온라인 전용 상품 개발, 사업모델 수립 등 역량강화 지원<br>・배송센터 조성 및 배송 관련 기반시설(냉동고, 배송상품 포장시설 등) 구축 등 배송인프라 지원<br>・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입점 상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년간 최대 4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신청 이후 포기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예산 반납액 또한 2023년 3.3억원, 2024년 3.3억원, 2025년 3.6억원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간 차별화 방안 마련 및 신청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의 반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2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시정요구 51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5건・제도개선 38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 | (중복) | 계 |
|---|---|---|---|---|---|---|---|
| 결산 | - | - | - | 15 | 38 | 2 | 51 |
| 예비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5 | 38 | 2 | 51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정요구사항 51건에 대해 4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2.4%)하고 9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 구분 | 시정요구사항(a) | 조치완료(b) | 조치율(b/a) | 조치중(a-b) |
|---|---|---|---|---|
| 결산 | 51 | 42 | 82.4 | 9 |
| 예비비 | - | - | - | - |
| 합계 | 51 | 42 | 82.4 | 9 |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중소벤처기업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 구분 | 부대의견 |
|---|---|
| 2025년도 제1회 추경 | (10)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역사업인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와 유사한 온누리상품권 연계사업(환급, 할인 등)을 운영 중인 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

##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등 본연의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조치완료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결원율이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시정요구에 대해 기관 예산 상황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시 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답변 이후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결원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50]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력충원 시정요구 조치결과]

| 구분 | 내용 |
|---|---|
| 시정요구명 | (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력충원 노력 필요 |
|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등 본연의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
| 조치상황 | 조치완료 |
| 조치결과 | ㅇ 기관 예산 상황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적시 인력 충원을 추진 |

50) ‘8.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검토의견 관련